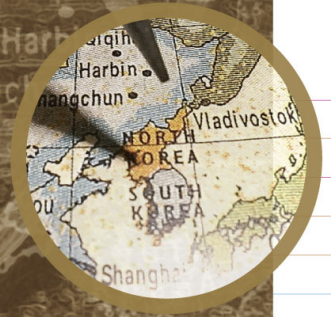



한반도 평화체제

: 자료와 해제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민 조정아

- 
-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I)

한반도 평화체제

: 자료와 해제



하바도 평화체제

O : 자료와 해제

인 쇄 2007년 9월
발 행 2007년 9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평가기획연구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3
(팩시밀리) 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도서출판 늘품 (2275-5326)
인 쇄 처 도서출판 늘품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07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734-6818 ·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민, 조정아.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 ; cm. —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1)

ISBN 978-89-8479-408-5 93340 : 비매품

349.11-KDC4

327.519-DDC21

CIP2007002829

한바도
한바도
평화 체제 >>>
O : 자료와 해제

발간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에서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의 포럼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는데 합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 질문에서부터 동결·불능화 및 검증 과정에서 상호간에 많은 전제조건과 요구 사항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민족분단이 60년을 넘어 70년을 향해 나가고 있는 지금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업이 되고 있다.

때 마침 남북은 7년여 만에 제2차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논의에 탄력을 주게 되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연구를 핵심과제로 삼고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자료집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남북한과 주변국의 노력과 참고가 될 만한 국제적 사례들을 정리하여 이를 한 권의 책에 담아보았다.

이 자료집이 나오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통일연구원의 연구진에게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이 자료집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07년 9월

통일연구원장 이 봉 조

서문

일반적으로 평화체제는 전쟁의 법적 종결 및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그리고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의미는 이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고, 상호 적대적 관계를 초래했던 긴장요인들을 해소함으로써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발전을 실현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지난 50여년간 한반도 질서를 규정해 온 정전상태가 평화상태로 전환되고, 안보·남북관계 및 대외관계에서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진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분단 62년 고통의 세월을 지내온 우리로서는 평화체제 그 자체를 목적으로만 삼을 수는 없다. 평화체제는 분단고착적 평화체제와 통일지향적 평화체제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는 외세에 의해 분단된 한반도가 다시 외세에 의해 평화를 유지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비록 외세에 의해 분단되었을지라도 남북한이 중심에 서서 평화를 회복·유지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회복하고 유지할 뿐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고 기여할 수 있는 체제’로 규정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정치, 군사, 경제 등 다양한 민족 내부적 요소들과 한반도와 주변국간의 안보현안 등 국제적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 민족적 문제이자 국제적 사안이다. 남북한의 주도적 구축노력과 더불어 주변 4국과의 국제적 협력을 통한 조화와 보완이 요구된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평화체제와 달리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 평화공존 실현과 남북연합으로의 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 문제를 국제문제로 지나치게 부각시키기 보다는 남북한이 당사자로서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국제적 협력도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쉽게 진전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제는 모두 동의하나, 그 방식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상충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평화체제의 형식과 내용, 평화체제 구축 과정, 주한

미군 문제와 평화보장관리에 대한 남북한의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는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시대적 요청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화가 우려된다. 국내에서도 핵무장화 주장이 대두할 수 있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지 못할 때, 동북아 군사력 경쟁과 더불어 다시 해양 일본·미국 세력 대 대륙 중국·러시아 세력의 각축이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반드시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이룰 뿐만 아니라 21세기 태평양시대에 주변 4국과 더불어 진정한 ‘평화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어야 하겠다. 우리로서는 분단 60년을 넘어 분단 70년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서두에는 각 장에 수록되어 있는 합의문, 조약, 제의에 대한 해제를 적어 놓았다. 제1장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하여 정전협정에서부터 2·13 합의에 이르기까지 남북한 및 주변4국이 체결한 중요한 조약과 합의문으로 구성하였다. 가급적 원본에 충실하기 위하여 북한식 표기를 살렸으며, 국·영문본을 포함시켰다. 제2장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남북한 최고지도자 및 고위 당국자의 주요 제의를 수록하였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남북한의 중단 없는 노력들을 되새겨본다. 제3장은 국제사회에서 의미 있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평화협정의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이는 향후 한반도 평화협정의 중요한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발간하기까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봉조 원장님과 각 분야별 해제를 담당해 주신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민, 조정아 연구위원께 감사드린다. 또한 책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날카로운 조언과 따스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KPP 동료 연구위원들께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자료 수집과 꼼꼼한 교정을 위해 땀흘린 김인숙 연구원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표하며,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 분야를 연구하시는 모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07년 9월

통일연구원 평화기획연구실장 허 문 영



목차

서문

I. 평화체제 관련 조약 및 합의문

| | |
|--|----|
| 해제 | 3 |
| (1)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2·13 합의, 2007.2.13) | 11 |
| (2)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 (2005.11.17) | 18 |
| (3)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2005.9.19) | 24 |
| (4) 조·일 평양선언 (2002.9.17) | 30 |
| (5) 조·미 공동컴뮤니케 (2000.10.12) | 32 |
| (6)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 (2000.9.26) | 36 |
| (7) 6·15 남북공동선언 (2000.6.15) | 37 |
| (8)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 (2000.2.9) | 39 |
| (9) 조·미 기본합의문 (제네바합의문, 1994.10.21) | 41 |
| (10) 조·미 공동성명 (1993.6.11) | 47 |
| (11)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9.17) | 49 |
| (12)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9.17) | 52 |
| (13)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9.17) | 55 |
| (14)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9.17) | 60 |
| (15)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5.7) | 62 |
| (16)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5.7) | 64 |
| (17)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5.7) | 66 |
| (18)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2.1.20) | 68 |
| (19)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1.12.13) | 71 |
| (20) 제30차 UN총회 유엔사 해체에 관한 서방측 및 공산권측 결의안 (1975.11.17) | 76 |
| (21) 7·4 남북공동성명 (1972.7.4) | 79 |
| (22)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1961.7.11) | 83 |
| (23)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1961.7.6) | 85 |

| | |
|-----------------------------|----|
| (24) 한·미 상호방위조약 (1953.10.1) | 87 |
| (25) 정전협정 (1953.7.27) | 91 |

II. 평화체제 관련 제의

1. 남한

| | |
|--|-----|
| 해제 | 127 |
| (1) 김대중 대통령 베를린선언 (2000.3.9) | 132 |
| (2) 노무현 제16대 대통령 취임사 (2003.2.25) | 137 |
| (3) 김대중 대통령 CNN 회견 기초연설 (1999.5.5) | 141 |
| (4) 김영삼 대통령 광복절 50주년 경축사 (1995.8.15) | 144 |
| (5) 김영삼 제14대 대통령 취임사 (1993.2.25) | 146 |
| (6) 노태우 대통령 민주평통자문회의 제5기 출범식 개회사 (1991.7.12) | 147 |
| (7) 노태우 대통령 광복절 제45주년 경축사 (1990.8.15) | 152 |
| (8) 노태우 대통령 제43차 유엔총회 연설 (1988.10.18) | 153 |
| (9)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7·7 특별선언'(1988.7.7) | 155 |
| (10) 전두환 대통령 1982년도 국정연설 (1982.1.22) | 157 |
| (11) 한·미 공동성명 (1979.7.1) | 161 |
| (12) 박동진 외무부장관 성명 (1976.5.13) | 163 |
| (13) 김동조 외무부장관 제30차 유엔총회 정치위원회 연설 (1975.10.21) | 164 |
| (14) 박정희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1974.1.18) | 168 |
| (15)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 (1973.6.23) | 172 |
| (16) 박정희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1970.8.15) | 175 |

2. 북한

| | |
|-------------------------------|-----|
| 해제 | 180 |
| (1) 조선외무성 대변인 담화문 (2005.7.22) | 183 |

| | |
|--|-----|
| (2) UN 특별위원회 회의 북측 대표 연설 (2004.3.30) | 185 |
| (3) 조선외무성 대변인 담화문 (2002.10.25) | 187 |
| (4)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문 (1996.4.4) | 190 |
| (5) 조선외교부 대변인 담화문 (1996.2.22) | 191 |
| (6) 조선외교부 대변인 담화문 (1995.2.25) | 193 |
| (7) 조선외교부 성명 (1994.4.28) | 195 |
| (8) 김일성 신년사 (1991.1.1) | 197 |
| (9) 조선전쟁의 법적종결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투쟁 (「현대국제법 연구」, 1988) | 208 |
| (10)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위원회 상설회의·정무원 연합회의 (1988.11.7) | 222 |
|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1987.7.23) | 225 |
| (12)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명의 서안 (1986.6.9) | 228 |
| (13) 김일성 신년사 (1986.1.1) | 232 |
| (14)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 (1984.1.10) | 239 |
| (15) 조선로동당 제6차 당대회 보고 (1980.10.10) | 241 |
| (16)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 회의 채택 대미서한 (1974.3.25) | 252 |
| (17) 김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 회의 보고 (1973.4.15) | 255 |
| (18) 김일성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 회의 연설 (1962.10.23) | 270 |
| (19) 김일성 8·15해방 10돐경축대회 보고 (1955.8.14) | 272 |
| (20) 남일 「제네바 정치회담」 최종회의 제1차 연설 (1954.6.15) | 278 |

Ⅲ. 국제평화조약 사례

| | |
|---|-----|
| 해제 | 283 |
| (1) 코소보 평화협정 Military Technical Agreement between the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and the Governments of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and the Republic of Serbia (1999.6.9) | 289 |

| | |
|--|-----|
| (2)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Good Friday Agreement (1998.4.10) | 295 |
| (3) 보스니아 평화협정 General Framework Agreement for Peace in Bosnia and Herzegovina (데이턴 평화협정, 1995.12.14) | 334 |
| (4) 캄보디아 평화협정 Final Act of the Paris Conference on Cambodia (1991.10.23) | 340 |
| (5) 독일문제의 최종종결에 관한 조약 Treaty on the Final Settlement with Respect to Germany (1990.9.12) | 358 |
| (6)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간의 상호관계 원칙, 특히 불가입 및 불간섭에 관한 협정 Bilateral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Afghanistan and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on the Principles of Mutual Relations in particular on Non-interference and Non-intervention(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 1988.4.14) | 367 |
| (7) 「이집트」 아랍공화국과 「이스라엘」 국가의 평화조약 Peace Treaty between Israel and Egypt (1979.3.26) | 373 |
| (8) 유럽안보협력회의 최종의정서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Final Act (헬싱키협약, 1975.8.1) | 395 |
| (9) 베트남 전쟁종결 및 평화회복에 관한 파리협정 Agreement on Ending the War and Restoring Peace in Viet-Nam (1973.1.27) | 510 |
| (10) 미·중공 공동성명 Joint U.S.-China Communiqué (Shanghai Communiqué, 1972.2.28) | 528 |

IV. 기타

| | |
|---|-----|
| (1) 페리보고서 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1999.10.12) | 539 |
|---|-----|



I

평화체제 관련
조약 및 합의문

평화체제 관련 조약 및 합의문

【해 제】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할 민족적 문제일 뿐 아니라, 주변 4국의 이해관계도 걸려있는 국제적 문제이다. 정전협정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협정이다. 이 장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된 주요 문건들을 남북 합의서와 다자 합의서로 구분해서 다음과 같이 해제한다.

정전협정(1953.7.27)

- 1953년 7월 27일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 김일성 북한인민군 최고사령관, 팡덕회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정전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한국전쟁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 정전협정은 교전당사자간에 군사작전의 정지를 위해 맺는 군사적 잠정협정으로 남북 군사관계를 규율하고 무력충돌을 예방·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였다.
 - 현재 정전협정은 제1조 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 관련 조항 등 일부 조항만 제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 지금은 전쟁 없는 상태 이른바 소극적 평화를 의미하는 정전협정을, 전쟁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한 상태인 적극적 평화를 의미하는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전쟁 유산으로 형성된 정전체제를 평화가 확고히 보장되는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 향후 평화협정의 형식과 당사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남북 합의서

7·4 남북공동성명(1972.7.4)

- 1972년 7월 4일 남북한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통일원칙으로 하는 7·4 남북공동성명을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발표하였다.
 -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남북한은 조국통일 3대원칙을 비롯하여 상호 비방 중단 및 군사적 충돌 방지, 제반 교류 실시, 남북적십자회담 추진, 서울-평양 간 상설 직통전화 설치,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등 여섯 가지 사항에 합의하였다.
- 이후 7·4 남북공동성명에 의거하여 남북조절위원회가 발족되었으나 남북간 의견 차이로 성과 없이 중단되었다.
 - 그러나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천명된 통일원칙은 이후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재확인되었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12.13)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5.7)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5.7)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5.7)

남북 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9.17)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9.17)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9.17)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9.17)

- 1991년 12월 13일에 채택되고 1992년 2월 19일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는 제3자 개입 없이 남북간 공개협의를 거쳐 채택·발효된 최초의 공식 합의문서이다.
 - 이는 남북한이 상호 체제인정 및 내정 불간섭, 비방·중상 및 파괴·전복 행위 금지, 군사협정의 준수, 무력사용 및 무력침략 금지, 경제교류와 협력 실시 등을 약속함으로써 평화공존의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이 합의를 통해 남북한은 통일이 목표인 동시에 과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통일국가를 건설할 때까지 공존공영하면서 점진적·단계적으로 민족 통합을 추진해 나가자는 공동 의지를 천명하였다.

- 부속합의서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 교류·협력 분야의 남북간 합의사항의 이행·준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 설치와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밝힌 문서이다.
-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분단 이후 지속되어 온 불신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명시한 포괄적 규범이다.
 - 이 합의서들은 평화체제 구축에 필요한 거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기본 및 부속 합의서 이행은 실질적 신뢰 구축과 다른 분야 합의사항 이행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쟁 책임 문제, 배상 문제 등 평화체제 전환과정에서 남북한의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사실상 합의하기 어려운 사안들에 대한 논의를 우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 기본 및 부속합의서 이행·실천이 비록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평화 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이 된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 남북한은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으로 남북 관계의 진전을 이루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 남북 합의서 채택 이후 화해와 교류·협력 분야에서는 합의사항이 어느 정도 이행·실천되어 왔으나, 안보·군축·평화구축 문제 등 불가침 조항의 이행·실천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 국제질서와 남북관계의 변화를 고려하여 이 합의서의 내용을 새로운 평화협정 속에 담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2.1.20)

-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점증하는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에 대한 우리 측 해결 노력의 성과물이다.
 - 우리 정부는 1991년 12월 18일 ‘핵부재 선언’을 발표하여, 북한이 주한미군 핵무기를 이유로 핵안전협정 서명과 국제 사찰을 회피하지 않고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였다.
 - 이 선언을 통해 남북한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 금지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핵재처리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 비보유,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원회에 의한 핵 사찰 등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한발 다가갔다.
-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은 적대적 대결의 남북관계를 종식시키고, 화



한반도 평화체제

O : 자료와 해제

해·협력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원칙과 틀을 마련하였음과 동시에, 남북문제의 당사자 해결구도를 상호 합의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2000.6.15)

- 6·15 남북공동선언은 상호 체제인정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를 당사자인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이후 지연되었던 남북관계 개선을 다시 적극 추진할 것임을 알리는 기념비적 선언이다.
 -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북한은 남북경협을 비롯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계기를 이끌어냈다.
- 남북한은 남북공동선언 2항을 통해 통일중간단계의 필요성에 동의함으로써 평화공존에 대해 합의하였다.
 - 그러나 남북연합 단계를 형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평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자주 원칙과 통일 방안의 공통성 인정, 인도적 문제와 교류·협력 분야에 합의하였으나, 한반도 안보와 평화 문제에 대한 합의는 유보한 것이다.
 - 안보와 평화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대신 통일방안의 공통성 확인이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합의한 점은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에 대한 우회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관한 논의는 남북공동선언에서 생략된 통일 이전 단계, 즉 화해협력 단계를 넘어 남북연합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간단계를 복원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국제 합의서

한·미 상호방위조약(1953.10.1)

- 1953년 정전협정의 체결로 한국전쟁이 일시적으로 종결되었지만 전세계적인 냉전의 고조으로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양국간에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태평양 지역에서 효과적인 안전보장 조직이 형성·발달될 때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 외부 무력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군사동맹을 위한 조약으로서 동 조약에 따라 미국이 한반도에 합법적으로 주둔하게 되었다.
-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동 조약, 특히 주한미군의 장래 문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1961.7.6)

- 북한은 냉전이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대국인 소련과 무력위협으로 전쟁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군사동맹을 소련과 체결하였다.
 -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동맹이나 조치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였다.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1961.7.11)

- 북한은 소련에 이어 중국과 상호 원조 및 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회주의 대국과 외부의 무력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군사동맹 체제를 구축하였다.
 - 한국과 미국, 북한과 소련 및 중국 사이에 방위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양 진영의 대립이 군사동맹을 통해 한반도 냉전체제 심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제30차 유엔총회 유엔사 해체에 관한 서방측(유지) 및 공산권측(해체) 결의안 (1975.11.18)

- 1975년 제30차 유엔 총회에서 정전협정을 대체하고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를 희망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 서방측은 정전협정은 계속 준수되어야 하며, 정전협정의 유지를 위한 적절한 방안과 함께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될 수 있도록 1단계 조치로서 직접 관계 당사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 반면, 공산권측은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 이름 아래 남한에 주둔하는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를 주장하였다.
- 유엔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냉전 구도 속에서 서방측과 공산권이 제안한 각각의 결의안이 동시에 채택됨으로써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체제 구축이 실현에 옮겨지지 못하였다.



조 · 미 공동성명(1993.6.11)

- 한반도에서 적극적 평화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을 포함하여 냉전구조를 해체할 때 달성될 수 있다.
 - 탈냉전기 도래와 더불어 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한 남한은 구소련 및 중국과 관계정상화를 이뤄냄으로써 냉전구조를 부분적으로 해체하기 시작하였다.
 - 그러나 북한은 미국 · 일본과 여전히 관계를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었다.
- 한반도 평화문제는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무기개발이라는 안보위기로 인해 국제적 현안으로 부각될 수 있었다. 핵 비확산 차원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고위급 접촉이 성사되었고, 뉴욕접촉 결과 1993년 6월 11일 양국 사이에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북한은 핵을 포함한 무력 불사용, 한반도 비핵화와 상호 주권존중, 한반도 평화적 통일에 대한 지지, NPT 탈퇴 일시 정지 등에 합의하였다.

조 · 미 기본합의문(제네바합의문, 1994.10.21)

- 공동성명('93.6.11)을 바탕으로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에서 고위급회담을 지속하였다. 양자 고위급 접촉을 통해 양국은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합의문을 채택함으로써 비핵화와 북 · 미관계정상화 등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포괄적 사안들에 합의하였다.
- 비핵화 차원에서 북한은 흑연감속로 및 관련 시설을 동결 · 해체하고, 미국은 상응하는 대가로 2003년 목표 시한으로 2,000MWe의 경수로를 제공하되 경수로 완공시까지 매년 50만톤 규모의 중유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냉전구조 해체 차원에서 무역 및 투자 제한 완화, 연락사무소 개설, 대사급 관계정상화 등에 합의하였다.
 - 또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 특히 한반도 평화 구축 차원에서 북한이 남북대화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
- 제네바합의문은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북 · 미관계정상화, 남북대화 등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포괄적 방안을 담은 합의문이었다. 그러나 남한이 배제된 양자 합의문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이행과정에서 북한이 남한을 배제하는 전략을 견지함으로써 합의문을 통해 남북대화에 착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에는 경색 국면이 지속되었다.

조 · 미 공동컴뮤니케(2000.10.12)

- 제네바합의문 채택에도 불구하고 북 · 미관계정상화가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2000년

10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특사인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하여 10월 12일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공동컴뮤니케를 발표하였다.

- 동 성명에서 미국과 북한은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 북·미 공동성명('93.6.11)과 제네바합의문('94.10.21) 원칙에 입각한 관계정상화 및 비핵화 추진, 미사일 발사 유예, 클린턴 대통령의 방문 준비를 위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사안들에 대해 합의하였다.
 - 동 성명에 따라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을 준비 하였으나, 공화당이 집권함으로써 실행에 옮겨지지지는 못하였다.

조·일 평양선언(2002.9.17)

- 북·미관계정상화와 더불어 북·일관계정상화는 냉전구조 해체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1991년 북·일 수교회담이 시작된 후 한반도 점령에 대한 과거사 해결문제와 이에 대한 경제 보상 및 청구권 문제, 북한 거주 일본인 배우자의 고국 방문 문제, 일본인 납치 의혹에 관한 문제 등 북한과 일본은 현안에 대해 입장 차이를 못 좁히고 있었다.
 - 이런 상황 가운데, 2002년 9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는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정상화 토대를 마련하는 평양선언을 채택하였다.
- 동 선언을 통해 북한과 일본은 2002년 10월 중 국교정상화 회담 재개, 국교정상화에 따른 경제협력, 재산 및 청구권 협의,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미사일 발사 유예 연장 등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한 조치들에 합의하였다.
 - 그러나 2002년 10월 17일 켈리 차관보의 북한 방문 이후 2차 핵위기 발생, 납치자 문제 등으로 인해 동 선언은 이행되지 못하였다.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2005.9.19)

-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이 6자회담이라는 다자틀을 구성·운영하는 과정에서 제네바합의문 채택('94.10.21)과는 달리 우리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 9·19 공동성명은 단순히 북한 핵문제 해결문제만 다룬 것이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 경제 및 에너지 지원, 북·미, 북·일관계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에서 적극적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포괄적 원칙에 합의한 핵심적인 다자 합의서로 평가할 수 있다.
 - 특히 제네바합의문과 달리 관련 당사국 전체가 보증하게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2005.11.17)

- 9·19 공동성명 채택 이후 한·미 양국은 2005년 11월 17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 9·19 공동성명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 안보틀 형성 등 새로운 동북아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해 한·미 우방국이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중요 토대가 되는 합의이다.
- 이 선언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한미 동맹이 위협에의 공동 대처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에서 민주주의·시장경제·자유 및 인권이라는 공동의 가치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였다. 또한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필요하다는데 공동이해를 표명하였다.
 - 남북관계와 핵문제 병행·조화발전,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전체제로부터 평화체제로의 이행과 평화통일 기여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해 포괄적으로 합의한 중요한 선언이다.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007.2.13)

- 6자회담 참가국들이 2007년 2월 13일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초기단계에서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구체적으로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의 구체적 실천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영변 핵시설의 폐쇄·봉인, IAEA 요원 복귀 초청, 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 협의 등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에 대해 양자 대화와 경제지원 제공이라는 병렬적 이행방안을 합의함으로써 실천의 가능성을 제고시켰다.
 - 특히 한반도 비핵화, 북·미관계정상화, 북·일관계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5개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협의하고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체제, 동북아지역에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포럼과 장관급회담을 구성하도록 합의하였다.
- 향후 이러한 합의들은 민족주의, 영토 분쟁 등으로 인해 갈등 요소가 상존해 있는 동북아 지역에 다자 안보와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2·13 합의, 2007.2.13)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천영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알렉산더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 I. 참가국들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초기단계에서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진지하고 생산적인 협의를 하였다.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와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 II.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렬적으로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 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 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되어있는, 사용후 연료 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한 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와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관계 정상화를 취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5. 참가국들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1조와 3조를 상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긴급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하

였다. 중유 5만톤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의 최초 운송은 60일 이내에 개시된다.

참가국들은 상기 초기 조치들이 향후 60일 이내에 이행되며,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한다는데 합의하였다.

III. 참가국들은 초기조치를 이행하고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실무그룹(W/G)을 설치하는데 합의하였다.

1. 한반도 비핵화
2. 미·북 관계정상화
3. 일·북 관계정상화
4. 경제 및 에너지 협력
5.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실무그룹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협의하고 수립한다. 실무그룹들은 각각의 작업진전에 관해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 보고한다. 원칙적으로 한 실무그룹의 진전은 다른 실무그룹의 진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개 실무그룹에서 만들어진 계획은 상호 조율된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이행될 것이다.

참가국들은 모든 실무그룹 회의를 향후 30일 이내에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IV. 초기조치 기간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 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포함하는 다음단계 기간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최초 선적분인 중유 5만톤 상당의 지원을 포함한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 제공된다.

상기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의 협의와 적절한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V. 초기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6자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한다.

VI. 참가국들은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동북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

VII. 참가국들은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하고 다음단계 행동에 관한 협의를 위해 제6차 6자회담을 2007년 3월 19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대북 지원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 의사록

미합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연방, 대한민국은 각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II조 5항 및 IV조에 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원부담을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분담할 것에 합의하고, 일본이 자국의 우려사항이 다루어지는 대로 동일한 원칙에 따라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또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참여를 환영한다.

Initial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13 February 2007

The Third Session of the Fif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was held in Beijing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rom 8 to 13 February 2007.

Mr. Wu Dawei,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PRC, Mr. Kim Gye Gwan,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DPRK; Mr. Kenichiro Sasae, Director-General for Asian and Oceania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Mr. Chun Yung-woo,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Peace and Security Affairs of the RO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r. Alexander Losyukov,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Mr. Christopher Hill, Assistant Secretary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of the Department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attended the talks as heads of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Vice Foreign Minister Wu Dawei chaired the talks.

- I. The Parties held serious and productive discussions on the actions each party will take in the initial phas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The Parties reaffirmed their common goal and will to achieve early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and reiterated that they would earnestly fulfill their commitments in the Joint Statement. The Parties agreed to take coordinated steps to implement the Joint Statement in a phased manner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action for action".
- II. The Parties agreed to take the following actions in parallel in the initial phase:
 1. The DPRK will shut down and seal for the purpose of eventual abandonment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including the reprocessing facility and invite back IAEA personnel to conduct all necessary monitoring and verifications as agreed between IAEA and the DPRK.

2. The DPRK will discuss with other parties a list of all its nuclear programs as described in the Joint Statement, including plutonium extracted from used fuel rods, that would be abandoned pursuant to the Joint Statement.
3. The DPRK and the US will start bilateral talks aimed at resolving pending bilateral issues and moving toward full diplomatic relations. The US will begin the process of removing the designation of the DPRK as a state-sponsor of terrorism and advance the process of terminating the application of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with respect to the DPRK.
4. The DPRK and Japan will start bilateral talks aimed at taking steps to normalize their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yongyang Declaration, on the basis of the settlement of unfortunate past and the outstanding issues of concern.
5. Recalling Section 1 and 3 of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the Parties agreed to cooperate in economic, energy and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 In this regard, the Parties agreed to the provision of emergency energy assistance to the DPRK in the initial phase. The initial shipment of emergency energy assistance equivalent to 50,000 tons of heavy fuel oil (HFO) will commence within next 60 days.

The Parties agreed that the above-mentioned initial actions will be implemented within next 60 days and that they will take coordinated steps toward this goal.

III. The Parties agree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following Working Groups (WG) in order to carry out the initial actions and for the purpose of full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1.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2. Normalization of DPRK-US relations
3. Normalization of DPRK-Japan relations
4. Economy and Energy Cooperation
5.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The WGs will discuss and formulate specific pla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in their respective areas. The WGs shall report to the Six-Party Heads of Delegation Meeting on the progress of their work. In principle, progress in

one WG shall not affect progress in other WGs. Plans made by the five WGs will be implemented as a whole in a coordinated manner.

The Parties agreed that all WGs will meet within next 30 days.

IV. During the period of the Initial Actions phase and the next phase? which includes provision by the DPRK of a complete declaration of all nuclear programs and disablement of all existing nuclear facilities, including graphite-moderated reactors and reprocessing plant? economic, energy and humanitarian assistance up to the equivalent of 1 million tons of heavy fuel oil (HFO), including the initial shipment equivalent to 50,000 tons of HFO, will be provided to the DPRK.

The detailed modalities of the said assistance will be determined through consultations and appropriate assessments in the Working Group on Economic and Energy Cooperation.

V. Once the initial actions are implemented, the Six Parties will promptly hold a ministerial meeting to confirm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and explore ways and means for promoting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VI. The Parties reaffirmed that they will take positive steps to increase mutual trust, and will make joint efforts for last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e directly related parties will negotiate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t an appropriate separate forum.

VII. The Parties agreed to hold the Six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on 19 March 2007 to hear reports of WGs and discuss on actions for the next phase.

Agreed Minute on Burden Sharing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and the ROK, subject to their respective national governments' decisions, agreed to share the burden of assistance to the DPRK referred to in Paragraph II (5) and IV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equity; look forward to the participation of Japan on the basis of the same principle as its concerns are addressed; and welcome the particip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is process.

(2)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 (2005.11.17)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합중국 대통령은 2005년 11월 17일 경주에서 정상 회담을 개최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경주에서 노 대통령과 함께 체험할 수 있었던 한국의 자연 미와 옛 문화에 대한 깊은 감명을 표시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 북한 핵문제,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경제협력 그리고 지역 및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관계가 굳건함을 재확인하면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한·미동맹)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지난 50여년 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여 왔다는 데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2003년 5월 14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한미 관계가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며 호혜적인 동맹관계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데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가 성공적으로 합의된 것을 평가하고, 이러한 재조정이 한미 연합방위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는데 대해 공동의 이해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이 위협에의 대처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 및 인권이라는 공동의 가치 증진을 위해 있다는데 동의하였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용산기지를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주한미군 일부 감축이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합의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양측간에 이루어진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는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조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위한 한국군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또한 한국 정부가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한 데 대해서도 사의를 표명하였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양자, 지역 및 범세계적인 상호관심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동맹 동반자관계를 위한 전략협의체라는 명칭의 장관급 전략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2006년 초에 첫 번째 전략대화를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북한 핵문제)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강조하고,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북한이 조속하고 검증가능하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9월 19일 채택된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을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한 중요한 진전으로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공약을 환영하고, 공동성명에 제시된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 이행이 논의될 제5차 6자회담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남북관계 및 평화체제 구축)

노 대통령은 평화변영정책의 목표 하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이 북핵문제 해결 진전과 상호 보장 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재확인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남북간 화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화해의 진전에 따라 계속 긴밀하게 협력하고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이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고 현 정전체제로부터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화해와 평화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양 정상은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이 6자회담과는 별도의 장에서 직접 관련 당사자들 간에 개최되어야 하고 6자회담의 진전에 수반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으며,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과 6자회담이 상호 보장하기를 기대하였다.

양 정상은 이러한 평화협상이 한미 동맹의 평화적 목표와 부합되게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 감소와 신뢰 증진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주민들의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공동의 희망에 입각하여 그들의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경제·통상 관계)

양 정상은 APEC이 아시아 태평양을 포괄하는 주요경제협력체로서 향후 역내 중요한 과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다가오는 6차 WTO 각료회의의 성공 및 WTO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의 최종 타결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긴밀한 경제적 유대가 양국관계의 중요한 지주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통상 협력을 심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양국의 번영과 자유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이 비자면제 계획 가입을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과 함께 비자면제 계획의 로드맵을 개발 하는데 공동 노력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비자면제 계획 가입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양국간 공고한 동반자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교류 증진과 상호 이해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지역 및 범세계적 협력)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역내 안보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다자안보대화 및 협력메카니즘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성명에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한 것을 주목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6자회담이 역내 다자안보협의체로 발전될 수 있다는 데 참가국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데 유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PKO 활동과 같은 유엔에서의 양자간 협력과 여타 국제기구에서의 양자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전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초국가적 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안보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지역 및 세계적 차원에서 군축 및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방지 노력에 있어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결 어)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동맹간 완전한 동반자관계를 향해 계속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Joint Declaration on the ROK-US Alliance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November 17, 2005

President Roh Moo-hyu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President George W. Bush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ld a summit meeting on November 17, 2005 in Gyeongju.

President Bush expressed his deep appreciation for Korea's natural beauty and ancient culture which he was able to experience together with President Roh in Gyeongju.

The two leaders had an in-depth discussion on a wide range of issues: the allianc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ter-Korean relations and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economic cooperation, and cooperation in regional and global issues.

Reaffirming that the alliance is strong, the two leaders concurred that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essential for establishing dur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Roh and President Bush highlighted the contribution of the alliance to secur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for the past fifty years.

The two leaders expressed their satisfaction with the steady development of the ROK-US relationship into a comprehensive, dynamic and mutually-beneficial alliance relationship, as agreed upon during the May 14, 2003 summit in Washington D.C.

The two leaders reviewed the successful force realignment agreements and shared the view that this realignment will further enhance the combined defense capability of the alliance. They expressed the common understanding that USFK is essential for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The two leaders agreed that the alliance not only stands against threats but also for the promotion of the common values of democracy, market economy, freedom, and human rights in Asia and around the world.

President Roh and President Bush spoke highly of the successful agreements on the relocation of USFK bases including Yong-san Garrison, and the partial reduction of USFK, which was accomplished through close ROK-US consultation. Both leaders expressed satisfaction that the agreements between the two sides were being faithfully implemented.

President Bush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assistance that Korean troops are giving to a swifter establishment of peace and reconstruction in Iraq and

Afghanistan and also for the contribu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towards strengthening the ROK-US alliance through such efforts.

President Roh and President Bush agreed to launch a strategic dialogue called Strategic Consultation for Allied Partnership (SCAP) at the ministerial- level to consult on bilateral, regional and global issues of mutual interest. The two leaders agreed to have the first strategic dialogue at the beginning of 2006.

President Roh and President Bush reiterated that a nuclear-armed North Korea will not be tolerated, and reaffirmed the principles tha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should be resolved through peaceful and diplomatic means and that North Korea should eliminate its nuclear weapons programs promptly and verifiably.

The two leaders welcomed the September 19 Joint Statement concluded during the four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as an important step towards the goal of a denuclearized North Korea.

They welcomed North Korea's commitment to abandon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and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take measures outlined in the Joint Statement.

The two leaders looked forward to progress in the fifth round of talks, which should be dedic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President Roh reaffirmed that the ROK will continue to pursue, under the goal of Peace and Prosperity Policy,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in harmony with progress in resolving the nuclear issue so that both are mutually reinforcing. President Bush expressed support for South-North reconciliation and pledged to continue clos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s it develops.

The two leaders shared a common understanding that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ll provide an important basis to build a dur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two leaders agreed that reducing the military threa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moving from the current armistice mechanism to a peace mechanism would contribute to full reconciliation and peaceful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Pursuant to the September 19th Six Party Joint Statement, the two leaders agreed that discussions on a peace regime should take place amongst directly-related parties in a forum separate from the Six-Party Talks and would follow progress in those Talks, and expected that the discussions on a peace regime and the Six Party Talks will be mutually reinforcing.

They agreed that these peace discussions should lead to a decreased military threat and increased confidence on the peninsula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eaceful intentions of the U.S.-ROK alliance.

The two leaders exchanged views on the situation for the people of the North and, based on a common hope for a better future, agreed to continue seeking ways to improve their condition.

The two leaders agreed to strengthen ROK-US cooperation so that APEC, as a major economic forum encompassing the Asia-Pacific, can respond more effectively to important demands from the region in the future.

President Roh and President Bush agreed to closely cooperate with each other with a view to ensuring the success of the forthcoming 6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and the final conclusion of the WTO Doha development agenda negotiations.

The two presidents recognized that close economic ties are an important pillar of the bilateral relationship and agreed that deepening and strengthening our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will contribute to the prosperity and freedom of both nations.

President Bush announced that the U.S. will work with the ROK to develop a visa waiver program roadmap to assist Korea in meeting the requirements for membership in the program. Korea's interest in participating in the VWP reflects our strong bilateral partnership and will contribute to enhance exchanges and mutual understanding.

President Roh and President Bush agreed to make common efforts to develop a regional multilateral security dialogue and a cooperation mechanism, so as to jointly respond to regional security issues. In this regard, both leaders noted that the participants in the Six-Party Talks agreed through the Joint Statement to look for ways and means to promote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that there was a common understanding among the participants that the Six-Party Talks could develop into such a regional multilateral security consultative mechanism onc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resolved.

The two leaders also agreed to continuously strengthen bilateral cooperation in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rough such activities as peace-keeping operations.

The two leaders agreed to continue to cooperate in fighting the global war on terror, and dealing with various international security issues including transnational crimes.

The two leaders agreed to cooperate in arms reduction and efforts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WMD and their means of delivery at a regional and global level.

President Roh and President Bush agreed to continue to work together towards a full partnership between allies.

■ (3)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2005.9.19)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제4차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그리고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송민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차관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6자는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하에, 지난 3회에 걸친 회담에서 이루어진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회담을 가졌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

2.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

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3.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및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2백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에 관한 2005.7.12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4.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5.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6. 6자는 제5차 6자회담을 11월초 북경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국, 대한민국, 로씨야련방, 미합중국이 참가하는 제4차 6자회담이 2005년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그리고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중국의 베이징에서 진행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무대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김계관, 일본국 외무성 아시아오세안주 국장 사사에 쟁이찌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차관보 송민순, 로씨야련방 외무성 부상 알렉산드르 알렉세예브, 미합중국 국무성 동아시아 및 태평양문제담당 차관보 크리스토퍼 힐이 각 측 단장들로 회담에 참가하였다.

무대위 부부장이 회의를 사회하였다.

조선반도와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6자는 지난 3차례의 회담들을 통하여 달성된 공동인식에 기초하여 호상존중과 평등의 정신에서 조선반도비핵화에 관한 진지하고 실무적인 토의를 진행하고 다음과 같은 원칙들에 합의하였다.

1. 6자는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조선반도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6자회담의 목표라는 것을 일치하게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핵계획들을 포기하며 멀지 않은 시기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을 리행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 자기의 핵무기가 없으며 핵 또는 상용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기의 령토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1992년 조선반도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하거나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92년 조선반도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준수되고 리행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리용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기타 참가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토의하기로 합의하였다.

2. 6자는 호상관계에서 유엔현장의 목적과 원칙들 그리고 공인된 국제관계규범들을 준수하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서로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쌍무적 정책들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국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와 현안 우려사항들을 해결하는 기초우에서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3. 6자는 에너지, 무역, 투자분야에서 쌍무적 및 다무적방법으로 경제적 협조를 추동할 것을 공약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대한민국, 로씨야련방,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에네르기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200만키로와트의 전력제공과 관련한 2005년 7월 12일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4.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적인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개의 연단에서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 안보와 협조를 도모하기 위한 방도와 수단들을 탐구할것을 합의하였다.

5. 6자는 이상의 일치합의사항들을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별로 리행하기 위한 조화로운 조치들을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6. 6자는 제5차 6자회담을 2005년 11월 상순 합의되는 날자에 베이징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005년 9월 19일

베이징

Joint Statement of the Four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Beijing 19 September 2005

The Four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was held in Beijing, China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rom July 26th to August 7th, and from September 13th to 19th, 2005.

Mr. Wu Dawei,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PRC, Mr. Kim Gye Gwan,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DPRK; Mr. Kenichiro Sasae, Director-General for Asian and Oceania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Mr. Song Min-soon,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OK; Mr. Alexandr Alekseyev,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Mr. Christopher Hill,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of the United States attended the talks as heads of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Vice Foreign Minister Wu Dawei chaired the talks.

For the cause of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t large, the Six Parties held, in the spirit of mutual respect and equality, serious and practical talks concern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n the basis of the common understanding of the previous three rounds of talks, and agreed, in this context, to the following:

1. The Six Parties unanimously reaffirmed that the goal of the Six-Party Talks is th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The DPRK committed to abandoning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and returning, at an early date,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to IAEA safeguards.

The United States affirmed that it has no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as no intention to attack or invade the DPRK with nuclear or conventional weapons.

The ROK reaffirmed its commitment not to receive or deploy nuclear weapons in accordance with the 1992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le affirming that there exist no nuclear weapons within its territory.

The 1992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observed and implemented.

The DPRK stated that it has the right to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The other parties expressed their respect and agreed to discuss, at an appropriate time, the subject of the provision of light water reactor to the DPRK.

2. The Six Parties undertook, in their relations, to abide by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recognized nor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undertook to respect each other's sovereignty, exist peacefully together, and take steps to normalize their relations subject to their respective bilateral policies.

The DPRK and Japan undertook to take steps to normalize their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yongyang Declaration, on the basis of the settlement of unfortunate past and the outstanding issues of concern.

3. The Six Parties undertook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energy, trade and investment, bilaterally and/or multilaterally.

China, Japan, ROK, Russia and the US stated their willingness to provide energy assistance to the DPRK.

The ROK reaffirmed its proposal of July 12th 2005 concerning the provision of 2 million kilowatts of electric power to the DPRK.

4. The Six Parties committed to joint efforts for last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e directly related parties will negotiate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t an appropriate separate forum.

The Six Parties agreed to explore ways and means for promoting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5. The Six Parties agreed to take coordinated steps to implement the aforementioned consensus in a phased manner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commitment for commitment, action for action".

6. The Six Parties agreed to hold the Fif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in Beijing in early November 2005 at a date to be determined through consultations.

(4) 조 · 일 평양선언 (2002.9.17)

조 · 일 평양선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일본국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대신은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상봉하고 회담을 진행하였다.

두 수뇌들은 조일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하며 결실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쌍방의 기본리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로 된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였다.

1. 쌍방은 이 선언에서 제시된 정신과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빠른 시일 안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2002년 10월중에 조일국교정상화회담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호상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 과정에도 조일사이에 존재하는 제반 문제들에 성의 있게 립하려는 강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2. 일본측은 과거 식민지배로 인하여 조선인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일본측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에 대하여 국교정상화후 쌍방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간에 걸쳐 무상자금협력, 저리자장기차관 제공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 적지원 등의 경제협력을 실시하며 또한 민간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견지에서 일본국제협력 은행 등에 의한 융자, 신용대부 등이 실시되는 것이 이 선언의 정신에 부합된다는 기본인식 밑에 국교정상화회담에서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성실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리유에 기초한 두 나라 및 두 나라 인민의 모든 재산 및 청구권을 호상 포기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회담에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재일조선인들의 지위문제와 문화재문제에 대하여 국교정상화회담에서 성실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본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조일 두 나라의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한 이러한 유감스러운 문제가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확인하였다.

4. 쌍방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쌍방은 이 지역의 유관국들사이에 호상 신뢰에 기초하는 협력관계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하

며 이 지역의 유관국들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되는데 따라 지역의 신뢰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틀거리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였다.

쌍방은 조선반도핵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하여 해당한 모든 국제적합의들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쌍방은 핵 및 미사일문제를 포함한 안전보장상의 제반 문제와 관련하여 유관국들사이의 대화를 촉진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이 선언의 정신에 따라 미사일발사의 보류를 2003년이후 더 연장할 의향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 정 일

일 본 국
총 리 대 신
고이즈미 중이찌로

2002년 9월 17일

평 양

(5) 조 · 미 공동컴뮈니케 (2000.10.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공동컴뮈니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 차수가 2000년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합중국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께서 보내시는 친서와 조미관계에 대한 그이의 의사를 조명록특사가 미합중국 윌리엄 클린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조명록 특사와 일행은 매델레인 알브라이트 국무장관과 윌리엄 코헨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을 만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폭 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조성된데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회담들은 진지하고 건설적이며 실무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서로의 관심사들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력사적인 북남최고위급상봉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환경이 변화되었다는것을 인정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리롭게 두 나라사이의 쌍무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데서 4자회담 등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다는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과 미합중국측은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국가들사이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목표로 되며 관계개선이 21세기에 두 나라 인민들에게 다같이 리익으로 되는 동시에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쌍무관계에서 새로운 방향을 취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첫 중대조치로서 쌍방은 그 어느 정부도 타방에 대하여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공약을 확인하였다.

쌍방은 1993년 6월 11일부 조미공동성명에 지적되고 1994년 10월 21일부 기본합의문에서 재확인된 원칙들에 기초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호상신뢰를 이룩하며 주요관심사들을 건설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자주권에 대한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쌍무적 및 다무적공간을 통한 외교적 접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익하다는데 대하여 류의하였다.

쌍방은 호혜적인 경제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두 나라 인민들에게 유익하고 동북아시아전반에서의 경제적 협조를 확대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게 될 무역 및 상업가능성들을 탐구하기 위하여 가까운 시일 안에 경제

무역전문가들의 호상방문을 실현하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쌍방은 미사일문제의 해결이 조미관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새로운 관계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노력으로 미사일문제와 관련한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모든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미국측에 통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자기들의 의무를 완전히 리행하기 위한 공약과 노력을 배가할 것을 확약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굳게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쌍방은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의무리행을 보다 명백히 할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금창리지 하시설에 대한 접근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유익하였다는 데 대하여 류의하였다.

쌍방은 최근년간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인도주의분야에서 협조사업이 시작되었다는 데 대하여 류의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미합중국이 식량 및 의약품지원분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도주의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의의 있는 기여를 한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미합중국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선전쟁시기 실종된 미군병사들의 유골을 발굴하는데 협조하여 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으며 쌍방은 실종자들의 행처를 가능한 최대로 조사확인하는 사업을 신속히 전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이상의 문제들과 기타 인도주의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접촉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2000년 10월 6일 공동성명에 지적된바와 같이 테로를 반대하는 국제적 노력을 지지고무하기로 합의하였다.

조명록 특사는 력사적인 북남최고위급상봉결과를 비롯하여 최근 몇개월사이의 북남대화 상황에 대하여 미국측에 통보하였다. 미합중국측은 현행 북남대화의 계속적인 전진과 성과 그리고 안보대화의 강화를 포함한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발기들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협조할 자기의 확고한 공약을 표명하였다.

조명록 특사는 클린톤 대통령과 미국인민이 방문기간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 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께 윌리엄 클린톤 대통령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며 미합중국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덜레인 알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가까운 시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

2000년 10월 12일

위 싱 톤

U.S.-D.P.R.K. Joint Communiqué

October 12, 2000

As the special envoy of Chairman Kim Jong Il of the D.P.R.K. National Defense Commission, the First Vice Chairman, Vice Marshal Jo Myong Rok, visite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rom October 9-12, 2000.

During his visit, Special Envoy Jo Myong Rok delivered a letter from National Defense Commission Chairman Kim Jong Il, as well as his views on U.S.-D.P.R.K. relations, directly to U.S. President William Clinton. Special Envoy Jo Myong Rok and his party also met with senior officials of the U.S. Administration, including his host Secretary of State Madeleine Albright and Secretary of Defense William Cohen, for an extensive exchange of views on issues of common concern. They reviewed in depth the new opportunities that have opened up for improving the full range of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meetings proceeded in a serious, constructive, and businesslike atmosphere, allowing each side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other's concerns.

Recognizing the changed circumstances on the Korean Peninsula created by the historic inter-Korean summit, the United State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ve decided to take steps to fundamentally improve their bilateral relations in the interests of enhancing peace and secur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this regard, the two sides agreed there are a variety of available means, including Four Party talks, to reduce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formally end the Korean War by replacing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with permanent peace arrangements.

Recognizing that improving ties is a natural goal in relations among states and that better relations would benefit both nations in the 21st century while helping ensure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U.S. and the D.P.R.K. sides stated that they are prepared to undertake a new direction in their relations. As a crucial first step, the two sides stated that neither government would have hostile intent toward the other and confirmed the commitment of both governments to make every effort in the future to build a new relationship free from past enmity.

Building on the principles laid out in the June 11, 1993 U.S.-D.P.R.K. Joint Statement and reaffirmed in the October 21, 1994 Agreed Framework, the two sides agreed to work to remove mistrust, build mutual confidence, and maintain an atmosphere in which they can deal constructively with issues of central concern. In this regard, the two sides reaffirmed that their relations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s of respect for each other's sovereignty and non-interference in each other's internal affairs, and noted the value of regular diplomatic contacts, bilaterally and in broader fora.

The two sides agreed to work together to develop mutually beneficial economic cooperation and exchanges.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for trade and commerce that

will benefit the peoples of both countries and contribute to an environment conducive to greater economic cooperation throughout Northeast Asia, the two sides discussed an exchange of visits by economic and trade experts at an early date.

The two sides agreed that resolution of the missile issue would make an essential contribution to a fundamentally improved relationship between them and to peace and secur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To further the efforts to build new relations, the D.P.R.K. informed the U.S. that it will not launch long-range missiles of any kind while talks on the missile issue continue.

Pledging to redouble their commitment and their efforts to fulfill their respective obligations in their entirety under the Agreed Framework, the US and the D.P.R.K. strongly affirmed its importance to achieving peace and security on a nuclear weapons free Korean Peninsula. To this end, the two sides agreed on the desirability of greater transparency in carrying out their respective obligations under the Agreed Framework. In this regard, they noted the value of the access which removed U.S. concerns about the underground site at Kumchang-ri.

The two sides noted that in recent years they have begun to work cooperatively in areas of common humanitarian concern. The D.P.R.K. side expressed appreciation for significant U.S. contributions to its humanitarian needs in areas of food and medical assistance. The U.S. side expressed appreciation for D.P.R.K. cooperation in recovering the remains of U.S. servicemen still missing from the Korean War, and both sides agreed to work for rapid progress for the fullest possible accounting. The two sides will continue to meet to discuss these and other humanitarian issues.

As set forth in their Joint Statement of October 6, 2000, the two sides agreed to support and encourage international efforts against terrorism.

Special Envoy Jo Myong Rok explained to the US side developments in the inter-Korean dialogue in recent months, including the results of the historic North-South summit. The U.S. side expressed its firm commitment to assist in all appropriate ways the continued progress and success of ongoing North-South dialogue and initiatives for reconciliation and greater cooperation, including increased security dialogue.

Special Envoy Jo Myong Rok expressed his appreciation to President Clinton and the American people for their warm hospitality during the visit.

It was agreed that Secretary of State Madeleine Albright will visit the D.P.R.K. in the near future to convey the views of U.S. President William Clinton directly to Chairman Kim Jong Il of the D.P.R.K. National Defense Commission and to prepare for a possible visit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 (6)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 (2000.9.26)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 사이의 회담이 9월 25일부터 26일 사이에 남측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남측에서 대한민국 조성태 국방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의 대표들과 북측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 김일철 차수를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 이후 그 이행을 위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군사적 조치들이 요구되고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합의하였다.

1. 쌍방은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민간인들의 왕래와 교류, 협력을 보장하는데 따르는 군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여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긴요한 문제라는데 이해를 같이하고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쌍방은 당면 과제인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공사를 위하여 각측의 비무장지대 안에 인원과 차량, 기재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쌍방 실무급이 10월초에 만나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 세부사항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관할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쌍방은 2차 회담을 11월 중순에 북측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0년 9월 26일

제 주 도

(7) 6·15 남북공동선언 (2000.6.15)

6·15 남북공동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북 남 공동 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념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최고위급회담을 가지었다.

북남수뇌들은 분단력 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북남 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사변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북과 남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 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북과 남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서울을 방문하시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위 원 장
김 정 일

대 한 민 국
대 통 령
김 대 중

(8) 조 · 러 친선 ·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 (2000.2.9)

조 · 러 친선 ·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

러시아 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쌍방'으로 명시함)은 전통적인 친선, 선린, 상호신뢰, 그리고 양국 국민간 다양한 협력관계의 발전을 추구하고 UN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존중하고, 동북아시아 및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동등하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추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 1조: 쌍방은 주권국가로서의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 동등성, 호혜성, 영토성 그리고 다른 국제법들의 원칙아래 우호관계를 지지, 발전시켜 나아간다.
- 2조: 쌍방은 모든 정치적 침략과 전쟁행위를 반대하면서 전세계의 군비축소와 견고한 평화 및 안보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쌍방 중 한 곳에 침략당할 위기가 발생할 경우 또는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리고 협의와 협력이 불가피할 경우 쌍방은 즉각 접촉한다.
- 3조: 쌍방은 상호이해가 관계되는 모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해 나간다. 쌍방은 쌍방 중 한 곳의 주권과 독립성, 그리고 영토성에 반대되는 협정이나 조약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이 같은 행위나 조치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 4조: 쌍방은 지속적인 국제 긴장요인이 되고 있는 한반도 분단 상황의 조속한 종식, 그리고 독자성, 평화통일, 민족결속 원칙에 따른 한반도의 통일이 전체 한반도 국민들의 국민적 이해관계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 및 전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 5조: 쌍방은 통상 · 경제, 과학 · 기술 분야 협력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이를 위해 법, 재정, 경제적으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이 목적들을 위해 쌍방은 경제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자국내 입법과 통상적인 관례, 그리고 국제법 기준에 근거한 투자 촉진 등을 위해 별도의 조약들을 체결해 나간다.

- 6조: 쌍방은 양국 의회와 다른 정부 기관, 그리고 사회단체간 관계를 심화하는 것은 물론 국방, 안보, 과학, 교육, 문화, 보건, 사회보장, 권리(인권), 환경보호, 관광, 체육 및 다른 분야에서 상호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협력관계를 실현해 나간다.



- 7조: 쌍방은 양국 도시간 형제관계 구축, 기업 및 단체간 직접 접촉, 양측 인사간 접촉을 포함, 다양한 수준에서 다방면의 접촉을 활성화한다.
- 8조: 쌍방은 양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대국 국민들이 독자적인 문화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한다.
- 9조: 쌍방은 조직범죄, 민항기와 선박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포함한 테러, 마약, 무기, 문화 및 역사적 유물의 불법유통에 대한 전쟁에 협력한다.
- 10조: 이번 조약은 상대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조약에 따른 (상대국의) 책임과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것은 물론, 어떠한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반하지 않는다.
- 11조: 이번 조약은 비준 절차를 거친 뒤 비준서를 교환하는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12조: 이번 조약은 10년동안 유효하며 이후에는 만일 쌍방중 한 곳이 12개월내에 조약 연장 불가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을 경우, 5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2000년 2월 9일 평양에서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완성된 두 개의 조약전문은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 연방 외부장관, 백남순 북한 외상 서명

(9) 조 · 미 기본합의문 (제네바합의문, 1994.10.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기본합의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과 미합중국 정부대표단은 1994년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제네바에서 조선반도핵문제의 전면적 해결에 관한 회담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1994년 8월 12일부 조미합의성명에 명기된 목표들을 달성하며 1993년 6월 11일부 조미공동성명의 원칙들을 견지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1.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을 경수로발전소들로 교체하기 위하여 협조한다.
 - 1) 미합중국은 1994년 10월 20일부 미합중국 대통령의 담보서한에 따라 2003년까지 총 200만키로와트 발전능력의 경수로발전소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책임지고 취한다.
 - 미합중국은 자기의 주도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할 경수로발전소 자금과 설비들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련합체를 조직한다. 이 국제련합체를 대표하는 미합중국은 경수로제공사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본상대자로 된다.
 - 미합중국은 련합체를 대표하여 이 합의문이 서명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경수로제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 후 될수록 빠른 시일 안에 시작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필요에 따라 핵에너지의 평화적 리용분야에서의 쌍무적 협조를 위한 협정을 체결한다.
 - 2) 미합중국은 1994년 10월 20일부 미합중국 대통령의 담보서한에 따라 련합체를 대표하여 1호경수로발전소가 완공될 때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의 동결에 따르는 에너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 대용에너지는 열 및 전기 생산용 중유로 제공한다.
 - 중유납입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시작하며 납입량은 합의된 계획에 따라 매해 50만톤 수준에 이르게 된다.
 - 3) 경수로제공과 대용에너지 보장에 대한 미합중국의 담보들을 받는데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을 동결하며 궁극적으로 해제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에 대한 동결은 이 합의문이 서



명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완전히 실시된다. 이 1개월간과 그 이후의 동결기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원자력기구가 동결상태를 감시하도록 허용하며 기구에 이를 위한 협조를 충분히 제공한다.

- 경수로대상이 완전히 실현되는 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 시설들은 완전히 해체된다.
 - 경수로대상건설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5메가와트시험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의 안전한 보관방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재처리를 하지 않고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폐연료를 처분하기 위한 방도를 탐구하기 위하여 협조한다.
-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 후 될수록 빠른 시일 안에 두 갈래의 전문가협상을 진행한다.
- 한 전문가협상에서는 대용에네르기와 관련한 련관문제들과 그리고 흑연감속로계획을 경수로대상으로 교체하는데서 제기되는 련관문제들을 토의한다.
 - 다른 전문가협상에서는 폐연료의 보관 및 최종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토의한다.
2. 쌍방은 정치 및 경제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 데로 나아간다.
- 1) 쌍방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 후 3개월 안에 통신봉사와 금융결제에 대한 제한조치들의 해소를 포함하여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완화한다.
 - 2) 쌍방은 전문가협상에서 련사 및 기타 실무적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따라 서로 상대방의 수도에 련락사무소들을 개설한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호상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의 해결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는데 따라 쌍무관계를 대사급으로 승격시킨다.
3. 쌍방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 1) 미합중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공식담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한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종일관하게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기본합의문에 의하여 대화를 도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따라 북남대화를 진행할 것이다.
4. 쌍방은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성원국으로 남아 조약에 따르는 담보협정의 리행을 허용할 것이다.

- 2) 경수로제공계약이 체결되면 동결되지 않는 시설들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제원자력기구사이의 담보협정에 따르는 정기 및 비정기사찰이 재개된다.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동결되지 않는 시설들에 대한 담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계속된다.
- 3) 경수로대상의 상당한 부분이 실현된 다음 그리고 주요핵관련부분품들이 납입되기 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자기의 핵물질초기보고서의 정확성 및 완전성검증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기구가 필요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구와의 담보협정(회람통보/403) 을 완전히 리행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 교 부 제1부부장 강석주
미 합 중 국대표단 단장 미 합 중 국 순회대사 로버트 엘 갈루치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ctober 21, 1994

Delegations of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eld talks in Geneva from September 23 to October 21, 1994, to negotiate an overall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Both sides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attaining the objectives contained in the August 12, 1994 Agreed Statement between the U.S. and the DPRK and upholding the principles of the June 11, 1993 Joint Statement of the U.S. and the DPRK to achieve peace and security on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The U.S. and DPRK decided to take the following actions for the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 I. Both sides will cooperate to replace the DPRK's graphite-moderated reactors and related facilities with light-water reactor (LWR) power plants.
 - 1) In accordance with the October 20, 1994 letter of assurance from the U.S. President, the U.S. will undertake to make arrangements for the provision to the DPRK of a light-water reactor project with a total generating capacity of approximately 2,000 MW(e) by a target date of 2003.
The U.S. will organize under its leadership an international consortium to finance and supply the light-water reactor project to be provided to the DPRK. The U.S., representing the international consortium, will serve as the principal point of contact with the DPRK for the LWR project.
The U.S., representing the consortium, will make best efforts to secure the conclusion of a supply contract with the DPRK within six months of the date of this document for the provision of the LWR project. Contract talks will begin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date of this document.
As necessary, the U.S. and the DPRK will conclude a bilateral agreement for cooperation in the field of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 2) In accordance with the October 20, 1994 U.S. letter of assurance from the U.S. President, the U.S., representing the consortium, will make arrangements to offset the energy foregone due to the freeze of the DPRK's graphite moderated reactors, pending completion of the first LWR unit.
Alternative energy will be provided in the form of heavy oil for heating and electricity production.
Deliveries of heavy oil will begin within three months of the date of this Document and will reach a rate of 500,000 tons annually, in accordance with an agreed schedule of deliveries.
 - 3) Upon receipt of U.S. assurance for the provision of light-water reactor and for arrangements for interim energy alternatives, the DPRK will freeze its graphite moderated reactors and related facilities and will eventually dismantle these reactors and related facilities.

The freeze on the DPRK's graphite-moderated reactors and related facilities will be fully implemented within one month of the date of this document. During this one-month period, and throughout the freeze, the IAEA will be allowed to monitor this freeze, and the DPRK will provide full cooperation to the IAEA for this purpose.

Dismantlement of the DPRK's graphite-moderated reactors and related facilities will be completed when the LWR project is completed.

The U.S. and DPRK will cooperate in finding a method to store safely the spent fuel from the 5 MW(e) experimental reactor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LWR project, and to dispose of the fuel in a safe manner that does not involve reprocessing in the DPRK.

- 4)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date of this document U.S. and DPRK experts will hold two sets of experts talks.

At one set of talks, experts will discuss issues related to alternative energy and the replacement of the graphite-moderated reactor program with the LWR project.

At the other set of talks, experts will discuss specific arrangements for spent fuel storage and ultimate disposition.

- II. The two sides will move toward full normaliza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 1) Within three months of the date of this Document, both sides will reduce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including restrictions on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nd financial transactions.
- 2) Each side will open a liaison office in the other's capital following resolution of consular and other technical issues through expert level discussions.
- 3) As progress is made on issues of concern to each side, the U.S. and DPRK will upgrade bilateral relations to the Ambassadorial level.

- III. Both sides will work together for peace and security on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 1) The U.S. will provide formal assurances to the DPRK, against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by the U.S.
- 2) The DPRK will consistently take steps to implement the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3) The DPRK will engage in North-South dialogue, as this agreed framework will help create an atmosphere that promotes such a dialogue.

- IV. Both sides will work together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 1) The DPRK will remain a party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and will allow implementation of its safeguards agreement under the Treaty.
- 2) Upon conclusion of the supply contract for the provision of the LWR project, ad hoc and routine inspections will resume under the DPRK's safeguards agreement with the IAEA with respect to the facilities not subject to the freeze. Pending



- conclusion of the supply contract, inspections required by the IAEA for the continuity of safeguards will continue at the facilities not subject to the freeze.
- 3) When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LWR project is completed, but before delivery of key nuclear components, the DPRK will come into full compliance with its safeguards agreement with the IAEA(INFCIRC/403), including taking all steps that may be deemed necessary by the IAEA, following consultations with the Agency with regard to verifying the accuracy and completeness of the DPRK's initial report on all nuclear material in the DPRK.

■ ■
 ■ (10) 조·미 공동성명 (1993.6.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미합중국 공동성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정부급회담이 1993년 6월 2일부터 11일 사이에 뉴욕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과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로버트 엘 갈루치 국무성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쌍방은 회담에서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정책적 문제들을 토의하고 핵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게 북남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다음과 같은 원칙들에 합의하였다.

-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무력으로 위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한다.
- 전면적인 담보적용의 공정성보장을 포함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상대방의 자주권을 호상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

이러한 원칙들에 준하여 조미쌍방정부들은 평등하고 공정한 기초우에서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효력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큼 일방적으로 립시 정지시키기로 하였다.

1993년 6월 11일

뉴 욕

Joint State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ew York, June 11, 1993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ld governmental-level talks in New York from the 2nd through the 11th of June, 1993. Present at the talks were the deleg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eaded by First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Kang Sok Ju and the deleg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led b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Robert L. Gallucci, both representing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At the talks, both sides discussed policy matters with a view to a fundamental 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Both sides expressed support for the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interest of nuclear non-proliferation goal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agreed to principles of:

- Assurances against the threat and use of force, including nuclear weapons;
- Peace and security in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including impartial application of fullscope safeguards, mutual respect for each other's sovereignty, and non-interference in each other's internal affairs; and
- Support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In this context, the two Governments have agreed to continue dialogue on an equal and unprejudiced basis. In this respect,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s decided unilaterally to suspend as long as it considers necessary the effectuation of its withdrawal from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11)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9.17)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체제(제도) 인정·존중

- 제 1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제(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 2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제(제도)를 소개하는 자유를 보장한다.
 제 3 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의 권한과 권능을 인정·존중한다.
 제 4 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해결한다.

제2장 내부분쟁 불간섭

- 제 5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법질서와 당국의 시책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대외관계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상대방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비방·중상 중지

- 제 8 조 남과 북은 언론·뼈라 및 그 밖의 다른 수단·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특정인에 대한 지명공격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를 비방·중상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지역에서 방송과 시각매개물(게시물)을 비롯한 그밖의 모든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군중집회와 군중행사에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4장 파괴·전복 행위 금지

제15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테러, 포섭, 납치, 살상을 비롯한 직접 또는 간접, 폭력 또는 비폭력 수단에 의한 모든 형태의 파괴·전복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선동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과 상대측 지역 및 해외에서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 단체나 조직을 결성 또는 지원·비호하지 아니한다.

제5장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제18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준수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6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않으며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협조조치를 강구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공관(대표부)이 함께 있는 지역에서 쌍방 공관(대표부)사이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한다.

제24조 남과 북은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그들 사이의 화해와 단합이 이룩되도록 노력한다.

제7장 이행기구

제25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

화해'에 관한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따로 작성한다.

제26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안에 법률실무협의회와 비방·중상중지실무협의회를 두며 그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에서 별도로 작성한다.

제8장 수정 및 발효

제27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8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 북측이 제기한 '남과 북은 국제기구들에 하나의 명칭, 하나의 의식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국제회의를 비롯한 정치행사들에 전민족을 대표하여 유일 대표단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제3국이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다른 나라들과 맺은 조약과 협정들 가운데서 민족의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는 것을 개정 또는 폐기하는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 해결한다'는 조항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앞으로 계속 토의한다.

1992년 9월 17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 원 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 장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묵

(12)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9.17)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무력불사용

- 제 1 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 일대를 포함하여 자기 측 관할구역 밖에 있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에 대하여 총격, 포격, 폭격, 습격, 파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 행위를 금지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일체 무력도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 2 조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구역에 정규무력이나 비정규무력을 침입시키지 않는다.
- 제 3 조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남북 사이에 오가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수송수단들을 공격, 모의공격하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는 일체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 밖에 남과 북은 북측이 제기한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의 영해·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와 남측이 제기한 서울지역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한다.

제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 제 4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계획적이라고 인정되는 무력침공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상대측에 경고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무력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전 대책을 세운다.
남과 북은 쌍방의 오해나 오인,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우발적 무력충돌이나 우발적 침범 가능성을 발견하였을 경우 쌍방이 합의한 신호규정에 따라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대책을 세운다.
- 제 5 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의 무력집단이나 개별적인 인원과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이 자연재해나 항로미실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측 관할구역을 침범하였을 경우 침범측은 상대측에 그 사유와 적대의사가 없음을 즉시 알리고 상대측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상대측은 그를 긴급 확인한 후 그의 대피를 보장하고 빠른 시일 안에 돌려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돌려보내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

- 제 6 조 남과 북 사이에 우발적인 침범이나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같은 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의 군사당국자는 즉각 자기측 무장집단의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고 군사직통전화를 비롯한 빠른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측 군사당국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제 7 조 남과 북은 군사분야의 모든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쌍방 군사당국자가 합의하는 기구를 통하여 협의 해결한다.
- 제 8 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이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 제 9 조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 제10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 제11조 남과 북의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제4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 제12조 남과 북은 우발적 무력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군사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 제13조 군사직통전화의 운영은 쌍방이 합의하는 통신수단으로 문서통신을 하는 방법 또는 전화문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직접 통화할 수 있다.
- 제14조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기술실무적 문제들은 이 합의서가 발효된 후 빠른 시일 안에 남북 각기 5명으로 구성되는 통신실무자접촉에서 협의 해결한다.
- 제15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50일 이내에 군사직통전화를 개통한다.



제5장 협의·이행기구

- 제16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합의서 제12조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에 따르는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 제17조 남북군사분과위원회는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더 필요하다고 서로 합의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다.

제6장 수정 및 발효

- 제18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 대표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 형 묵

(13) 남북교류 · 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9.17)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 · 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 · 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경제교류 · 협력

제 1 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 ①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
- ②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 · 합작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 · 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 ③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 · 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교류 · 협력 당사자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한다.
- ④ 남과 북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
- ⑤ 남과 북은 교류 · 협력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하도록 한다.
- ⑥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 ⑦ 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 ⑧ 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
- ⑨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 ⑩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 · 추진한다.
- ⑪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⑫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 ⑬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

제 2 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 ①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 ②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 3 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 ① 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
- ②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교류·협력 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 ③ 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 ④ 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의 개설과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 ⑤ 남북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 ⑦ 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 ⑧ 남과 북은 남북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행방법, 통과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 ①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판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 협력을 실시한다.
- ②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서 공적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③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 ④ 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 ⑤ 남과 북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 ①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 ②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이 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제9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 ①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자료와 목록 등 정보자료를 상호교환한다.
- ②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 ③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국토종단 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 ④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전시회를 진행한다.
- ⑤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 ① 남과 북은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



- ② 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로를 편리한 대로 이용하여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도 이용할 수 있다.
- ③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며,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 ④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상대측의 법과 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왕래하고 접촉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⑤ 남과 북을 왕래하는 인원들은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쌍방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
-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왕래와 방문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 ⑦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왕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 ⑧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 ①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 ②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이 합의서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부분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한다.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15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 ①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단체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②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왕래와 방문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래절차에 따라 실현한다.
- ③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면회소 설치문제를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협의·해결하도록 한다.
- ④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 ⑤ 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흩어진 가족·친척들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 제16조 남과 북은 이미 진행하여 오던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한다.
- 제17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지원·보장한다.
- 제18조 이 합의서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부분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한다.

제4장 수정·발효

-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 제20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 쌍방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 철폐문제를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 대표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 형 목

(14)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9.17)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 ③ 쌍방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 측에 통보한다.
- ④ 수행원은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⑤ 쌍방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률실무협의회, 비방·중상금지 실무협의회를 두며, 그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화해 공동위원회에서 따로 작성한다.

제2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라 함)를 이행한다.
-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록 또는 세부적인 합의문건을 작성할 수 있다.
- ③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각 실무협의회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과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③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④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 있다.
- ⑤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 ⑥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 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⑦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위원장이 각기 합의 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합의 문건은 쌍방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도 발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요한 합의 문건은 쌍방위원장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 대표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 형 목

■ (15) 남북교류 · 협력공동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5.7)

남북교류 · 협력공동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년 5월 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2조에 따라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교류 · 협력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 ·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남북교류 · 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남과 북은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교류 · 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 사회문화교류 · 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남북교류 · 협력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 ③ 남북교류 · 협력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쌍방이 합의하여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 ④ 쌍방은 공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방에 이를 통보한다.
- ⑤ 수행원은 각기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⑥ 쌍방은 남북교류 · 협력공동위원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들을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제2조 남북교류 · 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남북교류 · 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를 이행한다.
- ② 남북교류 · 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 남북교류 · 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기타 세부사항을 협의 · 실천한다.
- ④ 남북교류 · 협력공동위원회는 실무협의회들의 활동을 종합 · 조정한다.

제3조 남북교류 · 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남북교류 · 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을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서울, 평양 그리고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 ⑤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교류·협력 당사자, 해당 전문가 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 ⑥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⑦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 공동위원장 등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문건은 쌍방이 합의하여 총리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회들의 회의 합의사항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당 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 대표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 형 묵

■ (16)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5.7)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년 5월 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북 사이의 불가침을 이행·보장하고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이하 ‘군사공동위원회’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군사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 ② 군사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차관급(부부장급) 이상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하게 한다.
- ③ 쌍방은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④ 수행원은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⑤ 쌍방은 군사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협의한다.
- ②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필요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실천한다.
- ③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사항을 실천한다.
- ④ 위에서 합의한 사항의 실천을 확인·감독한다.

제3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과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③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④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도 있다.

- ⑤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편의 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⑥ 군사공동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군사공동위원회 회의에서의 합의사항은 쌍방 공동위원장이 합의 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공동위원장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회에서의 합의 문건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키는 경우 그것을 군사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 대표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 형 목

■ (17)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5.7)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년 5월 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7조에 따라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하여 남북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연락사무소 명칭은 남측은 '남측연락사무소' 라고 하고 북측은 '북측연락사무소' 라고 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연락사무소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안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설치한다.

제3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연락사무소는 남과 북에서 각각 소장 1명, 부소장 1명과 필요한 수의 연락관들로 구성한다.
- ② 연락사무소 소장은 국장급으로 한다.
- ③ 연락사무소 소장, 부소장, 연락관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④ 앞으로 쌍방이 합의하여 연락사무소 안에 필요한 부서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위임에 따라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제반 연락 업무를 수행한다.
의뢰에 따르는 연락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 ② 위임에 따라 남북 사이의 합의 사항 이행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 ③ 남북 사이의 각종 왕래와 접촉에 따르는 안내와 편의를 제공한다.
- ④ 쌍방 연락사무소 사이에 필요한 수의 전화선을 가설하고 운용한다.

제5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쌍방은 필요에 따라 연락관 접촉을 가진다.
연락사무소 구성원들 사이의 연락은 접촉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진행한다.
- ② 연락사무소 소장회의는 수시로 진행한다.

- ③ 자기측 지역을 왕래하는 상대측의 연락사무소 구성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과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 ④ 연락사무소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로 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운영 날짜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일요일은 휴무일로 하며 명절을 비롯하여 각기 제정한 공휴일은 일방의 통지에 따라 휴무일로 한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7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 대표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 형 목



■ (18)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2.1.20)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 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 대표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 형 목

1992년 2월 19일 발효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북과 남은 조선반도를 비핵화 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북과 남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않는다.
2. 북과 남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리용한다.
3. 북과 남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4.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북과 남은 이 공동선언의 리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1개월 안에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북과 남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건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북남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Entry into force on February 19, 1992

South and North Korea,

In order to eliminate the danger of nuclear war through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o create conditions and an environment favourable to peace and the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and thus to contribute to the peace and security of Asia and the world,

Declare as follows;

1. South and North Korea shall not test, manufacture, produce, receive, possess, store, deploy or use nuclear weapons.
2. South and North Korea shall use nuclear energy solely for peaceful purposes.
3. South and North Korea shall not possess nuclear reprocessing and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4. In order to verify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outh and North Korea shall conduct inspections of particular subjects chosen by the other side and agreed upon between the two side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and methods to be determined by the South-North Joint Nuclear Control Commission.
5. In order to implement this joint declaration, South and North Korea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 South-North Joint Nuclear Control Commission within one month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joint declaration;
6. This joint declaration shall enter into force from the date the South and the North exchange the appropriate instruments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ir respective procedures for bringing it into effect.

Signed on January 20, 1992

Chung Won-shik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Yon Hyong-muk
Premier of the Administration
Council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9)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1.12.13)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화해

-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분쟁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남북불가침

-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 대표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 형 묵

1992년 2월 19일 발효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

북과 남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념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북남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방면적인 협력, 교류를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북남화해

- 제 1 조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의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제 2 조 북과 남은 상대방의 내부분쟁에 간섭하지 않는다.
- 제 3 조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않는다.
- 제 4 조 북과 남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 5 조 북과 남은 현 정전상태를 북남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 제 6 조 북과 남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 제 7 조 북과 남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북남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 제 8 조 북과 남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안에서 북남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북남화해에 관한 합의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북남불가침

- 제 9 조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는다.
- 제10조 북과 남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 제11조 북과 남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 제12조 북과 남은 불가침의 리행과 담보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북남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북남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리용문제,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 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 제13조 북과 남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북과 남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북남군사분과위원회 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북남 협력, 교류

제15조 북과 남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 협력과 교류를 실현한다.

제16조 북과 남은 과학, 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실현한다.

제17조 북과 남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북과 남은 흩어 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래왕과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북과 남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북과 남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연결하며 우편,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북과 남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북과 남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북남경제협력교류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북과 남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북남협력교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북남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북과 남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20) 제30차 유엔총회 유엔사 해체에 관한 서방측 및 공산권측 결의안
(1975.11.17)

제30차 유엔총회 한국문제 결의, 유엔사 해체문제

가. 우방측 결의 3390 A호

총회는,

1974. 12. 17자 총회 결의 3333호를 통하여 표명된 바 총회의 희망을 유념하고,

한국민의 자유로이 표명된 의사에 입각한 한국의 평화적 통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1972. 7. 4 서울과 평양에서의 공동표명 발표와 상호 대화를 계속하고자 하는 남북간의 천명된 의사에 대한 총회의 만족을 상기하고,

또한 총회가 1953. 8. 28 채택한 결의 711(VII)호에서 1953. 7. 27자 정전협정을 인정, 유의하였고, 1954. 12. 11자 결의 811(IX)호를 통하여 정전협정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간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절한 협정속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대체될 때까지는 계속 유효하다고 규정한 정전협정조문에 명시적으로 주목하였음을 상기하며,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의 긴장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으며, 1953년 7월 27일자 정전협정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유지에 계속 불가피함을 인식하며

타방 직접 관계당사자들이 정전협정 유지를 위하여 상호 수락할 수 있는 대안에 동의한다면, 미국정부는 1976. 1. 1자로 유엔군 사령부를 종료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한 1975. 6. 27자 미국정부의 안보리의장앞 공한에 유의하고,

정전협정 유지방안을 시행할 대한민국 정부의 용의를 확인하는 1975. 6. 27자 대한민국 정부의 성명을 주목하고,

국제연합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헌장상의 제목적과 원칙에 따라 한반도에서 이 목표가 달성되도록 보장할 계속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1. 총회에 의하여 1973. 11. 28자로 채택된 합의성명에서 표현된 회원국의 여망을 재확인하고,

- 한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한이 그들의 대화를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
2. 모든 직접 관계당사자들이 정전협정을 대체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며, 항구적 평화를 보장할 새로운 약정을 위하여 교섭을 시행할 것을 희망한다.
 3. 정전협정의 계속적인 준수와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최대한 유지를 보장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정전협정의 유지를 위한 적절한 방안과 더불어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될 수 있도록 제1단계 조치로서 모든 직접 관계 당사자들이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4. 유엔군 사령부가 1976. 1. 1을 기하여 해체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동 일자로 남한에는 유엔 기치하의 군대는 잔류하지 않도록 상기협약이 완결되고 정전협정 유지를 위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나. 공산측결의 3390 B호

총회는,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된지 30년이 경과하였고, 한국에 정전이 성립된지 2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일이 상급 이룩되지 못하였음을 주목하고,

유엔헌장에 따라 각국은 민족평등 및 민족자결원칙을 존중하고 타국의 국내 관할사항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각국의 의무를 상기하며,

한민족이 자주, 평화통일 및 민족적 대단결의 3개원칙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한국의 자주, 평화통일을 이룩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현장의 제원칙에 부합한다고 간주하고,

1972. 7. 4자 공동성명의 정신과 이 공동성명을 환영한 1973. 11. 28자 제28차 총회 결정에 따라 남북한이 국가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그들의 대화를 증진시킬 것을 희망하며,

한국에서 현재의 정전상태가 그대로 지속하는 한 지속적인 평화는 기대될 수 없다고 간주하고,

한국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고 한국의 자주,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한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종식시키고 이 지역의 긴장을 제거하며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결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긴급하다고 간주하면서

1.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기치 아래 남한에 주둔하는 모든 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한다.



2.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들에게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 및 유엔기치 아래 남한에 주둔하는 모든 외군의 철수와 관련하여 한국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서 한국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도록 촉구한다.
3. 남북한에 대하여 남북 공동성명의 제원칙을 준수할 것과 군비증강 중지, 쌍방 병력의 동일 수준으로의 대폭 감축, 군사충돌의 방지 및 타방에 대한 무력불사용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 이로서 국가의 자주,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한국에서의 군사적 대결을 배제하고 항구적 평화를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21) 7·4 남북공동성명 (1972.7.4)

7·4 남북공동성명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로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 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건을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선을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 후 락 김 영 주

1972년 7월 4일

공동성명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리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리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 와야 한다는 공통된념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래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 셋째,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련계를 회복하며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평양과 서울사이에 상설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 문제를 개선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김영주 부장과 리후락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김 영 주 리 후 락

1972년 7월 4일

(22) 조 · 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1961.7.11)

조 · 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또한 국가주권과 영토완정에 대한 호상존중, 호상불가침, 내정에 대한 호상불간섭, 평등과 호혜, 호상원조 및 지지의 기초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형제적 우호협조 및 호상협조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며 량국 인민의 안전을 공동으로 보장하며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유지 공고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을 결의한다.

또한 량국 간의 우호협조 및 호상협조 관계의 강화발전은 량국 인민의 근본리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또한 세계 각국 인민의 리익에 부합된다고 확신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본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김일성을,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주은래를 각각 자기의 전권대표로 임명하였다.

쌍방 전권대표는 전권 위임장이 정확하다는것을 호상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조항들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제1조 체결쌍방은 아세아 및 세계의 평화와 각국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계속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제2조 체결 쌍방은 체결 쌍방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결 일방이 어떠한 한개의 국가 또는 몇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결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제3조 체결 쌍방은 체결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결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제4조 체결 쌍방은 량국의 공동리익과 관련되는 일절 중요한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계속 협의한다.



제5조 계약 쌍방은 주권에 대한 호상존중, 내정에 대한 호상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 및 친선협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양국의 사회주의건설 사업에서 호상 가능한 모든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여 양국의 경제, 문화 및 과학기술적 협조를 계속 공고히 하며 발전시킨다.

제6조 계약쌍방은 조선의 통일이 반드시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기초 위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해결이 곧 조선 인민의 민족적리익과 극동에서의 평화유지에 부합된다고 인정한다.

제7조 본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본 조약은 1961년 7월 11일 북경에서 조인되었으며 조선문과 중국문으로 각각 2통씩 작성된 이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권대표 김일성
중화인민공화국 전권대표 주은래

(23)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1961.7.6)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맹 최고소베트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적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연맹간의 친선관계를 강화발전시킬 것을 지향하면서,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입각하여 극동과 전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 공고화를 촉진시킬 것을 희망하면서,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연합으로부터 체약 일방에 대한 무력침공이 감행되는 경우에 원조와 지지를 제공할 결의에 충만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연방간의 친선, 선린, 협조의 강화가 량국 인민들의 사회적 이익에 부합되며 그들의 경제, 문화의 급후 발전을 가장 훌륭하게 촉진시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목적으로 본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맹 최고소베트 상임위원회는 소련 내각 수상 니키타 흐루쇼프를 각각 자기의 전권대표로 임명하였다.

량 전권대표는 소정의 형식과 완전한 절차를 갖춘 자기의 전권 위임장을 교환한 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체약 쌍방은 그들이 앞으로도 극동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국제적 활동에 참가할 것이며 이 고귀한 과업의 수행에 기여할 것을 성명한다. 체약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한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제2조 체약 각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연합이나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을데 대한 의무를 진다.

제3조 체약 각방은 평화와 전반적 안전의 공고화를 촉진시킬 것을 념원하면서 량국의 리해 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중요한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호상 협의한다.



제4조 체약 쌍방은 평등과 국가주권의 호상존중, 령토완정, 호상 내정불간섭의 원칙들에 립각하여 친선과 협조의 정신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연맹 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관계를 강화발전시키며, 경제 및 문화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원조를 호상 제공하며 필요한 협조를 실현할데 대한 의무를 진다.

제5조 체약쌍방은 조선의 통일이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기초 위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해결이 조선인민의 민족적 리익과 극동에서의 평화 유지에 부합된다고 인정한다.

제6조 조약은 평양시에서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약은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체약 일방이 기한 만료 1년전에 조약을 폐기할데 대한 희망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조약은 다음 5년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지며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앞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본 조약은 1961年 7月 6日 모스크바에서 조선어와 로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이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임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연맹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연맹 내각 수상 엔 에쓰 흐루쑈브

■ ■
 (24) 한·미 상호방위조약 (1953.10.1)

한·미 상호방위조약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제 1 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 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

제 2 조 당사국은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고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으로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 3 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합의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 4 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의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 5 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국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6 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에 본 조약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한다.

본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문과 영문 두 별로 작성됨.

대한민국을 위해서 변 영 태

미합중국을 위해서 존 포스터 딜레스

미합중국의 양해사항

어떤 체결국도 이 조약의 제3조 아래에서는 타방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를 원조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 또 이 조약의 어떤 규정도 대한민국의 행정적 관리 아래 합법적으로 존치하기로 된 것과 합중국에 의해 결정된 영역에 대한 무력공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조를 공여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igned at Washington: October 1, 1953

Entered into Force: November 17, 1954

The Parties to this Treaty,

Reaffirming their desire to live in peace with all governments, and desiring to strengthen the fabric of peace in the Pacific area,

Desiring to declare publicly and formally their common determination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external armed attack so that no potential aggressor could be under the illusion that either of them stands alone in the Pacific area,

Desiring further to strengthen their efforts for collective defense for the preservation of peace and security pending the development of a more comprehensive and effective system of regional security in the Pacific area,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Parties undertake to settle any international disputes in which they may be involved by peaceful means in such a manner that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justice are not endangered and to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in any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or obligations assumed by any Party towards the United Nations.

Article 2

The Parties will consult together whenever, in the opinion of either of them, the political independence or security of either of the Parties is threatened by external armed attack. Separately and jointly, by self-help and mutual aid, the Parties will maintain and develop appropriate means to deter armed attack and will take suitable measures in consultation and agreement to implement this Treaty and to further its purposes.

Article 3

Each Party recognizes that an armed attack in the Pacific area on either of the Parties in territories now under their respective administrative control, or hereafter recognized by one of the Parties as lawfully brought under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other, would be dangerous to its own peace and safety and declares that it would act to meet the common danger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Article 4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Article 5

This Treaty shall be ratifi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and will come into force whe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thereof have been exchanged by them at Washington.

Article 6

This Treaty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Either party may terminate it one year after notice has been given to the other Party.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have signed this Treaty.

Done in duplicate at Washington,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this first day of October, 1953.

For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Y.T. Pyu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igned) John Foster Dulles

Understanding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is the understanding of the United States that neither party is obligated, under Article 3 of the above Treaty, to come to the aid of the other except in case of an external armed attack against such party; nor shall anything in the present Treaty be construed as requiring the United States to give assistance to Korea except in the event of an armed attack against territory which has been recognized by the United States or lawfully brought under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Republic of Korea.

■ ■
 ■ (25) 정전협정 (1953.7.27)

제련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서 언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류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와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 조항에 기재된 정전 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호상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

제 1 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이(2)키로미터씩 후퇴함으로써 적대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2.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바와 같다.
3. 비무장지대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북경계선 및 남경계선으로써 이를 확정한다.
4. 군사분계선을 하기와 같이 설립한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를 명백히 표시한다. 적대쌍방 사령관들은 비무장지대와 각자의 지역간의 경계선에 따라 적당한 표시물을 세운다. 군사정전위원회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량 경계선에 따라 설치한 일체 표시물의 건립을 감독한다.
5.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 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 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용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첨부한 지도 제2도를 보라.)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 하구의 항행 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 규정한다. 각방 민용선박이 항해함에 있어서 자기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룽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6.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또는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
 7.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없이 어떠한 군인이나 사민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8. 비무장지대 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사민이나 그가 들어갈려고 요구하는 지역의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없이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9.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사민이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10.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북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허가받는 군인 또는 사민의 인원은 각방 사령관이 각각 이를 결정한다. 단 어느 일방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언제나 천(1,00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사행정 경찰의 인원 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기타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없이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
 11. 본 조의 어떠한 규정이던지 모두 군사정전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공동감시소조 및 소조의 보조인원 그리고 하기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감독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중립국시찰소조 및 소조의 보조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비무장지대로 들어갈 것을 특히 허가받은 기타의 모든 인원, 물자 및 장비의 비무장지대 출입과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이동의 완전한 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비무장지대 내의 두 지점이 비무장지대 내에 전부 들어 있는 도로로써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 이 두 지점간의 반드시 경과하여야 할 통로를 왕래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이동의 편리를 허용한다.

제 2 조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가. 총 칙

12. 적대쌍방 사령관들은 룩해 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무장력량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 항의 적대 행위의 완전정지는 본 정전협정이 조인된 지 십이(12)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정전협정의 기타 각항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자와 시간에 대하여서는 본 정전협정 제63항을 보라.)

13. 군사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함으로써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을 리롭게 하기 위하여 적대쌍방 사령관들은

- ㄱ) 본 정전협정 중에 따로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후 칠십이(72)시간 내에 그들의 일체 군사력량,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다. 군사력량을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 후 비무장지대 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폭발물, 지뢰원, 철조망 및 기타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의 공동감시소조인원의 통행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위험물들은 이러한 위험물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통로와 함께 이러한 위험물을 설치한 군대의 사령관이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통로를 청소하여 안전하게 만들어 결국에 가서는 칠십이(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사십오(45)일내에 모든 이러한 위험물은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또 그 감독 하에 비무장지대로부터 이를 제거한다. 칠십이(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군사정전위원회가 감독 하에서 사십오(45)일의 기간 내에 제거작업을 완수할 권한을 가진 비무장지대와 군사정전위원회가 특히 요청하였으며 또 적대쌍방 사령관들이 동의한 경찰의 성질을 가진 부대 및 본 정전협정 제10항과 제11항에서 허가한 인원 이외에는 쌍방의 어떠한 인원이든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 ㄴ)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십(10)일 이내에 상대방의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연해섬들 및 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력량,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철거를 연기할 쌍방이 동의한 리유없이 또 철거를 연기할 유효한 리유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력량을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상기한 “연해섬”이라는 용어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단 황해도와 경기



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백령도(북위 37도58분, 동경 124도 40분), 대청도(북위 37도50분, 동경124도42분), 소청도(북위37도46분, 동경124도46 분), 연평도(북위 37도38분, 동경125도40분) 및 우도(북위37도36분, 동경125도58분) 의 도서군들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한국서 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

- ㄷ) 한국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어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아래에 규정한 범위내의 부대와 인원의 룬환 임시 임무를 담당할 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경외 에서 단기 휴가를 하였거나 혹은 임시임무를 담당하였던 인원의 한국에의 귀환은 이를 허가한다.

“룬환”의 정의는 부대 혹은 인원이 한국에서 복무를 개시하는 다른 부대 혹은 인원과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룬환인원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에 들리 으며 또 한국으로부터 내어갈 수 있다.

룬환은 일(1) 대 일(1)인의 교환 기초위에서 진행한다.

단, 어느 일방이던지 어느 일(1)력월 내에 룬환 정책 하에서 한국 경외로부터 삼만 오천(35,000)명 이상의 군사인원을 들어오지는 못한다. 만일 일방의 군사인원을 들어 오는 것이 해당측이 본 정전협정 효력 발생일로부터 한국으로 들어온 군사인원의 총수로 하여금 같은 날짜자로부터 한국을 떠난 해당측의 군사인원의 루계 총수를 초과하게 할 때는 해당측의 어떠한 군사인원도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군사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으로부터의 리거에 관하여 매일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는 입경과 출경의 지점 및 매개 지점에서 입경하는 인원과 출경하는 인원의 수자를 포함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상기의 허가된 부대 및 인원의 룬환을 감독하며 시찰 한다.

- ㄹ) 한국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드려오는 것을 정지 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손모 또는 소모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류형의 물건을 일(1) 대 일(1)로 교환하는 기초우에서 교체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드려올 수 있다. 교체의 목적으로 작전비행 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반입할 필요를 확증하기 위하여 이러한 물건 의 매차 반입에 관하여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 중에서 교체되는 물건의 처리정형을 설명한다. 교체되어 한국으로부터 내어

가는 물건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내어갈 수 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 하에서 상기의 허가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교체를 감독하여 시찰한다.

- ㄱ) 본 정전협정 중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위반하는 각자의 지휘 하에 있는 인원을 적당히 처벌할 것을 보장한다.
- ㄴ) 매장지점이 기록에 있고 분묘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일정한 기한 내에 그의 군사 통제 하에 있는 한국지역에 상대방의 분묘등록 인원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여 이러한 분묘 소재지에 가서 해당측의 이미 죽은 전쟁포로를 포함한 죽은 군사인원의 시체를 발굴하고 또 반출하여 가도록한다. 상기 사업을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과 기한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적대쌍방 사령관들은 상대방의 죽은 군사인원의 매장 지점에 관계되는 얻을 수 있는 일체 재료를 상대방에 제공한다.
- ㄷ) 군사정전위원회와 그의 공동감시소조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그의 중립국시찰소조가 하기와 같이 지정한 그들의 직책과 임무를 집행할 때에 충분한 보호 및 일체의 가능한 방조와 협력을 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의 중립국시찰소조가 쌍방이 합의한 주요 교통선을 경유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와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간을 왕래할 때와 또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 간을 왕래할 때에 충분한 통행상의 편리를 준다.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교통선이 막히든지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통로와 수송기재를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 ㄹ)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그 각자에 속하는 소조에 요구되는 통신 및 운수상 편리를 포함한 보급상의 원조를 제공한다.
- ㅁ)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 비무장지대내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한 개의 적당한 비행장을 건설, 관리 및 유지한다.
그 용도는 군사정전위원회가 결정한다.
- ㅎ) 중립국감독위원회와 하기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전체 위원 및 기타 인원이 모두 자기의 직책을 적당히 집행함에 필요한 자유와 편리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이에는 인가된 외교인원이 국제관례에 따라 통상적으로 향유하는 바와 동등한 특권, 대우 및 면제권을 포함한다.

14. 본 정전협정을 쌍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적대 중의 일체 지상 군사력량에 적용되며 이러한 지상 군사력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지역을 존중한다.



- 15.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해상 군사력량에 적용되며 이러한 해상 군사력량은 비무장 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육지에 린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항구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
- 16.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공중 군사력량에 적용되며 이러한 공중 군사력량은 비무장 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지역 및 이 량 지역에 린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한다.
- 17. 본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하는 책임은 본 정전협정에 조인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각각 그들의 지휘 하에 있는 군대 내에서 일체의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취함으로써 그 모든 소속 부대 및 인원이 본 정전협정의 전체 규정을 철저히 준수 하는 것을 보장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호상 적극 협력하여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본 정전협정 전체 규정의 문구와 정신을 준수하도록 한다.
- 18.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 각자에 속하는 소조의 사업비용은 적대 쌍방 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나. 군사정전위원회

1. 구 성

- 19. 군사정전위원회를 설립한다.
- 20. 군사정전위원회는 십(10)명의 고급 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오(5)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오(5)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위원 십(10)명 중에서 각방의 삼(3)명은 장급에 속하여야 하며 각방의 나머지 이(2)명은 소장, 준장, 대령 혹은 그와 동급인 자로 할 수 있다.
- 21. 군사정전위원회의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참모 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 22. 군사정전위원회는 필요한 행정인원을 배치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 위원회의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의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쌍방은 각기 비서처에 비서장 일(1)명 보조 비서장 일(1)명 및 비서처에 필요한 서기

및 전문 기술인원을 임명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하되 세 가지 글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3. 가) 군사정전위원회는 처음에는 십(10)개의 공동감시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 나) 매개의 공동감시소조는 사(4)명 내지 육(6)명의 등급 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반수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여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상 필요한 운전수, 서기 통역 등의 서기, 통역 등의 부속인원은 쌍방이 이를 제공한다.

2. 직책과 권한

24.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본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던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25. 군사정전위원회는

- 가) 본부를 판문점(북위 37도57분29초, 동경 126도40분00초)부근에 설치한다. 군사정전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그 본부를 비무장 지대 내의 다른 한 지점에 이설할 수 있다.
- 나) 공동기구로서 사업을 진행하며 의장을 두지 않는다.
- 다)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 규정을 채택한다.
- 라) 본 정전협정 중 비무장지대와 한강 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한다.
- 마)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을 지도한다.
- 바)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사) 중립국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관한 일체 조사 보고 및 일체 기타 보고와 회의기록은 즉시로 적대쌍방 사령관들에게 이를 전달한다.
- 오) 하기한바와 같이 설립한 전쟁포로송환위원회와 실향사민 귀향협조위원회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며 지도한다.
- 자) 적대쌍방 사령관 간에 통신을 전달하는 중개 역할을 담당한다. 단 상기의 규정은 쌍방 사령관들이 사용하고자하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호상 통신을 전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 차) 그의 공작인원과 그의 공동감시소조의 증명 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 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의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 표식을 발급한다.

26. 공동감시소조의 임무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중의 비무장지대 및 한강 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함을 협조하는 것이다.



27.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 중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공동감시소조를 파견하여 비무장 지대나 한강 하구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단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던지 언제나 군사정전위원회가 아직 파견하지 않은 공동감시소조의 반수 이상을 파견할 수 없다.
28.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요청하여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점에 가서 특별한 감시와 시찰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29.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확정한 때에는 즉시로 그 위반 사건을 적대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0.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 만족하게 시정되었다고 확정한 때에는 이를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 총 칙

31. 군사정전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쌍방의 수석위원은 합의하여 칠(7)일을 넘지 않은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일방의 수석 위원이던지 이십사(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32. 군사정전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의 부분은 매번 회의 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송부한다.
33. 공동감시소조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 보고를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34. 군사정전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에 규정한 보고 및 회의 기록의 문건철 두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업 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 기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벌씩 나누어준다.
35. 군사정전위원회는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에 대한 건의를 제출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중립국 감독위원회

1. 구 성

36.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설립한다.
37.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사(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중의 이(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 측 서전 및 서서가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이(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 측 파란 및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를 임명한다. 본 정전협정에서 쓴 “중립국”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그 전투부대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동 위원회에 임명되는 위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로부터 파견될 수 있다. 매개 위원은 후보위원 일(1)명을 지정하여 그 정 위원이 어떤 이유로 출석할 수 없게 되는 회의에 출석하게 된다. 이러한 후보위원은 그 정 위원과 동일한 국적에 속한다.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위원의 출석자수와 다른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위원의 출석자 수가 같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곧 행동을 취할 수 있다.
38.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각기 해당 중립국가가 제공한 참모 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참모 보조인원은 본 위원회의 후보인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39. 중립국감독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인원을 제공하도록 중립국에 요청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 위원회에 필요한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의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40. 가)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처음에는 이십(20)개의 중립국 시찰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시찰소조는 오직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그에 보고하며 또 그 지도를 받는다.
- 나) 매개 중립국시찰소조는 최소 사(4)명의 장교로 구성하되 이 장교는 령급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며 그 중의 반수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고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중립국시찰소조에 임명되는 조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에서 이를 낼 수 있다. 각 소조의 직책집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황의 요구에 따라 최소 이(2)명의 조원으로 구성하는 분조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두 조원 중의 일(1)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며 일(1)명은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운전수, 서기, 통역, 통신원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의 임무 집행에 필요한 비품은 각방



사령관이 비무장지대내 및 자기측 군사통제 지역 내에서 수요에 따라 이를 공급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동 위원회 자체와 중립국시찰소조들에 그가 요망하는 상기의 인원 및 비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인원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구성한 그 중립국의 인원이어야 한다.

2. 직책과 권한

41.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임무는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 및 제28항에 규정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직책을 집행하며 이러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42. 중립국감독위원회는
 - ㄱ)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 본부의 부근에 설치한다.
 - ㄴ)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 규정을 채택한다.
 - ㄷ) 그 위원 및 그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에 규정한 감독과 시찰을 진행하며 또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에서 본 정전협정 제28항에 규정한 특별 감시와 시찰을 진행한다.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에 대한 중립국시찰소조의 시찰은 소조로 하여금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드러움이 없도록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한다. 단 이 규정은 어떠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또는 탄약의 어떠한 비밀 설계 또는 특점을 시찰 또는 검사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 ㄹ) 중립국시찰소조의 사업을 지도하며 감독한다.
 - ㄱ)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 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오(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키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 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오(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십(10)개의 중립국이동시찰소조를 후비로 설치하되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 부근에 주재시킨다. 그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 할 수 있다. 중립국이동시찰소조 중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에 응하여 파견하는 소조는 언제나 그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 ㄴ)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전목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체없이 조사한다. 이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이 요청하는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 ㄷ) 그의 공작인원과 그의 중립국시찰소조의 증명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 집행 시에 사용하는 일체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 표식을 발급한다.

43. 중립국시찰소조는 하기한 각 출입항에 주재한다.

국제연합군의 군사통제 지역,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통제 지역

| | |
|-------------------------------------|---------------------------------------|
| 인 천 (북위 37도 28분, 동경 126도 38분) | 신 의 주 (북위 40도 06분, 동경 124도 24분) |
| 대 구 (북위 35도 52분, 동경 128도 36분) | 청 진 (북위 41도 46분, 동경 129도 49분) |
| 부 산 (북위 35도 06분, 동경 129도 02분) | 홍 남 (북위 39도 50분, 동경 127도 37분) |
| 강 릉 (북위 37도 45분, 동경 128도 54분) | 만 포 (북위 41도 09분, 동경 126도 18분) |
| 군 산 (북위 35도 59분, 동경 126도 43분) | 신 안 주 (북위 39도 36분, 동경 125도 36분) |

이 중립국시찰소조들은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지역 내와 교통선에서 통행상 충분한 편리
를 받는다.

3. 총 칙

44.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중립국감독위원회위원은 합의하여 칠(7)일을 넘지 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위원
이든지 이십사(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45.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의 부분은 매번 회의 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군사정
전위원회에 송부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한다.
46. 중립국시찰소조는 그의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에 관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동 위원회에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보고는 소조 총체가 이를 제출한다.
단 그 소조의 개별적 조원 일(1)명 또는 수명이 이를 제출할 수도 있다. 개별적 조원
일(1)명 또는 수명이 제출한 보고는 다만 참고적 보고로 간주한다.



47.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중립국시찰소조가 제출한 보고의 부분을 그가 접수한 보고에 사용된 글로써 지체 없이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이러한 보고는 번역 또는 심의 결정 수속 때문에 지체시킬 수 없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실제 가능한 한 속히 이러한 보고를 심의 결정하며 그의 판정서를 우선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해당 심의 결정을 접수하기 전에는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런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도 최후적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과 그 소조의 조원은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든지 설명한다.
48.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이 규정하는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한다.
- 동 위원회는 그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 기록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 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준다.
49.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 중립국감독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매개 위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임의의 위원과 통신 연락을 취할 권한을 가진다.

제 3 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51. 본 정전협정이 효력이 발생하는 당시에 각방이 수용하고 있는 전체 전쟁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본 정전협정 조인 전에 쌍방이 합의한 하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가)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육십(60)일 이내에 각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를 포로 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 인도하며 어떠한 저애도 가하지 못한다. 송환은 본 조의 각항 관계 규정에 의하여 완수한다. 이러한 인원의 송환 수속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방은 정전협정 조인전에 직접 송환될 인원의 국적별로 분류한 총수를 교환한다. 상대방에 인도되는 전쟁포로의 각 집단은 국적별로 작성한 명부를 휴대하되 이에는 성명, 계급(계급이 있으면) 및 수용번호 또는 군번호를 포함한다.
- 나) 각방은 직접 송환하지 않은 나머지 전쟁포로를 그 군사통제와 수용하로부터 석방하

여 모두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겨 본 정전협정 부록 “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의 각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케 한다.

- ㄷ) 세 가지 글을 병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본 정전협정의 용어로서 일방이 전쟁포로를 상대방에 인도하는 행동을 그 전쟁포로의 국적과 거주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영문중에서는 “REPATRIATION” 한국문중에서는 “송환” 중국문중에서는 “遣返”이라고 규정한다.

52. 각방은 본 정전협정의 효력 발생에 의하여 석방되며 송환되는 어떠한 전쟁포로든지 한국 충돌중의 전쟁행동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53.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병상전쟁포로는 우선적으로 송환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함된 의무인원을 병상전쟁포로와 동시에 송환하여 도중에서 의료와 간호를 제공하도록 한다.
54.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은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룩십(60) 일의 기한 내에 완료한다. 이 기한 내에 각방은 책임지고 그가 수용하고 있는 상기 전쟁포로의 송환을 실제 가능한 한 속히 완료한다.
55. 판문점을 쌍방의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으로 정한다. 필요할 때에는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기타의 전쟁포로 인도 인수지점(들)을 비무장지대 내에 증설할 수 있다.
56. ㄱ) 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령급 장교 룩(6)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삼(3)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삼(3)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하에서 책임지고 쌍방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쌍방이 본 정전협정 중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일체 규정을 실시하는 것을 감독한다.
- 동 위원회의 임무는 전쟁포로들이 쌍방 전쟁포로 수용소로부터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에 도달하는 시간을 조절하며 필요할 때에는 병상전쟁포로의 수송 및 복리에 요구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며 본 정전협정 제57항에서 설립된 공동적십자사소의 전쟁포로 송환 협조사업을 조절하며 본 정전협정 제53항과 제54항에 규정한 전쟁포로 실제 송환 조치의 실시를 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추가적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을 선정하며 전쟁포로의 인도 인수 지점(들)의 안전 조치를 취하며 전쟁포로 송환에 필요한 기타 관계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 ㄴ)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그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는 이러한 사항을 즉시로 군사정전위원회에 제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전

쟁포로송환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에 그 본부를 설치한다.

- ㄷ)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송환 계획을 완수한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57.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즉시로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각국의 적십자사 대표를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대표와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대표를 다른 일방으로 하여 조직되는 공동적십자소조를 설립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의 복리에 요망되는 인도주의적 복무로써 쌍방이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에 관계되는 규정을 집행하는 것을 협조한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에서 쌍방의 전쟁포로 인도 인수 사업을 협조하며 쌍방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여 위문하며 전쟁포로의 위문과 전쟁포로의 복리를 위한 선물을 가지고가서 분배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 ㄴ) 공동적십자소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조직한다.

- (1)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십(1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이십(20)명으로 구성하며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에서 쌍방의 전쟁포로의 인도 인수를 협조한다. 동 소조의 의장은 쌍방 적십자사 대표가 매일 료번으로 담당한다. 동 소조의 사업과 복무는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이를 조절한다.
- (2)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삼십(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육십(60)명으로 구성하며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관리하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의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 (3)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삼십(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육십(60)명으로 구성하며 국제연합군 관리하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한 나라의 적십자사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 (4) 각 공동적십자소조의 임무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정황이 필요로 할 때에는 최소 이(2)명의 소조원으로 구성하는 분조를 설립할 수 있다. 분조 내에서 각방은 동등한 수의 대표를 가진다.
- (5)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 지역 내에서 사업하는 공동적십자소조에 운전수, 서기 및 통역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가 그 임무 집행상 필요로 하는 장비를

공급한다.

(6) 어떠한 공동적십자소조든지 동 소조의 쌍방 대표가 동의하는 때에는 그 인원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단 이는 전쟁포로 송환위원회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 ㄷ) 각방 사령관은 공동적십자소조가 그의 임무를 집행하는데 충분한 협조를 주며 또 그의 군사통제 지역 내에서 책임지고 공동적십자소조 인원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 지역 내에서 사업하는 이러한 소조에 요구되는 보급, 행정 및 통신상의 편의를 준다.
- ㄹ) 공동적십자소조는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 계획이 완수되었을 때에는 즉시로 해산한다.

58. ㄱ) 각방 사령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속히 그러나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십(10)일 이내에 상대방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전쟁포로에 관한 재료를 제공한다.

(1) 제일 마지막 번에 교환한 자료의 마감한 날짜 이후에 도망한 전쟁포로에 관한 완전한 자료.

(2)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용기간 중에 사망한 전쟁포로의 성명, 국적, 계급별 및 기타의 식별자료 또한 사망일자, 사망원인 및 매장 지점에 관한 재료.

ㄴ) 만일 위에 규정한 보충 자료의 마감한 날짜 이후에 도망하였거나 또는 사망한 어떠한 전쟁포로가 있으면 수용한 일방은 본 조 제58항 ㄱ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자료를 전쟁포로 송환위원회를 거쳐 상대방에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는 전쟁포로 인도 인수 계획을 완수할 때까지 십(10)일에 일차씩 제공한다.

ㄷ) 전쟁포로 인도 인수 계획을 완수한 후에 본래 수용하고 있던 일방에 다시 돌아온 도망하였던 어떠한 전쟁포로도 이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넘기어 처리한다.

59.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전체 사민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 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전체 사민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 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 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 당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나)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 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사민중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사민중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 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 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 당국을 시켜 상대방 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외국적의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다) 쌍방이 본 조 제59항 1목에 규정한 사민의 귀향과 본 조 제59항 2목에 규정한 사민의 이동을 협조하는 조치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될 수 있는 한 속히 개시한다.

리) (1)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령급 장교 사(4)명으로 구성하되 그중 이(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중 이(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 밑에 책임지고 상기 사민의 귀향을 협조하는데 관계되는 쌍방의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또 상기 사민의 귀향에 관계되는 본 정전협정 중의 일체 규정을 쌍방이 집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운수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기 사민의 이동을 촉진 및 조절하며 상기 사민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월경지점(들)을 선정하며 월경 지점(들)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또 상기 사민 귀향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2)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이든지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하게 한다.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3)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가 그의 임무를 완수한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제 4 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60.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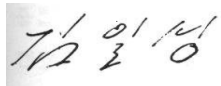
제 5 조 부 칙

61. 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쌍방 사령관들의 호상 합의를 거쳐야한다.
62.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 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63. 제12항을 제외한 본 정전협정의 일체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2:00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53년 7월 27일 10:0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써 작성한다.
이 세 가지 글의 각 협정 문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참 석 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수
김 일 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팡 덕 회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미국 육군 대장
마크 더블유. 클라크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 대표
조선인민군 대장
남 일



국제연합군 대표단
수석 대표
미국 육군 중장
윌리엄 케이. 해리슨



TEXT OF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July 27, 1953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Preamble

The undersigned,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in the interest of stopping the Korean conflict, with its great toil of suffering and bloodshed on both sides, and with the objective of establishing an armistice which will insure a complete cessation of hostilities and of all acts of armed force in Korea until a final peaceful settlement is achieved, do individually, collectively, and mutually agree to accept and to be bound and governed by the conditions and terms of armistice set forth in the following articles and paragraphs, which said conditions and terms are intended to be purely military in character and to pertain solely to the belligerents in Korea:

Article I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Demilitarized Zone

1. A military demarcation line shall be fixed and both sides shall withdraw two (2) kilometers from this line so as to establish a demilitarized zone between the opposing forces. A demilitarized zone shall be established as a buffer zone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incidents which might lead to a resumption of hostilities.
2.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is located as indicated on the attached map.
3. This demilitarized zone is defined by a northern and southern boundary as indicated on the attached map.
4.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shall be plainly marked as directed b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hereinafter established. The Commanders of the opposing sides shall have suitable markers erected along the boundary between the demilitarized zone and their respective areas.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shall supervise the erection of all markers placed along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along the boundaries of the demilitarized zone.
5. The waters of the Han River Estuary shall be open to civil shipping of both sides wherever one bank is controlled by one side and the other bank is controlled by the other side.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shall prescribe rules for the shipping in that part of the Han River Estuary indicated on the attached map. Civil shipping of each side shall have unrestricted access to the land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at side.
6. Neither side shall execute any hostile act within, from, or against the demilitarized zone.

7. No person, military or civilian, shall be permitted to cross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unless specifically authorized to do so b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8. No, person military or civilian, in the demilitarized zone shall be permitted to enter the territory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either side unless specifically authorized to do so by the Commander into whose territory entry is sought.
9. No person, military or civilian, shall be permitted to enter the demilitarized zone except persons concerned with the conduct of civil administration and relief and persons specifically authorized to enter b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10. Civil administration and relief in that part of the demilitarized zone which is south of the military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and civil administration and relief in that part of the demilitarized zone which is nor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shall be the joint responsibility of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The number of persons, military or civilian, from each side who are permitted to enter the demilitarized zone for the conduct of civil administration and relief shall be as determined by the respective Commanders, but in no case shall the total number authorized by either side exceed one thousand (1,000) persons at any one time. The number of civil police and the arms to be carried by them shall be a prescribed b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Other personnel shall not carry arms unless specifically authorized to do so b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11. Nothing contained in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complete freedom of movement to, from, and within the demilitarized zone b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its assistants, its Joint Observer Teams with their assistants,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hereinafter established, its assistants, its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with their assistants, and of any other persons, materials, and equipment specifically authorized to enter the demilitarized zone b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Convenience of movement shall be permitted through the territory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either side over any route necessary to move between points within the demilitarized zone where such points are not connected by roads lying completely within the demilitarized zone.

Article II

Concrete Arrangements for Cease-Fire and Armistice

A. General

12. The Commanders of the opposing sides shall order and enforce a complete cessation of all hostilities in Korea by all armed forces under their control, including all units and personnel of the ground, naval, and air forces, effective twelve (12) hours after this armistice agreement is signed. (See paragraph 63 hereof for effective date and hour of the remaining provis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13. In order to insure the stability of the military armistice so as to facilitate the attainment of a peaceful settlement through the holding by both sides of a political conference of a higher level, the Commanders of the opposing sides shall:



- (a) Within seventy-two (72) hours after this armistice agreement becomes effective, withdraw all of their military forces, supplies, and equipment from the demilitarized zon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herein. All demolitions, minefields, wire entanglements, and other hazards to the safe movement of personnel of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or its Joint Observer Teams, known to exist within the demilitarized zone after the withdrawal of military forces therefrom, together with lanes known to be free of all such hazards, shall be reported to the MAC by the Commander of the side whose forces emplaced such hazards. Subsequently, additional safe lanes shall be cleared; and eventually, within forty-five (45) days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seventy-two (72) hour period, all such hazards shall be removed from the demilitarized zone as directed by th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AC. At the termination of the seventy-two (72) hour period, except for unarmed troops authorized forty-five (54) day period to complete salvage operations under MAC and agreed to by the MAC and agreed to by the Commanders of the opposing sides, and personnel authorized under paragraphs 10 and 11 hereof, no personnel of either side shall be permitted to enter the demilitarized zone.
- (b) Within ten (10) days after this armistice agreement becomes effective, withdraw all of their military forces, supplies, and equipment from the rear and the coastal islands and waters of Korea of the other side. If such military forces are not withdrawn within the stated time limit, and there is no mutually agreed and valid reason for the delay, the other side shall have the right to take any action which it deems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security and order. The term “coastal islands”, as used above, refers to those islands, which, though occupied by one side at the time when this armistice agreement becomes effective, were controlled by the other side on 24 June 1950; provided, however, that all the islands lying to the north and west of the provincial boundary line between HWANGHAE-DO and KYONGGI-DO shall be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except the island groups of PAENGYONG-DO (37 58’ N, 124 40’ E), TAECHONG-DO (37 50’ N, 124 42’ E), SOCHONG-DO (37 46’ N, 124 46’ E), YONPYONG-DO (37 38’ N, 125 40’ E), and U-DO (37 36’N, 125 58’ E), which shall remain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All the island on the west coast of Korea lying south of the above-mentioned boundary line shall remain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See Map 3).
- (c) Cease the introduction into Korea of Reinforcing military personnel; provided, however, that the rotation of units and personnel, the arrival in Korea of personnel on a temporary duty basis, and the return to Korea of personnel after short periods of leave or temporary duty outside of Korea shall be permitted within the scope prescribed below: “Rotation” is defined as the replacement of units or personnel by other units or personnel who re commencing a tour of duty in Korea. Rotation personnel shall be introduced into and evacuated from Korea only through the ports of entry enumerated in Paragraph 43 hereof. Rotation shall be conducted on a man-for-man

basis; provided, however, that no more than thirty-five thousand (35,000) persons in the military service shall be admitted into Korea by either side in any calendar month under the rotation policy. No military personnel of either side shall be introduced into Korea if the introduction of such personnel will cause the aggregate of the military personnel of that side admitted into Korea since the effective date of this Armistice Agreement to exceed the cumulative total of the military personnel of that side who have departed from Korea since that date. Reports concerning arrivals in and departures from Korea of military personnel shall be made daily to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and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such reports shall include places of arrival and departure and the number of persons arriving at or departing from each such place.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through its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shall conduct supervision and inspection of the rotation of units and personnel authorized above, at the ports of entry enumerated in Paragraph 43 hereof.

- (d) Cease the introduction into Korea of reinforcing combat aircraft, armored vehicles, weapons, and ammunition; provided however, that combat aircraft, armored vehicles, weapons, and ammunition which are destroyed, damaged, worn out, or used up during the period of the armistice may be replaced on the basis piece-for-piece of the same effectiveness and the same type. Such combat aircraft, armored vehicles, weapons, and ammunition shall be introduced into Korea only through the ports of entry enumerated in paragraph 43 hereof. In order to justify the requirements for combat aircraft, armored vehicles, weapons, and ammunition to be introduced into Korea for replacement purposes, reports concerning every incoming shipment of these items shall be made to the MAC and the NNSC; such reports shall include statements regarding the disposition of the items being replaced. Items to be replace which are removed from Korea shall be removed only through the ports of entry enumerated in paragraph 43 hereof. The NNSC, through its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shall conduct supervision and inspection of the replacement of combat aircraft, armored vehicles, weapons, and ammunition authorized above, at the ports of entry enumerated in paragraph 43 hereof.
- (e) Insure that personnel of their respective commands who violate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are adequately punished.
- (f) In those cases where places of burial are a matter of record and graves are actually found to exist, permit graves registration personnel of the other side to enter, within a definite time limit after this armistice agreement becomes effective, the territory of Korea under their military control, for the purpose of proceeding to such graves to recover and evacuate the bodies of the deceased military personnel of that side, including deceased prisoners of war. The specific procedures and the time limit for the performance of the above task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The Commanders of the opposing sides shall furnish to the other side all available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places of burial of the deceased military personnel of the other side.



- (g) Afford full protection and all possible assistance and cooperation to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its Joint Observer Teams,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and its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in the carrying out of their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hereinafter assigned; and accord to the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full convenience of movement between the headquarters of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and the ports of entry enumerated in Paragraph 43 hereof over main lines of communication agreed upon by both sides (see Map 4), and between the headquarters of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and the places where violat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have been reported to have occurred. In order to prevent unnecessary delays, the use of alternate routes and means of transportation will be permitted whenever the main lines of communication are closed or impassable.
 - (h) Provide such logistic support, including communications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as may be required b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and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and their Teams.
 - (i) Each construct, operate, and maintain a suitable airfield in their respective parts of the Demilitarized Zone in the vicinity of the headquarters of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for such uses as the Commission may determine.
 - (j) Insure that all members and other personnel of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and of the Neutral Nations Repatriation Commission hereinafter established shall enjoy the freedom and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proper exercise of their functions, including privileges, treatment, and immunities equivalent to those ordinarily enjoyed by accredited diplomatic personnel under international usage.
14. This Armistice Agreement shall apply to all opposing ground forces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either side, which ground forces shall respect the Demilitarized Zone and the area of Korea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opposing side.
 15. This Armistice Agreement shall apply to all opposing naval forces, which naval forces shall respect the water contiguous to the Demilitarized Zone and to the land area of Korea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opposing side, and shall not engage in blockade of any kind of Korea.
 16. This Armistice Agreement shall apply to all opposing air forces, which air forces shall respect the air space over the Demilitarized Zone and over the area of Korea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opposing side, and over the waters contiguous to both.
 17. Responsibility for compliance with and enforcement of the terms and provis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is that of the signatories hereto and their successors in command. The Commanders of the opposing sides shall establish within their respective commands all measures and procedures necessary to insure complete compliance with all of the provisions hereof by all elements of their commands. They shall actively co-operate with one another and with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and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in requiring observance of both letter and the spirit of all of the provis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18. The costs of the operations of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and of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and of their Teams shall be shared equally by the two opposing sides.

B.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1. Composition

19. A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is hereby established.
20.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shall be composed of ten (10) senior officers, five (5) of whom shall be appointed by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and five (5) of whom shall be appointed jointly by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f the ten members, three (3) from each side shall be of general of flag rank. The two (2) remaining members on each side may be major generals, brigadier generals, colonels, or their equivalents.
21. Members of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shall be permitted to use staff assistants as required.
22.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shall be provided with the necessary administrative personnel to establish a Secretariat charged with assisting the Commission by performing record-keeping, secretarial, interpreting, and such other functions as the Commission may assign to it. Each side shall appoint to the Secretariat a Secretary and an Assistant Secretary and such clerical and specialized personnel as required by the Secretariat. Records shall be kept in English, Korean, and Chinese, all of which shall be equally authentic.
23. (a)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shall be initially provided with and assisted by ten (10) Joint Observer Teams, which number may be reduced by agreement of the senior members of both sides on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b) Each Joint Observer Team shall be composed of not less than four (4) nor more than six (6) officers of field grade, half of whom shall be appointed by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and half of whom shall be appointed jointly by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Additional personnel such as drivers, clerks, and interpreters shall be furnished by each side as required for the functioning of the Joint Observer Teams.
24. The general miss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shall be to supervise the implementation of this Armistice Agreement and to settle through negotiations any violat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25.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shall:
 - (a) Locate its headquarters in the vicinity of PANMUNJOM (37 57'29" N, 126 40'00" E).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may re-locate its headquarters at another point within the Demilitarized Zone by agreement of the senior members of both sides on the Commission.
 - (b) Operate as a joint organization without a chairman.
 - (c) Adopt such rules of procedure as it may, from time to time, deem necessary



- (d) Supervise the carrying out of the provis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pertaining to the Demilitarized Zone and to the Han River Estuary.
 - (e) Direct the operations of the Joint Observer Teams.
 - (f) Settle through negotiations any violat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 (g) Transmit immediately to the Commanders of the opposing sides all reports of investigations of violat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and all other reports and records of proceedings received from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 (h) Give general supervision and direction to the activities of the Committee for Repatriation of Prisoners of War and the Committee for Assisting the Return of Displaced Civilians, hereinafter established.
 - (i) Act as intermediary in transmitting communications between the Commanders of the opposing sides; provided, however, that the foregoing shall not be construed to preclude the Commanders of both sides from Communicating with each other by any other means which they may desire to employ.
 - (j) Provide credentials and distinctive insignia for its staff and its Joint Observer Teams, and a distinctive marking for all vehicles, aircraft, and vessels, used in the performance of its mission.
26. The Mission of the Joint Observer Teams shall be to assist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in supervising the carrying out of the provis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pertaining to the Demilitarized Zone and to the Han River Estuary.
27.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or the senior member of either side thereof, is authorized to dispatch Joint Observer Teams to investigate violat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reported to have occurred in the Demilitarized Zone or in the Han River Estuary; provided, however, that not more than one half of the Joint Observer Teams which have not been dispatched b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may be dispatched at any one time by the senior member of either side on the Commission.
28.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or the senior member of either side thereof, is authorized to request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to conduct special observations and inspections at places outside the Demilitarized Zone where violat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have been reported to have occurred.
29. When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determines that a violation of this Armistice Agreement has occurred, it shall immediately report such violation to the Commanders of the opposing sides.
30. When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determines that a violation of this Armistice Agreement has been corrected to its satisfaction, it shall so report to the Commanders of the opposing sides.

3. General

31.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shall meet daily. Recesses of not to exceed seven (7) days may be agreed upon by the senior members of both sides; provided, that such recesses may be terminated on twenty-four (24) hour notice by the senior member of either side.
32. Copies of the record of the proceedings of all meetings of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shall be forwarded to the Commanders of the opposing sides as soon as possible after each meeting.

33. The Joint Observer teams shall make periodic reports to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as required by the Commission and, in addition, shall make such special reports as may be deemed necessary by them, or as may be required by the Commission.
34.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shall maintain duplicate files of the reports and records of proceedings required by this Armistice Agreement. The Commission is authorized to maintain duplicate files of such other reports, records, etc., as may be necessary in the conduct of its business. Upon eventual dissolution of the Commission, one set of the above files shall be turned over to each side.
35.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may make recommendations to the Commanders of the opposing sides with respect to amendments or additions to this Armistice Agreement. Such recommended changes should generally be those designed to insure a more effective armistice.

C.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1. Compositions

36. A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is hereby established.
37.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shall be composed of four (4) senior officers, two (2) of whom shall be appointed by neutral nations nominated by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namely, SWEDEN and SWITZERLAND, and two (2) of whom shall be appointed by neutral nations nominated jointly by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namely, POLAND and CZECHOSLOVAKIA. The term "neutral nations" as herein used is defined as those nations whose combatant forces have not participated in the hostilities in Korea. Members appointed to the Commission may be from the armed forces of the appointing nations. Each member shall designate an alternate member to attend those meetings which for any reason the principal member is unable to attend. Such alternate members shall be of the same nationality as their principals.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may take action whenever the number of members present from the neutral nations nominated by one side is equal to the number of members present from the neutral nations nominated by the other side.
38. Members of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shall be permitted to use staff assistants furnished by the neutral nations as required. These staff assistants may be appointed as alternate members of the Commission.
39. The neutral nations shall be requested to furnish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with the necessary administrative personnel to establish a Secretariat charged with assisting the Commission by performing necessary record-keeping, secretarial, interpreting, and such other functions as the Commission may assign to it.
40. (a)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shall be initially provided with, and assisted by, twenty (20)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which number may be reduced by agreement of the senior members of both sides

on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The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shall be responsible to, shall report to, and shall be subject to the direction of,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only.

- (b) Each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 shall be composed of not less than four (4) officers, preferably of field grade, half of whom shall be from the neutral nations nominated by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and half of whom shall be from the neutral nations nominated jointly by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Members appointed to the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may be from the armed forces of the appointed. In order to facilitate the functioning of the Teams, sub-teams composed of not less than two (2) members, one of whom shall be from a neutral nation nominated by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and one of whom shall be from a neutral nation nominated jointly by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may be formed as circumstances require. Additional personnel such as drivers, clerks, interpreters, and communications personnel, and such equipment as may be required by the Teams to perform their missions, shall be furnished by the Commander of each side, as required, in the Demilitarized Zone and in the territory under his military control.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may provide itself and the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with such of the above personnel shall be personnel of the same neutral nations of which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is composed.

2. Functions and Authority

41. The mission of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shall be to carry out the functions of supervision, observation,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as stipulated in Sub-paragraphs 13(c) and 13(d) and Paragraph 28 hereof, and to report the results of such supervision, observation,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to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42.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shall:
- (a) Locate its headquarters in proximity to the to the headquarters of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 (b) Adopt such rules of procedure as it may, from time to time, deem necessary.
 - (c) Conduct, through its members and its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the supervision and inspection provided for in Sub-paragraphs 13(c) and 13(d) of this Armistice Agreement at the ports of entry enumerated in Paragraph 43 hereof, and the special observations and inspections provided for in paragraph 28 hereof at those places where violat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have been reported to have occurred. The inspection of combat aircraft, armored vehicles, weapons, and ammunition by the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shall be such as to enable them to properly insure that reinforcing combat aircraft, armored vehicles, weapons, and ammunition are not being introduced into Korea; but this shall not be construed as authorizing inspections or examinations of any secret designs of characteristics

- of any combat aircraft, armored vehicle, weapon, or ammunition.
- (d) Direct and supervise the operations of the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 (e) Station five (5)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at the ports of entry enumerated in Paragraph 43 hereof located in the territory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and five (5)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at the ports of entry enumerated in Paragraph 43 hereof located in the territory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and establish initially ten (10) mobile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in reserve, stationed in the general vicinity of the headquarters of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which number may be reduced by agreement of the senior members of both sides on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Not more than half of the mobile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shall be dispatched at any one time in accordance with requests of the senior member of either side on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 (f)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Sub-paragraphs, conduct without delay investigations of reported violat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including such investigations of reported violat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as may be requested b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or by the senior member of either side on the Commission.
- (g) Provide credentials and distinctive insignia for its staff and its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and a distinctive marking for all vehicles, aircraft, and vessels used in the Performance of this mission.
43.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shall be stationed at the following ports of entry.

Territory under the military contrail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 | |
|----------------|---------------------|
| INCHON | (37 28'N, 126 38'E) |
| TAEGU | (35 52'N, 128 36'E) |
| PUSAN | (35 06'N, 129 02'E) |
| KANGNUNG | (37 45'N, 128 54'E) |
| KUNSAN | (35 59'E, 126 43'E) |

Territory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 | |
|----------------|---------------------|
| SINUJU | (40 06'N, 124 24'E) |
| CHONGJIN | (41 46'N, 129 49'E) |
| HUNGNAM | (39 50'N, 127 37'E) |
| MANPO | (41 09'N, 126 18'E) |
| SINANJU | (39 36'N, 125 36'E) |

These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shall be accorded full convenience of movement within the areas and over the routes of communication set forth on the attached map (Map 5).

3. General

44.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shall meet daily. Recesses of not to exceed seven (7) days may be agreed upon by the members of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provided, that such recesses may be terminated on twenty-four (24) hour notice by any member.
45. Copies of the record of the proceedings of all meetings of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shall be forwarded to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as soon as possible after each meeting. Records shall be kept in English, Korean, and Chinese.
46. The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shall make periodic reports concerning the results of their supervision observations, inspections, and investigations to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as required by the Commission and, in addition, shall make such special reports as may be deemed necessary by them, or as may be required by the Commission. Reports shall be submitted by a Team as a whole, but may also be submitted by one or more individual members thereof; provided, that the reports submitted by one or more individual members thereof shall be considered as information only.
47. Copies of the reports made by the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shall be forwarded to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by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without delay and in the language in which received. They shall not be delayed by the process of translation or evaluation.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shall evaluate such reports at the earliest practicable time and shall forward their findings to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as a matter of priorit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shall not take final action with regard to any such report until the evaluation thereof has been received from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Members of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and of its Teams shall be subject to appearance before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at the request of the senior member of either side on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for clarification of any report submitted.
48.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shall maintain duplicate files of the reports and records of proceedings required by this Armistice Agreement. The Commission is authorized to maintain duplicate files of such other reports, records, etc., as may be necessary in the conduct of its business. Upon eventual dissolution of the Commission, one set of the above files shall be turned over to each side.
49.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may make recommendations to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with respect to amendments or additions to this Armistice Agreement. Such recommended changes should generally be those designed to insure a more effective armistice.
50.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or any member thereof, shall be authorized to communicated with any member of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Article III Arrangement Relating to Prisoners of War

51. The release and repatriation of all prisoners of war held in the custody of each side at the time this armistice agreement becomes effective shall be effected in conformity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agreed upon by both sides prior to the signing of this armistice agreement.
- (a) Within sixty (60) days after this agreement becomes effective each side shall, without offering any hindrance, directly repatriate and hand over in groups all those prisoners of war in its custody who insist on repatriation to the side to which they belonged at the time of capture. Repatriation shall be accomp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related provisions of this Article. In order to expedite the repatriation process of such personnel, each side shall, prior to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exchange the total numbers, by nationalities, or personnel to be directly repatriated. Each group of prisoners of war delivered to the other side shall be accompanied by rosters, prepared by nationality, to include name, rank (if any) and internment or military serial number.
 - (b) Each side shall release all those remaining prisoners of war, who are not directly repatriated, from its military control and from its custody and hand them over to the Neutral Nations Repatriation Commission for disposi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in the Annex hereto, “Terms of Reference for Neutral Nations Repatriation Commission.”
 - (c) So that there may be no misunderstanding owing to the equal use of three languages, the act of delivery of a prisoner of war by one side to other side shall, for the purposes of the Armistice Agreement, be called “repatriation” in English, (송환) “Song Hwan” in Korean and (遣返) “Ch’ien Fan” in Chinese, notwithstanding the nationality or place of residence of such prisoner of war.
52. Each side insures that it will not employ in acts of war in the Korean conflict any prisoner of war released and repatriated incident to the coming into effect of this armistice agreement.
53. All the sick and injured prisoners of war who insist upon repatriation shall be repatriated with priority. Insofar as possible, there shall be captured medical personnel repatriated concurrently with the sick and injured prisoners of war, so as to provide medical care and attendance enroute.
54. The repatriation of all of the prisoners of war required by Sub-paragraph 51 (a) hereof shall be completed within a time limit of sixty (60) days after this Armistice Agreement becomes effective. Within this time limit each side undertakes to complete repatriation of the above-mentioned prisoners of war in its custody at the earliest practicable time.
55. PANMUNJOM is designated as the place where prisoners of war will be delivered and received by both sides. Additional place(s) of delivery and reception of prisoners of war in the Demilitarized Zone may be designated, if necessary, by the Committee for Repatriation of Prisoners of War.
56. (a) A committee for Repatriation of Prisoners of War is hereby established. It shall be composed of six (6) officers of field grade, three (3) of whom shall be appointed by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ree (3) of whom shall be appointed jointly by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This Committee shall, under the general supervision and direct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be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the specific plans of both sides for the repatriation of prisoners of war and for supervision the execution by both sides of all of the provis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relating to the repatriation of prisoners of war. It shall be the duty of this Committee to co-ordinate the timing of the arrival of prisoners of war at the place(s) of delivery and reception of prisoners of war from the prisoner of war camps of both sides; to make, when necessary, such special arrangements as may be required with regard to the transportation and welfare of sick and injured prisoners of war; to co-ordinate the work of the joint Red Cross teams, established in Paragraph 57 hereof, in assisting in the repatriation of prisoners of war; to supervise the implementation of the arrangements for the actual repatriation of prisoners of war stipulated in Paragraphs 53 and 54 hereof; to select, when necessary, additional place(s) of delivery and reception of prisoners of war; and to carry out such other related functions as are required for the repatriation of prisoners of war.

- (b) When unable to reach agreement on any matter relating to its responsibilities, the committee for Repatriation of Prisoners of War shall immediately refer such matter to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for decision. The Committee for Repatriation of Prisoners of War shall maintain its headquarters in proximity to the headquarters of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 (c) The Committee for Repatriation of Prisoners of War shall be dissolved b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ttee upon completion of the program of repatriation of prisoners of war.
57. (a) Immediately after this Armistice Agreement becomes effective, joint Red Cross teams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the national Red Cross Societies of countries contributing forces to the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representatives of the of the Red Cross Societ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representatives of the Red Cross Societ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other hand, shall be established. The joint Red Cross teams shall assist in the execution by both sides of those provis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relating to the repatriation of all the prisoners of war specified in Sub-paragraph 51 (a) hereof, who insist upon repatriation, by the performance of such humanitarian services as are necessary and desirable for the welfare of the prisoners of war. To accomplish this task, the joint Red Cross teams shall provide assistance in the delivering and receiving of prisoners of war by both sides at the place(s) of delivery and reception of prisoners of war, and shall visit the prisoner-of-war camps of both sides to comfort the prisoners of war.
- (b) The joint Red Cross teams shall be organized as set forth below:
 - (1) One team shall be composed of twenty (20) members, namely, ten (10) representatives from the national Red Cross Societies of each side, to assist in the delivering and receiving of prisoners of war by both sides at the place(s) of delivery and reception of prisoners of war. The

- chairmanship of this team shall alternate daily between representative from the Red Cross Societies of the two sides. The work and services of this team shall be coordinated by the Committee for Repatriation of Prisoners of War.
- (2) One team shall be composed of sixty (60) members, namely, thirty (30) representatives from the national Red Cross Societies of each side, to visit the prisoner-of-war camps under the administration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This team may provide services to prisoners of war while en route from the prisoner of war camps to the place(s) of delivery and reception of prisoners of war. A representative of a Red Cross Societ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r of the Red Cross Societ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hall serve as chairman of this team.
 - (3) One team shall be composed of sixty (60) members, namely, thirty (30) representatives from the national Red Cross Societies of each side, to visit the prisoner of war camps under the administr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This team may provide services to prisoners of war while en route from the prisoner of war camps to the place(s) of delivery and reception of prisoners of war. A representative of a Red Cross Society of a nation contributing to forces to the United Nations Command shall serve as chairman of this team.
 - (4) In order to facilitate the functioning of each joint Red Cross team, sub-teams composed of not less than two (2) members from this team, with an equal number of representatives from each side, may be formed as circumstances require.
 - (5) Additional personnel such as drivers, clerks, and interpreters, and such equipment as may be required by the joint Red Cross teams to perform their missions, shall be furnished by the Commander of each side to the team operating in the territory under his military control.
 - (6) Whenever jointly agreed upon by the representatives of both sides on any joint Red Cross team, the size of such team may be increased or decreased, subject to confirmation by the committee for Repatriation of Prisoners of War.
- (c) The Commander of each side shall co-operate fully with the joint Red Cross team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functions, and undertakes to insure the security of the personnel of the Joint Red Cross team in the area under his military control. The Commander of each side shall provide such logistic, administrative,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as may be required by the team operating in the territory under his military control.
 - (d) The joint Red Cross teams shall be dissolved upon completion of the program of repatriation of all of the prisoners of war specified in Sub-paragraph 51 (a) hereof, who insist upon repatriation.
58. (a) The Commander of each side shall furnish to the Commander of the other side as soon as practicable, but not later than ten (10) days after this Armistice Agreement becomes effective, the following information concerning prisoners of war:
- (1) Complete data pertaining to the prisoners of war who escaped since the



- effective date of the data last exchanged.
- (2) Insofar as practicable, information regarding name, nationality, rank, and other identification data, date and cause of death, and place of burial, of those prisoners of war who died while in his custody.
 - (b) If any prisoners of war escape or die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supplementary information specified above, the detaining side shall furnish to the other side, through the Committee for Repatriation of Prisoners of War, the data pertaining thereto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58 (a) hereof. Such data shall be furnished at ten-day intervals until the completion of the program of delivery and reception of prisoners of war.
 - (c) Any escaped prisoner of war who returns to the custody of the detaining side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gram of delivery and reception of prisoners of war shall be delivered to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for disposition.
59. (a) All civilians who, at the time this Armistice Agreement become effective, are in territory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and who, on 24 June 1950, resided nor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established in this Armistice Agreement shall, if they desire to return home, be permitted and assisted by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to return to the area nor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all civilians who, at the time this Armistice Agreement becomes effective, are in territory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and who on 24 June 1950, resided sou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established in this Armistice Agreement shall, if they desire to return home, be permitted and assisted by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to return to the area south Military Demarcation Line. The Commander of each side shall e responsible for publicizing widely throughout the territory under his military control the contents of the provisions of this Sub-paragraph, and for calling upon the appropriate civil authorities to give necessary guidance and assistance to all such civilians who desire to return home.
- (b) All civilians of foreign nationality who, at the time this Armistice Agreement becomes effective, are in territory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shall if they desire to proceed to territory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be permitted and assisted to do so; all civilians of foreign nationality who, at the time this Armistice Agreement becomes effective, are in territory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Commander-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shall, if they desire to proceed to territory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be permitted and assisted to do so. The Commander of each side shall be responsible for publicizing widely throughout the territory under his military control of contents of the provisions of this sub-paragraph, and for calling upon the appropriate civil authorizes to give necessary guidance and assistance to all

such civilians of foreign nationality who desire to proceed to territory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Commander of the other side.

- (c) Measures to assist in the return of civilians provided for in Sub-paragraph 59 (a) hereof and the movement of civilians provided for in Sub-paragraph 59 (b) hereof shall be commenced by both sides as soon as possible after this Armistice Agreement becomes effective.
- (d) (1) A Committee for Assisting the Return of Displace Civilians is hereby established. It shall be composed of four (4) officers of field grade, two (2) of whom shall be appointed jointly by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and two (2) of whom shall be appointed jointly by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This committee shall, under the general supervision and direct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be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the specific plans of both sides for assistance to the return of the above-mentioned civilians. It shall be the duty of this Committee to make necessary arrangements, including those of transportation, for expediting and coordinating the movement of the above-mentioned civilians; to select the crossing point(s) through which the above-mentioned civilians will cross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to arrange for security at the crossing point(s); and to carry out such other functions as are required to accomplish the return of the above-mentioned civilians.
- (2) When unable to reach agreement on any matter relating to its responsibilities, the Committee for Assisting the return of Displaced Civilians shall immediately refer such matter to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for decision. The Committee for assisting the Return of Displaced Civilians shall maintain its headquarters in proximity to the headquarters of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 (3) The Committee for Assisting the Return of Displaced Civilians shall be dissolved b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upon fulfillment of its mission.

Article IV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ments Concerned on Both Sides

- 60. In order to insure the peaceful settlement of the Korean question, the military Commanders of both sides hereby recommend to the governments of the countries concerned on both sides that, within three (3) months after the Armistice Agreement is signed and becomes effective, a political conference of a higher level of both sides be held by representatives appointed respectively to settle through negotiation the questions of the withdrawal of all foreign forces from Korea, the peaceful settlement of the Korean question, etc.



Article V
Miscellaneous

61. Amendments and additions to this Armistice Agreement must be mutually agreed to by the Commanders of the opposing sides.
62. The Articles and Paragraph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shall remain in effect until expressly superseded either by mutually acceptable amendments and additions or by provision in an appropriate agreement for a peaceful settlement at a political level between both sides.
63. All of the provis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other than Paragraph 12, shall become effective at 22:00 hours on 27 July 1953.

Done at Panmunjom, Korea at 10:00 hours on the 27th day of July 1953, in English, Korean and Chinese,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NAM IL

General, Korea People's Army
Senior Delegate,
Delegation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WILLIAM K. HARRISON, JR.

Lieutenant General, United States Army
Senior Delegate,
United Nations Command Delegation

II

평화체제 관련 제의

남한

【해제】

- 남한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 남북한 간 대립과 갈등을 억제하고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공존을 제창하였다.
- 남한은 정전협정 준수 의무를 천명하는 한편, 평화협정 문제에 있어서 남북한 당사자 해결 원칙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전협정 효력 유지를 조건으로 UNC 해체 동의”(1975.10.21 김동조 외무부장관 제30차 UN 총회 정치위 연설)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남북한 당사자 해결 원칙에 입각한 정전협정 대체방안 모색 용의”(1976.5.13 박동진 외무부장관 성명)를 표명하였으며, 또한 “남북한 및 미국이 참여하는 3당국회담 제의”(1979.7.1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하여 이른바 남북한과 미국의 ‘3자회담’ 제의로 남한의 당사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북·미 중심의 평화협정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 1980년대에 와서도 남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전협정 준수의 원칙 아래 군사적 긴장완화를 추구하여, 군비경쟁의 지양과 더불어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를 위한 노력을 제의하였다.
- 제6공화국의 노태우 정부 시대에는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세계적 냉전체제의 해체 분위기 속에서 한반도의 해빙을 위한 전향적인 대북제안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특히, 정전협정의 항구적 평화체제로의 대체 용의를 처음으로 밝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 후 김영삼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존중 위에서



남북한 당사자 해결의 원칙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천명하였다.

-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 대북 포용정책의 기초 위에서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 문제가 주된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는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체제의 해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 유지되고 있는 냉전체제의 해체 없이 한반도의 평화체제의 수립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내적 차원에서 냉전문화의 극복과 함께 국제적 차원에서 북·미 및 북·일간 관계정상화가 과제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2002년 10월 제2차 북핵문제가 불거짐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북핵 문제의 선차적 해결 요구에 가려지게 되었다. 그 후 2003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이루어졌고 2005년의 '9·19 공동선언'과 2007년의 '2·13 합의'에 의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본격적인 논의와 협상의 과제로 떠올랐다.

- 노무현 정부는 2003년 2월 대통령취임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구상을 제시하였다.¹ 당장의 통일보다 현 남북관계 상황을 토대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구현하는 평화·점진적 통일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사회 공동체 형성을 통해 평화·점진적 통일과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 평화체제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북군사신뢰가 구축되면서 평화제도화가 이뤄지는 장기과정으로 평가한다.
 - 선 평화증진(화해협력·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 후 평화협정 체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광복절 제25주년 경축사(1970.8.15): '평화통일구상선언'

-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광복절 경축사(1970.8.15)를 통해 '평화통일구상선언'을 천명하였다.
 - “북한이 한국의 민주, 통일, 독립을 위한 유엔의 노력을 인정하고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수락한다면, 유엔에서 한국문제 토의에 북한이 참석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보다 선의의 경쟁’으로 “남북한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하고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경쟁”을 제안하였다.

¹ 1단계: 북핵 문제의 해결과 평화증진 가속화, 2단계: 남북협력 심화와 평화체제의 토대 마련, 3단계: 남북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의 구축,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통일부, 2003.3); 『평화번영과 국가안보-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 (국가안전보장회의, 2004.3.1).

「남북상호불가침협정」 체결 제의(박정희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1974.1.18)

- 전쟁 예방과 평화 유지를 위해 북한의 대남 평화협정 제의에 대해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협정으로, 「남북한의 상호불가침 협정」 체결을 제의하였다.
 - 첫째, 남북한 상호 무력 침범 거부
 - 둘째, 상호 내정간섭 불가
 - 셋째, 현행 휴전협정 효력 존속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천명: “정전협정 유지하에 군비경쟁 지양 및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전두환 대통령 국정연설, 1982.1.22)

- 남북한 관계에 대해; “...민족화합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체결을 제의”
 - “네째, 쌍방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전쟁방지를 위하여 현존 휴전체제를 유지하면서 군지경쟁의 지양과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조치를 협의한다”

정전협정의 항구적 평화체제로의 대체 용의 표명(노태우 대통령 제43차 유엔총회 연설, 1988.10.18)

- 남북정상회담 제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불가침 또는 무력불사용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선언할 것을 제의합니다”
 -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와 통일실현 방안, 남북한간의 교류협력, 군비축소 등...휴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구체적 방안 강구...”

노태우 대통령 광복절 제45주년 경축사(1990.8.15)

- “남북간의 무력사용 포기선언과 불가침협정의 체결, 현재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

노태우 대통령 평통자문회의 제5기 출범식 개회사(1991.7.12)

-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현재의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김영삼 제14대 대통령 취임사(1993.2.25): 평화와 협력의 시대 천명

- “세계는 대결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과 국가 사이에도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특히, 동맹보다 민족이 앞선다는 입장을 천명하여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올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광복절 제50주년 경축사(1995.8.15):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원칙 제시

-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기본 원칙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남북 당사자간에 협의, 해결되어야 한다.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관련 국가들의 협조와 뒷받침 필요
 -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간 모든 합의사항 존중

김대중 대통령 CNN 회견 기초연설(1999.5.5):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 과제 제시

- “현재의 정전체제를 남북간의 평화체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남북이 서로 오가며 돕고 나누는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 상황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선언’(2000.3.9): 독일통일의 교훈과 한반도문제

-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이루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 첫째,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 둘째, “현 단계에서 우리의 당면 목표는 통일보다는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이다.”
 - 셋째, “북한은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적극 응해야 한다.”
 - 넷째,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노무현 제16대 대통령 취임사(2003.2.25): 한반도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평화번영정책’ 원칙 제시

- “한반도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평화번영정책’을,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첫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 둘째, 상호 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 셋째,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 넷째,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 (1) 노무현 제16대 대통령 취임사 (2003.2.2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에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새 정부를 운영할 영광스러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올리면서, 이 벅찬 소명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완수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전임 대통령 여러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축 사절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게, 재난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도전과 극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열강의 틈에 놓인 한반도에서 숭한 고난을 이겨내고, 반만년 동안 민족의 자존과 독자적 문화를 지켜왔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분단과 전쟁과 가난을 딛고, 반세기만에 세계 열두 번째의 경제 강국을 건설했습니다.

우리는 농경시대에서 산업화를 거쳐 지식정보화 시대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다시 세계사적 전환점에 직면했습니다. 도약이냐 후퇴냐, 평화냐 긴장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세계의 안보 상황이 불안합니다. 이라크 정세가 긴박합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평화를 지키고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대외 경제 환경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끝없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뻗어가고 있습니다. 후발국들은 무섭게 추격해 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과 발전 전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도 국가의 명운을 결정지을 많은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들 과제는 국민 여러분의 지혜와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도전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저력으로 우리는 외환 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벗어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월드컵 4강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모든 과정을 통해 참여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미래는 한반도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동북아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근대 이후 세계의 변방에 머물던 동북아가, 이제 세계 경제의 새로운 활력으로 떠올랐습니다. 21세기는 동북아 시대가 될 것이라는 세계 석학들의 예측이 착착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경제규모는 세계의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한·중·일 3국에만 유럽연합의 네 배가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위치가 지난날에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오히려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중심적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급 두뇌와 창의력, 세계 일류의 정보화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과 고속철도 등 하늘과 바다와 땅의 물류기반도 구비해 가고 있습니다.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 나갈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동북아의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동북아 시대는 경제에서 출발합니다. 동북아에 ‘번영의 공동체’를 이룩하고 이를 통해 세계의 번영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평화의 공동체’로 발전해야 합니다. 지금의 유럽연합과 같은 평화와 공생의 질서가 동북아에도 구축되게 하는 것이 저의 오랜 꿈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동북아 시대는 완성됩니다. 그런 날이 가까워지도록 저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진정한 동북아 시대를 열자면 먼저 한반도에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한반도가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지대로 남은 것은 20세기의 불행한 유산입니다. 그런 한반도가 21세기에는 세계를 향해 평화를 발신하는 평화지대로 바뀌어야 합니다.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동북아의 평화로운 관문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부산에서 파리행 기차표를 사서 평양, 신의주, 중국, 몽골, 러시아를 거쳐 유럽의 한복판에 도착하는 날을 앞당겨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성과는 괄목할 만합니다. 남북한 사이에 사람과 물자의 교류가 일상적인 일처럼 빈번해졌습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의 길이 모두 열렸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는 더욱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정책의 추진방식은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평화번영정책’을, 몇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첫째, 모든 현안은 대화를 통해 풀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상호신뢰를 우선하고 호혜주의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해 원활한 국제협력을 추구하겠습니다.
- 넷째, 대내외적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참여를 확대하며 초당적 협력을 얻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변영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북한은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한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이 원하는 많은 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할 것인지, 체제안전과 경제지원을 약속받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울러 저는 북한 핵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서는 안됩니다. 북한 핵 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되도록, 우리는 미국, 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입니다. 중국·러시아·유럽연합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한미동맹 50주년입니다. 한미동맹은 우리의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소중히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혜평등의 관계로 더욱 성숙시켜 나갈 것입니다. 전통우방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북아 시대를 열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힘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자면 개혁과 통합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혁은 성장의 동력이고, 통합은 도약의 디딤돌입니다.

새 정부는 개혁과 통합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로 가기 위해 저는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새 정부 국정운영의 좌표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는 각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제반 요인들은 아직도 극복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시장과 제도를 세계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혁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고자 합니다.

정치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치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당리당략보다 국민민복을 우선하는 정치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대결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정치문화가 자리잡았으면 합니다. 저부터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을 부단히 혁신해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이루겠습니다. 지식정보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문화를 함양하고 문화산업의 발전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국가목표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도 혁신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입시지옥에서 벗어나 저마다의 소질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도 부정부패를 없애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구조적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지도층의 뼈를 깎는 성찰을 요망합니다.

중앙 집권과 수도권 집중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중앙과 지방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야 합니다. 지방은 자신의 미래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은 이를 도와야 합니다. 저는 비상한 결의로 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통합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지역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새 정부는 지역탕평 인사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소득격차를 비롯한 계층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 교육과 세제 등의 개선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노사회합과 협력의 문화를 이루도록 노사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약자를 비롯한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복지정책을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모든 종류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 나가겠습니다. 양성평등사회를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개방화 시대를 맞아 농어업과 농어민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고령사회의 도래에 대한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원칙을 바로 세워 신뢰사회를 만듭시다.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로 나아갑시다. 정직하고 성실한 대다수 국민이 보람을 느끼게 해드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변방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의존의 역사를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중심국가로 응비할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 왔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도전을 극복한 저력이 있습니다. 위기마저도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와 저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닥친 도전을 극복합시다. 오늘 우리가 선조들을 기리는 것처럼, 먼 훗날 후손들이 오늘의 우리를 자랑스러운 조상으로 기억하게 합시다.

우리는 마음만 합치면 기적을 이루어 내는 국민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읍시다.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이 위대한 도정에 모두 동참합시다. 항상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2월 25일

대통령 노 무 현

2 김대중 대통령 베를린선언 (2000.3.9)

독일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문제

베를린 자유대학, 2000년 3월 9일

존경하는 피터 퀘트겐스 총장, 존경하는 교수 및 내외귀빈, 그리고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나는 먼저 이 자리를 빌려 폐허와 분단을 딛고 일어서서 오늘의 번영과 통일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독일 국민에게 마음으로부터 경의와 축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심정을 간직하면서 오늘 이 유서 깊은 베를린 자유대학의 교수 및 학생 여러분과 더불어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문제”라는 주제 아래 대화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우정어린 환영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는 베를린 자유대학과 이 대학 출신들이 지난 48년 개교한 이래 동서독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독일통일을 앞장서 이끌어온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이 대학을 찾았습니다. 분단국인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독일통일에서의 교훈을 배우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과 한국 양국은 전쟁과 민족분단의 쓰라린 고통과 경험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은 “라인강의 기적”을,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습니다.

한국은 지난 2년 동안 아시아 지역을 휩쓴 경제적 위기를 국민과 정부의 헌신, 그리고 독일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극복하였습니다. 97년말 39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는 이제 800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98년도 마이너스 5.8%였던 경제성장률이 작년에는 10.2%로 상승했습니다. 물가, 금리, 외환, 증시 등이 모두 전례없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실업률도 금년내에 4%까지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 독일은 이러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킨 공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 국민은 비록 독일과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유사성 때문에 독일과 독일 국민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수 및 학생 여러분!

세계는 이제 대립과 갈등의 20세기를 뒤로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뉴밀레니엄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세기말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되고 독일의 통일됨으로써 50여년간 지속되어온 냉전구조가 해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이념을 고수해온 중국, 베트남도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은 우리에게 더 이상 위협한 경계의 대상이 아니

라 좋은 친구이자 가장 유망한 경제협력의 상대입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아직도 이러한 세계사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채 지구상의 유일한 냉전 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북한의 완고한 폐쇄정책 때문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대립과 갈등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 한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를 위해서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 분들이 먼저 성공적으로 이룩한 동서독 관계와 통일의 경험은 우리가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일로부터 얻은 교훈은 첫째, 독일의 통일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함께 발전시켜온 서독 국민의 저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동서독의 대결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의 대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둘째, 서독은 「접촉을 통한 변화」로 요약되는 동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동서독간의 상호공존과 긴장완화의 틀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동독 주민들의 서독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 이데올로기적 반목을 완화시켰습니다.

셋째, 서독은 진지하고 성의있는 노력으로 통일 독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켰으며 놀랍게도 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적극적이고 성공적인 외교를 전개하였습니다.

넷째, 서독 정부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심과 성의를 가지고 동서독간의 화해와 교류·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독의 대동독정책은 우리 한국의 햇볕정책 추진에 매우 귀중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수십년동안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단계적 통일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나의 가장 존경하는 친구인 빌리 브란트 전 총리, 폰 바이체커 전 대통령, 그리고 겐서 전 외무장관같은 지도자들과도 여러 차례 귀중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서독의 동독에 대한 정책, 통일 이후의 상황 모두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교훈이 되어 왔습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교훈은 독일 통일 이후에 동서독간의 경제적 격차의 해소와, 특히 심리적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가를 심각하게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독일 통일을 보고 한없는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충격도 컸습니다. 그것은 첫째, 엄청난 자금의 소요입니다. 2천억 마르크면 된다던 통일비용이 10배나 들었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양독간의 경제적 격차의 해소는 아직도 남아 있는 숙제라고 합니다. 둘째, 구동서독인 사이의 심리적 갈등이 아직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도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독은 경제규모 면에서 보더라도 한국보다 훨씬 더 크고 부유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동독과 전쟁을 한 일도 없고, 통일 전에 많은 교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니다. 우리의 경제는 북한을 떠 안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었고 극도의 무장대립 속에 있습니다. 동독 국민은 바이마르 공화국시대에서 만개했던 민주주의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은 자유에 대한 어떠한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의 고립으로 북한밖의 외부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그대로 둔 채 통일을 서두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은 당장 통일을 추구하기 보다는 한반도에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상호위협을 해소하고 남북한이 화해·협력하면서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통일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나는 1995년에 『한반도 3단계 통일론』을 저술한 바 있습니다. 1단계는 일종의 독립국가연합의 단계이고, 2단계는 연방체제 아래 남북이 광범위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이요, 3단계는 완전통일의 단계인 것입니다. 나의 이러한 통일방식은 앞서 말한 빌리 브란트 전 총리 등 독일의 지도자로부터도 많은 찬성과 격려를 받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자유대학 교수 및 학생 여러분!

나는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아직까지도 개방과 변화를 망설이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3가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북한의 무력도발을 절대 용납치 않는다. 둘째, 우리도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셋째, 남북이 화해협력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햇볕 정책의 핵심이며 냉전종식을 위한 주장입니다. 우리는 확고한 안보를 유지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화와 화해·협력이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햇볕정책의 기초 위에서 우리는 북한에게 세 가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다. 둘째, 북한의 경제회복을 돕는다. 셋째, 북한의 국제적 진출에 협력한다. 그 대신 북한도 세 가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남 무력도발을 절대 포기해야 한다. 둘째, 핵무기 포기에 대한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셋째,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야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고 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포괄적 접근방안입니다. 우리는 이를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 속에 북한에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북한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Win-Win)정책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독일을 포함하여 전 세계가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 러시아, 베트남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지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전쟁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교류하는 가운데 북한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 역시 북한의 굶주린 동포들의 참상을 TV화면으로 보면서 눈물을 금치 못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북한이 피폐한 경제를 회복하여 굶주린 북한동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주민들의 생활

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우리는 열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거부로 비록 정부간의 대화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대북한 교류나 협력을 환영하며 필요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경제·문화·체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남북간 교류 협력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18만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북한에 있는 금강산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남북간의 교역도 작년에는 사상최고인 3.4억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100개가 넘는 남한의 중소기업이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투자도 시작되거나 협상중입니다. 금년에는 서해공단의 건설, 전자제품공장과 자동차 조립공장 등이 남한의 대기업의 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문화·스포츠의 교류도 활발합니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작년에 여러분이 계신 이곳 베를린에서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갖고 관계개선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머지 않아 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일본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북한과의 국교개시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어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하고 자신을 위한 경제개방에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교수 및 학생 여러분!

나는 오늘 뜻깊은 베를린 자유대학을 방문한 이 자리를 빌려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이루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한간에는 정경분리원칙에 의한 민간경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로, 항만, 철도, 전력,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또 정부 당국에 의한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민간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난은 단순한 식량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료, 농기구 개량, 관개시설 개선 등 근본적인 농업구조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안정된 투자환경 조성, 그리고 농업구조 개혁은 민간경협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당국간의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 현단계에서 우리의 당면 목표는 통일보다는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힘이 닿는 대로 북한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북한은 우리의 참 뜻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화해와 협력 제안에 적극 호응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북한은 무엇보다도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노령으로 계속 세상을 뜨고 있는 이산가족의 상봉을 더 이상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넷째, 이러한 모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미 2년전 대통령 취임사에서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해 특사를 교환할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특사 교환 제의를 수락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당국자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책을 성의와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입니다. 독일을 위시한 국제사회도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남북한간 회해와 협력이 조속한 시일내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더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 및 학생 여러분!

한국에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는 서로 연민의 정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독일과 우리 대한민국은 민족의 분단이라는 크나큰 아픔을 같이 경험한 인간적인 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한국 국민은 이러한 아픔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족 통일의 위업을 먼저 이룩한 독일 국민에 대하여 깊은 존경심을 표시하며 여러분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배우고자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군사독재자의 억압속에 신음할 때 독일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우리를 성원해 주었습니다. 나는 독재자와 싸우다 다섯 번의 죽음의 고비와, 6년의 감옥살이, 30년의 망명·연금·감시하의 생활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독일 국민과 독일의 지도자들은 내 일과 같이 나와 한국의 민주인사들을 적극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내 깊은 마음으로부터 뜨거운 감사를 드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한국의 민주화는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한반도의 통일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여러분의 성원은 계속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한국민은 언제까지나 가장 충실하고 우정이 넘친 친구로서 독일 국민과 베를린 자유대학 여러분들과 함께 새천년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3) 김대중 대통령 CNN 회견 기초연설 (1999.5.5)

김대중 대통령 CNN 회견 기초연설

햇볕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기대

‘제10회 World Report Contributors Conference’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대통령 취임 이후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나와 우리 국민에게 보여준 격려와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여 동안 한국은 참으로 험겨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온국민이 함께 고통을 나누며 강도높은 경제개혁을 추진해 왔고, 이제 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개혁을 보다 철저히 완수하여 한국 경제를 본격적인 재도약의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곧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한국’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북한 포용정책, 즉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 포용정책으로 남북관계는 대한민국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으로 상징되는 대북 접촉으로 약 6만명이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한 해 동안 3,300명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지난 9년 동안의 방북인원 모두를 합한 2,400명을 훨씬 상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활발한 인적교류는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도 매우 필요하고, 또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남북한과 미·중이 참여하여 열리는 4자 회담과 판문점 장성급 회담,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미·북 회담 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 당국간 회담의 재개를 위한 분위기도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작년 헌법 개정을 통해 개인소유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동해안 잠수정 침투사건이 발생했고, 미사일 발사나 금창리 지하의혹시설 같은 부정적인 일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결코 북한이 선의만을 가지고 대하리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 대하여 성의를 가지고 대하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공정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대북 포용정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런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을 작년 두 번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설명했고 적극적인 지지를 얻은 바 있습니다. 일본의 오부치 총리로부터도 지지



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장쩌민 주석도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이 최선의 대안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러시아도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달 중 옐친 대통령을 만나서 이를 재확인할 작정입니다.

세계의 언론인 여러분!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지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분단의 원인이 된 냉전적 국제질서는 미국과 러시아의 화해로 오래전에 종식되었습니다. 오직 한반도에서만 적대와 반목 속에서 대결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냉전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이룩되기 어렵습니다.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의 다섯 가지 과제가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과 공조를 바탕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첫째, 남북간 대결과 불신의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이룩한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 함을 뜻합니다.

둘째,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 꼭 서울을 거쳐 평양에 가야 한다거나, 미·일보다 우리가 먼저 북한을 접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전임정권들과는 그 입장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선 미·북간의 제네바합의를 쌍방이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상호 위협을 감소시키고,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북한이 안심하고 변화와 개방을 추진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미·일·중·러 등 한반도 냉전과 관련된 국가들은 물론 가능한 많은 세계의 국가들이 북한과 교류하여 북한에 햇볕이 많이 들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한반도에서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통제·제거하고 군비통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핵심이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입니다.

다섯째, 현재의 정전체제를 남북간의 평화체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남북이 서로 오가며 돕고 나누는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 상황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의 다섯 가지 사안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근본문제로서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모든 당사자들이 안보는 물론 정치·외교·경제·통상 등 관련사안을 포괄적으로 주고받는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문제와 같이 긴급한 당면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근본적인 문제를 병행해서 해결할 때만이 북한은 안심하고 자기 손에 있는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의 언론인 여러분!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북한에 대해 그의 호의를 기대하는 그 어떤 환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북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을 포기하게 하고, 북한 스스로 평화공존의 길을 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포괄적 접근과 대북 포용정책은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문제는 7천만 한민족에게는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민족의 뜻에 따라 남북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4) 김영삼 대통령 광복절 제50주년 경축사 (1995.8.15)

김영삼 대통령 8·15 광복절 50주년 경축사

“통일은 진정한 광복의 완성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북한동포와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오늘 뜻 깊은 광복 50주년을 맞아, 민족사에 새 지평을 열자는 굳건한 결의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꺾전에는 잃었던 국권을 되찾은 기쁨으로 독립만세를 외치던 반세기전 그 날의 환호가 생생합니다. 우리의 가슴은 온갖 고난을 뚫고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반세기에 대한 깊은 감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우리 민족의 위대한 시대로 만들자는 굳은 다짐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선열들의 축복과 7천만 겨레의 기대가 이 자리에 충만해 있습니다. 이 경하스러운 날을 맞아, 나는 먼저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신명을 바치신 애국선열들을 추모하며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이 나라를 만들기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해 오신 국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천만 동포 여러분!

우리 겨레에게 지난 50주년은 가혹한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우리는 불굴의 의지로 이를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는 민족분단과 동족상잔이라는 엄청난 비운을 안은 채 국가 건설의 대정정에 나서야 했습니다. 물려받은 빈곤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생존마저 위협 받아야 했던 「절대빈곤의 시대」를 헤쳐 나와야 했습니다. 극단적인 남북대치와 군사독재 아래 민주주의가 질식하던 「어둠의 시대」를 뚫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식민통치의 사슬을 끊던 불같은 투혼과 강철같은 의지로 우리는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불과 한 세대 남짓한 짧은 기간에 우리는 가장 가난한 나라로부터 이제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민주의 씨앗이 싹트기조차 어렵던 그 매마른 땅 위에 문명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웠습니다. 민족의 자존을 크게 드높이고, 민족사의 정통성을 확고히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의 당당한 중심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유와 풍요의 민주공화국을 세우고자 했던 선열들의 소망이 마침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저력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낸 것입니다.

내외 동포 여러분!

우리의 성취가 이처럼 빛나는 것임에도 우리의 광복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북의 민족성원 모두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의 완성일 것입니다.

통일의 큰 길을 열기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평화없이 통일된 조국은 물론, 민족의 장래 또한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민족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반드시 남북 당사자간에 협의, 해결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지킬 책임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국가들의 협조와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비롯한 모든 남북간의 합의사항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첫 걸음은 신뢰구축이며, 신뢰는 서로 약속한 것들을 지키고 실천에 옮기는 데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같은 기본원칙을 밝히면서 남과 북이 지금의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광복 50주년이 되는 올해야말로 남북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해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나는 북한이 조속히 안정되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오고, 남북간에도 신뢰가 증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평화통일은 우리 모두의 절실한 염원이지만, 그것을 추진하는 것은 냉엄한 현실의 과제입니다.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환상적인 기대도 성급한 포기도 모두 금물입니다. 꾸준한 인내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후략>



■ (5) 김영삼 제14대 대통령 취임사 (1993.2.25)

김영삼 제14대 대통령 취임사(1993.2.25)

평화와 협력의 시대 천명

<전략> 7천만 국내외 동포 여러분. 저는 역사와 민족이 저에게 맡겨준 책무를 다하여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상적인 통일 지상주의가 아닙니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입니다. 김일성 주석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 협력할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됩니다. 세계는 대결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과 국가 사이에도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김 주석이 참으로 민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남북한 동포의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원한다면, 이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 한라산 기슭에서도 좋고, 여름날 백두산 천지 못가에서도 좋습니다. 거기서 가슴을 터놓고 민족의 장래를 의논해 봅시다. 그때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원점에 서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민족의 긍지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5백만 해외동포 여러분, 금세기 안에 조국은 통일되어, 자유와 평화의 고향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국내외에서 힘을 합하여 세계 속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자랑스런 한민족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후략>

(6) 노태우 대통령 평통자문회의 제5기 출범식 개회사 (1991.7.12)

노태우 대통령 평통자문회의 제5기 출범식 개회사

이제 統一對備態勢 서둘러야

친애하는 民主平和統一諮問委員 여러분,

오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기 出帆會議을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는 地方自治時代의 개막으로 주민이 직접 뽑은 5,000여 명의 地方議會 의원이 새로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與野 정당과 사회단체, 주요 職能團體와 국내외 각 지역을 망라한 지도적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이제 ‘민주평통’은 온 겨레의 統一意志를 실천하는 명실상부한 범국민적 통일기구로서 새로운 位相을 갖게 되었습니다.

통일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 시기에 민주평통이 이처럼 믿음직한 모습으로 새로운 출범을 하게 된 것은 마음 든든한 일입니다.

민주평통은 온 국민의 지지와 신뢰 위에서 겨레의 통일역량을 결집하여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求心體가 될 것입니다.

평화통일 자문위원 여러분,

지난 2~3년새 세계는 이 세기를 매듭짓는 혁명적인 變化를 거듭했습니다.

우리 겨레와 국토의 분단을 가져온 冷戰體制가 그 바탕으로 무너졌습니다.

소련과 동유럽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억압하는 1黨獨裁體制는 잇따라 허물어졌습니다.

자유와 번영을 향한 인간의 열망은 東西世界를 갈라온 철의 장막을 걷어냈습니다.

이 큰 변혁 속에 독일은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독일의 통일이 것처럼 빨리 올 것으로, 그리고 그렇게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로 달리 살아 온 두 독일은 하나로 통합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나 독일민족은 流血도 左右翼의 투쟁도 없이 통일의 偉業을 평화와 평온 속에 이루었습니다.

세계를 바꾸고 있는 이 大變革의 물결은 이제 우리가 사는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도 밀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소련·중국·일본 등 이 지역 관계국가들은 냉전의 오랜 膠着狀態를 타개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지역과 한반도에 冷戰時代를 종식하고 새로운 질서를 앞장서 이끄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의 변화에 앞서 미국을 비롯한 전통적 友邦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北方政策을 추진하여 소련과 중국, 동유럽으로 가는 넓은 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작년 나와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샌프란시스코 會談은 한반도에 냉전의 얼음을 깨는 地殼變動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1년새 3차례의 한·소 頂上會談으로 소련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우리와 협력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한반도에 어떠한 武力挑發도 반대하며 평화통일을 이루려는 우리 겨레의 소망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련은 남북한의 유엔 同時加入을 촉구하고 북한의 核開發을 억제하는 국제적 노력에 가세함으로써 그들의 결의를 실증했습니다.

나는 지난주 미국과 캐나다 방문을 통해 외부적 요인이 우리의 통일에 장애가 되던 시대는 지났다는 확신을 새로이 했습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는 통일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며 미국은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우리의 노력을 확고히 지지하며 이를 지원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평화통일 자문위원 여러분,

소련은 지난날의 북한 동맹국들이 우리의 統一政策을 현실적인 것으로 지지하고 미국과 온 국제사회가 북한이 閉鎖路線을 버리고 개방된 세계로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이 세계 속에 단 하나의 폐쇄된 땅으로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변할 것이며, 그 變化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이 종래의 완강한 태도를 바꾸어 올가을 우리와 함께 유엔에 가입하기로 한 것은 변화의 시발일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조치가 통일을 이룰 때까지 남북한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교류협력하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轉機가 될 것으로 보고 이를 환영합니다.

冷戰體制 자체가 붕괴된 상황에서 남북한이 여전히 상대방을 顛覆의 대상으로 보고 敵對的 行動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남북은 단절과 대결의 비극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남북한은 비정상적인 관계를 하루속히 청산하고 대화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돕고 신뢰하고 화해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북한의 동포가 자유로이 오가며 共存共榮하는 관계를 이루며 가면 우리민족의 강한 結集力으로 7,000만 겨레가 한 나라를 이루는 통일의 날은 머지않아 열릴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와 교류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홀로 살수 없는 이 세계에서 그들의 발전을 이루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개방된 세계로 나오는 것은 민족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도 우리 겨레가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福利에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位相에 서기 위해서도 해야 할 일입니다.

평화통일 자문위원 여러분,

한반도 문제는 이제 남북한이 스스로 해결의 길을 찾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南北高位級會談과 여러 통로의 회담과 대화가 지체없이 재개되어야 합니다.

남과 북이 만나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남북 동포간의 人道的 問題,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물론 정치·군사 문제의 해결도 남북간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 동포간에 분단의 고통을 덜고 이 땅의 평화와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북한측과 논의하고 전진적인 조치를 취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는 남북한이 共存共榮의 관계를 이루어 평화통일의 여건을 우리 스스로가 성숙시켜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하루빨리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첫째, 남과 북은 한겨레로서 民族的 同質性을 회복하기 위한 일들을 가능한 것부터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나는 북한측이 주장해 온 것처럼 남북의 동포와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光復節 경축행사를 함께 치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며 올 8월 15일을 기하여 그것이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남북한 공동주관으로 판문점에서 남북한 동포가 다 함께 모여 공동 경축행사를 개최하고 統一文化祝典을 갖는 것은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統一意志를 스스로 확인함은 물론 이를 온 세계인의 가슴에 심어줄 것입니다.

光復節의 뜻을 기리기 위해 남북의 젊은이들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統一代行進을 실시하고 남북의 각계 대표들이 서울과 평양에서 統一大討論會를 갖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북한측이 이러한 일을 실현시키는 데 우리와 뜻을 같이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남과 북이 40년이 넘는 오랜 단절 속에 生活樣式과 思考마저 달라지고 있는 가슴아픈 현실에 비추어 民族共同體를 회복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남과 북의 학자와 전문가가 民族文化遺産을 공동으로 조사·연구하고 언어의 이질화 현상을 해소해 가는 일 등을 추진하기 위해 ‘民族文化共同委員會’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둘째, 남과 북은 서로에게 절실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능한 일로부터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부모형제마저 오갈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불신의 벽을 허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두고 통일은 공허한 외침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과 북은 무엇보다 나이든 離散家族부터라도 생전에 고향을 찾고 血肉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남북간의 人的交流은 모든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촉진되어야 합니다.

나는 남과 북의 동포들이 서로를 올바르게 보고 이해하도록 텔레비전·라디오 방송부터 우선 상호교류하고 개방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서로 다른 송출 방식의 문제는 남북한이 비무장지대 안에 共同轉換施設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남북간의 交易과 경제협력, 과학기술 분야의 폭넓은 교류는 남북한 모두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남북 동포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일입니다.

셋째,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을 지양하여 한반도에 긴장의 시대를 종결하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남북한이 오는 9월 유엔에 함께 가입하는 것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남북이 한반도와 국제적 문제에 협조협력하는 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不可侵宣言을 채택하고 현재의 休戰體制를 平和體制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평화체제는 남북한이 當事者가 되어야 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련이 있는 국가들도 필요한 협조와 공동의 노력으로 이를 확인하고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평화통일 자문위원 여러분,

우리는 해방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하루아침 남에 의한 分斷을 감수해야했습니다. 그 고통과 비극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통일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주도적 노력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분단의 시대는 이 세기 안에 막을 내릴 것입니다.

和解와 協力の 물결이 서로를 가르는 모든 장벽을 허물고 있는 이 세계에서 自由와 繁榮을 이루고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를 이끌고 있는 우리의 역량이 통일의 여건을 성숙시키고 있는 이제 한반도만이 冷戰으로 얼어붙은 분단된 땅으로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統一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流血이나 엄청난 비극을 수반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통일을 평화와 질서 속에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의 和合 속에 이루려 합니다.

우리가 主唱하고 이끌려 하는 통일의 방향은 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세계의 변혁 속에 맞고 있는 이 통일의 기회를 살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絕對絶命의 召命입니다.

우리가 분단의 비극을 안은 것은 우리에게 힘이 없었고 세계의 변화를 올바르게 보지 못했으며 그나마 내부적 분열로 우리가 뭉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統一의 對備態勢를 서둘러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은 통일에 들 비용과 노력, 통일과정에서 맞게 될 도전에 대비하고 통일 한국의 位相을 생각할 때입니다.

국민 각계각층을 대표하고 지역주민의 민주적 의사에 따라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된 '민주

평통'은 이 모든 일을 밀고 나갈 中樞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평통 여러분이 7,000만 겨레에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줄 통일의 횃불을 높이 들어 민족의 統一力量을 결집하는 선봉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땅에 분단과 불안의 어두운 시대가 가고 평화와 통일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믿음을 나눕니다.

우리는 통일을 향해, 민족의 밝은 미래를 향해 온 국민과 함께 힘차게 전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 (7) 노태우 대통령 광복절 제45주년 경축사 (1990.8.15)

노태우 대통령 제45주년 광복절 경축사 (1990.8.15)

<전략> 동포 여러분,

우리는 인내와 성실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교류와 협력을 실현할 것입니다.

남북간의 군사대결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상호신뢰를 바탕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군사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제한없이 북한과 협의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는 남북간의 무력사용 포기선언과 불가침협정의 체결, 현재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와 서울과 평양에 상호 상주대표부를 설치하는 문제 등 모든 문제에 관해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논의할 때가 왔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남북대결을 지양하며 민족화합의 시대를 열기 위해 군비통제도 진지하게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다음날 열기로 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대화가 진전되기를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후략>

(8) 노태우 대통령 제43차 유엔총회 연설 (1988.10.18)

노태우 대통령 제43차 유엔총회 연설

<전략> 의장,

나는 지난 8월 광복절에 즈음하여 북한의 김일성 주석에게 직접 만나 회담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분단 이래 남북한은 평화와 통일방안에 관하여 상이한 수많은 제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남북의 최고책임자가 아무 전제조건 없이 직접 만나서 쌍방의 견해와 입장을 털어놓고 논의함으로써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한 타협의 실마리를 찾는 데 있습니다.

양측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제도화하고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창출하기 위한 공동의 토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일성 주석이 최근 남북정상회담에 관해 반응을 보이는데 대하여 주목하면서, 나는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평양을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간의 기본적인 상호신뢰와 안전보장의 틀을 마련한다는 견지에서 불가침 또는 무력불사용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선언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군사적 대결을 지속하여 온 남북한간의 관계를 상호신뢰와 공존공영의 관계로 대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틀이 설정되어야 하며, 또한 이는 남북 최고책임자간에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남북간의 불가침선언이 있기 전이라도 북에 대하여 먼저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남북한은 오늘날과 같은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정된 평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와 통일실현 방안, 남북간의 교류협력, 군비축소 등 군사문제를 포함한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타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후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구체적 방안도 이 회담에서 강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장,

남북한간의 문제는 분명히 우리 민족의 자주적 역량에 의해 해결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결구조로 인하여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를 떠나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반도에 안정된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에 화해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서울과 평양이 한반도의 평화와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당사국들과 더욱 합리적이며 정상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전통적인 우방국들과 앞으로도 계속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긴밀한 협의와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한국은 과거에 이념적 차이로 인하여 상호관계가 소원하였던 중국, 소련 그리고 동유럽의 여러나라들과도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상호존중과 평등의 원칙위에서 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번영에 기여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상호 대화와 이해의 통로를 통해 분쟁의 요인을 해결하며 국민간의 우의와 협력을 넓혀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나는 지난 몇 개월에 걸쳐 중국과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우리와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에 전진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합니다.

나는 우리나라와 오랜 이웃인 중국이 반세기에 걸친 단절의 벽을 넘어 교류와 협력관계를 넓혀가고 있는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한소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최근 상호협력관계가 계속 확대 심화되어온 많은 제3세계의 비동맹국가들과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유대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개발도상국가와는 우리의 성장, 개발의 경험과 기술을 기꺼이 나눌 것이며 우리의 힘이 자라는 데까지 최선의 협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제3세계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면 같은 발전과정을 걷고 있는 우리의 보람 일 것입니다.

의장,

이제 태평양지역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생동력과 발전에의 의지, 국제간의 협력강화로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랜 동양문화의 요람이며 태평양지역의 한 중심인 동북아시아는 지난 1세기를 통하여 청일전쟁과 로일전쟁으로부터 태평양전쟁, 그리고 한국전쟁과 오늘의 긴장에 이르기까지 세계평화의 시금석이 되어 왔습니다.

나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없이 세계의 평화가 없으며, 이 지역국가 간의 협력없이 태평양 번영의 시대는 열릴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동북아에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의 공고한 바탕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 일본, 그리고 우리 남북한으로 동북아 평화협의회의를 열 것을 제의합니다. <후략>

(9)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7·7 특별선언’(1988.7.7)

노태우 대통령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7·7 특별선언

친애하는 6천만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 온 겨레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새 공화국의 정책을 밝히려 합니다. 우리민족이 남북분단의 고통을 겪어온 지 반세기가 가까워 옵니다. 분단의 역사는 우리 민족에게 슬한 시련과 고난을 주었으며 민족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남북분단의 장벽을 허물어 번영된 통일조국을 여는 길을 개척하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 겨레 모두에게 맡겨진 민족사의 소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이한 이념과 체제로 분단된 남북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렀으며 남북으로 갈라진 겨레는 분단 그날부터 오늘까지 서로가 서로를 불신, 비방하며 서로를 적대시하는 고통스런 분단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분단은 우리 민족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나 민족통합은 우리의 책임 아래 우리의 자주적 역량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의 밝은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민족전체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문화와 역사가 다른 민족 사이에도 과감한 개방과 교류의 새 물결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전쟁의 위협과 대결의 긴장이 상존하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야 할 역사적인 시점이라고 확신합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가 아직 비극적인 분단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남과 북이 민족공동체라는 의식을 등진 채 서로를 대결의 상대로 여겨 적대관계를 격화시켜온 데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며 겨레의 힘과 슬기를 모아 자립과 도전을 극복하면서 빛나는 역사와 문화전통을 창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로서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야말로 번영된 통일조국을 실현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이 길이 곧 민족자존의 길이이며 민족통합의 길입니다.

이제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민족적 유대를 강화해 나갈 적극적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결의 관계를 지양해야 합니다. 북한이 책임있는 성원으로 국제사회에서 기여하고 그것이 북한사회의 개방과 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남북은 상호간에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고 민족전체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6천만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 자주·평화·민주·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문화·경제·정치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내외에 선언합니다.

- ①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남북동포 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 ② 남북적십자회담이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들 간에 생사·주소확인, 서신거래, 상호방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주선·지원한다.
- ③ 남북 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 간 교역을 민족 내부교역으로 간주한다.
- ④ 남북 모든 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비군사적 물자에 대해 우리 우방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 ⑤ 남북간의 소모적인 경쟁·대결외교를 종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발전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한 남북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만나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
- ⑥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 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한다.

나는 이상과 같은 우리의 조치에 대해 북한측도 적극 호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북한측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 온다면 보다 전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아울러 밝혀 둡니다. 나는 오늘의 이 선언이 통일을 향한 남북 간의 관계발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6천만 우리겨레 모두가 슬기와 힘을 모은다면, 이 세기가 가기 전에 남과 북은 하나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공동체로 통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는 위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10) 전두환 대통령 1982년도 국정연설 (1982.1.22)

전두환 대통령 1982년도 국정연설

존경하는 國會議長, 그리고 議員여러분

第5共和國이 出帆한 지난 한해 동안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憲政의 基礎를 닦고 새 時代 新政治의 氣風을 드높이기 爲해 애써 오신데 대하여 本人은 깊은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중 략>

外交分野에 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外交的 努力의 目的은 世界舞臺에서 北韓과 부질없는 競爭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世界속에서 北韓을 外交的으로 孤立시키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利益을 犧牲시키면서 우리의 利益만을 固守하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外交의 窮極的 目標은 韓半島의 緊張을 緩和하고 恒久的 平和를 確保함으로써 나라와 民族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坦坦大路를 닦자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同盟國 및 友邦들과의 既存 友好協力關係를 더욱 擴大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今年는 美國과의 關係에 있어서 修交 100周年을 紀念하는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지난해 本人은 「레이건」 大統領과 直接 만나 두 나라間의 緊密한 紐帶를 다짐한 것을 土臺로 하여 이제 韓美關係는 盟邦으로서 뿐만 아니라 經濟·文化등 모든 分野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本人은 앞으로 다가올 100年을 向하여 두 나라間의 關係를 더욱 幅넓고 成熟한 同伴者 關係로 發展시켜 나가도록 最善을 다할 것입니다.

日本과의 關係에 있어서는 兩國이 相互尊重과 理解에 立脚하여 善隣友好協力關係를 繼續 發展시켜 나가는 것이 東北아시아의 平和와 安定에 緊要함은 勿論 兩國의 共同繁榮에도 必須的이라는 認識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도 大局의 次元에서 協力關係를 着實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距離에 있는 友邦으로서, 그리고 文化·經濟 등 多方面에서 相互 依存關係에 있는 두 나라가 緊密한 協力關係를 構築해 나가는 일은 自由陣營內의 結束이 過去 어느 때 보다는도 切實히 要求되고 있는 80年代의 俊嚴한 國際情勢 아래서 그 重要性이 더욱 增大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懸案中인 兩國間의 經濟協力關係 이러한 次元에서 兩國政府가 誠意있는 交渉을 繼續해 나간다면 바람직스럽게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觀點에서 最近 日本政府가



이 문제의 早期妥結을 爲해 積極的인 姿勢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多幸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밖에 政府는 本人이 「아세안」 國家들을 訪問했을 때 밝혔듯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處地에 있는 開發途上國들과의 協力關係를 더욱 發展시키고 가깝게는 이웃을 같이 하고 있는 아시아 國家로부터 멀리는 유럽·中東·아프리카 및 南美地域에 이르기까지 既存關係의 幅을 넓히는 努力과 새로운 關係의 定立을 위한 努力을 併行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政府는 앞으로 外交에 있어서 共產國家와 對話의 架橋를 構築하는데 力點을 둘 方針입니다.

現實的으로 韓半島에서 恒久的인 平和를 確保하는 데는 이를 共產國家와 對話를 通하여 相互立場에 關한 正確한 理解를 나누는 일이 매우 有益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엔 南北韓 問題에 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펼쳐진 歷史의 敎訓에 비추어 볼 때 南北韓 雙方중 어느 一方이 自己의 思想·理念·制度를 앞세워 自己가 願하는 方式의 統一만을 固執하는 限 統一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統一은 長久한 歲月에 걸쳐 한 핏줄, 한 歷史, 같은 文化와 같은 傳統을 이어온 하나의 民族이라는 立場에 서서 이를 解決하려 할 때라야 비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統一은 어느 特定階層이나 集團에 依하여 獨占的, 排他的으로 主導되어서도 안되고 武力 또는 暴力의 方法으로 追求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統一은 어디까지나 民族自決의 原則에 依據하여 各體의 自由意思가 反映되는 民主的인 節次와 平和的인 方法으로 成就되어야 한다고 本人은 믿어 疑心치 않는 바입니다.

本人이 지난해 1月 12日과 6月 5日 두 차례에 걸쳐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의 相互訪問과 直接會談을 提議했던 것도 바로 民主的인 節次와 平和的인 方法에 依한 統一의 길을 虛心坦懷하게 찾아보자는데 그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提議가 實現되도록 지금까지 기울여 온 努力을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할 것을 分明히 하면서 오늘 本人은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 會談이 實現될 境遇, 提示하려고 構想했던 統一方案을 밝힘으로써 北韓當局과 全世界에 對하여 우리의 참뜻을 理解하려는 機會를 賦與하고자 합니다.

平和統一을 成就하는 가장 合理的인 길은 南北間에 民族的인 和合을 이룩하여 民族全體의 統一意志를 한데 모아 統一憲法을 採擇하고 그 憲法에 따라 統一國家를 完成시키는 것이라고 本人은 確信하는 바입니다.

統一憲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雙方住民의 뜻을 代辦하는 南北 代表로 假稱 「民族統一協議會議」를 構成하고 그 機構에서 民族·民主·自由·福祉의 理想을 追求하는 統一民主共和國를 實現하기 爲한 統一憲法을 起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統一憲法 草案이 마련되면 雙方은 南北韓 全域을 걸쳐 民主方式에 依한 自由로운 國民投票를 實施하여 統一憲法을 確定·公布하고 그 憲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總選舉를 實施, 統一國

會와 統一政府를 構成함으로써 待望의 統一國家를 完成할 수 있을 것입니다.

統一祖國의 政治理念과 國號, 對內外政策의 基本方向, 政府形態와 國會構成을 爲한 總選舉의 方法과 時期 및 節次 등은 民族統一協議會議가 構成되어 雙方이 統一憲法을 起草하는 過程에서 討議合意할 問題들입니다.

우리가 構想하는 統一憲法草案은 民族統一協議會議에서 提示될 것입니다.

北韓側이 眞正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바란다면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民族統一協議會議에서 그들이 構想하는 統一方案草案을 正堂堂하게 내어놓고 우리 側節의 草案과 比較·檢討하는 가운데 하나의 單一案次을 만드는 節次에 同意하여야 할 것입니다.

南北雙方間에 이같은 統一憲法의 마련을 爲한 歷史的인 作業이 順調롭게 推進되려면 于先 信賴가 造成되어야 하고 民族生活의 모든 領域에서 統一을 沮害하는 要因들을 着實하게 解消시켜야 할 必要가 있다고 本人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南北雙方은 그동안의 民族自害의이며 非正常的인 關係에 終止符를 찍고 하루 속히 民族的 和合을 實現할 수 있는 民族自愛的인 正常關係로 轉換해야 할 것입니다.

以上과 같은 見地에서 本人은 南北 雙方이 무엇보다도 相互關係를 正常化하고 이 基礎위에서 民族和合을 具體的으로 實現해 나가기를 希望하면서 統一을 이룩할 때까지의 實踐措置로서 다음의 合意事項을 內容으로 하는 「南北韓 基本關係에 關한 暫定協定」을 締結할 것을 提議합니다.

첫째, 雙方은 장차 統一國家가 樹立될 때까지는 互惠平等이 原則에 立脚하여 相互關係를 維持해 나간다.

둘째, 雙方은 雙方間 紛爭問題解決에 있어서 모든 形態의 武力 및 暴力의 使用 또는 威脅을 完全히 止揚하고 모든 問題를 相互 對話와 協商을 통해 平和的 方法으로 解決해야 한다.

셋째, 雙方은 相互關係에 있어서 現存하는 相異한 政治秩序와 社會制度를 相互認定하며 서로 相對方의 內部問題에 一切 干涉하지 아니한다.

넷째, 雙方은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과 戰爭防止를 위하여 現存 休戰體制를 維持하면서 軍備競爭의 止揚과 軍事的 對峙狀態의 解消排置를 協議한다.

다섯째, 雙方은 分斷으로 인한 民族의 苦痛과 不便을 解消하여 民族的 信賴와 和合의 雰圍氣를 造成하기 위해 相互 交流와 協力을 通하여 社會的 開放을 推進해 나가기로 한다.

雙方은 離散家族의 人道的 再會問題를 包含해서 南北間의 自由로운 人的 往來와 多角的인 交流를 促進할 수 있도록 交易·交通·郵便·通信·體育·學術·教育·文化·報道·保健·技術·環境保存 등 諸般分野에서 協力하여 이를 통하여 民族의 利益을 贈進시키는 具體的인 努力을 傾注하기로 한다.

여섯째, 雙方은 統一이 이루어질 때까지 思想·理念·制度의 差異에 抱碍됨이 없이 全世



界 모든 나라들과 各其 締結한 모든 雙務的 및 多者間 國際條約과 協定을 尊重하며 民族의 利益에 關한 問題에 있어서는 서로 協議한다.
일곱째, 雙方은 閣僚級 全權代表를 任命하여 各其 서울과 平壤에 常住 連絡代表部를 設置한다.

雙方은 相互 協議에 의하여 連絡代表部의 任務를 具體的으로 定하며 自己側管轄領域에 駐在하는 相對便 連絡代表部의 任務遂行에 支障이 없도록 必要한 便宜와 協助를 提供한다. 本人은 北韓側에 하루속히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間의 會談에 呼應하여 이 자리에서 以上の 모든 問題들에 關하여 虛心坦懷한 協議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希望합니다.

또한 本人은 早速한 時日안에 閣僚級을 首席代表로 하는 南北 雙方의 高位代表團間에 豫備 會談을 開催하여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間 會談을 實現시키는데 必要한 節次를 마련할 것을 北韓側에 提議하는 바입니다.

大韓民國政府는 萬苦 北韓側에 이 같은 豫備會談開催 提議에 同意한다면 이 豫備會談에 所定의 代表團을 派遣할 모든 準備를 이미 갖추어 놓고 있다는 事實도 밝혀두고자 합니다.

<후 략>

1982年 1月 22日

大統領 全斗煥

(11) 한·미 공동성명 (1979.7.1)

한·미 공동성명 중 관련조항

<제10항>

양국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박대통령은 북한당국과의 생산적인 대화 재개를 위하여 1979년 1월 19일자 제의를 비롯한 한국정부의 최근 노력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카터」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박대통령에게 확약하고, 남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간 회담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제11항>

한반도와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회담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대화의 촉진과 긴장완화를 위한 명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결의의 증거로서 박대통령과 「카터」대통령은 대화의 촉진과 이 지역의 긴장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한 및 미국의 고위당국대표회의 개최를 제의하기로 공동 결의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촉진하고 또한 개최되기를 희망하는 이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양국 대통령은 한국 외무부장관 및 미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방식으로 북한 외상에게 이 뜻을 공동으로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제12항>

양국 대통령은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한국민의 평화적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남·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간 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박대통령은 1973년 6월 23일에 직접 발표한 정책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한국이 대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일괄성 있게 추구하고 있음에 유의하였다.

<제13항>

「카터」대통령은 북한의 주요 동맹국들이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확대시킬 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언명하였다. 카터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주요 동맹국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북한에 대하여 일방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이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지도 않고 평화를 증진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유념하였다.



<제14항>

양국대통령은 궁극적인 통일에 앞선 잠정조치로서, 남·북한이 공히 「유엔」에 가입하는 것이 남·북한 양 당국에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많은 대화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12) 박동진 외무부장관 성명 (1976.5.13)

박동진 외무부장관 성명

<전략>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시키고 진정한 평화정착을 이룩하기 위하여 북한측이 원한다면, 현 휴전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 확정하고 현행 휴전협정의 일방 당사자로 되어 있는 UN군사령부도 해체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 있고, 이를 위하여 모든 직접 관계 당사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가질 것을 제의하는 바 있다. 이러한 우리의 건설적인 입장은 30차 UN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에서도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

우리의 이러한 합리적인 제의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남북대화를 1973. 8. 23. 이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한국동란 이후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억제에 기여하여 온 휴전체제를 아무런 대안조치도 없이 파괴하려는 책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적화통일을 위한 군비증강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예의 주목하고 있으며, 금년 8월 개최예정인 비동맹 정상회의와 31차 UN 정기총회를 겨냥하여 북한은 허위선전과 각종 중상모략에 광분하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가 제의한 가장 손쉬운 남북 상호불가침협정 체결도 즉각 거부한 북한당국이,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 당사자로서 5천만 전체 한민족의 3분의 2 이상을 갖고 국력이 일진일보하는 대한민국을 외면하고 미국을 상대로 한 소위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는 행위는 한국문제를 한민족 스스로 대화를 통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약속한 7·4 남북공동성명 정신에 대한 정면 거부임을 북한이나 제3국은 똑바로 인식하여야 된다.

북한 당국자들이 진정으로 5천만 동포의 안전과 행복을 희구하며,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하여 온 겨레의 숙원인 자유와 평화적인 조국통일을 원한다면 대안없는 UN군사령부 해체나 대미 평화협정체결 같은 실현불가능한 획책이나 기만적인 국제선전에 세월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눈을 안으로 돌려 직접 당사자간 합의를 목표로 하는 대화의 광장에 하루속히 되돌아오는 동시에 남북회담 재개와 휴전협정의 대안모색을 위하여 이미 아축이 제의한 관계 당사자회의 등에 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임을 지적하고 북한측의 반성을 재삼 촉구하는 바이다.

제30차 UN총회가 한국문제에 관하여 채택한 결의 3390(A)에 포함된 아축의 제의는 아직도 유효하며,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문제해결방안이라고 믿으며, 당사자간의 건설적인 대화없이 효과적인 해결책은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참여나 당사자간의 대화없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것은 연목구어의 망상에 불과하며, 또한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입각한 평화적인 문제해결을 반대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부언해 둔다.

(13) 김동조 외무부장관 제30차 유엔총회 정치위원회 연설 (1975.10.21)

김동조 외무부장관 제30차 유엔총회 정치위원회 연설

<전략> 1975년 시초부터 북한정권의 지도자들은 점점 더욱 당돌하고 호전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의 대화를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공공연히 위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북한정권의 수괴인 김일성은 지난 4월 외국방문 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잃는 것은 휴전선이며, 얻는 것은 통일이다』라고 기고만장하여 공언하였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자기자신에 대한 개인승배에 도취한 자의 언동이며, 전쟁과 폭력에 몰두한 자의 언동인 것입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의 검은 구름이 우리 머리 위에 감돌고 있다는 현실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금 남북대화의 재개문제와 휴전협정을 보전하는 문제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보다 항구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문제에 대처하여야 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북한측의 입장은 부정적입니다. 분명히 북한당국은 「평화」나 「평화통일」이니 요란스럽게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책이 폭력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평화가 세계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들이 위선과 기만과 역설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는 제2의 천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들의 저의를 폭로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민족자결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민족자결원칙을 평화적으로 적용하는 유일한 실제적 방법인 남북대화의 진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들의 결의안 본문에서 대화에 관하여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엔군사령부의 즉각 무조건 해체를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 같은 조치가 그들 주장대로 휴전협정의 종료, 나아가서는 휴전체제 전체의 와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대안을 협상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대한민국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휴전협정의 보전을 저해함이 없이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허용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해 협상할 수 없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반적인 입장은 평화를 위한 교섭의 선행조건으로서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개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평화를 성취하는데 전쟁수단에 호소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들은 1975년 8월 17일자 각서에서 북한과 미국만이 휴전협정의 「실제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보다 장기적인 조치는 차치하고라도 휴전협정의 보전을 위한 조치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협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족자결을 지지한다는 북한이 어떻게 휴전협정 내지 한반도의 평화에 관한 제반문제를 단지 북한과 미국사이의 문제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체 한국인 3분의 2이상의 인구를 포용하는 대한민국을 배제한 한반도 평화조치에 대하여 운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대한민국이 휴전의 불가결한 당사자이며, 평화유지의 주당사자임은 누구에게 명백한 일이며, 그 이상 설명을 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은 대표 여러분의 지성에 대한 모독이며 그것은 평화에 대한 북한측의 터무니없는 모욕적 태도를 여지없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북한은 쌍무적인 협상을 통하여 남북간의 군사적 대결을 해소할 「실제적 조치」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그들은 남북대화의 즉각 재개에 동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그들 결의안에 열거된 「실제적 조치」를 협상하겠다는 양측의 직접협상을 위한 유일한 통로를 재개할 것을 아직도 거부한다는 것은 위선에 찬 언사라고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시종일관 그들의 입장은 이러한 자가당착과 뻔한 불성실과 기만으로 엮어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의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한국에는 휴전의 파괴와 전쟁의 재발이 초래될 것입니다. 북한정권이 말하는 「통일」이란 평화적 방법으로 두개의 실체로 하여금 자유로운 합의하에 결합시킨다는 자발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통일」이란 침략을 통하여 일방이 타방을 강제적으로 흡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북한은 또한 대한민국으로부터 모든 외군을 철수시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구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향유하는 고유의 주권행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며 이는 유엔현장의 가장 신성한 원칙중의 하나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간섭을 단호히 배격합니다. 북한의 주장은 북한으로부터 모든 외군이 철수하였으니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외군도 철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이비 논리로는 한반도의 군사적, 지정학적 현실을 아는 사람을 누구도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만일 필요하다면 북방국경을 바로 건너 주둔하고 있는 외군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어 실제로 그들의 땅에 외군을 주둔시킬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50년 한국동란 때 유엔이 한국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 2개월 이상 걸렸으나, 외군이 북한을 돕기 위하여 대대적으로 개입하는 데에는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왕에 즉,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 우리나라 국회는 주한미군 철수요구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의에 부응하여 모든 미군은 1949년 말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철수하였습니다.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극적이고 무분별하여 잔인한 기록일 것입니다. 즉 그로부터 6개월 후 북한은 남한에 대해 대대적인 군사침략을 감행함으로써 3년간에 걸친 쓰라린 한국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적나라한 그리고 불법적인 침략행위는 유엔의 정신을 우롱한 무력행사로서 유엔으로 하여금 사실상 유엔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도록 박차를 가하게 한 것입니다. 이성있고 양식있는 사람들과 선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단합하였으며, 그 결과로 나온 한반도에 대한 집단안전보장조치는 유엔의

역사에 하나의 명예로운 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엔이 똑같은 교훈을 두 번 다시 배우지 않기를 경건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은 전철을 밟게 된다』는 현명한 말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북한이 바로 북방국경선 너머 인접하고 있는 2개의 강대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북한의 호전적인 태도와 침략지긴 정책이야말로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남북간의 군사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북괴로부터의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한 우리 자신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우리 고유의 주권을 계속 행사할 것임을 이 회의장에서 명백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모든 주권국가의 권리이며, 국가가 그 국민을 보호해야 할 신성한 의무에 직접 연유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유엔헌정과 그 정신에 입각하여 그의 주권행사에 대한 어떠한 외세간섭도 이를 단호히 배격합니다. 본인은 북한측이 이 사실을 분명히 하여 둡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오산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평화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약점으로 오산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단합되어있으며, 어떠한 침략에 대하여도 우리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금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광복절 치사를 통하여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통일을 위하여 폭력이나 무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반도의 평화정착 보다 더욱 절실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곧 평화적인 조국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가 정착되지 않은 곳에 평화적 통일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언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정부는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통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로서 다음 사항을 제의코자 합니다.

첫째는 현재 휴전협정을 보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휴전체제는 한반도 평화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일차적이고 가장 긴급한 과제는 어렵게 이루어진 그리고 불안정하나마 귀중한 이 협정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정부는 현행 휴전협정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와 그 산하 유엔군 철수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휴전협정의 유지에 직접 관련된 당사자들 간에 회의를 개최하자는 것입니다. 본인이 금년 6월 27일 언명한 바 있거니와,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라도 타방 당사자들과 회동할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와 유엔군의 철수가 1976년 1월 1일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금년말 이전에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는 진정으로 희망합니다.

셋째로, 우리 정부는 휴전협정을 대치하고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위한 협상을 포함하여 기타 조치를 고려할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남북대화를 주도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남북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본인은 북한측이 협상을 위한 이러한 건설적

제의를 신중히 고려하고 수락할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긴장완화와 궁극적 화해를 위한 유일한 실제적 방법인 남북대화를 즉각 재개하자는 것입니다. 남북대화없이 민족자결이니 민족문제의 자주적 해결이니 하는 북한의 모든 언동은 위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화를 통해서만 전쟁의 상처와 우리에게 강요된 분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만, 남북한은 한없는 적대와 대결로부터 벗어나 화해의 희망찬 광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971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에 의하여 설치된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한 대화는 1973년 8월 북한측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기한 중단되었습니다. 한 주일 전인 지난 10월 13일 남북조절위원회의 서울측 공동위원장 대리는 북한측 공동위원장에게 보낸 통지문을 통하여 거듭 조절위원회의 조기개최를 촉구하였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희망에도 불구하고 북괴는 우리의 남북대화 조기재개토의를 10월 17일 다시 한번 거부함으로써 우리를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본인은 남북대화가 중단되어 있는 한 남북간에 현존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한 어떠한 해결도 가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우리 정부가 대화의 재개에 어떠한 선행조건도 붙이지 않고 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북한당국이 그 무슨 구실을 내세울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제의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후략>

(14) 박정희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1974.1.18)

박정희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남북한 불가침 협정제의

질문 : 지금까지 북한과의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읍니다마는 북한에서는 평화 협정의 체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평화협정을 맺자』 하는 얘기는 내가 알기에는 지금부터 2, 3년 전인 1971년 8월에 「뉴욕타임즈」의 어느 기자가 중공을 방문했을 때 주은래 중공수상이 처음으로 끄집어 낸 이야기라고 나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북한측에서도 자주 이런 얘기를 들고 나왔고, 특히 남북조절위원회 석상에서 북한측에서는 평화협정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고 나왔읍니다.

그런데, 북한측에서 주장하는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그 어휘를 보면 「평화」란 말이 붙어 있어서 대단히 듣기 좋은데 과연 그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이런 협정을 맺자 하는 얘기가, 그것이 진심이나 하는 것이 우리는 문제다 이것입니다.

북한측에서 주장하는 평화협정의 내용을 따져 보면 한 서너 가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는, 제일 먼저 들고 나오는 것이 외군철수를 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한에 있는 미군은 전부 철수시키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북이 병력을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줄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서로 앞으로는 군비경쟁을 하지 말고 외부로부터 장비나 군수 물자도 들여오지 말자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협정이 체결 되면 지금 있는 휴정 협정은 없애 버리자, 여기에 평화라는 말을 자꾸 공산주의자들이 들고 나와서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이 평화란 어휘에 대해서 약간 현혹될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결국 남한에 있는 미군은 전부 다 나가고 군대는 10만 이하로 줄이고 앞으로 외부에서부터 무기는 절대 들어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휴전협정을 없애버리자, 이런 뜻인데 이것은 즉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간단히 얘기한다면 우리의 국방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놓고, 보다 더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무장해체를 시켜 놓고 앞으로 적당한 기회가 오면 무력으로 남침을 해서 적화통일을 하자, 하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의 제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꼭 6·25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며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화 평화하지만, 이 평화 협정의 내용을 보면 대단히 위험 천만한 음모와 계략과 함정이 여기에 숨어 있다,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6·25와 같은 그런 쓰라린 경험을 하지 않았든지, 그런 경험이 없다면 혹 한 번쯤 속을지 모르지만 6·25를 겪은 우리로서는 한 번은 속지마는 두 번 다시는 속지 않겠다 이 것입니다.

요즈음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남북한 연방제』운운하는 소리를 듣고 나오는데, 이것도 내용을 따져 보면 평화협정이라는 것과 꼭 같은 그런 수법입니다.

그야말로 양두구육적이다, 양 머리를 내놓고 뒷전으로는 개고기를 판다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평화 평화 해서 겉으로는 좋은 말을 내놓고 뒷전으로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경계해야 할 줄 압니다.

1953년 휴전협정 체결 당시에 그 협정조문을 보더라도 여기에는 분명히 외부로부터의 무기반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휴전협정이 되던 그날 이후에는 외부로부터 남한이나 유우엔군측이나 공산측이나 무기를 들여와서는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공산측에서는 이것을 먼저 위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무기를 자꾸 반입하기 때문에 유우엔측에서 여러 번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지만, 공산측에서는 듣는 체 만 체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조문은 죽은 조문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공산주의자의 조약이라든지 협정이란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고, 이것은 오늘날 월남 휴전협정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휴전협정 체결 후 1년이 됩니다마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하루에도 수십 번 위반 사건이 있고, 수십 번 전투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라는 어휘에 대한 개념에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평화하고는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쟁이라는 것은 완전히 포기를 하고 다시는 서로 침략을 하지 않는다, 무력을 가지고 대결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평화라고 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자기들이 어떠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시간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평화』운운하는 얘기를 듣고 나옵니다.

그 동안에 자기들은 무엇을 하느냐, 모든 전쟁 준비를 해서 준비가 되면 또 도발을 한다, 이것은 하나의 위장 전술이다, 그래서 북한측에서는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들 들고 나와서 요즘에 와서는 이것을 하나의 정치 선전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은 지금 전쟁을 원하지 않고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평화 협정을 체결하자고 남한에 제의를 했는데 남한에서는 이것을 반대를 한다, 자기들은 평화를 원하는데 남한에서는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늘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식이 똑같은데 만약에 그들이 진심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평화 협정 같은 것을 서로 맺지 않더라도, 지금 있는 휴정협정만 잘 준수하더라도 나는 전쟁은 막을 수 있다, 또 7·4 남북 공동 성명의 정신을 남북이 성실히 이행한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평화정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평화라는 것은 무슨 협정이다, 조약이다 하여 종이 한 장에 서명을 했다고 해서 보장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 서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히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사만 분명히 있다면 협정이 없더라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휴전 협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을 했느냐 하는 것을 반문하고 싶습니다. 휴전 후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가 알기에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1만3천여 번이나 휴전 협정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협정에 그러한 조문이 없어서 위반을 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또한 7·4 공동 성명을 그들이 얼마나 성실히 지켰느냐, 7·4 남북 공동성명을 내놓고도 최근에 와서 지금까지 아무 말썽이 없었고 조문에도 명시되어 있는, 서해 해역을 자기들 관할 해역이라고 강변하면서 도발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7·4 공동 성명의 정신이나 이것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남북의 평화 정책을 위해서 새로운 협정이 꼭 필요하다면, 또 북한 측에서 말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평화 협정 운운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기회에 『남북 간의 <상호 불가침 협정>을 체결하자』하는 것을 제의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이 <불가침 협정>은 그 골자를 서너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이 서로 절대로 무력 침범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약속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호 내정 간섭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하한 경우에도 현행 휴전 협정은 그 효력이 존속되어야 한다 하는 이 세 가지 골자만 포함된 불가침 협정이 체결된다면, 그리고 이것을 서로 성실히 준수만 한다면 나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은 예방이 된다고 봅니다. 평화는 유지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지키겠다는 성의와 의사가 없다면 이러한 협정을 열 번 스무 번 맺어 보았자 아무 소용도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가침 협정을 맺어 놓고 앞으로는 통일이 될 때까지 평화공존을 해 나가자, 그 동안에 서로 대화도 활발히 하고 교류도 하고 협력도 하여 통일의 기반을 하나하나 다져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 여름에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6·23 선언』의 정신과도 일치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통일을 아무리 갈망해도 하루 이틀에 통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

도 잘 알고 있고, 지금과 같은 남북의 관계로서는 당장 통일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시기라든지 여건도 성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통일이 될 때까지 평화 공존을 해 나가면서 그 동안에 남북이 활발히 대화도 하고 교류도 하고 협력도 하여 평화 통일을 위한 기반을 하나하나 다져 나가자, 이것이 『6·23 선언』의 정신이요 또한 우리의 주장입니다.

겉으로는 평화 협정을 내세우고 평화를 원하는 체하면서 뒷전으로는 탄전을 피우는 사고방식과 행동을 가지고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 정착은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북한측에서 주장하는 평화 협정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경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15)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 (1973.6.23)

6·23 平和統一 外交政策宣言

친애하는 5千萬 同胞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가 그 동안 推進해 온 南北對話의 경험과 國際情勢의 推移에 비추어 民族의 宿願인 祖國統一을 內外에 闡明하고자 합니다. 第2次 世界大戰後 우리는 解放이 되었으나 우리의 意思에 반하여 國土는 兩斷되고 民族은 分裂되었습니다.

당초 日本軍의 降伏을 받기 위한 軍事的 境界線이라고 하던 38線이 그 후 鐵의 帳幕으로 변하고 南과 北은 政治·社會·文化의 모든 分野에 걸쳐서 완전히 遮斷되어 버렸습니다.

그 동안 美·蘇共同委員會가 開催되어 38線의 解消와 統一民主政府樹立을 위한 交渉이 있었으나 美·蘇間의 根本的 對立으로 실패에 돌아가고 결국 韓國問題는 國際聯合에 提起되었던 것입니다.

1947年 第2次 國際聯合 總會는 南北韓을 통한 자유로운 總選舉의 實施를 決議하고 이를 위해 韓國臨時委員會를 派遣하였습니다.

그러나 北韓의 拒否로 南韓에서만 自由選舉가 실시되어 1948年 8月 15日, 大韓民國政府가 樹立되고 國際聯合에 의하여 유일한 合法政府로 承認받게 된 것입니다.

1950年 6月 25日, 北韓共產軍의 不意의 侵略으로 인한 韓國動亂으로 무수한 同胞가 生命을 잃고 全國土는 焦土化되었으며, 3年間의 戰亂 끝에 休戰은 成立되었으나 分斷은 繼續되고 統一은 遼遠해졌습니다.

나는 이 分斷으로 말미암은 同族의 苦痛을 덜고 平和統一의 基盤을 造成하기 위하여 1970年 「8.15宣言」에서 南北韓間의 緊張緩和를 促求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 8月 12日 우리측은 南北赤十字會談을 提議하였으며, 昨年 7月 4日에는 平和統一을 위한 南北共同聲明을 發表한 바 있습니다.

이리하여 南北對話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近 2年이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成果는 우리 期待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容易하고 實踐possible한 問題부터 하나씩 解決해 나감으로써 南北間의 障壁을 점차 除去하고, 具體的인 實踐을 통해서 相互間의 不信을 信賴로 代替해 나가는 것이 對話를 生産的으로 運營하는 길이며 平和統一을 成就하는 지름길이라고 主張해 왔습니다.

그러나 北韓側은 不信要素를 남겨둔 채 大韓民國의 安全保障을 위태롭게 할 軍事 및 政治問題의 一括 先決을 主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北韓側은 統一을 위한 南北對話의 進行中, 밖으로는 사실상 祖國의 分斷을 固定化시키는 行動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南北關係의 現狀으로 보아, 우리가 기대하는 바 南北對話의 結實을 얻기까지에는

앞으로도 많은 難關이 豫見되며 상당히 긴 時日이 所要되리라고 判斷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狀態가 그대로 放置된다면 결과적으로 不信의 深化와 緊張의 高潮마저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한편 최근의 國際情勢는 第2次 世界大戰後의 冷戰時代가 끝나고 現狀維持를 基調로 하는 列強들의 勢力均衡으로 平和共存을 維持하려는 것이 그 主된 潮流라 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이 地域에 있어서의 一聯의 周邊情勢의 發展으로 미루어 보아서도 國土統一이 短時日內에 成就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國際情勢는 우리 民族史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問題를 提起하고 있습니다. 즉 祖國統一이라는 民族至上의 念願과 目標를 國際情勢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追求할 것인가의 問題입니다.

친애하는 5千萬 同胞 여러분!

우리는 客觀的 現實에 대하여 能動的으로 對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祖國統一을 國內外的 현실 속에서 실현하는 현명하고도 確固한 方案을 樹立하고 이를 強靱하게 追求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現實을 直視하고 平和를 이 땅에 定着시킴으로써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自主力量으로 統一을 기필코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은 定策을 宣言하는 바입니다.

1. 祖國의 平和的 統一은 우리 民族의 至上課業이다. 우리는 이를 成就하기 위한 모든 努力을 계속 傾注한다.
2. 韓半島의 平和는 반드시 維持되어야 하며, 南北韓은 서로 內政에 干涉하지 않으며 侵略을 하지 않는다.
3. 우리는 南北共同聲明의 精神에 입각한 南北對話의 具體的 成果를 위하여 誠實과 忍耐로서 계속 努力한다.
4. 우리는 緊張緩和와 國際協調에 도움이 된다면, 北韓이 우리와 같이 國際機構에 參與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
5. 國際聯合의 多數會員國의 뜻이라면 統一에 障礙가 되지 않는다는 前提下에 우리는 北韓과 함께 國際聯合에 加入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 우리는 國際聯合 加入 前이라도 大韓民國代表가 참석하는 國際聯合 總會에서의 「韓國問題」 討議에 北韓側이 같이 招請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
6. 大韓民國은 互惠平等의 原則下에 모든 國家에 門戶를 開放할 것이며, 우리와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國家들도 우리에게 門戶를 開放할 것을 促求한다.
7. 大韓民國의 對外政策은 平和善隣에 그 基本을 두고 있으며 友邦들과의 既存 紐帶關係는 이를 더욱 公고히 해 나갈 것임을 再闡明한다.

나는 이상에서 밝힌 政策 중 對北韓關係事項은 統一이 成就될 때까지 過渡的 其間 中の



暫定措置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北韓을 國家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둡니다.

친애하는 南北同胞 여러분!

나는 우리 祖國이 처해 있는 오늘의 內外情勢를 냉엄히 評價할 때, 이 길만이 緊張緩和의 國際潮流 속에서 民族의 威神과 矜持를 維持하면서 祖國의 平和統一을 自主的으로 成就하는 지름길이라고 確信합니다.

슬기롭고 용감한 民族 앞에는 결코 失望이나 挫折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찬 勇氣와 슬기로 韓半島의 平和, 겨레의 繁榮, 그리고 祖國統一을 위해 힘차게 邁進합니다.

■ (16) 박정희 대통령 광복절 제25주년 경축사 (1970.8.15)

‘평화통일구상선언’

친애하는 국내의 5천만 동포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이 비할 데 없는 감격과 환희 속에 맞이했던 조국 광복, 그날로부터 꼭 4만세기가 되는 날입니다.

25년전, 전국 방방곡곡의 거리거리에서 태극기의 물결을 수놓으며 자유 해방 만세의 환호성을 소리 높여 외치던 그날, 우리 온 계례는 정녕 티끌만한 사심도 타산도 없는 순수한 애국 애족의 마음으로 다 함께 우리 민족 재기의 출발을 기뻐하였고, 우리 역사의 새로운 광영을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 억압과 예속에서 벗어나고 잃었던 조국을 되찾아,
- 다시는 조상들이 당했던 불우한 처지를 되풀이하지 않으리라 굳게 맹세하며,
- 새로운 번영의 민족 국가를 건설해 보겠다는 푸른 꿈을 펼쳐 보던,

그날의 벽찬 감격과 불타오르던 정열은 영원히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될 불멸의 봉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날로부터 어언 2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25년이란 세월은 한 인간이 유아기로부터 소년기와 청년기를 넘어서 이제 그 완숙을 눈앞에 바라보는 [한 세대]에 해당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한 민족 한 국가에 있어서도 그간의 성장도를 엄숙히 평가해 보아야 할 역사의 이정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제, 성년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내외에 크게 과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감회는 자못 무량한 바가 없지 않습니다.

지난 25년간의 광복 한국사는 한마디로 말하여 드물게 보는 [격동의 시기]였고,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 광복의 감격과 환희가 국토 분단의 충격과 불행속에 하루 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졌는가 하면,
- 번영의 희망과 기대는 북괴가 도발한 참혹한 전란 속에 한 조각 허공에 뜬 구름처럼 흩어져 버렸고,
- 나아가서 정부 수립 이후의 혼돈과 정체는 급기야 두 차례의 정치적 격동의 소용돌이를 치르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스스로의 손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타력에 의하여 주어진 광복을 분간 소화할 만한 주체적 역량을 갖추지 못하였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시련과 진통은 피할 수 없었던 필연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비극을 당하여 결코 좌절되지 않았으며, 역경 앞에 끝내 굴하지 않았습니다.

장구한 민족사를 통해서 수 없이 많았던 내외의 우환을 강인한 의지와 거족적인 항쟁으로 이겨내고, 조국의 독립을 보전하여 왔던 군세고도 역센 우리 민족 본연의 잠재적 역량이 시련 극복의 도정에서 서서히 그 빛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싹터 오른 민족적 자각이 응결하여 잠자고 있던 생명력과 창조력에 점화되고 민족 중흥의 전진 대열을 정비한 역사적 전환점을 이룩한 것이 바로 지난 60년대였습니다.

그로부터 8, 9년, 우리들은 조국 근대화 과업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온 세계는, 50년대의 동란 한국이 이제 신생국 발전의 모범 국가로 등장했다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우리 민족에 대해서 선망과 경애의 눈으로 쳐다보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보다도 값있게 생각하고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가 거둔 외형적 성과보다도 이것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무한한 저력을 재발견하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어떠한 큰 일도 이룩할 수 있다는 자신과 긍지를 일깨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60년대에 착수한 중흥 과업을 기필코 완수해야 할 사명의 70년대에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4반세기의 역사의 장이 시작되려는 이 순간, 우리 모두가 다시는 지난날의 역사적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하겠다는 결의와, 우리 후손들에게는 보람찬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일층 드높여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광복 제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온 겨레가 너, 나 할 것 없이 한결같이 가슴아프고 서글프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국토 분단의 비극입니다.

통일을 향한 민족적 비원은 지난 4반세기 동안 하루도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진 일이 없었으나, 한편 통일의 전망은 수많은 난관과 애로에 가로 막혀 결코 밝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김 일성과 그 일당의 민족 반역 집단이 북한 땅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광신적이며, 호전적인 공산 집단은 조를 광복의 첫날부터 전 한반도를 폭력으로 적화하기 위해서 시종 일관 광분해 왔습니다.

6.25 남침의 참혹한 동족 상잔에 이어서 휴전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7,800여건이 넘는 무력 도발을 자행해 왔고, 최근에는 무수한 무장 공비를 남파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실증입니다.

정녕, 김일성과 그 도당은 마땅히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전범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도당은 언필칭 평화 통일이니, 남북 협상이니, 연방제니, 남북 교류니 하는 등 파렴치한 상투적 선전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괴의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임 청천백일하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 그들 스스로가 저지른 전범 행위와 긴장 조성의 책임을 전가해 보려는 적반하장의 흥제인 것이며,
- 무장 공비 남파를 위장 은폐하고 소박한 일부 사람들을 현혹케 함으로써 감상적 통일론을 유발해 보려는 간사한 술책인 것이며,
- 국제 여론의 오도를 노리는 야비한 속셈인 것입니다.

이 허위와 기만에 가득찬 북괴의 작태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나는 단언합니다.

무릇, 공산주의의 정치 체제는 기본 인권의 유린과 철의 기골에 의한 전체주의적 일당 독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북괴 김 일성 체제는, 같은 공산권 내에서조차도 빈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형적인 극좌 모험주의와 역사 위조를 일삼는 개인 신격화가 판을 치는 폐쇄 사회입니다.

오늘의 북녘 땅은 그러한 정황과 공포가 휩쓰는 가운데 전쟁 준비에 광분하는 하나의 병영으로 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듯 비원인 조국 통일의 난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토 통일이 아무리 절실한 우리 민족의 지상 명령이라 하더라도 동족의 유혈을 강요하는 전쟁만은 피하여야 하겠고, 통일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꾸준한 인내와 최대한의 양식을 발휘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김 일성 일파의 전범 집단들이 끝내 무력 적화 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폭력적인 침략을 감행하여 왔을 경우에는 이를 단호히 격퇴할 수 있는 [힘의 배양]도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나는 이미 수차례 걸쳐서 통일 노력의 본격화는 70년대 후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기에 이르면 우리의 주체 역량이 충실과 국제적 여건의 성숙으로 통일의 실마리가 잡힐 수 있으리라고 내다보고, 특히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 체제도 시대의 진운인 자유화 물결에 의해서 스스로 변질될 것이며, 또한 우리의 자유의 힘이 북녘까지 넘쳐 흐를 것일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기를 전망하면서, 나는 광복 4반세기에 즈음한 뜻깊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평화 통일의 기반 조성을 위한 접근 방법에 관하여 나의 구상을 밝히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선행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즉, 북괴가 지금과 같은 침략적이며 도전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한, 그들이 무슨 수리를 하든 그것은 가면이요, 위장이요, 기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긴장 상태의 완화없이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의 접근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이를 보장하는 북괴의 명확한 태도 표시와 그 실천이 선행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괴는 무장 공비 남파 등의 모든 전쟁 도발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소위 [무력에 의한 적화 통일이나 폭력 혁명에 의한 대한 민국의 전복을 기도해 온 종전의 태도를 완전히 포기하겠다] 하는 점을 명백하게 내외에 선언하고, 또한 이를 행동으로 실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북괴가 수락,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유우엔]에 의해서도 명백하게 확인될 경우에는, 나는 인도적 견지와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남북간에 가로 놓인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도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북괴가 한국의 민주·통일·독립과 평화를 위한 [유우엔]의 노력을 인정하고 [유우엔]의 권위와 권능을 수락한다면, [유우엔]에서의 한국 문제 토의에 북괴가 참석하는 것도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구상에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북괴에 대하여 [더 이상 무고한 북한 동포들의 민생을 희생시키면서 전쟁 준비에 광분하는 죄악을 번하지 말고, 보다 선의의 경쟁, 즉 다시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공산 독재의 그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와 경쟁에 나설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내외 동포 여러분!

금년은 우리 나라가 처음으로 세계에 문호를 개방한 19세기 후반의 개항기로부터 근 백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1세기, 우리 민족은 낙후와 예속과 전란과 혼돈이 겹친 수난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그 시련을 용케도 참고 이겨냈으며,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중흥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녕 마지막 중흥의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한가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오늘로서 시작되는 앞으로의 4반세기를 넘기면 금세기의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기 2000년경의 세계와 그 속에서 우리 대한 민국이 서 있을 좌표가 어디이겠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때의 우리 조국은,

- 국토 통일을 이룩한지 이미 오래된 강력한 민족 국가로서,
- 온 국민이 다 함께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풍요한 선진 복지 국가로서,
- 세계사의 주류에 당당히 참여하고 기여해 나가는

보람찬 모습으로 변모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970년대는 이렇듯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우리 근대 민족사의 도정에서 민족 중흥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대의 중흥 과업을 성취하는 여부는 우리의 힘을 어느만큼 [생산적]인 목표에 집결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민족의 단결, 힘의 집중, 그것은 정녕 민족 중흥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당면 과제인 자립 경제와 자주 국방을 이룩하는 것도 민족의 단결이며, 민족의 염원인 국토 통일을 성취하는 것도 우리의 단결된 힘입니다.

국민 여러분!

25년 전 8·15에 구가했던 그 감격과 환희를 기어이 성취할 조국 통일의 그 날, 보다 더 벅차게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단결하여 전진합시다.

2

북한

【해제】

- 북한은 계급적 관점에 기초해서 평화를 2가지로 구분한다.
 - 하나는 이른바 ‘제국주의 국가’들의 억압에 의해 이뤄지는 노예적 굴종의 ‘부르쥬아 평화’이며,
 -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제국주의 국가’를 지구상에서 영원히 축출한 후 이룩할 수 있는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것이다.²

- 또한 북한은 ‘진정한 평화’는 협상과 같이 구걸하는 방법이 아니라 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에 의해서 이룩되는 것이며, ‘미 제국주의’와의 투쟁이 그 기본되는 것으로 간주한다.³
 - 이러한 평화관에 기초하여 북한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이 지속되는 한(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조건하에서) 한반도 평화는 노예적 굴종의 사이비 평화이며, 진정한 평화는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⁴
 -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평화’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안보동맹체제의 와해와 직결되어 있다.

- 북한의 이러한 ‘평화 신념’은 그들의 다양한 한반도 평화 제의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² 김일성, 『김일성 저작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 521;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p. 482-483.; p. 1163.

³ 위의 책, p. 745.

⁴ 엄국현, 윤금철, 『조선반도 평화보장문제』 (평양: 평양출판사, 2006); 심병철, 『조국통일문제 100문 100답』 (평양: 평양출판사, 2003).

- 1950년대: 남북간 평화협정 제의(1954.6.15 「제네바 정치회담」, 최종회의)
 - 1960년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한 남북평화협정 제의(1962.10.23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 회의 김일성 연설)
 - 1970년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남북 평화협정 제의(1973.4.15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 회의 김일 보고); 북·미 평화협정 체결(1974.3.25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 회의 채택 대미서한)
 - 1980년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북·미 양자회담 제의(1980.10.10 조선로동당 제6차 당대회 보고), 북·미 평화협정 체결 및 남북불가침 선언 동시체결을 위한 3자회담 제의(1984.1.10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 1986.1.1 김일성 신년사, 1988.11.7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정무원 연합회의, 「포괄적 평화방안」 제의), 「3군사 당국자(북한인민무력부장, 남한국방부장관, 유엔사총사령관) 회담」 제의(1986.6.9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명의 서한), 단계적 무력감축 제의(1987.7.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 1990년대: 북·미 평화협정 체결(1991.1.1 김일성 신년사),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북·미 협상 제의(1994.4.28 조선외교부 성명, 1996.2.22 조선외교부 대변인 담화문, 대미 잠정협정 제의), 북·미 평화보장체계수립 담화(1995.2.25 조선외교부 대변인 담화문)
 - 2000년대: 북·유엔(미국)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 후 남북간 군사문제를 토의(2000.9.18),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4자회담 유용성 언급(2000.10.12 북·미 워싱턴 공동공요니케), 체제보장을 전제로 북·미 불가침 협정체결 제의(2002.10.25 조선외무성 대변인 담화문), 유엔사 해체 및 평화협정체결 요구(2004.3.30 UN특별위원회 회의 북측 대표 연설), 대미 평화체제 수립 제의(2005.7.22 조선외무성 대변인 담화문)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남북 평화협정 제의에 출발하여 점차적으로 북·미 평화협정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들의 ‘평화전략’을 수정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미국(또는 주한미군)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면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 이는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는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 주요인이며 미국(또는 미국의 영향력)의 제거로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실제로 북한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그들 안보의 최대 위협요소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적화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해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북한은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킴으로써 근본적으로 아시아에서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까지 영구히 정복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 유엔사 해체 및 한·미동맹 관계 변화→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 변화→ 주한미군 철수 목표 달성을 그들 고유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실제로 북한은 ‘북·미 안보대화’라는 직접적인 대미 ‘투쟁의 틀’을 우선적으로 구축하여 여기에서 한반도의 주요 군사문제 즉,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주한미군 문제, 남북한군축 문제 관련 ‘협상전투’를 통해서 한·미 군사관계를 변화 또는 약화시키는 단계적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 1974년 3월 북한이 남북평화협정에서 북·미 평화협정 체결 요구로의 전환은 당시 베트남 전쟁 종결을 위한 파리 정치협상이 공산월맹과 미국의 양자회담 형태로 추진되어 주월 미군의 전면철수 목표를 달성하게 된 사실에 고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 베트남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4자회담 형식을 취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미국·월맹간 비밀협상이 추진되었으며 협상과정에서 분쟁 당사자인 월남이 철저히 소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 평화협정 체결 당시 월맹 당국자는 미군철수에, 미국은 교전상태 우선 중단 및 이 지역에서의 ‘명예로운 퇴진’에 각각의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월 미군 전면철수를 포함한 평화협정이 순조로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1) 조선외무성 대변인 담화문 (2005.7.22)

조선외무성 대변인 담화문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52년의 세월이 흘렀다.

원래 정전은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전제로 하여 이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반세기가 넘도록 조선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부당한 대조선정책에 기인된다.

미국은 정전직후인 1953년 11월 조선에 관한 미국의 최종목표는 《친미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며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의 과도적 목표는 정전체제를 유지하면서 남조선을 미국의 《군사동맹국》으로 만들어 전조선의 《공산화》를 방지하는 것이라는 《국가안전보장회의결정 NSC 170》을 채택하였다.

이 《결정》을 통하여 미국은 저들이 전조선을 차지할 때까지 정전체제를 무한정 유지하면서 조선반도의 분열을 지속시키는 것을 정책화하였다.

조선정전협정에 따르면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안에 체약쌍방은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 등의 문제들을 협의하게 되어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정전협정에 배치되게 1953년 10월 남조선과 《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하여 남조선에 대한 미군주둔을 고착시키고 그해 12월에는 정치회의소집을 위한 예비회담에서 일방적으로 퇴장하였다.

미국은 1954년 6월 끝내 조선문제와 관련한 제네바회의를 고의적으로 결렬시킴으로써 정전협정에서 예견했던 조선에서의 모든 외국군대철거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의 길을 영영 막아버렸다.

그 이후에도 미국은 조미사이의 회담에 남조선도 참가시킬 데 대한 3자회담제안을 비롯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하여 우리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제안과 발기들을 모두 반대하면서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긴장만을 추구하여왔다.

우리는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4자회담도 해보았지만 그것은 미국의 무성의한 태도로 하여 아무런 결실도 거둘 수 없었다.

이렇듯 조선반도에서 정전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정책에 의하여 동북아시아지역은 세기가 바뀐 오늘까지도 유일하게 랭전시기의 대결구도가 그대로 남아있는 세계 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고 있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랭전의 마지막유물을 청산하는 것은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로 되고 있다.



더우기 그것은 최근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되고 있는 조미사이의 핵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도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조선반도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핵문제의 발생근원으로 되고 있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며 그것은 자연히 비핵화실현에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 평화체제수립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 가야 할 로정으로 된다.

조선반도에서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곧 조선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과정으로 된다.

그러므로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수립과정은 반드시 조미사이의 평화공존과 북남사이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평화체제수립과정이 성과적으로 추진되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는데 기여하게 될 뿐 아니라 곧 재개될 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정도 결정적으로 추동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유관세력들이 평화체제수립과 관련한 우리의 정당한 주장에 응당한 주목을 돌리고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한다.

주체 94(2005)년 7월 22일

평 양

■ ■
 ■ (2) UN 특별위원회 회의 북측 대표 연설 (2004.3.30)

**“유엔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며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2004.3.30 UN 특별위원회에서 북측 대표 연설)

<전략> 우리는 유엔이 유엔현장에 배치되는 비법적인 기구를 해체하는 문제에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50여 년 전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의하여 ‘유엔군사령부’가 조작되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유엔현장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유엔이 ‘유엔군사령부’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유엔군사령부’는 철두철미 비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기구로서 실제상 미군사령부이며 오직 미국의 전략적 목적 실현을 위한 침략도구에 불과하다고 까밝혔다.

그는 유엔이 ‘유엔군사령부’ 해체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며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데 대한 유엔총회 제 30차 회의결의를 리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엔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며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2004.04.05, 6면)

【평양 4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3월 30일 유엔현장 및 기구역할강화에 관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 대표가 연설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오늘 국제관계에서는 강권과 일방주의로 말미암아 자주권존중과 주권평등의 원칙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으며 세계평화와 안전은 엄중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강자에 의하여 정의와 부정의, 선과 악이 ‘판결’되고 국제적기준이 제멋대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유엔과 세계여론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정부를 전복하는 일방적인 행위들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다.

현 국제정세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되게 유엔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권과 일방주의를 배격하는 것은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유엔의 역할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총회의 권능을 높이고 안보리사회를 개혁하는 것이다.

총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안보리사회의 결의들을 검토하고 해당한 권고를 제출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된다면 강권과 일방주의를 막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안전보장리사회개혁은 유엔성원국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발전도상나라들의 충분한 대표권과 안전보장리사회활동의 결백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유엔이 유엔현장에 배치되는 비법적인 기구를 해체하는 문제에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50여 년 전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의하여 ‘유엔군사령부’가 조작되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유엔현장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유엔이 ‘유엔군사령부’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유엔군사령부’는 철두철미 비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기구로서 실제상 미군사령부이며 오직 미국의 전략적목적실현을 위한 침략도구에 불과하다고 까밝혔다.

그는 유엔이 ‘유엔군사령부’ 해체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며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데 대한 유엔총회 제 30차 회의결의를 리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3) 조선외무성 대변인 담화문 (2002.10.25)

외무성대변인 담화, 조미사이의 불가침조약체결이 핵문제해결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

새 세기에 들어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정세에서는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북남, 조로, 조중, 조일관계는 새로운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였으며 반세기 이상 끊어 졌던 북남철도의 련결과 일본과의 과거청산을 비롯하여 지난 세기의 낡은 유물들을 없애기 위한 대담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우리는 변화된 현 정세와 우리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경제관리에서도 일련의 새로운 대책들을 강구하고 경제특구를 내오는 등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련이어 취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발전은 다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에 대한 실천적 기여로 된다. 그러므로 미국을 제외한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를 지지환영하였고 우리는 여기에서 큰 고무를 받았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미국과도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털어 버리고 평등한 립장에서 현안문제들을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얼마전에 미국대통령의 특사를 받아들였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특사의 방문을 통하여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긍정적인 정세발전을 역전시키려는 부쉬행정부의 적대적기도가 최절정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미국특사는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우리가 핵무기제조를 목적으로 농축우라니움계 획을 추진하여 조미기본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다고 걸고 들면서 그것을 중지하지 않으면 조미대화도 없고 특히 조일관계나 북남관계도 파국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너무도 일방적이고 오만무례한 미국의 태도는 놀라움을 자아 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적반하장격의 강도적론리가 우리에게 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면 미국은 크게 오산하였다. 조선반도의 핵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근 반세기전부터 미국이 세계제패전략에 따라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구하면서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방대한 핵무기를 저축해 놓고 작은 나라인 우리를 핵무기로 위협해 옴으로써 생산된 문제이다.

1994년 10월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었으나 미국은 그 리행문제에 대해 이미 말할 자격을 상실한지 오래다. 기본합의문의 제1조에 따라 미국이 우리에게 경수로발전소들을 2003년까지 제공하는 대신 우리는 흑연감속로와 그 련관시설들을 동결하게 되어 있



으나 우리가 핵시설들을 동결한지 만 8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경수로로는 기초구덩이나 파 놓은데 불과하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경수로 1호기가 완공될 계획이었던 2003년 연간 100만키로와트, 그 다음해부터는 연간 200만키로와트의 전력손실만 보게 되었다.

기본합의문의 제2조에 따라 쌍방은 정치 및 경제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 데로 나아가게 되어 있으나 지난 8년동안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경제제재는 끊임없이 계속 되어 왔으며 이제 와서는 우리를 <악의 축>으로 공격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기본합의문 제3조에 따라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공식담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게 되어 있으나 미국은 그러한 담보제공대신 우리를 핵선제공격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기본합의문 제4와 합의문에 따르는 비공개량해록 제7항에 따라 우리는 경수로의 <타빈과 발전기를 포함한 비핵부분품들의 납입>이 완전히 실현된 다음에 핵사찰을 받게 되어 있으나 미국은 벌써부터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일방적인 논리를 들고 나와 마치 우리가 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는 듯이 국제여론을 오도하였다.

이번에 우리는 비공개량해록을 이처럼 처음으로 공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결국 기본합의문의 4개조항 중에 미국이 준수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애초에 미국이 합의문을 채택할 때 리행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조만간에 붕괴되리라는 타산을 가지고 거짓수표하였는지는 미국만이 알 일이다.

그러나 부쉬행정부가 우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히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로서 조미공동성명과 조미기본합의문을 완전히 무효화시킨것이다. 부쉬행정부는 우리에게 대한 핵선제공격을 정책화함으로써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기본정신을 완전히 유린하였으며 북남비핵화공동선언을 백지화해 버렸다. 부쉬 행정부의 무모한 정치, 경제, 군사적압력책동으로 하여 우리의 생존권은 사상최악의 위협을 당하고 있으며 조선반도에는 엄청난 사태가 조성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 있으리라고 생각했다면 그보다 더 단순한 사고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대통령특사에게 미국의 가중되는 핵압살위협에 대처하여 우리가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해 주었다. 자주권을 생명보다 더 중히 여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미국의 오만무례한 처사를 놓고 이보다 더 알맞는 대답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쏘겠다고 달려드는 미국에게 그 무엇을 해명해 줄 필요가 없으며 그럴 의무는 더우기 없다.

그러나 우리는 최대의 아량을 가지고 미국이 첫째로, 우리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둘째로, 불가침을 확약하며 셋째로, 우리의 경제발전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것을 명백히 밝혀 주었다.

지금 미국과 일부 추종세력들은 우리가 무장을 놓은 다음에 협상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논리이다. 우리가 별거벗고 무엇을 가지고 대항한단 말인가. 결국 우리 보고 굴복하라는 것이다. 굴복은 죽음이다. 죽음을 각오한자 당할 자 없다. 이것이 선군정치를 끝까지 받들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우리의 입장은 시종일관하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는 조미사이에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핵문제해결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로 된다고 인정한다.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통해 우리에게 대한 핵불사용을 포함한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한다면 우리도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

작은 나라인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해결방식의 기준점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의 제거이다.

이 기준점을 충족시키는 데는 협상의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억제력의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될수록 전자를 바라고 있다.

평 양

주체91(2002)년 10월 25일

■ (4)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문 (1996.4.4)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D.M.Z. 불인정」 담화

지난 3월 29일 발표된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의 담화에서는 우리 인민군대가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전쟁전야에만 볼 수 있는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처하여 응당한 자위적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완충지대로 전환시킬 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인내성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상전인 미국의 비호 밑에 우리의 제안을 한사코 반대하고 북침적 발기를 당김으로써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더 이상 기대를 가질 수 없게 하였다.

남조선의 군사당국은 비무장지대 안에 핵무기와 자동무기를 반입하지 못하며 천명이상의 군사인원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정전협정의 요구를 무시하고 땅크와 각종 구경의 포, 핵무기들을 대량반입하고 수많은 무장인원들을 끌어들여 전개하였다.

남조선괴뢰들의 무분별한 책동은 지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100미터거리에 있는 비무장지대안의 경계초소에 대규모 군사시설물을 공개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지금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은 완충지대로서의 자기의 고유한 의무를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정전협정에 따라 설정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는 북침을 위한 무장지대로 하나의 새로운 공격출발진지로 전변되었다.

이러한 정세에서 우리도 정전협정에 규제되고 있는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와 관련한 조항을 일방적으로 더 이상 준수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의 자제력과 인내성에도 한계가 있다.

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는 위임에 의하여 비무장지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따르는 자위적 조치를 당면하여 다음과 같이 취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공표한다.

첫째로 조선인민군측은 정전협정에 의하여 지닌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한 자기의 임무를 포기한다.

둘째로 조선인민군측은 상기임무를 포기하는데 따르는 조치로서 판문점공동경비구역과 비무장지대에 출입하는 우리측 인원들과 차량들로 하여금 예정된 모든 식별표식을 착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한 책임은 정전협정을 난폭하게 유린하면서 비무장지대에서의 행동질서를 무법천지로 만든 자들이 지게 될 것이다.

(5) 조선외교부 대변인 담화문 (1996.2.22)

조선외교부 대변인 담화문, 대미 잠정협정 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낡은 정전체계를 대신하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 데 대한 제안을 내놓은 때로부터 2년이 되어온다.

우리의 제안은 조선반도에서 정세를 안정시키고 무력증강과 전쟁위험을 막는데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정전체제상태를 고려하여 냉전의 종식에 따른 새로운 안전보장 장치를 마련하여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려는 진지한 염원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

우리는 그동안 새로운 공고한 평화보장체제수립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듭되는 성의와 인내력을 발휘하여 일련의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등 일관하고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국제사회의 응당한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조선반도에서 평화보장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는 미국은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된 이후에조차 우리의 합리적인 제안에 적극적인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힘의 정책에 구태의연하게 매달리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위협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지금 미국은 남조선에 최첨단 무기들과 작전장비들을 대량 투입하면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하늘과 땅, 바다에서 우리공화국을 일거에 제압하기 위한 전쟁연습을 매일같이 벌이고 있다.

미국은 일본 및 남조선과 함께 삼각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으며 이른바 북의 위협을 구실로 미국과 남조선, 미국과 일본 합동군사연습을 거듭해 나섬으로써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냉전정책의 재현을 본격화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미국의 대조선압살정책에 편승하여 올해에도 연이어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대신하는 전례없는 규모의 각종 전쟁연습을 벌일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새해 벽두부터 본격적인 실천단계에 들어갔다.

이로 말미암아 오늘 세계적인 열점의 하나로 되고 있는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은 더욱 격화의 일로를 걷고 있으며 새전쟁발발의 긴박감은 시시각각으로 엄습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정전상태가 가까스로 유지되고 평화가 보장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공화국이 인내성있는 평화애호정책과 자제력의 결과이다.

평화와 평화에로 나아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선반도의 실태를 두고 남조선에서 안보문제처리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사태발전추이를 응당 냉철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와서 43년전에 나온 현 정전체계가 조선반도에서 안전보장문제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게 되었다.

사실상 냉전의 산물인 낡은 정전체제는 그것이 나온 이후 어느 한번도 조선반도의 평화에 기여한 적이 없으며 다만 우리와 미국 및 유엔 사이의 특수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물로 이용되었을 뿐이다.

더욱이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로 하여 정전협정이행의 유일한 감독기구로 되어있던 군사정전위원회 기능마저 마비된 상태에서 조선반도에서 안보를 위협하는 현 공백상태는 시급히 메꾸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미합의를 비롯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오직 우리와 미국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로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반적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한 숭고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안전하고 포괄적이며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려면 조·미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시종일관하게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의 대조선정책과 현 조·미관계수준을 고려하여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무장충돌과 전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인정한다.

이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전개된 제안을 내놓는다.

첫째로 조선반도에서 무장충돌과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정전상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조·미 사이에 잠정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잠정협정에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관리, 무장충돌과 돌발사건발생시 해결방도, 군사공동기구의 구성과 임무 및 권한, 잠정협정의 수정보충 등 안전질서유지와 관련되는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다.

잠정협정은 완전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정전협정을 대신한다.

둘째로 잠정협정을 이행·감독하기 위하여 판문점에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하는 조·미 공동군사기구가 조직·운영되어야 한다.

셋째로 잠정협정을 채택하며 조·미공동군사기구를 내오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해당 쪽에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

조선의 북과 남 사이에 이미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가 맺어지고 북남공동군사기구까지 발족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이 제안이 실현되면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획기적인 상황이 도래할 것이며 연방제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도 마련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이 제안은 조선정전협정의 직접적 당사자 뿐 아니라 모든 유관측들의 이해관계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합리적인 발기이다.

미국은 우리의 아량과 평화애호적인 입장이 반영된 이 제안에 긍정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 (6) 조선외교부 대변인 담화문 (1995.2.25)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문제는 우리와 미국사이에 해결할 문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의 수립을 가로막아보려고 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4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요즘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의 당사자문제를 가지고 리치에 맞지 않는 소리를 계속 하고있다.

미국은 마치 남조선이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나 되는듯이 여론을 펴면서 우리의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제안을 외면하려 하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미국이 유엔을 대표해서 정전협정에 서명하였기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며 도리어 저들이 북남합의서에 따라 평화협정문제해결에서 《당사자》라고 하고있다.

이것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어떻게 하나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의 수립을 가로막아보려고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조선반도에서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문제는 우리와 미국사이에 해결할 문제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여기에 간참할 하등의 자격도 명분도 없다.

다 아는바와 같이 조선정전협정의 제약일방으로 되어있는 《유엔군사령부》라는것은 사실상 아무런 법률적기초도 없는 미국의 창안품이다.

《유엔군사령부》의 존립의 법률적기초로 삼고있는 1950년 7월에 채택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에 대하여 말한다면 《유엔군》의 조직을 결정한것이 아니라 다만 유엔성원국들이 제공한 《무력과 기타 원조를 미국이 통솔하는 연합사령부가 사용》하도록 할데 대한 권고를 한 것이다.

50년대부터 지금까지 남조선에 있는 이른바 《유엔군사령부》라는것은 미국이 저들이 통솔한 추종국무력에 제멋대로 《유엔》이란 이름을 붙여놓은데 불과한것이다.

유엔은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을 관할하지도 않았고 그에 평화유지사명을 부여한것도 없다.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이란 다름아닌 미국의 대아세아전략수행에 복무하는 미군이다. 따라서 미군이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있는 한 미국은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의 회피할수 없는 법률적당자사이다.

미국은 남조선에 있는 전반적무력에 대한 작전지휘통수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행사하여 왔으며 또 지금도 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자기 무력에 대한 완전한 통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있으며 더욱이 남조선강



점 미군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있는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남조선당국이 평화보장체계수립문제에 끼여들었댜자 사태를 복잡하게 할뿐이지 아무것도 할 일은 없다.

더우기 우리와 북남합의서를 통하여 불가침을 확약하고 그 리행을 위한 군사공동위원회까지 구성해놓은 남조선당국이 분수없이 평화보장체계수립에 간참하는것은 북남합의서를 백지화하려는 시도의 아무것도 아니다.

만일 미국이 법률적견지에서나 남조선에 있는 현 무력의 실태의 견지에서 보나 조선반도에 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의 실천적 담당자로서 자기의 책임을 계획 회피한다면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더 취하지 않을수 없게 될 것이다.

(7) 조선외교부 성명 (1994.4.28)

조선외교부 성명

최근 조선정전협정을 유린하고 정전감시기구를 마비시키는 미국의 불법행위들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

미국은 조·미관계문제를 원만히 풀 수 있는 전망이 보이던 제3단계 조미회담을 결렬시켜 놓고 지금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무력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우리 인민과 세계 여론의 일치한 배격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미국은 패트리어트 신형미사일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4월말까지는 실전 배비하여 올해 11월에는 핵전쟁연습인 팀스피리트 '94합동군사연습까지 강행하겠다고 한다.

이미 남조선에 아파치직승기 대대를 증강한 미국은 앞으로 한 개 여단급의 각종 전투장비들을 반입하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주변에 집중된 미국이 해상무력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이리하여 미국은 유엔의 이름으로 우리와 체결한 조선정전협정을 완전히 파기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놓았다.

정전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에서 외부로부터 작전물자반입과 무력증강을 하지 않는 것은 정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953년 7월 조선정전협정에 서명한 그때부터 벌써 일방적으로 협정의 합의서한들을 파기해 버렸으며 남조선에 1,000여개의 핵무기를 포함한 현대적 무기들을 끌어들이었다.

지난시기 미국은 그래도 조선정전협정이 두려워 남조선에 핵무기들을 비롯한 수많은 무력을 은폐된 방법으로 비밀리에 끌어들이었으나 오늘에 와서는 신형미사일들과 전투기술장비들을 백주에 공공연히 반입 배비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조선정전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미국은 지난 40여년 동안 정전협정의 실제적인 당사자로서 지닌 의무에 배치되게 협정의 합의서한들을 체계적으로 유린 말살하였을 뿐 아니라 정전감시기구마저 마비시켰다.

정전협정이 조인된 후 미국은 자기들의 협정위반 행위가 중립국 시찰 소조에 의해 폭로되게 되자 1956년 6월에 정전협정 제2조 3항에 따라 조직된 중립국감독위원회 시찰소조를 자기측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강제 철수시켰으며 1991년 3월에는 정전협정에 비추어 아무런 법률적 타당성도 자격도 없는 남조선군 장성을 자기측 수석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정전기구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

미국의 이러한 부당한 처사로 하여 오늘 조선정전협정은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할



수 없는 빈 종이장으로 되고 군사정전위원회는 사실상 주인이 없는 기구로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미국이 이때까지 정전협정을 체계적으로 파기해 온 것으로 보나 지금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방대한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면서 우리를 힘으로 위협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속심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세아 사회주의 나라들을 압살해 보려는데 있다는 것을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다.

미국이 남조선에 마음대로 무력과 무장장비를 끌어들이고 조선반도의 정세도 제 마음대로 격화시켜 전쟁접경으로 이끌어 가고 있지만 정전협정이 그것을 막는데 아무런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형편에서 정전협정이나 정전기구가 도대체 무엇에 필요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조선정전협정과 정전기구가 조선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무력증강을 막는데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압살정책을 가리우는데 이용되고 있는 오늘 우리가 그런 협정과 기구에 더는 기대를 걸 수 없다는 것은 응당하다.

지금까지 정전상태가 유지되고 조선반도에 평화가 보장된 것은 우리 공화국의 인내성있는 평화애호적인 정책과 의지의 결과이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복잡하고 첨예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들인 우리와 미국을 적대 쌍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전체제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1950년대 정전상태가 4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비정상적이다.

조선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제반 사태는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화해를 이룩하며 조선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자면 반드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현 정전기구를 대신하는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에서 무력증강이나 전쟁재발도 막고 정세를 안정시키며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실제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을 미합중국에 제기한다.

미국은 대결관념과 전쟁심리를 버리고 우리의 이 평화제안에 응해 나와야 할 것이다.

1994년 4월 28일

평 양

■ ■
 ■ (8) 김일성 신년사 (1991.1.1.)

김일성 신년사

친애하는 동지들!

동포형제자매들!

나는 희망찬 새해 1991년을 맞으면서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인민들과 남녘의 형제들 그리고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해외의 모든 동포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빨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모든 진보적 인민들과 벗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1990년은 우리 인민이 격변하는 력사의 흐름 속에서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한 긍지높은 승리의 한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국제무대에서는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복잡한 사태들이 련이어 벌어졌으며 이것은 나라가 분렬된 어려운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 인민앞에 새로운 장애와 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추호의 동요도 없이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혁명적 공세로써 반혁명적 공세를 맞받아나갔으며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전체 근로자들을 새로운 대진군운동으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 투쟁함으로써 온갖 장애와 도전을 용감하게 이겨내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위훈을 떨쳤습니다.

지난해에 우리의 로동계급과 인민군군인들의 창조적이며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발전소건설과 공장, 기업소들의 개건확장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었습니다. 가까운 기간에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는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충성의 전투에 펼쳐나선 수도건설자들은 통일거리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지난해 동안에 3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새로 일떠세우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농촌수리화를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에 펼쳐나선 우리의 농업근로자들과 인민군군인들을 비롯한 지원자들은 짧은 기간에 2천리의 물길을 새로 건설하여 대동강과 레성강, 압록강과 대령강을 하나의 대관개망으로 련결시키고 서부지구 곡창지대의 모든 논밭들에 관개수가 흘러넘치게 하는 천지개벽을 이룩하였습니다. 2천리물길이 건설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세계에 자랑할만한 발전된 관개의 나라로 되었으며 이것은 우리 당이 내놓은 사회주의농촌체제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우리의 인테리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과학과 교육, 문화예술, 보건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 발전과



경제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

오늘의 엄혹한 정세 속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쳐 겹쌓인 난관을 이겨내면서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는 제국주의들과 반동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으로 되었으며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 벗들에게는 힘 있는 고무로 되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위기>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는 때에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끄떡하지 않고 계속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은 세계인민들 속에서 경탄을 자아내고 있으며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데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불패성과 승리의 비결은 한마디로 말하여 많은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불패성과 승리의 비결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대중은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되어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고 있으며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은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항일혁명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고 있는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오직 인민대중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우리 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자체의 힘으로 건설한 우리 식 사회주의는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사회이며 자주, 자립, 자위의 튼튼한 토대 위에서 끊임 없이 발전하는 가장 활력있는 사회입니다.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위대한 당,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위대한 인민, 주체사상이 구현된 사람중심의 사회주의, 바로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공고성의 기초가 있으며 그 어떤 풍파와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위력의 원천이 있습니다.

나는 지난해에 우리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당과 함께 혁명의 한길을 곳곳이 걸어왔으며 1990년대의 첫해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농민, 근로인테리들, 인민군군인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 우리 앞에는 현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우리 나라 사회주의와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현시기 사회주의건설을 잘하는 것은 우리 인민이 시대와 력사앞에 지니고 있는 영예로운 임무입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승리의 만세소리가 계속 높이 울릴 때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 소동은 맥을 추지 못하게 될 것이며 주체사상의 견인력이 더욱 강화되고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의 날은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앞에 나서는 주되는 과업은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확

고히 앞세우고 이미 마련하여 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사회주의적 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높이는 것입니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분을 빨리 발전시키는 것은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며 현시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기본고리입니다. 올해에 채취공업과 전력공업, 철도운수를 확고히 앞세우고 금속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이 부문들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는 건설을 집중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여 사리원카리비료연합기업소 건설과 10월9일 강철종합공장건설, 발전소건설을 비롯하여 인민경제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제3차7개년계획의 중요목표를 실현하는데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대상건설을 적극 추진하여야 합니다. 중요대상건설에 참가한 건설자들과 인민군군인들은 애국적 헌신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당앞에 결의한 건설목표를 어김없이 실현함으로써 당과 인민들의 높은 기대에 보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이며 우리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목적도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려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생활 향상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오늘 우리 인민이 누리고 있는 가장 값 높고 보람있는 정치생활과 건전하고 풍부한 문화생활에 상응하게 인민들의 물질생활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인민생활을 높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업과 경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올해에 농업부문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부침땅의 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실현하며 자연지리적조건에 맞게 농촌정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천을 비롯한 여러가지 인민소비품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화학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며 농업생산에 필요한 화학비료와 농약을 제때에 보장하며 경공업공장들에 화학섬유와 여러 가지 원료를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도시와 농촌들에 현대적인 살림집을 더 많이 건설하며 특히 평양시에 통일거리 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당이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새 기원을 열어놓은 때로부터 30돐이 되는 해입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고 당적지도와 행정경제적, 기술적 지도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생산자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입니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집단적 소유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과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기본열쇠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기본은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옳게 실현하는 것입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여 당일군들과 행정경제일군들,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이 서로 긴밀히 협조하고 책임성과 창의성을 높여 제기되는 경제과업을 원만히 수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관리에서 특히 행정경제일군들의 역할을 높여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계획규률, 로동행정규률, 생산규률을 강화하며 기술발전을 앞세우고 경제적 효과성과 제품의 질을 높이는 원칙에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 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과업은 방대하지만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투쟁한다면 능히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심단결의 힘으로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의 길을 개척하여 온 것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의 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당을 중심으로 한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반석같이 다지며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칙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함께 투쟁해나가는 동지적 단결의 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지도일군들은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발휘하여 사업을 혁명적으로 조직전개하며 전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이신작직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민은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와 싸워이긴 영웅적인민이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사회주의를 훌륭히 건설하여온 혁명적인민입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할 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킴으로써 주체조선의 영예를 다시 한번 떨쳐야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온 민족이 1990년대에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 떨쳐나서 거족적인 투쟁으로 조국통일운동사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놓은 뜻깊은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북과 남, 해외동포들의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역사적인 8.15범민족대회가 열리고 평양과 서울, 해외에서 정계, 사회계 인사들과 체육인, 예술인을 비롯한 각계각층 동포들이 서로 만나 대화와 통일축제를 벌린 것은 온 겨레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 민족의 드높은 통일외지를 세계에 과시한 커다란 경사였습니다. 대결과 분렬의 얼음장을 녹이며 뜨겁게 분출된 이러한 민족적 단합의 기운은 민족내부에 불신과 반목을 조성하여온 반공대결정책이 파산되고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리념이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결성된 것은 북과 남, 해외의 통일애국력량이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귀중한 성과이며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습니다.

새해를 맞는 오늘 우리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의 날을 더욱 확신성있게 내다보면서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길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할 굳은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분렬을 반세기이상 끌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가까운 몇해안에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하루빨리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며

조국통일의 평화적 전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리념이며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더없이 귀중합니다. 전쟁의 위협이 항시적으로 무겁게 드리우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이제 전쟁이 터진다면 조국의 통일은 고사하고 민족의 존재마저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평화는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안녕을 위하여 북과 남이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가장 긴급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평화문제에 언제나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려는 진지한 념원으로부터 이미 1988년에 북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북과 남의 무력을 대폭 줄이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를 단계적으로 철수시킬 것을 예견한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내놓았으며 지난해에는 북남고위급회담을 마련하고 불가침문제를 비롯하여 군사적 대결상태를 실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이러한 성의있는 노력에 아무런 긍정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고 평화문제의 해결을 외면하고 있으며 도리어 군비를 대대적으로 증강하는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북남고위급회담과정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남조선당국은 말로는 <평화>요, <랭전종식>이요 하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평화보장을 위한 초보적인 조치도 취하려 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교류우선론>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적인 래왕이나 교류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보다 긴절한 평화문제, 군사문제의 해결을 뒤로 미루려는데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북남사이에 고향방문이나 경제교류를 실현하자고 하여도 우선 속에 품은 칼부터 내놓아야 하며 북침과 <남침>에 대한 의구심부터 풀어야 합니다. 전쟁이 현실적 위협으로 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군사문제의 해결을 회피하고 교류만을 고집하는 것은 사실상 평화도 바라지 않고 정상적인 래왕과 교류 자체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불가침선언채택문제와 관련하여 남조선당국자들이 취한 립장은 그들에게 평화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것은 북과 남사이의 불신을 가시고 대결상태를 해소하며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출발점으로 됩니다.

불가침선언은 남조선당국자들 자신도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한 문제인데 오늘에 와서 그것을 반대할 그 어떤 리유와 구실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신뢰조성우선>이라는 새로운 전체조선을 들고나와 불가침선언의 채택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는데 대하여 도저히 리해할 수 없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신뢰조성우선>이라는 것은 불가침선언채택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가침선언은 결코 신뢰조성이 후의 문제가 아니라 그자체가 신뢰조성을 위한 출발점으로, 가장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남조선당국이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기도전에 그것을 휴지장이라고 하고 우리를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들이 우리와 합의할 것이란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도대체 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불가침선언의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침을 외워온 그들의 말이 거짓이고 <남침위협>이라는 것도 한갓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을 뿐입니다.

남조선당국은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를 외면하거나 뒤로 미루려고 할 것이 아니라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데 주저없이 응해나서야 하며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도 중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결상태가 해소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가 철수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공고한 평화가 보장될 것이며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는데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현시기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조국통일방도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조국통일방도가 확정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통일에 대하여 말한다고 하여도 실천적으로는 북과 남이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보조를 같이할 수 없으며 통일을 위한 대화의 첫 실마리도 풀수 없습니다. 조국통일이 먼 앞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과제로 나서고 있는 오늘 북과 남은 하루빨리 조국통일방도에 대하여 합의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조국통일을 갈망하는 온 겨레에게 희망을 안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방안은 북과 남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제도와 정부를 그대로 두고 그우에 하나의 통일적인 민족국가를 세우는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련방제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국가안에 서로 다른 두 제도와 두 정부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데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이질화>되어있는 북과 남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동질성>을 회복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북과 남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예나 지금이나 민족적공통성에서는 변함이 없으며 민족적으로는 여전히 동질적인 것입니다. 북과 남사이에 서로 다른 것이 있다면 지난 40여년동안 존재하여온 두 제도와 관련된 이질성인데 그것은 수천년에 걸쳐 형성되고 공고화된 민족적동질성에 비한다면 크게 문제로 될 것이 없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결코 우리 민족이 서로 갈라져 살아야 할 조건으로 될 수 없으며 북과 남이 통일하는데서 극복하지 못할 장애로 될 수 없습니다. 력사적으로 면면히 이어온 민족적공통성을 기초로 한다면 두 제도는 얼마든지 하나의 민족, 하나의 통일국가 안에서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보지 않고 <동질성>회복이라는 구실밑에 제도가 단일화되기 전에는 두개국가로 갈라져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제도에 의한 <제도통일론>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의 분열을 끝없이 지속시키자는 것이며 결국 통일을 하지 않자는 것입니다.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만드는 문제는 앞으로 천천히 순탄하게 풀어나가도록 후대들에게 맡겨도 되지만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의

통일국가를 세우는 일은 이제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개 제도, 두개 정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어느 일방도 자기의 것을 양보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하나의 제도에 의한 통일은 비현실적인 것이며 언제 실현 되겠는지 예측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제도를 단일화하려는 것은 그 실현방도가 어떠 하든지 상대방을 먹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만큼 어느측에서도 접수될 수 없는 것이며 접수될 수 없는 것을 강요하려 한다면 불피코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충돌과 돌이킬 수 없는 민족적 재난까지 빚어내게 될 것입니다.

최근 다른 나라의 흡수통합방식에 현혹된 남조선당국자들은 <북방정책>을 내걸고 청탁외 교를 벌리면서 남의 힘을 빌어 우리 나라에서도 그런 방식을 실현해보려는 어리석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동족과의 회담에는 성실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기의 것을 상대방에 강요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들의 간섭과 개입을 간청하는 것은 그들의 사대근성과 분열주의적 립장의 표현이며 이미 파산된 <승공통일>책동의 재현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승공통일>이란 어느 때 가도 실현될 수 없는 망상입니다. 전쟁의 방법이건 평화적방법이건 상대방을 먹는 방법으로 우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력사에 의하여 실증되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 립장은 확고부동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건설한 우리의 사회주의는 필승불패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현 실정에 맞는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입니다. 나라의 분렬을 끝장내고 북과 남이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가장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대원칙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통일방도로서 이미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방안은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물론, 남 조선과 해외의 광범한 동포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이 민족적합의의 기초로 될 수 있는 공명정대한 민족 공동의 통일방안으로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려민주련방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련방중앙정부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더 높여가는 방향에서 련방제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엔에 들어가는 문제도 련방제통일이 실현된 다음 단일한 국호를 가지고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인정하지만 하나의 의식으로 가입하는 조건에서라면 그전에라도 북과 남이 유엔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면 북과 남은 서로 자기의 리익을 침해당함이 없이 조국통일에 대한 민족적 숙망을 실현하게 될 것이며 통일민족의 슬기롭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에 관심이 있다면 실현될 수 없는 <승공통일>을 꿈꾸거나 <적화통일>의 유령으로 인민들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승공>과 <적화>도 북침과 <남침>도 다 용납하지 않는 우리의 량방제통일방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국통일방도에 대한 전민족적합의를 이룩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으로 북과 남의 당국과 정당, 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국통일방도를 확정하는 민족통일정치협상회를 소집할 것을 제의합니다.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온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은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 위협이며 당국이나 특정한 계층의 힘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전민족위업입니다. <두개 조선>을 반대하고 진실로 조국통일을 원하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은 민족의 절박한 요구와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서로 뜻과 힘을 합쳐야 하며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민족대단결을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 재야를 가리지 말고 다수와 소수를 차별하지 말아야 하며 정견의 차이와 과거의 허물도 묻지 말고 상대방에 대한 의심과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각 당, 각 파의 정치세력과 각계각층 인민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공동선에서 주장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서로 런대 연합하여야 평화와 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데서 오늘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북과 남의 정치인들이 서로 접촉하고 대화를 하며 신뢰를 두터이하는 것입니다. 당국자들사이에도 대화가 진행되고 각계층의 민간인들도 서로 만나 대화를 하자고 하는 오늘 민족의 운명과 나라의 전도에 대하여 중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는 정치인들이 서로 담을 쌓고 앉아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쌍무적이든 다무적이든 대화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남조선의 여당인사들과도 만나고 야당과 재야 인사들과도 만날 것이며 그 누구에게나 통일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을 것입니다.

당국사이의 회담이 결코 북남대화의 유일한 창구로 될 수 없습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고 위급회담도 진척시키려 하지 않으면서 민간인들사이의 대화마저 가로막는 것과 같은 협애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북을 적대시하는 <법>들을 철폐하여야 하며 북을 방문하였거나 해외에서 우리와 만나 통일문제를 논의하였다고 하여 체포투옥한 각계 인사들을 지체없이 석방하고 모든 남조선인민들에게 북과 자유롭게 접촉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균등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통일은 애국이고 분렬은 매국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온갖 분렬주의적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올해를 완화와 평화의 해, 화해와 단합의 해로,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력사적인 해로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국제정세의 변화과정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반제자주적대외정책의 정당성을 뚜렷이 실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랭전의 종식과 평화시대의 도래에 대하여 떠들고 있지만 국제정세는 의연히 긴장하고 복잡하며 사회주의와 진보와 반동사이의 첨예한 대립과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전세계적범위에서 저들의 지배권을 확대하려는 야망을 더욱 로골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인민들의 자주위업은 엄중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매달리고 있는 이른바 <평화적이행> 전략은 본질에 있어서 사회주의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고 자본주의길로 되돌려 세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저들의 지배권한에 넣으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주적인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해서도 이른바 <원조>와 협조를 조건으로 내걸고 저들의 지배를 실현하는데 유리하게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고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파괴된 것을 계기로 하여 제국주의자들은 더욱 오만무례하게 행동하면서 주권국가들에 대한 강도적인 무력침공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으며 침략을 강도적인 무력침공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으며 침략을 반대한다는 구실밑에 새로운 더 큰 침략의 길로 나가면서 파국적인 전쟁위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의 침략적, 약탈적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오늘 평화를 위협하고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난관과 혼란을 조성하고 있는 장본인이 다름아닌 제국주의라는 것을 현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감언리설에 속지 말고 기만적인 <원조>에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하며 반제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을 계속 확고히 견지해 나갈 것이며 사회주의나라들과 뿔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과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지배와 예속의 낡은 국제질서를 마스고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며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남남협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아세아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근면하고 재능있는 아세아인민들이 자주성과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서로 단결하고 긴밀히 협조해나간다면 아세아의 안전과 공동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으며 세계평화위업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자주적이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아세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적극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역사가 전진하는 과정에 일시적인 좌절과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으나 인류가 자주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은 어길 수 없는 법칙입니다. 전진도상에 부닥친 난관에 굴복하여 원칙을 버리고 역사의 궤도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실패와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며 진리와 원칙을 고수하고 역사의 흐름을 따라 나아가는 인민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새것과 낡은 것, 진보와 반동 사이의 복잡한 투쟁과 혼란된 정세 속에서 21세기로 넘어가고 있는 현시대가 인류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 : 자료와 해제

조선노동당의 정확한 령도밑에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다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 (9) 조선전쟁의 법적종결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투쟁
(「현대국제법 연구」, 1988)

조선전쟁의 법적종결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투쟁

미제가 일으킨 조선전쟁이 정전협정의 체결로써 정지된 때로부터 35년이 지나갔다. 정전이 이룩되었어도 이 기간 조선반도에서는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긴장상태가 계속되었으며 전쟁재발의 위험성을 띤 위기일발의 정세가 한두번만 조성되지 않았다.

세계의 진보적 인류는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상태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정전을 공고한 평화로 전환시킬 것을 한결같이 바라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문제는 오직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바꿈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35권, 344페이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오늘 성숙된 문제이며 해결하여야 할 역사적 과제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기본방도이며 나아가서 극동과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는 중요담보이다.

1) 조선정전협정의 의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전은 우리에게 있어서 커다란 승리입니다. 정전은 비록 조선에 완전한 평화를 가져오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정전협정의 체결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의 첫걸음으로 되며 긴장된 국제정세의 완화에 기여한 첫 모범으로 됩니다. 우리는 정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8권, 14페이지)

정전협정의 체결로 조선에서는 3년여에 걸쳐 울리던 전쟁의 총포소리가 멎고 적대적 군사행동이 정지되었다.

미제는 3년동안의 조선전쟁기간에 제2차 세계대전시기 4년동안의 태평양전쟁에서 입은 손실의 거의 2~3배에 이르는 막대한 병력과 군수기재의 손실을 당하였다. 청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치우려던 적들의 어리석은 계획은 쓰디쓴 패배로 끝장났다. 미제는 하는 수 없이 전쟁을 일으켰던 바로 그 장소에서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당시 <유엔군>사령관의 철갑모를 쓰고 정전협정에 수표하였던 패전장군 클라크는 자기가



《역사상 승리하지 못하고 정전협정에 조인한 최초의 미군사령관》이었다고 개탄하였다. 그는 이 패배가 얼마나 뼈에 사무친 것이었는지 1983년에 정전협정조인 30돐을 앞두고 진행한 방송과의 회견에서 또다시 이 말을 되풀이하였다.

이것은 조선전쟁에서 미제의 패배를 인정하는 하나의 증거로 된다.

조선정전협정을 단순한 적대적 군사행동의 정지만을 규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지난날의 정전은 적대적 군사행동의 일시적 정지만을 규제하였다. 따라서 정전협정의 체결을 놓고 교전일방의 승리와 그 상대방의 패배에 대하여 말하기가 곤란하였다. 오직 전쟁의 승패가 항복서에 조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조선정전협정을 종래의 정전에 관한 개념으로 고찰하여서는 그 본질을 정확히 밝혀낼 수 없다.

조선정전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이며 조선정전협정은 이것을 성문화한 역사적 증거이며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전협정의 체결로써 미제는 공화국복반부를 일격에 집어삼키려던 제놈들의 야망이 망상으로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동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의 혁명적 전취물을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조선정전협정은 또한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부터 되며 긴장한 국제정세의 완화에 기여한 모범으로 된다.

정전협정은 그 서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조선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할 것을 목적하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정은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한급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문제를 토의할 것을 규제하였다(정전협정 60항).

이러한 규정은 조선정전협정이 적대적 군사행동의 일시적 정지를 규제한 것이 아니며 어느 때든지 다시금 상대방을 반대하는 적대적 군사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조선정전협정은 조선에서 적대적 군사행동의 재발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하여 종래의 국제법규범에서 인정되었던 정전에 관한 개념을 새롭게 하였다.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정전을 보통 적대적 군사행동의 일시적인 정지로 간주하였으며 교전쌍방은 임의의 시각에 적대적 군사행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 1907년 육전 법규와 관습에 관한 제4 헤그협약 부록 제5장 <정전에 관하여>제36조에는 정전은 교전국들의 호상합의에 의한 군사행동의 정지라는 것을 지적하고 만일 정전기한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교전국들은 임의의 시각에 군사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규제하였다.

그렇게 때문에 이전의 전쟁들에서 있었던 정전은 적대적 군사행동의 매우 불안정한 정지였다. 교전쌍방은 정전기간을 역량을 재수습, 재편성하는데 이용하였다.

그러나 조선정전협정은 조선문제가 최종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조선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조치들을 규제하였다.

우선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북과 남으로 각각 2킬로미터씩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였다. 이 비무장지대는 하나의 완충지대로서 적대적 군사행동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막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정전협정 12항부터 18항까지는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를 규정하였다.

정화의 구체적 조치는 하늘, 땅, 바다의 전전선에 걸쳐 적대적 군사행동을 정지하며 모든 군사인원과 군사장비들을 비무장지대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72시간 안으로 철거시키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해안과 연해도서들에 있는 쌍방의 모든 군사인원과 장비들은 정전협정 체결 후 10일 이내에 철거시키며 비무장지대안의 위험물은 45일 이내에 제거하는 것이었다. 또한 조선경외로부터 새로 증원하는 군사인원들을 들여오지 못하게 하며(정전협정 13항 ㄷ목) 조선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장비들도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정전협정 13항 ㄹ목). 만일 정전기간에 파손 및 소모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들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같은 성능과 유형의 것을 1대1로 교환하는 기초위에서 정전협정에 규정된 출입항을 통하여 교체하기로 되어있다.

정전의 공고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또한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정전협정의 위반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군사정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쌍방 군사인원과 무장장비들의 교체에 관한 규정들의 집행정형을 감시 및 시찰하며(정전협정 13항 ㄷ목과 ㄹ목에 대한 감독)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대한 특별감시와 시찰을 하기 위한 중립국감독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시찰소조를 조직하여 출입항들에 주재시키기로 되었다.

정전협정에는 쌍방 무장력량이 상대방의 군사통제밑에 있는 육지, 바다, 공중을 존중하며 정전협정조항들의 준수와 집행에 대한 책임을 정전협정에 조인한 쌍방 군사령관과 그 후임사령관들이 져야 한다는 것도 밝혀져 있다.

조선정전협정은 이와 같이 정화 및 정전의 공고성을 보장하며 적대적 군사행동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규제함으로써 그 이전의 정전협정들과는 다른 새로운 형의 정전협정으로 되었다.

조선정전은 또한 조선반도에서의 적대적 군사행동의 정지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데 기여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

미제가 조선전쟁을 일으키면서 노린 목적은 단순히 공화국복반부만을 강점하고 우리 인민을 노예화하는 데만 있지 않았다. 놈들은 극동과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발판을 튼튼히 닦으려는 데도 중요한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미제의 이 기도는 조선전쟁이 우리 인민의 승리로 일단 포성을 멎게 됨으로써 산산조각이 났다. 조선전쟁은 힘으로 다른 나라 인민들을 굴복시키는데 습관된 미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작은나라 인민들도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주체를 세워 용감히 싸운다면 능히 미제를 타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협정의 체결로써 조선인민의



승리와 미제의 패배가 세상에 알려지자 세계의 선량한 인민들은 조선인민의 승리를 자기의 승리처럼 기뻐하고 축하하였다.

정전협정의 체결은 긴장한 국제정세의 완화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미제로 하여금 허장성세를 뽐낼 것이 아니라 회담장에 나와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조선정전협정은 국제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것으로 하여 지난날의 정전들에서 순수 군사행동의 측면만을 규제하였던 것과는 다른 특징을 띠고 있다.

조선정전협정이 이전의 정전협정들과는 다르게 새로운 성격을 띠게 된 것은 우리 시대의 국제적 역랑관계와 자주시대의 기본요구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정전담판에서 우리측은 적들의 간교한 술책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회담의 주도권을 틀어쥐고 나아갔다. 정전담판에 대한 적들의 태도와 입장은 정전은 일시적인 휴전으로 하고 역랑을 재수습해 가지고 다시금 새로운 군사적 공세를 들이대보자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적들은 정전담판에서 부당한 요구를 들고나왔다가 우리측에 의해 여지없이 논박당할때마다 담판장에서 꿈무늬를 빼고 이른바 <하기공세>, <추기공세> 또는 그 무슨 <신공세> 따위의 군사적 공세를 들이대었다.

그러나 군사적 공세도 담판에서의 외교적 교활성도 성과를 거둘 수 없게 되자 적들은 우리측의 공명정대한 제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제가 정전협정이다 정전을 단순한 적대적 군사행동의 정지로 규정하지 못하고 조선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서의 정전으로, 적대적 군사행동의 재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목적인 정전으로 규제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은 그들이 조선문제의 평화적인 정치적 해결에 그 무슨 관심이 있었거나 국제법을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려는 그 어떤 욕망이라도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정전담판을 우리에게 먼저 제기하고 담판장에 흰기를 들고 나온 것은 조선전쟁에서 만신창이 된 제놈들의 신세를 어떻게 하나 건져 보려는 심산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다시말하면 전선에서의 군사적 패배를 <외교적 승리>로 메꾸어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제는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그 어떤 <승리>를 바랄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적들에게는 더 큰 패배가 안겨질 뿐이었다.

적들은 정치, 군사, 도덕적으로 헤어날 수 없는 궁지에 빠져서야 정전협정에 대한 우리측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로 정전협정의 매조항에는 미제의 간교한 군사적 및 외교적 공세를 짓부신 우리의 진지한 노력, 견결한 투쟁성과가 아로새겨져 있다.

조선정전협정은 벌써 내리막길에 들어선 미제의 요구대호가 아니라 자주력량, 신흥세력의 요구에 따라 국제법의 규범들이 제정된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2) 미제의 정전협정위반책동과 평화협정체결의 필요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정전협정을 계통적으로 위반하고 전후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사적 잠재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왔으며 특히 최근년간에 그것을 더욱 격증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김일성저작집>24권, 141페이지)

미제국주의자들은 정전협정에 서명하고 돌아앉자마자 그것을 위반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미제는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여 20분후인 1953년 7월 27일 22시 20분경에 전선동부에서 우리측 지역을 향하여 기관총사격을 가하였다.

적들은 정전후부터 지금까지 지상에서 비무장지대와 우리측 군사통제지역에 대하여 총포사격과 무장공격을 계속 감행하였다.

1967년 7월 16일에는 전선서부에서 370여명의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이 중기관총의 엄호하에 수천발의 총사격을 가하면서 무려 13시간 30분동안이나 우리측에 무장공격을 감행하였으며 1975년 6월에는 임진강하류 일대에서 그 맞은편 우리측 군사통제지역에서 일하는 농장원들과 학교, 유치원, 탁아소를 향하여 1,000여발의 12.7밀리기관총을 쏘대었다. 또한 적들은 1981년 4월 21일에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810호 일대에서 정상적인 순찰임무를 수행하는 우리측 민사행정경찰성원들을 향하여 무려 2만 3,000여발의 총포사격을 가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의 이러한 총포사격사건은 이루 헤어릴 수 없이 많으며 그것은 날을 따라 더욱더 우심해지고 있다.

적들의 군사적 도발행위는 정전후 1954년까지 수백건이었다면 1961년에는 2,500여건, 1968년에는 1만여건, 1975년부터는 매해 2만 수천건에 달하였다.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30년간에 하늘과 땅, 바다에서 감행한 적들의 정전협정위반행위는 무려 37만 2,000여건이나 된다. 그 가운데서도 1968년 1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1969년 4월 대형 간첩비행기 <이씨-121>사건, 1976년 8월 <판문점사건>등은 미제가 조선에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던 엄중한 군사적 도발행위였으며 난폭한 정전협정위반 행위였다.

미제의 이러한 도발행위는 쌍방 통제하의 육지, 공중, 해상을 존중할데 대한 정전협정의 규정을 유린한 비법적인 행위이다.

미제의 정전협정 위반책동은 특히 정전협정조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정전협정에 의하여 지닌 자기의 의무를 제멋대로 포기한데서 더욱 엄중하게 드러났다.

미제는 정전협정 60항에 예견된 정치회의의 소집을 고의적으로 태공하면서 이 회의의 예비회담을 파탄시켰다. 정치회의의 기본목적은 미군과 그 추종국가군대를 남조선에서 완전히 철거시키고 조선문제를 조선사람 자체의 손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토의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제는 어떻게 하나 정치회의가 소집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1953년 10월에 예비회담장소에서 제멋대로 뺑소니쳤다. 이것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보다 앞서 1953년 8월 8일에는 남조선괴뢰도당과 <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남조선을 영구강점할 음흉한 계책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것은 정전협정에 예견된 정치회의가 소집된다하더라도 미제침략군을 <공약>에 의해 남조선에 그냥 눌러두겠다는 것이었다. 미제가 남조선괴뢰도당과 체결한 <호상방위조약>은 명백히 정전협정에 대한 유린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정전협정의 중요한 일부 조항들을 일방적으로 폐기한다고 <성명>하고 남조선에서 무력증강책등을 더욱 노골적으로 강화하였다.

놈들은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 남조선에서 새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신형무기들을 마구 끌어들이었다. 미제의 이러한 행위는 중립국시찰소조에 의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급해 맞은 미제는 중립국시찰소조 성원들에게 집단폭행을 가하고 그들의 숙소에 폭탄을 던지며 지어 그들을 살해하는 행위까지 감행하였다. 궁지에 빠진 미제는 1956년 6월에 남조선 출입항들에서 중립국시찰소조 성원들을 강제로 내쫓았으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57년 6월 21일에는 정전협정 13항 ㄹ목을 폐기한다는 것을 제멋대로 <성명>하였다. 당시 남조선 강점 미 제8군사령관이었던 램니씨는 <<우리는 여러해에 걸쳐 노력한 결과 정전협정 13항 ㄹ목을 폐기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제 우리는 거기서 신형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떠벌였다.

이것은 미제의 정전협정 파기책동이 정전직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여 주고 있다.

정전협정 13항 ㄹ목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미제의 파렴치한 행동은 그 자체가 정전협정에 대한 위반이다.

정전협정에 의하면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보충 및 폐기는 쌍방 사령관들의 합의에 의하 여서만 진행되기로 되어있다. 그런 것만큼 미제가 정전협정 13항 ㄹ목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린다고 떠드는 것 자체가 비법적인 행동이다.

이것은 남조선에다 신형무기들을 마음대로 끌어들이려는 속심을 드러내놓은 것이었다.

사실상 미제는 이후부터 남조선에서 무력증강책동에 더욱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미제는 지금 남조선에 1,000여개의 핵폭탄과 핵포탄, 핵지뢰 등을 배치하고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남조선과 그 주변에 <비-52>전략폭격기, <에프-16>전투폭격기들을 비롯한 수많은 핵전쟁수단들을 끌어들이었으며 다른나라에서 배척받았던 중성자무기까지 반입하였다. 이리하여 지금 남조선에는 100평방키로메터당 1개 이상의 핵무기가 전개되어 있는데 이것은 핵무기가 집중되어있다는 <나토>지역보다 그 배비밀도가 4배나 높은 것으로 된다.

미제는 남조선을 <80년대 힘의 대결의 시험장>, <세계전략의 제1선>이라고 떠벌이면서 남조선괴뢰도당에게 <공약상 의무>에 충실하겠노라고 여러차례에 걸쳐 입김을 불어넣어주었다. 미제는 정전협정이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이른바 <호상방위조약>에 근거한 <공약상 의무>만을 외위대면서 남조선에 신형무기들을 끌어들이는 책동을 더욱더 강화하며 더 많은 군사<원조>를 주고 있다. 이리하여 미제는 남조선을 극동 최대의 군사기지로 전변시켰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와 함께 막대한 병력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4만여명의 침략군을 상시적으로 주둔시키고 있는 것 외에도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미명밑에 술한 무력을 해마다 끌어들이어서 불안난을 일삼고 있다.

놈들이 해마다 벌려놓는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에는 막대한 병력이 동원되는데 여기에는 남조선주변에 배치된 미제침략군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미국본토의 침략무력도 끌어오며 일본 <자위대>무력까지 동원시키고 있다.

1976년부터 시작된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규모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년도 | 동원인원 | 기간 |
|------|----------------------------|-------------------|
| 1976 | 4만 6,000명 그중 미군 6,000명 | 10일 |
| 1977 | 8만 7,000명 그중 미군 1만 3,000명 | 15일 |
| 1978 | 11만 8,000명 그중 미군 4만 5,000명 | 17일 |
| 1979 | 14만여명 그중 미군 5만 6,000명 | 18일 |
| 1980 | 16만명 그중 미군 5만 4,000명 | 50일 |
| 1981 | 16만 1,500명 그중 미군 6만 1,500명 | 69일 |
| 1982 | 16만 9,000명 그중 미군 6만 1,600명 | 73일 |
| 1983 | 19만 1,700명 그중 미군 7만 3,700명 | 75일 |
| 1984 | 20만 7,500명 그중 미군 6만명 | 76일 |
| 1985 | 20여만명 | 2월 1일부터 4월 중순까지 |
| 1986 | 20여만명 그중 미군 6만여명 | 2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
| 1987 | 20여만명 | 2월 19일부터 5월 초순까지 |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사상 최대규모의 군사연습이다. 이것은 미제가 대단히 중시하고 있는 <나토>군사연습보다 그 규모가 훨씬 더 크다.

미제의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제2의 조선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예비전쟁이며 핵시험전쟁이다.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조선경외로부터 새로운 작전무기와 군사인원들을 들여오지 말 것을 규정한 정전협정 13항 다, ㄷ목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정전협정을 마구 짓밟아버리면서 조선반도에 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고옴으로써 우리 나라에서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다.

미제의 정전협정 위반행위와 정전협정조항에 대한 일방적인 파기책동으로 말미암아 이 협정은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담보하는 위력한 법적 문건으로는 도저히 역할할 수 없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며 나라의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1953년 7월에 체결된 조선정전협정은 어디까지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니 항구적평화에 대한 담보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29권



292페이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은 정전협정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문건으로서의 생활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전국사이의 전쟁상태의 법적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은 어디까지나 적대적 군사행동의 저지를 규제한 것이지 전쟁상태의 법적종결을 규제하지는 않았다. 정전으로서는 교전국 사이의 전쟁상태가 가셔지고 평화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초가 이루어졌다고 간주할 수 없다. 조선정전협정이 조선문제의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적대적 군사행동의 재발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결코 교전쌍방 사이의 전쟁상태가 법적으로 종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법의 역사는 전쟁상태가 법적으로 종결되어야 교전국들사이의 적대적 군사행동의 재발을 방지하며 나아가서 교전국사이의 국가적 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서는 그에 따르는 강화조약이 체결되고 교전국사이의 전쟁상태를 법적으로 종결지었다.

조선전쟁과 관련하여서도 응당 교전국사이에 전쟁상태를 법적으로 종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35년이 지났어도 전쟁상태가 법적으로 종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태이지 정상인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전쟁상태의 법적 종결은 반드시 교전국사이에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의무를 규제하게 되며 교전국들은 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평화의 공고성을 보장하게 된다.

조선에서 전쟁상태가 법적으로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전쌍방이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며 그 공고성을 담보하는 그 어떤 법적 의무도 지니지 않고 있다.

미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그것을 기회로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려는 책동을 노골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미제는 있지도 않은 <남침위협>에 대하여 떠들면서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기 위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미제의 격화는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의 정세가 엄중한 지경에까지 긴장되어가고 있다.

현시기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의 격화를 막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의 하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조선전쟁의 법적 종결을 하루빨리 이룩하는 것은 그만큼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위업에 기여하는 것으로 된다.

이와 같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조선전쟁을 법적으로 종결짓는 응당한 논리적 귀결이며 역사발전과 정세발전의 요구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은 또한 정전협정 그 자체가 낡았다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체결된지 오랜 낡아빠진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져야 하며 미국군대는 남조선에서 나가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30권, 653페이지)

1953년 7월에 작성조인된 정전협정의 규정 가운데는 35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도 있다.

정전협정에 서명했던 미군사령관은 형식상으로 <유엔군사령관>의 명의를 띠었는데 1975년 유엔총회 제30차 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의 깃발 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조선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고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데 대하여》라는 우리측 결의안이 채택된 후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되었다.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만큼 정전협정의 이행에 대해서 서명자인 <유엔군사령관>과 그의 후임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정전협정의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라 미제의 부당한 책동으로 남조선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시찰소조가 추방된 후 정전협정 13항 ㄷ, ㄹ목의 집행에 대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감독통제적 기능은 현저히 약화되고 실제에 있어서는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무장지대에서의 미제의 군사시설 구축책동과 각종 도발행동이 강화됨으로써 비무장지대가 쌍방의 적대적 군사행동의 재발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로서의 의의도 크게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몇가지 사실들은 정전협정의 규정들이 낡았으며 미제의 새 전쟁준비 및 도발책동을 제어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현실과 맞지 않는 정전협정을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를 담보하는 법적 기초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이와 같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현대국제법의 견지에서 보나 조선과 미국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의 견지에서 보나 그리고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요구와 염원의 견지에서 보나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당하며 해결하여야 할 역사적 과제로 되어있다.

3)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와 평화협정의 기본내용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담보인 평화협정은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들사이에 체결되는 것이 현실적이며 논리적이다.

조선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국은 조선전쟁의 교전일방이며 남조선에서 모든 군사통수권을 틀어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미국정부사이에 서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음에 대한 평화협정을 맺어야 조선에서 새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우리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길을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30권, 433페이지)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교전일방이며 평화협정체결의 실제적이며 직접적인 당사자이다. 미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평화협정체결 문제를 외면하거나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침략군과 15개 추종국가 군대에게 <유엔군>의 철갑모를 씌우고 유엔기발을 쥐여서 그들을 조선전선에 내몰았으나 이것은 철두철미 날조된 비법적인 유엔의 <결정>에 기초한 것이었다. <유엔군>은 유엔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전적으로 미국방성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 미제의 침략군이었다.

그것은 우선 <유엔군>조직에 관한 유엔의 <결정>이 미제의 강요에 의하여 현장의 원칙들을 위반하고 날치기로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미제는 면밀히 짜놓은 각본에 따라 조선전쟁을 도발하고는 유엔을 이용하여 제놈들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며 조선전쟁을 <국제화>하는 길에 서슴없이 뛰어들었다.

미제는 조선전쟁을 도발하고는 1950년 6월 25일, 27일, 7월 7일 연이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벌려놓고 거수기를 발동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침략자>라느니, 미군은 <경찰적 행동>을 하여야 한다느니, 미국이 통수권을 틀어쥐는 <유엔군>을 조작하여야 한다는 지 하는 <결정>을 꾸며내었다.

이것은 미제가 조선전쟁을 일으키기에 앞서 짜놓은 각본에 근거한 서툰 연극에 지나지 않았다. 이 <결정>들은 철두철미 비법적이다.

미제가 자기의 침략무력으로 조선내정에 간섭한 것은 유엔의 <결정>이 채택되기 전부터이다. 그러므로 미제가 유엔의 <결정>에 근거하여 그 무슨 <경찰적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또한 미제는 유엔<결정>을 조선대표의 참가없이 안보이사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유엔헌장 제32조에 의하면 안보이사회에서 심의되는 분쟁의 당사국은 그가 유엔성원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심의에 초청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의 참가를 거부하고 유엔으로 하여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를 초청하지 못하게 하였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의 비법성은 유엔총회 제28차회의 결의와 대비해보면 더욱 명백하다.

1973년 10월 1일 유엔총회 제28차 회의에서는 조선문제를 토의할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를 무조건 초청할 것을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유엔<결정>의 비법성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의 일치가결원칙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들의 참가없이 그들의 찬동이 없이 <결정>이 날치기로 <채택>되었다는데 있다.

당시 소련은 미제의 부당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국제법의 원칙과 유엔헌장의 기본요구에 맞게 안전보장이사회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의 사업 전반을 반대하고 이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일본 다마가와 백과대사전(세계역사편)에서

는 《유엔안보이사회는 소련이 회의를 보이콧하여 결석하고 있는 때에 미국의 요청에 의하여 유엔군의 조선출병을 결의하였다.》라고 썼다.

19세기 70년대 아일랜드농민들이 악질지주들에 대한 집단적 반대배격운동을 벌렸는데 그 첫투쟁대상이 영국대위 보이콧였다. 이때부터 보이콧이란 말은 <반대배격>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다.

미제가 유엔안보이사회에서 <조선문제>를 강압통과시킬 당시 상임이사국인 소련이 이토외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기권이 아니라 반대의사표시이다.

상임이사국인 중화인민공화국 대표가 참가하지 않은데 대하여 말한다면 이것 역시 미제의 부당한 책동 때문이다.

1949년 10월 1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는 오로지 중화인민공화국뿐이다. 대만은 중국영토의 한 부분이다.

<두개의 중국>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또 그렇게 있을 수도 없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이전 중국의 권리와 의무를 계승하는 당사자로서 유엔을 비롯한 모든 국제기구들에서 이전 중국의 석을 그대로 계승할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현대국제법에 의해 인정된 원칙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자주권에 속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중국인민을 전혀 대표할 수 없는 장개석 도당을 유엔의 중국의 석에 눌러 앉혀놓고 중화인민공화국 대표의 합법적 의석회복을 각방으로 집요하게 반대하였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의 부당성은 그들이 펴 늦게나마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 국가로 인정한데서 여실히 증시되었다. 1978년 12월에 발표된 중·미 공동코뮤니케에서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는 것을 언명하고 대만은 중국의 한 부분이라고 인정하였다. 이것은 사실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되었을 때 벌써 미국이 취했어야 할 입장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적 지위는 창건당시로부터 오늘까지 변함이 없는 조건에서 미제가 유엔안보이사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적 의석회복문제를 반대한 것이 얼마나 부당하였는가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명백히 증명하였다.

이와 같이 온갖 비법성에 기초하여 날조된 유엔<결정>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유엔군>은 실제적인 유엔군이 아니라 미제침략군과 미제의 충알받이인 추종국가 군대였다.

사실 조선전선에 기여든 <유엔군>에 대하여 유엔은 아무런 통제도 한 적이 없으며 또 통제할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유엔군>사령관을 임명, 해임하는 것으로부터 <유엔군>의 작전, 지휘, 통솔 및 그에 대한 보급에 이르기 까지 모든 군사적 통제와 지휘는 미제가 전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한때 <유엔군>사령관의 철갑모를 뒤집어쓰고 날치던 패전장군 맥아더는 1951년 미국 상원에서 증원하면서 《나와 유엔과의 관계는 전혀 맹목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요컨대 무슨 형식을 취하건 나는 유엔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 실토했다. 그리고 유엔본부 대변인까지도 《남조선에 있는 미군사령부를 <유엔군사령부>로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였다.

미국이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로서 평화협정체결의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다만 미군과 미국의 15개 추종국가군대에게 <유엔군>모자를 씌워놓았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전후의 사태는 미국이 평화협정체결의 책임을 더욱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전후 <유엔군>산하에 있었다는 것은 미군뿐이고 다른 나라 군대는 한명도 없었다. 이것은 <유엔군>이자 곧 미군이라는 것을 더욱 똑똑히 드러내놓았다. 이뿐 아니라 1975년 유엔 총회 제30차 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어 미제침략군이 쓰고있는 <유엔군>이란 너울을 벗겨버림으로써 미국이 조선전쟁의 일방이라는 것은 논의할 여지없이 명백해졌다.

미제는 <유엔군사령부>해체문제가 일정에 올라 대세가 제놈들에게 불리하게 전변되게 되자 그 이전까지 남조선주둔 미군이 <유엔군>에 속한 듯이 떠들던 논조를 집어치우고 <유엔군>과 미군이 다르다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놈들은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어도 남조선주둔 미군은 그대로 있어야 한다고 떠벌였다.

이와 같이 미제는 자주시대의 흐름앞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허튼소리를 쫓았다.

미국은 역사적 사실로 보나 논리적 견지에서 보나 조선전쟁의 일방이며 조선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이며 따라서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이다. 미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평화협정체결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결코 그것을 회피하여서는 안될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1974년 3월에 평화협정체결과 관련한 편지를 미국국회에 보냈다. 편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의 쌍방회담에서 토의할 평화협정의 기본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이에 극도로 당황망조한 미제는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펑 늦어서야 쌍방회담이 아니라 3자회담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의사를 표명하였다. 1976년 8월에 당시 미국무장관이 3자회담에 대해서 들고 나왔다. 그후 1978년 3월에 미국대통령이었던 카터가 미국을 방문한 어느 한 나라의 국가수반과의 회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 그리고 남조선 대표들 사이의 접촉과 회담에 커다란 관심을 표시하였으며, 1979년 7월에 남조선에 기여들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우리와 미국 그리고 남조선 사이의 <고위당국자회의>를 소집할 것을 밝혔다. 1983년 9월에 미국은 제3국을 통하여 조선반도문제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만날 용의를 가지고 있으며 이 회담에 남조선도 동등하게 참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대통령 레간자신도 1983년 11월에 남조선<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3자회담에 미국이 기꺼이 참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측이 표명한 바와 같은 공식적 입장을 고려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 그리고 남조선이 참가하는 3자회담의 개최문제를 신중히 토의하고

3자회담을 하루빨리 열데 대한 건설적인 제안을 주동적으로 제기하였다.

1984년 1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 회의에서는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데 대하여>를 토의하고 미국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편지에는 3자회담을 열고 조선전쟁의 종결을 법적으로 공식선포하며 정전을 공고한 평화로 전환시키며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평화협정체결문제와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자는 제안이 담겨져 있다.

1984년 1월 하순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 회의에서는 <조선에서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할데 대하여>를 토의하고 3자회담 제안을 적극 지지찬동하였다.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회담이 언제 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미국측의 성의와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평화협정은 조선전쟁의 법적 종결을 선포하게 되는 것만큼 지금까지의 강화조약의 규범이나 전례에 비추어보면 응당 손해배상문제, 전범자처단문제 등도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미제가 3년여의 조선전쟁에서 우리 인민에게 끼친 인적 및 물적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놈들은 한 평방키로메터에 평균 18개의 폭탄을 떨어뜨려 공화국분반부의 도시와 농촌을 잿더미로 만들었으며 무고한 평화적 주민들의 생명, 재산을 빼앗아갔다. 미제가 조선전쟁에서 감행한 야수적 만행은 히틀러도당의 만행보다 더 훨씬 악랄하고 잔혹하였다. 미제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된 세균무기를 사용하였으며 전쟁포로들을 세균무기의 실험대상으로 대량 학살하였다.

이러한 것들이 전쟁의 종결과 함께 계산되고 결산되는 것이 국제법상의 하나의 규범이고 관례였다. 조선인민은 미제를 상대로 전쟁배상청구권과 전범자처벌권을 행사할 응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협정이 하루빨리 체결되어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가 마련되기를 갈망하는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염원을 고려하여, 그리고 조선의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려는 진지한 염원으로부터 출발하여 평화협정에 포함시켜야 할 기본내용으로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공고히 보장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평화협정에서는 우리 조선전쟁의 법적종결을 공식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미국사이의 관계에서 선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초미의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와 미국사이에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음으로써 1950년대의 전쟁상태가 완전히 가셔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미제가 남조선에서 무력증강책동을 강화하며 남조선괴뢰도당에 대한 군사<원조>를 늘여 조선전쟁을 또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본화근의 하나이다. 이에 대하여 세계인민들은 우려하고 있으며 조선에서 평화가 위협당하고 있는 것을 원치않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상태는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커다란 장애로 된다. 조선에서 전쟁상태



를 법적으로 종결하지 않음으로써 정세가 긴장되던 끝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미국인민에게도 이로운 것이 없다.

다음으로 평화협정에는 남조선에서의 미군철거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은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기본장애이며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 격화의 근원이다.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을 강점함으로써 조선의 분열, 조선민족의 분단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또 이 분열과 분단의 비극이 지속되고 있다.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 동지를 틀고 앉아 조선전쟁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전후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에까지 이르게 하는 초긴장상태를 여러 번 조성하였으며 조선에다 전쟁의 검은 구름을 항시적으로 몰아오고 있다.

일제 패망 후 40여년의 역사는 미군이 남조선에 동지를 틀고 있는 한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평화협정에서는 조선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며 조선과 미국사이의 전쟁상태를 끝장내는 기본조건인 하나로서 반드시 남조선에서의 미군철거문제를 규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평화협정에서는 또한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조선경외로부터 일체 무기와 작전장비,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할 데 대한 문제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거듭되는 군축제안과 긴장완화를 위한 대규모군사연습의 중지제안을 비롯한 일련의 건설적이며 합리적인 제안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조선괴뢰도당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조선반도에서 정세가 긴장되게 되는 근본화근의 하나는 남조선에서 미제가 감행하는 군사연습과 <원조>의 미명밑에 신형무기를 비롯한 군수물자를 반입한데 있다.

그러므로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할 목적을 가지는 평화협정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무력증강책동, 무기반입책동을 금지하는 문제를 규제하여야 한다.

조선에서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조선에 대한 그 어떤 외국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으며 조선반도에서 그 어떤 나라의 군사기지시설도 허용하지 않을데 대한 문제를 규제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게 제기된다.

외세는 조선의 분열을 가져왔다. 외세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의 자주적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 교훈은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 수 없으며 평화의 공고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래 다른 나라의 내정에 대한 불간섭원칙은 현대국제법의 공인된 원칙의 하나인 것만큼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그러나 미제는 남조선괴뢰도당과 각종 비법적인 <조약>을 체결하고 남조선에서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실제적 통수권을 틀어쥐고 있다. 이러한 간섭현상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결코 조선반도의 정세가 안정될 수 없다.

또한 남조선과 그 주변에 있는 미제침략군의 군사기지도 조선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기본요

소의 하나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신식민주의정책 실현에서 외국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미제침략군의 군사기지에서 비행기, 대포, 함선 등이 공화국북반부를 겨냥하고 출동준비를 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에 대한 그 어떤 담보도 있을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발기한 평화협정체결문제는 이와 같이 그 합리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찬동을 받고 있다.

평화협정의 체결은 조선인민은 물론 미국인민의 이익에도 부합된다. 만일 미국측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3자회담 제안과 평화협정 제안에 선의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대한다면 체면을 손상시킴이 없이 조선문제에서 손을 뗄 수 있게 될 것이다.

■ (10) 중앙인민위원회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 정무원 연합회의 (1988.11.7)

중앙인민위원회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 정무원 연합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연합회의가 11월 7일 평양에서 있었다.

연합회의에는 중앙인민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들, 정무원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의정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화보장 대책에 대하여》를 상정하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며 평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대책적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포괄적인 평화방안

1.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인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사이의 군축 방안

1) 미군무력의 단계적인 철수

① 미국은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가져올 핵무기들을 우선적으로 철수한다.

핵무기의 철수는 1990년말까지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1단계(1989년말까지)에서는 먼저 북위 35도 30분 이북지역에 배치된 핵무기를 철수하며 2단계(1990년말까지)에서는 그 이남지역의 핵무기를 철수한다.

② 미국은 남조선주둔 미군병력을 철수한다.

미군병력의 철수는 1991년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1단계(1989년말까지)에서는 미군사령부와 함께 지상군을 북위 35도 30분 이남의 부산, 진해 계선으로 일단 철수하며 2단계(1990년말까지)에서는 지상군의 전체를 남조선에서 완전히 철수하며 3단계(1991년말까지)에서는 해, 공군의 전체를 철수한다.

③ 미국은 미군무력을 철수하는 날로부터 남조선에 새로 무력을 투입하거나 군사장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④ 미국은 남조선에서 철수하게 될 핵무기를 포함한 일체 무기와 전투기술 기재들을 남조선에 넘겨주지 않는다.

2) 북남무력의 단계적 축감

- ① 북과 남은 서로 병력을 축감하는 방법으로 무력균형을 유지한다.
병력의 축감은 군사분계선 전연지대에 배치된 병력과 특수부대, 육전대병력부터 먼저 하는 원칙에서 1991년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북과 남의 병력수는 각각 1989년말까지 40만명, 1990년말까지 25만명수준으로 축감하여 1992년부터는 10만명 이하로 유지한다.
- ② 북과 남은 병력축감에 상응하게 군사장비를 단계별로 축감한다.
군사장비의 축감은 단계별 병력축감에 맞게 하되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비롯한 특수무기는 1단계에서 완전히 폐기한다.
무력의 축감이 시작되는 때로부터 외부로부터의 군사장비의 반입을 중지한다.
- ③ 북과 남은 무력축감이 시작된 때로부터 6개월안에 모든 민간군사조직을 해체한다.

3)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에 대한 통보와 검증

- ① 미군무력의 철수정형에 대하여 미국은 북측에 통지하고 북남무력의 축감정형에 대하여 북과 남은 상대측에 각각 통지하며 호상 통지한 내용을 공개한다.
- ② 판문점에 있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권능을 확대하여 미군무력의 철수정형과 북남무력의 축감정형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사업을 진행하게 한다.

4) 북과 미국, 남조선 사이의 3자회담

단계적인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회담이 마련되어야 한다.

- ①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회담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남조선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진행한다.
3자회담의 테두리안에서 조미, 북남사이의 쌍무회담도 할수 있다.
- ② 3자회담에서는 단계적인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에 대한 검증문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권능확대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들인 폴스까, 체스꼬슬로벤스꼬, 스위스, 스웨리에 대표들을 방청으로 참가시킨다.
- ③ 3자회담에서는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문제를 합의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조미사이의 평화협정과 북남사이의 불가침선언으로 확인하고 고착시킨다.

2. 북과 남사이에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1) 정치적 대결상태의 완화

- ① 북과 남은 호상 비방중상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한 지명공격을 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비방중상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상대측 지역에 대한 뼈라살포와 군사분계선일대의 전연방송을 중지



한다.

- ② 북과 남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대결을 고집하는 정치행사를 중지한다.
상대방의 체제를 부정하는 법규들을 철폐한다.
- ③ 북과 남은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한다.
북과 남은 정당, 단체와 개별인사들의 쌍무적, 다무적인 접촉과 자유로운 인사래왕을 실현한다.
북과 남은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리용하며 상품교류를 실현한다.
북과 남은 교육과 과학기술, 문화예술, 보건,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과 교류를 실현한다.
북과 남은 국제무대에서 대결하거나 경쟁하지 않으며 공동협력을 실현한다.

2) 군사적 대결상태의 완화

- ① 북과 남은 쌍방 무력의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든다.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 군사인원들로 조직된 중립국감시군을 배치한다.
- ② 북과 남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대규모군사연습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전후방에서 연합부대이상의 군사훈련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규모여하를 막론하고 외국군대와외의 합동군사연습을 일체 중지한다.
- ③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일대의 지상과 해상 및 공중에서 무력충돌을 일으킬수 있는 일체 군사행동을 중지한다.
- ④ 북과 남은 우발적인 충돌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쌍방 고위군사 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개설한다.

3) 북남사이의 고위급 정치군사회담

북남사이의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에는 실지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실권을 가진 쌍방의 고위급 정치군사대표가 참가한다.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의 테두리안에서 고위급 정치회담과 군사회담을 따로 할수 있다.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1987.7.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현 시대가 인류앞에 제기하고있는 가장 엄숙한 과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평화위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고 불안정한 정전을 공고한 평화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다.

조선에서 전쟁의 포화가 멎은 이후 여러차례 매우 위험한 고비를 겪으면서도 제2의 조선전쟁을 피할 수 있는것은 오직 평화를 자기의 본성적요구로 삼고 있는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과 인내성 있는 평화애호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오늘 조선반도에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북과 남의 방대한 무력이 날카롭게 대치되어 있다.

이러한 대치상태는 날을 따라 더욱 격화되고있다. 정세는 그 어떤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라도 조선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 세계적인 열핵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는 위험한 단계에 놓여있으며 이것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항시적인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있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첨예한 현 군사적대치상태를 끝없이 지속시켜서는 안되며 하루속히 풀어나가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에서 진장상태를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중지하며 북과 남의 군대를 10만 또는 그아래로 줄일데 대한 문제, 3자회담을 진행하여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긴장완화제안을 내놓았다.

특히 최근에는 북과 남사이에 신뢰를 도모하고 긴장완화의 새 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돌파구를 열기 위하여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획기적인 발기를 하였다.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는데 실제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전후 미국과 남조선측이 《한미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남조선에서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있었던 1956년에 8만명의 병력을 일방적으로 축소하였으며 1986년에는 15만명의 병력을 평화적전선에 동원시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기한 합리적인 긴장완화방안들과 실천적조치들은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광범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공명정대한 제안들과 발기들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로부터 응당한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오늘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겉으로는 완화에 대하여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긴장상태



를 더욱 격화시키는 길로 나아가고있다.

최근 미국은 남조선의 군사전략적지위를 강조하면서 남조선주둔 미군무력을 급격히 보강하고있다.

미국은 이미 전개한 1,000여개의 핵폭탄과 핵탄두를 발사운반할수 있는 현대적인 군사장비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었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1988년 올림픽경기의 《안전개최》를 구실로 미국태평양함대무력을 남조선연안해역에 배치하고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데 대하여 특별히 주목하게 된다.

조선반도에서의 첩예한 군사적대치상태는 오직 완전한 군축을 실현함으로써만 해소될수 있다.

남조선에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민주정권이 선다고 하여도 지금처럼 북과 남이 방대한 무력을 유지하면 평화와 안전이 담보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통일된 강토에서 영원히 전쟁과 불안을 모르고 평화롭게 살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열망에 맞게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 데서 결정적국면을 열어놓기 위하여 대규모적인 단계적무력축감을 실현할데 대한 제안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 조선에서 북과 남의 무력균형은 서로 무력을 증강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서로 무력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 원칙에 따라 북과 남은 1988년부터 1991년까지 3단계에 걸쳐 무력을 축소하며 1992년부터 각각 10만이하의병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북과 남의 병력이 먼저 단계적으로 축소되는데 따라 남조선주둔 미군도 단계적으로 철수하며 북과 남의 무력이 10만으로 축소되면 미국은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력을 철수하고 군사기지를 철폐하여야 한다.

셋째, 조선의 북과 남은 각기 자기측의 무력축소정형을 상대측에 통지하고 세계에 공포하여야 하며 미국은 자기 군대의 철수정형을 우리측에 통지하고 세계에 공포하여야 한다.

현재 판문점에 있는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조선의 북과 남에서의 무력축소정형과 미군철수정형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하여야 한다.

넷째, 북과 남의 병력이 축소되는 기간과 그 이후에도 있을수 있는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방지하며 계속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여기에 중립국 감시군을 주둔시킨다.

다섯째, 조선반도에서의 무력축소와 철수 및 그에 대한 검증문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로의 전환,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권능확대와 중립국 감시군 조직 및 그 배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조선의 북과 남, 미국사이의 회담에 중립국감독위원

회 성원국들인 뿔스까, 체스꼬슬로벤스꼬, 스위스, 스웨리에 대표들이 방청으로 참가하는 다국적인 군축협상을 1988년 3월 제네바에서 진행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에서 실제적인 무력축소의 돌파구를 열기 위하여 1987년말까지 조선인민군 10만명을 일방적으로 줄일것이다.

조선반도에서 북과 남의 무력이 대폭 축소되고 외국군사기지가 철폐되며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가 평화복도로 전환되면 조선은 그 누구에게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 비핵평화지대, 완충지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군축제안이 실현되면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기본요인이 영원히 제거되고 나라의 평화통일에 밝은 전망이 열릴것이다.

또한 우리의 군축제안은 완외와 군축으로 나가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것으로서 그의 실현은 아세아, 태평양 지역의 정세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것이다.

우리의 제안은 조선반도의 진정완화에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성의있는 공동의 노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완화를 진정으로 이룩하려는 우리의 제안에 대하여 의심부터 앞세우지 말고 대세의 흐름에 맞게 심사숙고하여야 하며 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조선에서의 정전을 공고한 평화으로 전환시키는데 관심을 가지고있는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들도 우리의 평화적발기에 적극 호응해나서리라고 기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전세계 평화애호나라 정부들과 인민들의 지지성원밑에 조선반도에서 완전한 군축을 실현하여 영원한 평화가 깃들게 하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1987년 7월 23일 평 양

■ (12)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명의 서한 (1986.6.9)

오진우 북한 인민무력부장 명의 편지, 「3군사 당국자회담」 제의

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앞 편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이기백 귀하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는 우리 군사당국자들로 하여금 민족과 세계 앞에서 책임적인 완화조치를 시급히 취해 나갈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하도 아는 바와 같이 40여년 동안이나 분열의 비운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보다 더 중대하고 절실한 과업은 없습니다.

겨레의 이 간절한 염원을 반영하여 지난해 북과 남사이에는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리고 여러 갈래의 회담들이 진행되었으며 비록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민족분단이래 처음으로 적십자예술팀과 고향방문단이 교환되어 겨레의 아픈 마음을 풀어 주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올해에 들어와 북남관계는 다시 대화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긴장상태는 일층 격화되어 북남대화들이 일시에 중단되었을 뿐 아니라 정세는 사실상 어떤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위험한 국면에 다달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온민족을 핵참화어로 몰아넣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북에도 남에도 다같이 이로운 것이 없다는 점이 나는 귀하도 부정하지 않으리라고 인정합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가 못하는가, 중단된 대화를 다시 잇는가 잇지 못하는가 하는 중대한 시기에 온 겨레와 인류는 우리들 책임있는 군사당국자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평화 발기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가시기 위한 실제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책을 취하려는 진지한 염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관과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남조선 주둔 연합국군총사령관이 참가하는 군사당국자회담을 가질 것을 귀하에게 정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군사당국자회담에서는 무엇보다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전쟁위험을 막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데서 당면하게 나서는 가장 긴급하고도 절실한 문제를 협의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서는 긴장격화와 전쟁위험의 직접적 요인으로 되고 있는 군사연습과 무력

증강을 중지하는 문제, 병력과 군비를 축소하는 문제, 조선정전협정을 원안의 요구대로 준수하는 문제 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담에서는 이밖에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귀하가 제기하는 문제들도 함께 토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담장소는 판문점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며 그밖의 호상편리하다고 보는 다른 곳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담개최 일자는 7월 중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나는 군사당국자들의 회담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비접촉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각기 임명하는 3명 정도의 실무대표와 적당한 수의 수원들로 오는 6월 27일에 판문점에서 예비접촉을 가질 것을 아울러 제의합니다.

군사당국자회담이 열리고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게 된다면 조선에서 완화와 평화의 새 전기가 마련되게 될 것이며 북남대화에서도 획기적인 국면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귀하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가시며 나라의 평화통일위업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의 새로운 발기에 긍정적인 호응을 보이리라는 기대를 표시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보장 오진우

1986년 6월 9일

나. UNC 총사령관 앞 편지

연합국군 총사령관 윌리엄 제이 립씨 귀하

나는 긴장한 조선반도의 정세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며 대화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염원으로부터 귀하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귀하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 나라의 북과 남사이에는 여러갈래의 대화가 진행되고 부분적인 내용이 실현되어 세상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러나 완화와 평화에로 나아가던 이러한 움직임은 순간으로 사라지고 조선반도의 정세는 나날이 첨예화되어가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포함한 전장수단들이 대대적으로 증강되고 병력의 이동과 전진배치가 계속되며 대소규모 군사연습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속에서 쌍방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는 조선전쟁 이후 가장 엄중한 국면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조선반도에는 우리들 적대쌍방 사이의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도 전쟁, 핵전쟁이 터질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이 전례없이 격화되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북남대화들이 중단상태에 빠져있으며 새 전쟁의 위험이 박두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민족과 함께 세계 인민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조성된 정세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공고히 하며 평화회담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시기에 조선에서의 정세발전을 완화와 평화의 방향으로 돌려 세우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줌이 없이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참화를 가져다 주리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 우리 조선인민에게 이롭지 못할 뿐아니라 미국에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이로부터 나는 이번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과 남조선 주둔 연합국군 총사령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참가하는 군사당국자회담을 가질데 대해 내놓은 발기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도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조선반도의 긴장격화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완화에 회피할 수 없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군사당국자들의 회담을 가질 것을 귀하에게 정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군사당국자회담에서는 무엇보다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전쟁위험을 막고 긴장상태를 완화는 데서 당면하게 나서는 가장 긴박하고도 절실한 문제를 협의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서는 긴장격화와 전쟁위험의 직접적 요인으로 되고 있는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을 중지하는 문제, 병력과 군비를 축소하는 문제, 조선정전협정을 원안의 요구대로 준수하는 문제 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담에서는 이밖에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귀하가 제기하는 문제들도 함께 토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담장소는 판문점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며 그밖의 편리하다고 보는 다른 곳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담개최 날자는 7월 중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나는 군사당국자들의 회담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비접촉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각기 임명하는 3명 정도의 실무대표와 적당한 수의 수원으로 오는 6월 27일에 판문점에서 예비접촉을 가질 것을 아울러 제의합니다.

조선반도의 북과 남에 있는 군사 실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간다면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조선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완화와 평화의 새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며 중단상태에 놓여있는 북남대화들을 잘 할 수 있는 훌륭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조선과 아세아,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우리의 새로운 평화발기에 귀하가 깊은 주의를 돌리고 긍정적인 호응을 보여 줄 것을 희망합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제1대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1986년 6월 9일

(13) 김일성 신년사 (1986.1.1)

김일성 신년사

친애하는 동지들 !

동포형제자매들 !

우리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인 진군길우에 또 하나의 빛나는 자욱을 남기고 희망찬 새해 1986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새로운 승리와 영광으로 빛날 1986년을 맞이하면서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우리의 전체 인민들과 남녘의 형제들, 재일동포들과 해외의 모든 우리 겨레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드립니다.

1985년은 조국해방 4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40돐을 민족적 경사로 기념한 매우 뜻 깊은 해였습니다.

조국해방 40돐과 당창건 40돐을 맞으며 전당과 온 나라가 높은 혁명적 열정으로 들끓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빛나는 승리가 이룩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앙양된 혁명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 당의 위력과 온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더욱 공고화되고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높이 발휘되었습니다.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에 대한 신뢰가 전례없이 높아지고 혁명적인 투쟁기풍과 생활기풍이 철저히 확립되었습니다. 우리 혁명의 정치적력량이 더욱 강화된 것, 이것이 지난해에 이룩된 가장 귀중한 성과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들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생산을 장성시키고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놓았습니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의 창조적로동과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당이 내세운 방대한 과업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자립경제의 위력을 보여주는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수많이 일어서고 80여개의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와 직장들이 건설되어 새로 조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민경제의 부문내부구조가 더욱 완비되고 그 자립성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생산능력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당의 부름에 언제나 충실한 룡성과 락원의 로동계급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설계, 자체의 기술로 1만톤프레스와 대형산소분리기를 훌륭히 만들어냄으로써 우리나라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강화하며 경제건설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놓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영용한 남포갑문 건설자들은 부닥치는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공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갑실과 무념이언제를 비롯한 기본구조물공사를 완공하였으며 용감한

북부철길 건설자들은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건설공사를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새로 건설하는 철길 전구간의 로반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용감한 청년건설자들이 세운 자랑스런 위훈을 우리나라 사회주의건설 력사에 빛나게 기록될 것입니다.

지난해에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습니다. 교육부문에서는 18개의 대학이 새로 늘어나 민족기술 간부양성사업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과학연구 부문에서는 나라의 경제와 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문학예술부문에서도 우리 인민들을 고무하고 기쁘게 해주는 훌륭한 성과들을 이룩하였습니다.

나는 높은 정치적 열의와 혁신으로 들끓은 1985년을 기쁜 마음으로 돌이켜보면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우리의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투쟁목표는 당 제6차대회가 내세운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당을 강화하고 우리의 혁명대오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합니다.

당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그 령도적 역할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모든 승리의 기본요인입니다. 우리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조직사상적 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당중앙위원회 두리에 굳게 뭉쳐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며 그 관철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혁명대오는 당과 인민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룰 때 불패의 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당조직들은 혁명적 균중로선에 기초하여 각계각층 균중과의 사업을 잘함으로써 전체 인민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우리의 혁명대오를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근로대중의 창조력을 옹계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경제건설에서는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 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밀고나가면서 특히 기간공업과 철도운수를 발전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합니다.

기간공업과 철도운수를 빨리 발전시키는 것은 현시기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기간공업과 철도운수를 빨리 발전시켜야 나라의 경제적 토대를 강화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과 건설을 다그칠 수 있으며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전망목표를 실현하는데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채취공업, 금속공업, 전력공업 부문과 철도운수부문에 국가적 투자를 늘이고 역량



을 집중하여 이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광물과 석탄, 철강재, 전력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며 철도수송의 긴장성을 풀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될수록 근로자들의 생활상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는 그에 맞게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정권의 중요한 사명이며 우리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목적도 결국은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려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와 앞으로 몇 해 동안 경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여러 가지 인민소비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농업생산과 수산물생산을 더 빨리 장성시켜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넉넉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현시기 우리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입니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생산력을 발전시켜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여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습니다. 기술혁명을 하지 않고서는 당면한 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빨리 발전하는 세계경제발전추세를 따라갈 수 없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경제발전의 기본고리는 기술혁명입니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여기에 나라의 경제발전과 민족적 번영의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현시기 기술혁명의 중요한 임무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원료, 연료, 동력자원의 개발과 리용 분야의 기술을 혁신하며 기계공업과 전자공업, 자동화공업을 빨리 발전시키고 그에 기초하여 인민경제의 기술장비를 현대화하고 생산과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위에 올려세워야 하겠습니다.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과학기술부양사업을 개선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과학자,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고 광범한 대중이 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분야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와 교류를 널리 진행하여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행정사업을 잘하여야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발전 계획을 바로세우고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국가적인 보장사업을 강화하여야 하며 과학연구성과를 제때에 생산을 받아들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 들어야 합니다.

모든 당조직들은 기술혁명을 당의 중요한 전략적 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가며 기술혁명수행

어로 과학자, 기술자들과 광범한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절박한 과업은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전민족적범위에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졌습니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은 온갖 탄압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민족통일>, <민중해방>, <민주쟁취>의 구호밑에 민족의 자주권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 자유를 위하여 용감하게 투쟁하였습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각 계층 인민들의 정의로운 애국투쟁에 동포애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지난해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적극적이고도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지난해에 북과 남사이에 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이 여러차례 진행되었으며 북남국회회담을 마련하기 위한 예비접촉도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조국해방 40돛을 계기로 민족분렬의 40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북과 남사이에 적십자 예술단과 고향방문단의 호상방문이 실현되었습니다. 북과 남사이에 여러 분야의 회담이 진행되고 작은 범위에서나마 사람들이 평양과 서울을 오고간 것은 겨레들에게 기쁨을 주었으며 이것을 계기로 전민족적범위에서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전체 조선민족의 념원에 맞게 력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올해에도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북과 남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대결상태를 해소하며 우리의 합리적인 평화통일방안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제회담을 빨리 성사시키며 나아가서 북과 남의 최고위급회담도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려면 대화쌍방이 대화에 립하는 자세를 바로 가져야 합니다. 대화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하는 것만큼 북과 남이 다같이 나라를 통일하여 하나의 조선을 만들려는 공통된 립장과 선의를 가지고 대화에 립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민족의 분렬을 고정화하거나 인민들을 기만하고 사회여론을 오도하여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려 하여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북남대화는 오로지 통일을 위한 대화로 되어야 합니다. 올해에 북과 남은 다같이 진심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기려는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의견상이를 좁히고 합의점을 찾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남대화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려면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군사연습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소동을 벌리면서 마주앉아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으며 그것은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민족의 분렬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전쟁위험이 떠도는 가운데서는 대화를 순조롭게 할 수 없으며 대화를 하여도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남조선측이 진실로 대화를 귀중히 여긴다면 대화의 분위기



를 흐리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북과 남은 다같이 대화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조선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공화국과 미국, 남조선사이에 3자회담을 하여야 합니다. 미국은 조선정전협정체결의 실제적당사자이며 남조선에서 군사적통수권을 틀어쥐고 정세를 긴장시키는 장본인인 것만큼 미국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실현하여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 하여야 우리 나라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두개 조선> 정책을 버려야 하며 리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의 3자회담제안에 응해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그 정당성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3자회담제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내성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은 올해에도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고 힘을 합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혁명의 국제적 런대성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국제정세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올바른 대외정책과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형제적 사회주의 나라들과 뿔럭불가담나라들, 세계 여러 나라 공산당 및 로동당들, 진보적인 정당들과의 친선 단결의 유대가 더욱 공고화되고 전투적런대성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조국해방 40돐과 중국 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35돐을 계기로 우리의 형제적린방인 쏘련, 중국과의 전통적인 친선 협조관계가 더욱 심화발전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 친근한 전우들과 벗들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세계인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적극 지지 성원하여 주고 있는 형제적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뿔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 사의를 표하며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현시기 국제정치분야에서 나서는 초미의 문제는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을 방지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날로 격화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으로 말미암아 국제정세는 극도로 긴장해 지고 있으며 지구우에는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의 위험이 무겁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핵전쟁의 위험을 가지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현시대가 제기하는 엄숙한 과제이며 인류의 한결같은 지향입니다.

지난해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있는 쏘미수뇌자들의 회담에서는 핵군축을 실현하고 핵전쟁을 방지할 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토의하고 핵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공동으로

확인하였으며 일련의 원칙적인 합의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쏘미수뇌자회담의 결과가 핵전쟁을 방지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하는데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열핵전쟁을 방지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세계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군비증강책동과 핵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핵무기를 축감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완전히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오늘 북구라파와 발칸반도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지역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비핵지대, 평화지대 창설운동은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 속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고 그것을 넓혀나가기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오늘 핵전쟁의 위협이 가장 짙은 곳은 조선반도입니다. 세계적으로 남조선처럼 각종 핵무기가 조밀하게 배비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남조선은 가장 위험한 핵전쟁발원지로 되고 있으며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십사리 세계적인 열핵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각종 핵무기와 미국군대를 철거시켜야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화근이 없어지고 공고한 평화가 유지될 수 있으며 우리 인민들 뿐 아니라 우리의 주변나라 인민들과 세계인민들이 평화롭게 살어나갈 수 있습니다.

전체 조선인민은 남조선에서 핵무기와 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핵무기와 자기 군대를 철수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것은 핵전쟁을 해서는 안된다고 한 쏘미수뇌자회담의 합의정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뚜렷한 증거로 될 것입니다. 미국은 쏘미수뇌자회담의 합의정신에 맞게 남조선에서 핵무기와 미군을 철수하기 위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뿔럭불가담운동이 시작된 때로부터 25돛이 되는 해이며 올해에 짐바브웨에서는 제8차 뿔럭불가담국가 수뇌자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뿔럭불가담나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뿔럭불가담운동의 통일단결을 고수하며 이 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뿔럭불가담운동에서 기본은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며 모든 뿔럭불가담나라들이 자주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뿔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짓부시고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주, 독립의 길만이 민족의 존엄을 고수하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정당한 길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은 정치적자주권과 함께 경제적 자립에 기초할 때 완전한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뿔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발전도상나라들이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자체의 힘과 내부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한편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남남협조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남남협조는 현시기 발전도상나라들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인 식량을 자급자족하기위한 농업분야에서의 협조



를 비롯하여 현실적으로 긴급하고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시작하여 한 가지 문제씩 해결하면서 점차 확대해나가는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올해에도 자주, 친선, 평화의 가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들과 뿔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의 혁명위업은 정당하며 우리 인민이 나아갈 앞길은 휘황찬란합니다. 당의 령도밑에 정당한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은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

모두다 주체사상의 가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 (14) 중앙인민위원회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 (1984.1.10)

중앙인민위원회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 서울당국에 보내는 편지

우리는 1월 10일 현재세와 관련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이 편지를 서울당국에 보낸다.

조국이 분열된 때로부터 거의 40년이 되어가며 정전이 실현된 때로부터도 이미 3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동안 우리 민족은 한결같이 평화와 평화통일을 갈망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 우리 나라에는 온 민족의 념원과 배치되게 긴장상태가 어느때 보다도 격화되고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가슴아프게도 민족내부의 불신과 반목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민족통일의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지어 남쪽땅은 핵전초기지로까지 전변되었다.

이제 조선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은 지난날과 같은 보통전쟁이 아니라 핵전쟁으로 번져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명백하다.

우리 민족이 핵참화의 희생물이 되고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 이 엄중한 사태발전을 누구도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민족최대의 숙원인 나라의 평화통일을 우리 세대에 실현하여야 하며 이 숭고한 목적을 위하여 온 민족의 힘을 모아 난국타개의 길을 찾아야 한다.

현재정세에서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자면 무엇보다 먼저 북과 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북과 남이 서로 대포를 걸어 놓는 총칼을 맞대고 있는 조건에서는 도저히 대화와 평화통일의 환경을 조성할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미국과의 사이에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것은 미국이 조선정전협정의 제약일방으로 되어있을 뿐 아니라 남조선에 자기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모든 군수통수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회담할 것을 새로이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우리와 미국사이의 이 회담에 우리 나라에 조성된 긴장상태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다른 일방인 서울당국도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우리는 3자회담을 진행하면 우리 나라에서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문제가 모든 측면에서 충분히 담보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3자회담에서는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조선정전협정의 제약쌍방인 우리와 미국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를 토의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 선언을 채택하는 문제를 토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과 미국사이의 평화협정에는 주로 미군과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장비들을 철수시키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조건에 관한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북과 남사이의 불가침 선언에는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행사를 하지 말며 군비를 축소할 데 대한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3자회담에서는 그밖에 미국과 서울당국이 제기하는 문제들도 토의될 수 있을 것이다.

3자회담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 긴장완화의 담보가 주어지고 조국통일의 전제가 마련된 다음 북과 남사이에 대화를 열고 통일문제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에서는 이미 쌍방이 7·4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하고 민족앞에 그 이행을 확약한 조국통일 3대원칙에 준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해결할 데 대한 문제를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서는 북과 남의 당국을 포함하여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사를 망라하는 전민족대회와 같은 정치협상회의가 소집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북과 남에 있는 제도를 그대로 두고 두 지역이 각각 자치체를 실시하는 중립적인 연방국을 창립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서울당국에 통일국가창설과 관련한 다른 합리적인 안이 있다며 그것도 함께 토의할 수 있을 것이다.

3자회담에 관한 우리의 새로운 제안은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긴장상태를 제거하고 평화를 확고히 담보하며 평화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획기적이고도 전환적인 발기로 된다.

3자회담은 판문점이나 그 밖의 편리한 제3국에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긴장완화와 조국통일의 새로운 서장으로 될 3자회담이 하루빨리 소집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서울당국이 우리의 제의에 깊은 주의를 돌리고 긍정적인 호응을 보일 것을 기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

1984년 1월 10일 평양

(15) 조선로동당 제6차 당대회 보고 (1980.10.10)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

3.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

동지들!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는 것은 우리 당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혁명임무입니다.

우리 당은 총결기간 조국과 민족 앞에 지니고있는 중대한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우리 세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려는 확고부동한 결의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위한 가장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벌였습니다.

우리는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우리 당의 근본립장과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변하는 국내외정세 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국통일의 기본강령으로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자주적평화통일의 출로를 열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서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개별적인사들이 서로 만나 협상할 것을 주동적으로 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우리의 주동적인 발기와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오랜 기간 굳게 닫혀있던 북과 남사이의 장벽의 문이 비로소 열리고 남북대화가 실현되었으며 그 결과에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당이 제시한 조국통일 3대원칙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유일한 통일강령으로 되었습니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실현되고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일보 전진이었으며 이것을 계기로 전민족적범위에서 조국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물론, 남조선의 애국적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용감히 일떠섰습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양양된 투쟁기세에 겁을 먹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조선의 통일을 지연시키고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두개 조선》 정책을 들고나왔습니다.

미국은 《두개 조선》을 조작하는 것을 대조선정책의 기본전략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책동하였으며 여기에 저들의 동맹자들과 추종자들까지 적극 동원하였습니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남조선당국자들은 조선민족으로서의 량심도 남북공동성명을 통하여 민족앞에 다진 서약도 다 집어던지고 분렬주의로선의 돌격대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남조선 인민들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조국통일의 기운을 억누르고 민족분렬기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군대와 경찰,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폭압수단들을 동원하여 파쑈적인 《유신체제》를 만들어놓고 조국통일과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는 남조선의 애국적 인민들과 민주 인사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민족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서 진행되던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파탄시켰을뿐아니라 미제의 각본에 따라 《유엔동시가 입》과 《교차승인》을 부르짖으면서 그것을 실현해보려고 날뛰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분렬주의적책동과 매국배족적책동으로 말미암아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가로놓이게 되었으며 따라서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며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는 것이 중심과업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민족통일세력과 분렬주의세력, 민주주의세력과 파쑈세력, 애국자와 매국자 사이의 심각한 대결과 투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북과 남이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하느냐, 《두개 조선》으로 영구히 분렬하느냐, 민주주의냐 파쑈냐 하는 투쟁이었으며 민족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실현하느냐 아니면 나라의 절반땅을 영원히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내어맡기느냐 하는 투쟁이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조국통일의 장애물인 파쑈적 《유신》독재체제를 철폐하고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애국투쟁에 꺾기하여 용감히 싸움으로써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의 원수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부산과 마산, 서울과 광주를 비롯한 남조선각지에서 줄기차게 벌어진 인민들의 용감한 투쟁은 악명높은 매국노, 《유신》독재의 원흉을 파멸시키고 그 잔당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내리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수많은 인민들이 일제히 떨쳐일어나 손에 무장을 들고 용감히 싸운 광주인민들의 영웅적봉기는 남조선의 파쑈통치지반을 크게 뒤흔들어놓았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 군사파쑈분자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 군사파쑈분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매우 엄중한 사태가 벌어지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 지난해 《10월사건》 이후 음모적방법으로 권력을 틀어쥐고 군사파쑈분자들은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여왔습니다. 그들은 남조선 전지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비롯한 온갖 정치활동을 완전히 금지시켰으며 악명높은 이전의 독재자들도 감히 하지 못하던 폭압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습니다.

남조선의 군사파쑈악당들은 이른바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지시밑에 중무장한 괴뢰군부대들을 동원하여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떨쳐나선 광주의 애국적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닥치는대로 검거투옥하였습니다. 또한 군사파쑈악당들은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의 저명한 민주인사들과 정치활동가들을 모조리 잡아가두고 《내란음모죄》요, 《반공법위반죄》요 하는 여러 가지 죄명을 날조하여 악랄하게 처형하고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은 대중적살육만행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20세기말기의 가장 참혹한 인간생지옥으로 전변되었습니다.

남조선의 현 군사파썸분자들이 감행하고있는 폭압만행은 그 야수성과 잔인성에 있어서 세계의 모든 파썸독재자들을 훨씬 뛰어넘고있습니다. 력사는 아직 남조선의 군사파썸통치배들과 같이 한꺼번에 수천명의 동족을 총칼로 살육하고 정치적반대파들을 잔인하게 처형한 인간백정을 알지 못하고있습니다.

미국은 35년동안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여왔으며 남조선의 독재자들을 부추겨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무참히 짓밟아왔습니다. 남조선의 매국배족적인 력대독재자들을 비교하여온 미국은 오늘도 이전 독재자의 파썸화정책을 답습하고있는 남조선의 새로운 군사파썸독재자를 적극 비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사람들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는 남조선군사파썸분자들의 만행은 다 미국의 조종과 비호 밑에 감행되고있습니다. 광주의 애국적봉기자들에 대한 야수적살육만행을 지휘한것도 미국이며 남조선의 민주인사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도록 부추긴것도 미국이며 남조선에서 군사파썸독재 《정권》을 조작하고 인간백정을 그 우두머리자리에 올려앉힌 조종자도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당국자들이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하여 겉으로는 《유감》이요, 《우려》요 하면서 아닌보살하지만 결코 침략자의 속심과 파썸교형리의 정체를 숨길수 없습니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교살하는 장본인이며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학살만행의 배후조종자입니다. 미국은 그 어떤 교활한 술책으로써도 남조선에 오늘과 같은 포악한 군사파썸독재 《정권》을 조작하고 치떨리는 류혈참극을 빚어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비극적사태와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재난은 곧 전체 조선민족의 불행이며 이것은 다름아닌 국토량단과 민족의 분열이 가져온 가슴아픈 결과입니다.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받은 조선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의 이 불행한 사태를 보고만 있을수 없으며 민족의 장래운명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파썸통치를 청산하고 조국을 통일함으로써 겨레들이 겪고있는 불행과 비극을 끝장내야 하며 우리 민족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지 못하고 분열을 지속시키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두 개 민족으로 갈라지게 될것이며 남조선인민들은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것입니다.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지 못하면 우리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지켜내기도 어렵게 될것입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세력권쟁탈을 위한 령강들사이의 대립과 충돌이 날로 격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력사는 령강들이 세력권을 넓히기 위한 싸움을 벌릴 때마다 그 과정에 작은 나라들이 리익을 침해당하고 희생물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세계 여러나라들사이의 리해관계가 복잡하게 엉키고 령강들사이의 군사적대결이 날로 격화되고있는 때에 우리 나라가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계속 북과 남으로 갈라진 상태에 있게 된다면 우리 민족은 또다시 외세의 희생물로, 식민지노예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령강의 리해관계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룡락당하고 우리 겨레가 망국노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지난날의 가슴아픈 력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며 그러자면 갈라진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여야 합니다.

분렬은 예속과 망국의 길이며 오직 통일만이 독립과 번영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통일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으며 조국을 통일하는것보다 더 절박한 과업은 없습니다.

남북조선인민들과 전체 조선민족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입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군사파썸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오늘과 같이 민주주의가 여지없이 말살되고 가혹한 군사파썸통치가 실시되는 조건에서는 민족적 화해와 단결을 이룩할수 없으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수 없습니다. 남조선에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파썸적인 악법들을 폐지하고 모든 폭압 통치기구들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을 합법화하고 정당, 사회단체, 개별적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체포투옥된 민주인사들과 애국적인민들을 석방하고 그들에게 가해진 모든 형벌을 무효로 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유신체제》를 청산한 기초우에서 군사파썸 《정권》을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옹호하며 대변하는 민주주의적인 정권을 교체하여야 할것입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북과 남의 방대한 무장력이 서로 대치하여있으며 남조선에는 수만명의 미국군대가 주둔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군사파 썸분자들의 끊임없는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정세는 언제나 긴장성을 띠고있으며 우리 나라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험이 항시적으로 존재하고있습니다. 오늘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정세가 긴장하고 침예한곳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우리의 주변나라 인민들과 전세계인민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동족상쟁을 피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 것을 념원하고있습니다.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전쟁위험을 가시는 것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북과 남이 서로 충을 겨누고 맞서있으며 동족상쟁의 위험이 떠도는 가운데서는 북과 남사이의 그 어떤 접촉과 대화도

좋은 성과를 거둘수 없으며 민족의 진정한 단합과 통일을 이룩할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문제는 오직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꿈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과 미국사이의 대화를 실현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하여 미국에 이미 여러 차례 제의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제의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가장 정당한 발기이며 이것은 미국인민들의 리익과 념원에도 전적으로 맞는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정당한 제의를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고있으며 남조선에 자기의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고 평화에 엄중한 위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협상할 것을 미국에 다시한번 제의합니다.

미국당국자들이 우리의 이 제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은 전쟁이나 평화나 하는 문제에 대한 그들의 명백한 대답으로 될것입니다. 미국당국자들은 이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야 할것이며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우리의 정당한 제의를 받아들이며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대를 하루빨리 철거함으로써 미국인민을 포함한 세계인민들의 일치한 념원과 의사에 맞게행동하여야 할것입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미국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시키며 조선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끝장내야 합니다.

미국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은 오늘 우리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기본장애로 되고있습니다. 《두개 조선》을 조작하여 단일민족인 우리 민족을 영구히 둘로 갈라놓으려는 미국의 분렬정책은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어긋나는것이며 이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결코 정당화될수 없습니다. 또한 남조선을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고 남조선의 군사파썸분자들을 적극 비호하고있는 미국의 내정간섭정책은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과 조선의 통일을 저해하고있으며 그것은 조선인민과 미국인민들사이의 관계 발전에도 좋지못한 영향을 미치게 될것입니다.

미국은 분렬주의적인 《두개 조선》정책을 더는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지 말고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미국은 남조선의 군사파썸분자들을 비호하지 말아야 하며 조선의 내정에 대한 온갖 간섭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이 반드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우리 민족자체의 힘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북과 남사이의 무력행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접촉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한민족으로서 대단결을 이룩하는 원칙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7.4남북공동성명에서 북과 남이 공동으로 천명한 숭고한 리념과 원칙에 기초하여 그리고 나라의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로부터 출발하여 가장 빠르고 확신성있는 조국통일방도를 찾아야 하며 적극적인 노력으로써 그것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연합하여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하는것이라고 인정합니다.

해방후 오늘까지 북과 남에는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여왔으며 거기에서는 서로 다른 사상이 지배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면 어느 한쪽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북과 남이 제각기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거나 그것을 상대방에 강요하려 한다면 불가피적으로 대결과 충돌을 가져오게 되며 그렇게 되면 도리어 분열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것입니다. 전민족이 한결같이 조국통일을 지상의 과제로 인정하고있는 이상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통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한나라안에서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수 있으며 하나의 통일국가안에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함께 존재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결코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을것이며 오직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복종시킬것입니다.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합니다.

연방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대표들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것입니다.

최고민족연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는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전민족의 단결, 합작, 통일의 념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리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하여야 할것입니다.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사회제도와 행정조직들,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며 어느 한쪽이 다른쪽에 자기 의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은 연방정부의 지도밑에 전민족의 근본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연방국가의 국호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나라 통일국가의 이름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과 남의 공통한 정치리념을 반영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하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어떠한 정치군사적동맹이나 뿔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되여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있는 북과 남의 두 지역을 하나의 련방국가로 통일하는 조건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중립국가로 되는 것은 필연적인것이며 또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우리 나라의 전령토와 전민족을 포괄하는 통일국가로서 전체 조선 인민의 근본리익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 당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다음과 같은 시정방침을 내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첫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주성은 독립국가의 기본표정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국가활동에서 확고한 자주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행사하여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킬수 있으며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으며 그 어떤 외세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뿔럭불가담국가로 되여야 할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온갖 형태의 외세의 간섭과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대내외활동에서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하며 국가정치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조선민족의 근본리익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할것입니다.

둘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나라의 전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각이한 사상과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같이 공감하고 받아들일수 있는 공통한 정치리념이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신성한 권리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독재정치와 정보정치를 반대하고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옹호, 보장하는 민주주의적인 사회정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정당, 사회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북과 남에 살고있는 인민들이 나라의 모든 지역을 자유로이 오고가며 임의의 지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의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나라안의 두 지역과 두 제도, 여러 당파와 계급, 계층의 리익을 다같이 보장하는 공정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가 실시하는 모든 정책은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민족의 단결과 합작을 강화하여 나라의 통일적인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것으로 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통일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북과 남의 어떠한 단체나 개별적인사에

대하여서도 과거를 묻지 않고 단결하여나가며 어떤 형태의 정치적보복이나 박해도 허용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셋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며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앞으로 계속 개발리용할수 있는 풍부한 자연부원이 있으며 지난 기간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가 있습니다. 나라가 통일된 조건에서 북과 남이 서로 협조하고 합작하여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우리 나라의 민족경제는 매우 빨리 발전할수 있을것이며 우리 인민들은 모두다 남부럽지 않게 잘살수 있을것입니다.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는 북과 남의 서로 다른 경제제도와 기업체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실현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국가소유와 협동단체소유, 사적소유와 개인소유를 다같이 인정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자본가들의 소유와 기업활동에 대해서도 독점과 매판행위를 추구하지 않고 민족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에서는 그것을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련방국가는 여러 계급과 계층의 리익에 맞게 모든 생산단위와 기업체들의 경제활동을 잘 조절하면서 북과 남이 지하자원과 바다자원을 비롯한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리용하며 호상 협력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분업과 통상을 널리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의 당국 또는 기업체들사이에 공동회사, 공동시장 같은 것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것도 좋을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사이의 광범한 합작과 교류를 통하여 북과 남의 경제를 서로 련결되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자립적인 민족경제로 발전시켜나가야 할것입니다.

넷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과학, 문화, 교육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을 통일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유구하고 찬란한 민족문화의 전통을 가지고있습니다.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훌륭히 발전시켜왔습니다. 해방후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서는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재능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자라났습니다. 북과 남사이에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여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힘과 지혜를 합친다면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을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시킬수 있을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과학기술분야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교환하도록 하여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예술인들과 체육인들 사이의 교류와 합작을 적극 장려하며 북과 남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민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관리하며 고유한 우리말과 글을 연구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민족문화예술을 더욱 찬란히 꽃피우고 단일민족으로서의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계속 살려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교육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량방정부는 인민적인 교육제도를 발전시키고 교육사업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민족기술인재를 많이 양성하며 전체 인민의 문화지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련결하며 전국적범위에서 교통, 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리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교통과 체신은 나라의 동맥이며 신경입니다. 국토가 량단되고 교통과 체신이 끊어짐으로써 우리 민족은 가족, 친척들을 가까이 두고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소식조차 나누지 못하는 커다란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북과 남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다시 련결하여야 민족의 이러한 불행을 끝장낼수 있으며 북과 남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와 합작을 원만히 실현할수 있습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을 련결하는 철길과 자동차길을 복구하고 뱃길과 비행기길을 개설하여 땅과 바다, 하늘을 통한 북과 남사이의 자유로운 래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북과 남의 전지역에 걸쳐 전신, 전화가 통하고 우편물이 자유로이 오고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이 교통수단과 체신시설을 공동으로 리용할뿐 아니라 그 관리운영도 점차 공동으로 하여 앞으로는 온 나라의 교통과 체신을 일원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켜야 합니다.

근로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 물질적부의 창조자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주며 그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높이는 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되어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은 통일정부가 마땅히 리행하여야 할 민족적의무이기도 합니다.

련방국가는 모든 활동에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살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여주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중산층의 생활수준으로 끌어올려 전체 인민이 다 잘 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노동능력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을 알선해주고 노동조건과 휴식조건을 마련해주며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수 있는 임금제도와 가격정책, 공정한 세금제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체들에서 정상적으로 생산활동을 진행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대책을 세우며 특히 령세농어민들과 소상공인, 수공업자들의 경리를 국가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근로자들의 교육과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국가적인 보장대책을 세워 모든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수 있고 병을 치료받을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연합군을



조직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대치하여있는 것은 호상간에 오해와 불신을 조성하고 불화를 가져오며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으로 됩니다.

련방국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끝장내고 동족상쟁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하여 쌍방의 군대를 각각 10만~15만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북과 남을 갈라놓고있는 군사분계선을 없애고 그 일대의 모든 군사시설을 제거하며 북과 남에 있는 민간군사조직들을 해산하고 민간군사훈련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련방국은 조선인민군과 남조선 <국군>을 통합하여 단일한 민족연합군을 조직하여야 합니다. 민족연합군은 북과 남의 어느쪽에도 속하지 않는 통일국가의 민족군대로서 련방정부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민족연합군을 유지하며 조국을 보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담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져야 할것입니다.

여덟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여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우리 조선동포들이 해외에서 살고있습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조국으로서 마땅히 그들의 민족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지녀야 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위한 그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성원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모든 해외동포들이 조국으로 자유로이 래왕하며 조국에 돌아와 임의의 지역에서 자유롭게 살며 활동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아홉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이전에 다른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옳바로 처리하며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이 실현되기전에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옳바로 처리하여야 통일국가안에서 전민족적리익과 두 지역의 리익이 다같이 적절히 보장될수 있으며 련방국가가 세계여러나라들과 공정한 립장에서 친선관계를 발전시켜나갈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이 된 다음에도 북과 남이 일정한 범위에서 각각 다른 나라들과 독자적인 대외관계를 가지게 되는 조건에서 련방정부가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일방적으로 맺은 군사조약을 비롯하여 민족적단합에 배치되는 모든 조약과 협정들을 폐기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가운데서 경제관계를 비롯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에 어긋나지 않는 대외관계는 계속 유지하여야 할것입니다.

련방국은 북과 남이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으로 합작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련방국은 나라가 통일되기전에 남조선에 투자한 다른 나라의 자본을

다치지 말며 그 리권을 계속 보장하여야 할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이 다른 나라들과 쌍무적관계를 가지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대외관계를 잘 조절하여 두 지역정부가 대외활동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열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전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전체 조선민족을 유일적으로 대표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 전조선민족을 대표하여 참가하며 전민족을 대표하여야 할 모든 국제적인 행사들에 유일대표단을 보내야 할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중립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빨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며 자주성과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공존의 원칙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특히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린접한 나라들과의 선린관계를 적극 발전시켜나가야 할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로 되어야 하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통일된 조선은 주변나라들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침략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이며 국제적인 그 어떤 침략행위에도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을것입니다. 련방국가는 우리나라 령토에 다른 나라 군대의 주둔과 다른 나라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말며 핵무기의 생산과 반입, 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조선반도를 영원한 평화지대로, 비핵지대로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실행하여야 할 10대시정방침은 전체 조선민족의 공통된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통일된 조선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습니다.

우리 당이 이번에 새롭게 제기하는 조국통일방안과 통일국가의 10대정강은 전체 조선인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을것이며 세계인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을것입니다.

우리 당은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을 하루빨리 실천에 옮기고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려는 5천만 겨레의 절절한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적극 투쟁할것입니다.

우리 당의 방안대로 련방공화국을 창립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하나의 민족대통일전선에 굳게 뭉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는 아직도 많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장애와 난관을 반드시 뚫고나갈것이며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코 성취하고야말것입니다.

온 민족이 단결하고 북과 남이 합작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고 조국을 통일하면 우리 나라는 5천만의 인구나 찬란한 민족문화와 위력한 민족경제를 가진 자주독립국가로서 당당한 존엄과 권위를 가지고 세계무대에 등장할것이며 삼천리 강토우에 더욱 부강하고 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을 건설하게 될것입니다.

(16)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 회의 채택 대미서한 (1974.3.25)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된 미합중국 국회(상·하 양원)에 보내는 편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 회의는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제를 마련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미합중국 국회 상, 하양원에 이 편지를 보낸다.

1972년 7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을 때 전체 조선인민과 전세계 평화애호 인민들은 조선에서의 평화유지와 통일문제 해결의 밝은 전망으로 큰 고무를 받았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거의 두해가 지난 오늘 조선에서 사태발전은 인민들의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로 되고 있다.

긴장상태는 일시 완화되는 것 같았으나 도로 격화되고 있으며 평화통일의 전망대신에 군사적 대결과 전쟁위험만이 날로 커가고 있다.

조성된 정세는 세계인민들의 응당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사태를 풀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조선에서 전쟁의 위협을 막고 긴장상태를 가시며 평화통일을 촉진시키자면 무엇보다도 남북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의연히 굳게 믿고 있다.

사실 지금과 같이 방대한 무력이 서로 대치하여 있는 조건에서는 조선의 평화통일과 관련된 크고 작은 어떤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에서 정전이 이루어진 첫날부터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군비축소, 평화협정체결과 같은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들을 거듭 제기하였다.

우리는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대화가 시작된 이후에도 남북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는 것을 가장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로 제기하였다.

만일 우리의 평화적 발기들이 어느 하나라도 실현되었더라면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는 보장되었을 것이며 오늘과 같이 긴장상태가 다시 격화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가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고 군대와 군비를 줄이며 외국군대를 내보내고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여도 그에 응하지 않고 전쟁준비를 다그쳐왔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오직 미국을 등에 업고 나라의 통일을 반대하며 남조선인민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 소동을 끊임없이 벌려 놓으면서 미군의 장기주둔을 간청

하며 고의적으로 남북관계를 긴장시켜왔다.

얼마전 남조선당국자들은 자기들의 이러한 행동을 가리우기 위하여 이른바 「불가침조약」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에서 군사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남조선당국자들이 아니라 미군사령관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군수통수권을 갖지 못한 남조선당국자들이 남조선에 미국군대를 그냥 남겨둔 채 「불가침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은 평화에 대한 아무런 담보도 할 수 없는 빈말공부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우리의 자주적이며 평화애호적인 발기들을 덮어놓고 거부하는 남조선당국자들의 모든 행동을 부추긴 것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은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대화가 시작된 이후에도 대화의 배경에 무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남조선에 대한 군사원조와 무력지원을 강화하고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도전행위와 군사훈련, 고속도 고공정찰기에 의한 정탐행위를 빈번히 감행하며 끊임없이 긴장상태를 격화시켜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선이 통일되지 못하고 오늘과 같은 긴장된 정세와 전쟁위험에 직면하고 있는데 대한 주되는 책임이 미국정부당국에 있다고 인정한다.

남조선에 미국군대가 남아있는 조건에서는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고 평화를 공고히 할 수 없으며 남조선당국자들은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사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더욱 더 명백해지고 있다.

현실은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고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로의 장애로 되는 외부적 요인들을 제거하며 조선사람끼리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제를 마련하려면 남조선에 자기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모든 군사통수권을 틀어쥐고 있는 미국과 직접 평화협정체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조선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은 이미 오래전에 철거하였으며 「UN군」측에서 남아있는 군대도 오직 미군뿐인 조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은 조선정전협정의 체약 쌍방으로서 실제적 당사자로 되고 있다.

오늘 정전협정은 그 자체가 이미 낡았으며 많은 면에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미합중국과의 사이에 체결될 평화협정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첫째, 쌍방은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직접적 무력 충돌의 모든 위험성을 제거할 것이다.

미국은 남조선당국자들의 전쟁도발책동과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 탄압 행위를 사주하지 않고 비호하지 않으며 조선의 북과 남이 남북공동성명에 따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나라를 통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조선의 내정에 일체 간섭하지 않을데 대한 의무를 질 것이다.



둘째, 쌍방은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조선경외로부터의 일체 무기와 작전장비,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할 것이다.

셋째, 남조선에 있는 외국군대는 「UN군」의 모자를 벗어야 하며 가장 빠른 기간내에 일체 무기를 가지고 모두 철거하도록 할 것이다.

넷째,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한 후 조선은 그 어떤 외국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을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이와 같은 조치들을 전제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회담을 진행할 것을 정식으로 제기한다.

회담은 지금 판문점에 있는 군사정전위원회보다 한급 높은 대표자들로 구성하며 회담장소로서는 판문점 또는 제3국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가 성과적으로 해결될 때에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관계에서도 개변이 일어날 것이며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새로운 발기는 미국인민의 이익과 세계평화의 이익에도 전적으로 맞는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미합중국 국회와 미국 정부당국이 우리의 새로운 평화적 발기에 신중한 고려를 돌리고 긍정적 반응을 보이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1974년 3월 25일 평양

(17) 김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 회의 보고 (1973.4.15)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 회의, 정무원 총리 김 일 대의원의 보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킬 데

대의원동지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노력에 의하여 북과 남 사이의 대화가 시작된 때로부터 이미 한해반동안의 시일이 지나갔으며 역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때로부터도 벌써 아홉달이란 시일이 흘러갔습니다. 전체 조선인민은 북과 남 사이의 대화의 시작을 거족적인 기쁨 속에 맞이하였으며 그에 커다란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또한 조선에서의 대화의 실현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세계평화위업에 대한 기여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져 4분의 1세기동안이나 격폐된 상태에 놓여있던 조선의 북과 남 사이의 접촉과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의 획기적 전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안팎의 정세는 온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더욱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조선로동당 제 5차대회와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펼쳐 주신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6개년계획과 3대 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고 있으며 북반부 혁명기지를 보다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석같이 뭉쳐 있으며 평화적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려는 투지와 신심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성과에 고무되어 남조선인민들은 군사파쇼폭압이 무겁게 내리누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함없이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 자유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현시기 국제정세도 그 발전과정이 매우 복잡하지만 전반적 추이는 제국주의세력의 쇠퇴몰락과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령량의 장성강화로 특징지어지고 있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 현대성은 비상히 확대강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제국주의가 날로 무너지고 우리 나라 전체 인민들 속에서 평화통일기운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오늘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 나가는 것은 우리 앞에 나서는 가장 간절한 과업으로 됩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앞길은 물론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북과 남사이의 대화의 문을 열기에 이르기가까지만 하여도 오랜 시일 수많은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지 않으며 안되었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북과 남사이의 대화과정 역시 순조로운 것이라고 말하기는 힘든 형편에



있으며 인민들이 기대하는 응당한 수준에서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화는 거듭 되고 시간은 적지않게 흘렀으나 유감스럽게도 남북간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시키는데 있어서나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실제적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빠른 속도로 순조롭게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요인은 다름아닌 미국이 남조선을 의연히 강점하고 있으면서 조선사람끼리 대화를 진행하는데 음으로 양으로 간섭하며 그 앞에 인위적 난관을 조성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미국은 조선의 분열을 영구화하며 두개 조선을 만들어냄으로써 언제까지나 남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군사기지로 엮매두려는 데로부터 조선의 통일을 바라지 않으며 그를 극력 방해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들로 하여금 불과 남사이의 대화의 전진을 방해하고 있는 근본요인들을 하루빨리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이번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 회의 앞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킬 데 대한 문제를 의정으로 내놓으면서 해당한 대책들을 강구할 것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대의원동지들!

갈라진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우리가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 민족 최대의 임무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군의 남조선강점으로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통일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가장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방침들을 천명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우리 인민을 곧바로 이끌어 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기본방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통일문제를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할 것을 주장하여 왔으며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룩할 데 대한 우리의 기본방침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가장 정당한 방침입니다. 조국통일은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을 내쫓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며 조선사람자신이 해결하여야 할 민족내부문제입니다. 따라서 조국통일문제의 해결에서는 마땅히 민족자결권의 원칙이 견지되어야 하며 누구보다도 우리 민족자신이 민족의 운명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의 운명을 자신이 개척하는 자주적 원칙을 견지하여야만 외세의 간섭이 없이 민족의 주체적 힘으로 통일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나라의 통일을 우리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그리고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에 따라 정세발전의 매시 기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았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우리가 조국이 분열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평화통일제안을 내놓은 것은 무려 130여 차례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밑에 우리가 제의한 방안들에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원칙적인 문제들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다 밝혀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할 데 대한 근본문제를 비롯하여 남북연방제, 경제, 문화교류, 군비 축소, 사람들이 래왕과 편지거래에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실로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방안들은 민족분열의 비운을 하루빨리 끝장 내고 통일된 조국의 품속에서 함께 살려는 온 민족의 절절한 염원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으며 또한 분별로 말미암아 남북간에 조성된 각이한 정세를 충분히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안들은 남북 전체 인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력대위정자들은 망국적인 외세의존정책에 매달려 우리의 자주적 통일방안들을 덮어놓고 거부하고 반대하였으며 그 어느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지는 것을 반대하였을 뿐 아니라 완전한 통일에 앞서 과도적인 대책으로서 남북연방제를 실시하지는 것도 거부하고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자는 것도 반대하였으며 통일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어떠한 조치도 다 반대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의 통일은 한없이 지연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1971년 8월 6일 연설에서 새롭게 천명하신 폭넓은 남북협상방침은 오래동안 지속된 남북사이의 동결상태를 깨뜨리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는 획기적인 리정표로 되었습니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이 방침은 미제가 국내외적으로 더욱 헤여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어 갔으며 특히 아세아침략정책의 전면적 파산으로 그들이 더 이상 이 지역에 붙어있기 곤란하게 된 정세발전의 급격한 변동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성과에 고무되어 남조선 인민들속에서 반파쇼민주화투쟁과 평화통일기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양양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한 것으로서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때까지 남북사이의 모든 접촉을 완강히 거부하여 오던 남조선당국자들도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으로서나마 우리와의 대화의 길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비록 좁은 테두리의 것이고 또 때늦은 감도 있었지만 어쨌든 조선사람들끼리 모여앉아 민족내부문제를 토의하게 된만큼 매우 의의있는 일로 인정하고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이미 마련된 대화를 보다 폭넓은 정치협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힘썼습니다. 그 결과 남북고위급 회담이 마련되고 마침내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게 되었습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조국통일의 3대원칙은 첫째로,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룩하며 둘째로,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며 셋째로,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북공동성명발표이후 북과 남 사이에는 우리의 제기에 의하여 더 나아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및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할 데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정부와 전체 인민이 기울여온 불굴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모든 성과들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자주성, 민족의 완전한 해방을 요구하는 수령님의 주체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중시하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적인 평화통일방침과 폭넓은 남북협상방침의 정당성을 뚜렷이 확증하였습니다.

참으로 북과 남의 대화의 실현과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외세를 물리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 커다란 돌파구를 열어놓은 것으로서 민족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갈 데 대한 우리 민족의 슬기와 능력을 온 세상에 시위한 중대한 사변이었습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에 대한 새로 일어나는 민족자주력량의 승리를 의미하였으며 전쟁정책에 대한 평화애호정책의 승리를 의미하였습니다.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로 조국통일의 기본원칙들에 합의를 보았고 남북고위급정치회담이 마련된 조건에서 우리는 쌍방간에 합의를 본 조항들을 될수록 빨리 실천에 옮기며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계속 모든 힘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의 3대원칙이 정확히 리행되도록 진지하게 노력하였습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의 3대원칙은 온갖형태의 예측을 반대하고 자주와 독립을 요구하며 분렬을 반대하고 통일을 고수하며 전쟁을 배격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오늘의 시대적 사조를 폭넓게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나라를 통일하자는 자주원칙은 미제가 남조선에서 나가야 하며 그 밖의 다른 외부세력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평화통일원칙을 옳게 지키자면 쌍방이 정세를 침체화시키는 언행부터 하지말아야 합니다.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원칙은 쌍방이 서로 자기의 제도를 상대방에 강요하지 말며 또한 사회의 민주화와 각 당, 각파, 각계 인사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고 평화를 유지하며 우리민족이 자주를 기치를 높이 들고 굳게 단결하여 모든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면 민족의 주체적 힘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곧바른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성실히 리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서 우선 이미 합의된 원칙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외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북과 남 사이의 합작을 실현할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합작을 실현할 데 대하여 제의하였으며 경제분야의 합작으로서 북반부에 풍부히 매장된 지하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남북의 어장을 개방하고 고기잡이를 같이하며 남반부에서의 관개공사를 공동으로 추진시키는 등 쌍방의 경제적가능성을 민족경제의 자립

적발전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리용할데 대하여 제기하였습니다. 과학, 문화 분야에서의 합작으로서 민족어를 통일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을 같이 하고 우리 나라 역사를 공동으로 연구하여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 풍모를 빛내이며 예술단, 체육단을 교환하고 단일한 민족예술단과 단일한 체육단을 구성하여 대외에도 공동으로 진출하데 대하여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군사적 합작을 실현하여 대외활동에서 북과 남이 공동보조를 취한데 대하여도 제기하였습니다.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구체적 제안들은 모든 문제를 민족내부문제로서 자신의 힘으로 풀어나가며 하루빨리 분렬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민족적 단합의 실제적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을 주동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한 적극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이처럼 남북간의 합작을 실현할 때 쌍방간의 오해를 풀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며 나아가서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 등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남북간의 불신과 오해를 풀고 호상 리해와 신임을 두터이 하고 민족적 단결의 분위기를 마련하고 남북 대화를 전진시키기 위한 가장 간절하고도 관건적인 고리로서 남북사이의 현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할 데 대한 중요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쌍방의 방대한 무력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자체가 매우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아니라 쌍방사이의 오해와 불신임을 낳는 근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쌍방이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대결상태와 군비경쟁을 계속하며 긴장상태를 풀지 않는다면 대화에서 좋은 결실을 얻기 어려울 것이며 설사 일부 문제들에서 합의를 본다 하여도 그 리념에서 난관이 생길 것은 뻔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아무리 합작이요, 래왕이요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빈소리에 그치고 어느 때든지 쌍방은 서로 속을 주지 않을 것이며 정치적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남북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풀기위한 결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만 모든 오해와 불신임을 없애고 호상 신뢰와 단결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며 북과 남 사이의 대화를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고 통일도상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미군을 포함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북과 남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고 군비를 대폭 축소하며 외국으로부터의 일체 무기와 작전장비 및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하며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북과 남 사이에 서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데 대하여 담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데 대한 5개 항목의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의 이 제안은 우리 나라에서 평화를 공고히 하고 북과 남 사이의 확고한 신뢰의 체제를 하루빨리 마련함으로써 합작과 단결을 도모하며 평화통일예로의 길을 적극적으로 개척해나 가려는 우리의 일관한 성의와 진지성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제안이 실현되면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는 급속히 해소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서 결정적 국면이 열릴



것이며 우리 나라에서 평화를 공고히 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서 큰 걸음을 내디디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인민들의 군비부담을 덜어주고 수많은 청장년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우리 민족의 인적, 물적 자원을 민족경제의 건설과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더 많이 돌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의심할 바 없이 북과 남의 온 겨레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고 평화통일을 위한 그들의 투쟁을 더욱 고무할 것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민들로부터 전적인 지지와 환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도 이미 우리와 무력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자주적으로 민족적 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이룩할데 대하여 합의한 것만큼 진짜로 그들이 평화통일을 념원한다면 우리의 이 공명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아무런 리유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진짜로 우리와 싸우려 하지 않는다면 군비축소에 응하지 못할 리유가 없을 것이며 이때까지 싸우던 월남에서도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미군이 철거하는데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20년이 되는 우리 나라에서 평화협정을 맺지 못할 리유가 없을 것이며 남조선에서 미군을 내보내지 못할 리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이 모든 제안들은 남조선당국자들로부터 응당한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쌍방간의 합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할 단계에서 더 전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북과 남사이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할 데 대하여 원칙상 합의는 보았지만 그의 실천을 방해하는 근원은 의연히 제거되지 않았으며 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이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미국이 남조선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배적 지위를 리용하여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며 북과 남사이의 대화의 진척을 각방으로 방해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심화될수록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신식민주의적지배의 마수가 얼마나 뿌리깊이 뻗어있으며 그들이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자주적 통일을 가로막기 위하여 얼마나 음흉하게 책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더욱 똑똑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대의원동지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북과 남사이에 대화가 시작된 다음 우리 앞에 벌어진 모든 사실들은 미제야말로 평화적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원흉이며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2차세계대전후 미국은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였으며 그곳을 그들의 새형의 식민지로, 아세아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군사기지로 전변시켰습니다. 미국은 전조선을 정복하려는 목적으로 조선에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배를 당하고서도 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을 한시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조선을 계속 식민지군사기지로 엮어매두기 위하여 새 전쟁준비를 다그치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일관되게 방해하여 왔습니다. 조선에서의 패전이후 내리막길에 들어선 미국은 최근년간 아세아의 다른 여러 곳에서 거듭 심대한 패배를 당하였으며 국내외적으로 더욱

심각한 정치, 경제, 군사적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막다른 골목으로부터의 출로를 작은 나라들에 대한 무력간섭과 각개격파전술에서 찾으려고 하며 이른바 <닉슨주의>의 교리에 따라 아세아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동원하여 주로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는>방법으로 자기들의 침략적 목적을 이루어보려고 책동하여 왔습니다. <닉슨주의>의 요구에 따라 조선에서는 남조선의 일부 호전분자들을 내세워 <조선사람들끼 싸우게 하는>방법으로 저들의 침략적 야망을 실천해보려고 꾀하여 왔습니다.

특히 미국은 오늘 아세아의 여러 곳에서 쫓겨나고 있는 조건에서 남조선을 더욱더 아세아 침략의 가장 중요한 거점으로 인정하고 남조선을 <닉슨주의의 시험장>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하나 그를 틀어쥐고 있으려고 모든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은 겉으로는 남북공동성명을 환영하는 척하면서 북과 남사이의 대화에 처음부터 찬물을 끼얹으며 그를 방해하여 왔습니다.

미국무성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자 그 다음날에 벌써 남북대화가 진행된다 하여도 미국은 자기의 군대를 남조선에 그냥 둘 것이며 <국군현대화계획을 계속추진>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자들이 <힘의 입장>에서 우리와의 회담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는 식으로 떠벌이였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바라지 않으며 남조선당국자들을 로골적으로 힘의 대결정책으로 추동하려는 미국의 속심을 그대로 드러내놓은 것이였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이러한 무분별한 언행을 우리 나라 내정문제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간섭으로서 또한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고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견결히 규탄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에도 자기의 군대를 걷어가지고 물러갈 대신에 우리 나라에서의 정세발전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군비증강과 전쟁준비, 남조선에서의 파쑈화를 더욱 다그치고 긴장상태를 지속시키며 무력지원으로 남조선당국자들을 남북대결의 길로 끊임없이 부추겨왔습니다.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군사 <원조>가 남조선당국자들로 하여금 우리와의 대화에서 <보다 강력한 입장>에 서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에 계속 신형무기와 작전장비를 대주고 군사기지를 확장하며 실사없이 전쟁연습과 군사적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에만 하여도 미국은 팔라밋천이 바닥이 나서 이른바 <대외원조>문제에서 것처럼 심한 진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남조선에 대해서만은 세계의 다른 어느 추종국가들에 준 것보다도 몇 배나 더 많은 무려 7억 8천만달러라는 방대한 경제 및 군사<원조>를 쏟아부었습니다.

최근에는 남침략전쟁에 동원되었던 각종 최신형 중무기들과 군사장비들까지도 남조선에 넘겨주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미국이 남조선에서 남조선군대와 함께 전쟁연습과 군사적 도발을 날로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남조선 주둔 미군은 지난 2월에도 각종 살인무기들을 끌어내며 우리 나라 서해안 일대에서 <유도탄 사격훈련>을 벌렸는데 4월초에는 동남해안일대에서 남조선군대와 공동으로 대규모상륙작전

훈련을 벌릴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미군과 남조선군대가 합동하여 대규모적인 상륙작전 훈련을 한다는 것은 벌써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위한 것이며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직접적인 도발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떠들고 있는 <남침>의 위협이 아니라 바로 그들로부터의 북침의 위협이 우리나라에서 현실적 전쟁위험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모든 심상치않은 사태발전에 대하여 신중한 주의를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에서 평화의 분위기가 아니라 전쟁의 분위기를 고취하여 남조선당국자들이 떠들고 있는 <힘의 우위>와 <승공통일>론을 뒤받침해주며 그들을 민족적 단합과 합작의 길이 아니라 힘의 대결과 경쟁으로 추동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미국방장관은 국회에 제출한 년례보고에서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원과 계속적인 군사적 주둔이 <힘의 립장에서 남조선이 북조선과 협상할 수 있게 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미군의 남조선주둔은 계속 불가피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벌이였습니다.

남조선에서 미국군대가 계속 남아있겠으며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겠으니 힘의 립장에서 협상하라고 하는 남조선당국자들에 대한 미국정부당국자들의 이러한 로골적인 부추김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의 3대원칙을 규정한 남북공동성명에 전적으로 위반된다는 것은 더 설명을 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사람들은 남북공동성명 발표이후 북과 남사이의 대화에서 별로 전진을 보지 못한 것이 우연하지 않다는 것을 여기에서 똑똑히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와 마주앉아 회담할 때에는 좋은 말을 하고 일련의 원칙적 문제들에서 합의를 보았으나 그들이 돌아가서 하는 행동은 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배치되고 미국당국자들의 언행과 일치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남북공동성명에서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하고자 하였으나 돌아가서는 미군이 외세가 아니라고 하면서 미국당국자들이 하는 말 그대로 미군이 남조선에 오래 남아있어야 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남조선에 와있는 미군군대까지도 외세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민족자주의식이 없다는 사실을 실증하는 것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북공동성명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자 하였으나 돌아가서는 미국당국자들이 하는 말 그대로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실력배양>을 하여야 한다느니, 현대전은 <속전속결>을 요한다느니 하면서 군비경쟁과 전쟁준비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한다고 하였으나 돌아가서는 반공운동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마저 새로운 <법>들에 의하여 더욱 가혹하게 억압하며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나서는 인민들과 애국자들을 마구 체포, 투옥, 학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그들은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모든 위반하고 자주가 아니라 외세의존의 길로,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길로, 민족적 대단결이 아니라 우리와의 대결과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력양에 대한 군사파쇼폭압을 더욱 강화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의 대화에서 쫓겨나고 돌아가서는 반공, 대결, 분열, 전쟁준비를 공공연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조선당국자들은 <평화통일>의 체제를 갖춘다는 미명하에 사실인즉 평화통일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이른바 <10월유신>이라는 것까지 꾸며냈습니다.

그들은 류레없는 총칼의 탄압밑에 <유신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완전히 말살하였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까지도 그 3분의 1을 <대통령>의 어용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것이 지명하는 그야말로 세상에 돌도없는 <법>을 조작하여 <국회>마저 완전히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대통령>한사람만이 통일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 다른 평범한 정계인사들과 인민대중들은 평화통일론의를 입 밖에도 낼 수 없게 완전히 봉쇄하고 말았으며 결국은 현 집권자의 장기집권과 군사파쇼독재체제를 강화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준비와 대결태세를 강화하여 나섰습니다.

바로 이러한 형편에서 그들은 우리와의 합작을 말로는 찬성한다고 하고서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은 반대하여 나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외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합작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에 대하여 <지금은 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면서 거부하여 나섰습니다.

그들은 우리와의 정치회담을 하면서도 정치, 군사분야에서 합작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안에 대하여 한사코 반대하였으며 우리와 마주 앉아 경제적 합작과 문화적 합작의 유익성을 말로는 인정하면서도 실제적 문제의 해결을 본질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쌍방사이의 오해와 불신임을 제거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도로서 우리가 제기한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할 데 대한 제안도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반대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단계에서 쌍방간의 오해와 불신임을 풀고 호상 이해와 신임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도를 제시하면 물러앉고 맙니다. 이처럼 이것도 저것도 다 반대하고 아무런 실질적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북과 남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시기는 과연 언제 성숙되었습니까.

만일 남조선당국자들이 진짜로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 민족자주적인 립장에 서있다면 우리가 것처럼 성의를 가지고 민족적 단합과 통일을 주장하며 남북간의 현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자고 하는데 대하여 것처럼 공공연히 반대하며 <대화있는 대결>이니 <경쟁>이니 하는 말을 대치시켜나서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남북공동성명에서 약속한대로 진짜로 외세에 의거하지 않으면 우리와 싸우려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미군이 그냥 남조선에 있어달라고 하며 군비경쟁을 계속하며 전쟁준비를 다그칠 하등의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시작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은 조국에서 과연 누가 진짜로 통일을 원하고 민족을 위하여 누가 진짜로 나라를 팔고 동족상쟁을 피하는가, 누가 진짜로 평화를 주장하고 누가 진짜로 전쟁을 고취하는가 하는 것을 남김없이 드러내놓았습니다.

구경 남조선당국자들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과 부추김으로 하여 통일대신 분열을 피하고 평화대신에 전쟁을 추구하며 민족적 단결과 합작대신을 대결과 경쟁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은 남조선을 식민지군사기지로 언제까지나 가지고 있으려는 목적밑에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적극 방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른바 <다국화>된 세계에서의 <세력균형>을 운운하면서 조선의 분열을 영원히 고착시키고 두개 조선을 만들어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책동에 일본군국주의 세력을 공모자로 적극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일부 반동들은 미국의 책동에 가담하는 대가로 남조선에서의 옛식민주지배권을 회복할 것을 망상하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재침책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남조선당국자들을 우리와의 대결에로 부추기는 일변도정책을 의연히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에 근거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허울좋은 <평화>의 간판밑에 남조선을 영원히 강점하려 하며 우리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북과 남사이의 대결을 고취하며 우리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고발하며 그들의 침략적 죄행을 견결히 단죄합니다.

이제 우리는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성과적으로 추진되며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이 이룩되자면 무엇보다도 남조선에서 미군이 하루빨리 물러가야 하며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이 결정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만일 미국당국자들이 세계의 면전에서 내세우고 있는 <평화>와 <평화적 조정>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그들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조선사람끼리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이때에 마땅히 남조선에 대한 모든 군사<원조>를 중지하고 군비확장을 그만두며 군대를 철수하고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미국은 <유엔결의>에 빙자하여 미국군대의 남조선주둔을 합리화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남조선당국자들을 무력으로 부추켜 북과 남사이의 대화의 진척을 방해하며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유엔>의 사명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는 것입니다.

원래 미군의 남조선강점 그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비법행위입니다.

미국은 조선전쟁을 도발하고 미군에 <유엔군>의 모자를 씌워놓았으나 그것으로써도 자기들의 침략적 정체를 가리울 수는 없습니다.

미군이 남조선에 그냥 남아있는 것은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를 예견한 조선

정전협정에도 전적으로 위반됩니다.

더우기 미국은 우리가 <남침> 할까봐 남조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곳에 미군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거듭 천명하였을 뿐 아니라 남북공동성명서에게까지 쌍방이 서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 데 대하여 공약한 만큼 미군이 <유엔군>으로서 남조선에 남아 경찰의 역할을 높아야 할 리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계속 <유엔결의>에 빙자하여 남조선에 머물러있게 되며 이른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남아있게 된다면 그것은 이때까지 유엔에서 통과시킨 조선에 관한 <결의>가 현실적으로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진척시키며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장애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 줄 따름입니다.

얼마 전에도 남조선에서는 평화통일을 반대할 목적으로 <비상사태>우에 <비상계엄령>을 2중으로 선포하고 <국회>를 비롯하여 모든 정당들을 해산하고 대학들을 폐쇄하고 언론기관들을 총검으로 통제하는 류레없이 극악한 군사파쇼폭압의 환경 속에서 이른바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와 <통일주체국민회의><선거>놀음을 벌려놓았는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상례에 따라 또다시 이것을 가리켜 <자유로운 민주주의선거>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서는 또한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와있는 미군에게서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고 그들을 철거시키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제국주의가 망하고 사회주의와 민족해방혁명이 승리하며 모든 민족이 자주, 자립하는 력사적 전환의 시대입니다. 미국은 제국주의 령강들이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하여 좌지우지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매개 나라 인민들이 자기의 운명을 자기자신이 결정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시대적 조류로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기의 군대와 무기와 <닉슨주의>를 모두 걷어가지고 남조선과 아세아의 모든 곳에서 물러가야 하며 아세아나라들의 문제는 매개 나라 인민들 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합니다.

대의원 동지들!

거의 30년동안이나 끌어온 민족의 분렬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들이 겪고 있는 불행과 고통은 헤어릴 수 없으며 더 이상 이를 그대로 지속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세대에 이 민족적 불행을 끝장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민족의 수치로 될 것이며 력사와 후대들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의 앞길을 가로막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통일위업을 더는 지체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적 장래를 우려하는 조선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야 할 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조성된 정세 하에서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북과 남의 모든 인민들과 각당, 각파, 각계 인사들이 거족적으로 떨쳐일어나 단합된 힘으로 통일을 방해하는 외세를 물리쳐야 하며 남조선당국자들도 정책개변을 하고 진정으로 우리와의 대화에서 새국면을 열어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자체가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성공으로 이끌어 하루빨리 남북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적 화목과 단결의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입장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주동적인 발기에 의하여 열어놓은 대화의 문을 더 활짝 열어놓자는 입장이며 대화의 열매가 훌륭하게 맺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충분한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언제나 충실할 것이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변함없이 힘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미 제의한 바와 같이 북과 남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외교의 각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인 합작을 실현하자는 것을 다시금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첫째,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둘째, 우리나라에서 미군을 포함한 일체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셋째, 북과 남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고 군비를 대폭 축소하며 넷째, 외국으로부터의 일체 무기와 작전장비 및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하며, 다섯째,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북과 남사이에 서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 데 대하여 담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기한 우리의 5개항목 제안에 합의하고 하루빨리 해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군이 나가면 우리의 군대를 자진해서 20만이하로 줄이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새로이 천명합니다.

만일 남조선당국자들이 정말로 우리와 대화를 통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풀려고 한다면 <대결있는 대결>이니 <경쟁>이니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장하는 대화있는 단결과 합작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외세를 등에 업고 외세의 부추김을 받아 우리와 대결하려는 입장에 선다면 쌍방의 대화에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대결>이란 말 그대로 서로 겨루고 승패를 가름한다는 것인데 남북이 서로 방대한 무력을 쥐고 앉아서 승패를 겨루게 된다면 결국에는 싸움밖에 터질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싸움이 다시 터진다면 그것을 좋아할 것은 오직 미국과 그를 추종하는 매국세력뿐일 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와 공동성명에 서명은 하였으나 의연히 우리를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의 합작제도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할 데 대한 제의도 모두 신뢰의 분위기가 조성되기 전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통일문제해결을 무한정 끝자

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시기상조>니 뭐니하면서 지연전술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 민족이 남조선당국자들이 늘말하듯이 통일을 아직도 10년 또는 100년 이상이나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남북당사자들이 결심만 한다면 래일이라도 또는 몇달안으로라도 통일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또 그것을 주장합니다.

북과 남의 대화에서 지금 문제는 의연히 신임이나 불신임이나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민족앞에 지닌 숭고한 책임감으로부터 출발하여 조국통일문제를 언제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침을 취하여 왔으며 남북공동성명에서도 주동적으로 평화통일 원칙을 제기하고 서로 합의를 보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통일문제해결을 위하여 결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을 것이며 <남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금 내외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도 우리와 같은 정정당당한 민족적인 대국적견지에 서서 대결, 반공, 군비경쟁, 전쟁준비를 그만두고 나라의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함께 힘써야 할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우리의 인내성있는 노력과 성의에도 불구하고 만일 남조선당국자들이 그릇된 입장을 고집하고 남북대화와 평화통일의 간판을 리용하여 사회여론을 우롱하여 계속 <대화있는 대결>을 고창하고 <속전속결>을 부르짖으며 분렬과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그것은 인민들의 커다란 증오와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인민들은 결코 그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통일은 몇몇 특정한 사람들만의 사업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모든 애국력량이 다 참여하여야 할 거족적인 사업이며 전체 인민의 적극적인 참가밑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민족적인 힘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공동위업을 추진시켜 나가기 위하여서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북과 남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이 광범히 접촉하고 의견을 나누며 통일문제 해결에서 그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남북조절위원회 사업을 잘하는 것과 함께 대화의 폭을 넓혀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들 사이의 광범한 접촉과 협상을 실현할 것을 주장합니다.

오늘 거족적인 조국통일운동을 벌려나가는데서 또한 절실한 문제로 나서는 것은 인민들에게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마련하여주는 것입니다.

남조선에서 자유로운 평화통일운동을 가로막고 공산주의와의 어떠한 연계도 접촉도 <범죄시> 하는 분렬주의적이며 비민주주의적인 모든 법률들이 철폐되어야 하며 누구나 통일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전체 조선인민이 이르는곳 마다에서 평화통일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한결같이



일떠서 거족적인 평화통일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간다면 우리는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어떠한 난관도 이겨내고 통일위업을 확신성있게 성취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북과 남의 모든 민족전체적인 역량을 발동하여 조국통일의 주되는 장애물인 미군을 남조선에서 내보내고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가로막음으로써 모든 외세의 간섭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당국자들도 변화된 정세하에서 지난날의 정책을 개편하고 남조선에서 그의 군대를 철거시키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해체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조선의 평화적 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장애물들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할 때가 되었고 인정합니다.

미국당국자들이 정말로 조선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며 극동과 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를 념원한다면 무엇 때문에 이이상 남조선에 자기의 군대를 두어두고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우리와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인위적으로 지속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마땅히 군대를 철거시켜야 하며 남조선에 무기와 군사장비를 반입하고 그곳에서 군사기지를 확장하며 군사연습을 진행하는 것과 같은 모든 전쟁준비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선과 미국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다같이 부합되며 평화의 리익에도 전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는 또한 미국이 <유엔결의>에 의하여 미군의 남조선주둔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조선문제에 관한 지난날의 <유엔결의>가 현실적으로 북과 남사이의 대화진행과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지장을 주고 있는 만큼 유엔이 이에 응당한 주의를 돌리고 지난날의 잘못된 <결의>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유엔이 조선문제에 관여한지도 벌써 26년이 됩니다.

이 오랜 기간 조선의 분렬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나 인도적 견지에서 보나 유엔의 권위로 보나 어느모로 보아도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유엔은 남조선에 와있는 미군에게서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고 그들을 철거시키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실현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엔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하여 차별정책을 실시하지 말아야 하며 유엔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가 논의될 때에는 우리 공화국대표가 반드시 참가하여 마음대로 자기의 견해를 발표하며 그것을 모든 유엔성원국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벌써 두해씩이나 유엔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가 토의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으며 올해에도 계속 그렇게 하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엔에서 이러한 비정상적상태가 세해씩이나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에 참가하고 있는 나라들도 언제까지나 거기 에 남아 있지 말 것을 희망합니다. 칠레와 파키스탄은 이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에서

탈퇴하든지 또는 그 <위원단>의 사업을 무시함으로써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자체로 해체되게 하든가 유엔의 결의에 의하여 해체되게 하여 조선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조국의 완전한 통일독립을 위한 해방투쟁인 동시에 국제적인 반미반제투쟁의 중요한 한개 고리이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은 평화적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굳은 연대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더욱 깊이 확신할 수 있게 하며 우리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여 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정당한 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우리인민의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 형제적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적 독립국가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 국가들과 인민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세계의 더욱더 많은 나라들과 인민들이 조선문제를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과 같이 여기면서 이에 보다 큰 주목을 돌리고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더욱 자극적으로 지지성원하여 주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평화와 긴장완화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각국의 국회들과 정부들과 인민들이 남조선에서 미군을 내보내며 조선인민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각 방면으로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올해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가 반드시 토의되게 하며 조선에 대하여 정당한 방침이 취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대의원동지들!

우리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바야흐로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에 처하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아직도 적지않은 난관이 있으나 우리는 지금 통일의 밝은 전망을 확신성있게 내다볼 수 있습니다.

오늘에 와서 그 누구도 자기자신의 손으로 조국을 통일하려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를 꺾을 수 없으며 그 어떠한 힘도 민족적 대단결과 나라의 평화통일을 지향하여 나가는 우리 민족의 거세찬 흐름을 돌려세울 수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굳게 단결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것이며 민족분렬의 비운을 끝장내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며 온 겨레가 통일독립 되고 번영하는 조국에서 행복된 새생활을 누리게 될 그날은 멀지 않아 오고야 말 것입니다.

(18) 김일성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 회의 연설 (1962.10.23)

김일성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 회의 연설

<전략> 우리나라의 통일은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일체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자기의 식민지, 군사기지로 만들고 남조선 사회를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려 놓고는 긴장상태를 격화시켜 조선에서의 평화를 부단히 위협하고 있으며 온갖 흉책을 다하여 우리나라의 통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한 남조선 강점과 그의 침략정책은 남조선 인민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신과 고통의 화근이며 남조선 사회의 진보와 우리나라의 평화적 통일의 기본적 장애물입니다.

역사상 외래침략군대에 의하여 국토가 강점되고 외세의 간섭이 있는 조건에서 국가의 독립과 통일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습니다.

미국침략군대를 남조선으로부터 철거시킴으로써만 남조선 인민들을 기아와 빈궁, 식민지적 노예의 처지에서 구출할 수 있으며 분열된 우리 조국을 통일하려는 민족적 념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미국군대의 남조선 강점을 비호하면서 국가의 통일에 대하여 운운하는 자들은 실지에 있어서는 통일을 반대하는 자들이며 제국주의 침략의 앞잡이들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 군대를 남조선에 주둔시킬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그것을 정당화할 아무런 구실도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군대는 남조선으로부터 물러가야 하며 조선문제는 조선인민 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북으로부터의 공산주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남조선에 미국군대가 주둔하여야 한다고 떠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허위로써 그 누구도 기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시종일관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진할 의도가 없으며 무력으로써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습니다.

<북으로부터의 공산주의 침략>이라는 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전조선을 침략하며 나아가서 아세아를 침략하려는 자기들의 흉악한 목적을 가리우기 위하여 만들어 낸 병풍에 불과합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조선사람끼리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전조선을 침략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음흉한 책동을 철저히 폭로 분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유엔이 조선문제를 토의할 권리가 없으며 우리나라의 내정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인정합니다. 조선문제는 뉴욕이나 워싱턴에서 외국사람들이 논의할 것이 아니라 평양이나 서울에서 조선사람끼리 토의하여야 합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조선인민의 내정문제이며 오직 조선사람이 자신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조선의 내정에 외국이 간섭할 어떠한 근거가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우리 민족 내부의 일을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외세에 의존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망상이며 그것은 전조선을 제국주의적 침략에 내어 맡기자는 것입니다.

조선인민은 자기 힘으로 능히 자기 조국을 통일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통일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복잡하고도 어려운 과업입니다. 세계제국주의의 두목인 미제국주의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전조선과 아세아에 대한 침략정책을 추구하면서 발광적으로 새 전쟁도발음모를 꾸미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견고하고도 장기적인 투쟁을 통하여서만 조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은 남조선으로부터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는 조건하에서 일련의 중간 걸음들을 거쳐 점차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남북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을 데 대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남북조선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루차 제기하였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왔습니다.

조선인민은 동족상쟁을 원치 않으며 국내전쟁을 위하여 자기의 귀중한 노동의 열매를 탕진할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군대를 증가하고 군비를 확장할 것이 아니라 무력을 축하고 긴장상태를 제거함으로써 남북조선이 다같이 민족경제의 건설과 인민생활의 향상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북조선인민들의 고혈을 짜내어 70만의 고용 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이와 같은 방대한 군사력은 민족보위와는 아무 관련도 없으며 그것은 오직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의 도구로 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있어서 견디기 어려운 부담으로 되며 조선에서의 평화에 커다란 위협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남북조선간의 평화협정의 체결과 군대의 축소는 무엇보다도 먼저 남조선인민들의 무거운 군사비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며 남북간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긴장상태를 제거하고 호상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남조선으로부터 일체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남북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무력을 축소하는 것은 조국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서 중요한 첫걸음으로 될 것입니다.

남북간에 긴장상태가 철거되면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 경제 문화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략>

(19) 김일성 8·15해방 10돏경축대회 보고 (1955.8.14)

김일성 8.15해방 10돏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1955년 8월 14일

<전략>

2

동지들!

해방후 10년동안 인민이 정권의 주인으로 된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오래동안 우리 나라의 발전을 구속하던 모든 낡은 제도가 철저히 분쇄되고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발전이 이루어졌으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지배하고있는 공화국 남반부는 날로 더욱 쇠퇴물락하여가고 있습니다.

1945년 8월에 우리 나라의 북반부와 남반부는 같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성된 국제정세하에서 북위 38도선이남지역에는 미국군대가 진주하게 되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할 목적으로 남조선에 괴뢰정권을 세우고 식민지략탈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민주주의적통일독립국가건설을 파탄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남조선의 우리 동포 형제자매들은 미제의 강점과 괴뢰정권의 학정밑에서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미제의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과 리승만도당의 반인민적매국정책으로 인하여 남조선의 민족경제는 파탄되고 인민생활은 비참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역도가 도발한 조선전쟁은 남조선경제를 더욱 한심한 상태에 몰아넣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남조선의 공업과 농촌경리는 흑심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전후 2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남조선에는 눈에 뜨일만하게 복구된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조선에서 1945년에 인민소비품생산은 정전당시에 비하여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1954년 상반기에 1953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석탄채굴량은 28% 줄어들었으며 고무신생산은 68%, 비누생산은 37%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1954년 한해동안에만도 남조선의 많은 방직공장들이 조업을 중지하였습니다.

미국은 1954년에 2억달러의 소위 《원조》를 남조선에 줄 것을 약속하고 그중 60%를 산업에 투자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는 그 《원조》액의 극히 적은 부분만이 남조선에 들어왔으며 그것도 대부분은 미국의 잉여소비품이었습니다. 1955년에도 미국은 남조선에 적지 않은 《경제원조》를 줄것처럼 약속하였으나 지난 2월말현재까지 약속한 《원조》액의 겨우 5%에 해당하는 잉여소비품이 들어왔을뿐 입니다.

남조선에 대한 자본투자와 잉여상품판매에만 관심을 가지고있는 미국독점자본가들이 남

조선민족산업의 발전에 전혀 흥미를 가질수 없다는것은 명백합니다.

리승만역도는 남조선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1954년과 1955년에 소위 《부흥계획》을 세운다고 떠들었으나 그 자금의 90% 이상이 미국 《원조》에 의존하고있는것만큼 이 《부흥계획》은 남조선출판물들에서 말하고있는바와 같이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입니다.

남조선에서는 산업만 파탄된것이 아니라 농업도 여지없이 황폐화되었습니다.

괴뢰정부의 기만적인 《농지개혁》에 의하여 농촌경리는 더욱 령세화되고 대다수 농민들은 막대한 부채를 걸머진 채 무노예로 전락되었습니다.

《농지개혁》 후 남조선의 경지면적은 더욱 감소되고있는바 1953년에는 1945년에 비하여 15%이상 줄었습니다. 알곡수확고는 계속 줄어들고있으며 1954년~1955년에는 430만석이상의 량곡이 부족하였습니다.

남조선에서 1955년 4월말현재 절량농가수는 약 46만호에 달하였으며 1954년말에 농민들의 부채총액은 200억환이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농사를 버리고 농촌을 떠나간 농가수는 1954년에만 하여도 수만호나 됩니다.

공업과 농업이 파탄됨에 따라 남조선에서 실업자수는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고있습니다. 남조선통신에 의하면 지금 남조선에서 실업자수는 약 200만명을 헤아리고있습니다.

민족정체는 파탄되고 인민생활은 도탄에 빠지고있으나 리승만도당은 군비확장에 더욱더 열을 올리고있습니다. 남조선괴뢰정권은 정전협정이 조인된지 며칠 안되는 1953년 8월에 미국과 소위 《한미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많은 무기를 남조선에 끌어들이 괴뢰군의 무장을 강화하고있으며 리승만도당은 또다시 동족상잔의 내란을 도발할 목적으로 청년학생들을 강제징집하여 새 사단들을 편성하고있습니다.

1954년도 괴뢰정부의 총예산액중에서 직접적군사비는 72%에 달하였습니다.

미제와 리승만도당의 테로적폭압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정책과 괴뢰정권의 반인민적매국정책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항쟁운동은 점차 높아가고있습니다.

남조선근로자들은 195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만 하여도 100여건의 파업투쟁을 단행하였습니다. 이 투쟁에는 부산, 군산, 마산의 부두로동자들과 《대한석탄공사》의 로동자 7,000여명을 포함한 수만명의 로동자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지주의 약탈과 괴뢰정부의 가렴잡세를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도 더욱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괴뢰정부 농림부가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남조선농민들의 공출반대로 말미암아 1954년도 가을곡식에 대한 공출량은 올해 2월중순현재 계획의 56%밖에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남조선청년들속에서 강제징집을 반대하는 기운이 더욱더 높아가고있습니다. 1954년 남조선 전체 징병대상자의 31%가 강제징병을 반대하여 기피하였으며 최근 대학졸업생들의 80%가 강제징병을 반대하여 기피하였습니다.

리승만도당의 어떠한 테로적폭압도 생존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하여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기세를 꺾지 못할것입니다.



동지들!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은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주고있으며 전체 조선인민에게 커다란 불행으로 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과업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업은 이 숭고한 과업을 실현 하는데 복종되어야 합니다.

해방후 10년동안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 해방후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는 실로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투쟁력사였습니다.

1945년 12월에 채택된 조선문제에 관한 모스크바3국외상회의 결정은 조선의 평화적통일과 그 장래발전을 위한 조건을 보장하는 정당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을 실현하기 위한 쏘련측의 성의있는 노력과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위자들의 배신행위와 리승만역도의 배족적행동으로 말미암아 쏘미공동위원회의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모스크바3국외상회의의 결정은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선의 통일문제를 조선사람자체의 손으로 호상리해와 회담의 방법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립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발기로 1948년 4월에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가 진행되었으며 같은해 6월에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의 지도자협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회의들은 조국의 통일문제를 조선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의논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실제적조치였습니다.

4월련석회의후 발표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의 공동성명에는 당시 조성된 정세에서 조선으로부터 쏘미 량국 군대가 철거하는것은 조선문제해결에 유리한 조선을 지어주는 정당한 조치라는것이 지적되어있으며 조선에서 민주주의적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방안들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그후 1949년과 1950년에 발표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호소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와 그리고 남북조선의 모든 애국적력량을 대표하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시종일관한 투쟁을 보여주는 명백한 실례들입니다.

조국의 통일독립과 자유를 념원하는 남북조선의 전체 인민들과 모든 애국적인사들은 우리의 평화적통일로선을 열렬히 지지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위자들과 리승만도당은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한사코 반대하였습니다. 그들은 남조선에서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요구하는 애국적 인사들과 인민들의 운동을 총검으로 탄압하였으며 마침내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력침공으로써 우리의 통일제안에 대답하였습니다.

정전후 정치회의를 소집하며 제네바회의를 통하여 조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은 또다시 미제국주위자들과 남조선당국의 침략적이며 매국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돌아가고말았습니다.

그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차회의는 남조선 《국회》와 각 정당, 사회단체, 군대 및 전체 인민에게 호소문을 보내어 조선의 통일문제를 토의할것을 또다시 제의하였으며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공화국 각 기관과 단체들은 최고인민회의의 호소를 실천할 목적으로 남조선의 해당 기관과 단체들에 남북간의 경제문화교류에 관한 여러가지 구체적조치들을 취할것을 여러차례 제의하였습니다.

최고인민회의의 제8차회의의 호소는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물론, 남조선인민들과 심지어 남조선의 일부 《국회의원》들과 괴뢰군 대내에서까지도 광범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모든 정당하고 합리적인 제안들을 리승만도당은 모두 거부하고말았습니다.

이리하여 해방후 10년이 지나갔으나 전체 조선인민이 한결같이 념원하는 조국의 통일은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국토와 민족은 의연히 량단되어있습니다.

이 민족적 고통과 불행의 화근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침략적인 미제국주의강점군대와 대치하고있는것만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간고하고도 장기적인 성격을 띠지 않을수 없습니다.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우리의 원칙과 립장은 명백합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조선사람 자체의 의사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하고 남북조선인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조선문제를 토의하며 자기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민주주의적통일정부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일치한 념원이며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길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리승만도당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필사적으로 반대하고있습니다. 리승만도당은 여전히 《북진통일》을 요란스럽게 떠들고있으며 군사분계선에서 도발행동과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대한 폭행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조선 괴뢰들은 개성, 용진 그리고 한강하류북안지대를 강탈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있습니다.

만일 그 어떤자들이 우리가 회담의 방법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는것을 우리의 힘이 약하기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평화적방법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자고 주장하는것은 우리가 내란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며 국토의 량단으로 인하여 조선인민이 당하고있는 고통을 하루빨리 제거하기를 념원하기때문입니다.

우리는 남반부인민들이 북반부의 풍부한 전력, 철강재, 동, 연, 화학비료, 카바이드, 소다, 세멘트, 석탄 같은것을 리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남북조선을 가로막고있는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남북간의 자유로운 경제교류와 문화교류를 실시할것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선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남북조선이 호상 접근할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 《국회》사이의 협상을 이룩하며 인민들의 자유로운 래왕을 보장하며 경제, 문화, 과학, 예술의 교류를 실현함으로써 남북조선인민들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호상 이해의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조선인민자체의 일입니다. 어떠한 힘도 조선인민의 이 념원을 꺾을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조선문제에 관심을 가지고있는 국가들은 조선에서의 평화유지에 위협을 줄수 있는 어떠한 도발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져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조선문제의 평화적조정을 위하여 아세아국가들이 광범히 참가하는 극동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방도를 강구할것을 유관국가 정부들에 희망합니다.

외국무력이 조선에 계속 주둔하고있는것은 조선의 평화적통일에 장애가 되는것만큼 조선에 군대를 파견한 국가들은 자기 군대를 조선에서 철수할 조치를 빨리 취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남북조선당국이 남북간에 현존하는 불신임과 긴장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호상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무력행사도 하지 않고 조선의 통일문제를 오직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할 의무를 질데 대하여 조선인민과 전세계인민들 앞에 선포하며 인민들의 군사비부담을 줄이고 비생산로력을 평화적건설에 돌리기 위하여 남북조선군대를 최소한도로 축소할것을 제의합니다.

또한 남북조선의 호상 접근과 협상을 요구하는 전체 조선인민의 념원을 고려하여 조국통일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남북조선당국의 대표자회의를 될수록 빠른 기일안에 소집할것을 요구합니다.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는 많은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있습니다.

전체 조선인민은 모든 장애를 물리치고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각계각층을 망라하고있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더욱 확대강화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치적견해와 신앙의 여하, 재산의 유무를 불문하고 민족의 단결과 조국의 통일을 전정으로 념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쁘게 포용할것이며 그들과 협상할것입니다. 비록 지난날 국가와 인민 앞에 죄를 범하였던자라고 하더라도 만일 그가 자기의과거를 뉘우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선다면 우리는 그를 환영할것이며 그와 협상할것입니다.

동지들!

오늘 국제정세는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매우 유리하게 전변되고있습니다.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을 비롯한 형제나라 인민들과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꾸준한 투쟁으로 말미암아 국제정세에서는 일정한 개선이 있었습니다.

인도지나에서의 정전의 실현과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의 반동회의와 헬싱키평화애호력량대표자세계대회는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며 세계평화와 각이한 제도를 가진 국가들간의 평

화적공존을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들이었습니다.

쏘련의 대오국가조약체결, 쏘련과 유고슬라비아간의 관계개선, 쏘련과 인도간의 친선관계의 강화와 같은 사변들은 세계평화에 커다란 기여로 됩니다.

특히 최근 제네바에서 진행된 4렬강수뇌자회의는 국제긴장상태의 완화와 세계평화위업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변이었습니다. 조선인민은 전세계평화에호인민들과 함께 이 회의를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그 결정들이 원만히 실현될것을 희망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쏘련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을 비롯한 인민민주주의국가 인민들과 전세계평화에호인민들과의 친선의 뉴대를 더욱 강화하면서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우리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할것입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 인민은 해방후 10년동안에 이룩한 자기의 로력과 투쟁의 결과를 커다란 만족감을 가지고 총화하면서 앞으로의 더욱 큰 성과와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습니다.

전체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인 조선로동당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만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만세!

평화와 민주와 사회주의진영인민들의 불패의 국제주의적 친선단결 만세!

사랑하는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영광이 있으라!

(20) 남일 「제네바 정치회담」 최종회의 제1차 연설 (1954.6.15)

외무성 남일 외상, 「제네바 정치회담」 최종회의 제1차 연설

<전략> 남북조선을 물론하고 전체 조선인민은 조선에서의 평화의 공고화를 절실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조선문제의 조정이 국제관계의 긴장상태를 완화시키는 사업에 있어서 현저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도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은 정전의 공고화와 정전으로부터 평화상태로의 점차적 이행에 대한 과업과 관련된 문제들을 심의할 것을 본 회의에 제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외부로부터 조선인민에게 강요된 가혹한 전쟁은 그에게 해아릴 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위협은 오늘도 조선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조선 통치자들은 조선에서 전쟁을 재발하겠다는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지시에 의하여 정전협정 조건들을 무시하면서 남조선에서 광범한 전쟁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공식보도에 의하면 남조선 군대는 정전 후 벌써 4개 사단이 증가되어 16개 사단으로부터 20개 사단으로 되었으며 앞으로도 급속한 시일 내에 또다시 15개 보병사단과 대규모의 공군연합부대를 창설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미국과 남조선 및 그들을 지지하는 다른 나라들이 진실로 조선의 평화유지를 갈망한다면 제네바회의는 조선에서의 평화상태의 공고화와 우리나라에서 정전상태로부터 공고한 평화상태로의 점차적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조선에서 외국군대가 계속 주둔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긴장상태의 완화와 정전으로부터 공고한 평화상태로의 이행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 회의가 일정한 기한 내에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분기별로 전조선 지역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 것을 해당한 국가정부들에 권고할 것을 제의합니다.

남북조선의 현존하는 조선군대를 최소한도로 축소시키는 것은 조선에서 정전으로부터 평화상태로의 이행함에 있어 주요한 대책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 의견에 의하면 만일 전쟁재발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지금 남조선에 대량의 군대를 보존하여 둘 필요는 없습니다. 동원에서 해제된 조선군인들은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인민경제를 복구하는 평화적 노력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군대 유지비의 축소는 인민경제의 복구와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지출을 증대할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은 외국군대의 철거와 남북조선의 군대를 축소에 관한 제 대책의 실천을 감독하기 위한 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위원회는 전쟁상태를 점차적으로 퇴치하며 남북조선의 군대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남조선 정부에 해당한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본 회의는 조선에서의 평화의 공고화를 위한 대책들을 심의하면서 남조선 정부와 미국 정부간에 남조선에 미국의 무력을 무기한으로 주둔시키는 권리를 부여한 소위 「호상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술한 조약은 남조선 지역에 대한 미군의 무기한 강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약은 조선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타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군사적 위협을 타산하는 것이므로 조선에서의 평화강화의 과업과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남북조선을 접근시키기 위하여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남조선간의 경제 및 문화교류 즉 통상, 재정, 회계, 운수, 경계선 관계, 주민들의 통행, 서신의 자유, 과학·문화교류 및 기타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은 아직까지 조선의 정치적 통일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사정은 우리나라 남북사이의 연계를 회복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천적 대책들을 취할 것을 거부하기 위한 구실로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책들을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남북조선 대표들로서 전조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러한 전조선기관의 구성은 조선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나라 남북을 실제적으로 접근시키는 사업에서 중요한 걸음으로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남북조선 대표들 간의 연계의 설정 및 우리나라 남북이 관심을 가진 절박하고 긴급한 문제들에 대한 토의가 현재 조선에 조성된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화시킴에 도움을 줄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조선에서의 평화의 공고화와 경제복구를 위한 과업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북조선에 대한 해안봉쇄와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북조선 인민은 미국측의 이와 같은 전횡을 용허할 수 없으며 우리 해안에 대한 비법적 봉쇄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에서의 평화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네바회의의 참가국들이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있어서 우리는 상술한 국가들이 조선에서 무장적 충돌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를 지며 조선의 민족적 통일에 대한 과업의 급속한 완수를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본회의의 심의를 위하여 제출합니다.

<방 안>

- 조선에서 평화조건을 보장할 데 대하여-

제네바회의의 참가국들은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주의 조선국가를 창건하는 기초우에서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조정할 데 관한 합의를 달성할 목적으로 계속 노력할 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조선에서 평화적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첫째, 비례적 원칙을 준수하면서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조선지역으로부터 모든 외국무력을 철거하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을 해당국가 정부들에 권고할 것. 조선으로부터 외국군대를 철거할 기한은 제네바회의의 참가국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것.

둘째, 1년 기한내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남조선 군대수효를 축소시키되 각 측 군대의 수효 10만명을 넘지 않게 할 것.

셋째, 전쟁상태를 점차적으로 퇴치하기 위한 조건들을 조성하며 쌍방의 군대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킬 데 대한 문제를 심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남조선 정부에 해당한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기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남조선 대표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

넷째, 남북조선을 물론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사이에 군사적 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조약들이 존재하는 것은 조선의 평화적 통일의 이익과 양립될 수 없음을 인정할 것.

다섯째, 남북조선을 접근시키기 위한 조건들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남조선간의 경제 및 문화교류 즉 통상, 재정, 회계, 운수, 경계선관계, 주민의 통행 및 서신의 자유, 과학·문화교류 및 기타 관계를 설정하며 그를 발전시킬 데 대한 합의된 대책들을 강구 실시하기 위한 전조선위원회를 구성할 것.

여섯째, 조선의 평화적 발전을 제네바회의의 참가국들이 보장하며 그리함으로써 조선을 단일한 독립적 민주주의적 국가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과업을 급속히 해결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건들을 조성할 필요성을 진정할 것.

우리는 우리 방안에 예견된 대책들의 실시가 조선에서 정전으로부터 공고한 평화에로의 이행을 보장할 것이며 그리함으로써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III

국제평화조약 사례

국제평화조약 사례

【해 제】

-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선결조건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1990년대 후반기에 남북한·미·중간 4자회담이 개최되었으나 가시적인 성과도출에 실패하였다.
 - 현재 우리 정부는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북·미 평화협정 체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9·19 공동성명’과 ‘2·13 북핵 합의’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 따라서 우리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이러한 맥락에서 양자간 및 다자간 국제적 평화협정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들을 줄 것이다.

코소보 평화협정

Military Technical Agreement between the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and the Governments of the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and the Republic of Serbia(1999.6.9)

- 구유고슬라비아의 세르비아공화국에 속해 있던 자치주 코소보가 1990년대 초에 분리독립 운동을 전개하자 세르비아는 1998년 초에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 NATO는 평화정착을 위해 군사개입을 감행하였고, 1999년 6월 9일 NATO와 신유고 연방 및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 NATO를 중심으로 하는 평화유지군의 코소보 진주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인 유혈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Good Friday Agreement(Belfast Agreement, 1998.4.10)

○ 북아일랜드에서는 영국에 편입을 원하는 신교도들과 독립을 유지하려는 아일랜드 원주민 구교도 간의 대립과 무장충돌이 지속되었다.

- 1997년 양측의 무장세력들이 휴전을 선언하고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영국, 아일랜드, 북아일랜드의 신교도 등 분쟁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역사적인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 이 협정은 영국과 아일랜드 정부에 의해 서명되고 대다수의 북아일랜드 정당들에 의해 보증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협정 이행과정에서 권력분점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었다.

○ 이 평화협정 사례는 협정 체결과정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협정 당사자들 간의 성실한 이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다.

보스니아 평화협정

General Framework Agreement for Peace in Bosnia and Herzegovina(데이턴 평화협정, 1995.12.14)

○ 냉전종식 이후 보스니아 이슬람 정부 및 이에 협조하는 크로아티아인과, 신유고연방의 지원을 받는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계 사이에 무력분쟁이 발발하였다.

- 1990년 초에 크로아티아-이슬람계가 주도하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독립 선언에 세르비아계가 불만을 갖고 무력공격을 개시하였다.

○ 미국의 주도하에 보스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등 내전 당사국들과 미국, EU, 러시아 등 중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오하이오 주의 데이튼(Dayton)에서 내전을 종결짓는 평화협정이 1995년 11월 21일 합의되었다.

- 「데이턴 협정」(Dayton Agreement)으로도 알려진 이 협정은 12월 14일 파리에서 공식 서명되었다.

-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협정이행을 감시·감독하고 있고, NATO 이행군(IFOR: Implementation Force)이 협정의 군사적 사항 이행을 책임지고 있다.
- 「보스니아 평화협정」은 다국적군을 투입하여 평화유지에 대한 책임을 맡게 함으로써 국제적 평화협정의 실효성을 제고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캄보디아 평화협정 Final Act of the Paris Conference on Cambodia(1991.10.23)

- 친미 론 놀 정부는 1975년 중국의 지원을 받은 크메르루즈에 의해 무너졌고, 1976년 「민주 캄푸치아공화국」이 선포되었으며, 캄푸치아 공산당이 국정을 주도하면서 베트남에게도 호전적인 태도를 보였다.
 - 베트남이 1979년 캄보디아를 침략하여 연속적인 캄보디아 정부를 세웠으나, 크메르루즈 게릴라군과 베트남이 지원하는 캄보디아 정부, 그리고 왕정주의자 및 반공주의자 파벌들 간에 전투가 계속되었다.
- 유엔이 10여 년간 협상을 주도한 결과, 캄보디아에 관한 파리회담에서 유엔사무총장의 참석 하에 캄보디아와 18개국 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 캄보디아는 1992년부터 정치가 안정되었으며, 1993년에는 입헌군주국으로 복귀하였다.
- 「캄보디아 평화협정」은 다자간 협상 및 조약·협정 체결에서 유엔, 특히 안보리와 사무총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독일문제의 최종종결에 관한 조약

Treaty on the Final Settlement with Respect to Germany(1990.9.12)

- 1990년 독일통일 과정에서 「화폐·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조약」과 「통일조약」이 독일통일의 내부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이었다면, 「2+4 회담」은 독일통일의 외부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였다.
 - 전승 4국(미국·영국·프랑스·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더불어 전체 독일 및 베를린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었다.
 -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짓는 독일과 전승 4국간의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통일을 앞두고 동서독과 전승 4국은 독일문제 해결을 위하여 「2+4 회담」이라는 특수한 방식을 채택하였다.
 - 1990년 5~9월 4차에 걸친 「2+4 회담」 결과 「독일에 관한 최종해결 조약」이 체결되었다.

- 이 조약이 비록 독일과 전승 4국간의 평화조약은 아니었지만 전승 4국이 이 조약을 통하여 독일통일을 인정하고 독일인에게 완전한 주권을 부여함으로써 독일문제가 해결되었다. 독일은 10월 3일 통일을 선포할 수 있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간의 상호관계원칙, 특히 불개입 및 불간섭에 관한 협정
Bilateral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Afghanistan and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on the Principles of Mutual Relations in particular on Non- interference and Non-intervention(1988.4.14)

- 「제네바 협정」(Geneva Accords)으로도 알려진 이 협정들은 미국과 소련을 보장자로 하고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간에 체결되었다.
- 이 협정들은 ①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간 상호관계 원칙, 특히 불간섭과 비개입에 관한 양자 협정, ②미·소에 의해 서명된 국제적 보장 선언, ③난민들의 자발적 복귀에 관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간 양자협정, ④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간 서명되고 미·소에 의해 입회된 아프가니스탄 관련 상황의 해결을 위한 상호관계 협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 협정들에 따라서 소련군이 철수하였으나, 소련군에 항쟁했던 아프간 레지스탕스인 무자히딘(mujahidin)의 협정조건 수락 거부로 내전이 지속되었다.
- 이 사례는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지 않고 체결된 조약이나 협정은 제3국들이 보장자가 되더라도 실효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집트·아랍」 공화국과 「이스라엘」 국가의 평화조약
Peace Treaty between Israel and Egypt(1979.3.26)

-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사실상 교전상태에 있었고, 1967년 이스라엘은 6일전쟁을 통해 이집트 관할의 시나이 반도를 점령하였다.
 - 그러나 1977년 11월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 1978년 9월 카터 미 대통령의 중재로 메릴랜드 주에 있는 캠프데이비드 휴양지에서 사다트 대통령과 베긴 이스라엘 총리 간에 역사적인 평화협정(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체결되었다.
- 1979년 3월 26일 조인된 평화조약은 이 협정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물이었다.
 - 이 평화조약을 통해 양국간 교전상태가 공식적으로 종식되어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

에서 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는 데 동의했고, 양국의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 이 조약은 협상진전을 위해서는 일방(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과 미국의 중재역할이 중요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평화조약 체결 이후 양국관계의 담보로 평화협정이나 평화조약 체결은 실질적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조건에 불과함을 시사하고 있다.

유럽안보협력회의 최종의정서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Final Act(헬싱키 협약, 1975.8.1)

- CSCE는 동서 냉전기에 유럽지역의 협력안보체로서 1973년 창설되었다.
 - 1975년 8월 1일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CSCE의 35개국은 참가국들의 관계를 규율하는 원칙들과 유럽 평화와 협력을 위한 지역의 현상유지에 합의하여 오늘날 가장 성공적인 국제레짐으로 평가받고 있다.
- 이후 CSCE 발전과정은 정치적 신뢰구축조치 -> 군사적 신뢰구축조치(CBM) -> 신뢰안보구축조치(CSBM)로 이어졌고 냉전종식과 더불어 1995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로 제도화되었다.
 - CSCE 과정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후 군비통제 분야에서 많은 시사점들을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전쟁 종결 및 평화회복에 관한 파리협정

Agreement on Ending the War and Restoring Peace in Viet-Nam(1973.1.27)

- 미국은 1959년부터 수행해 온 베트남전으로부터 손을 떼기 위해 협상을 제안하였고, 이 결과 협상이 진행되어 미국·월남·월맹·베트콩(민족해방전선) 4자간에 전쟁을 종식시키고 미군을 철수하는 평화협정이 1973년 1월 27일 체결되었다.
 - 이로써 ‘월남문제의 월남화’가 이루어져 결국 월남은 1975년 무력으로 공산화되었다.
- 이 사례는 평화협정 자체가 반드시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평화가 위협받을 수 있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군사적 균형과 평화협정의 이행과 준수를 담보하는 국제적 보장이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미·중공 공동성명 Joint U.S.-China Communiqué
(Shanghai Communiqué, 1972.2.28)

- 1949년 사회주의국가 중국의 수립과 한국전쟁 이후 미·중 양국은 동서 냉전기에 20여년간 적대관계에 있었다.
 - 소련 포위와 베트남으로부터 철수를 희망하는 미국과 중·소분쟁에서 전략적 비대칭을 타개하고 경제난을 극복하려는 중국의 이해일치로 1972년 2월 28일 채택되었다.
- 이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사회체제, 외교정책상의 근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노력에 합의하였다.
 - 이후 여러 분야의 교류, 접촉, 협력 확대를 통해 1979년 1월 1일 수교 합의에 이르렀다.
- 상하이 공동성명은 엄격한 의미에서 평화협정은 아니지만 미국이 상이한 사회체제를 가진 중국과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수교를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변화에 큰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 (1) 코소보 평화협정 Military Technical Agreement between the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and the Governments of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and the Republic of Serbia (1999.6.9)

Article I General Obligations

1.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reaffirm the document presented by President Ahtisaari to President Milosevic and approved by the Serb Parliament and the Federal Government on June 3, 1999, to include deployment in Kosovo under UN auspices of effective international civil and security presences. The Parties further note that the UN Security Council is prepared to adopt a resolution, which has been introduced, regarding these presences.
2. The State Governmental authorities of the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and the Republic of Serbia understand and agree that the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will deploy following the adoption of the UNSCR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operate without hindrance within Kosovo and with the authority to take all necessary action to establish and maintain a secure environment for all citizens of Kosovo and otherwise carry out its mission. They further agree to comply with all of the obligations of this Agreement and to facilitate the deployment and operation of this force.
3. For purposes of the Agreement, the following expressions shall have the meanings as described below:
 - a. “The Parties” are those signatories to the Agreement.
 - b. “Authorities” means the appropriate responsible individual, agency, or organisation of the Parties.
 - c. “FRY Forces” includes all of the FRY and Republic of Serbia personnel and organisations with a military capability. This includes regular army and naval forces, armed civilian groups, associated paramilitary groups, air forces, national guards, border police, army reserves, military police, intelligence services, federal and Serbian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local special, riot and anti-terrorist police, and any other groups or individuals so designated by the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commander.
 - d. The Air Safety Zone (ASZ) is defined as a 25-kilometre zone that extends beyond the Kosovo province border into the rest of FRY territory. It includes the airspace above that 25 kilometre zone.
 - e. The Ground Safety Zone (GSZ) is defined as a 5-kilometre zone that extends beyond the Kosovo province border into the rest of FRY territory. It includes the terrain within that 5-kilometre zone.
 - f. Entry Into Force Day (EIF Day) is defined as the day this Agreement is signed.

4. The purposes of these obligations are as follows:

- a. To establish a durable cessation of hostilities, under no circumstances shall any Forces of the FRY and the Republic of Serbia enter into³ reenter, or remain within the territory of Kosovo or the Ground Safety Zone (GSZ) and the Air Safety Zone (ASZ) described in paragraph 3, Article I without the prior express consent of the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commander. Local police will be allowed to remain in the GSZ.
“The above paragraph is without prejudice to the agreed return of FRY and Serbian personnel which will be the subject of a subsequent separate agreemen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6 of the document mention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 b. To provide for the support and authorization of the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and in particular to authorize the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to take such actions as are required, including the use of necessary force, to ensure compliance with this Agreement and protection of the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and to contribute to a secure environment for the international civil implementation presence,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gencies, and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details in Appendix B).

Article II
Cessation of Hostilities

1. The FRY Forces shall immediately, upon entry into force (EIF) of this Agreement, refrain from committing any hostile or provocative acts of any type against any person in Kosovo and will order armed forces to cease all such activities. They shall not encourage, organise or support hostile or provocative demonstrations.
2. Phased Withdrawal of FRY Forces (ground): The FRY agrees to a phased withdrawal of all FRY Forces from Kosovo to locations in Serbia outside Kosovo. FRY Forces will mark and clear minefields, booby traps and obstacles. As they withdraw, FRY Forces will clear all lines of communication by removing all mines, demolitions, booby traps, obstacles, and charges. They will also mark all sides of all minefields. International security forces’ (“KFOR”) entry and deployment into Kosovo will be synchronized. The phased withdrawal of FRY Forces from Kosovo will be in accordance with the sequence outlined below:
 - a. By EIF +1 day, FRY Forces located in Zone 3 will have vacated, via designated routes¹ that Zone to demonstrate compliance (depicted on the map at Appendix A to the Agreement). Once it is verified that FRY forces have complied with this subparagraph and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NATO air strikes will be suspended. The suspension will continue provided that the obligations of this agreement are fully complied with, and provided that the UNSC adopts a resolution concerning the deployment of the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so rapidly that a security gap can be avoided.
 - b. By EIF + 6 days, all FRY Forces in Kosovo will have vacated Zone 1 (depicted on the map at Appendix A to the Agreement). Establish liaison teams with the

- KFOR commander in Pristina.
- c. By EIF + 9 days, all FRY Forces in Kosovo will have vacated Zone 2 (depicted on map at Appendix A to this Agreement).
 - d. By EIF + 11 days, all FRY Forces in Kosovo will have vacated Zone 3 (depicted on map at Appendix A to this Agreement).
 - e. By EIF + 11 days, all FRY Forces in Kosovo will have completed their withdrawal from Kosovo (depicted on map at Appendix A to this Agreement) to locations in Serbia outside Kosovo, and not within the 5 km GSZ. At the end of the sequence (EIF+11), the senior FRY Forces commanders responsible for the withdrawing forces shall confirm in writing to the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commander that the FRY Forces have complied and completed the phased withdrawal. The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commander may approve specific requests for exceptions to the phased withdrawal. The bombing campaign will terminate on complete withdrawal of FRY Forces as provided under Article II. The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shall retain, as necessary, authority to enforce compliance with this Agreement.
 - f. The authorities of the FRY and the Republic of Serbia will cooperate fully with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in its verification of the withdrawal of forces from Kosovo and beyond the ASZ/GSZ.
 - g. FRY armed forces withdrawing in accordance with Appendix A, i.e. in designated assembly areas or withdrawing on designated routes, will not be subject to air attack.
 - h. The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will provide appropriate control of the borders of FRY in Kosovo with Albania and FYROM¹ until the arrival of the civilian mission of the UN.
- ¹ Turkey recognises Macedonia by its constitutional name.

3. Phased Withdrawal of Yugoslav Air and Air Defense Forces (YAADF):

- a. At EIF + 1 day, no FRY aircraft¹ fixed wing and rotary³ will fly in Kosovo airspace or over the ASZ without prior approval by the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commander. All air defence Systems, radar, surface-to-air missile and aircraft of the Parties will refrain from acquisition, target tracking or otherwise illuminating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air platforms operating in the Kosovo airspace or over the ASZ.
- b. By EIF + 3 days, all aircraft, radars, surface-to-air missiles (including man-portable air defense systems (MANPADS)) and anti-aircraft artillery in Kosovo will withdraw to other locations in Serbia outside the 25 kilometer ASZ.
- c. The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commander will control and coordinate use of airspace over Kosovo and the ASZ commencing at EIF. Violation of any of the provisions above, including the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commander’s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airspace over Kosovo, as well as unauthorized flight or activation of FRY Integrated Air Defense (IADS) within the ASZ, are subject to military action by the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including the use of necessary force. The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commander may delegate control of normal civilian air activities to appropriate FRY institutions to monitor

operations, deconflict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air traffic movements, and ensure smooth and safe operations of the air traffic system. It is envisioned that control of civil air traffic will be returned to civilian authorities as soon as practicable.

Article III Notifications

1. This Agreement and written orders requiring compliance will be immediately communicated to all FRY Forces.
2. By EIF + 2 days, the State governmental authorities of the FRY and the Republic of Serbia shall furnish the following specific information regarding the status of all FRY Forces:
 - a. Detailed records, positions and descriptions of all mines, unexploded ordnance, explosive devices, demolitions, obstacles, booby traps, wire entanglement, physical or military hazards to the safe movement of any personnel in Kosovo laid by FRY forces.
 - b. Any further information of a military or security nature about FRY Forces in the territory of Kosovo and the CSZ and ASZ requested by the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commander.

Article IV Establishment of a Joint Implementation Commission (JIC)

A JIC shall be established with the deployment of the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to Kosovo as directed by the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commander.

Article V Final Authority to Interpret

The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commander is the final authority regarding interpretation of this Agreement and the security aspects of the peace settlement it supports. His determinations are binding on all Parties and persons.

Article VI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upon signature.

Appendices.

- A. Phased Withdrawal of FRY Forces from Kosovo.

B.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Operations

FOR INTERNATIONAL SECURITY FOR THE GOVERNMENTS OF FRY
AND FORCE (“KFOR”) REPUBLIC OF SERBIA

(original signed) (original signed)

LT GEN MIKE JACKSON COL GEN SVETOZAR MARJANOVIC

COMMANDER, KFOR GENERAL STAFF OF VJ

NINTH JUNE 1999 (original signed)

LT GEN OBRAD STEVANOV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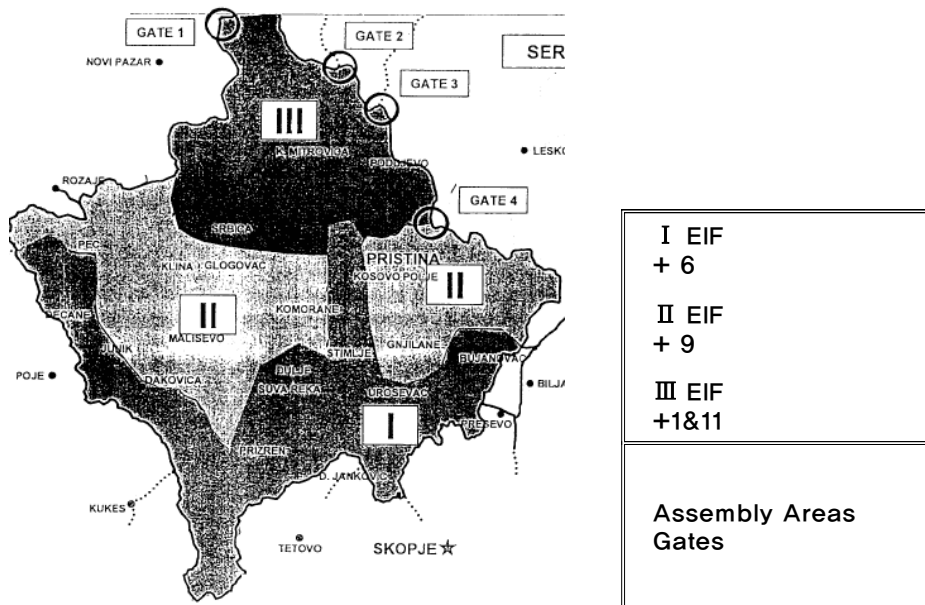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OF THE REPUBLIC OF SERBIA

Appendix A

Phased Withdrawal of FRY Forces from Kosovo

FRY Forces Phased Withdrawal, Routes and Assembly Areas



Appendix B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Operations

1. Consistent with the general obligations of the Military Technical Agreement, the State Governmental authorities of the FRY and Republic of Serbia understand and agree that the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will deploy and operate without hindrance within Kosovo and with the authority to take all necessary action to establish and maintain a secure environment for all citizens of Kosovo.
2. The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commander shall have the authority, without interference or permission, to do all that he judges necessary and proper, including the use of military force, to protect the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the international civil implementation presence, and to carry out the responsibilities inherent in this Military Technical Agreement and the Peace Settlement which it supports.
3. The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nor any of its personnel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s to public or private property that they may cause in the course of dutie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will agree a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as soon as possible.
4.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shall have the right:
 - a. To monitor and ensure compliance with this Agreement and to respond promptly to any violations and restore compliance, using military force if required. This includes necessary actions to:
 1. Enforce withdrawals of FRY Forces.
 2. Enforce compliance following the return of selected FRY personnel to Kosovo.
 3. Provide assistance to other international entities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r otherwise authorised by the UNSC.
 - b. To establish liaison arrangements with local Kosovo authorities, and with FRY/ Serbian civil and military authorities.
 - c. To observe, monitor, and inspect any and all facilities or activities in Kosovo that the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commander believes has or may have military or police capability, or may be associated with the employment of military or police capabilities, or are otherwise relevant to compliance with this Agreement.
5.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understand and agree that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commander has the right and is authorized to compel the removal, withdrawal, or relocation of specific Forces and weapons, and to order the cessation of any activities whenever the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commander determines a potential threat to either the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or its mission, or to another Party.

Forces failing to redeploy, withdraw, relocate, or to cease threatening or potentially threatening activities following such a demand by the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shall be subject to military action by the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including the use of necessary force, to ensure compliance.

(2)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Good Friday Agreement (Belfast Agreement, 1998.4.10)

영국 정부와 아일랜드 정부는 협정 부속서 1에서 명시하고 당해 양국 및 다자간 회의의 기타 참가국이 1998년 4월 10일에 도출한 협정(이하 '다자간 회의 협정'이라 한다)의 강력한 합의내용을 환영한다.

양국 정부는 '다자간 회의 협정'이 북아일랜드 안과 아일랜드 섬 안 및 당해 섬의 국민들 간의 관계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한다.

양국 정부는 양국 국민들 간의 독특한 관계와 친근한 이웃국가, EU 내에서의 동반자로서 긴밀한 양국간 협력을 보다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

양국 정부는 다자간 회의의 근간이었던 민주주의 및 비폭력의 원칙에 대한 총체적 결의를 재확인한다.

양국 정부는 동반자 관계, 평등, 상호 존중의 원칙과 더불어 각국의 관할권 내에서의 시민,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의 보호에 대한 결의를 재확인한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양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i) 영연방의 일원으로 남든 주권국가 아일랜드로 통일을 하건 간에, 북아일랜드의 지위에 관하여 그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자유로이 내린 선택이 갖는 정통성을 인정한다.
- (ii) 오로지 그들 자신만을 위하여 아일랜드 섬의 국민들은 외부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남과 북아일랜드 간의 합의를 통하여, 자유롭고 동시에 주어지는 합의를 바탕으로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들이 희망하는 경우 통일된 아일랜드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또한 이러한 권리는 북아일랜드 과반수 이상의 합의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이를 통해서만 성취되고 행사될 수 있다는 점을 수용한다.
- (iii) 북아일랜드의 상당수 국민들은 아일랜드 섬의 국민 과반수 이상이 갈구하는 통일된 아일랜드에서의 합법적인 희망을 공유하지만, 북아일랜드 국민 과반수 이상의 자유롭고 합법적으로 행사된 의지가 영연방의 일원으로 계속해서 잔류하는 것일 경우, 북아일랜드가 갖는 영연방 일원으로서의 지위는 이들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며 이에 의존한다는 점과 그 국민 과반수 이상의 합의가 없는 경우 북아일랜드의 지위를 변경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인지한다.
- (iv) 차후에 아일랜드 섬의 국민들이 상기 (i), (ii)항을 바탕으로 자결권을 행사하여 통일된 아일랜드를 탄생시킬 경우, 양국 정부는 각국의 의회에 이들 국민의 의지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을 상정하고 지지해야 하는 구속력 있는 의무를 갖는다는 점을 확인한다.

- (v) 북아일랜드 국민 과반수 이상이 자유로이 어떠한 선택을 내리든 간에 관할권을 갖게 되는 주권 정부의 권력은 다양한 정체성과 전통을 갖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대표하여 엄격한 공정성을 가지고 행사되어야 하며, 그 권력은 시민, 정치,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완전한 존중과 평등의 원칙, 모든 국민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자유를 갖는다는 원칙, 동등하게 존중을 받는다는 원칙, 양 공동체 사회의 정체성, 정신, 열의에 대하여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발생한다.
- (vi) 모든 북아일랜드 국민은 그들이 선택하는 바에 따라 아일랜드인, 영국인 또는 양자 모두의 국민으로서 자신을 부르고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태생적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인식하며, 이에 따라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경우 영국과 아일랜드 시민권을 모두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이는 북아일랜드의 지위가 미래에 어떤 식으로 바뀌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

제2조

양국 정부는 ‘다자간 회의 협정’에서 정한 조항들을 지지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이행하기로 한 엄숙한 결의를 확인한다. 특히, 본 협정의 효력이 발생되면 즉각적으로 ‘다자간 회의 협정’에서 정한 조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관들이 설립되어야 한다.

- (i) 남-북 각료급 협의회
- (ii) ‘다자간 협정’ 제9조 (ii)항 ‘구성요소 2’라고 제목이 붙여진 조항에서 명시한 이행 기관들
- (iii) 영국-아일랜드 협의회
- (iv) 영국-아일랜드 정부간 회의

제3조

- (i) 본 협정은 영국 정부와 아일랜드 정부가 1985년 11월 15일에 체결한 협정을 대체하며, 이는 본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 (ii) 상기에서 명시한 1985년 11월 15일의 협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간 회의는 본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동시에 해체된다.

제4조

- (i) 본 협정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 (a) ‘다자간 회의 협정’ 부속서 A에서 ‘헌법 사항’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부분까지의 조항들을 위하여 영국의 법이 제정되어 있어야 한다.
 - (b) ‘다자간 회의 협정’ 부속서 B에서 ‘헌법 사항’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부분까지 정한 아일랜드 헌법의 개헌에 관한 사항은 국민투표로 승인되어 있어야 한다.
 - (c) 본 협정 제2조에서 명시한 기관들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법이 제정되어 있어야 한다.
- (ii) 각국 정부는 본 협정이 효력을 갖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요구사항 중에서 자국과 관련

- 된 사항을 완료하였을 경우, 상대 정부에게 이를 서면 통보하기로 한다. 본 협정은 양국 간에 교환되는 서면 통보 중에서 늦게 도착되는 통보의 수령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iii) 아일랜드 정부는 본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다자간 회의 협정’ 부속서 B에서 ‘헌법 사항’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부분까지 정한 아일랜드 헌법의 개헌에 관한 사항이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보장하기로 한다.
- 양국 정부를 각각 대표하도록 권한을 위임 받은 대표들은 본 협정의 내용에 합의하는 바, 1988년 4월 10일 벨파스트에서 각 2부에 서명함으로써 본 협정을 체결한다.

대영제국과 북아일랜드 정부를 위하여

아일랜드 정부를 위하여

Good Friday Agreement(1998.4.10)

The British and Irish Governments:

Welcoming the strong commitment to the Agreement reached on 10th April 1998 by themselves and other participants in the multi-party talks and set out in Annex 1 to this Agreement (hereinafter “the Multi-Party Agreement”) :

Considering that the Multi-Party Agreement offers an opportunity for a new beginning in relationships within Northern Ireland, within the island of Ireland and between the peoples of these islands:

Wishing to develop still further the unique relationship between their peoples and the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ir countries as friendly neighbours and as partners in the European Union:

Reaffirming their total commitment to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non-violence which have been fundamental to the multi-party talks:

Reaffirming their commitment to the principles of partnership, equally and mutual respect and to the protection of civil,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rights in their respective jurisdiction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two Governments:

- (i) recognize the legitimacy of whatever choice is freely exercised by a majority of the people of Northern Ireland with regard to its status, whether they prefer to continue to support the Union with Great Britain or a sovereign united Ireland:
- (ii) recognize that it is for the people of the island of Ireland alone, by agreement between the two parts respectively and without external impediment, to exercise their right of self-determination on the basis of consent, freely and concurrently given. North and South, to bring about a united Ireland, if that is their wish, accepting that this right must be achieved and exercised with and subject to the agreement and consent of a majority of the people of Northern Ireland:
- (iii) acknowledge that while a substantial section of the people in Northern Ireland share the legitimate wish of a majority of the people of the island of Ireland for a united Ireland, the present wish of a majority of the people of Northern Ireland, freely exercised and legitimate, is to maintain the Union and accordingly, that Northern Ireland’s status as part of the United Kingdom reflects and relies upon that wish: and that it would be wrong to make any change in the status of Northern Ireland save with the consent of a majority of its people:
- (iv) affirm that, if in the future, the people of the island of Ireland exercise their right of self-determination on the basis set out in sections (i) and (ii) above to bring

about a united Ireland, it will be a binding obligation on both Governments to introduce and support in their respective Parliaments legislation to give effect to that wish:

- (v) affirm that whatever choice is freely exercised by a majority of the people of Northern Ireland, the power of the sovereign government with jurisdiction there shall be exercised with rigorous impartiality on behalf of all the people in the diversity of their identities and traditions and shall be founded on the principles of full respect for, and equality of, civil,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freedom from discrimination for all citizens, and of parity of esteem and of just and equal treatment for the identity, ethos and aspirations of both communities:
- (vi) recognize the birthright of all the people of Northern Ireland to identify themselves and be accepted as Irish or British, or both, as they may so choose, and accordingly confirm that their right to hold both British and Irish citizenship is accepted by both Governments and would not be affected by any future change in the status of Northern Ireland.

Article 2

The two Governments affirm their solemn commitment to support, and where appropriate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Multi-Party Agreement. In particular there shall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Multi-Party Agreement immediately on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following institutions:

- (i) a North/South Ministerial Council;
- (ii) the implementation bodies referred to in paragraph 9 (ii) of the section entitled “Strand Two” of the Multi-Party Agreement;
- (iii) a British-Irish Council;
- (iv) a British-Irish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Article 3

- (i) This Agreement shall replace the Agreement between the British and Irish Governments done at Hillsborough on 15th November 1985 which shall cease to have effect on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 (ii) Th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established by Article 2 of the aforementioned Agreement done on 15th November 1985 shall cease to exist on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rticle 4

- (i) It shall be a requirement for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at:
 - (a) British legislation shall have been enacted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Annex A to the section entitled “Constitutional Issues” of the Multi-Party Agreement;
 - (b) the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of Ireland set out in Annex B to the section entitled “Constitutional Issues” of the Multi-Party Agreement shall have been approved by Referendum;
 - (c) such legislation shall have been enacted as may be required to establish the



institutions referred to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 (ii) Each Government shall notify the other in writing of the completion, so far as it is concerned, of the requirements for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later of the two notifications.
- (iii) Immediately on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Irish Government shall ensure that the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of Ireland set out in Annex B to the section entitled “Constitutional Issues” of the Multi-Party Agreement take effect. In witness t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thereto by the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two originals at Belfast on the 10th day of April 1998.

For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For the Government of Ireland

Agreement reached in the multi-party negotiations
10 April 1998

TABLE OF CONTENTS

- 1. Declaration of Support**
- 2. Constitutional Issues**
 - Annex A : Draft Clauses/Schedules for Incorporation in British Legislation**
 - Annex B : Irish Government Draft Legislation**
- 3. Strand One : Democratic Institutions in Northern Ireland**
- 4. Strand Two : North/South Ministerial Council**
- 5. Strand Three :**
 - **British - Irish Council**
 - **British - Irish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 6. Rights, Safeguards and Equality of Opportunity**
 - **Human Rights**
 - **United Kingdom Legislation**
 - **New Institutions in Northern Ireland**
 - **Comparable Steps by the Irish Government**
 - **A Joint Committee**
 - **Reconciliation and Victims of Violence**
 -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Issues**
- 7. Decommissioning**
- 8. Security**
- 9. Policing and Justice**
 - Annex A : Commission on Policing for Northern Ireland**
 - Annex B : Review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 10. Prisoners**
- 11. Validation, Implementation and Review**
 - **Validation and Implementation**
 - **Review Procedures Following Implementation**

1. DECLARATION OF SUPPORT

1. We, the participants in the multi-party negotiations, believe that the agreement we have negotiated offers a truly historic opportunity for a new beginning.
2. The tragedies of the past have left a deep and profoundly regrettable legacy of suffering. We must never forget those who have died or been injured, and their families. But we can best honour them through a fresh start, in which we firmly dedicate ourselves to the achievement of reconciliation, tolerance, and mutual trust, and to the protection and vindication of the human rights of all.
3. We are committed to partnership, equality and mutual respect as the basis of relationships within Northern Ireland, between North and South, and between these islands.
4. We reaffirm our total and absolute commitment to exclusively democratic and peaceful means of resolving differences on political issues, and our opposition to any use or threat of force by others for any political purpose, whether in regard to this agreement or otherwise.
5. We acknowledge the substantial differences between our continuing, and equally legitimate, political aspirations. However, we will endeavour to strive in every practical way towards reconciliation and rapprochement within the framework of democratic and agreed arrangements. We pledge that we will, in good faith, work to ensure the success of each and every one of the arrangements to be established under this agreement. It is accepted that all of the institutional and constitutional arrangements - an Assembly in Northern Ireland, a North/South Ministerial Council, implementation bodies, a British-Irish Council and a British-Irish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and any amendments to British Acts of Parliament and the Constitution of Ireland - are interlocking and interdependent and that in particular the functioning of the Assembly and the North/South Council are so closely inter-related that the success of each depends on that of the other.
6. Accordingly, in a spirit of concord, we strongly commend this agreement to the people, North and South, for their approval.

2. CONSTITUTIONAL ISSUES

1. The participants endorse the commitment made by the British and Irish Governments that, in a new British-Irish Agreement replacing the Anglo-Irish Agreement, they will:
 - (i) recognise the legitimacy of whatever choice is freely exercised by a majority of the people of Northern Ireland with regard to its status, whether they prefer to continue to support the Union with Great Britain or a sovereign united Ireland;
 - (ii) recognise that it is for the people of the island of Ireland alone, by agreement between the two parts respectively and without external impediment, to exercise their right of self-determination on the basis of consent, freely and concurrently given, North and South, to bring about a united Ireland, if that is their wish, accepting that this right must be achieved and exercised with and subject to the agreement and consent of a majority of the people of Northern Ireland;
 - (iii) acknowledge that while a substantial section of the people in Northern Ireland share the legitimate wish of a majority of the people of the island of Ireland for a united Ireland, the present wish of a majority of the people of Northern Ireland, freely exercised and legitimate, is to maintain the Union and, accordingly, that Northern Ireland's status as part of the United Kingdom reflects and relies upon that wish; and that it would be wrong to make any change in the status of Northern Ireland save with the consent of a majority of its people;
 - (iv) affirm that if, in the future, the people of the island of Ireland exercise their right of self-determination on the basis set out in sections (i) and (ii) above to bring about a united Ireland, it will be a binding obligation on both Governments to introduce and support in their respective Parliaments legislation to give effect to that wish;
 - (v) affirm that whatever choice is freely exercised by a majority of the people of Northern Ireland, the power of the sovereign government with jurisdiction there shall be exercised with rigorous impartiality on behalf of all the people in the diversity of their identities and traditions and shall be founded on the principles of full respect for, and equality of, civil,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freedom from discrimination for all citizens, and of parity of esteem and of just and equal treatment for the identity, ethos, and aspirations of both communities;
 - (vi) recognise the birthright of all the people of Northern Ireland to identify themselves and be accepted as Irish or British, or both, as they may so choose, and accordingly confirm that their right to hold both British and Irish citizenship is accepted by both Governments and would not be affected by any future change in the status of Northern Ireland.

2. The participants also note that the two Governments have accordingly undertaken in

the context of this comprehensive political agreement, to propose and support changes in, respectively, the Constitution of Ireland and in British legislation relating to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Northern Ireland.

ANNEX A

DRAFT CLAUSES/SCHEDULES FOR INCORPORATION IN BRITISH LEGISLATION

1. (1) It is hereby declared that Northern Ireland in its entirety remains part of the United Kingdom and shall not cease to be so without the consent of a majority of the people of Northern Ireland voting in a poll held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in accordance with Schedule 1.

(2) But if the wish expressed by a majority in such a poll is that Northern Ireland should cease to be part of the United Kingdom and form part of a united Ireland,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lay before Parliament such proposals to give effect to that wish as may be agreed between Her Majesty's Government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Government of Ireland.
2. The Government of Ireland Act 1920 is repealed; and this Act shall have effect notwithstanding any other previous enactment.

SCHEDULE 1

POLLS FOR THE PURPOSE OF SECTION 1

1.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direct the holding of a poll for the purposes of section 1 on a date specified in the order.
2. Subject to paragraph 3,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exercise the power under paragraph 1 if at any time it appears likely to him that a majority of those voting would express a wish that Northern Ireland should cease to be part of the United Kingdom and form part of a united Ireland.
3.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not make an order under paragraph 1 earlier than seven years after the holding of a previous poll under this Schedule.
4. (Remaining paragraphs along the lines of paragraphs 2 and 3 of existing Schedule 1 to 1973 Act.)

ANNEX B**IRISH GOVERNMENT DRAFT LEGISLATION TO AMEND THE CONSTITUTION**

Add to Article 29 the following sections:

7. 1. The State may consent to be bound by the British-Irish Agreement done at Belfast on the day of 1998, hereinafter called the Agreement.
2. Any institution established by or under the Agreement may exercise the powers and functions thereby conferred on it in respect of all or any part of the island of Ireland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Constitution conferring a like power or function on any person or any organ of State appointed under or created or established by or under this Constitution. Any power or function conferred on such an institution in relation to the settlement or resolution of disputes or controversies may be in addition to or in substitution for any like power or function conferred by this Constitution on any such person or organ of State as aforesaid.
3. If the Government declare that the State has become obliged, pursuant to the Agreement, to give effect to the amendment of this Constitution referred to therein, then, notwithstanding Article 46 hereof, this Constitution shall be amended as follows:

i. the following Articles shall be substituted for Articles 2 and 3 of the Irish text:

- “2. [Irish text to be inserted here]
3. [Irish text to be inserted here]”

ii. the following Articles shall be substituted for Articles 2 and 3 of the English text:

“Article 2

It is the entitlement and birthright of every person born in the island of Ireland, which includes its islands and seas, to be part of the Irish nation. That is also the entitlement of all persons otherwise qualified in accordance with law to be citizens of Ireland. Furthermore, the Irish nation cherishes its special affinity with people of Irish ancestry living abroad who share its cultural identity and heritage.

Article 3

1. It is the firm will of the Irish nation, in harmony and friendship, to unite all the people who share the territory of the island of Ireland, in all the diversity of their identities and traditions, recognising that a united Ireland shall be brought about only by peaceful means with the consent of a majority of the people, democratically expressed, in both jurisdictions in the island. Until then, the laws enacted by the Parliament established by this Constitution shall have the like area and extent of application as the laws enacted by the Parliament that existed immediately before the coming into operation of this Constitution.

2. Institutions with executive powers and functions that are shared between those jurisdictions may be established by their respective responsible authorities for stated purposes and may exercise powers and functions in respect of all or any part of the island.”
- iii. the following section shall be added to the Irish text of this Article:
“8. [Irish text to be inserted here]”
and
- iv. the following section shall be added to the English text of this Article:
“8. The State may exercise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ly recognise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4. If a declaration under this section is made, this subsection and subsection 3, other than the amendment of this Constitution effected thereby, and subsection 5 of this section shall be omitted from every official text of this Constitution published thereafter, but notwithstanding such omission this section shall continue to have the force of law.
5. If such a declaration is not made within twelve months of this section being added to this Constitution or such longer period as may be provided for by law, this sec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and shall be omitted from every official text of this Constitution published thereafter.

3. STRAND ONE

DEMOCRATIC INSTITUTIONS IN NORTHERN IRELAND

1. This agreement provides for a democratically elected Assembly in Northern Ireland which is inclusive in its membership, capable of exercising executive and legislative authority, and subject to safeguard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all sides of the community.

The Assembly

2. A 108-member Assembly will be elected by PR(STV) from existing Westminster constituencies.
3. The Assembly will exercise full legislative and executive authority in respect of those matters currently within the responsibility of the six Northern Ireland Government Departments, with the possibility of taking on responsibility for other matters as detailed elsewhere in this agreement.
4. The Assembly - operating where appropriate on a cross-community basis - will be the prime source of authority in respect of all devolved responsibilities.

Safeguards

5. There will be safeguards to ensure that all sections of the community can participate and work together successfully in the operation of these institutions and that all sections of the community are protected, including:
 - (a) allocations of Committee Chairs, Ministers and Committee membership in proportion to party strengths;
 - (b)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and any Bill of Rights for Northern Ireland supplementing it, which neither the Assembly nor public bodies can infringe, together with a Human Rights Commission;
 - (c) arrangements to provide that key decisions and legislation are proofed to ensure that they do not infringe the ECHR and any Bill of Rights for Northern Ireland;
 - (d) arrangements to ensure key decisions are taken on a cross-community basis;
 - (i) either parallel consent, i.e. a majority of those members present and voting, including a majority of the unionist and nationalist designations present and voting;
 - (ii) or a weighted majority (60%) of members present and voting, including at least 40% of each of the nationalist and unionist designations present and voting.

Key decisions requiring cross-community support will be designated in advance, including election of the Chair of the Assembly, the First Minister and Deputy First Minister, standing orders and budget allocations. In other cases such decisions could be triggered by a petition of concern brought by a significant minority of Assembly members (30/108).

- (e) an Equality Commission to monitor a statutory obligation to promote equality of opportunity in specified areas and parity of esteem between the two main communities, and to investigate individual complaints against public bodies.

Operation of the Assembly

6. At their first meeting, members of the Assembly will register a designation of identity - nationalist, unionist or other - for the purposes of measuring cross-community support in Assembly votes under the relevant provisions above.
7. The Chair and Deputy Chair of the Assembly will be elected on a crosscommunity basis, as set out in paragraph 5(d) above.
8. There will be a Committee for each of the main executive functions of the Northern Ireland Administration. The Chairs and Deputy Chairs of the Assembly Committees will be allocated proportionally, using the d'Hondt system. Membership of the Committees will be in broad proportion to party strengths in the Assembly to ensure that the opportunity of Committee places is available to all members.
9. The Committees will have a scrutiny, policy development and consultation role with respect to the Department with which each is associated, and will have a role in initiation of legislation. They will have the power to:
 - consider and advise on Departmental budgets and Annual Plans in the context of the overall budget allocation;
 - approve relevant secondary legislation and take the Committee stage of relevant primary legislation;
 - call for persons and papers;
 - initiate enquiries and make reports;
 - consider and advise on matters brought to the Committee by its Minister.
10. Standing Committees other than Departmental Committees may be established as may be required from time to time.
11. The Assembly may appoint a special Committee to examine and report on whether a measure or proposal for legislation is in conformity with equality requirements, including the ECHR/Bill of Rights. The Committee shall have the power to call people and papers to assist in its consideration of the matter. The Assembly shall then consider the report of the Committee and can determine the matter in accordance with the cross-community consent procedure.
12. The above special procedure shall be followed when requested by the Executive Committee, or by the relevant Departmental Committee, voting on a cross-community basis.
13. When there is a petition of concern as in 5(d) above, the Assembly shall vote to determine whether the measure may proceed without reference to this special procedure. If this

fails to achieve support on a cross-community basis, as in 5(d)(i) above, the special procedure shall be followed.

Executive Authority

14. Executive authority to be discharged on behalf of the Assembly by a First Minister and Deputy First Minister and up to ten Ministers with Departmental responsibilities.
15. The First Minister and Deputy First Minister shall be jointly elected into office by the Assembly voting on a cross-community basis, according to 5(d)(i) above.
16. Following the election of the First Minister and Deputy First Minister, the posts of Ministers will be allocated to parties on the basis of the d'Hondt system by reference to the number of seats each party has in the Assembly.
17. The Ministers will constitute an Executive Committee, which will be convened, and presided over, by the First Minister and Deputy First Minister.
18. The duties of the First Minister and Deputy First Minister will include, inter alia, dealing with and co-ordinating the work of the Executive Committee and the response of the Northern Ireland administration to external relationships.
19. The Executive Committee will provide a forum for the discussion of, and agreement on, issues which cut across the responsibilities of two or more Ministers, for prioritising executive and legislative proposals and for recommending a common position where necessary (e.g. in dealing with external relationships).
20. The Executive Committee will seek to agree each year, and review as necessary, a programme incorporating an agreed budget linked to policies and programmes, subject to approval by the Assembly, after scrutiny in Assembly Committees, on a cross-community basis.
21. A party may decline the opportunity to nominate a person to serve as a Minister or may subsequently change its nominee.
22. All the Northern Ireland Departments will be headed by a Minister. All Ministers will liaise regularly with their respective Committee.
23. As a condition of appointment, Ministers, including the First Minister and Deputy First Minister, will affirm the terms of a Pledge of Office (Annex A) undertaking to discharge effectively and in good faith all the responsibilities attaching to their office.
24. Ministers will have full executive authority in their respective areas of responsibility, within any broad programme agreed by the Executive Committee and endorsed by the Assembly as a whole.



25. An individual may be removed from office following a decision of the Assembly taken on a cross-community basis, if (s)he loses the confidence of the Assembly, voting on a cross-community basis, for failure to meet his or her responsibilities including, inter alia, those set out in the Pledge of Office. Those who hold office should use only democratic, non-violent means, and those who do not should be excluded or removed from office under these provisions.

Legislation

26. The Assembly will have authority to pass primary legislation for Northern Ireland in devolved areas, subject to:
 - (a) the ECHR and any Bill of Rights for Northern Ireland supplementing it which, if the courts found to be breached, would render the relevant legislation null and void;
 - (b) decisions by simple majority of members voting, except when decision on a cross-community basis is required;
 - (c) detailed scrutiny and approval in the relevant Departmental Committee;
 - (d) mechanisms, based on arrangements proposed for the Scottish Parliament, to ensure suitable co-ordination, and avoid disputes, between the Assembly and the Westminster Parliament;
 - (e) option of the Assembly seeking to include Northern Ireland provisions in United Kingdom-wide legislation in the Westminster Parliament, especially on devolved issues where parity is normally maintained (e.g. social security, company law).
27. The Assembly will have authority to legislate in reserved areas with the approval of the Secretary of State and subject to Parliamentary control.
28. Disputes over legislative competence will be decided by the Courts.
29. Legislation could be initiated by an individual, a Committee or a Minister.

Relations with other institutions

30. Arrangements to represent the Assembly as a whole, at Summit level and in dealings with other institutions, will b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8, and will be such as to ensure cross-community involvement.
31. Terms will be agreed between appropriate Assembly representatives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to ensure effective coordination and input by Ministers to national policy-making, including on EU issues.
32. Role of Secretary of State:
 - (a) to remain responsible for NIO matters not devolved to the Assembly, subject to regular consultation with the Assembly and Ministers;
 - (b) to approve and lay before the Westminster Parliament any Assembly legislation on reserved matters;

- (c) to represent Northern Ireland interests in the United Kingdom Cabinet;
- (d) to have the right to attend the Assembly at their invitation.

33. The Westminster Parliament (whose power to make legislation for Northern Ireland would remain unaffected) will:
- (a) legislate for non-devolved issues, other than where the Assembly legislates with the approval of the Secretary of State and subject to the control of Parliament;
 - (b) to legislate as necessary to ensure the United Kingdom's international obligations are met in respect of Northern Ireland;
 - (c) scrutinise, including through the Northern Ireland Grand and Select Committees,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ecretary of State.
34. A consultative Civic Forum will be established. It will comprise representatives of the business, trade union and voluntary sectors, and such other sectors as agreed by the First Minister and the Deputy First Minister. It will act as a consultative mechanism on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issues. The First Minister and the Deputy First Minister will by agreement provide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e Civic Forum and establish guidelines for the selection of representatives to the Civic Forum.

Transitional Arrangements

35. The Assembly will meet first for the purpose of organisation, without legislative or executive powers, to resolve its standing orders and working practices and make preparations for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Assembly, the British-Irish Council and the North/South Ministerial Council and associated implementation bodies. In this transitional period, those members of the Assembly serving as shadow Ministers shall affirm their commitment to non-violence and exclusively peaceful and democratic means and their opposition to any use or threat of force by others for any political purpose; to work in good faith to bring the new arrangements into being; and to observe the spirit of the Pledge of Office applying to appointed Ministers.

Review

36. After a specified period there will be a review of these arrangements, including the details of electoral arrangements and of the Assembly's procedures, with a view to agreeing any adjustments necessary in the interests of efficiency and fairness.

Annex A Pledge of Office

To pledge:

- (a) to discharge in good faith all the duties of office;
- (b) commitment to non-violence and exclusively peaceful and democratic means;

- (c) to serve all the people of Northern Ireland equally, and to act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obligations on government to promote equality and prevent discrimination;
- (d) to participate with colleagues in the preparation of a programme for government;
- (e) to operate within the framework of that programme when agreed within the Executive Committee and endorsed by the Assembly;
- (f) to support, and to act in accordance with, all decisions of the Executive Committee and Assembly;
- (g) to comply with the Ministerial Code of Conduct.

CODE OF CONDUCT

Ministers must at all times:

- observe the highest standards of propriety and regularity involving impartiality, integrity and objectivity in relationship to the stewardship of public funds;
- be accountable to users of services, the community and, through the Assembly, for the activities within their responsibilities, their stewardship of public funds and the extent to which key performance targets and objectives have been met;
- ensure all reasonable requests for information from the Assembly, users of services and individual citizens are complied with; and that Departments and their staff conduct their dealings with the public in an open and responsible way;
- follow the seven principles of public life set out by the Committee on Standards in Public Life;
- comply with this code and with rules relating to the use of public funds;
- operate in a way conducive to promoting good community relations and equality of treatment;
- not use information gained in the course of their service for personal gain; nor seek to use the opportunity of public service to promote their private interests;
- ensure they comply with any rules on the acceptance of gifts and hospitality that might be offered;
- declare any personal or business interests which may conflict with their responsibilities. The Assembly will retain a Register of Interests. Individuals must ensure that any direct or indirect pecuniary interests which members of the public might reasonably think could influence their judgement are listed in the Register of Interests;

4. STRAND TWO

NORTH/SOUTH MINISTERIAL COUNCIL

1. Under a new British/Irish Agreement dealing with the totality of relationships, and related legislation at Westminster and in the Oireachtas, a North/South Ministerial Council to be established to bring together those with executive responsibilities in Northern Ireland and the Irish Government, to develop consultation, co-operation and action within the island of Ireland - including through implementation on an all-island and cross-border basis - on matters of mutual interest within the competence of the Administrations, North and South.
2. All Council decisions to be by agreement between the two sides. Northern Ireland to be represented by the First Minister, Deputy First Minister and any relevant Ministers, the Irish Government by the Taoiseach and relevant Ministers, all operating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for democratic authority and accountability in force in the Northern Ireland Assembly and the Oireachtas respectively. Participation in the Council to be one of the essential responsibilities attaching to relevant posts in the two Administrations. If a holder of a relevant post will not participate normally in the Council, the Taoiseach in the case of the Irish Government and the First and Deputy First Minister in the case of the Northern Ireland Administration to be able to make alternative arrangements.
3. The Council to meet in different formats:
 - (i) in plenary format twice a year, with Northern Ireland representation led by the First Minister and Deputy First Minister and the Irish Government led by the Taoiseach;
 - (ii) in specific sectoral formats on a regular and frequent basis with each side represented by the appropriate Minister;
 - (iii) in an appropriate format to consider institutional or cross-sectoral matters (including in relation to the EU) and to resolve disagreement.
4. Agendas for all meetings to be settled by prior agreement between the two sides, but it will be open to either to propose any matter for consideration or action.
5. The Council:
 - (i) to exchange information, discuss and consult with a view to cooperating on matters of mutual interest within the competence of both Administrations, North and South;
 - (ii) to use best endeavours to reach agreement on the adoption of common policies, in areas where there is a mutual cross-border and allisland benefit, and which are within the competence of both Administrations, North and South, making determined efforts to overcome any disagreements;
 - (iii) to take decisions by agreement on policies for implementation separately in each jurisdiction, in relevant meaningful areas within the competence of both Administrations, North and South;

- (iv) to take decisions by agreement on policies and action at an all-island and cross-border level to be implemented by the bodies to be established as set out in paragraphs 8 and 9 below.
6. Each side to be in a position to take decisions in the Council within the defined authority of those attending, through the arrangements in place for co-ordination of executive functions within each jurisdiction. Each side to remain accountable to the Assembly and Oireachtas respectively, whose approval, through the arrangements in place on either side, would be required for decisions beyond the defined authority of those attending.
 7. As soon as practically possible after elections to the Northern Ireland Assembly, inaugural meetings will take place of the Assembly, the British/Irish Council and the North/South Ministerial Council in their transitional forms. All three institutions will meet regularly and frequently on this basis during the period between the elections to the Assembly, and the transfer of powers to the Assembly, in order to establish their modus operandi.
 8.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between the elections to the Northern Ireland Assembly and the transfer of power to it, representatives of the Northern Ireland transitional Administration and the Irish Government operating in the North/South Ministerial Council will undertake a work programme, in consultation with the British Government, covering at least 12 subject areas, with a view to identifying and agreeing by 31 October 1998 areas where co-operation and implementation for mutual benefit will take place. Such areas may include matters in the list set out in the Annex.
 9. As part of the work programme, the Council will identify and agree at least 6 matters for co-operation and implementation in each of the following categories:
 - (i) Matters where existing bodies will be the appropriate mechanisms for co-operation in each separate jurisdiction;
 - (ii) Matters where the co-operation will take place through agreed implementation bodies on a cross-border or all-island level.
 10. The two Governments will make necessary legislative and other enabling preparations to ensure, as an absolute commitment, that these bodies, which have been agreed as a result of the work programme, function at the time of the inception of the British-Irish Agreement and the transfer of powers, with legislative authority for these bodies transferred to the Assembly as soon as possible thereafter. Other arrangements for the agreed co-operation will also commence contemporaneously with the transfer of powers to the Assembly.
 11. The implementation bodies will have a clear operational remit. They will implement on an all-island and cross-border basis policies agreed in the Council.
 12. Any further development of these arrangements to be by agreement in the Council and with the specific endorsement of the Northern Ireland Assembly and Oireachtas, subject to the extent of the competences and responsibility of the two Administrations.

13. It is understood that the North/South Ministerial Council and the Northern Ireland Assembly are mutually inter-dependent, and that one cannot successfully function without the other.
14. Disagreements within the Council to be addressed in the format described at paragraph 3(iii) above or in the plenary format. By agreement between the two sides, experts could be appointed to consider a particular matter and report.
15. Funding to be provided by the two Administrations on the basis that the Council and the implementation bodies constitute a necessary public function.
16. The Council to be supported by a standing joint Secretariat, staffed by members of the Northern Ireland Civil Service and the Irish Civil Service.
17. The Council to consider the European Union dimension of relevant matters, including the implementation of EU policies and programmes and proposals under consideration in the EU framework. Arrangements to be made to ensure that the views of the Council are taken into account and represented appropriately at relevant EU meetings.
18. The Northern Ireland Assembly and the Oireachtas to consider developing a joint parliamentary forum, bringing together equal numbers from both institutions for discussion of matters of mutual interest and concern.
19. Consideration to be given to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consultative forum appointed by the two Administrations, representative of civil society, comprising the social partners and other members with expertise in social, cultural, economic and other issues.

ANNEX

Areas for North-South co-operation and implementation may include the following:

1. Agriculture - animal and plant health.
2. Education - teacher qualifications and exchanges.
3. Transport - strategic transport planning.
4. Environment - environmental protection, pollution, water quality, and waste management.
5. Waterways - inland waterways.
6. Social Security/Social Welfare - entitlements of cross-border workers and fraud control.

7. Tourism - promotion, marketing, research, and product development.
 8. Relevant EU Programmes such as SPPR, INTERREG, Leader II and their successors.
 9. Inland Fisheries.
 10. Aquaculture and marine matters
 11. Health: accident and emergency services and other related crossborder issues.
 12. Urban and rural development.
- Others to be considered by the shadow North/ South Council.

5. STRAND THREE

BRITISH-IRISH COUNCIL

1. A British-Irish Council (BIC) will be established under a new British-Irish Agreement to promote the harmonious and mutually beneficial development of the totality of relationships among the peoples of these islands.
2. Membership of the BIC will comprise representatives of the British and Irish Governments, devolved institutions in Northern Ireland, Scotland and Wales, when established, and, if appropriate, elsewhere in the United Kingdom, together with representatives of the Isle of Man and the Channel Islands.
3. The BIC will meet in different formats: at summit level, twice per year; in specific sectoral formats on a regular basis, with each side represented by the appropriate Minister; in an appropriate format to consider crosssectoral matters.
4. Representatives of members will operate in accordance with whatever procedures for democratic authority and accountability are in force in their respective elected institutions.
5. The BIC will exchange information, discuss, consult and use best endeavours to reach agreement on co-operation on matters of mutual interest within the competence of the relevant Administrations. Suitable issues for early discussion in the BIC could include transport links, agricultural issues, environmental issues, cultural issues, health issues, education issues and approaches to EU issues. Suitable arrangements to be made for practical co-operation on agreed policies.
6. It will be open to the BIC to agree common policies or common actions. Individual members may opt not to participate in such common policies and common action.
7. The BIC normally will operate by consensus. In relation to decisions on common policies or common actions, including their means of implementation, it will operate by agreement of all members participating in such policies or actions.
8. The members of the BIC, on a basis to be agreed between them, will provide such financial support as it may require.
9. A secretariat for the BIC will be provided by the British and Irish Governments in co-ordination with officials of each of the other members.
10. In addition to the structures provided for under this agreement, it will be open to two or more members to develop bilateral or multilateral arrangements between them. Such arrangements could include, subject to the agreement of the members concerned, mechanisms to enable consultation, co-operation and joint decision-making on matters of mutual interest; and mechanisms to implement any joint decisions they may reach. These arrangements will not require the prior approval of the BIC as a whole

and will operate independently of it.

11. The elected institutions of the members will be encouraged to develop interparliamentary links, perhaps building on the British-Irish Interparliamentary Body.
12. The full membership of the BIC will keep under review the workings of the Council, including a formal published review at an appropriate time after the Agreement comes into effect, and will contribute as appropriate to any review of the overall political agreement arising from the multiparty negotiations.

6. BRITISH-IRISH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1. There will be a new British-Irish Agreement dealing with the totality of relationships. It will establish a standing British-Irish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which will subsume both the Anglo-Irish Intergovernmental Council and th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established under the 1985 Agreement.
2. The Conference will bring together the British and Irish Governments to promote bilateral co-operation at all levels on all matters of mutual interest within the competence of both Governments.
3. The Conference will meet as required at Summit level (Prime Minister and Taoiseach). Otherwise, Governments will be represented by appropriate Ministers. Advisers, including police and security advisers, will attend as appropriate.
4. All decisions will be by agreement between both Governments. The Governments will make determined efforts to resolve disagreements between them. There will be no derogation from the sovereignty of either Government.
5. In recognition of the Irish Government's special interest in Northern Ireland and of the extent to which issues of mutual concern arise in relation to Northern Ireland, there will be regular and frequent meetings of the Conference concerned with non-devolved Northern Ireland matters, on which the Irish Government may put forward views and proposals. These meetings, to be co-chaired by th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and the Secretary of State for Northern Ireland, would also deal with all-island and cross-border co-operation on non-devolved issues.
6. Co-oper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nference will include facilitation of co-operation in security matters. The Conference also will address, in particular, the areas of rights, justice, prisons and policing in Northern Ireland (unless and until responsibility is devolved to a Northern Ireland administration) and will intensif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Governments on the all-island or cross-border aspects of these matters.
7. Relevant executive members of the Northern Ireland Administration will be involved in meetings of the Conference, and in the reviews referred to in paragraph 9 below to discuss non-devolved Northern Ireland matters.
8. The Conference will be supported by officials of the British and Irish Governments, including by a standing joint Secretariat of officials dealing with non-devolved Northern Ireland matters.
9. The Conference will keep under review the workings of the new British-Irish Agreement and the machinery and institutions established under it, including a formal published review three years after the Agreement comes into effect. Representatives of the Northern Ireland Administration will be invited to express views to the Conference

in this context. The Conference will contribute as appropriate to any review of the overall political agreement arising from the multi-party negotiations but will have no power to override the democratic arrangements set up by this Agreement.

RIGHTS, SAFEGUARDS AND EQUALITY OF OPPORTUNITY

Human Rights

1. The parties affirm their commitment to the mutual respect, the civil rights and the religious liberties of everyone in the community.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recent history of communal conflict, the parties affirm in particular:
 - the right of free political thought;
 - the right to freedom and expression of religion;
 - the right to pursue democratically national and political aspirations;
 - the right to seek constitutional change by peaceful and legitimate means;
 - the right to freely choose one's place of residence;
 - the right to equal opportunity in all social and economic activity, regardless of class, creed, disability, gender or ethnicity;
 - the right to freedom from sectarian harassment; and
 - the right of women to full and equal political participation.

United Kingdom Legislation

2. The British Government will complete incorporation into Northern Ireland law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with direct access to the courts, and remedies for breach of the Convention, including power for the courts to overrule Assembly legislation on grounds of inconsistency.
3. Subject to the outcome of public consultation underway, the British Government intends, as a particular priority, to create a statutory obligation on public authorities in Northern Ireland to carry out all their functions with due regard to the need to promote equality of opportunity in relation to religion and political opinion; gender; race; disability; age; marital status; dependants; and sexual orientation. Public bodies would be required to draw up statutory schemes showing how they would implement this obligation. Such schemes would cover arrangements for policy appraisal, including an assessment of impact on relevant categories, public consultation,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and services, monitoring and timetables.
4. The new Northern Ireland Human Rights Commission (see paragraph 5 below) will be invited to consult and to advise on the scope for defining, in Westminster legislation, rights supplementary to those in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o reflect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Northern Ireland, drawing as appropriate on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experience. These additional rights to reflect the principles of mutual respect for the identity and ethos of both communities and parity of esteem, and - taken together with the ECHR - to constitute a Bill of

Rights for Northern Ireland. Among the issues for consideration by the Commission will be:

- the formulation of a general obligation on government and public bodies fully to respect, on the basis of equality of treatment, the identity and ethos of both communities in Northern Ireland; and
- a clear formulation of the rights not to be discriminated against and to equality of opportunity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New Institutions in Northern Ireland

5. A new Northern Ireland Human Rights Commission, with membership from Northern Ireland reflecting the community balance, will be established by Westminster legislation, independent of Government, with an extended and enhanced role beyond that currently exercised by the Standing Advisory Commission on Human Rights, to include keeping under review the adequacy and effectiveness of laws and practices, making recommendations to Government as necessary; providing information and promoting awareness of human rights; considering draft legislation referred to them by the new Assembly; and, in appropriate cases, bringing court proceedings or providing assistance to individuals doing so.
6. Subject to the outcome of public consultation currently underway, the British Government intends a new statutory Equality Commission to replace the Fair Employment Commission, the 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NI), the 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 (NI) and the Disability Council. Such a unified Commission will advise on, validate and monitor the statutory obligation and will investigate complaints of default.
7. It would be open to a new Northern Ireland Assembly to consider bringing together its responsibilities for these matters into a dedicated Department of Equality.
8. These improvements will build on existing protections in Westminster legislation in respect of the judiciary, the system of justice and policing.

Comparable Steps by the Irish Government

9. The Irish Government will also take steps to further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ts jurisdiction. The Government will, taking account of the work of the All-Party Oireachtas Committee on the Constitution and the Report of the Constitution Review Group, bring forward measures to strengthen and underpin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se proposals will draw on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other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nd the question of the incorporation of the ECHR will be further examined in this context. The measures brought forward would ensure at least an equivalent level of protection of human rights as will pertain in Northern Ireland. In addition, the Irish Government will:

- establish a Human Rights Commission with a mandate and remit equivalent to that within Northern Ireland;
- proceed with arrangements as quickly as possible to ratify the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National Minorities (already ratified by the UK);
- implement enhanced employment equality legislation;
- introduce equal status legislation; and
- continue to take further active steps to demonstrate its respect for the different traditions in the island of Ireland.

A Joint Committee

10. It is envisaged that there would be a joint committee of representatives of the two Human Rights Commissions, North and South, as a forum for consideration of human rights issues in the island of Ireland. The joint committee will consider, among other matters,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charter, open to signature by all democratic political parties, reflecting and endorsing agreed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everyone living in the island of Ireland.

Reconciliation and Victims of Violence

11. The participants believe that it is essential to acknowledge and address the suffering of the victims of violence as a necessary element of reconciliation. They look forward to the results of the work of the Northern Ireland Victims Commission.
12. It is recognised that victims have a right to remember as well as to contribute to a changed society. The achievement of a peaceful and just society would be the true memorial to the victims of violence. The participants particularly recognise that young people from areas affected by the troubles face particular difficulties and will support the development of special community-based initiatives based on international best practice. The provision of services that are supportive and sensitive to the needs of victims will also be a critical element and that support will need to be channelled through both statutory and community-based voluntary organisations facilitating locally-based selfhelp and support networks. This will require the allocation of sufficient resources, including statutory funding as necessary, to meet the needs of victims and to provide for community-based support programmes.
13. The participants recognise and value the work being done by many organisations to develop reconcilia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and respect between and within communities and traditions, in Northern Ireland and between North and South, and they see such work as having a vital role in consolidating peace and political agreement. Accordingly, they pledge their continuing support to such organisations and will positively examine the case for enhanced financial assistance for the work of reconciliation. An essential aspect of the reconciliation process is the promotion of a culture of tolerance at every level of society, including initiatives to facilitate and encourage integrated education and mixed housing.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Issues

1. Pending the devolution of powers to a new Northern Ireland Assembly, the British Government will pursue broad policies for sustained economic growth and stability in Northern Ireland and for promoting social inclusion, including in particular community development and the advancement of women in public life.
2. Subject to the public consultation currently under way, the British Government will make rapid progress with:
 - (i) a new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for Northern Ireland, for consideration in due course by a the Assembly, tackling the problems of a divided society and social cohesion in urban, rural and border areas, protecting and enhancing the environment, producing new approaches to transport issues, strengthening the physical infrastructure of the region, developing the advantages and resources of rural areas and rejuvenating major urban centres;
 - (ii) a new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for Northern Ireland, for consideration in due course by a the Assembly, which would provide for short and medium term economic planning linked as appropriate to th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 (iii) measures on employment equality included in the recent White Paper (“Partnership for Equality” and covering the extension and strengthening of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a review of the national security aspects of the present fair employment legislation at the earliest possible time, a new more focused Targeting Social Need initiative and a range of measures aimed at combating unemployment and progressively eliminating the differential in unemployment rates between the two communities by targeting objective need.
3. All participant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respect, understanding and tolerance in relation to linguistic diversity, including in Northern Ireland, the Irish language, Ulster-Scots and the languages of the various ethnic communities, all of which are part of the cultural wealth of the island of Ireland.
4. In the context of active consideration currently being given to the UK signing the Council of Europe Charter for Regional or Minority Languages, the British Government will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the Irish language, where appropriate and where people so desire it:
 - take resolute action to promote the language;
 - facilitate and encourage the use of the language in speech and writing in public and private life where there is appropriate demand;
 - seek to remove, where possible, restrictions which would discourage or work against the maintenance or development of the language;
 - make provision for liaising with the Irish language community, representing their views to public authorities and investigating complaints;
 - place a statutory duty on the Department of Education to encourage and facilitate Irish medium education in line with current provision for integrated education;
 - explore urgently with the relevant British authorities, and in co-operation with the Irish broadcasting authorities, the scope for achieving more widespread availability

- of Teilifis na Gaeilige in Northern Ireland;
 - seek more effective ways to encourage and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Irish language film and television production in Northern Ireland; and
 - encourage the parties to secure agreement that this commitment will be sustained by a new Assembly in a way which takes account of the desires and sensitivities of the community.
5. All participants acknowledge the sensitivity of the use of symbols and emblems for public purposes, and the need in particular in creating the new institutions to ensure that such symbols and emblems are used in a manner which promotes mutual respect rather than division. Arrangements will be made to monitor this issue and consider what action might be required.

7. DECOMMISSIONING

1. Participants recall their agreement in the Procedural Motion adopted on 24 September 1997 “hat the resolution of the decommissioning issue is an indispensable part of the process of negotiation” and also rec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5 of Strand 1 above.
2. They note the progress made by the Independent International Commission on Decommissioning and the Governments in developing schemes which can represent a workable basis for achieving the decommissioning of illegally-held arms in the possession of paramilitary groups.
3. All participants accordingly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the total disarmament of all paramilitary organisations. They also confirm their intention to continue to work constructively and in good faith with the Independent Commission, and to use any influence they may have, to achieve the decommissioning of all paramilitary arms within two years following endorsement in referendums North and South of the agreement and in the contex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overall settlement.
4. The Independent Commission will monitor, review and verify progress on decommissioning of illegal arms, and will report to both Governments at regular intervals.
5. Both Governments will take all necessary steps to facilitate the decommissioning process to include bringing the relevant schemes into force by the end of June.

8. SECURITY

1. The participants note that the development of a peaceful environment on the basis of this agreement can and should mean a normalisation of security arrangements and practices.
2. The British Government will make progress towards the objective of as early a return as possible to normal security arrangements in Northern Ireland, consistent with the level of threat and with a published overall strategy, dealing with:
 - (i) the reduction of the numbers and role of the Armed Forces deployed in Northern Ireland to levels compatible with a normal peaceful society;
 - (ii) the removal of security installations;
 - (iii) the removal of emergency powers in Northern Ireland; and
 - (iv) other measures appropriate to and compatible with a normal peaceful society.
3. The Secretary of State will consult regularly on progress, and the response to any continuing paramilitary activity, with the Irish Government and the political parties, as appropriate.
4. The British Government will continue its consultation on firearms regulation and control on the basis of the document published on 2 April 1998.
5. The Irish Government will initiate a wide-ranging review of the Offences Against the State Acts 1939-85 with a view to both reform and dispensing with those elements no longer required as circumstances permit.

9. POLICING AND JUSTICE

1. The participants recognise that policing is a central issue in any society. They equally recognise that Northern Ireland's history of deep divisions has made it highly emotive, with great hurt suffered and sacrifices made by many individuals and their families, including those in the RUC and other public servants. They believe that the agreement provides the opportunity for a new beginning to policing in Northern Ireland with a police service capable of attracting and sustaining support from the community as a whole. They also believe that this agreement offers a unique opportunity to bring about a new political dispensation which will recognise the full and equal legitimacy and worth of the identities, senses of allegiance and ethos of all sections of the community in Northern Ireland. They consider that this opportunity should inform and underpin the development of a police service representative in terms of the make-up of the community as a whole and which, in a peaceful environment, should be routinely unarmed.
2. The participants believe it essential that policing structures and arrangements are such that the police service is professional, effective and efficient, fair and impartial, free from partisan political control; accountable, both under the law for its actions and to the community it serves; representative of the society it polices, and operates within a coherent and co-operative criminal justice system, which conforms with human rights norms. The participants also believe that those structures and arrangements must be capable of maintaining law and order including responding effectively to crime and to any terrorist threat and to public order problems. A police service which cannot do so will fail to win public confidence and acceptance. They believe that any such structures and arrangements should be capable of delivering a policing service, in constructive and inclusive partnerships with the community at all levels, and with the maximum delegation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consistent with the foregoing principles. These arrangements should be based on principles of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professional integrity and should be unambiguously accepted and actively supported by the entire community.
3. An independent Commission will be established to make recommendations for future policing arrangements in Northern Ireland including means of encouraging widespread community support for these arrangements within the agreed framework of principles reflected in the paragraphs above an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reference at Annex A. The Commission will be broadly representative with expert and international representation among its membership and will be asked to consult widely and to report no later than Summer 1999.
4. The participants believe that the aim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re to:
 - deliver a fair and impartial system of justice to the community;
 - be responsive to the community's concerns, and encouraging community involvement where appropriate;
 - have the confidence of all parts of the community; and
 - deliver justic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5. There will be a parallel wide-ranging review of criminal justice (other than policing and those aspects of the system relating to the emergency legislation) to be carried out by the British Government through a mechanism with an independent element, in consultation with the political parties and others. The review will commence as soon as possible, will include wide consultation, and a report will be made to the Secretary of State no later than Autumn 1999. Terms of Reference are attached at Annex B.
6.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arising from both reviews will be discussed with the political parties and with the Irish Government.
7. The participants also note that the British Government remains ready in principle, with the broad support of the political parties, and after consultation, as appropriate, with the Irish Government, in the context of ongoing implementation of the relevant recommendations, to devolve responsibility for policing and justice issues.

ANNEX A

COMMISSION ON POLICING FOR NORTHERN IRELAND

Terms of Reference

Taking account of the principles on policing as set out in the agreement, the Commission will inquire into policing in Northern Ireland and, on the basis of its findings, bring forward proposals for future policing structures and arrangements, including means of encouraging widespread community support for those arrangements.

Its proposals on policing should be designed to ensure that policing arrangements, including composition, recruitment, training, culture, ethos and symbols, are such that in a new approach Northern Ireland has a police service that can enjoy widespread support from, and is seen as an integral part of, the community as a whole.

Its proposals should include recommendations covering any issues such as re-training, job placement and education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required in the transition to policing in a peaceful society.

Its proposals should also be designed to ensure that:

- the police service is structured, managed and resourced so that it can be effective in discharging its full range of functions (including proposals on any necessary arrangements for the transition to policing in a normal peaceful society);
- the police service is delivered in constructive and inclusive partnerships with the community at all levels with the maximum delegation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 the legislative and constitutional framework requires the impartial discharge of policing

functions and conforms with internationally accepted norms in relation to policing standards;

- the police operate within a clear framework of accountability to the law and the community they serve, so:
- they are constrained by, accountable to and act only within the law;
- their powers and procedures, like the law they enforce, are clearly established and publicly available;
- there are open, accessible and independent means of investigating and adjudicating upon complaints against the police;
- there are clearly established arrangements enabling local people, and their political representatives, to articulate their views and concerns about policing and to establish publicly policing priorities and influence policing policies, subject to safeguards to ensure police impartiality and freedom from partisan political control;
- there are arrangements for accountability and for the effective, efficient and economic use of resources in achieving policing objectives;
- there are means to ensure independent professional scrutiny and inspection of the police service to ensure that proper professional standards are maintained;
- the scope for structured co-operation with the Garda Síochána and other police forces is addressed; and
- the management of public order events which can impose exceptional demands on policing resources is also addressed.

The Commission should focus on policing issues, but if it identifies other aspect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relevant to its work on policing, including the role of the police in prosecution, then it should draw the attention of the Government to those matters.

The Commission should consult widely, including with non-governmental expert organisations, and through such focus groups as they consider it appropriate to establish.

The Government proposes to establish the Commission as soon as possible, with the aim of it starting work as soon as possible and publishing its final report by Summer 1999.

ANNEX B

REVIEW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erms of Reference

Taking account of the aim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s set out in the Agreement, the review will address the structure, management and resourcing of publicly funded element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will bring forward proposals for future criminal justice arrangements (other than policing and those aspects of the system relating to emergency legislation, which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separately) covering such issues as:

- the arrangements for making appointments to the judiciary and magistracy, and safeguards for protecting their independence;
 - the arrangements for the organisation and supervision of the prosecution process, and for safeguarding its independence;
 - measures to improve the responsiveness and accountability of, and any lay participatio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 mechanisms for addressing law reform;
 - the scope for structured co-operation between the criminal justice agencies on both parts of the island; and
 - the structure and organisation of criminal justice functions that might be devolved to an Assembly,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Department of Justice, while safeguarding the essential independence of many of the key functions in this area.
- The Government proposes to commence the review as soon as possible, consulting with the political parties and others, including nongovernmental expert organisations. The review will be completed by Autumn 1999.

10. PRISONERS

1. Both Governments will put in place mechanisms to provide for an accelerated programme for the release of prisoners, including transferred prisoners, convicted of scheduled offences in Northern Ireland or, in the case of those sentenced outside Northern Ireland, similar offences (referred to hereafter as qualifying prisoners). Any such arrangements will protect the rights of individual prisoners under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2. Prisoners affiliated to organisations which have not established or are not maintaining a complete and unequivocal ceasefire will not benefit from the arrangements. The situation in this regard will be kept under review.
3. Both Governments will complete a review process within a fixed time frame and set prospective release dates for all qualifying prisoners. The review process would provide for the advance of the release dates of qualifying prisoners while allowing account to be taken of the seriousness of the offences for which the person was convicted and the need to protect the community. In addition, the intention would be that should the circumstances allow it, any qualifying prisoners who remained in custody two years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scheme would be released at that point.
4. The Governments will seek to enact the appropriate legislation to give effect to these arrangements by the end of June 1998.
5. The Governments continue to recognise the importance of measures to facilitate the reintegration of prisoners into the community by providing support both prior to and after release, including assistance directed towards availing of employment opportunities, re-training and/or eskillng, and further education.

11. VALIDATION, IMPLEMENTATION AND REVIEW

Validation and Implementation

1. The two Governments will as soon as possible sign a new British-Irish Agreement replacing the 1985 Anglo-Irish Agreement, embodying understandings on constitutional issues and affirming their solemn commitment to support and, where appropriate, implement the agreement reached by the participants in the negotiations which shall be annexed to the British-Irish Agreement.
2. Each Government will organise a referendum on 22 May 1998. Subject to Parliamentary approval, a consultative referendum in Northern Ireland, organised under the terms of the Northern Ireland (Entry to Negotiations, etc.) Act 1996, will address the question: "Do you support the agreement reached in the multi-party talks on Northern Ireland and set out in Command Paper 3883?". The Irish Government will introduce and support in the Oireachtas a Bill to amend the Constitution as described in paragraph 2 of the section "Constitutional Issues" and in Annex B, as follows: (a) to amend Articles 2 and 3 as described in paragraph 8.1 in Annex B above and (b) to amend Article 29 to permit the Government to ratify the new British-Irish Agreement. On passage by the Oireachtas, the Bill will be put to referendum.
3. If majorities of those voting in each of the referendums support this agreement, the Governments will then introduce and support, in their respective Parliaments, such legislation as may be necessary to give effect to all aspects of this agreement, and will take whatever ancillary steps as may be required including the holding of elections on 25 June, subject to parliamentary approval, to the Assembly, which would meet initially in a "shadow" mode.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South Ministerial Council, implementation bodies, the British-Irish Council and the British-Irish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and the assumption by the Assembly of its legislative and executive powers will take place at the same time on the entry into force of the British-Irish Agreement.
4. In the interim, aspect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multi-party agreement will be reviewed at meetings of those parties relevant in the particular case (taking into account, once Assembly elections have been held, the results of those elections), under the chairmanship of the British Government or the two Governments, as may be appropriate; and representatives of the two Governments and all relevant parties may meet under independent chairmanship to review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as a whole.

Review procedures following implementation

5. Each institution may, at any time, review any problems that may arise in its operation and, where no other institution is affected, take remedial action in consultation as necessary with the relevant Government or Governments. It will be for each

institution to determine its own procedures for review.

6. If there are difficulties in the operation of a particular institution, which have implications for another institution, they may review their operations separately and jointly and agree on remedial action to be taken under their respective authorities.
7. If difficulties arise which require remedial action across the range of institutions, or otherwise require amendment of the British-Irish Agreement or relevant legislation, the process of review will fall to the two Governments in consultation with the parties in the Assembly. Each Government will be responsible for action in its own jurisdiction.
8. Notwithstanding the above, each institution will publish an annual report on its operations. In addition, the two Governments and the parties in the Assembly will convene a conference 4 years after the agreement comes into effect, to review and report on its operation.

(3) 보스니아 평화협정 General Framework Agreement for Peace in Bosnia and Herzegovina (데이턴 평화협정, 1995.12.14)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공화국, 크로아티아 공화국,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이하 ‘협정 당사국’이라 한다)은 역내에서의 비극적인 분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포괄적인 협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종지부를 찍는데 기여할 것과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1995년 9월 8일에 발표한 ‘기본원칙합의(Agreed Basic Principles), 1995년 9월 26일에 발표한 ‘추가 기본원칙합의(Further Agreed Basic Principles), 1995년 9월 14일과 10월 5일의 휴전 협정에서 명시한 합의내용을 확인하고,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의 대표가 스프스 공화국을 대표하여 그와 관련된 평화 계획의 일부에 서명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지고 협정의 이행 의무가 엄격하고 결론적으로 적용되는 1995년 8월 29일의 협정을 주지한다.

이에 따라, ‘협정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협정 당사국’은 UN헌장이 명시하는 원칙은 물론, 헬싱키 최종 의정서 등 유럽안보협력기구 의 여타 문서가 명시하는 바에 따라 삼자간 관계를 수행한다. 특히, ‘협정 당사국’은 타당사국의 주권 평등을 완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며, 보스니아 및 헤르체고비나 또는 여타 모든 국가의 영토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무력의 사용 또는 위협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조

‘협정 당사국’은 평화 협정의 군사적 측면과 관련하여 도출된 합의는 물론, 부속서 1-A 및 부속서 1-B에서 명시한 역내 안정화 측면과 관련한 합의를 환영하고 지지한다. 따라서 ‘협정 당사국’은 부속서 1-A에서 명시한 합의내용을 존중하고 그 이행을 장려하며, 부속서 1-B에서 정한 합의내용을 완전히 준수한다.

제3조

‘협정 당사국’은 협정 부속서 2에서 명시하고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공화국과 스프스 공화국간의 국경 분계선과 관련하여 도출된 합의를 환영하고 지지한다. 따라서 ‘협정 당사국’은 당해 협정 부속서 2에서 명시하는 합의내용을 완전 존중하고 그 이행을 장려하기로 한다.

제4조

‘협정 당사국’은 부속서 3에서 명시한 보스니아 및 헤르체고비나의 선거 프로그램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따라서 ‘협정 당사국’은 당해 프로그램을 완전 존중하고 그 이행을 장려하기로 한다.

제5조

‘협정 당사국’은 부속서 4에서 명시하고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헌법과 관련하여 도출된 합의를 환영하고 지지한다. 따라서 ‘협정 당사국’은 당해 부속서 4에서 명시하는 합의내용을 완전 존중하고 그 이행을 장려하기로 한다.

제6조

‘협정 당사국’은 협정 부속서 5~9에서 명시하고 중재재판, 인권위원회, 난민 및 실항민 위원회, 국가유적 보호 위원회,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공기업의 설립에 관하여 도출된 합의를 환영하고 지지한다. ‘협정 당사국’은 당해 부속서 5~9에서 명시하는 합의내용을 완전 존중하고 그 이행을 장려하기로 한다.

제7조

‘협정 당사국’은 인권 존중과 난민 및 실항민 보호가 영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이에 따라 협정 부속서 6 제1장에서 정한 인권 관련 조항과 더불어, 협정 부속서 7 제1장에서 정한 난민 및 실항민 관련 조항에 합의하고 완전 이행하기로 한다.

제8조

‘협정 당사국’은 본 평화 협정의 이행 특히, 협정 부속서 10에서 정한 민간부문(비군사 부문)의 이행과 더불어, 협정 부속서 11에서 정한 국제 경찰 태스크 포스(Task force)에 관하여 도출된 합의를 환영하고 지지한다. 따라서 ‘협정 당사국’은 당해 부속서 10~11에서 명시하는 합의내용을 완전 존중하고 그 이행을 장려하기로 한다.

제9조

‘협정 당사국’은 본 협정의 부속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본 평화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 또는 모든 ‘협정 당사국’이 전쟁 범죄 등 여타 국제 인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및 기소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갖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기타 위임 당사자에 완전 협력하기로 한다.



제10조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공화국은 상호간에 독립 주권 국가임을 인정한다. 양국간 상호 국가 인정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추후에 협의하기로 한다.

제11조

본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

GENERAL FRAMEWORK AGREEMENT FOR PEACE IN BOSNIA AND HERZEGOVINA (1995.12.14)

The Republic of Bosnia and Herzegovina, the Republic of Croatia and the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the “Parties”), **Recognizing**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settlement to bring an end to the tragic conflict in the region, **Desiring** to contribute toward that end and to promote an enduring peace and stability, **Affirming** their commitment to the Agreed Basic Principles issued on September 8, 1995, the Further Agreed Basic Principles issued on September 26, 1995, and the cease-fire agreements of September 14 and October 5, 1995, **Noting** the agreement of August 29, 1995, which authorized the delegation of the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to sign, on behalf of the Republika Srpska, the parts of the peace plan concerning it, with the obligation to implement the agreement that is reached strictly and consequently,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I

The Parties shall conduct their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set forth in the United Nations Charter, as well as the Helsinki Final Act and other documents of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In particular, the Parties shall fully respect the sovereign equality of one another, shall settle disputes by peaceful means, and shall refrain from any action, by threat or use of force or otherwis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Bosnia and Herzegovina or any other State.

Article II

The Parties welcome and endorse the arrangements that have been made concerning the military aspects of the peace settlement and aspects of regional stabilization, as set forth in the Agreements at Annex 1-A and Annex 1-B. The Parties shall fully respect and promote fulfillment of the commitments made in Annex 1-A, and shall comply fully with their commitments as set forth in Annex 1-B.

Article III

The Parties welcome and endorse the arrangements that have been made concerning the boundary demarcation between the two Entities, the Federation of Bosnia and Herzegovina and Republika Srpska, as set forth in the Agreement at Annex 2. The Parties shall fully respect and promote fulfillment of the commitments made therein.

Article IV

The Parties welcome and endorse the elections program for Bosnia and Herzegovina as set forth in Annex 3. The Parties shall fully respect and promote fulfillment of that program.

Article V

The Parties welcome and endorse the arrangements that have been made concerning the Constitution of Bosnia and Herzegovina, as set forth in Annex 4. The Parties shall fully respect and promote fulfillment of the commitments made therein.

Article VI

The Parties welcome and endorse the arrangements that have been made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n arbitration tribunal, a Commission on Human Rights, a Commission on Refugees and Displaced Persons, a Commission to Preserve National Monuments, and Bosnia and Herzegovina Public Corporations, as set forth in the Agreements at Annexes 5-9. The Parties shall fully respect and promote fulfillment of the commitments made therein.

Article VII

Recognizing that the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refugees and displaced persons are of vital importance in achieving a lasting peace, the Parties agree to and shall comply fully with the provisions concerning human rights set forth in Chapter One of the Agreement at Annex 6, as well as the provisions concerning refugees and displaced persons set forth in Chapter One of the Agreement at Annex 7.

Article VIII

The Parties welcome and endorse the arrangements that have been made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is peace settlement, including in particular those pertaining to the civilian (non-military) implementation, as set forth in the Agreement at Annex 10, and the international police task force, as set forth in the Agreement at Annex 11. The Parties shall fully respect and promote fulfillment of the commitments made therein.

Article IX

The Parties shall cooperate fully with all entities involved in implementation of this peace settlement, as described in the Annexes to this Agreement, or which are otherwise authoriz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pursuant to the obligation of all Parties to cooperate in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war crimes and other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rticle X

The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and the Republic of Bosnia and Herzegovina recognize each other as sovereign independent States within their international borders. Further aspects of their mutual recognition will be subject to subsequent discussions.

Article XI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upon signature.

DONE at Paris, this 21 day of November, 1995, in the Bosnian, Croatian, English and Serbian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Republic of Bosnia and Herzegovina

For the Republic of Croatia

For the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Witnessed by:

European Union Special Negotiator

For the French Republic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For the Russian Federation

For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nexes and Appendices

Annex 1-A: Agreement on Military Aspects of the Peace Settlement and Appendices

Annex 1-B: Agreement on Regional Stabilization

Annex 2: Agreement on Inter-Entity Boundary Line and Related Issues

Annex 3: Agreement on Elections

Annex 4: Constitution

Annex 5: Agreement on Arbitration

Annex 6: Agreement on Human Rights

Annex 7: Agreement on Refugees and Displaced Persons

Annex 8: Agreement on the Commission to Preserve National Monuments

Annex 9: Agreement on Bosnia and Herzegovina Public Corporations

Annex 10: Agreement on Civilian Implementation

Annex 11: Agreement on International Police Task Force

(4) 캄보디아 평화협정 Final Act of the Paris Conference on Cambodia
(1991.10.23)

Final Act of the Paris Conference on Cambodia

1. Concerned by the tragic conflict and continuing bloodshed in Cambodia, the Paris Conference on Cambodia was convened, at the invit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 in order to achieve an internationally guaranteed comprehensive settlement which would restore peace to that country. The Conference was held in two sessions, the first from 30 July to 30 August 1989, and the second from 21 to 23 October 1991.
2. The co-Presidents of the Conference were H. E. Mr. Roland Dumas,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f the French Republic, and H. E. Mr. Ali Alatas,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3. The following States participated in the Conference: Australia, Brunei Darussalam, Cambodia, Canad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French Republic, the Republic of India, the Republic of Indonesia, Japan,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Malaysia,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the Republic of Singapore, the Kingdom of Thail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In addition, the Non-Aligned Movement was represented at the Conference by its current Chairman at each session, namely Zimbabwe at the first session and Yugoslavia at the second session.

4. At the first session of the Conference, Cambodia was represented by the four Cambodian Parties. The Supreme National Council of Cambodia, under the leadership of its President, H.R.H. Prince Norodom Sihanouk, represented Cambodia at the second session of the Conference.
5.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H.E. Mr. Javier Perez de Cuellar, and his Special Representative, Mr. Rafeeuddin Ahmed, also participated in the Conference.
6. The Conference organized itself into three working committees of the whole, which met throughout the first session of the Conference. The First Committee dealt with military matters, the Second Committee dealt with the question of international guarantees, and the Third Committee with the repatriation of refugees and displaced persons and the eventual reconstruction of Cambodia.

The officers of each committee were as follows:

First Committee

Co-Chairmen:

Mr. C.R. Gharekhan (India)

Mr. Allan Sullivan (Canada)

Rapporteur: Ms. Victoria Sisante-Bataclan (Philippines)

Second Committee

Co-Chairmen:

Mr. Soulivong Phrasithideth (Laos)

Dato' Zainal Abidin Ibrahim (Malaysia)

Rapporteur: Mr. Herve Dejean de la Batie (France)

Third Committee

Co-Chairmen:

Mr. Yukio Imagawa (Japan)

Mr. Robert Merrillees (Australia)

Rapporteur: Colonel Ronachuck Swasdikiat (Thailand)

The Conference also established an Ad Hoc Committee, composed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four Cambodian Parties and chaired by the representatives of the two co-Presidents of the Conference, whose mandate involved matters related to national reconciliation among the Cambodian Parties. The Ad Hoc Committee held several meetings during the first session of the Conference.

The Coordination Committee of the Conference, chaired by the representatives of the two co-Presidents, was established and given responsibility for general coordination of the work of the other four committees. The Coordination Committee met at both the first and second sessions of the Conference. An informal meeting of the Coordination Committee was also held in New York on 21 September 1991.

7. At the conclusion of the first session, the Conference had achieved progress in elaborating a wide variety of elements necessary for the achievement of a comprehensive settlement of the conflict in Cambodia. The Conference noted, however, that it was not yet possible to achieve a comprehensive settlement. It was therefore decided to suspend the Conference on 30 August 1989. However, in doing so, the Conference urged all parties concerned to intensify their efforts to achieve a comprehensive settlement, and asked the co-Presidents to lend their good offices to facilitate these efforts.
8. Following the suspension of the first session of the Conference, the co-Presidents and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undertook extensive consultations, in particular with the five permanen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with the Supreme National Council of Cambodia, and with other participants in the Paris Conference. The object of these consultations was to forge agreement on all

aspects of a settlement, to ensure that all initiatives to this end were compatible and to enhance the prospects of ending the bloodshed in Cambodia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he efforts of the co-Presidents and the Secretary-General paved the way for the reconvening of the Paris Conference on Cambodia.

9. At the inaugural portion of the final meeting of the Paris Conference, on 23 October 1991, the Conference was addressed by H.E. Mr. Francois Mitterrand, President of the French Republic, H.R.H. Prince Norodom Sihanouk, President of the Supreme National Council of Cambodia, and H.E. Mr. Javier Perez de Cuellar,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10. At the second session, the Conference adopted the following instruments:
 1. **Agreement on a comprehensive political settlement of the Cambodia conflict**, with annexes on the mandate for UNTAC, military matters, elections, repatriation of Cambodian refugees and displaced persons, and the principles for a new Cambodian constitution;
 2. **Agreement concerning the sovereignty, independence, territorial integrity and inviolability, neutrality and national unity of Cambodia**; and
 3. **Declaration on the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of Cambodia**

These instruments represent an elaboration of the “Framework for a Comprehensive Political Settlement of the Cambodia Conflict” adopted by the five permanen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on 28 August 1990, and of elements of the work accomplished at the first session of the Conference. They entail a continuing process of national reconciliation and an enhanced role for the United Nations, thus enabling the Cambodian people to determine their own political future through free and fair elections organized and conducted by the United Nations in a neutral political environment with full respect for the national sovereignty of Cambodia.

11. These instruments, which together form the comprehensive settlement the achievement of which was the objective of the Paris Conference, are being presented for signature to the States participating in the Paris Conference. On behalf of Cambodia, the instruments will be signed by the twelve members of the Supreme National Council of Cambodia, which is the unique legitimate body and source of authority enshrining the sovereignty, independence and unity of Cambodia.
12. The States participating in the Conference call upon the co-Presidents of the Conference to transmit an authentic copy of the comprehensive political settlement instruments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tates participating in the Conference request the Secretary General to take the appropriate steps in order to enable consideration of the comprehensive settlement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t the earliest opportunity. They pledge their full cooperation in the fulfilment of this comprehensive settlement and their assistance in its implementation.

Above all, in view of the recent tragic history of Cambodia, the States participating in the Conference commit themselves to promote and encourage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Cambodia, as embodied in the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to which they are party.

13. The States participating in the Conference request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to facilitate, in accordance with its principles, the release of prisoners of war and civilian internees. They express their readiness to assist the ICRC in this task.
14. The States participating in the Conference invite other States to accede to the Agreement on a Comprehensive Political Settlement of the Cambodia Conflict and to the Agreement concerning the Sovereignty, Independence, Territorial Integrity and Inviolability, Neutrality and National Unity of Cambodia.
15. Further recognizing the need for a concerted international effort to assist Cambodia in the tasks of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the States participating in the Conference ur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ovide generous economic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measures set forth in the Declaration on the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of Cambodia.

In witness whereof the representatives have signed this Final Act.

Done at Paris this twenty-third day of Octobe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ninety-one, in two copies in the Chinese, English, French, Khmer and Russian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The originals of this Final Act shall be deposited with the Governments of the French Republic and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Agreement on a Comprehensive Political Settlement of the Cambodia Conflict

The States participating in the Paris Conference on Cambodia, namely Australia, Brunei Darussalam, Cambodia, Canad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French Republic, the Republic of India, the Republic of Indonesia, Japan,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Malaysia,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the Republic of Singapore, the Kingdom of Thail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and the Socialist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In the presence of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n order to maintain, preserve and defend the sovereignty, independence, territorial integrity and inviolability, neutrality and national unity of Cambodia,

Desiring to restore and maintain peace in Cambodia, to promote national reconciliation and to ensure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Cambodian people through free and fair elections,

Convinced that only a comprehensive political settlement to the Cambodia conflict will be just and durable and will contribute to regional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Welcoming the Framework document of 28 August 1990, which was accepted by the Cambodian Parties in its entirety as the basis for settling the Cambodia conflict, and which was subsequently unanimously endorsed by Security Council resolution 668 (1990) of 20 September 1990 and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5/3 of 15 October 1990,

Noting the formation in Jakarta on 10 September 1990 of the Supreme National Council of Cambodia as the unique legitimate body and source of authority in Cambodia in which, throughout the transitional period, national sovereignty and unity are enshrined, and which represents Cambodia externally,

Welcoming the unanimous election, in Beijing on 17 July 1991, of H.R.H. Prince Norodom Sihanouk as the President of the Supreme National Council,

Recognizing that an enhanced United Nations role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a United Nations Transitional Authority in Cambodia (UNTAC) with civilian and military components, which will act with full respect for the national sovereignty of Cambodia,

Noting the statements made at the conclusion of the meetings held in Jakarta on 9-10 September 1990, in Paris on 21-23 December 1990, in Pattaya on 24-26 June 1991, in Beijing on 16-17 July 1991, in Pattaya on 26-29 August 1991, and also the meetings held in Jakarta on 4-6 June 1991 and in New York on 19 September 1991,

Welcoming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717 (1991) of 16 October 1991 on Cambodia,

Recognizing that Cambodia's tragic recent history requires special measures to assur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non-return to the policies and practices of the past,

Have agreed as follows:

Part I. Arrangements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Section I : Transitional Period

Article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ransitional period shall commence with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terminate when the constituent assembly elected through free and fair elections, organized and certified by the United Nations, has approved the constitution and transformed itself into a legislative assembly, and thereafter a new government has been created.

Section II : United Nations Transitional Authority in Cambodia

Article 2

1. The Signatories invite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o establish a United Nations Transitional Authority in Cambod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UNTAC") with civilian and military components under the direct responsibility of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For this purpose the Secretary-General will designate a Special Representative to act on his behalf.
2. The Signatories further invite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o provide UNTAC with the mandate set forth in this Agreement and to keep its implementation under continuing review through periodic reports submitted by the Secretary-General.

Section III : Supreme National Council

Article 3

The Supreme National Counci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NC") is the unique legitimate body and source of authority in which, throughout the transitional period, the sovereignty, independence and unity of Cambodia are enshrined.

Article 4

The members of the SNC shall be committed to the holding of free and fair elections organized and conducted by the United Nations as the basis for forming a new and legitimate Government.

Article 5

The SNC shall, throughout the transitional period, represent Cambodia externally and occupy the seat of Cambodia at the United Nations, in the United Nations specialized agencies, and in other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international conferences.

Article 6

The SNC hereby delegates to the United Nations all powers necessary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s described in annex 1.

In order to ensure a neutral political environment conducive to free and fair general elections, administrative agencies, bodies and offices which could directly influence the outcome of elections will be placed under direct United Nations supervision or control. In that context, special attention will be given to foreign affairs, national defence, finance, public security and information. To reflect the importance of these subjects, UNTAC needs to exercise such control as is necessary to ensure the strict neutrality of the bodies responsible for them. The United Nations, in consultation with the SNC, will identify which agencies, bodies and offices could continue to operate in order to ensure normal day-to-day life in the country.

Article 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NC, UNTAC and existing administrative structures is set forth in annex 1.

Section IV: Withdrawal of Foreign Forces and its Verification

Article 8

Immediately upon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y foreign forces, advisers, and military personnel remaining in Cambodia, together with their weapons, ammunition, and equipment, shall be withdrawn from Cambodia and not be returned. Such withdrawal and non-return will be subject to UNTAC verification in accordance with annex 2.

Section V: Cease-Fire and Cessation of Outside Military Assistance

Article 9

The cease-fire shall take effect at the tim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ll forces shall immediately disengage and refrain from all hostilities and from any deployment, movement or action which would extend the territory they control or which might lead to renewed fighting.

The Signatories hereby invite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to request the Secretary-General to provide good offices to assist in this process until such time as the military component of UNTAC is in position to supervise, monitor and verify it.

Article 10

Upon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re shall be an immediate cessation of all outside military assistance to all Cambodian Parties.

Article 11

The objectives of military arrangements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shall be to stabilize the security situation and build confidence among the parties to the conflict, so as to reinforce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nd to prevent the risks of a return to warfare.

Detailed provisions regarding UNTAC's supervision, monitoring, and verification of the cease-fire and related measures, including verification of the withdrawal of foreign forces and the regrouping, cantonment and ultimate disposition of all Cambodian forces and their weapons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are set forth in annex 1, section C, and annex 2.

Part II. Elections**Article 12**

The Cambodian people shall have the right to determine their own political future through the free and fair election of a constituent assembly, which will draft and approve a new Cambodian Co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 and transform itself into a legislative assembly, which will create the new Cambodian Government. This election will be held under United Nations auspices in a neutral political environment with full respect for the national sovereignty of Cambodia.

Article 13

UNTAC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organization and conduct of these elections based on the provisions of annex 1, section D, and annex 3.

Article 14

All Signatories commit themselves to respect the results of these elections once certified as free and fair by the United Nations.

Part III. Human Rights**Article 15**

1. All persons in Cambodia and all Cambodian refugees and displaced persons shall enjoy the rights and freedoms embodi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2. To this end,
 - a. Cambodia undertakes:
 - to ensure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Cambodia;
 - to support the right of all Cambodian citizens to undertake activities which would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to take effectiv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policies and practices of the past shall never be allowed to return;
 - to adhere to releva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 b. the other Signatories to this Agreement undertake to promote and encourage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Cambodia as embodied in the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the relevant resolution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order, in particular,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human rights abuses.`

Article 16

UNTAC shall be responsible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for fostering an environment in which respect for human rights shall be ensured, based on the provisions of annex 1, section E.

Article 17

After the end of the transitional period,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should continue to monitor closely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Cambodia, including, if necessary, by the appointment of a Special Rapporteur who would report his findings annually to the Commission and to the General Assembly.

Part IV. International Guarantees

Article 18

Cambodia undertakes to maintain, preserve and defend, and the other Signatories undertake to recognize and respect, the sovereignty, independence, territorial integrity and inviolability, neutrality and national unity of Cambodia, as set forth in a separate Agreement.

Part V. Refugees and Displaced Persons

Article 19

Upon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every effort will be made to create in Cambodia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conducive to the voluntary return and harmonious integration of Cambodian refugees and displaced persons.

Article 20

- 1) Cambodian refugees and displaced persons, located outside Cambodia, shall have the right to return to Cambodia and to live in safety, security and dignity, free from intimidation or coercion of any kind.
- 2) The Signatories request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o facilitate the repatriation in safety and dignity of Cambodian refugees and displaced persons, as an integral part of the comprehensive political settlement and under the overall authority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and principles on the repatriation of refugees and displaced persons as set forth in annex 4.

Part VI. Release of Prisoners of War And Civilian Internees**Article 21**

The release of all prisoners of war and civilian internees shall be accomplished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under the direc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in coordination with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with the assistance, as necessary, of other appropriate international humanitarian organizations and the Signatories.

Article 22

The expression “civilian internees” refers to all persons who are not prisoners of war and who, having contributed in any way whatsoever to the armed or political struggle, have been arrested or detained by any of the parties by virtue of their contribution thereto.

Part VII. Principles for a New Constitution for Cambodia**Article 23**

Basic principles, including those regarding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s well as regarding Cambodia’s status of neutrality, which the new Cambodian Constitution will incorporate, are set forth in annex 5.

Part VIII.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Article 24**

The Signatories ur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ovide economic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of Cambodia, as provided in a separate declaration.

Part IX. Final Provisions

Article 25

The Signatories shall, in good faith and in a spirit of cooperation, resolve through peaceful means any disputes with respect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26

The Signatories request other Stat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ther bodies to cooperate and assist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in the fulfilment by UNTAC of its mandate.

Article 27

The Signatories shall provide their full cooperation to the United Nation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its mandate, including by the provision of privileges and immunities, and by facilitating freedom of movement and communication within and through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In carrying out its mandate, UNTAC shall exercise due respect for the sovereignty of all States neighbouring Cambodia.

Article 28

1. The Signatories shall comply in good faith with all obligations undertaken in this Agreement and shall extend full cooperation to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the provision of the information which UNTAC requires in the fulfilment of its mandate.
2. The signature on behalf of Cambodia by the members of the SNC shall commit all Cambodian parties and armed forces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ticle 29

Without prejudice to the prerogatives of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and upon the request of the Secretary-General, the two co Chairmen of the Paris Conference on Cambodia, in the event of a violation or threat of violation of this Agreement, will immediately undertake appropriate consultations, including with members of the Paris Conference on Cambodia, with a view to taking appropriate steps to ensure respect for these commitments.

Article 30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upon signature.

Article 31

This Agreement shall remain open for accession by all States. The instruments of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Governments of the French Republic and the Republic of Indonesia. For each State acceding to the Agreement i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deposit of its instruments of accession. Acceding States shall be bound

by the same obligations as the Signatories.

Article 32

The originals of this Agreement, of which the Chinese, English, French, Khmer and Russian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with the Governments of the French Republic and the Republic of Indonesia, which shall transmit certified true copies to the Governments of the other States participating in the Paris Conference on Cambodia, as well a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at Paris this twenty-third day of Octobe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ninety-one.

Agreement Concerning the Sovereignty, Independence, Territorial Integrity and Inviolability, Neutrality and National Unity of Cambodia

Australia, Brunei Darussalam, Cambodia, Canad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French Republic, the Republic of India, the Republic of Indonesia, Japan,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Malaysia,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the Republic of Singapore, the Kingdom of Thail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and the Socialist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In the presence of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Convinced that a comprehensive political settlement for Cambodia is essential for the long-term objective of maintaining peace and security in South-East Asia,

Recalling their obligations under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Considering that full observance of the principles of noninterference and non-intervention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affairs of States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Reaffirming the inalienable right of States freely to determine their own political,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systems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their peoples, without outside interference, subversion, coercion or threat in any form whatsoever,

Desiring to promote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conformity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Cambodia hereby solemnly undertakes to maintain, preserve and defend its sovereignty, independence, territorial integrity and inviolability, neutrality, and national unity; the perpetual neutrality of Cambodia shall be proclaimed and enshrined in the Cambodian constitution to be adopted after free and fair elections.

2. To this end, Cambodia undertakes:
 - a. To refrain from any action that might impair the sovereignty, independence and territorial integrity and inviolability of other States;
 - b. To refrain from entering into any military alliances or other military agreements with other States that would be inconsistent with its neutrality, without prejudice

- to Cambodia's right to acquire the necessary military equipment, arms, munitions and assistance to enable it to exercise its inherent right of self-defence and to maintain law and order;
- c. To refrain from interference in any form whatsoever, whether direct or indirect, in the internal affairs of other States;
 - d. To terminate treaties and agreements that are incompatible with its sovereignty, independence, territorial integrity and inviolability, neutrality, and national unity;
 - e. To refrain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 f. To settle all disputes with other States by peaceful means;
 - g. To refrain from using its territory or the territories of other States to impair the sovereignty, independence, and territorial integrity and inviolability of other States;
 - h. To refrain from permitting the introduction or stationing of foreign forces, including military personnel, in any form whatsoever, in Cambodia, and to prevent the establishment or maintenance of foreign military bases, strong points or facilities in Cambodia, except pursuant to United Nations authoriz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prehensive political settlement.

Article 2

1. The other parties to this Agreement hereby solemnly undertake to recognize and to respect in every way the sovereignty, independence, territorial integrity and inviolability, neutrality and national unity of Cambodia.
2. To this end, they undertake:
 - a. To refrain from entering into any military alliances or other military agreements with Cambodia that would be inconsistent with Cambodia's neutrality, without prejudice to Cambodia's right to acquire the necessary military equipment, arms, munitions and assistance to enable it to exercise its inherent right of self-defence and to maintain law and order;
 - b. To refrain from interference in any form whatsoever, whether direct or indirect, in the internal affairs of Cambodia;
 - c. To refrain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Cambodia,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 d. To settle all disputes with Cambodia by peaceful means;
 - e. To refrain from using their territories or the territories of other States to impair the sovereignty, independence, territorial integrity and inviolability, neutrality and national unity of Cambodia;
 - f. To refrain from using the territory of Cambodia to impair the sovereignty, independence and territorial integrity and inviolability of other States;
 - g. To refrain from the introduction or stationing of foreign forces, including military personnel, in any form whatsoever, in Cambodia and from establishing or maintaining military bases, strong points or facilities in Cambodia, except pursuant to United Nations authoriz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prehensive political settlement.

Article 3

1. All persons in Cambodia shall enjoy the rights and freedoms embodi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2. To this end,
 - a. Cambodia undertakes:
 - to ensure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Cambodia;
 - to support the right of all Cambodian citizens to undertake activities that would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to take effectiv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policies and practices of the past shall never be allowed to return;
 - to adhere to releva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 b. The other parties to this Agreement undertake to promote and encourage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Cambodia as embodied in the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in order, in particular,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human rights abuses.
3.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should continue to monitor closely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Cambodia, including, if necessary, by the appointment of a Special Rapporteur who would report his findings annually to the Commission and to the General Assembly.

Article 4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call upon all other States to recognize and respect in every way the sovereignty, independence, territorial integrity and Inviolability, neutrality and national unity of Cambodia and to refrain from any action inconsistent with these principles or with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ticle 5

1. In the event of a violation or threat of violation of the sovereignty, independence, territorial integrity and inviolability, neutrality or national unity of Cambodia, or of any of the other commitments herein,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undertake to consult immediately with a view to adopting all appropriate steps to ensure respect for these commitments and resolving any such violations through peaceful means.
2. Such steps may include, inter alia, reference of the matter of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or recourse to the means for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referred to in Article 33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3.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may also call upon the assistance of the co-Chairmen of the Paris Conference on Cambodia.
4. In the event of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Cambodia, they will call upon the competent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to take such other steps as are appropriate

for th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such vio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Article 6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upon signature.

Article 7

This Agreement shall remain open for accession by all States. The instruments of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Governments of the French Republic and the Republic of Indonesia. For each State acceding to this Agreement, i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accession.

Article 8

The original of this Agreement, of which the Chinese, English, French, Khmer and Russian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with the Governments of the French Republic and the Republic of Indonesia, which shall transmit certified true copies to the Governments of the other States participating in the Paris Conference on Cambodia an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at Paris this twenty-third day of Octobe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ninety-one.

Declaration on the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of Cambodia

1. The primary objective of the reconstruction of Cambodia should be the advancement of the Cambodian nation and people, without discrimination or prejudice, and with full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for all. The achievement of this objective requires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comprehensive political settlement.
2. The main responsibility for deciding Cambodia's reconstruction needs and plans should rest with the Cambodian people and the government formed after free and fair elections. No attempt should be made to impose a development strategy on Cambodia from any outside source or deter potential donors from contributing to the reconstruction of Cambodia.
3. International, regional and bilateral assistance to Cambodia should be coordinated as much as possible, complement and supplement local resources and be made available impartially with full regard for Cambodia's sovereignty, priorities, institutional means and absorptive capacity.
4. In the context of the reconstruction effort, economic aid should benefit all areas of Cambodia, especially the more disadvantaged, and reach all levels of society.
5. The implementation of an international aid effort would have to be phased in over a period that realistically acknowledges both political and technical imperatives. It would also necessitate a significant degree of cooperation between the future Cambodian Government and bilater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ntributors.
6. An important role will be played in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by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launching of an international reconstruction plan and an appeal for contributions should take place at an appropriate time, so as to ensure its success.
7. No effective programme of national reconstruction can be initiated without detailed assessments of Cambodia's human, natural and other economic assets. It will be necessary for a census to be conducted, developmental priorities identified, and the availability of resources, internal and external, determined.

To this end there will be scope for sending to Cambodia fact-finding missions from the United Nations system,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other agencies, with the consent of the future Cambodian government.
8. With the achievement of the comprehensive political settlement, it is now possible and desirable to initiate a process of rehabilitation, addressing immediate needs, and to lay the groundwork for the preparation of medium- and long-term reconstruction plans.
9. For this period of rehabilitation, 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is requested

- to help coordinate the programme guided by a person appointed for this purpose.
10. In this rehabilitation phase, particular attention will need be given to food security, health, housing, training, education, the transport network and the restoration of Cambodia's existing basic infrastructure and public utilities.
 11. The implementation of a longer-term international development plan for reconstruction should await the formation of a government following the elections and the determination and adoption of its own policies and priorities.
 12. This reconstruction phase should promote Cambodian entrepreneurship and make use of the private sector, among other sectors, to help advance self-sustaining economic growth. It would also benefit from regional approaches, involving, inter alia, institutions such as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 and the Mekong Committee, and Governments within the region; and from participation b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13. In order to harmonize and monitor the contributions that will be made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the reconstruction of Cambodia after the formation of a government following the elections, a consultative body, to be called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n the Reconstruction of Cambodia (ICORC), should be set up at an appropriate time and be open to potential donors and other relevant parties. The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 is requested to make special arrangements for the United Nations system to support ICORC in its work, notably in ensuring a smooth transition from the rehabilitation to reconstruction phases.

(5) 독일문제의 최종종결에 관한 조약 Treaty on the Final Settlement with Respect to Germany (1990.9.12)

독일문제의 최종종결에 관한 조약 (2+4협정)

독일연방공화국, 독일민주공화국, 프랑스공화국, 소비에트사회주의 공화국연방, 영국, 그리고 미합중국(이하 각각 서독, 동독, 프랑스, 소련, 영국, 미국)은

- 각각 자국의 국민이 평화롭게 함께 생활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구주대륙 분단의 극복을 가능케 하는 최근 유럽에서의 역사적인 변화를 주목하며
- 베를린과 독일 전체에 대한 전승 4대국의 권리와 책임, 특히 전쟁중과 전쟁후 이루어진 4대전승국의 관련 제 협정 및 결정에 유의하며
- 민족의 평등과 자결원칙의 존중에 기초해 국가간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며 아울러 세계평화를 확고한 것으로 만들고자 기타 적절한 조치를 강구토록 한다는 국제연합헌장의 의무조항을 충실히 지키겠다는 결의를 표명하면서
- 헬싱키에서 조인된 유럽의 안전보장과 협력에 관한 최종 문서의 원칙들을 상기하고, 이 원칙들이 유럽에 공정하고 항구적인 평화질서를 정착시키는데 있어 굳건한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각국 모든 사람의 안전보장상의 이해를 고려하기로 결의하고
- 궁극적으로 유럽에서 대립을 영원히 해소하는 대신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신하면서
- 특히, 효과적인 군비통제, 군축 및 신뢰조성을 통한 안전보장 강화 태세를 확인하고, 서로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쌓아가기 위한 동반자로 인식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며 이에 따라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기본 테두리 안에서 이에 걸맞게 적절한 구조적 조정 작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면서
- 독일 민족이 자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여 통합된 유럽에서의 동등하고 어엿한 하나의 주권국가로서 세계평화에 공헌하고자 한 국가로서의 독일통일을 이루어 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을 환영하면서, 최종적인 국경을 갖는 독일 국가의 통일이 유럽의 평화와 안정에 커다란 공헌이 된다는 점을 확신하고
- 독일문제에 관한 최종해결을 의도하여, 이 최종해결과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국가로서의 독일통일에 의해 베를린과 독일 전체에 대한 전승 4개국의 권리와 책임이 효력을 상실함을 인식하면서
- 1990년 2월 13일의 오타와성명에 따라, 5월 5일의 본회담, 6월 22일의 베를린회담, 폴란드외상이 참가한 7월 17일의 파리회담, 그리고 9월 12일 모스크바 회담에서 각 외상이 대표가 되어 다음과 같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제 1 조 통일독일의 영역

- (1) 통일독일의 서독, 동독 그리고 베를린시를 포함한다. 통일독일의 국경은 동독과 서독의 국경으로 한다. 국경은 이 통독협정의 발효일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통일독일 국경의 최종적 확인은 유럽 평화질서의 핵심을 이룬다.
- (2) 통일독일과 폴란드는 국제법상 구속력을 갖는 조약에 의해 양국간의 국경을 확인한다.
- (3) 통일독일은 다른 국가에 대해 결코 영토의 요구를 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4) 서독과 동독 정부는 통일 독일의 헌법이 이러한 제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포함치 않을 것을 보증한다. 이것은 서독기본법전문, 제 23조 제2문 및 제146조의 제규정에도 적용한다.
- (5) 프랑스, 소련, 영국, 미국 각 정부는 이것에 관한 서독과 동독정부의 의무와 성명을 정식으로 받아들이고, 이의 실현과 함께 독일 국경의 최종적인 성격이 확인됐음을 선언한다.

제 2 조 무력의 불사용

서독과 동독정부는 독일의 국토로부터는 평화만이 생겨난다고 하는 선언을 확인한다. 통일 독일의 헌법 하에서 특히 침략전쟁을 준비하려는 것과 같은 국가간의 평화적 관계를 방해하려 하거나 그런 의도를 가진 행위는 헌법위반으로 처벌된다. 서독과 동독정부는 통일독일이 헌법 및 국제연합헌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한다.

제 3 조 국방력

- (1) 양독 정부는 핵·생물·화학무기(ABC 무기)의 제조·보유·사용을 포기할 것을 확인한다. 양 정부는 통일독일도 이 의무에 따를 것을 선언한다. 특히 1968년 7월 1일의 핵 확산방지 조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통일독일에도 계속 적용된다.
- (2) 서독정부는 동독정부와의 완전한 합의하에 1990년 8월 30일 비엔나에서의 유럽재래식 전력(CFE) 감축협상에서 다음과 같은 선언을 발표했다.
 「서독정부는 통일독일의 병력을 3~4년 내에 37만명(육·해·공군)까지 감축할 것을 약속한다. 감축은 제1차 CFE의 대상이 되는 육군·공군병력은 34만 5천만명을 넘지 않는다. 서독정부는 육군·공군병력 감축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럽의 재래식 무기 감축에 독일이 중요한 공헌을 한다고 생각한다. 서독정부는 다음 협상에서 다른 협상 참가국도 병력 제한조치를 포함해 유럽의 안전보장과 안정의 강화에 공헌할 것을 기대한다.」
 동독정부는 이 선언에 따를 것임을 표명했다.
- (3) 프랑스, 소련, 영국, 미국 각 정부는 동서 독일정부의 이 같은 선언에 유의한다.

제 4 조 동독주둔 소련군의 철수

- (1) 동서 독일정부와 소련정부는 통일독일과 소련이 조약의 형태로 현재의 동독 영토와 베를

린에서의 소련군의 주둔조건 및 주둔기간, 철수절차를 규정할 것을 선언한다.
소련군의 철수는 이 협정 제3조 제2항에서 동서 독일정부에 부과된 의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1994년 말까지 완료된다.

(2) 프랑스, 영국, 미국 정부는 이 선언에 유의한다.

제5조 동독지역의 군사력

(1) 이 협정 제4조에 따라 소련군이 현 동독영토 및 베를린으로부터 철수를 완료할 때 까지 이 지역에는 통일독일 병력으로서 영토방위 목적의 독일 군부대만이 주둔한다. 이들 부대는 여타 독일 지역(현 서독)의 독일군이 속하고 있는 동맹기구(NATO)에는 통합되지 않는다.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입각하여 이 기간 중에는 제3국의 군대는 동 지역에 배치되지 않고 여타 군사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

(2) 현재의 동독 영역과 베를린에 소련군의 주둔이 계속되는 사이 프랑스·영국·미국 군대는 독일의 희망에 따라 통일독일 정부와 해당3국 정부간 협정에 의해 베를린에 계속 주둔할 수 있다.

베를린이 주둔하는 독일군 이외의 군대 병력과 장비는 이 협정조인 시점보다 강화되어서는 안된다. 독일 이외의 국가의 군대는 베를린에 새로운 종류의 무기를 반입해서는 안된다.

통일독일 정부는 베를린에 군대를 배치해 온 국가의 정부와 현재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적당한 조건으로 조약을 체결한다.

(3) 소련군이 현 동독영토 및 베를린에서 철수를 완료한 후에는 다른 독일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군사동맹기구에 속해있는 독일 병력을 배치할 수 있다. 그러나 핵무기 운반 수단은 배치할 수 없다. 다만, 현 동독지역에서 재래식 전력의 역할로 장비되고 그런 역할만을 목적으로 하는 재래식 무기체제로서 재래식 공격능력에 더해 다른 공격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군대, 핵무기 및 핵무기운반수단은 이 독일지역에는 배치 내지 이동되지 않는다.

제6조 동맹의 권리

통일독일이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하에서 동맹에 가담하는 권리는 이 협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7조 권리와 책임의 소멸

(1) 프랑스, 소련, 영국, 미국은 이로서 베를린과 독일 전체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종결한다. 그 결과 거기에 관련된 4개국의 협정, 결정, 실시 사항은 종결되고, 4대국의 모든 관련 기관은 해체된다.

(2) 통일독일은 이에 따라 대내외 관계에서 완전한 주권을 갖는다.

제8조 비준

- (1) 이 협정은 지체없이 비준 혹은 수락을 받는다. 독일측의 비준은 통일독일이 한다. 따라서 이 협정은 통일독일에 대해 적용한다.
- (2) 비준 혹은 수락된 문서는 통일독일 정부에 기탁된다. 통일독일정부는 다른 계약당사국 정부에 각 비준서 또는 수락서의 기탁에 대해 고지한다.

제9조 발효

이 협정은 통일독일, 프랑스, 소련, 영국, 미국에 대해 이들 국가의 비준서 또는 수락서의 기탁이 전부 완료한 날에 발효된다.

제10조 협정문의 관리

이 협정문의 원본은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로 작성되었고 다같이 동등한 정보로서 서독정부에 기탁된다. 동 정부의 다른 협정체결국 정부에 인증등본을 교부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의 전권대표는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1990년 9월 12일, 모스크바에서 작성되었다.

1991년 9월 3일 체결

Treaty on the Final Settlement with Respect to Germany

September 12, 1990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the French Republic,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scious of the fact that their peoples have been living together in peace since 1945;

Mindful of the recent historic changes in Europe which make it possible to overcome the division of the continent;

Having regard to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Four Powers relating to Berlin and to Germany as a whole, and the corresponding wartime and post-war agreements and decisions of the Four Powers;

Resolved, in accordance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o develop friendly relations among nations based on respect for the principle of equal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and to take other appropriate measures to strengthen universal peace;

Recalling the principles of the Final Act of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signed in Helsinki;

Recognizing that those principles have laid firm found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 just and lasting peaceful order in Europe;

Determined to take account of everyone's security interests;

Convinced of the need finally to overcome antagonism and to develop cooperation in Europe;

Confirming their readiness to reinforce security, in particular by adopting effective arms control, disarmament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their willingness not to regard each other as adversaries but to work for a relationship of trust and cooperation; and accordingly their readiness to consider positively setting up appropriate institutional arrangement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Welcoming the fact that the German people, freely exercising their right of self-determination, have expressed their will to bring about the unity of Germany as a state so that they will be able to serve the peace of the world as an equal and sovereign partner in a united Europe;

Convinced that the unification of Germany as a state with definitive borders i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peace and stability in Europe;

Intending to conclude the final settlement with respect to Germany;

Recognizing that thereby, and with the unification of Germany as a democratic and peaceful state,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Four Powers relating to Berlin and to Germany as a whole lose their function;

Represented by their Ministers for Foreign Affairs who, in accordance with the Ottawa Declaration of 13 February 1990, met in Bonn on 5 May 1990, in Berlin on 22 June 1990, in Paris on 17 July 1990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Poland, and in Moscow on 12 September 1990;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 (1) The united Germany shall comprise the territory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and the whole of Berlin. Its external borders shall be the borders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and shall be definitive from the date on which the present Treaty comes into force. The confirmation of the definitive nature of the borders of the united Germany i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peaceful order in Europe.
- (2) The united Germany and the Republic of Poland shall confirm the existing border between them in a treaty that is binding under international law.
- (3) The united Germany has no territorial claims whatsoever against other states and shall not assert any in the future.
- (4) The Governments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shall ensure that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Germany does not contain any provision incompatible with these principles. This applies accordingly to the provisions laid down in the preamble, the second sentence of Article 23, and Article 146 of the 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5) The Governments of the French Republic,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ake formal note of the corresponding commitments and declarations by the Governments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and declare that their implementation will confirm the definitive nature of the united Germany's borders.

ARTICLE 2

The Governments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reaffirm their declarations that only peace will emanate from German soil.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Germany, acts tending to and undertaken with the intent to disturb the peaceful relations between nations, especially to prepare for aggressive war, are unconstitutional and a punishable offence. The Governments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declare that the united Germany will never employ any of its weapons except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 and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3

- (1) The Governments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reaffirm their renunciation of the manufacture and possession of and control over 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They declare that the united Germany, too, will abide by these commitments. In particular,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Treaty on the Non-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of 1 July 1968 will continue to apply to the united Germany.
- (2)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cting in full agreement with the Government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made the following statement on 30 August 1990 in Vienna at the Negotiations on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undertakes to reduce the personnel strength of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Germany to 370,000 (ground, air and naval forces) within three to four years. This reduction will commence on the entry into force of the first CFE agreement. Within the scope of this overall ceiling no more than 345,000 will belong to the ground and air forces which, pursuant to the agreed mandate, alone are the subject to the Negotiations on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 The Federal Government regards its commitment to reduce ground and air forces as a significant German contribution to the reduction of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 It assumes that in follow-on negotiations the other participants in the negotiations, too, will render their contribution to enhancing security and stability in Europe, including measures to limit personnel strengths.

The Government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has expressly associated itself with this statement.

- (3) The Governments of the French Republic,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ake note of these statements by the Governments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ARTICLE 4

- (1) The Governments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state that the united Germany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will settle by treaty the conditions for and the duration of the presence of Soviet armed forces on the territory

of the present German Democratic Republic and of Berlin, as well as the conduct of the withdrawal of these armed forces which will be completed by the end of 1994, in connecti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undertaking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Article 3 of the present Treaty.

- (2) The Governments of the French Republic,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ake note of this statement.

ARTICLE 5

- (1) Until the completion of the withdrawal of the Soviet armed forces for the territory of the present German Democratic Republic and of Berlin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of the present Treaty, only German territorial defence units which are not integrated into the alliance structures to which German armed forces in the rest of German territory are assigned will be stationed in that territory as armed forces of the united Germany. During that period an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rmed forces of other states will not be stationed in that territory or carry out any other military activity there.
- (2) For the duration of the presence of Soviet armed forces in the territory of the present German Democratic Republic and of Berlin, armed forces of the French Republic,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upon German request, remain stationed in Berlin by agreement to this effec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Germany and the Governments of the states concerned. The number of troops and the amount of equipment of all non-German armed forces stationed in Berlin will not be greater than at the time of signature of the present Treaty. New categories of weapons will not be introduced there by non-German armed forces.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Germany will conclude with the Governments of those states which have armed forces stationed in Berlin treaties with conditions which are fair taking account of the relations existing with the states concerned.
- (3)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 withdrawal of the Soviet armed forces from the territory of the present German Democratic Republic and of Berlin, units of German armed forces assigned to military alliance structures in the same way as those in the rest of German territory may also be stationed in that part of Germany, but without nuclear weapon carriers. This does not apply to conventional weapon systems which may have other capabilities in addition to conventional ones but which in that part of Germany are equipped for a conventional role and designated only for such. Foreign armed forces and nuclear weapons or their carriers will not be stationed in that part of Germany or deployed there.

ARTICLE 6

The right of the united Germany to belong to alliances, with all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rising therefrom,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esent Treaty.



ARTICLE 7

- (1) The French Republic,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reby terminate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relating to Berlin and to Germany as a whole. As a result, the corresponding, related quadripartite agreements, decisions and practices are terminated and all related Four Power institutions are dissolved.
- (2) The United Germany shall have accordingly full sovereignty over its internal and external affairs.

ARTICLE 8

- (1) The present Treaty is subject to ratification or acceptance as soon as possible. On the German side it will be ratified by the united Germany. The Treaty will therefore apply to the united Germany.
- (2)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ptance shall be deposited with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Germany. That Government shall inform the Governm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ies of the deposit of eac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ptance.

ARTICLE 9

The present Treaty shall enter into force for the united Germany, the French Republic,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he date of deposit of the last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ptance by these states.

ARTICLE 10

The original of the present Treaty, of which the English, French, German and Russian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with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which shall transmit certified true copies to the Governm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ies.

Source: American Foreign Policy Current Documents 1990. Department of State, Washington, 1991.

- (6)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간의 상호관계 원칙, 특히 불개입 및 불간섭에 관한 협정 Bilateral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Afghanistan and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on the Principles of Mutual Relations in particular on Non-interference and Non-intervention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 1988.4.14)

아프가니스탄 공화국과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협정 주요 당사국’이라 한다)은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고, 양국간 관계를 개선하며, 협력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국제평화와 역내 안보를 강화하기를 희망한다.

‘협정 주요 당사국’은 국가 내·외정에 대한 불개입 및 불간섭에 관한 원칙의 완전한 준수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UN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이행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

‘협정 주요 당사국’은 국가가 어떠한 형태의 외부 간섭, 개입, 전복, 강제 위협을 받지 아니하고 자국민의 뜻에 따라 자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체제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협정 주요 당사국’은 UN헌장의 조항은 물론, UN이 불개입 및 불간섭의 원칙에 관하여 채택한 결의안 특히, UN헌장에 따른 국가간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 선언문(1970년 10월 24일)과 국가 내·외정에 대한 간섭 및 개입의 불용인에 관한 선언문(1981년 12월 9일)을 염두에 둔다.

이에 따라, ‘협정 주요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협정 주요 당사국’간의 관계는 특정 국가의 내·외정에 대한 타국의 불개입 및 불간섭 원칙을 엄격히 준수한다. 본 협정을 최초로 작성된 언어로부터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모든 번역문은 사무국(Secretarial)에 의해 추가 검토될 수 있다.

제2조

불개입 및 불간섭의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정 주요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하기로 한다.

- 1) 상대방 ‘협정 주요 당사국’의 주권, 정치적 독립, 영토 보전, 국가 통일, 안보, 비동맹과 더불어, 그 국민의 국민 정체성과 문화적 전통을 존중한다.
- 2) 상대방 ‘협정 주요 당사국’이 어떠한 형태의 외부 간섭, 개입, 전복, 강제 위협을 받지 아니하고 자국민의 뜻에 따라 자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체제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국의 국제관계를 개발하며, 자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주적이

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존중한다.

- 3) 양국간 국경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 '협정 주요 당사국'의 정치, 사회 또는 경제 질서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상대방 '협정 주요 당사국'의 정치체제 또는 그 정부를 전복 또는 변화하지 아니하고, '협정 주요 당사국'간 긴장을 유발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무력의 사용 또는 위협을 삼간다.
- 4) 자국 영토의 사용에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든 상대방 '협정 주요 당사국'의 주권, 정치적 독립, 영토보전, 국가 통일을 침해하거나, 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붕괴시키지 않도록 보장한다.
- 5) 상대방 '협정 주요 당사국'에 대하여 무력 개입, 전복, 군사적 점령 등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기타 모든 형태의 개입 및 간섭 행위 또는, 무력사용이 개입된 보복행위를 포함한 상대방 '협정 주요 당사국'의 내정에 대한 모든 군사적, 정치적 또는 경제적 간섭 행위를 하지 않는다.
- 6) 상대방 '협정 주요 당사국' 또는 그 모든 제도의 안정을 해치거나 불안하게 하기 위한 어떠한 형태의 행위 또는 시도를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하지 않는다.
- 7)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상대방 '협정 주요 당사국'의 통일을 침해하거나 정치 질서를 침해 또는 파괴하기 위하여 상대방 '협정 주요 당사국'에 대한 반란적인 또는 분리적인 활동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촉진, 장려 또는 지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8) 상대방 '협정 주요 당사국'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목적으로 용병의 훈련, 무장, 자금 모금, 모집이 그 출신을 불문하고 자국 영토에서 이루어지거나, 상대방 '협정 주요 당사국'의 영토에 당해 용병이 파병되지 않도록 방지한다. 또한, 용병의 훈련, 무장, 이동을 위한 자금 모금을 포함한 시설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 9) 상대방 '협정 주요 당사국'의 내정에 간섭 또는 개입하려 하는 타국과 어떠한 협정 또는 합의를 체결하지 아니한다.
- 10) 상대방 '협정 주요 당사국'의 내정에 간섭 또는 개입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어떠한 비방 운동, 중상 또는 적대적 선전을 하지 않는다.
- 11) 상대방 '협정 주요 당사국'의 외정에 간섭 또는 개입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테러집단에 대한 어떠한 지원, 활용 또는 용인을 방지한다.
- 12) 상대방 '협정 주요 당사국'의 영토에서 전복, 무질서, 불안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 및 정치적, 인종 집단 등 기타 모든 이들의 부대 또는 캠프에서의 체류, 은닉, 조직, 훈련, 자금 모금, 무장, 장비 구비가 자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지한다. 또한, 당해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한 매스미디어의 활용 및 무기, 탄약, 장비의 수송을 방지한다.

제3조

본 협정은 1988년 5월 15부로 효력을 갖는다.

제4조

‘협정 주요 당사국’이 본 협정 제 2조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는 본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완료하기로 한다.

제5조

본 협정은 영어, 파쉬투어, 우르두어로 작성되었으며, 모두 동일하게 진본이다. 언어간에 해석이 상충하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은 제네바에서 위와 같이 합의하고, 1988년 4월 14일 본 협정의 각 5부에 서명하였다.

Bilateral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Afghanistan and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on the Principles of Mutual Relations, in particular on Non-interference and Non-intervention

The Republic of Afghanistan and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Desiring to normalize relations and promote good-neighborliness and co-operation as well as to strengthe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Considering that full observance of the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and non-intervention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affairs of States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for the fulfillment of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affirming the inalienable right of States freely to determine their own political,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systems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their peoples, without outside intervention, interference, subversion, coercion or threat in any form whatsoever.

Mindful of the provision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s well as the resolution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on the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and non-intervention, in particular the 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of 24 October 1970, as well as the Declaration on the Inadmissibility of Intervention and Interference in the Internal Affairs of States, of 9 December 1981.

Have agreed as follows :

Article 1

Relations between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shall be conducted in strict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and non-intervention by States in the affairs of other States.

Article 2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and non-intervention each High Contracting Party undertakes to comply with the following obligations :

- (1) to respect the sovereignty, political independence, territorial integrity, national unity, security and non-alignment of the other High Contracting Party, as well as the national identity and cultural heritage of its people ;
- (2) to respect the sovereign and inalienable right of the other High Contracting Party freely to determine its own political,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systems, to

- develop it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o exercise permanent sovereignty over its natural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its people, and without outside intervention, interference, subversion, coercion or threat in any form whatsoever ;
- (3) to refrain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in any form whatsoever so as not to violate the boundaries of each other, to disrupt the political, social or economic order of the other High Contracting Party, to overthrow or change the political system of the other High Contracting Party or its Government, or to cause tension between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
 - (4) to ensure that its territory is not used in any manner which would violate the sovereignty, political independence, territorial integrity and national unity or disrupt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tability of the other High Contracting Party ;
 - (5) to refrain from armed intervention, subversion, military occupation or any other form of intervention and interference, overt or Covert, directed at the other High Contracting Party, or any act of military, political or economic interference in the internal affairs of the other High Contracting Party, including acts of reprisal involving the use of force ;
 - (6) to refrain from any action or attempt in whatever form or under whatever pretext to destabilize or to undermine the stability of the other High Contracting Party or any of its institutions ;
 - (7) to refrain from the promotion, encouragement or support, direct or indirect, of rebellious or secessionist activities against the other High Contracting Party, under any pretext whatsoever, or from any other action which seeks to disrupt the unity to undermine or subvert the political order of the other High Contracting Party ;
 - (8) to prevent within its territory the training, equipping, financing and recruitment of mercenaries from whatever origin for the purpose of hostile activities against the other High Contracting Party, or the sending of such mercenaries into territory of the other High Contracting Party and accordingly to deny facilities, including financing for the training, equipping and transit of such mercenaries ;
 - (9) to refrain from making any agreements or arrangements with other States designed to intervene or interfere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affairs of the other High Contracting Party ;
 - (10) to abstain from any defamatory campaign, vilification or hostile propaganda for the purpose of intervening or interfering in the internal affairs of the other High Contracting Party ;
 - (11) to prevent any assistance to or use of or tolerance of terrorist groups, saboteurs or subversive agents against the other High Contracting Party ;



- (12) to prevent within its territory the presence, harbouring, in camps and bases or otherwise, organizing, training, financing, equipping and arming of individuals and political, ethnic and any other groups for the purpose of creating subversion, disorder or unrest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High Contracting Party and accordingly also to prevent the use of mass media and the transportation of arms, ammunition and equipment by such individuals and groups ;
- (13) not to resort to or to allow any other action that could be considered as interference or intervention.

Article 3

The present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15 May 1988.

Article 4

Any steps that may be required in order to enable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 of this Agreement shall be completed by the date on which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rticle 5

This Agreement is drawn up in the English, Pashtu and Urdu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Done in five original copies at Geneva this fourteenth day of April 1988.

Signed by Afghanistan and Pakistan

(7) 「이집트·아랍」 공화국과 「이스라엘」 국가의 평화조약
Peace Treaty between Israel and Egypt (1979.3.26)

「이집트·아랍」共和國과 「이스라엘」國간의 平和條約

「이집트·아랍」共和國政府와 「이스라엘」國政府는

安全保障理事會 決議 242號와 338號에 따라 中東에서 正當하고, 包括的이고 또한 繼續的인 平和確立의 緊急한 必要性을 確信하고,

1978年 9月 17日에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에서 合意된 中東平和計劃』에 대한 그들의 遵守를 再確認하고,

適切한 위의 計劃은 「이집트」와 「이스라엘」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의 隣接 「아랍」國-이 原則에 따라 「이스라엘」과 平和를 協商하려는- 사이의 平和를 위한 基盤을 構築하려고 意圖되었음을 銘心하고,

그들 사이에 戰爭狀態의 終熄을 가져오며, 各國이 이 地域에서 安全하게 居住할 수 있는 平和를 確立함을 念願하고,

「이집트」와 「이스라엘」간의 平和條約의 締結이 이 地域의 包括的 平和와 모든 面的 「아랍」· 「이스라엘」衝突의 解決을 위한 探索에서 重要한 段階가 됨을 確信하고,

위에서 言及된 計劃의 原則에 의해 指導되고 根據된 「이스라엘」과의 平和協商에 參加하도록 이 紛爭에 關與하고 있는 다른 「아랍」當事者들을 招請하고,

國際聯合憲章과 平和時의 國際關係를 規律하는 國際法의 原則에 따라 相互友好關係와 協力을 또한 念願하고,

「이집트」와 「이스라엘」간의 平和條約締結을 위한 計劃”을 履行하기 위하여 그들 主權의 自由로운 行使를 통해 다음과 같은 規定에 合意한다.

- 第1條
1. 兩國간의 戰爭狀態는 終熄되며, 이 條約批准書의 交換 後 그들 사이의 平和는 宣言된다.
 2. 「이스라엘」은 附屬議定書(附屬 I)에서 規定된 바와 같이 「이집트」와 委任統治下의 「팔레스타인」간의 國境內의 모든 戰鬪力과 民間人들을 撤收시키고, 「이집트」는 「시나이」에 대한 그의 完全主權의 行使를 回復한다.
 3. 附屬 I에서 規定된 撤收를 위한 侍日의 經過後 兩國은 第3條에 따라 正常的이고 友好的 關係를 樹立한다.

第2條 「이집트」와 「이스라엘」間的 恒久的 境界는 「가자」(Gaza)地區의 地位에 대한 問題를 侵害함이 없이 附屬 II의 地圖에서 表示된 바와 같이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의 全委任統治領間에서 認定된 國際的 境界이다. 當事國들은 이 境界를 不可侵한 것으로 認定한다. 各當事國은 그들의 領海와 領空을 包含하여 他國의 領土의 保全을 尊重한다.

第3條 1. 兩當事國은 國際聯合憲章條項과 平和時 國家間的 關係에 관한 國際法의 原則을 遵守한다. 특히,
 (a) 當事國들은 相互 主權, 領土의 保全 및 政治的 獨立을 認定하고 尊重한다.
 (b) 當事國들은 安全하고 認定된 國境內에서 平和속에 居住할 權利를 相互認定하고 尊重한다.
 (c) 當事國들은 直接 혹은 間接的으로 相互 武力의 威脅과 使用을 抑制하며, 他們 사이의 모든 紛爭을 平和的 手段에 의해 解決한다.
 2. 兩當事國들은 그들의 領土로부터 어떠한 戰爭行爲 혹은 威脅, 敵對行爲 혹은 武力使用이 他國에 駐屯된 다른 兵力에 의해 惹起되지 않도록 할 義務가 있다. 兩當事國들은 또한 他當事國에 대한 戰爭行爲 혹은 敵對行爲, 破壞行爲 혹은 暴力行爲에 있어서 組織하고, 煽動하고, 刺戟하고, 後援하고 혹은 參與하는 것을 全적으로 抑制할 義務가 있고, 그 같은 行爲의 準備者들을 裁判에 回附하도록 保障한다.
 3. 當事國들은 當事國間的 正常的 關係가 完全한 相互認定, 外交的·經濟的 및 文化的 關係樹立, 經濟的 排斥의 終熄 및 國民과 物品의 自由移動에 대한 差別的 制限 등을 包含하며, 또한 當事國國民들에 法的 權利의 享有을 保障하는데 合意하였다. 이 條約의 餘他 規定의 施行과 並行하여 이러한 關係의 達成을 위한 節次는 附屬議定書(附屬 III)에 明示되어 있다.

第4條 1. 相互間的 基盤에 따라 兩當事國들을 위한 最大의 安全을 마련하기 위해 「이집트」와 「이스라엘」領內의 兵力制限地域, 國際聯合軍과 監視者團(그 性質과 時期의 詳細에 관해서는 附屬에 規定) 및 兩當事國들이 合意한 기타 安全措置를 包含한 安全保障條約을 체결한다.
 2. 當事國들은 附屬 I에서 明記된 地域에서의 國際聯合軍의 駐屯에 合意하였다. 그 밖에 當事國들은 달리 協定을 締結하지 않는 경우에는 國際聯合軍의 撤收를 要求하지 않으며 國際聯合安全保障理事會의 決議와 3個 常任理事國의 承認없이 國際聯合軍을 撤收시키지 않는데 合意하였다.
 3. 條約의 適用을 明白히 하기 위해 附屬 I에 따라 「이스라엘」·「이집트」委員會가 構成된다.

4. 이 條項의 1과 2에 따른 安全措置는 兩當事國의 提案 혹은 兩當事國의 相互諒解 下에서 改正된다.

- 第5條
1. 「이스라엘」로 來往하는 「이스라엘」船舶과 貨物은 모든 國家에게 有效한 「콘스탄티노플」條約(1888)의 原則에 따라 「수에즈」運河, 「수에즈」灣 및 地中海를 통해 自由로운 航海를 할 수 있다. 「이스라엘」國民, 船舶 및 貨物 또한 「이스라엘」로 來往하는 사람, 船舶 및 貨物은 運河에 關係되는 모든 業務의 取扱에서 差別 받지 않는다.
 2. 兩當事國들은 「티란」海峽과 「아카바」灣을 모든 國家들에게 妨害없는 自由로운 海路와 空路로 公開하는 國際的 水路로써 認定한다. 當事國들은 「팔레스타인」에 의한 「티란」과 「아카바」灣의 海路 및 空路의 權利를 相互認定한다.

- 第6條
1. 이 條約은 國際聯合憲章下에서 갖는 當事國의 權利와 義務를 어떤 方法에서 영향을 주거나 또는 影響을 주는 것으로 解釋해서는 안된다.
 2. 兩當事國들은 어떤 他當事國의 行爲 혹은 不作為를 考慮함이 없이 또한 이 條約 外에 現存하는 文書와는 獨立하여 이 條約下의 그들의 義務를 充實히 遂行하도록 한다.
 3. 當事國들은 그밖에 國際聯合事務總長과 기타 協定文書保管國에 適切한 通知의 提出을 包含하여 當事國들이 所屬한 多邊協約規定의 適用을 위한 모든 必要한 措置를 취한다.
 4. 當事國들은 이 條約과 抵觸되는 어떤 義務도 負擔하지 않는다.
 5. 國際聯合憲章 第103條에 따라 이 條約에 의한 當事國의 義務와 기타 義務 사이에서 衝突하는 경우, 이 條約에 의한 義務가 拘束性이 있으며 履行되어야 한다.

- 第7條
1. 이 條約의 適用 혹은 解釋에서 發生하는 紛爭은 協商에 의해 解決된다.
 2. 協商方法에 의해 解決될 수 없는 紛爭은 調整委員會에 의해 解決되거나 혹은 仲裁에 回附된다.

- 第8條
- 兩當事國들은 모든 相互間의 財政的 請求의 解決을 위한 請求委員會의 創設에 同意하였다.

- 第9條
1. 이 條約은 批准文書의 交換후 效力을 發生한다.
 2. 이 條約은 1975年 9月の 「이집트」·「이스라엘」協定을 代置한다.
 3. 모든 議定書, 附屬 및 이 條約에 添附된 地圖는 이 條約의 本質的 部分으로 考慮 된다.



4. 條約은 國際聯合憲章 第 102條의 規定에 따라 登錄을 위해 國際聯合事務總長에게 提出된다.

條約本文은 「아랍」語, 英語 및 「히브리」語로 作成된다. 解釋上 異見이 있을 때 英語本文이 基本的 效力을 갖는다.

PEACE TREATY BETWEEN ISRAEL AND EGYPT

Sixteen months after Sadat's visit to Israel, the Israel-Egypt peace treaty was signed in Washington. It contains nine articles, a military annex, an annex dealing with the relation between the parties, agreed minutes interpreting the main articles of the treaty, among them Article 6, the withdrawal schedule, exchange of ambassadors, security arrangements and the agreement relating to the autonomy talks. The latter issue was contained in a letter addressed by President Sadat and Prime Minister Begin to President Carter.

In a separate Israel-US Memorandum of Agreement, concluded on the same day, the US spelled out its commitments to Israel in case the treaty is violated, the role of the UN and the future supply of military and economic aid to Israel.

PREAMBLE

Convinced of the urgent necessity of the establishment of a just, comprehensive and lasting peace in the Middle East in accordance with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242 and 338;

Reaffirming their adherence to the "Framework for Peace in the Middle East Agreed at Camp David," dated September 17, 1978;

Noting that the aforementioned Framework as appropriate is intended to constitute a basis for peace not only between Egypt and Israel but also between Israel and each of its other Arab neighbors which is prepared to negotiate peace with it on this basis;

Desiring to bring to an end the state of war between them and to establish a peace in which every state in the area can live in security;

Convinced that the conclusion of a Treaty of Peace between Egypt and Israel is an important step in the search for comprehensive peace in the area and for the attainment of settlement of the Arab- Israeli conflict in all its aspects;

Inviting the other Arab parties to this dispute to join the peace process with Israel guided by and based on the principles of the aforementioned Framework;

Desiring as well to develop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between themselves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Nations Charter and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governing international relations in times of peace;

Agree to the following provisions in the free exercise of their sovereignty, in order to implement the "Framework for the Conclusion of a Peace Treaty Between Egypt and Israel";

Article I

1. The state of war between the Parties will be terminated and peace will be established between them upon the exchange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f this Treaty.
2. Israel will withdraw all its armed forces and civilians from the Sinai behind the international boundary between Egypt and mandated Palestine, as provided in the annexed protocol (Annex I), and Egypt will resume the exercise of its full sovereignty over the Sinai.
3. Upon completion of the interim withdrawal provided for in Annex I, the parties will establish normal and friendly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III (3).

Article II

The permanent boundary between Egypt and Israel in the recognized international boundary between Egypt and the former mandated territory of Palestine, as shown on the map at Annex II, without prejudice to the issue of the status of the Gaza Strip. The Parties recognize this boundary as inviolable. Each will respect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other, including their territorial waters and airspace.

Article III

4. The Parties will apply between them the provision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governing relations among states in times of peace. In particular:
5. They recognize and will respect each other's sovereignty, territorial integrity and political independence;
6. They recognize and will respect each other's right to live in peace within their secure and recognized boundaries;
7. They will refrain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directly or indirectly, against each other and will settle all disputes between them by peaceful means.
8. Each Party undertakes to ensure that acts or threats of belligerency, hostility, or violence do not originate from and are not committed from within its territory, or by any forces subject to its control or by any other forces stationed on its territory , against the population, citizens or property of the other Party. Each Party also undertakes to refrain from organizing, instigating, inciting, assisting or participating in acts or threats of belligerency, hostility, subversion or violence against the other Party, anywhere, and undertakes to ensure that perpetrators of such acts are brought to justice.
9. The Parties agree that the normal relationship established between them will include full recognition, diplomatic, economic and cultural relations, termination of economic boycotts and discriminatory barriers to the free movement of people and goods, and will guarantee the mutual enjoyment by citizens of the due process of law. The process by which they undertake to achieve such a relationship parallel to the implementation of other provisions of this Treaty is set out in the annexed protocol (Annex III).

Article IV

10. In order to provide maximum security for both Parties on the basis of reciprocity, agreed security arrangements will be established including limited force zones in Egyptian and Israeli territory, and United Nations forces and observers, described in detail as to nature and timing in Annex I, and other security arrangements the Parties may agree upon.
11. The Parties agree to the stationing of United Nations personnel in areas described in Annex I. The Parties agree not to request withdrawal of the United Nations personnel and that these personnel will not be removed unless such removal is approved by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with the affirmative vote of the five Permanent Members,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12. A Joint Commission will be established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Treaty, as provided for in Annex I.
13. The security arrangements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may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be reviewed and amended by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Article V

14. Ships of Israel, and cargoes destined for or coming from Israel, shall enjoy the right of free passage through the Suez Canal and its approaches through the Gulf of Suez and the Mediterranean Sea on the basis of the Constantinople Convention of 1888, applying to all nations, Israeli nationals, vessels and cargoes, as well as persons, vessels and cargoes destined for or coming from Israel, shall be accorded non-discriminatory treatment in all matters connected with usage of the canal.
15. The Parties consider the Strait of Tiran and the Gulf of Aqaba to be international waterways open to all nations for unimpeded and non-suspendable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The parties will respect each other's right to navigation and overflight for access to either country through the Strait of Tiran and the Gulf of Aqaba.

Article VI

16. This Treaty does not affect and shall not be interpreted as affecting in any way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under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17. The Parties undertake to fulfill in good faith their obligations under this Treaty, without regard to action or inaction of any other party and independently of any instrument external to this Treaty.
18. They further undertake to take all the necessary measures for the application in their relations of the provisions of the multilateral conventions to which they are parties, including the submission of appropriate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depositaries of such conventions.
19. The Parties undertake not to enter into any obligation in conflict with this Treaty.
20. Subject to Article 103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the obligation of the Parties under the present Treaty and any of their other obligations, the obligations under this Treaty will be binding and implemented.

Article VII

21. Disputes arising out of the application or interpretation of this Treaty shall be resolved by negotiations.
22. Any such disputes which cannot be settled by negotiations shall be resolved by conciliation or submitted to arbitration.

Article VIII

The Parties agree to establish a claims commission for the mutual settlement of all financial claims.

Article IX

23. This Treaty shall enter into force upon exchange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24. This Treaty supersedes the Agreement between Egypt and Israel of September, 1975.
25. All protocols, annexes, and maps attached to this Treaty shall be regarded as an integral part hereof.
26. The Treaty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for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nex I

Protocol Concerning Israeli Withdrawal and Security Agreements

Article I

Concept of Withdrawal

27. Israel will complete withdrawal of all its armed forces and civilians from the Sinai not later than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exchange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f this Treaty.
28. To ensure the mutual security of the Parties, the implementation of phased withdrawal will be accompanied by the military measures and establishment of zones set out in this Annex and in Map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Zones."
29. The withdrawal from the Sinai will be accomplished in two phases:
30. The interim withdrawal behind the line from east of El-Arish to Ras Mohammed as delineated on Map 2 within nine months from the date of exchange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f this Treaty.
31. The final withdrawal from the Sinai behind the international boundary not later than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exchange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f this Treaty.
32. A Joint Commission will be formed immediately after the exchange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f this Treaty in order to supervise and coordinate movements and schedules during the withdrawal, and to adjust plans and timetables as necessary within the limits established by paragraph 3, above. Details relating to the Joint

Commission are set out in Article IV of the attached Appendix. The Joint Commission will be dissolved upon completion of final Israeli withdrawal from the Sinai.

Article II

Determination of Final Lines and Zones

33. In order to provide maximum security for both Parties after the final withdrawal, the lines and the Zones delineated on Map 1 are to be established and organized as follows:
34. Zone A
35. Zone A is bounded on the east by line A (red line) and on the west by the Suez Canal and the east coast of the Gulf of Suez, as shown on Map 1.
36. An Egyptian armed force of one mechanized infantry division and its military installations, and field fortifications, will be in this Zone.
37. The main elements of that Division will consist of:
38. Three mechanized infantry brigades.
39. One armed brigade.
40. Seven field artillery battalions including up to 126 artillery pieces.
41. Seven anti-aircraft artillery battalions including individual surface-to-air missiles and up to 126 anti-aircraft guns of 37 mm and above.
42. Up to 230 tanks.
43. Up to 480 armored personnel vehicles of all types.
44. Up to a total of twenty-two thousand personnel.
45. Zone B
46. Zone B is bounded by line B (green line) on the east and by line A (red line) on the west, as shown on Map 1.
47. Egyptian border units of four battalions equipped with light weapons and wheeled vehicles will provide security and supplement the civil police in maintaining order in Zone B. The main elements in the four Border Battalions will consist of up to a total of four thousand personnel.
48. Land based, short range, low power, coastal warning points of the border patrol units may be established on the coast of this Zone.
49. There will be in Zone B field fortifications and military installations for the four border battalions.
50. Zone C
51. Zone C is bounded by line B (green line) on the west and the International Boundary and the Gulf of Aqaba on the east, as shown on Map 1.
52. Only United Nations forces and Egyptian civil police will be stationed in Zone C.
53. The Egyptian civil police armed with light weapons will perform normal police functions within this Zone.
54. The United Nations Force will be deployed within Zone C and perform its functions as defined in Article VI of this annex.
55. The United Nations Force will be stationed mainly in camps located within the following stationing areas shown on Map 1, and will establish its precise locations after consultations with Egypt:
56. In that part of the area in the Sinai lying within about 20 Km. of the Mediterranean



- Sea and adjacent to the International Boundary.
57. In the Sharm el Sheikh area.
 58. Zone D
 59. Zone D is bounded by line D (blue line) on the east and the international boundary on the west, as shown on Map 1.
 60. In this Zone there will be an Israeli limited force of four infantry battalions, their military installations, and field fortifications, and United Nations observers.
 61. The Israeli forces in Zone D will not include tanks, artillery and anti-aircraft missiles except individual surface-to-air missiles.
 62. The main elements of the four Israeli infantry battalions will consist of up to 180 armored personnel vehicles of all types and up to a total of four thousand personnel.
 63. Access across the international boundary shall only be permitted through entry check points designated by each Party and under its control. Such acces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country.
 64. Only those field fortifications, military installations, forces, and weapons specifically permitted by this Annex shall be in the Zones.

Article III

Aerial Military Regime

65. Flights of combat aircraft and reconnaissance flights of Egypt and Israel shall take place only over Zones A and D, respectively.
66. Only unarmed, non-combat aircraft of Egypt and Israel will be stationed in Zones A and D, respectively.
67. Only Egyptian unarmed transport aircraft will take off and land in Zone B and up to eight such aircraft may be maintained in Zone B. The Egyptian border unit,.,, may be equipped with unarmed helicopters to perform their functions in Zone B.
68. The Egyptian civil police may be equipped with unarmed police helicopters to perform normal police functions in Zone C.
69. Only civilian airfields maybe built in the Zones.
70.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only those military aerial activities specifically permitted by this Annex shall be allowed in the Zones and the airspace above their territorial waters.

Article IV

Naval Regime

71. Egypt and Israel may base and operate naval vessels along the coasts of Zones A and D, respectively.
72. Egyptian coast guard boats, lightly armed, may be stationed and operate in the territorial waters of Zone B to assist the border units in performing their functions in this Zone.
73. Egyptian civil police equipped with light boats, lightly armed, shall perform normal police functions within the territorial waters of Zone C.
74. Nothing in this Annex shall be considered as derogating from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of the naval vessels of either party.
75. Only civilian maritime ports and installations may be built in the Zones.

76.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only those naval activities specifically permitted by this Annex shall be allowed in the Zones and in their territorial waters.

Article V

Early Warning Systems

Egypt and Israel may establish and operate early warning systems only in Zones A and D respectively.

Article VI

United Nations Operations

77. The Parties will request the United Nations to provide forces and observers to supervise the implementation of this Annex and employ their best efforts to prevent any violation of its terms.
78. With respect to these United Nations forces and observers, as appropriate, the Parties agree to request the following arrangements:
79. Operation of check points, reconnaissance patrols, and observation posts along the international boundary and line B, and within Zone C.
80. Periodic verific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nnex will be carried out not less than twice a month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81. Additional verifications within 48 hours after the receipt of a request from either Party.
82. Ensuring the freedom of navigation through the Strait of Tiran in accordance with Article V of the Treaty of Peace.
83. The arrangements described in this article for each zone will be implemented in ones A, B, and C by the United Nations Force and in Zone D by the United Nations Observers.
84. United Nations verification teams shall be accompanied by liaison officers of the respective Party.
85. The United Nations Force and observers will report their findings to both Parties.
86. The United Nations Force and Observers operating in the Zones will enjoy freedom of movement and other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tasks.
87. The United Nations Force and Observers are not empowered to authorize the crossing of the international boundary.
88. The Parties shall agree on the nations from which the United Nations Force and Observers will be drawn. They “ill be drawn from nations other than those which are permanen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89. The Parties agree that the United Nations should make those command arrangements that will best as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its responsibilities.

Article VII

Liaison System

90. Upon dissolution of the Joint Commission, a liaison system between the Parties will be established. This liaison system is intended to provide an effective

method to assess progress in the implementation of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Annex and to resolve any problem that may arise in the course of implementation, and refer other unresolved matters to the higher military authorities of the two countries respectively for consideration. It is also intended to prevent situations resulting from errors or misinterpretation on the part of either Party.

91. An Egyptian liaison office will be established in the city of El-Arish and an Israeli liaison office will be established in the city of Beer-Sheba. Each office will be headed by an officer of the respective country, and assisted by a number of officers.
92. A direct telephone link between the two offices will be set up and also direct telephone lines with the United Nations command will be maintained by both offices.

Article VIII

Respect for War Memorials

Each Party undertakes to preserve in good condition the War Memorials erected in the memory of soldiers of the other Party, namely those erected by Egypt in Israel, and shall permit access to such monuments.

Article IX

Interim Arrangements

The withdrawal of Israeli armed forces and civilians behind the interim withdrawal line, and the conduct of the forces of the Parties and the United Nations prior to the final withdrawal, will be governed by the attached Appendix and Map 2.

Appendix to Annex I

Organization of Movements in the Sinai

Article I

Principles of Withdrawal

93. The withdrawal of Israeli armed forces and civilians from the Sinai will be accomplished in two phases as described in Article I of Annex I. The description and timing of the withdrawal are included in this Appendix. The Joint Commission will develop and present to the Chief Coordinator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Middle East the details of these phases not later than one month before the initiation of each phase of withdrawal.
94. Both parties agree on the following principles for the sequences of military movements.
9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IX, paragraph 2, of this Treaty, until Israeli armed forces complete withdrawal from the current J and M Lines established by the Egyptian-Israeli Agreement of September 1975,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1975 Agreement, up to the interim withdrawal line, all military arrangements existing under that Agreement will remain in effect, except those military arrangement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Appendix.
96. As Israeli armed forces withdraw, United Nations forces will immediately enter the evacuated areas to establish interim and temporary buffer zones as shown

- on Maps 2 and 3, respectively,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a separation of forces. United Nations forces' deployment will precede the movement of any other personnel into these areas.
97. Within a period of seven days after Israeli armed forces have evacuated any area located in Zone A, units of Egyptian armed forces shall deplo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II of this Appendix.
 98. Within a period of seven days after Israeli armed forces have evacuated any area located in Zones A or B, Egyptian border units shall deplo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II of this Appendix, and will fun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II of Annex I.
 99. Egyptian civil police will enter evacuated areas immediately after the United Nations forces to perform normal police functions.
 100. Egyptian naval units shall deploy in the Gulf of Suez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II of this Appendix.
 101. Except those movements mentioned above, deployments of Egyptian armed forces and the activities covered in Annex I will be offered in the evacuated areas when Israeli armed forces have completed their withdrawal behind the interim withdrawal line.

Article II

Subphases of the Withdrawal to the Interim Withdrawal Line

102. The withdrawal to the interim withdrawal line will be accomplished in subphases as described in this Article and as shown on Map 3. Each subphase will be completed within the indicated number of months from the date of the exchange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f this Treaty:
103. First subphase: within two months, Israeli armed forces will withdraw from the area of El Arish, including the town of El Arish and its airfield, shown as Area I on Map 3.
104. Second subphase: within three months, Israeli armed forces will withdraw from the area between line M of the 1975 Agreement and line A, shown as Area II on Map 3.
105. Third subphase: within five months, Israeli armed forces will withdraw from the area east and south of Area II, shown as Area III on Map 3.
106. Fourth subphase: within seven months, Israeli armed forces will withdraw from the area of El Tor- Ras El Kenisa, shown as Area IV on Map 3.
107. Fifth subphase: Within nine months, Israeli armed forces will withdraw from the remaining areas west of the interim withdrawal line, including the areas of Santa Katrina and the areas east of the Giddi and Mitla passes, shown as Area V on Map 3, thereby completing Israeli withdrawal behind the interim withdrawal line.
108. Egyptian forces will deploy in the areas evacuated by Israeli armed forces as follows:
109. Up to one-third of the Egyptian armed forces in the Sinai in accordance with the 1975 Agreement will deploy in the portions of Zone A lying within Area I, until the completion of interim withdrawal. Thereafter, Egyptian armed forces as described Article II of Annex I will be deployed in Zone A up to the limits of the interim zone.



110. The Egyptian naval activ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IV of Annex I will commence along the coasts of areas I, III and IV, upon completion of the second, third, and fourth subphases, respectively.
111. Of the Egyptian border units described in Article II of Annex I, upon completion of the first subphase one battalion will be deployed in Area I. A second battalion will be deployed in Area II upon completion of the second subphase. A third battalion will be deployed in Area III upon completion of the third subphase. The second and third battalions mentioned above may also be deployed in any of the subsequently evacuated areas of the southern Sinai.
112. United Nations forces in Buffer Zone I of the 1976 Agreement will redeploy to enable the deployment of Egyptian forces described above upon the completion of the subphase, but will otherwise continue to fun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at Agreement in the remainder of that zone until the completion of interim withdrawal, as indicated in Article I of this Appendix.
113. Israeli convoys may use the roads south and east of the main road junction east of El Arish to evacuate Israeli forces up to the completion of interim withdrawal. These convoys will proceed in daylight upon four hours notice to the Egyptian liaison group and United Nations forces, will be escorted by United Nations forces, and will be in accordance with schedules coordinated by the Joint Commission. An Egyptian liaison officer will accompany convoys to assure uninterrupted movement. The Joint Commission may approve other arrangements for convoys.

Article III

United Nations Forces

114. The Parties shall request that United Nations forces be deployed as necessary to perform the functions described in the Appendix up to the time of completion of final Israeli withdrawal. For that purpose, the Parties agree to the redeployment of the United Nations Emergency Force.
115. United Nations forces will supervise the implementation of this Appendix and will employ their best efforts to prevent any violation of its terms.
116. When United Nations forces deplo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II of this Appendix, they will perform the functions of verification in limited force zon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VI of Annex I, and will establish check points, reconnaissance patrols, and observation posts in the temporary buffer zones described in Article II above. Other functions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which concern the interim buffer zone are described in Article V of this Appendix.

Article IV

Joint Commission and Liaison

117. The Joint Commission referred to in Article IV of this Treaty will function from the date of exchange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f this Treaty up to the date of completion of final Israeli withdrawal from the Sinai.
118. The Joint Commission will be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each Party headed by senior officers. This Commission shall invite a representative of the

- United Nations when discussing subjects concerning the United Nations, or when either Party requests United Nations presence. Decisions of the Joint Commission will be reached by agreement of Egypt and Israel.
119. The Joint Commission will supervise the implementation of the arrangements described in Annex I and this Appendix. To this end, and by agreement of both Parties, it will:
 120. coordinate military movements described in this Appendix and supervise their implementation;
 121. address and seek to resolve any problem arising out of the implementation of Annex I and this Appendix, and discuss any violations reported by the United Nations Force and Observers and refer to the Governments of Egypt and Israel any unresolved problems;
 122. assist the United Nations Force and Observers in the execution of their mandates, and deal with the timetables of the periodic verification when referred to it by the Parties as provided for in Annex I and this Appendix;
 123. organize the demarcation of the international boundary and all lines and zones described in Annex I and this Appendix;
 124. supervise the handing over of the main installations in the Sinai from Israel to Egypt;
 125. agree on necessary arrangements for finding and returning missing bodies of Egyptian and Israeli soldiers;
 126. organize the setting up and operation of entry check points along the El Arish-Ras Mohammed lin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4 of Annex III;
 127. conduct its operations through the use of joint liaison teams consisting of one Israeli representative and one Egyptian representative, provided from a standing Liaison Group, which will conduct activities as directed by the Joint Commission;
 128. provide liaison and coordination to the United Nations command implementing provisions of the Treaty, and, through the joint liaison teams, maintain loca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Force stationed in specific areas or United Nations Observers monitoring specific areas for any assistance as needed;
 129. discuss any other matters which the Parties by agreement may place before it.
 130. Meetings of the Joint Commission shall be held at least once a month. In the event that either Party of the Command of the United Nations Force requests a specific meeting, it will be convened within 24 hours.
 131. The Joint Committee will meet in the buffer zone until the completion of the interim withdrawal and in El Arish and Beer-Sheba alternately afterwards. The first meeting will be held not later than two week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Article V

Definition of the Interim Buffer Zone and Its Activities

132. An interim buffer zone, by which the United Nations Force will effect a separation of Egyptian and Israeli elements, will be established west of and adjacent to the interim withdrawal line as shown on Map 2 after implementation of Israeli



- withdrawal and deployment behind the interim withdrawal line. Egyptian civil police equipped with light weapons will perform normal police functions within this zone.
133. The United Nations Force will operate check points, reconnaissance patrols, and observation posts within the interim buffer zone in order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is Article.
 134. In accordance with arrangements agreed upon by both Parties and to be coordinated by the Joint Commission, Israeli personnel will operate military technical installations at four specific locations shown on Map 2 and designated as T1 (map central coordinate 57163940), T2 (map central coordinate 59351541), T3 (map central coordinate 5933-1527), and T4 (map central coordinate 61130979) under the following principles:
 135. The technical installations shall be manned by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personnel equipped with small arms required for their protection (revolvers, rifles, sub-machine guns, light machine guns, hand grenades, and ammunition), as follows:
 - T1 - up to 150 personnel
 - T2 and T3 - up to 350 personnel
 - T4 - up to 200 personnel
 136. Israeli personnel will not carry weapons outside the sites, except officers who may carry personal weapons.
 137. Only a third party agreed to by Egypt and Israel will enter and conduct inspections within the perimeters of technical installations in the buffer zone. The third party will conduct inspections in a random manner at least once a month. The inspections will verify the nature of the operation of the installations and the weapons and personnel therein. The third party will immediately report to the Parties any divergence from an installation's visual and electronic surveillance or communications role.
 138. Supply of the installations, visits for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purposes, and replacement of personnel and equipment situated in the sites, may occur uninterruptedly from the United Nations check points to the perimeter of the technical installations, after checking and being escorted by only the United Nations forces.
 139. Israel will be permitted to introduce into its technical installations items required for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installations and personnel.
 140. As determined by the Joint Commission, Israel will be permitted to:
 141. Maintain in its installations fire-fighting and general maintenance equipment as well as wheeled administrative vehicles and mobile engineering equipment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the sites. All vehicles shall be unarmed.
 142. Within the sites and in the buffer zone, maintain roads, water lines, and communications cables which serve the site. At each of the three installation locations (T1, T2 and T3, and T4), this maintenance may be performed with up to two unarmed wheeled vehicles and by up to twelve unarmed personnel with only necessary equipment, including heavy engineering equipment if needed. This maintenance may be performed three times a week, except for special problems, and only after giving the United Nations four hours notice. The teams will be escorted by the United Nations.

143. Movement to and from the technical installations will take place only during daylight hours. Access to, and exit from, the technical installations shall be as follows:
144. T1: Through a United Nations check point, and via the road between Abu Aweigila and the intersection of the Abu Aweigila road and the Gebel Libni road (at Km. 161), as shown on Map 2.
145. T2 and T3: through a United Nations checkpoint and via the road constructed across the buffer zone to Gebel Katrina, as shown on Map 2.
146. T2, T3, and T4: via helicopters flying within a corridor at the times, and according to a flight profile, agreed to by the Joint Commission. The helicopters will be checked by the United Nations Force at landing sites outside the perimeter of the installations.
147. Israel will inform the United Nations Force at least one hour in advance of each intended movement to and from the installations.
148. Israel shall be entitled to evacuate sick and wounded and summon medical experts and medical teams at any time after giving immediate notice to the United Nations Force.
149. The details of the above principles and all other matters in this Article requiring coordination by the Parties will be handled by the Joint Commission.
150. These technical installations will be withdrawn when Israeli forces withdraw from the interim withdrawal line, or at a time agreed by the parties.

Article VI

Disposition of Installations and Military Barriers

Disposition of installations and military barriers will be determined by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guidelines:

151. Up to three weeks before Israeli withdrawal from any area, the Joint Commission will arrange for Israeli and Egyptian liaison and technical teams to conduct a joint inspection of all appropriate installations to agree upon condition of structures and articles which will be transferred to Egyptian control and to arrange for such transfer. Israel will declare, at that time, its plans for disposition of installations and articles within the installations.
152. Israel undertakes to transfer to Egypt all agreed infrastructures, utilities, and installations intact, inter alia, airfields, roads, pumping stations, and ports. Israel will present to Egypt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the facilities. Egyptian technical teams will be permitted to observe and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 operation of these facilities for a period of up to two weeks prior to transfer.
153. When Israel relinquishes Israeli military water points near El Arish and El Tor, Egyptian technical teams will assume control of those installations and ancillary equipment in accordance with an orderly transfer process arranged beforehand by the Joint Commission. Egypt undertakes to continue to make available at all water supply points the normal quantity of currently available water up to the time Israel withdraws behind the international boundary, unless otherwise agreed in the Joint Commission.
154. Israel will make its best effort to remove or destroy all military barriers, including

obstacles and minefields, in the areas and adjacent waters from which it withdraws, according to the following concept:

155. Military barriers will be cleared first from areas near populations, roads and major installations and utilities.
156. For those obstacles and minefields which cannot be removed or destroyed prior to Israeli withdrawal, Israel will provide detailed maps to Egypt and the United Nations through the Joint Commission not later than 15 days before entry of United Nations forces into the affected areas.
157. Egyptian engineers will enter those areas after United Nations forces enter to conduct barrier clearance operations in accordance with Egyptian plans to be submitted prior to implementation.

Article VII

Surveillance Activities

158. Aerial surveillance activities during the withdrawal will be carried out as follows:
159. Both Parties request the United States to continue airborne surveillance flights in accordance with previous agreements until the completion of final Israeli withdrawal.
160. Flight profiles will cover the Limited Forces Zones to monitor the limitations on forces and armaments, and to determine that Israeli armed forces have withdrawn from the areas described in Article II of Annex I, Article II of this Appendix, and Maps 2 and 3, and that these forces thereafter remain behind their lines. Special inspection flights may be flown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or of the United Nations.
161. Only the main elements in the military organizations of each Party, as described in Annex I and in this Appendix, will be reported.
162. Both Parties request the United States operated Sinai Field Mission to continue its operations in accordance with previous agreements until completion of the Israeli withdrawal from the area east of the Giddi and Mitla Passes. Thereafter, the Mission be terminated.

Article VIII

Exercise of Egyptian Sovereignty

Egypt will resume the exercise of its full sovereignty over evacuated parts of the Sinai upon Israeli withdrawal as provided for in Article I of this Treaty.

ANNEX II Map of Israel-Egypt International Boundary

ANNEX III

Protocol Concerning Relations of the Parties

Article I

Diplomatic and Consular Relations

The Parties agree to establish diplomatic and consular relations and to exchange ambassadors upon completion of the interim withdrawal.

Article 2**economic and Trade Relations**

163. The Parties agree to remove all discriminatory barriers to normal economic relations and to terminate economic boycotts of each other upon completion of the interim withdrawal.
164. As soon as possible, and not later than six month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interim withdrawal, the Parties will enter negotiations with a view to concluding an agreement on trade and commerce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beneficial economic relations.

Article 3**Cultural Relations**

165. The Parties agree to establish normal cultural relations following completion of the interim withdrawal.
166. They agree on the desirability of cultural exchanges in all fields, and shall, as soon as possible and not later than six months after completion of the interim withdrawal, enter into negotiations with a view to concluding a cultural agreement for this purpose.

Article 4**Freedom of Movement**

167. Upon completion of the interim withdrawal, each Party will permit the free movement of the nationals and vehicles of the other into and within its territory according to the general rules applicable to nationals and vehicles of other states. Neither Party will impose discriminatory restrictions on the free movement of persons and vehicles from its territory 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168. Mutual unimpeded access to places of religious and historical significance will be provided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Article 5**Cooperation for Development and Good Neighborly Relations**

169. The Parties recognize a mutuality of interest in good neighbourly relations and agree to consider means to promote such relations.
170. The Parties will cooperate in promoting peace, stability and development in their region. Each agrees to consider proposals the other may wish to make to this end.
171. The Parties shall seek to foster mutual understanding and tolerance and will, accordingly, abstain from hostile propaganda against each other.

Article 6**Transportation and Telecommunications**

172. The Parties recognize as applicable to each other the rights, privileges and obligations provided for by the aviation agreements to which they are both party, particularly by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1944 (“The Chicago Convention”) and the International Air Services Transit



- Agreement, 1944.
173. Upon completion of the interim withdrawal any declaration of national emergency by a party under Article 89 of the Chicago Convention will not be applied to the other party on a discriminatory basis.
 174. Egypt agrees that the use of airfields left by Israel near El-Arish, Rafah, Ras El-Nagb and Sharm El- Sheikh shall be for civilian purposes only, including possible commercial use by all nations.
 175. As soon as possible and not later than six month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interim withdrawal, the Parties shall enter into negotiations for the purpose of concluding a civil aviation agreement.
 176. The Parties will reopen and maintain roads and railways between their countries and will consider further road and rail links. The Parties further agree that a highway will be constructed and maintained between Egypt, Israel and Jordan near Eilat with guaranteed free and peaceful passage of persons, vehicles and goods between Egypt and Jordan, without prejudice to their sovereignty over that part of the highway which falls within their respective territory.
 177. Upon completion of the interim withdrawal, normal postal, telephone, telex, data facsimile, wireless and cable communications and television relay services by cable, radio and satellite shall be established between the two Parties in accordance with all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regulations.
 178. Upon completion of the interim withdrawal, each Party shall grant normal access to its ports for vessels and cargoes of the other, as well as vessels and cargoes destined for or coming from the other. Such access will be granted on the same conditions generally applicable to vessels and cargoes of other nations. Article 5 of the Treaty of Peace will be implemented upon the exchange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f the aforementioned treaty.

Article 7

Enjoyment of Human Rights

The Parties affirm their commitment to respect and observ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and they will promote these rights and freedoms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Nations Charter.

Article 8

Territorial Seas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5 of the Treaty of Peace each Party recognizes the right of the vessels of the other Party to innocent passage through its territorial sea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AGREED MINUTES

Article I

Egypt's resumption of the exercise of full sovereignty over the Sinai provided for in paragraph 2 of Article I shall occur with regard to each area upon Israel's withdrawal from the area.

Article IV

It is agreed between the parties that the review provided for in Article IV (4) will be undertaken when requested by either party, commencing within three months of such a request, but that any amendment can be made only by mutual agreement of both parties.

Article V

The second sentence of paragraph 2 of Article V shall not be construed as limiting the first sentence of that paragraph. The foregoing is not to be construed as contravening the second sentence of paragraph 2 of Article V, which reads as follows: “The Parties will respect each other’s right to navigation and overflight for access to either country through the Strait of Tiran and the Gulf of Aqaba.”

Article VI (2)

The provisions of Article VI shall not be construed in contradiction to the provisions of the framework for peace in the Middle East agreed at Camp David. The foregoing is not to be construed as contraven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VI (2) of the Treaty, which reads as follows: “The Parties undertake to fulfill in good faith their obligations under this Treaty, without regard to action of any other Party and independently of any instrument external to this Treaty.”

Article VI (5)

It is agreed by the Parties that there is no assertion that this Treaty prevails over other Treaties or agreements or that other Treaties or agreements prevail over this Treaty. The foregoing is not to be construed as contraven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VI (5) of the Treaty, which reads as follows: “Subject to Article 103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the obligations of the Parties under the present Treaty and any of their other obligations, the obligation under this Treaty will be binding and implemented.”

Annex I

Article VI, Paragraph 8, of Annex I provides as follows:

“The Parties shall agree on the nations from which the United Nations forces and observers will be drawn. They will be drawn from nations other than those which are permanen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he Parties have agreed as follows: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8, Article VI, of Annex 1, if no agreement is reached between the Parties, they will accept or support a U.S. proposal concerning the composition of the United Nations force and observers.”

Annex III

The Treaty of Peace and Annex III thereto provide for establishing normal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In accordance herewith, it is agreed that such relations will include normal commercial sales of oil by Egypt to Israel, and that Israel shall be fully entitled to make bids for Egyptian-origin oil not needed for Egyptian



domestic oil consumption, and Egypt and its oil concessionaires will entertain bids made by Israel, on the same basis and terms as apply to other bidders for such oil.

*For the Government of Israel
For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Witnessed by:
Jimmy Carte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8) 유럽안보협력회의 최종의정서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Final Act (헬싱키 협약, 1975.8.1)

유럽안보협력회의 최종의정서(헬싱키 협약)

1973년 7월 3일에 헬싱키에서 개막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는 1973년 9월 18일부터 1975년 7월 21일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1975년 8월 1일 헬싱키에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사이프러스,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민주공화국(동독), 독일연방공화국(서독), 교황청,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스위스, 터키, 소련, 영국, 미국, 유고슬라비아 고위 대표들이 모여 최종의정서를 채택했다.

CSCE의 개막과 폐막 때, 참석자들은 UN사무총장을 명예 연설자로 초청해 연설을 들었다. 또한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UN유럽경제위원회의 사무총장은 2차 회의에서 연설을 했다.

또한 2차 회의 때, 지중해 연안에 있는 비회원국들이 여러 기고와 연설을 했는데, 이들 나라는 알제리, 이집트, 모로코, 시리아, 튀니지 등이다.

CSCE는 참가국들이 유럽국가들은 물론 세계의 다른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의 화해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이익과 국가간 관계의 증진 및 강화, 그리고 유럽에서의 평화, 안보, 정의, 협력에 기여하기 위해 창설된 것이다.

이에 따라 CSCE 회의 결과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하고, 참가국들과 유럽 전체에 이러한 결정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확신시키며, 화해협력의 지속적인 과정을 확대, 심화, 형성하기로 결정했다.

참가국들의 고위급 대표들은 진지하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채택했다.

유럽의 안보와 관련한 문제들

유럽안보협력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참가국들은,

참가국들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유럽인들이 그들의 안보에 반하는 어떠한 위협이나 시도로부터 자유롭고, 지속적이고 진정한 평화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목적을 재확인 하면서;

지속적이고 점증적이며 존속가능하고 광범위한 화해협력을 만들어내는 노력의 필요성과 CSCE의 합의 결과를 이행하는 것이 이러한 과정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

CSCE가 만들어낸 목적을 달성하는데 참가국들의 공동 목적은 물론 국민들 사이의 연대는 모든 영역에서 개선되고 밀접한 협력을 발전시키는데 공헌해야 하고, 이에 따라 과거의 관계에서 유래한 적대성을 극복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



하고,

공동의 역사와 유럽의 전통과 가치에 대한 공통의 요소가 존재하는 것은 유럽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각국의 위상과 관점에 개별성과 다양성을 완전히 고려하면서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를 증진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갖고 참가국들의 공동 노력 가능성을 탐색하며, 유럽 국가들을 분열시키는 문제들을 해소하고 인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한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유럽 전체와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유럽 안보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추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유럽과 세계의 평화와 안보가 전체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세계 평화와 안보, 기본적 권리의 증진, 경제적·사회적 진보, 그리고 모든 인민들의 복지에 기여하는데 참가국 각자가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채택한다.

1.

(a) 참가국 상호관계 규율 10대 지도 원칙

참가국들은,

평화, 안보, 정의, 그리고 우호적인 관계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인민들의 이익과 열망을 반영하고, 참가국 각자의 현재와 미래의 책임을 구성하는 공약을 인정하고,

UN 회원국과 UN의 목적과 정신에 부응하여, UN과 UN이 국제 평화, 안보, 정의를 강화하고 그 역할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참가국은 완전하고 활발한 지원을 하고, 참가국들 사이의 우호적 관계와 협력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아래에 열거되고 UN 헌장에 따른 원칙에 대한 참가국 공동의 준수와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UN 헌장의 목적과 정신에 따라 행동하는 공동의 의지를 표현하며,

국가들의 크기, 지리적 위치 및 경제발전의 수준은 물론이고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체제와 관계없이 참가국 각자는 다른 모든 참가국들을 존중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것을 결정하며, 이것을 최우선적인 중요성으로 간주하고 참가국 사이의 상호 관계를 지도하는 것으로 삼는다는 점을 선언한다.

I. 주권의 평등 및 주권의 고유한 제 권리 존중

참가국들은 주권에 내재된 모든 권리와 다른 나라의 주권의 평등성 및 개별성을 존중할 것이다. 특히 모든 국가의 사법상의 평등권, 영토적 통합권, 자유권과 정치적 독립권을 존중할 것이다. 참가국들은 또한 각국이 자신의 법과 규율을 결정할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

적·경제적·문화적 체제를 선택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할 것이다.

국제법의 틀 내에서 모든 참가국들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참가국들은 국가가 국제법에 부합하고 현재의 선언 정신에 따라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려는 것을 정의하고 행동하는 타국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다. 참가국들은 평화적인 수단 및 합의에 따라 국제법에 부합하게 그들의 국경선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 참가국들은 또한 국제기구, 동맹을 비롯한 양자조약, 다자조약에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중립을 선택할 권리 또한 갖는다.

II. 무력사용 및 위협의 금지

참가국들은 국제관계 일반에서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토적 통합 및 국가의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또한 UN의 목적과 현재의 선언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삼가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는 무력 사용 및 위협에 호소하려는 어떠한 고려도 권리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이에 따라 참가국들은 다른 참가국에 대해 무력 사용 위협이나 직간접적인 무력 사용을 구성하는 어떠한 행동도 삼갈 것이다. 마찬가지로 참가국들은 다른 참가국의 완전한 주권 행사를 제약할 목적으로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을 삼갈 것이다. 또한 참가국들은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무력으로 보복하는 행동을 삼갈 것이다.

참가국들 사이의 분쟁 해결 수단이나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무력 사용 및 위협은 채택되지 않을 것이다.

III. 국경 불가침

참가국들은 유럽의 모든 국가들의 국경선 뿐 만 아니라 각국의 국경선을 불가침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현재와 미래에 이러한 국경선을 공격하는 행위를 삼갈 것이다.

이에 따라, 참가국들은 다른 나라 영토의 일부나 전체를 요구하고, 행동하며, 점령 및 강탈하지 않을 것이다.

IV. 영토적 통합

참가국들은 참가국 모두의 영토적 통합을 존중할 것이다.

이에 따라, 참가국들은 영토적 통합에 대한 UN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참가국의 정치적 독립과 통일을 저해하는 행동을 삼갈 것이고, 특히 무력 사용 및 사용 위협을 구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참가국들은 마찬가지로 서로의 영토를 군사적 점령의 대상으로 삼거나 국제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직간접적인 무력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삼갈 것이다. 어떠한 점령이나 획득도 불법으로 간주될 것이다.

V. 분쟁의 평화적 해결

참가국들은 어떠한 분쟁도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다.

참가국들은 국제법의 기초에 따라 선의와 협력의 정신으로 신속하고 정당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참가국들은 참가국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분쟁이 일어나기에 앞서 협상, 요구, 중재, 화해, 조정, 사법적 해결을 비롯해 분쟁 해결 절차를 평화적 수단으로 삼을 것이다.

상기한 평화적 수단에 의해 문제 해결에 실패할 경우, 분쟁 당사국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분쟁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국들도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태롭게 하고 이에 따라 평화적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삼갈 것이다.

VI. 내정 불간섭

참가국들은 상호 관계와 관계없이 한 나라의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국내외의 문제에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직간접적인 어떠한 간섭도 삼가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참가국들은 다른 참가국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무력 개입이나 그러한 개입의 위협을 삼가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참가국들은 다른 참가국의 주권에 내재되어 있는 권리를 자국의 이익에 복속시켜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나오는 무력행사를 비롯해 정치적, 경제적, 혹은 다른 강압적인 행위를 삼갈 것이다.

참가국들은 무엇보다도 테러리스트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다른 참가국을 전복시키거나 정권을 폭력적으로 축출하기 위한 행동을 지원하는 것을 삼가 할 것이다.

VII. 사상, 양심,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자유와 인권에 대한 존중

참가국들은 인종이나 성별, 언어 및 종교의 구별 없이, 사상과 양심,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존중할 것이다.

그들은 시민적, 정치적, 경제사회적, 문화적 및 기타 권리들과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서 나오는 모든 자유들의 효율적인 발현을 도모하고 권고할 것이다.

이 틀에서 참가국들은 개인이 단독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그의 양심에 따른 종교와 신념을 선언하고 그것을 실행할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이다.

국경에 소수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참가국들은 소수자그룹에 속할 권리와 법 앞에서의 평등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와 의지를 향유할 기회를 주며, 이 범주에서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할 것이다.

참가국들은 인권의 보편적 중요성과 근본적인 자유를 인정하며, 그것이 바로 평화, 공의를 이루는 근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존중한다. 또한 모든 참가국들 간의 우호, 협력관계의 발전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상호관계에서 이 권리와 자유를 존중할 것이며, UN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 효과적 존중을 알리는데 노력할 것이다.

각 국은 개인의 알 권리와 이 분야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보장한다.

인권과 근본적 자유의 분야에서, 참가국들은 UN 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보편적 인권 선언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그들은 또한 이 분야의 국제 선언과 협약들, 그 중에서도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제창하는 의무들을 수행할 것이며, 그 의무들에 종속될 것이다.

VIII. 평등권과 자결권

참가국들은 국민들의 평등권, 자결권을 존중하며, 항상 UN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며, 각 국가의 영토통합과 관련된 국제법의 규범을 준수할 것이다.

평등권과 자결권으로 인해, 모든 국민들은 항상 충분한 자유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외부의 개입 없이, 그들의 내부적, 외부적 정치적 상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참가국들은 모든 나라들 간에, 우호관계의 증진을 위해서 평등권과 자결권의 효과적 수행과 존중의 보편적인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또한 이 원칙에 어긋나는 어떤 형태라도 제거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IX. 국가간의 협력

참가국들은 UN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이 지역의 모든 나라들과 서로간의 협력을 도모할 것이다. 그들의 협력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참가국들은 온전히 평등한 조건에서 각자의 기여를 도모하면서, 유럽안보협력회의의 구도 안에서 정해놓은 분야들에 특별히 중점을 둘 것이다.

그들은 상호 이해와 신뢰, 우호선린관계, 세계 평화, 안보, 정의를 실현하는데, 동등한 주체로서 그들의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들은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공동의 협력을 기울일 것이며, 증진된 상호 이해와 경제, 과학, 기술, 사회, 문화, 인도주의 분야에서의 진보와 성취에서 얻어진 혜택들을 통해 그들의 열망을 실현시키는데 공헌할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경제적 발전 단계의 차이를 좁히면서 모든 국가의 이익을 고려할 것이며, 특히 전세계의 개발도상국들의 이익을 고려할 것이다.

그들은 정부, 기관, 조직, 개인들이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상대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들은 상기에 제정된 협력을 증진시키면서, 국민들의 혜택을 위해 더 향상되고 더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X. 국제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

참가국들은 국제법의 의무사항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의 규칙들과 원칙들에서 발생하는 의무조항들과, 조약이나 협약에서 발생하는 의무조항들을 국제법과 그들이 속한 조약에 따라 성실하게 지킬 것이다.

그들의 법과 규칙을 결정할 권리를 포함한 주권의 행사에 있어서, 그들은 국제법의 법적 의무조항들을 수행할 것이며, 더 나아가 유럽안보협력회의 최종선언의 조항들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참가국들은 UN 헌장 아래의 UN 회원국들의 의무조항들과 다른 조약 혹은 국제협약 아래의 의무조항들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UN 헌장 103조에 따라 UN 헌장의 규칙들이 선행함을 인지한다.

모든 원칙들은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그들은 동등하고 무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각각은 다른 나라들을 고려하여 해석될 것이다.

참가국들은 현존하는 선언에서 규정된 이 원칙들을 준수하고 적용할 데에 대하여 그들의 결단을 표명하며, 모든 방면에서, 각 참가국이 이런 원칙들을 준수하고 적용함으로써 인한 이익들을 향유할 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 상호관계를 맺고 협력할 것에 대한 결단을 표명한다.

참가국들은 위의 원칙들, 특별히, 10조의 첫 문장 “국제법의 의무조항들에 대한 성실한 의무수행”을 고려하며, 본 선언이 그들의 권리와 의무조항들, 또는 상응하는 조약이나 다른 협약 및 협정들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참가국들은 이 원칙들이 정상적이고 우호적인 관계의 발전과 모든 방면에서 협력의 증진을 고무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 그들은 또한 이 원칙들이 정치교류의 증진을 촉진시킬 것이며, 그들의 입장과 견해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확신한다.

참가국들은 본 선언에 포함된 원칙의 정신으로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를 수행할 의지가 있음을 선언한다.

(b) 상위의 원칙들에 확실한 효과를 주기 위해 관련된 문제들

(i) 참가국들은,

무력사용과 위협의 금지를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규범으로 만들 필요가 있음을 확신하며, 무력사용과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존중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을 재확인하면서,

각국의 관계 속에서, 특히, 참가국 상호관계 규율원칙에 따르는 다음의 조항들을 준수할 것임을 선언한다.

○ 그들이 적당하다고 여기는 모든 방법과 형태로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 위협이나 무력의

사용을 억제할 의무를 수행한다.

- 영토의 침해 또는 공격과 같이 다른 참가국에 대해서, UN 현장의 목적과 원칙들, 그리고 참가국간 상호관계규율 지도원칙의 조항들에 위배되는 어떤 무력 사용도 금지한다.
- 다른 참가국으로 하여금 주권의 온전한 사용을 단념케 하는 목적을 위한 어떠한 무력 사용이라도 명시를 금한다.
- 고유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참가국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또한 어떤 종류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를 종속시킬 목적의 경제 제재를 금한다.
- 포괄적이고 완전한 군축을 위해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 하에서 그 범위와 성격에 따라 구성된 효과적인 단계들을 취한다.
- 참가국 모두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전쟁공격 선전이나 UN과 참가국 상호관계규율 지도원칙에 위배되는 무력의 위협 및 사용을 금지하는 의무를 준수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참가국 간의 분쟁이나 유럽에서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해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우선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며, 무엇보다도 UN현장 제33조에서 정한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참가국간 갈등의 평화로운 해결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금지한다.

(ii) 참가국들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결심을 재확인하면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평화와 안보를 유지시키고 공고화하는데 절대적이며, 본질적으로 위협 및 무력 사용의 금지를 완성하는 것임을 확신한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법을 강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1.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현존하는 방법들을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수용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검토하고 정교화할 것이며, 유럽안보협력회의의 두 번째 단계에서 스위스가 제출한 “평화적 분쟁해결을 위한 유럽의 체제 협정 초안”과 기타 관련된 방법의 제안들을 지속적으로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2. “회의 결과의 점검” 장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 결과의 점검 및 절차와 첫 문장에 묘사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스위스의 초청으로 참가국들의 전문가 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정한다.
3. 이 전문가 회의는 각 참가국들의 외교부장관 지명 대표자 회의 후에, “회의 결과의 점검” 장에 따라 1977년에 소집될 것이다. 이 전문가 회의의 결과는 각 정부에 제출될 것이다.

2.

신뢰구축조치와 안보 및 군축에 관련한 사항들

참가국들은,

참가국들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의 원인들을 제거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신뢰를 강화해서 유럽의 안정과 안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기로 결정했다.

참가국 상호관계와 국제관계에서, 이 최종의정서에서 채택한 참가국 상호관계 규율 지도원칙과 UN의 목적에 위배되는 어떤 행위나, 영토보존을 해치거나 그 나라의 정치적 독립을 손상시키면서 저지르는 무력의 위협, 사용을 금지한다.

무장갈등의 위협을 줄이는데, 특히 군사행동에 대해 투명하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가 있는 지역에서의 우려를 유발할 군사행동에 대한 잘못된 계산 및 착오를 불러일으킬 위협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필요를 인식한다.

긴장을 해소하고 군축을 도모하는 노력에 대해서 고려하며,

군사훈련에 참관단을 초청하는 상호교류가 상호이해와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

신뢰구축의 맥락에서 주요 군사행동의 사전통보를 강구하며,

각국이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신뢰구축 및 안정과 안보, 그리고 상호이해의 증진을 위한 주요 군사 훈련 사전통보의 정치적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한다.

각 참가국이 이러한 목적을 알리고, 이 목적들의 실현을 위한 근본 요소로서의 규범, 방식에 따라 이 방법을 수행할 책임을 진다.

정치적 결단에서 나온 이 방법이 자발적 기초에 근거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다음 사항을 채택한다.

I

주요군사훈련의 사전통보

참가국들은 다음의 조항들에 따라 일상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다른 참가국들에게 주요 군사훈련을 사전 통보할 것이다.

통보는 개별적인 혹은 공중, 해상의 구성요소를 합친 병력수가 총 25,000명을 초과하는 주요 군사훈련일 경우에 주어진다(여기서 “병력”이라는 말은 수륙부대와 공수부대를 포함한다). 수륙, 공수부대 각각의 독립적인 작전일 경우거나 혹은 그들을 포함한 합동작전일 경우에, 이 부대들은 총계에 포함된다. 더 나아가, 위의 총수에는 미치지 않지만, 일정한 수의 수륙부대나 공수부대가 따로 혹은 두 부대가 같이 육군과 함께 하는 훈련일 경우도 사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

유럽의 영토 내에 있는 참가국들의 영토 및 영해와 영공 위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군사훈련은 사전에 통보되어야 한다.

그 영토가 유럽경계를 벗어나기까지 걸쳐있는 참가국의 경우에, 국경선에서 250km안에 있거나 다른 유럽 참가국과 공유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일 경우에만 사전 통보를 하면 된다. 그러나 그 지역이 또한 참가국의 국경선이 유럽이 아닌 국가나 비회원국과 맞닿아있거나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 국가들은 사전에 통보를 할 필요는 없다.

통상적으로 훈련개시 최소한 21일 전에 사전통보를 해야 하며, 이보다 짧은 공지 시간 내에 실시되는 군사훈련은 훈련 개시에 앞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통보를 해야 한다.

사전통보는 훈련계획, 훈련목적, 참가국, 훈련형태, 병력의 수, 훈련이 실시되는 지역, 훈련 실시 시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참가국들은 또한 가능하다면, 추가의 관련 정보, 특별히 이 병력들이 투입되는 기간과 참여하는 구성요소들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기타 군사 훈련의 사전 통보

참가국들은 그들이 신뢰를 강화하고, 안보와 안정을 증대시키는데 더욱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신뢰 강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서, 특별히 훈련 근접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작은 규모의 군사훈련일지라도 통보해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참가국들은 그들에 의해서 실시되는 다른 군사 훈련들도 공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참관단 상호교환

참가국들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쌍무적 기반 위에서 상호주의와 모든 참가국들에 대한 호의의 정신으로 다른 참가국들에게 군사훈련에 참석할 참관단을 보내도록 초청할 것이다.

초청국은 참관단의 수, 참가의 절차와 조건을 결정할 것이며,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기타 정보들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초청국은 적절한 시설과 숙박을 제공할 것이다.

초청은 일상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가능한 편리하게 미리 주어질 것이다.

주요 군사이동의 사전통보

헬싱키 협정의 최종 권고에 따라 참가국들은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요 군사 이동의 사전통보를 연구했다.

따라서 참가국들은 그들의 재량에 따라, 그리고 신뢰구축을 위해, 주요 군사 이동을 알릴 필요성을 인식한다.

이와 같은 정신에 따라,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참가국들은 특별히 이 문서가 제시한 조치들을 이행한 결과를 염두에 두고 주요 군사적 이동의 사전 통보 문제에 더 깊은 고려를 할 것이다.

기타 신뢰구축 조치

참가국들은 그들 공통의 목적을 증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특별히, 그들은 상호주의와 상호이해의 심화를 추구하고, 초청의 형식으로 군사대표들을 교환하도록 도모할 것이다.

신뢰구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주요 군사훈련에 대한 사전 통보 조항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참가국들은 이 목표를 고려하고 존중할 것이다.

그들은 또한 위에서 제정된 조항들을 준수함으로써 얻어진 경험이 신뢰를 강화하는 수단을 발전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II

군축 관련 사항들

참가국들은 유럽에서 정치의 화해무드 조성과 안보 강화를 위해 군사적 대립을 감소시키고 군축을 도모할 목적의 노력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들은 이 분야에서,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 하에 포괄적이고 완전한 군축을 궁극적으로 이루기 위한 각 범위와 성격에 따른 단계적인 방법과 같은 효과적인 조치들을 취할 필요성을 확신한다.

III

전반적 고려사항들

화해조성과 군축을 이루는데 목적을 둔 공동의 노력을 통한 유럽의 안보 강화에 관련한 주제들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고려하면서, 그런 노력을 함에 있어, 참가국들은 특별히 다음의 핵심적인 고려사항들에 대해 조취를 취할 것이다.

- 안보의 정치적·군사적 측면의 보완적 성격
- 각 참가국의 안보와 유럽전체 안보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전 세계의 안보 맥락에서, 유럽 안보와 지중해 지역 안보와의 관계
- 유럽안보협력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들의 고유한 주권 평등적인 안보이익의 존중
- 협상포럼 참가자들이 협상에 관한 진전 사항들에 대한 정보가 적절한 기반에서 유럽안보협력회의의 다른 참가국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과, 모든 참가국들의 관점이 고려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경제, 과학 기술, 환경분야의 협력

참가국들은,

무역, 산업, 과학, 기술, 환경 및 기타 경제활동영역의 협력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유럽과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는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이런 분야에서의 협력이 경제사회를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각국의 경제 사회 체제의 다양성을 인식하면서,

그들의 체제와 관계없이, 서로 간에 그러한 협력을 강화시키는데 대한 그들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다양한 수준의 경제 발전을 고려할 때, 그러한 협력이 교역 파트너들의 상호 만족과 평등, 상호주의의 기초 위에서, 전체적으로 부의 평등한 분배와 비교 가능한 규모의 규제들이 양자적 다자적 협약을 통해 발전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발전 중에 있는 참가국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개발 도상국가들의 이익을 고려하며, 발전에 관련된 문서에서 UN의 관련기구에 의해 제정된 목표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그들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각 참가국이 자신들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며, 최소 발전 국가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증대되고 있는 전 세계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식품, 에너지, 상품, 재정, 금융 문제들과 같은 주요 세계 경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며, 안정적이고 평등한 국제 경제관계를 도모할 필요를 강조하며, 그리하여 전 세계의 지속적이고 다원화된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관련 국제기구가 이미 수행한 성과를 고려하며, 이런 기구들에 의해 제공되는 가능성들을 활용하기를 희망하며, 특히 UN 유럽경제위원회에 의해, 회의의 최종의정서의 각 조항들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한다.

하기의 본문에 담겨있는 가이드라인과 정확한 권고가 그들 상호 경제관계의 발전을 심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인지하며, 이 분야의 협력이 관련 문서에서 제정된 참가국간 관계규율 지도원칙들을 온전히 존중하면서 일어나야함을 확신하면서,

다음의 조항들을 채택한다.

1. 상거래

일반 규정

참가국들은,

국제무역의 점증하는 역할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는 것을 인지하며,

무역이 그들의 협력에 근본적인 분야를 대표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기의 서문에 포함된 조항들이 특별히 이 분야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참가국들 간의 무역구조와 규모가 현재 그들의 경제, 과학, 기술의 발전 가능성에 항상 부합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그들 경제협력 형태에 기반한 재화와 서비스의 상호거래를 확대시키고, 그 발전에 우호적인 조건을 확보할 것을 결의한다.

최혜국 대우의 적용이 무역 발전에 효과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식한다.

가능한 다자 무역을 확대시켜, 다양한 경제 상업의 기회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무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양자간, 다자간, 정부간 및 기타 협약들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국제무역의 발전을 위한 재정, 금융 문제들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무역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키는 데 기여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무역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모든 장벽들을 점진적으로 제거하고 감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무역에서의 갑작스러운 변동을 가능한 피하면서 무역의 점진적인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다양한 상품을 무역함에 있어 이런 상품들로 인하여 국내 시장에 심각한 손상- 만약 발생한다면 시장 혼란 같은 -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특히 국내 생산자나 관련 경쟁 상품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끼치지 않아야 함을 고려한다. 시장 혼란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협약의 관련 조항과 불일치하는 방법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이해되어 진다. 만약 세이프 가드 조치들을 지킨다면, 그들은 국제협약에서부터 그들이 속한 협정에까지 이 분야에서 그들이 의탁한 조약에 따를 것이며,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당사자들의 이익을 고려할 것이다.

무역의 촉진과 무역구조의 다변화를 위한 조치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무역증대와 다변화가 상품 선택의 기회를 넓히는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것이다.

회사, 단체, 대기업들의 무역 발전 참여를 위한 우호적인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비즈니스 교류와 편의시설

참가국들은,

비즈니스 접촉의 증대와 사업관계의 신뢰 구축이 상업경제관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성을 인지하며,

대외무역에 연관된 공식기구와 다른 기관, 기업, 회사, 은행 대표들의 교류 확대를 위한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특히, 상업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상들과 소비자들 간의 접촉도 확대할 것인데, 계약을 포함하여, AS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행할 것을 확고히 한다.

대외무역과 관련된 기관, 기업, 회사들로 하여금 사업 협상의 절차를 가속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권장한다.

대외무역과 관련된 외국기관, 기업, 회사, 은행 대표들의 근무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

들을 채택할 것이다. 특히, 다음의 경우들과 같다.

- 상기에 언급한 기관들의 영구적 대표사무소의 설치와 관련된 입법 및 절차정보를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도록 한다.
 - 이 목적 하에, 2개 이상의 공동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을 포함하여, 영구적 대표사무소의 건립에 요구되는 사항들을 가능한 우호적으로 검토한다.
 - 위에 언급된 기관들의 모든 대표들에게 가능한 호의적이고 동등한 조건을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호텔 숙박시설, 통신 수단, 요구되는 일반적인 다른 편의시설과 상설대표들의 목적에 맞는 적당한 사업과 숙박시설을 제공하도록 한다.
- 참가국들 간의 무역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한 조치들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경제 상업 정보

참가국들은,

국제무역의 발전에 경제와 상업 정보의 역할이 점점 중요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경제 정보는 적당한 시장분석을 허용하며, 중장기 전망에 대한 준비를 허용하는 성격을 띠어야 하며, 그리하여 더 나은 거래 기회들을 이용하고, 무역이 지속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경제 및 행정 정보의 질을 높이고 정보의 제공 양을 늘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한다. 국제적 수준의 통계 정보가 그 비교가능성에 상당한 정도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가능한 신속하게 정기적으로 경제상업정보를 출간하고 배포할 것을 촉진한다.

특히 다음사항들에 대하여:

생산, 국가수입, 예산, 소비, 생산력에 관련된 통계;

- 원산지 국가와 수출국가, 규모와 가치의 지표가 표기된 생산 분석을 포함한 비교 가능한 분류에 기초한 대외무역 통계
- 대외무역에 관련한 법과 규칙들
- 무역촉진을 돕는 경제발전의 전망에 관한 정보, 예를 들어, 국가경제계획과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소개 정보
- 상거래를 하는 사업가들을 도울만한 기타 정보, 예를 들어, 정기적 자료, 명단, 가능하면 대외무역과 관련된 회사와 단체들의 조직도

상기 사항들에 더해, 경제, 과학, 기술 분야의 협력에 대한 공동 위원회, 또한 국가 및 공동 상공회의소 및 기타 적합한 단체들을 통해 경제 및 상업 정보의 교환을 촉진시킬 것을 권장한다.

UN 유럽경제위원회의 틀 내에서, 대외무역에 관련한 법과 규칙들에 관한 다국적 통보

제도를 만드는 연구를 지원할 것이다.

UN 유럽경제위원회에서 특별히 통계학적 학술 용어의 일치를 위한 국제적 작업을 권장할 것이다.

마케팅

참가국들은,

국제무역의 확대를 위해 해외시장의 수요에 맞는 생산품 채택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수출업자들이 잠재적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고려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한다.

대외무역과 관련된 기관, 기업, 회사들이 효율적인 마케팅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을 심화 발전시키도록 권장한다.

수입 상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들을 수행할 조건들을 향상시킬 것을 권장하며, 특별히, 시장조사와 광고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공장시설의 설립, 예비부품들의 설치, 판매 후 서비스의 기능, 지방 기술자들에게 필요한 인력 훈련을 권장한다.

마케팅을 포함한 무역촉진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권장하며, 이를 수행함에 있어 국제기구, 특히, UN 유럽경제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구의 틀 안에서 협력하도록 권장한다.

2. 산업협력과 공익사업

산업협력

참가국들은,

경제적 고려에 의해 동기화된 산업협력이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간주하면서,

- 지속적인 유대를 창출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경제 협력을 강화시킨다.
- 경제성장과 국제무역의 확대와 다양화에 기여하며, 현대 기술의 이용을 확대하는데 기여한다.
- 모든 생산요소들을 더 잘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상보성을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산업 협력에 참여한 모든 분야에서 산업발전을 촉진시킨다.

관련 기관, 기업, 회사들 간의 산업협력의 발전을 격려하도록 제안한다.

산업협력이 정부간 조치들이나 관련 당사자간의 양자적 다자적 협약에 의해 촉진될 수 있음을 유념한다.

산업협력을 도모함에 있어서, 그들은 각 나라의 경제 구조와 발전수준을 유념해야 함을 인지한다.

산업협력이 경제적 고려의 기반위에서 관련 기관간, 기업간, 회사간에 체결한 계약조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지한다.

산업협력에 우호적인 조건을 창출하는 조치들을 개발할 의지가 있음을 표명한다.

산업협력이 전통적인 무역 구조를 초월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관계를 다루며, 산업협력 계약을 체결할 때 파트너들이 그들의 상호이익과 능력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협력의 형태와 조건들을 공동으로 결정할 것임을 인식한다.

더 나아가 만약 공동이익이 되는 분야라면, 다음사항들과 같은 정확한 형태들 즉 공동 생산과 판매, 생산과 판매의 특화, 건설, 산업공장들의 개조와 현대화, 결과 생산물을 얻은 목적의 완전한 산업시설 설립을 위한 협력, 합병 회사, <노하우>의 교환, 기술 정보, 특허품, 자격증의 교환, 특별 협력 프로젝트들 내에서의 공동 산업 연구가 산업협력의 발전에 유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새로운 형태의 산업협력이 특정한 필요들에 부응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산업협력의 발전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경제, 상업, 기술, 행정 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다음 사항을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 산업협력 관련 정보의 양과 질을 개선시키는데, 특히 환전과 관련된 법과 규제들을 개선하고, 국가 경제 계획과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제고하며, 프로그램 우선순위들과 시장의 경제적 조건들을 개선한다.
- 가능하면 신속하게 출간된 문서를 배포한다.

잠재적 교역 상대와의 접촉을 통해서, 그리고 적절한 경우, 경제, 산업, 과학, 기술 분야의 협력을 위한 공동 위원회, 국가 공동 상공위원회, 그리고 기타 적당한 기관들을 통해서 산업협력에 관련된 경험의 모든 형태의 정보교류와 커뮤니케이션의 교류를 고무시킬 것이다.

산업협력을 확장시키는데, 협력의 가능성들을 발굴하고, 협력 프로젝트의 수행을 고취시키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며, 그 무엇보다도, 관련 기관, 기업, 회사들 간, 그리고 각국의 검증 받은 인사들 간의 비즈니스 교류의 모든 형태를 증가시키고 촉진함으로써 이 목표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다.

경제 상업 분야의 비즈니스 접촉과 관련된 회의에서 제정된 조항들이 또한 산업협력에 관계된 외국기관, 기업, 회사들에게도 이 협력의 특정한 조건들을 고려하면서 적용된다는 것을 주목하며, 특히, 협력 프로젝트들의 수행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근무조건을 적절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산업협력 프로젝트를 위한 제안서는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제적, 기술적 자료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간주한다. 특히 잠재적 파트너들이 가능한 최단시간에 결정을 내리고 초기 연구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예상하고 있는 협력 형태의 프로젝트의 예비 측정비용 정보와 시장 가능성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산업협력에 관계된 당사자들이 협력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신속히 수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권장한다.

UN 유럽경제위원회의 틀 안에서 산업협력의 제반 조건들에 관련한 정보와 이 분야의 계약준비에 관한 안내 정보의 조항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적으로 검증할 것을 권고한다.

산업협력 수행을 위한 조건들을 개선시키는 것을 바람직하게 간주하며, 특히 다음 사항들을 유념한다.

- 다양한 종류의 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를 포함하여, 산업협력 프로젝트에서 파트너들의 이익을 보호한다.
- 경제정책 특히 국가 경제계획과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그들의 경제제도와 산업협력의 필요와 가능성들에 부합하는 방법들을 고려한다.

산업협력 계약이 체결이 되면, 파트너들은 이 계약들이 수행되는 동안에 특별히, 그러한 협력에서 얻어지는 생산품들의 요구되는 기술 수준과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상호원조를 확장시키는 것에 관한 조항들에 주목할 것을 바람직하게 여긴다.

산업협력 프로젝트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가하는 것이 유용함을 인식한다.

공익사업

참가국들은,

그들의 경제 잠재력과 자연자원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지역과 하위지역 수준을 포함한, 참가국들의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키는데 기여할 만한 주요 사업들을 수행하는 장기적인 협력을 허용할 것을 고려하며,

모든 나라의 관련 기관, 기업, 회사들이 그러한 공익사업에 참여하고, 협약을 맺고, 그 수행에 참여하는데 흥미를 보이는 가능성이 있음을 바람직하게 여기며,

회의에서 채택된 산업협력에 관한 조항들 또한 공익사업에 적용 가능함을 인지한다.

적절하다면, 에너지 자원과 원료의 이용, 운송, 통신 영역의 공동 이익 사업을 수행할 가능성에 대해서 관련 기관, 기업, 회사의 조사를 받는 것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

공동의 이익 사업을 수행할 가능성을 조사하는 기관, 기업, 회사들이 적절한 통로를 통해, 이 사업들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제적, 법적, 재정적, 기술적 정보를 교환할 것을 바람직하게 여긴다.

에너지 자원 분야, 특히, 석유, 천연가스, 석탄 분야 그리고 미네랄 원료, 또한, 철광석, 보크 사이트의 추출과 가공 영역은 참가국들의 무역발전과 장기적 경제협력을 강화하는데 적합한 분야라는 것을 인지한다.

장기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의 이익 사업 가능성들은 또한 다음의 영역들에도 존재함을 인지한다.

- 유럽 내에서 가능한 합리적으로 전력 공급 용량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에너지의 교환
- 새로운 에너지 자원, 특히, 핵에너지 분야 연구의 협력
- 유럽에서 가항 통로를 건설하기 위한 협력과 도로망 개발
- 각종 수송기관을 통합한 기지와 컨테이너를 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완성하고 조사하는데 있어서의 협력

공익사업에 관심 있는 참가국들은 어떤 조건하에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만일 참가하기 원하면, 그들의 실제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건들을 창출해야 한다.

3. 무역과 산업협력에 관한 조항들

표준의 일치

참가국들은,

인증 분야의 국제적 협력과 기술 규제와 표준의 국제적인 일치를 발전시키는 것이 국제무역과 산업협력에 대한 기술 장벽을 제거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그리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발전을 촉진시키며, 기술규제와 표준의 국제적 조화를 가능한 확장하여 달성하는데 대한 그들의 의지를 재확인 한다.

기술규제와 표준을 준수하는 인증서의 수용에 관한 국제협약 및 기타 적절한 약정을 발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한다.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특히, 이 분야의 정부간 및 기타 적절한 기관들의 활동을 지원할 것을 고려한다.

중재

참가국들은,

산업협력 계약 및 상품과 서비스와 관련한 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관한 신속하고 적절한 해결이 무역과 협력을 확대하고 촉진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중재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적절한 조치라는 것을 고려하면서, 가능하면, 그들 나라의 기관, 기업, 회사들이 거래계약과 산업협력계약 및 특별협정에 중재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중재 조항은 상호 수용가능한 중재원칙을 제공해야 하며, 현존하는 정부간 및 기타 이 분야의 협약들을 고려하면서, 제3국에 중재를 맡겨야 한다.

특별 양자협정

참가국들은,

무역을 촉진하고, 산업협력의 새로운 형태를 신청하는 것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며,

적절한 경우에, 상업거래와 산업협력분야에서, 특별히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투자자산가치와 이익의 환수를 촉진하고자, 상호이익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고려하면서 구체적인 양자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우호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4. 과학과 기술

참가국들은,

과학기술의 협력이 국가들 간의 안보와 협력 강화에 중요한 공헌을 하며, 인간 생활 조건의 개선과 공동 관심사에 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확신하며,

그러한 협력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정보와 경험의 공유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관련 당사국들이 동의한 협력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기초위에 과학기술의 연구와 업적의 교류와 그러한 성취에의 접근을 촉진시키며,

참가국들의 잠재적 당사자들, 예컨대, 관련 단체, 기관, 기업, 과학자, 기술자들이 세부 사항들을 발전시키고, 상호호혜적인 협력의 기회들을 결정하도록 고려한다.

그러한 협력은,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접촉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접촉을 이용하면서, 예를 들어 정부간 및 기타 협정, 국제 프로그램, 협력 프로젝트 그리고 상업 채널과 같은 정부 단위, 그리고 비정부 단위에서 양자 및 다자적으로 발전되고 수행될 것임을 긍정하며,

국가들 간 과학기술 협력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한다.

협력 개선의 가능성들

과학기술의 협력을 심화 개선시킬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식하며, 이를 위해, 특히 아래사항들을 통해 그러한 협력의 장애물들을 제거할 의지가 있음을 표명한다.

- 과학기술 연구와 협력에 관심이 있는 당사국들 간에, 그러한 협력의 조직과 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과학기술 정보의 교류와 배포를 위한 기회를 향상시킨다.
- 교류, 회의, 협력과 관련 있는 과학자들, 전문가들의 해외 방문 프로그램을 조직하는 것을 신속하게 수행하고 개선하도록 한다.
- 지적 산업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이 분야에서 얻어진 성과들의 교류와 과학기술연구에 적용된 상업적 경로와 활동들을 더욱 폭넓게 사용한다.

협력의 분야

아래에 예시된 영역들에서 협력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며, 참가국들의 잠재적 대상자들이 상호이익과 관심에 관한 협정과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명시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농업

곡물 경작과 축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과 기술에 대한 연구, 농업에 대한 화학의 이용, 농기계의 디자인, 건설 그리고 이용, 관개기술과 기타 농업의 토지 개선 작업들

에너지

기존의 석탄과 수력에너지 자원의 사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에너지 생산, 운송, 배분의 새로운 기술과 핵, 태양 그리고 지열 에너지를 포함한 새로운 에너지원 분야의 연구

신기술, 자원의 합리적 이용

특히 에너지 소비와 낭비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장비와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연구

운송기술

컨테이너 운송뿐만 아니라 운송 안전을 포함하여 국내외 그리고 도시 운송망의 작동과 발전에 적용된 기술과 운송 수단에 대한 연구

물리학

고 에너지 물리학과 플라즈마 물리학의 문제들에 관한 연구, 이론 핵물리학 및 실험 핵물리학 분야의 연구

화학

전기화학과 중합체 화학, 천연제품, 그리고 금속 및 비금속 화학의 문제들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향상된 화학기술의 발전, 특히 제조 공정에서의 발전에 관한 문제들의 연구 및 산업, 건설 그리고 다른 경제 분야에서 화학이 거둔 최근 성과의 실질적 적용에 관한 연구

기상학과 수문학

수집, 평가, 그리고 자료 전송을 포함한 기상예보와 수문예측에의 이용을 위한 기상학 및 수문학(水文學)의 연구

해양학

공기와 바다의 상호작용 연구를 포함한 해양학적인 연구

지진학적 연구

지진예측과 지질학적 변화에 관련한 연구 및 지진에 견뎌내는 건축물에 대한 기술의 연구

와 개발

빙하학, 영구동토층 그리고 추운 곳의 삶에 대한 연구

빙하학과 영구동토층에 관한 연구, 운송이나 건설 기술, 토착민들의 삶의 조건 아래서 기후의 극적인 변화에 대한 인간의 적응력에 관한 연구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정보기술

컴퓨터뿐만 아니라 원격통신과 정보기술의 발전 및 관리 시스템, 생산 공정, 자동화, 경제 문제의 연구를 포함해 과학연구에서 사용되어지는 컴퓨터와 원격통신에 관련한 기술과 정보 수집, 과정 그리고 배포 위해 사용되는 컴퓨터와 통신 기술

우주연구

원격탐지, 특히 위성과 우주탐사로켓의 협조에 의한 지구의 천연자원과 자연환경에 대한 연구와 우주탐사

의학과 공중위생

심장혈관, 중앙 및 바이러스, 분자 생물학, 신경 생리학에 관한 연구, 새로운 약의 테스트와 발전, 소아과학, 노인학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체계와 기술에 관한 최근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환경연구

인간 환경과 연관된 특정한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한 연구

협력의 형태와 방법들

과학기술적 협력은 특히 아래에 있는 형태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표명한다.

- 서적, 정기 간행물 및 기타 과학기술 서적이나 논문을 관련 단체, 과학기술 기관들, 기업들, 과학자와 기술자들 사이에 교환하고 유포하며, 간행물의 색인과 발체를 위한 국제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 상담, 강의, 연구 수행의 목적으로, 실험실, 과학도서관, 그리고 기타 문서센터의 사용을 포함하여, 상호 합의와 기타 협정의 기반위에, 과학자들과 기술자들 간에 교류하고 방문하며 직접 접촉과 커뮤니케이션을 허용한다.
- 외국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참여를 포함시켜, 과학기술적 성격을 가진 국제 및 국내 회의, 심포지엄, 세미나, 교육 그리고 기타 모임을 주최한다.
-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단체들 사이에서 경험과 연구결과 및 연구

프로그램의 상호관련성을 교류하는 것을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나 협정에 기반하여, 공동이익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준비하고 수행한다.

- 회사와 기업들이 동의한 분야에의 상호 호혜적 협력협정의 체결을 포함하여 기술과 과학의 발전을 규명하고 전달하는 방법들과 상업적 경로를 사용한다. 또한 적절하다면,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들을 공동으로 조사하고 개발한다.

과학정책에 대한, 특히 대규모의 과학 실험 장치를 협력적 기초위에 더욱 더 잘 사용하는데 대한 문제들, 그리고 연구의 오리엔테이션과 행정 등에 관한 제반 문제들에 관련한 정보와 관심을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지역적 및 소지역적 특성을 띠는 협력을 포함하여 현존하는 양자 및 다자적 협력의 실행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과, 이 문서에서 묘사된 협력의 형태와 방법들과 더불어 실행할 것을 권고한다.

공동의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협력의 다른 형태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또한 관련 정보와 경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현존하는 국제기구들, 정부간, 비정부간 단체들의 가능성과 능력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질 것을 권고한다. 예컨대,

- UN 유럽경제위원회에서는, 다양한 국제단체들에서 사용되어진 프로젝트와 연구 모델을 고려하면서, 다자적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며, 젊은 과학자들, 기술자들이 이 분야에 뛰어난 전문가들을 함께 불러올 수 있는 회의, 심포지엄, 연구, 실무그룹을 후원한다.
- UNESCO 및 기타 국제기구들의 과학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특별히, 국제적인 과학기술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그러한 프로그램들의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도록 추구하는데, 특별히 정보정책안내, 기술자문, 정보기여도, 자료처리에 관한 UNISIST (UN 정부간 과학기술정보 시스템)의 프로그램에 주의한다.

5. 환 경

참가국들은,

환경보호와 개선, 그리고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보호와 자원의 합리적 이용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라는 것과, 많은 환경문제들, 특히 유럽에서의 환경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긴밀한 국제협력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점을 긍정한다.

각 참가국들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서, 각 영토에서 수행된 활동들이, 국가적 관할권의 한계를 넘어선 지역이나 타국 환경의 퇴보를 유발하지 않도록 협력의 정신으로 서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환경정책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책임감을 인지하고 있는 모든 인구 그룹과 사회세력들이 환경을 보고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특히 청소년들과 관련된



교육활동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점을 유념하며,

경제발전과 기술진보가 자연보호와 역사문화적 가치의 보전과 양립함을 경험이 보여주고 있음을 긍정하며, 환경파괴가 예방조치로 가장 잘 방지될 수 있으며, 생태적 균형이 그러한 개발과 자연자원의 관리 안에서 보전되어야 함을 긍정한다.

협력의 목적

다음의 협력 목적에 합의한다.

- 그 성격에 의해, 다자적, 양자적, 지역적 혹은 하위 지역적 차원의 환경문제들의 해결책을 위해 연구하며, 환경문제들에 대한 학제적 접근을 발전시킬 것을 권장한다.
- 가능하다면, 자료 수집과 분석의 방법들을 일치시키고 비교함으로써, 또한 오염 현상과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킴으로써, 그리고 정보를 교환하고, 환경분야에서 자주 쓰는 가능한 많은 용어들의 정의와 용법을 일치시킴으로써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조치들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 환경정책들을 좀더 긴밀히 연계시키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며, 적절하고 가능하다면, 그 정책들을 일치시킨다.
-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에, 환경을 모니터하고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향상시키는데 있어 관련된 기관, 기업, 회사들에 의한 국내적 국제적 노력을 장려한다.

협력의 분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참가국들은 환경 분야에서, 특히 예를 들어 아래에 묘사한 영역들 내에서 모든 적절한 협력의 기회를 사용하도록 한다.

대기오염 통제

화석연료와 배기가스의 탈황, 중금속, 소립자, 연무질, 질소산화물의 오염조절, 특히 교통수단이나 발전소, 그리고 다른 산업공장에 의해 방출된 물질들 및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을 포함한 대기오염 통제관찰 시스템과 방법들

수질오염 통제와 신선한 물의 사용

국경을 넘는 강들과 국제적 호수들의 수질오염 방지와 통제, 수질개선 기술과 산업 폐수와 도시의 오염하수 정화를 위한 방법들의 심화개발, 깨끗한 수질 자원의 평가 방법과 그 이용의 개선, 특히 덜 오염시키는 생산 방법을 발전시키고, 신선한 물의 사용을 줄인다.

해양환경의 보호

참가국들의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특히, 지중해를 육지에서 유출되는 오염물질들, 그리고 선박들에서 유출되는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한다. 특히, 런던의 쓰레기 및 기타 물질의 폐기로 인한 해양오염방지회의의 부속서 1과 2에 뚜렷하게 명시된 유해물질들로부터 보호한다.

해양의 생태균형을 유지하는 문제들과 먹이 사슬, 특별히 바다와 해저의 생물자원, 미네랄 자원의 이용과 탐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대지이용과 토지

토양 개선, 개간, 재개간을 포함한 토양의 더욱 효과적인 이용과 관련된 문제들, 토양 오염, 물과 공기에 의한 침식, 기타 다른 형태의 토지 침식 현상의 조절,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으로 인해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들을 고려하면서 토양의 생산성을 높이고 유지함

자연보호와 자연보존

자연보호와 자연보존, 유전적 자원, 특히 희귀동물이나 식물종 보호, 자연 생태계 보호, 연구, 관광, 레크레이션 및 기타 목적들을 위한 사용을 포함한 자연 보전 지역과 기타 보호 풍광 구역 설정

인간거주지역의 환경조건개선

교통, 가옥, 작업장, 도시개발 및 계획, 용수 공급 및 오수 처리 시스템과 관련한 환경조건들, 소음 유해 측정과 소음 조절 방법; 재생 및 재활용 물질을 포함한 쓰레기의 수거, 처리, 이용,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지 않는 물질들의 대체물에 대한 연구

환경 변화에 대한 기초조사, 모니터링, 예측 및 측정

자연 요소와 인간 활동으로 인한 기후, 풍경, 생태균형의 변화에 대한 연구, 환경오염에 의한 식물군, 동물군의 유전적 변화 예측, 통계자료의 일치, 과학적 개념의 개발과 모니터링 네트워크 시스템 제도, 관찰방법의 통일, 생물권의 변화에 대한 측정,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오염 정도와 환경파괴의 효과에 대한 측정, 다양한 오염원에 대한 척도와 표준의 개발과 연구, 다양한 상품의 사용과 생산에 관련한 규제에 대한 개발과 연구

법적 행정적 조치들

환경영향평가를 수립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한 환경보호의 법적 행정적 조치들

협력의 형태와 방법들

참가국들은 환경개선과 환경보호에 관련된 문제들을 지역과 소지역의, 현존하는 협력의

형태와 패턴을 완전히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자적 다자적 기반위에서 풀어갈 것을 선언한다. 그들은 특히 인간 환경에 대한 스톡홀름 선언과 UN 총회의 관련 조항들, 그리고 UN 유럽경제위원회의 환경문제들을 위한 프라하 심포지엄에 기반하여 환경분야의 협력을 발전시킬 것이다.

참가국들은 환경분야의 협력이 특별히 다음을 통해서 수행되어질 것임을 결의한다.

- 기술과 경제 활동이 환경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과학기술적인 정보, 문서, 조사결과의 교환
- 전문가들의 회의, 심포지엄, 만남의 조직
- 과학자, 전문가, 훈련생들의 교환
- 다양한 환경보호 문제들의 해결책 연구에 대한 프로젝트들의 공동 준비 및 프로그램 수행
- 적절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히 무역부문과 생산과정에서 일어나는 생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제조된 상품의 일정한 환경적 품질을 획득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피하기 위한 환경보호기준과 표준의 통일
- 특별히 초국가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과 관련하여, 관련국가들의 동의에 의한 환경보호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협상

참가국들은 그러한 협력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심화 발전시킬 것이다.

- 참가국들의 사법 관할지역 내에서 타국가나 타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행동에 의해 발생한 환경파괴와 오염에 관련하여 그들에 의해 수용된 조항이나 실행사항을 포함하여, 인간환경을 강화하고 보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인 국제법의 혁신적 발전, 체계화, 수행을 고무한다.
- 특별히 해양과 신선한 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그들이 속한 관련 국제협약의 수행을 지원하고 촉진시키며, 참가국들로 하여금 이미 서명한 협약을 비준하며, 또한 현재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가입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다른 적절한 협약에 대하여도 비준하도록 권고한다.
- 적절하고 가능한 경우, UN 유럽경제위원회의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협력 분야에 참여할 것을 지지하며, 위원회와 UN 환경프로그램의 틀 안에서의 그러한 협력을 지원하며,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다른 관련 국제기구의 사항을 고려한다.
- 모든 유형의 협력에서, 국제적으로 동의한 규범들을 포함한 국내적 국제적 정보들을 폭넓게 이용하며, 다양한 관련 국제기구들의 가능성과 능력을 사용한다.

참가국들은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한 다음의 권고사항들에 동의한다.

- 국제협력을 통해, 이황산가스 및 다른 오염물질들에까지 확장가능한 대기 오염물질들의 장거리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이를 위해, 1974년 12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대기연구소의 초청으로 개최된 전문가회의에 의해 만

들어진 협력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고려한다.

- UN 유럽경제위원회의 틀 안에서, 경제활동과 기술의 발전에 의해 환경에 끼치는 영향들에 대한 적절한 예측 능력을 개발시키는데 있어 정부의 활동과 관련한 경험, 절차들을 통해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6. 기타 분야의 협력

운송의 발전

참가국들은,

수송 조건의 개선이 참가 제국간의 상호협력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고려하고,

국내외 수단들의 적절한 사용으로 수송을 발전시키고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며,

현 국제기구, 특히 UN 유럽경제위원회의 내륙 운송 위원회에서 이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

여러 가지 수송 분야에서의 기술 발전 속도는 참가 제국들 간의 정보교환 속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증가하고 상호협력을 강화시키고 있음을 유의한다.

특히 국경에서 국제 수송기관에 있어서의 행정관습의 조화와 간소화를 선언한다.

이 분야에 대한 그들의 국내 환경이 허락되는 동안 도로, 철도, 항공 그리고 해운 교통의 안전을 위한 행정적, 기술적인 준비를 증진시켜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국제적 내륙기관의 발전과 더불어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한 수송기관의 적절한 참여 가능성을 촉진시켜야 함을 표명한다.

그들의 권리와 국제적인 공약을 존중하여 국제적 관례를 조건으로 한 내륙 운하교통에 적용되는 법적 조항으로부터 생긴 불균형은 제거되어야 함을 선언한다. 특히 그 조항들의 적용에 불균형을 제거해야 함을 선언한다. 또한 라인 수로중앙위원회, 다뉴브 위원회, 그리고 특히 UN 유럽경제위원회에서 이 일을 맡아 더 연구하고 발전시킬 것을 선언한다.

권리와 국제적인 책임을 존중하며 국제철도운송을 개선하기 위해 그들은 국경에서 왕래하는 여객화물수송 철도 운행에 대한 법적 조항의 불균형이 만들어낸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현 국제기구들, 특히 UN 유럽경제위원회의 내륙운송위원회에서 맡은 일이 강화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다.

참가 제국들이 다른 분야와 수송문제 전담 국제기구의 접근가능성을 검토하고 승인 협약을 충족시키는 분야에 있어서의 그들의 노력이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관광의 증진

참가국들은,

국민들 간의 상호이해의 증진과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타국에 대한 지식의 제고와 더불어 경제·사회·문화적 진보에 대한 국제적 관광의 공헌도를 인식한다.

관광업의 성장과 다른 경제 활동 분야의 대책 간에 상호관계가 있음을 인식한다.

특히, 다음에 의하여 개인 관광과 단체 관광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다.

- 관광객 기초시설 개선과 관광분야 협력을 촉진한다.
- 특히 영토가 근접해 있거나 관광객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기술협력을 포함한 공동 관광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을 장려한다.
- 관광사업과 관련한 법규들, 연구, 자료 그리고 문서를 포함한 정보를 교환하고,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계를 개선한다.
- 경제적 기회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외여행객들을 위한 재정 할당과 관련된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다루며, 회의에 의해 채택된 관광과 관련한 다른 조항을 고려해 여행에 필요한 시설물들과 관련한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다룬다.
- 해외 관광의 촉진을 위해 외국 여행사와 여객 운송 회사들의 활동을 촉진시킨다.
- 성수기를 벗어난 관광을 장려한다.
- 질적 개선을 위해 관광분야의 전문가들과 학생들 교환 가능성을 검토한다.
- 관광사업의 발전과 계획에 관한 회의와 심포지엄을 촉진한다.

적절한 국제적 틀 안에서, 관련 국가기구와 협력하여 관광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을 특히 다음을 통해 고려한다.

- 여행사들의 활동과 위치뿐만 아니라 그들 간의 더 나은 협력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대한 비교 연구
- 비성수기 관광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휴가기간의 계절적인 집중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연구
- 관광으로 인해 환경이 손상되는 지역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연구

또한 관련 당사국은 다음의 문제들에 대해 연구할 것을 희망한다.

- 호텔 등급의 통일
- 2개 이상의 나라를 병행하는 관광 루트

가능한 관광의 발전이 그 대상국의 환경이나 예술, 역사, 문화유산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광 분야에서 양자적, 다자적으로 협력을 도모할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측면

참가국들은

유럽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이동이 이미 상당한 비율에 도달했으며, 그들이 출신국가에서뿐만 아니라 수용국가에서도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인적 요소를 이루고 있음을 고려한다.

노동자들의 이주는 수용국과 출신국에서 경제, 사회, 인적 그리고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 분야에서는 유능한 국제기구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의 활동을 고려한다.

유럽에서 노동자들의 이주뿐만 아니라 참가 제국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은 아래의 목적을 가지고 양자 및 다자협약에 응한 각 제국들의 의무와 관련되어 있으며 사회 경제적인 요구사항을 고려한 각 국가 간 공동의 관심사 속에서 이 문제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유럽에서와 각 참가국들 사이에 노동자들의 이주로 인해 양자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관련된 당사국에 의해서, 상호이익의 관점에서, 각국이 속한 양자적 다자적 협력사항들과 하기의 목적들을 준수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며, 각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기인하는 요구사항들을 고려하면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의견이다.

특히 이 목적에 적합하고, 수용국과 출신국에 적합한 경제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그들 국경에 있는 자국민을 고용할 기회를 증진시키는 출신국의 노력을 장려한다.

수용국과 출신국간의 협력을 통해 개인복지와 사회복지를 동시에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체계적인 이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적합하다면 이주 노동자들의 고용과 기본적인 언어 그리고 직업 교육을 실시한다.

고용 및 노동 조건과 사회적인 안전을 고려하여 수용국의 국민들과 이주 노동자들 간의 권리의 동등성을 보장하며, 이주 노동자들이 만족스러운 생활조건, 특히 거주 조건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수용국에서는 가능한 한 실직 상태의 이주 노동자들이 다른 일을 찾을 때 수용국의 국민들과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주 노동자들의 직업 훈련에 대한 우호적인 조항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이주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고용 체계 안에서 수용국가의 언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도록 장려한다.

가능한 한 수용국과 출신국에서 모국어로 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거주 국가에서 자란 이주 노동자들의 자녀들은 그 나라 아이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으며 더불어 모국어, 문화, 역사 그리고 지리에서도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한다.

특히 특별한 자격을 소유한 이주 노동자는 일정기간 자국으로 돌아가 노동력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고려한다.

가능한 한 이주 노동자들이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고려한다.

경제 발전의 구도 안에서 적절한 고용 기회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저축을 인출하도록 하는 출신국의 노력을 우호적으로 여기며, 그리하여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노동자들의 사회 재결합을 촉진시킨다.

인력훈련

참가국들은,

모든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한 전문 요원들과 기술자들의 고등 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다양한 경제 분야의 활동들, 특별히, 관리, 공공계획, 농업, 상업, 은행 기술 분야에서 전문 요원들이나 기술자들에게 열려있는 고등 훈련 및 훈련 방법 기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명백히 이 분야의 협력을 고무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선언한다.

상호 수용 가능한 조건하에서, 전문요원과 기술자들을 교류시키고, 특히 훈련 활동들을 통해, 참가국의 관련 당사자들이 그 형태들-기간, 재정, 교육, 잠재적 고용자들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 토론할 것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적절한 경로를 통해, 단체에서 협력할 가능성과, 현대 기술을 포함한 좀더 특별한 전문직에서의 직업훈련 수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선언한다.

지중해지역의 안보와 협력에 관련된 문제들

참가국들은,

참가하지 않은 지중해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지리상의, 역사의, 문화의, 경제·정치적인 방면을 인지하며,

유럽의 안보가 세계의 안보라는 보다 큰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지중해 지역의 안보와 긴밀히 연관 되어 있다는 것, 따라서 안보개선의 과정이 유럽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세계의 다른 지역, 특히 지중해 지역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유럽의 안보와 협력의 강화가 지중해 지역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믿으며, 그 지역에서 결국에는 참가국들과 비참가국들 공동의 이익인 평화, 안보, 공의를 위해 기여할 의향이 있음을 표명한다.

비참가국 지중해국가들과의 상호 경제적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협력발전의 심화에 공동의 이익이 있음을 의식하고,

회의의 시작에서부터 비참가 지중해 국가들이 표현한 관심에 대해 인식하며, 그들의 기여를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그들의 의지를 선언한다.

○ 그들 관계의 기반이 되는 UN 헌장의 목적과 원리를 준수하는 비참가 지중해 국가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며, 국가간 우호협력관계를 염두에 둔 국제법의 원리에 관한 UN의 선언을 따를 것이다. 이 맥락에서, 참가국간의 관계개선의 원칙에 관한 선언(The Declaration on Principles Guiding Relations between Participating States)에서 제정한 원리들의 정신으로 비참가 지중해국가들과의 관계를 수행한다.

- 비참가 지중해국가들과의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며,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중해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도모한다.
- 비참가 지중해국가들과 특별히, 무역관계의 안정과 진전에 대한 필요성과, 경제적 상호이익, 그리고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를 공감하는 바탕 위에서 상업거래를 확장시킴으로써, 경제활동의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키며, 그리하여, 그들의 경제발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도록 한다.
- 비참가 지중해국가들의 다원화된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그들의 국가발전 목표를 유념하면서, 특별히 산업, 과학,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며,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노력하여, 좀더 조화로운 경제관계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
- 비참가 지중해 국가들과 지중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양자적 다자적 기반의 노력과 협력을 강화하는데, 특별히 오염의 예방과 통제를 포함한 적절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생물자원의 보존과 바다의 생태적 조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하여, 현 상태에서 관련된 국제기구, 특히 UN 환경프로그램(UNEP)과 협력하여 이 목표들을 달성하도록 한다.
- 기타 관련 분야에서 비참가 지중해 국가들과의 접촉과 협력을 심화 발전시킨다.

위에 제정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참가국들은 또한 그 지역의 평화, 군축, 안보강화, 긴장 감소, 협력의 범위 확대, 모두가 함께 공동의 이익을 나누고, 공동의 목표들을 더 찾아내는 목적으로 모든 지중해 국가들을 포함하기 위해, CSCE의 주도로 비참가 지중해 국가들과의 접촉과 회담을 확대하고 유지하려는 의향이 있음을 선언한다.

참가국들은 그들의 다자적 노력의 구도에서, 상위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시각을 교환하며, 적절한 주도권과 진전을 이끌어 내도록 한다.

인도적 차원 및 기타 분야의 협력

참가국들은,

평화를 증진시키고 사람들 사이의 이해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기를 원하며, 인종, 성별, 언어나 종교의 차별 없이 인격의 영적인 풍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문화와 교육의 교류증진, 정보교류의 확장, 인적교류 그리고 인도주의적 문제의 해결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그리하여 상기의 분야에서 더 좋은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제도에 상관없이 교류협력을 강화하며, 현존하는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며, 이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새로운 방법과 수단을 위해 함께 일한다.

이 교류협력이 참가국 상호관계 규율 원칙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관련된 문서에서 기안한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다음 사항을 채택한다.

1. 인적접촉

참가국들은,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사람들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교류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고려하며,

이 영역에서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재의 노력과 관계하여 인도적 고려사항들을 덧붙이는 것의 중요성을 확신하면서,

화해무드를 지속시키면서 이 영역에서의 계속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정신으로, 이것과 관계된 의문들은 반드시 상호 수용가능한 조건하에서 관계국들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자유화 운동과 참가국들의 개인, 단체, 조직 간의 개별적, 집단적, 사적 혹은 공적인 교류를 촉진시키는 것, 그리고 관련해서 일어나는 인도주의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그들의 목적으로 삼는다.

그들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수단을 채택하여 이러한 목적에 준비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그들간의 협약이나 협정을 맺도록 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수행할 의지가 있음을 표현한다.

(a) 가족적 유대에 기반 한 정기적인 만남과 접촉

이산가족들의 접촉을 심화 증진시키기 위해서, 참가국들은 일시적으로 국경을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여행신청을 관대하게 고려할 것이며, 가족방문을 위한 정기적 방문신청도 우호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가족을 만나기 위한 일시 방문신청은 목적지가 되는 국가의 차별 없이 다루어져야 하며, 여행서류와 비자를 위한 요구사항은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서류와 비자의 준비에 관련한 사항은 제한된 시간 한계 내에서 효력을 발생시킬 것이며, 심각한 질병이나 사망과 같은 긴급한 사항일 경우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그들은 공식적 여행 서류와 방문비자를 위한 비용이 수용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기에 그러한 단계들을 밟을 것이다.

가족간 유대의 기반에서 이루어지는 접촉을 고려할 때 그 신청이 가족구성원이나 신청자의 권리나 의무사항을 수정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한다.

(b) 가족의 재결합

참가국들은 긍정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정신으로 그들의 가족과 결합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방문신청을 다루어야 하며, 아프거나 늙은 사람들에 의한 요청과 같은 긴급한 형태의 요청사항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들은 가능한 신속하게 이 분야의 신청을 다룰 것이며, 그들이 온전한 단계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방문신청에 관련한 비용은 가급적 낮출 것이다.

허가받지 못한 가족상봉 신청은 적절한 단계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으며, 거주자의 국가나

목적지의 정부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재고될 것이다. 그런 조건 하에서 단지 신청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가족상봉 신청을 허가받은 신청자들은 그들의 가산이나 개인적인 휴대품을 소지하거나 운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참가국들은 현존하는 규칙에 의해 부여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할 것이다.

동일한 가족 구성원이 다시 재결합되기 전까지, 그들의 만남과 교류는 가족유대에 기반한 교류 형태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참가국들은 가족상봉 문제를 위한 적십자와 회교국 적십자사의 노력을 지지한다.

그들은 가족상봉 신청의 실행이 그 가족구성원이나 신청자의 권리나 의무사항을 침해하지 않을 것임을 확고히 한다.

가족상봉 신청을 수용하는 나라들은 가족재결합과 관련하여 상주하는 다른 국가에서 온 사람을 고용할 때에 적절한 보호를 할 것이며, 그 나라의 일반 시민이 누리는 교육, 의료보조, 사회 안전보호를 부여할 것이다.

(c) 국제결혼

참가국들은 다른 나라의 국민과 결혼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에 대한 출입국에 대한 요청사항들은 인도적인 고려의 기반위에서 우호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상위의 목적과 결혼을 위해 요구되는 서류의 발행이나 절차는 가족재결합을 위해 채택된 조항들에 따를 것이다.

다른 참가국에서 온 기혼 커플들의 요구를 다룸에 있어서, 한 배우자가 정상적인 거주자로 있는 한 나라에 그들과 그들의 자녀에게 영주거주권을 줄 것이며, 참가국들은 또한 가족재결합에 채택되었던 조항들을 적용할 것이다.

(d) 사적 이유 혹은 직업상의 여행

참가국들은 사적 혹은 직업적 이유로 인한 시민들의 방문을 확대 촉진시키고자 하며, 이를 위해 그들은 특별히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한다.

- 점차적으로 그들의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을 유연화한다.
- 그들의 국경에 있는 다른 참가국들에서 온 시민들의 행동에 안전 요구사항과 관련한 규정들을 완화한다.

그들은 필요한 곳에 점차적으로 비자수수료를 낮추고 여행서류를 간소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그들은 법적 영사적 보조를 포함한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정들을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한, 적절하다면 양자 및 다자 영사협약이나 다른 관련된 협약 및 협정들의 체결을 포함한 모든 방법들을 고려할 것이다.

그들은 참가국의 헌법 틀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종교적 신앙, 기관, 단체들, 그리고 그들의 대표들이 그들의 활동영역에서 그들 간의 만남이나 교류, 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한다.

(e) 개인 및 단체 여행의 조건 개선

참가국들은 관광이 다른 나라의 생활, 문화, 역사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데 기여하며, 국민들 간의 이해를 높이고, 교류 향상과 여가문화의 확장에 기여한다는 것을 유념한다. 그들은 개인적 집단적 차원에서 관광을 발전시키고자 하며, 특별히 다음의 사항들을 유념할 것이다.

- 그러한 방문과 관련된 필요한 절차를 진척시키고 간편화하며 적절한 관련시설들을 공급할 것을 권고하면서 각 국가 방문을 증진시킨다.
- 관광개발 협력에 필요한 적절한 협약과 협정의 기반위에서, 특별히, 다른 나라에 대한 여행정보,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에 관련된 정보, 및 기타 상호이익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정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양자간 가능한 방법들을 증진시킨다.

(f) 청년교류

참가국들은 청년들의 접촉과 교류의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권장한다.

- 양자 및 다자 협약과 가능한 모든 케이스의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들의 직업, 훈련, 및 교육의 장단기적 기반에 의한 교류와 접촉의 증대
- 다국간 청년 교류협력의 틀과 관련된 협약들에 대한 청년단체들의 연구
- 교환학생 프로그램, 국제학생세미나, 직업훈련 및 외국어 연구 등과 관련된 정기적인 프로그램 및 협약들
- 청년 여행의 발전 심화와 이를 위한 적절한 시설의 제공
- 청년들의 직업, 훈련 교육의 다양한 범위를 대표하는 단체들 간의 양자적, 다자적 기반의 교류협력 증진
- 청년들에게 상호이해를 심화시키고 우호관계를 강화하며 인적 신뢰구축을 증진하는 중요성에 대한 각성

(g) 스포츠

스포츠분야에서 기존의 유대와 협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참가국들은 국제적 원리, 규칙, 실행의 기반위에서 스포츠회의, 모든 종류의 경기의 교류를 권장한다.

(h) 교류의 확대

정부기관과 비정부 기구, 여성단체들을 포함한 협회들 간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참가국들은 대표단, 그룹 및 개인들의 방문과 회의의 소집을 촉진시킬 것이다.

2. 정 보

참가국들은,

다른 참가국들 생활의 다양한 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넓힐 필요성을 자각하며,
 이 과정이 사람들 간의 신뢰구축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참가국들 간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며, 관계향상을 도모하면서, 이 분야의 진전을 위한
 심화된 노력을 계속할 것을 희망하며,
 다른 참가국들로부터의 정보 보급의 중요성과 그러한 정보에 대한 좋은 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그리하며,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그리고 통신사와 이 분야에 일하고 있는 언론인들
 의 근본적이고 영향력 있는 역할을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의 교환과 정보 분야의 협력을 고무시키기 위해, 모든 종류의 정보보
 급을 자유화하고 확장시키는 것을 촉진시키며, 한 참가국에서 온 언론인들이 다른 참가국에
 서 그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들의 목적으로 삼으며,
 특별히 다음의 사항들에 주목한다.

(a) 정보의 유통, 접근, 교류의 증진

(i) 구두상의 정보

라운드 테이블 미팅, 세미나, 심포지엄, 여름학교, 국회 및 기타 양자적 다자적 회의의 교류
 를 활성화하고 다른 참가국들의 인사나 전문가들에 의한 강의 투어나 강의를 고무시킴으로
 써 구두상의 정보를 공급하는 것을 촉진시킨다.

(ii) 문서정보

자국의 국토에서 타국의 신문이나 발간 문서들, 정기간행물, 비정기 간행물들의 보급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 그들은 그들의 경쟁력 있는 영화사와 단체들이 점차적으로 타국에서 수입된 신문이나
 발간물의 수를 늘리기 위한 협약이나 계약을 체결하도록 고무시킬 것이다. 이러한 협약이
 나 계약들은 특별히 신문과 서적의 배포를 위해 각 나라에 기존하고 있는 정상적인 채널을
 사용할 것과 가장 신속하게 배달될 것과, 또한 이러한 협약이나 계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국이 동의한 지불방법과 수단을 명기해야 한다.
- 필요한 경우에, 그들은 상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채택할 것이며, 협약
 과 계약에 포함된 조항들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을 채택할 것이다.

상위에 제시된 기반위에서 수입된 정기, 비정기 간행물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해, 특별히

- 그들은 이 발간물들을 판매하는 곳의 수를 늘릴 것이며,

- 그들은 의회, 회의, 공식방문 및 기타 국제행사 그리고 계절 관광동안 이 정기간행물들을 이용가능 하도록 촉진시킬 것이다.
- 그들은 각 나라마다 형식이 다른 구독을 발전시킬 것이며,
- 공공 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의 독서실에서 이 서적들을 읽거나 빌리는 기회를 향상시킬 것이다.

그들은 외교공관에서 발행한 공식문서나, 관련 분야에 수용 가능한 협정에 기반한 공관에 의해 배포된 공식문서들에 대한 발간소식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킬 것이다.

(iii) 영화와 방송 정보

- 영화와 방송 정보의 보급을 향상 촉진시키기 위해,
- 그들은 다른 참가국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단체들이나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회사들 간에 필요한 협약이나 협정의 기반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방송이나 영화정보를 방영하는 것을 권장할 것이며,
 - 그들은 다른 참가국들로부터 경쟁력 있는 단체나 회사의 오디오, 비주얼 기록 매체에 의해 수입을 촉진시킬 것이다.

참가국들은 라디오방송 정보의 보급 확장을 주목하며, 이 회의에서 정한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를 지속할 것을 희망한다.

(b) 정보 분야의 협력

- 단기 혹은 장기적 협약이나 협정의 바탕위에서 정보 분야의 협력을 권장하며, 특히,
- 그들은 신문사와 출판사, 단체들을 포함한 대중매체 기관간의 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며, 그들은 공기업, 사기업의, 국내 혹은 국제적 라디오 텔레비전 단체들 사이의 협력, 특별히 생방송 혹은 녹화방송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교환을 통해, 그리고 그러한 프로그램의 공동 제작, 방영, 배포를 통해 협력을 도모할 것이다.
- 그들은 참가국들 사이의 언론기관과 언론인들 간의 교류와 만남을 장려할 것이다.
 그들은 문서의 출판 교류를 위해, 참가국들의 신문 및 정기간행물 협정체결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들은 출판, 라디오, 텔레비전 분야의 전문가 간의 경험과 관점을 교류하는데 기여하는 회의와 공동연구단체 및 기술정보의 교류를 권장할 것이다.

(c) 언론인 근무조건의 향상

참가국들은 한 참가국의 언론인들이 다른 참가국에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조건을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며, 특별히 다음의 사항을 추구할 것이다.

- 언론인 비자신청기간을 적절하고 합리적인 시일 내에 우호적인 정신으로 검토한다.
 - 참가국들의 영구적 파견 언론인들에게 협정에 기초하여, 특정 기간동안의 복수출입비자를 발급한다.
 - 참가국들의 파견 언론인들에게 임시거주허가증을 발급하며, 만약 필요한 경우에, 소지하기에 적당한 다른 공식문서를 발행한다.
 -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언론인들의 직무수행을 위한 참가국들의 여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보적 이유로 인해 차단된 지역의 관련된 규제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런 여행의 기회를 보다 더 많이 주도록 한다.
 - 그러한 여행 중에 발생하는 언론인들에 의한 요청사항들은 처리시간을 고려하여 가능한 신속한 응답을 주도록 한다.
 - 참가국들의 언론인들에게 단체와 공공 기관들을 포함한 기관과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킨다.
 - 참가국들의 언론인들에게 다시 반출한다는 조건에 한해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장비(사진, 영화, 테이프 녹음기, 라디오, 텔레비전)들을 들여올 권리를 부여한다.
 - 다른 참가국의 영구적으로 또는 한시적으로 파견된 언론인들에게 참가국들이 승인한 방법에 의해, 완전하고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그들이 대표하는 단체에 관한 정보와 라디오 혹은 텔레비전에 방영할 목적으로 만든 미개봉 필름, 기록 테이프 같은 그들의 직업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해줄 수 있도록 한다.
- 참가국들은 그들의 직무수행을 합법적으로 추구함에 있어서, 추방되지 않고 형벌에 처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한다. 만약 파견 언론인이 추방될 경우, 그는 추방당하게 된 이유를 공지 받을 것이며, 그 사건의 재검을 신청할 수 있다.

3. 문화영역의 협력과 교류

참가국들은

문화교류와 협력이 사람과 사람간의 더 나은 이해를 제고시키는데 기여하며, 나아가 국가간의 이해도 증진시킨다는 것을 고려하며,

이 분야에 있어서 다자적 수준에서 형성된 특별히, 문화적으로 다양한 삶의 가능한 넓은 영역의 사회그룹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분명한 헬싱키에서 1972년 6월 UNESCO가 주관한 유럽 정부간 문화정책 회의에서 이미 내려진 결론을 확인하며,

참가국들 간의 관계 발전과 상호신뢰를 개발시키면서, 이 분야에서의 발전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희망하며,

이러한 정신으로 그들의 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양자적, 다자적 수준에서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인적교류, 문화적 교류에 관해 또한 적극적인 협력을 발전시킬 것을 결의하며,

그러한 상호관계의 발전이 각 문화의 근원을 존중하면서 상대의 문화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또한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문화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공통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다음의 사항들을 공동의 목적으로 정할 것을 선언한다.

- (a) 각국의 문화적 업적에 대한 이해의 관점에서 상호 정보 교류의 활성화
- (b) 문화유산을 보급하고 교류하기 위한 수단의 향상
- (c) 각국의 문화적 업적에 대한 모든 접근의 추구
- (d) 문화영역의 적극적인 인적교류와 협력의 발전
- (e) 문화협력의 새로운 분야와 형태의 추구

그리하여 이 선언의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일관적이고 장기적인 행동을 공동으로 취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며, 다음 사항들을 수행하기 위해 진행하고자 한다.

관계의 확대

특별히 다음사항들을 통해서 문화 영역의 다양한 수준의 협력과 연계를 도모하고 확장시킨다.

- 현존하는 협약의 최대한 사용과 유연성의 필요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문화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을 이루는 약정들이나 다른 협약들을 고려하면서, 문화 영역의 합법적인 국가기관이나 비정부기구들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문화행사 종사자들의 관계를 확대시키기 위한 적절한 양자적, 다자적 기초에 기반한 협약을 체결한다.
- 특별 협약이나 협정에 기반한 교류와 협력을 포함하여 관계국 기관이나 비정부 기구들 간의 직접 교류와 협력의 발전에 기여한다.
- 필요한 경우에 특별 협약이나 협정에 기반한 교류와 접촉을 포함하여 문화행사 종사자들 간의 직접적 교류와 소통을 장려한다.

상호지식

각국의 시민들은 다양한 문화의 영역에서 종합적이고 완전한 상호이해지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방법을 양자적, 다자적 수준에서 채택할 권한을 지닌다.

- 필요하면 적당한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참가국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각국의 자료 사용 요청에 응답하며, 관련 참가국들의 전문가 회의를 소집하는데 용이하도록 유럽에 문화 데이터 은행을 설립할 가능성에 대해 공동으로 검토한다.
- 필요하면 적당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유럽에 참가국들의 문화나 과학 관련한 다큐멘터리 영화 목록을 모으는 방안을 고려한다.
- 유럽에서 참가국들의 서적 전시회를 좀더 자주 개최할 것을 권장하며, 대규모 서적 전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 관련 기관과 출판사들 간에 가능하면 출간예정인 서적을 포함한 출판 직전의 서적들과

입수할 수 있는 서적들의 카탈로그들을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을 도모하며, 또한 각 국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 백과사전 출판사들 간의 자료 교환을 촉진시킨다.

- 영화, 음악, 도서관 및 문화유산의 보수와 보존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문화 정보의 교환을 확대하고 향상시키는 데 대한 문제들을 함께 검토한다.

교류와 배포

문화유산의 교류와 보급을 위한 편리수단을 향상시키기는 데 기여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들, 특별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여한다.

- 서적 및 다른 문화상품의 국제적 상업거래와 관련된 비용을 줄이고 조화롭게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한 이동시에 노출된 이 작품들에 대한 위협이나 손실을 줄이고, 외국 전시회의 예술 작품들을 안전하게 보존할 새로운 방법들을 연구한다.
- 행사의 주최자들이 인정한 목록에 있는 예술 이벤트, 예술작품, 물질, 부속품들의 프로그램을 위한 적당한 시간에 관세 절차를 간편화 하도록 한다.
- 주문을 간소화하고 물건 보급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지불비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활동과 같은 수단을 검토하기 위한 관련 기관 및 회사 대표들의 회의를 개최하여, 서적의 국제적 유통거래를 촉진시키도록 한다.
- 영화제작소와 영화자료실간의 영화 대여와 교환을 촉진시킨다.
- 필요하면 적절한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음악, 극장, 조각 및 그래픽 전시회 등과 같은 문화 행사 캘린더를 편집하고 출판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참가국들에 따라 다른 문화적 특성이 나타나는 행사와 관련된 기관들 사이에서 정보의 교류를 고무시킨다.
- 각 문화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보존시켜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하면서, 문화의 배포에 사용되는 기술적인 수단들의 발전과 관련 기관들의 가능한 조화가 문화 협력과 교류의 발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장려한다.
- 각 문화의 장점과 가치를 인식하면서, 각국의 문화정책 범위 내에서 다른 참가국의 문화유산의 이익을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한다.
- 그들이 속해있거나 혹은 그들이 미래에 속할 것을 결정할 그 문화유산의 유통이나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과 회의를 효율적으로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접 근

작품, 경험, 예술작품 등 각국의 다양한 문화영역에서의 모든 성과물들에 대한 상호 접근을 증진시키며, 그들의 역량에 따라 이를 이루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 특히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한다.

- 서적과 예술작품의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해, 특별히 다음의 방법을 사용한다.
 - 그들이 속한 국제 지적 재산권 조약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문화적 업적에 대한 상호 접근성을 더욱 완성시키기 위해서, 문화 기관뿐만 아니라 출판사와 작가들 사이의 국제



적 교류와 소통을 촉진시킨다.

- 발행부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출판사는 타 참가국의 요구 또한 고려해야 하며, 가능하면 관련 대상들 사이에 협약에 의해서 수입국가의 몇몇 판매기관들에게 판매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권고한다.
- 관련 기관들과 회사들로 하여금 협약과 계약을 맺도록 권장하며, 이에 의해서, 도서관과 서점에서 원본과 번역본 구입이 가능한 타 참가국 작가의 작품 수와 다양성을 점차적으로 늘리는데 기여한다.
- 적절한 경우, 협약과 계약에 의해 원본을 수입한 국가에서 타국 작가의 서적 판매점 수를 늘리도록 촉진시킨다.
- 문학부문의 작품 번역 및 타 참가국의 언어로 제작된 문화활동, 특별히 소수 사용 언어로 된 문화활동을 확장시키며,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번역작품의 출판과 배포를 촉진시킨다.
 - ▶ 관련된 출판사 간의 정기적인 교류를 증진시킨다.
 - ▶ 번역자들이 기초 및 고급 번역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 적절한 방법에 의해, 그 나라의 출판사들이 번역본을 출간하도록 권장한다.
 - ▶ 출판자와 관련 기관 간에 번역할 서적의 목록을 교환하도록 권장한다.
 - ▶ 각 나라들 간에 번역가의 전문 활동과 협력을 증진시킨다.
 - ▶ 번역과 배급을 심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한다.
- 도서관 간에 서적, 참고도서 일람표, 카탈로그의 교환을 확장시키며 향상시킨다.
- 필요한 경우 관련 당사자들 간의 상호 협약에 의해, 상대국의 문화적 업적, 특별히 서적 분야에서의 접근을 촉진시키기 위한 허용가능한 적절한 다른 수단들을 도모한다.
- 각국의 문화적 생활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통해 대중매체의 사용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한다.
- 이주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그들의 본국 문화와 지속적인 연계를 유지하며, 또한 새로운 문화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 관련 업체와 기업들이 타 참가국의 장편영화나 다큐멘터리 영화의 보급과 선택을 넓히는데 노력하도록 권장하며, 개봉, 영화주간 및 축제 등과 같은 비 상업적 상영을 좀더 빈번하게 하도록 하며, 영화작품이 덜 알려진 나라의 영화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권장한다.
- 타 참가국들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공식기록보관소의 물품에 대한 현존하는 법률 구도 하에서, 적절한 수단에 의해 영화나 오디오 비주얼 기록보관소의 문화적 특성이 있는 작품들을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키도록 한다.
- 관련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관련 단체들이 녹화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보관소를 설립할 조건과 편의를 위해, 또한 그들의 선택과 가능한 인식을 촉진시키기 위해 그것을 신속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할 것을 권장한다.

교류와 협력

적절한 수단에 의해, 문화의 다양한 영역, 특별히 독창적인 예술가들과 문화 활동 종사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특별히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노력한다.

- 문화, 여행 분야 그리고 적절한 협약, 계약 혹은 특별협정의 기반위에서 이루어지며 문화 협력과 관련 있는 각종 회의 분야에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고무시킨다.
- 이런 방식으로 다른 참가국들에서 그들의 작업을 알리거나 그들의 공동 활동과 관련된 주제에 관한 시각을 교환하고 함께 일하기 위해서 독창적이고 행위예술적인 예술가들과 예술 단체들 간의 접촉을 고무시킨다.
- 필요하면 적절한 협정을 통해서 예술, 건축, 박물관 및 도서관, 문학연구와 번역과 같은 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기초 혹은 고급 훈련을 받을 장학금을 수여하고 훈련자와 전문가를 교류시킬 것을 권장하며, 각 기관들의 등록을 호의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건 조성에 기여한다.
- 문화행사 주관자들, 극장이나 오페라, 발레, 음악, 예술 분야의 전문가들과 선생님들을 훈련하는 경험을 교류할 것을 권장한다.
- 예술과 문화 분야의 최근 공동연구와 관련하여 창의적 예술가들, 특히 젊은 독창적인 예술가들 간의 국제적인 만남을 만들 것을 계속해서 권장한다.
- 타 참가국의 문화생활에 대한 상호 지식의 심화를 이루기 위해 문화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킬 다른 가능성들을 연구한다.

협력의 분야와 형태

문화협력의 새로운 영역과 형태에 대한 조사를 권장할 것이며, 이 목표를 위해 관련 당사자들 간에 필요하면 적절한 협약과 협정을 체결하는데 기여할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촉진시킨다.

- 문화정책, 특별히 사회적 방면에서의 문화정책 뿐만 아니라 관련 계획, 도시계획, 교육과 환경 정책 그리고 관광의 문화적 측면에 관련한 공동연구
- 서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한 문화적 다양성 영역에서의 지식의 교류
- 상위의 주제들에 대한 전문가 회의, 연구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실시 그리고 공동 평가, 결과의 유포에 관한 정보의 교류
- 문화협력의 형태와 공동 프로젝트의 개발
 - 조소, 그래픽 예술, 영화, 극장, 발레, 음악, 민속학 등의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이벤트들, 서적 전시회, 오페라와 드라마의 공동 작업 및 솔로 공연 등
 - 악기 앙상블, 오케스트라, 합창 그리고 아마추어 그룹을 포함한 기타 예술 단체들은 국제 문화 청년 이벤트의 조직과 젊은 아티스트들의 교류에 주목한다.
 - 솔로리스트와 예술적 앙상블의 레퍼토리에 있어서 타 참가국의 작가와 작곡가들의 작품을 포함시킨다.



- 논문, 연구, 모노그래프 및 저가의 서적, 예술 문학 전집의 준비, 번역, 출판은 각 국가의 문화적 업적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며, 이 목적을 위해서 출판사의 대표들과 전문가들의 회의를 소집한다.
- 필름과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교류 협력은 특별히 프로듀서, 기술자, 공공기관의 대표자 간의 만남을 주선함으로써 피하며, 특정한 공동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보다 좋은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협력의 분야에서 국제적 영화 팀을 설립할 것을 고취시킨다.
- 가능하면 가장 훌륭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팀을 만들 것을 염두에 두며, 건축가와 초시 계획자들의 경쟁을 조성한다.
- 필요한 경우에, 정부 혹은 비정부적 특성을 띠는 국제적 기구와 이 목적을 위해 적합한 사립 기관 - 이 분야에서 유능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 의 도움을 받아 예술, 역사적 고고학적 기념물과 문화유적지에 대한 보존, 보수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 ▶ 보다 넓은 사회·경제적 맥락에서의 문제들을 고려할 필요를 염두에 두면서 필요한 제안서를 만들기 위한 관련 당사국들의 전문가들의 정기적 만남
 - ▶ 참가국들 사이에 알릴만 하고 비교할 만한 가장 중요한 성취를 이루고 혁신을 담고 있는 적절한 정기간행물의 출간
 - ▶ 그 나라의 역사적 기념물과 문화유적 카탈로그와 목록에 사용되는 다른 시스템의 가능한 조화와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 ▶ 복구와 관련된 다른 훈련에 관한 전문가들의 국제적 훈련 코스를 조직할 가능성에 대한 연구

국가의 소수자들과 지역 문화. 참가국들은, 소수민족과 지역 문화가 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들 간의 협력을 조성할 수 있으며, 자국 국경 내에 그러한 소수자들과 문화가 존재할 때, 그 구성원들의 합법적인 이익을 고려하면 이 기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4. 교육 분야의 교류와 협력

참가국들은,

교육과 과학 분야의 국제적 특성을 띠는 관계의 발전이 상호 이해의 심화에 기여한다는 것과 미래 세대에 대한 혜택 뿐 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익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교육과 과학에 관련 있는 단체들, 기관들, 개인들 간에 필요할 경우 특별한 협약의 기반에 의한 접촉과 지식과 경험의 교류를 심화 발전시키는 것을 촉진시키도록 준비하며,

교육과 과학의 설립 사이의 연계를 강화할 것을 희망하며, 특별히, 지식과 자원 수준에서 국제적으로 공동계획을 세우는데 노력이 요구되는 경우에 공동 이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희망한다.

이 분야의 진보가 외국어의 넓은 지식에 의해 수반되고 지지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이 목표들을 위해 특별히 그들의 의향을 표한다.

(a) 관계의 확대

다양한 수준에서 교육과 과학 분야의 협력과 연계를 발전시키고 확장하기 위해서 특별히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현존하는 협약과 협정의 최대한 사용과 유연성을 고려하면서, 교육과 과학 분야에 관여하는 국가 기관들, 비정부 기구들, 개인들 간의 협력과 교류를 위한 적절한 양자적, 다자적 협약을 체결한다.
- 적절한 정부간 협약의 틀 내에서 대학과 고등 교육과 연구를 하는 기관들 사이의 직접적 협정을 체결할 것을 도모한다.
- 교육과 과학에 종사하는 사람들 간에 특별 협약이나 적절한 협정에 기반한 접촉을 포함하여 직접적 교류와 커뮤니케이션을 권장한다.

(b) 접근과 교류

상호 수용 가능한 조건 하에서, 각 참가국의 학생, 교사, 교수들이 서로의 교육, 문화, 과학 기관에 대한 접근을 높이며, 공동 이익의 모든 분야에서 위 기관들 간의 교류를 강화한다. 특별히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 그들이 허가받아지고 수용된다는 조건 하에서 외국인들에게 열린 연구와 교육을 위한 시설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것을 증대시킨다.
- 참가국들 서로간의 연구, 가르침, 조사와 교육, 문화, 과학적 성과들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학자, 교사, 학생들의 여행을 촉진시킨다.
- 자국의 영토 안에서 연구, 가르침, 조사를 하는 다른 참가국들의 학자, 교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
- 학자, 교사, 학생들에게 심포지엄, 세미나, 공동 프로젝트, 대학 출판물과 도서관의 자료들 같은 교육 학문 정보의 교류 등을 포함하여 더 넓은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설립한다.
- 학자, 교사, 학생들에게 적당한 때에 대학이나 연구원에서의 숙박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학문의, 과학적이고 열려있는 참고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인 국가 내에서 보통의 절차에 기반한 방학 여행의 형식을 포함하여 연구나 자료조사를 위한 여행을 도움으로써 그러한 협약이나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도모한다.
- 연구단체나 기간, 연구의 내용에 관한 정보의 교환, 학문적 질과 지식의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의 비교, 가능하다면, 정부간 협약이나 혹은 대학과 고등 교육연구기관 사이의 직접

협정을 통한 학위와 증서에 대한 상호 인식에 도달시킴으로써, 학위와 증서의 형평성과 비교의 문제들에 대한 좀더 정확한 측정과 평가를 향상시킨다.

- 더욱이, 관련된 국제 단체들에게 그들이 학위와 증서의 형평성과 비교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c) 과학

과학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범주 내에서, 특별히 양자적 혹은 다자적 기초 위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들에 의한 과학 정보와 문서의 교환 및 배포를 증가시킨다.

- 이 정보를 좀더 넓게 타 참가국의 과학자들과 연구원들에게 이용가능 하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 국제적인 정보 나눔 프로그램에 참여하던지 혹은 적절한 다른 협정을 통해서 한다.
- 특별히 자연과학이나 의학 분야의 기초연구에 사용되는 기타 과학 물질과 시료들의 교환을 활성화하고 확장한다.
- 과학 연구기관과 대학들을 초청하여 서로의 공동 관심영역인 최근 연구 성과에 대해서 좀더 완전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알리도록 한다. 대학과 과학연구기관, 협회 및 과학자, 연구원들의 직접 교류와 소통의 확장을 특별한 협정이나 협약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시켜, 다음의 방법들에 의해 촉진시킨다.
- 과학자와 연구원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예비 모임 및 공동관심의 연구주제에 대한 실무 그룹을 조직할 것을 고무시킨다.
- 몇몇 국가의 과학기관에 의해 체결된 협정 하에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공동 과학자 팀을 만들 것을 권장한다.
- 국제회의나 세미나의 기획과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돕고, 그들의 과학자들과 연구원들이 참석하도록 독려한다.
- 더 나아가 가까운 미래에 “과학 포럼”을 참가국들 과학계의 지도적 인사들 모임 형식으로 구성하여 과학분야의 최근과 미래의 발전에 관련된 공통 관심의 상호 연관된 문제들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며, 과학 기관들과 과학자들 간의 접촉을 확장하고 정보의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한다.
- 가까운 시일에 각 참가국들과 그들의 국가 과학연구기관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모임을 기획한다. “과학 포럼”같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UNESCO나 ECE 같은 적절한 국제기구와 상의하여 준비한다.
- “과학 포럼”을 위해 어떤 단계를 취해야 하는지 고려한다.

과학연구 분야에서 양자적 혹은 다자적 기초위에 참가국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의 협력과 공동 프로그램의 구성, 특별히 아래에 언급하는 영역들 즉, 과학자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그리고 어떤 경우엔 비싸고 독특한 장비를 사용해야하는 영역들에서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러한 영역의 주제 목록은 설명이 가능하며, 적절한 국제기구와 과학연구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기여를 고려하면서 특별한 프로젝트들은 참가국들의 잠재적인 파트너들에 의해 후에 결정지어져야 한다.

- 정밀한 자연과학, 특별히 수학, 물리, 이론 물리, 지구물리학, 화학, 생물학, 생태학, 천문학과 같은 영역의 기초연구
- 의학, 특별히 암이나 심장 질환에 관한 기초 연구, 발전도상국가들의 풍토병에 관한 연구, 그리고 직업병이나 장애인의 재활, 모자보건 및 양로보전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의학-사회학적 연구
- 역사, 지리학, 철학, 심리학, 교육학적 연구, 언어학, 사회학, 법학, 정치학 그리고 경제학과 같은 인류 사회과학, 참가국들에 공통의 관심이 되는 사회의, 사회경제적, 문화현상에 관한 비교연구, 특별히 인간 환경문제들과 도시개발문제들, 그리고 기념물과 예술 작품들을 복구하고 보존하는 방법에 대한 특별 연구

(d) 외국어와 문명

국제협력의 강화와 함께, 각 나라의 문화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외국어와 문명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 한다. 이를 위해서, 그들의 능력범위 내에서, 다양한 수준에서 덜 확산되거나 연구되지 않은 언어에 특히 주목하면서 가르칠 언어를 다양하게 선택하고, 외국어 교수법의 향상과 심화개발을 촉진시킨다. 특히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 각각의 다른 학생들의 필요에 맞게, 속성 교수법을 포함한 효과적인 교수법과 기술적인 도움을 위한 신청과 개발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교환함으로써, 외국어 교수법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협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양자적 혹은 다자적 기초위에 새로운 외국어교수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 언어 교육에 있어서 좀더 많은 모뎀 교육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예를 들어 전문가들의 비교연구나, 동의된 곳에서는 오디오-비주얼 자료들, 교과서 준비에 쓰이는 자료들을 교환함으로써, 또한 언어교육에 사용되는 새로운 기술 장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양자적 혹은 다자적 기반으로 관련 기관들 사이의 협력을 강화한다.
- 언어 교사들의 훈련에서 얻어진 경험과 정보를 교환할 것을 촉진시키며 양자적 기반에서 언어교사와 학생들의 교환을 강화한다. 또한 언어와 문명에 관한 여름 학기가 조직되는 곳은 어디에나 참여를 촉진시킨다.
- 과학기관과 전문가들의 관계를 촉진시키기 위해, 특별히 과학 기술 학문에 사용되는 필요한 용어들을 정의할 목적으로 사전을 편찬하는 데 전문가들 사이의 협력을 강화한다.
- 다른 유형의 중등교육기관에 외국어교육을 확대할 것과 증가한 유럽언어 사이의 선택 폭을 넓히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적절하다면, 교사의 채용과 훈련을 발전시킬 것을 고려하도록 하며, 학생단체들이 요구하는 조직을 구성할 것을 고려하도록 한다.

- 고등교육에서, 언어 전공 학생들에게 더 넓은 언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다른 전공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외국어를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바라기는, 필요하다면, 특별한 협정에 기반해서, 외국어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언어와 문명에 관한 과목들, 특히 덜 알려졌거나 덜 공부되는 유럽나라들의 언어과목들을 구성하도록 한다.
- 성인교육의 틀 내에서, 외국어를 그들의 주민들에게 가르치고, 다른 나라에서 온 성인들에게 자국의 언어를 가르치는데 있어서의 다양한 필요와 관심들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심화 개발 시키도록 촉진시킨다. 이 맥락에서, 언어 능력의 비교가능한 수준에 도달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언어교육 프로그램이나, 속성 방법에 의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또한 바람직하게는, 그러한 프로그램의 공부 목적을 정의하는 데에 있어서 관련 기관들의 협력을 고취시킨다.
- 적절한 경우에, 외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에서는 외국어와 함께 그 문명까지 가르치도록 격려하며, 또한 교실 밖 활동을 포함하여 외국어 공부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e) 교수법

모든 수준의 교육 교수법에 있어서 양자적 혹은 다자적 기초에서 평생교육을 포함하여, 교육 자료와 그 경험을 교환하도록 촉진시킨다. 특별히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 예를 들어, 관련 기관들에 의해 수행된 비교연구나 공동연구를 통해서, 또는 교육실험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교육과학의 다른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접촉과 협력을 활성화시킨다.
- 다양한 형태의 특화교육 관련 경험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교육시스템에 사용되는 교육방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학생들이 지식을 획득하도록 거쳐야 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결과물들을 교환할 것을 강화시킨다.
- 성인교육과 재교육을 위한 교육의 기능과 단체 그리고 이들과 다른 형태와 수준의 교육과의 관계에 관한 경험을 공유할 것을 촉진시킨다. 뿐만 아니라 그들 나라들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과 기술훈련을 포함하여 교육을 채택하는 수단들에 관한 경험도 나누도록 권장한다.
- 특별히 공통의 접근방법과 보다 넓은 국제적 협력을 요구하는 해결책에 관한 주요 문제들에 관련하여, 국제적 이해에서의 청소년과 성인교육의 경험들을 나누도록 권장한다.
- 교육분야의 기술혁신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나오는 나라들에 대한 상호지식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유념하면서 학교 교과서를 포함한 교육자료들을 교환할 것을 권장한다.

국가 소수민족들과 지역 문화들. 참가국들은, 국가 소수민족들이나 지역의 문화가 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자국의 영토 내에 소수민족들이나 그들의 문화가 존재할 때, 그들 구성원들의 합법적인 이익을 고려하면서 이런 기여를 활성화시키도록 한다.

회의에 대한 후속조치

참가국들은,

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 제정된 발전에 대해 고려하고 평가하며,

세계적 맥락에서, 이 회의가 유럽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안보를 향상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프로세스라는 것과, 그 결과들이 이 프로세스에 심대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것을 깊이 유념하면서,

그 결과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최종의정서의 조항들을 수행할 것이며, 그리하여 유럽에서의 안보향상과 협력발전에 진전을 이룰 것이며,

회의에 의해 정해진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은 일방적이고 양자적이며 다자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아래에서 정하고 있는 적절한 형태의, 회의에 의해 주창된 다자적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다.

1. 회의가 끝난 후의 후속 기간에도, 최종의정서의 조항들을 수행하고 지키겠다는 결의를 선언한다.
 - (a) 그 행동에 그들 자신을 가담한 모든 경우에 일방적으로;
 - (b) 다른 참가국들과의 협상에 의해 양자적으로
 - (c) 참가국들의 전문가 회의에 의해서, 또한 UNECE(UN 유럽 경제위원회) 그리고 UNESCO와 같은 현존하는 국제기구의 틀 내에서, 교육과 과학, 문화협력을 위해 다자적으로
2. 회의에 의해 주창된 다자적 프로세스를 지속시키는데 대한 결의를 선언한다.
 - (a) 최종의정서의 각 조항들과 회의에 의해 제정된 의무들을 수행하는데 대한 관점들을 철저하게 교환하도록 한다. 또한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그들 상호관계를 심화시키고, 유럽의 안보를 향상시키고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미래에 화해무드를 조성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발전에 대한 관점을 나눔으로써 진행한다.
 - (b)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국 대표들의 회의를 조직하는데, 처음에는 외교부에서 지명된 대표들의 회의로 시작한다. 이 회의는 유사한 심화 회의와 새로운 회의의 가능성을 포함할 수 있는 다른 회의를 주최하기 위한 적당한 형식을 규정할 것이다.
3. 위의 사항들에 대한 첫 번째 후속 회의는 1977년 베오그라드에서 개최할 것이다. 이 회의를



위한 예비회의는 1977년 6월 15일에 베오그라드에서 열릴 것이다. 예비회의는 외교부에 의해 선발된 대표자 회의의 날짜, 기간, 아젠다, 그리고 기타 회의의 형식에 대해서 결정할 것이다.

- 4. 회의의 비용 배분의 규모와 실무적 방법들, 그리고 절차의 법칙들은 개개의 차이를 고려하여, 위의 단락 1절 (c)와 2절 그리고 3절에 그리고 있는 회의들에 적용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모든 회의들은 돌아가면서 참가국들에서 개최될 것이다. 기술적 서비스는 개최국에 의해 제공될 것이다.

영어, 불어, 독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작성된 최종의정서 원본은 핀란드 공화국 정부에 제출될 것이며, 핀란드의 기록보관소에 보존될 것이다. 각 참가국들은 핀란드 정부에게서 이 최종의정서의 복사본을 받을 것이다.

최종의정서의 원문은 각 참가국에서 출판될 것인데, 가능하면 널리 알리고 보급할 것이다.

핀란드 공화국 정부는 UN의 공식문서로서 UN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배급하기 위해서 UN 사무총장에게 최종의정서 원문을 제출해야 하며, UN 헌장 102조에 의해 등록은 할 수 없다.

핀란드 공화국 정부는 UNESCO의 회장과 UN 유럽경제이사회 사무총장에게 최종의정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로써, 참가국들이 승인한 고위 대표들은 회의의 결과를 첨부하는 정치적 중요성을 염두에 두면서, 위의 본문에 포함된 조항들을 준수할 것을 선포하면서 아래에 서명을 한다.

1975년 8월 1일 헬싱키

독일연방공화국(서독)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 연방 총리 / **독일민주공화국(동독)** 에릭 호네커(Erich HONECKER)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 중앙위원회 일등 서기 / **미국** 제럴드 R. 포드 대통령 (Gerald R. FORD) / **오스트리아** 브루노 크라이스키(Bruno KREISKY) 연방 총리 / **벨기에** 레오 틴데만스(Leo TINDEMANS) 수상 / **불가리아** 토도 지브코브(Todor JIVKOV) 불가리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일등 서기 / **캐나다** 피에르 엘리어트 트뤼도(Pierre Elliott TRUDEAU) 총리 / **사이프러스** 공화국 마카리오스 3세 대주교(His Beatitude Archbishop MAKARIOS III), 사이프러스 공화국 대통령 / **덴마크** 앵커 요한센(Anker JORGENSEN) 총리 / **스페인** 카를로스 아리아스 나바로(Carlos ARIAS NAVARRO) 내각수반(Head of the Government) / **핀란드** 공화국 우르호 케코넨 (Urho KEKKONEN) 대통령 / **프랑스**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Valery GISCARD D'ESTAING) 대통령 / **영국** 해롤드 윌슨(The Rt. Hon. Harold WILSON), 대영제국 4등 훈사, 하원의원, 학사원회원, 재무부 장관(First Lord of the Treasury) 및 영국 총리 / **그리스** 콘스탄틴 카라만리스(Constantin CARAMANLIS) 총리 / **헝가리** 자노스 카다르(Janos KADAR)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일등 서기 / **아일랜드** 리움 코스그레이브(Liam COSGRAVE) 총리 / **아이슬란드** 게일 할그림슨(Geir HALLGRIMSSON) 총리 / 이탈리아 알도 모로(Aldo MORO) 총리 겸 유럽공동체의회 사무국 총장 (President in office of the Counci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리히텐슈타인** 공국 왈터 키에베르(Walter KIEBER) 내각 수반 / **룩셈부르크** 가스톤 혼(Gaston THORN) 총리 겸 외교부 장관 / **몰타** 공화국 돔 민토프 (Dom MINTOFF) 총리 겸 연방외교부 장관 / **모나코** 공국 안드레 세인트 렉스

(Andre SAINT-MLEUX) 총리(Minister of State), 정부의회 수반(President of the Government Council), 모나코 왕자 각하 (Representing H.S.H. the Prince of Monaco) / **노르웨이** 트리케프 브래텔리 (Trygve BRATTELI) 총리 / **네덜란드** J.M. 덴 올(J. M. DEN UYL) 총리 / **폴란드** 에드워드 기에레크(Edward GIEREK) 폴란드 통일노동당 중앙위원회 일등 서기 / **포르투갈** 프랜시스코 다 코스타 콤스(Francisco DA COSTA GOMES) 대통령 / **루마니아** 니콜라 차우세스쿠 (Nicolae CEAUSESCU) 대통령 / **산 마리노** 지안 루이기 베르티(Gian Luigi BERTI) 외교정치부 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nd Political Affairs) / **교황청** 어거스틴 카느롤리 (Son Excellence Monseigneur Agostino CASAROLI) 교회공의회 서기(Secretary of the CoUNCil for Church Public Affairs) / **스웨덴** 올프 팔메(Olof PALME) 총리 / **스위스** 피에르 그라베 (Pierre GRABER) 대통령, 연방 정치부 수반 (Head of the Federal Political Department) / **체코** 사회주의 공화국 구스타프 후사크(Gustav HUSAK)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사무총장 및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 대통령 / **터키** 슐레만 데미렐 (Suleyman DEMIREL) 총리 / **소련** L. 브레즈네프 (L. BREJNEV)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 **유고슬라비아** 조셉 브로즈 티토(Josip Broz TITO)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대통령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FINAL ACT

HELSINKI 1975

Contents

Preamble

Questions relating to Security in Europe

1. (a) Declaration on Principles Guiding Relations between Participating States

- I. Sovereign equality, respect for the rights inherent in sovereignty*
- II. Refraining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 III. Inviolability of frontiers*
- IV. Territorial integrity of States*
- V.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 VI. Non-intervention in internal affairs*
- VII.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cluding the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religion or belief*
- VIII. Equal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 IX. Co-operation among States*
- X. Fulfilment in good faith of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b) Matters related to giving effect to certain of the above Principles

2. Document on confidence-building measures and certain aspects of security and disarmament

- I. Prior notification of major military manoeuvres*
Prior notification of other military manoeuvres Exchange of observers
Prior notification of major military movements
Other confidence-building measures
- II. Questions relating to disarmament*
- III. General considerations*

Co-operation in the Field of Econom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of the Environment

1. Commercial Exchanges

- General provisions*
- Business contacts and facilities*
- Economic and commercial information*
- Marketing*

2. Industrial co-operation and projects of common interest

- Industrial co-operation*
- Projects of common interest*

3. Provisions concerning trade and industrial co-operation*Harmonization of standards**Arbitration**Specific bilateral arrangements***4. Science and technology***Possibilities for improving co-operation**Fields of co-operation**Agriculture**Energy**New technologies, rational use of resources**Transport technology**Physics**Chemistry**Meteorology and hydrology**Oceanography**Seismological research**Research on glaciology, permafrost**and problems of life under conditions of cold**Compute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Space research**Medicine and public health**Environmental research**Forms and methods of co-operation***5. Environment***Aims of co-operation**Fields of co-operation**Control of air pollution**Water pollution control and fresh water utilization**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Land utilization and soils**Nature conservation and nature reserves**Improvement of environmental conditions in areas
of human settlement**Fundamental research, monitoring, forecasting
and assessment of environmental changes**Leg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Forms and methods of co-operation***6. Co-operation in other areas***Development of transport**Promotion of tourism**Economic and social aspects of migrant labour**Training of personnel*

Questions relating to Security and Co-operation in the Mediterranean

Co-operation in Humanitarian and Other Fields

1. Human Contacts

- (a) *Contacts and regular meetings on the basis of family ties*
- (b) *Reunification of families*

(Human Contacts continued)

- (c) *Marriage between citizens of different states*
- (d) *Travel for personal or professional reasons*
- (e) *Improvement of conditions for tourism on an Individual or collective basis*
- (f) *Meetings among young people*
- (g) *Sport*
- (h) *Expansion of contacts*

2. Information

- (a) *Improvement of the circulation of, Access to, and exchange of information*
 - (i) *Oral information*
 - (ii) *Printed information*
 - (iii) *Filmed and broadcast information*
- (b)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formation*
- (c)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for journalists*

3. Co-operation and Exchanges in the Field of Culture

- Extension of relations*
- Mutual knowledge*
- Exchanges and dissemination*
- Access*
- Contacts and co-operation*
- Fields and forms of co-operation*
- National minorities or regional cultures*

4. Co-operation and Exchanges in the Field of Education

- (a) *Extension of relations*
- (b) *Access and exchanges*
- (c) *Science*
 - exact and natural sciences*
 - medicine*
 -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d) *Foreig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 (e) *Teaching methods*
 - National minorities or regional cultures*

Follow-up to the Conference

About the text of the Helsinki Final Act

Signatures

A selection of contemporary photographs appears between pages 66 and 67. Copyrights: AKG Photo Berlin (A, B and C); Votava Bilddienst, Vienna (D, E and F); Lehtikuva Oy, Helsinki (G).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which opened at Helsinki on 3 July 1973 and continued at Geneva from 18 September 1973 to 21 July 1975, was concluded at Helsinki on 1 August 1975 by the High Representatives of Austria, Belgium, Bulgaria, Canada, Cyprus, Czechoslovakia, Denmark, Finland, France,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Greece, the Holy See,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Liechtenstein, Luxembourg, Malta, Monaco, the Netherlands, Norway, Poland, Portugal, Romania, San Marino,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Yugoslavia.

During the opening and closing stages of the Conference the participants were address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s their guest of honour.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and the Executive Secretary of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addressed the Conference during its second stage.

During the meetings of the second stage of the Conference, contributions were received, and statements heard, from the following non-participating Mediterranean States on various agenda items: the Democratic and Popular Republic of Algeria, the Arab Republic of Egypt, Israel, the Kingdom of Morocco, the Syrian Arab Republic, Tunisia.

Motivated by the political will, in the interest of peoples, to improve and intensify their relations and to contribute in Europe to peace, security, justice and cooperation as well as to rapprochement among themselves and with the other States of the world,

Determined, in consequence, to give full effect to the results of the Conference and to assure, among their States and throughout Europe, the benefits deriving from those results and thus to broaden, deepen and make continuing and lasting the process of détente,

The High Representatives of the participating States have solemnly adopted the following:

Questions relating to Security in Europe

The States participating in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Reaffirming their objective of promoting better relations among themselves and ensuring conditions in which their people can live in true and lasting peace free from any threat to or attempt against their security;

Convinced of the need to exert efforts to make détente both a continuing and an increasingly viable and comprehensive process, universal in scope, and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ults of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will be a major contribution to this process;

Considering that solidarity among peoples, as well as the common purpose of the participating States in achieving the aims as set forth by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should lead to the development of better and closer relations among them in all fields and thus to overcoming the confrontation stemming from the character of their past relations, and to better mutual understanding;

Mindful of their common history and recognizing that the existence of elements common to their traditions and values can assist them in developing their relations, and desiring to search, fully taking into account the individuality and diversity of their positions and views, for possibilities of joining their efforts with a view to overcoming distrust and increasing confidence, solving the problems that separate them and cooperating in the interest of mankind;

Recognizing the indivisibility of security in Europe as well as their common interest in the development of cooperation throughout Europe and among selves and expressing their intention to pursue efforts accordingly;

Recognizing the close link between peace and security in Europe and in the world as a whole and conscious of the need for each of them to make its contribution to the strengthening of world peace and security and to the promotion of fundamental rights,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and well-being for all peoples;

Have adopted the following:

1

(a) Declaration on Principles Guiding Relations between Participating States

The participating States,

Reaffirming their commitment to peace, security and justice and the continuing development of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Recognizing that this commitment, which reflects the interest and aspirations of

peoples, constitutes for each participating State a present and future responsibility, heightened by experience of the past;

Reaffirming, in conformity with their membership in the United N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their full and active support for the United Nations and for the enhancement of its role and effectiveness in strengthening international peace, security and justice, and in promoting the solution of international problem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Expressing their common adherence to the principles which are set forth below and are in conformity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s well as their common will to act, in the application of these principles, in conformity with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Declare their determination to respect and put into practice, each of them in its relations with all other participating States, irrespective of their political, economic or social systems as well as of their size, geographical location or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the following principles, which all are of primary significance, guiding their mutual relations:

I. Sovereign equality, respect for the rights inherent in sovereignty

The participating States will respect each other's sovereign equality and individuality as well as all the rights inherent in and encompassed by its sovereignty, including in particular the right of every State to juridical equality, to territorial integrity and to freedom and political independence. They will also respect each other's right freely to choose and develop its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systems as well as its right to determine its laws and regula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law, all the participating States have equal rights and duties. They will respect each other's right to define and conduct as it wishes its relations with other Stat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in the spirit of the present Declaration. They consider that their frontiers can be chang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by peaceful means and by agreement. They also have the right to belong or not to belong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be or not to be a party to bilateral or multilateral treaties including the right to be or not to be a party to treaties of alliance; they also have the right to neutrality.

II. Refraining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The participating States will refrain in their mutual relations, as well as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in general,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and with the present Declaration. No

consideration may be invoked to serve to warrant resort to the threat or use of force in contravention of this principle.

Accordingly, the participating States will refrain from any acts constituting a threat of force or direct or indirect use of force against another participating State.

Likewise they will refrain from any manifestation of force for the purpose of inducing another participating State to renounce the full exercise of its sovereign rights. Likewise they will also refrain in their mutual relations from any act of reprisal by force.

No such threat or use of force will be employed as a means of settling disputes, or questions likely to give rise to disputes, between them.

III. Inviolability of frontiers

The participating States regard as inviolable all one another's frontiers as well as the frontiers of all States in Europe and therefore they will refrain now and in the future from assaulting these frontiers.

Accordingly, they will also refrain from any demand for, or act of, seizure and usurpation of part or all of the territory of any participating State.

IV. Territorial integrity of States

The participating States will respect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each of the participating States.

Accordingly, they will refrain from any action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political independence or the unity of any participating State, and in particular from any such action constituting a threat or use of force.

The participating States will likewise refrain from making each other's territory the object of military occupation or other direct or indirect measures of force in contravention of international law, or the object of acquisition by means of such measures or the threat of them. No such occupation or acquisition will be recognized as legal.

V.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The participating States will settle disputes among them by peaceful means in such a manner as not to endange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justice.

They will endeavour in good faith and a spirit of cooperation to reach a rapid and equitable solution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For this purpose they will use such means as negotiation, enquiry, mediation, conciliation, arbitration, judicial settlement or other peaceful means of their own choice including any settlement procedure agreed to in advance of disputes to

which they are parties.

In the event of failure to reach a solution by any of the above peaceful means, the parties to a dispute will continue to seek a mutually agreed way to settle the dispute peacefully.

Participating States, parties to a dispute among them, as well as other participating States, will refrain from any action which might aggravate the situation to such a degree as to endange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hereby make a peaceful settlement of the dispute more difficult.

VI. Non-intervention in internal affairs

The participating States will refrain from any intervention, direct or indirect, individual or collective, in the internal or external affairs falling within the domestic jurisdiction of another participating State, regardless of their mutual relations.

They will accordingly refrain from any form of armed intervention or threat of such intervention against another participating State.

They will likewise in all circumstances refrain from any other act of military, or of political, economic or other coercion designed to subordinate to their own interest the exercise by another participating State of the rights inherent in its sovereignty and thus to secure advantages of any kind.

Accordingly, they will, inter alia, refrain from direct or indirect assistance to terrorist activities, or to subversive or other activities directed towards the violent overthrow of the regime of another participating State.

VII.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cluding the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religion or belief

The participating States will respect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cluding the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religion or belief, for all without distinction as to race, sex, language or religion.

They will promote and encourage the effective exercise of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other rights and freedoms all of which derive from the inherent dignity of the human person and are essential for his free and full development.

Within this framework the participating States will recognize and respect the freedom of the individual to profess and practice, alone or in community with others, religion or belief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dictates of his own conscience.

The participating States on whose territory national minorities exist will respect the right of persons belonging to such minorities to equality before the law, will afford them the full opportunity for the actual enjoyment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will, in this manner, protect their legitimate interests in this sphere.

The participating States recognize the universal signific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respect for which is an essential factor for the peace, justice and wellbeing necessary to ensure the development of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themselves as among all States.

They will constantly respect these rights and freedoms in their mutual relations and will endeavour jointly and separately, including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to promote universal and effective respect for them.

They confirm the right of the individual to know and act upon his rights and duties in this field.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the participating States will act in conformity with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with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y will also fulfil their obligations as set forth in the international declarations and agreements in this field, including inter alia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by which they may be bound.

VIII. Equal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The participating States will respect the equal rights of peoples and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acting at all times in conformity with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with the relevant norms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ose relating to territorial integrity of States.

By virtue of the principle of equal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all peoples always have the right, in full freedom, to determine, when and as they wish, their internal and external political status, without external interference, and to pursue as they wish their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The participating States reaffirm the universal significance of respect for and effective exercise of equal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for the development of friendly relations among themselves as among all States; they also recall the importance of the elimination of any form of violation of this principle.

IX. Cooperation among States

The participating States will develop their co-operation with one another and with all States in all field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n developing their co-operation the participating States will place special emphasis on the fields as set forth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with each of them making its contribution in conditions of full equality.

They will endeavour, in developing their co-operation as equals,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and confidence, friendly and good-neighbourly relations among themselves, international peace, security and justice. They will equally endeavour, in developing their cooperation, to improve the well-being of peoples and contribute to the fulfilment of their aspirations through, inter alia, the benefits resulting from increased mutual knowledge and from progress and achievement in the economic, scientific, technological, social, cultural and humanitarian fields. They will take steps to promote conditions favourable to making these benefits available to all; they will take into account the interest of all in the narrowing of differences in the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in particular the interest of developing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They confirm that governments, institutions, organizations and persons have a relevant and positive role to play in contributing toward the achievement of these aims of their cooperation.

They will strive, in increasing their cooperation as set forth above, to develop closer relations among themselves on an improved and more enduring basis for the benefit of peoples.

X. Fulfilment in good faith of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participating States will fulfil in good faith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both those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generally recognized principles and rules of international law and those obligations arising from treaties or other agreements,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law, to which they are parties.

In exercising their sovereign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termine their laws and regulations, they will conform with their legal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hey will furthermore pay due regard to and implement the provisions in the Final Act of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The participating States confirm that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the obligations of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under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ir obligations under any treaty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their obligations under the Charter will prevail,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3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ll the principles set forth above are of primary significance and, accordingly, they will be equally and unreservedly applied, each of them being interpreted taking into account the others.

The participating States express their determination fully to respect and apply these principles, as set forth in the present Declaration, in all aspects, to their mutual relations and cooperation in order to ensure to each participating State the benefits resulting from the respect and application of these principles by all.

The participating States, paying due regard to the principles above and, in particular, to the first sentence of the tenth principle, “Fulfilment in good faith of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note that the present Declaration does not affect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nor the corresponding treaties and other agreements and arrangements.

The participating States express the conviction that respect for these principles will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normal and friendly relations and the progress of co-operation among them in all fields. They also express the conviction that respect for these principles will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contacts among them which in time would contribute to better mutual understanding of their positions and views.

The participating States declare their intention to conduct their relations with all other States in the spirit of the principles contained in the present Declaration.

(b) Matters related to giving effect to certain of the above Principles

(i) The participating States,

Reaffirming that they will respect and give effect to refraining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nd convinced of the necessity to make it an effective norm of international life,

Declare that they are resolved to respect and carry out, in their relations with one another, *inter alia*, the following provisions which are in conformity with the Declaration on Principles Guiding Relations between Participating States:

- To give effect and expression, by all the ways and forms which they consider appropriate, to the duty to refrain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in their relations with one another.
- To refrain from any use of armed forces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provisions of the Declaration on Principles Guiding Relations between Participating States, against another participating State, in particular from invasion of or attack on its territory.
- To refrain from any manifestation of force for the purpose of inducing another participating State to renounce the full exercise of its sovereign rights.
- To refrain from any act of economic coercion designed to subordinate to their own interest the exercise by another participating State of the rights inherent in its sovereignty and thus to secure advantages of any kind.
- To take effective measures which by their scope and by their nature constitute steps towards the ultimate achievement of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under strict and effective international control.

- To promote, by all means which each of them considers appropriate, a climate of confidence and respect among peoples consonant with their duty to refrain from propaganda for wars of aggression or for any threat or use of force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and with the Declaration on Principles Guiding Relations between Participating States, against another participating State.
- To make every effort to settle exclusively by peaceful means any dispute between them, the continuance of which is likely to endange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Europe, and to seek, first of all, a solution through the peaceful means set forth in Article 33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To refrain from any action which could hinder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the participating States.

(ii) The participating States,

Reaffirming their determination to settle their disputes as set forth in the Principle of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1. Are resolved to pursue the examination and elaboration of a generally acceptable method for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aimed at complementing existing methods, and to continue to this end to work upon the “Draft Convention on a European System for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submitted by Switzerland during the second stage of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as well as other proposals relating to it and directed towards the elaboration of such a method.
2. Decide that, on the invitation of Switzerland, a meeting of experts of all the participating States will be convoked in order to fulfil the mandate described in paragraph 1 above within the framework and under the procedures of the follow-up to the Conference laid down in the chapter “Follow-up to the Conference”.
3. This meeting of experts will take place after the meeting of the representatives appointed by the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of the participating States, scheduled according to the chapter “Follow-up to the Conference” for 1977; the results of the work of this meeting of experts will be submitted to Governments.

2.

**Document on confidence-building measures
and certain aspects of security and disarmament**

The participating States,

Desirous of eliminating the causes of tension that may exist among them and thus of contributing to the strengthening of peace and security in the world;



Determined to strengthen confidence among them and thus to contribute to increasing stability and security in Europe;

Determined further to refrain in their mutual relations, as well as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in general,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and with the Declaration on Principles Guiding Relations between Participating States as adopted in this Final Act;

Recognizing the need to contribute to reducing the dangers of armed conflict and of misunderstanding or miscalculation of military activities which could give rise to apprehension, particularly in a situation where the participating States lack clear and timely information about the nature of such activities;

Taking into account considerations relevant to efforts aimed at lessening tension and promoting disarmament;

Recognizing that the exchange of observers by invitation at military manoeuvres will help to promote contacts and mutual understanding;

Having studied the question of prior notification of major military movements in the context of confidence-building;

Recognizing that there are other ways in which individual States can contribute further to their common objectives;

Convinced of the political importance of prior notification of major military manoeuvres for the promotion of mutual understanding and the strengthening of confidence, stability and security;

Accepting the responsibility of each of them to promote these objectives and to implement this measure, in accordance with the accepted criteria and modalities, as essentials for the realization of these objectives;

Recognizing that this measure deriving from political decision rests upon a voluntary basis;

Have adopted the following:

I

Prior notification of major military manoeuvres

They will notify their major military manoeuvres to all other participating States through usual diplomatic channels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Notification will be given of major military manoeuvres exceeding a total of 25,000 troops, independently or combined with any possible air or naval components (in this context the word “troops” includes amphibious and airborne troops). In the case of independent manoeuvres of amphibious or airborne troops, or of combined manoeuvres involving them, these troops will be included in this total. Furthermore, in the case of combined manoeuvres which do not reach the above total but which involve land forces together with significant numbers of either amphibious or airborne troops, or both, notification can also be given.

Notification will be given of major military manoeuvres which take place on the territory, in Europe, of any participating State as well as, if applicable, in the adjoining sea area and air space.

In the case of a participating State whose territory extends beyond Europe, prior notification need be given only of manoeuvres which take place in an area within 250 kilometres from its frontier facing or shared with any other European participating State, the participating State need not, however, give notification in cases in which that area is also contiguous to the participating State’s frontier facing or shared with a non-European nonparticipating State.

Notification will be given 21 days or more in advance of the start of the manoeuvre or in the case of a manoeuvre arranged at shorter notice at the earliest possible opportunity prior to its starting date.

Notification will contain information of the designation, if any, the general purpose of and the States involved in the manoeuvre, the type or types and numerical strength of the forces engaged, the area and estimated time-frame of its conduct. The participating States will also, if possible, provide additional relevant information, particularly that related to the components of the forces engaged and the period of involvement of these form.

Prior notification of other military manoeuvres

The participating States recognize that they can contribute further to strengthening confidence and increasing security and stability, and to this end may also notify smaller-scale military manoeuvres to other participating States, with

special regard for those near the area of such manoeuvres.

To the same end, the participating States also recognize that they may notify other military manoeuvres conducted by them.

Exchange of observers

The participating States will invite other participating States, voluntarily and on a bilateral basis, in a spirit of reciprocity and goodwill towards all participating States, to send observers to attend military manoeuvres.

The inviting State will determine in each case the number of observers, the procedures and conditions of their participation, and give other information which it may consider useful. It will provide appropriate facilities and hospitality.

The invitation will be given as far ahead as is conveniently possible through usual diplomatic channels.

Prior notification of major military movements

In accordance with the Final Recommendations of the Helsinki Consultations the participating States studied the question of prior-notification of major military movements as a measure to strengthen confidence.

Accordingly, the participating States recognize that they may, at their own discretion and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confidence-building, notify their major military movements.

In the same spirit, further consideration will be given by the States participating in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to the question of prior notification of major military movements, bearing in mind, in particular, the experience gain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s which are set forth in this document.

Other confidence-building measures

The participating States recognize that there are other means by which their common objectives can be promoted.

In particular, they will, with due regard to reciprocity and with a view to better mutual understanding, promote exchanges by invitation among their military delegations.

* * *

In order to make a fuller contribution to their common objective of confidence/building, the participating States, when conducting their military activities in the area covered by the provisions for the prior notification of major military manoeuvres, will duly take into account and respect this objective.

They also recognize that the experience gain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set forth above, together with further efforts, could lead to developing and enlarging measures aimed at strengthening confidence.

II

Questions relating to disarmament

The participating States recognize the interest of all of them in efforts aimed at lessening military confrontation and promoting disarmament which are designed to complement political détente in Europe and to strengthen their security. They are convinced of the necessity to take effective measures in these fields which by their scope and by their nature constitute steps towards the ultimate achievement of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under strict and effective international control, and which should result in strengthening peace and security throughout the world.

III

General considerations

Having considered the views expressed on various subjects related to the strengthening of security in Europe through joint efforts aimed at promoting détente and disarmament, the participating States, when engaged in such efforts, will, in this context, proceed, in particular, from the following essential considerations:

- The complementary nature of the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of security;
-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security of each participating State and security in Europe as a whole and the relationship which exists, in the broader context of world security, between security in Europe and security in the Mediterranean area;
- Respect for the security interests of all States participating in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inherent in their sovereign equality;
- The importance that participants in negotiating fora see to it that information about relevant developments, progress and results is provided on an appropriate basis to other States participating in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and, in return, the justified interest of any of those States in having their views considere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Econom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of the Environment

The participating States,

Convinced that their efforts to develop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trade, industry, science and technology, the environment and other areas of economic activity contribute to the reinforcement of peace and security in Europe and in the world as a whole,

Recognizing that cooperation in these fields would promote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and the improvement of the conditions of life,

Aware of the diversity of their economic and social systems,

Reaffirming their will to intensify such cooperation between one another, irrespective of their systems,

Recognizing that such cooperation, with due regard for the different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can be developed, on the basis of equality and mutual satisfaction of the partners, and of reciprocity permitting, as a whole, an equitable distribution of advantages and obligations of comparable scale, with respect for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Taking into account the interest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including those among the participating countries as long as they are developing from the economic point of view; reaffirming their will to co-operate for the achievement of the aims and objectives established by the appropriate bodies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pertinent documents concerning development, it being understood that each participating State maintains the positions it has taken on them; giving special attention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Convinced that the growing world-wide economic interdependence calls for increasing common and effective efforts towards the solution of major world economic problems such as food, energy, commodities, monetary and financial problems, and therefore emphasizes the need for promoting stable and equitable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thus contributing to the continuous and diversified economic development of all countries,

Having taken into account the work already undertaken by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wishing to take advantage of the possibilities offered by these organizations, in particular by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for giving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e final documents of the Conference,

Considering that the guidelines and concret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following texts are aimed at promoting further development of their mutual economic relations, and convinced that their cooperation in this field should take place in full respect for the principles guiding relations among participating States as set forth in the relevant document,

Have adopted the following:

1. Commercial Exchanges

General provisions

The participating States,

Conscious of the growing role of international trade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economic growth and social progress,

Recognizing that trade represents an essential sector of their co-operation, and bearing in mind that the provisions contained in the above preamble apply in particular to this sector,

Considering that the volume and structure of trade among the participating States do not in all cases correspond to the possibilities created by the current level of their economic,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re resolved to promote, on the basis of the modalities of their economic cooperation, the expansion of their mutu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and to ensure conditions favourable to such development;

recognize the beneficial effects which can result for the development of trade from the application of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will encourage the expansion of trade on as broad a multilateral basis as possible' thereby endeavouring to utilize the various economic and commercial possibilit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intergovernmental and other agreements for the long-term development of trade;

note the importance of monetary and financial qu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will endeavour to deal with them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continuous expansion of trade;

will endeavour to reduce or progressively eliminate all kinds of obstacles to the development of trade;

will foster a steady growth of trade while avoiding as far as possible abrupt fluctuations in their trade;

consider that their trade in various products should be conducted in such a way as not to cause or threaten to cause serious injury - and should the situation arise, market disruption

- in domestic markets for these products and in particular to the detriment of domestic producers of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 as regards the concept of market disruption, it is understood that it should not be invoked in a way inconsistent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ir international agreements; if they resort to safeguard measures, they will do so in conformity with their commitments in this field arising from international agreements to which they are parties and will take account of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directly concerned;

will give due attention to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trade and the diversification of its structure;

note that the growth and diversification of trade would contribute to widening the possibilities of choice of products;

consider it appropriate to create favourable conditions for the participation of firms, organizations and enterprises in the development of trade.

Business contacts and facilities

The participating States,

Conscious, of the importance of the contribution which an improvement of business contacts, and the accompanying growth of confidence in business relationships, could make to the development of commercial and economic relations,

will take measures further to improve conditions for the expansion of contacts between representatives of official bodies, of the different organizations, enterprises, firms and banks concerned with foreign trade, in particular, where useful, between sellers and users of product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 of studying commercial possibilities, concluding contracts, ensuring their implementation and providing after-sales services;

will encourage organizations, enterprises and firms concerned with foreign trade to take measures to accelerate the conduct of business negotiations;

will further take measures aimed at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of representatives of foreign organizations, enterprises, firms and banks concerned with

external trade, particularly as follows:

- by providing the necessary information, including information on legislation and procedures relating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ermanent representation by the above mentioned bodies;
- by examining as favourably as possible requests for the establishment of permanent representation and of offices for this purpose, including, where appropriate, the opening of joint offices by two or more firms.
- by encouraging the provision, on conditions as favourable as possible and equal for all representatives of the above/mentioned bodies, of hotel accommodation, means of communication, and of other facilities normally required by them, as well as of suitable business and residential premises for purposes of permanent representation;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uch measures to encourage greater participation by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in trade between participating States.

Economic and commercial information

The participating States,

Conscious of the growing role of economic and commercial information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Considering that economic information should be of such a nature as to allow adequate market analysis and to permit the preparation of medium and long term forecasts, thus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of a continuing flow of trade and a better utilization of commercial possibilities,

Expressing their readiness to improve the quality and increase the quantity and supply of economic and relevant administrative information,

Considering that the value of statistical information on the international level depends to a considerable extent on the possibility of its comparability,

will promote the publication and dissemination of economic and commercial information at regular intervals and as quickly as possible, in particular:

statistics concerning production, national income, budget, consumption and productivity;

- foreign trade statistics drawn up on the basis of comparable classification including breakdown by product with indication of volume and value, as well as country of origin or destination;



-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foreign trade;
- information allowing forecasts of development of the economy to assist in trade promotion, for example, information on the general orientation of national economic plans and programmes;
- other information to help businessmen in commercial contacts, for example, periodic directories, lists, and where possible, organizational charts of firms and organizations concerned with foreign trade;

will in addition to the above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the exchange of economic and commercial information through, where appropriate, joint commissions for economic,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national and joint chambers of commerce, and other suitable bodies;

will support a study, in the framework of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of the possibilities of creating a multilateral system of notif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foreign trade and changes therein;

will encourage international work on the harmonization of statistical nomenclatures, notably in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Marketing

The participating State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adapting production to the requirements of foreign markets in order to ensure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trade,

Conscious of the need of exporters to be as fully familiar as possible with and take account of the requirements of potential users,

will encourage organizations, enterprises and firms concerned with foreign trade to develop further the knowledge and techniques required for effective marketing;

will encourage the improvement of condi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to promote trade and to satisfy the needs of users in respect of imported products, in particular through market research and advertising measures as well as, where useful, the establishment of supply facilities, the furnishing of spare parts, the functioning of after sales services, and the training of the necessary local technical personnel;

will encourag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rade promotion, including marketing, and the work undertaken on these subjects within the international bodies, in particular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2. Industrial co-operation and projects of common interest

Industrial co-operation

Considering that industrial co-operation, being motivated by economic considerations, can

- create lasting ties thus strengthening long-term overall economic co- operation,
-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as well as to the expansion and diversification of international trade and to a wider utilization of modern technology,
- lead to the mutually advantageous utilization of economic complementarities through better use of all factors of production, and
- accelerate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all those who take part in such cooperation,

propose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the competent organizations, enterprises and firms of their countries;

consider that industrial co-operation may be facilitated by means of intergovernmental and other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note that in promoting industrial cooperation they should bear in mind the economic structures and the development levels of their countries;

note that industrial cooperation is implemented by means of contracts concluded between competent organizations, enterprises and firms on the basis of economic considerations;

express their willingness to promote measures designed to create favourable conditions for industrial co-operation;

recognize that industrial co-operation covers a number of forms of economic relations going beyond the framework of conventional trade, and that in concluding contracts on industrial co-operation the partners will determine jointly the appropriate forms and conditions of co-operation, taking into account their mutual interests and capabilities;

recognize further that, if it is in their mutual interest, concrete forms such as



the following may be useful for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cooperation: joint production and sale, specialization in production and sale, construction, adaptation and modernization of industrial plants, cooperation for the setting up of complete industrial installations with a view to thus obtaining part of the resultant products, mixed companies, exchanges of <<know-how>>, of technical information, of patents and of licences, and joint industrial research within the framework of specific co-operation projects;

recognize that new forms of industrial co-operation can be applied with a view to meeting specific needs;

note the importance of economic, commercial,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information such as to ensure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co-operation;

Consider it desirable:

- to improve the quality and the quantity of information relevant to industrial cooperation, in particular the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those relating to foreign exchange, general orientation of national economic plans and programmes as well as programme priorities and economic conditions of the market; and
- to disseminate as quickly as possible published documentation thereon;

will encourage all forms of exchang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f experience relevant to industrial co-operation, including through contacts between potential partners and, where appropriate, through joint commissions for economic, industrial,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national and joint chambers of commerce, and other suitable bodies;

consider it desirable, with a view to expanding industrial co-operation, to encourage the exploration of co-operation possibilities and the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projects and will take measures to this end, *inter alia*, by facilitating and increasing all forms of business contacts between competent organizations, enterprises and firms and between their respective qualified personnel;

note that the provisions adopted by the Conference relating to business contacts in the economic and commercial fields also apply to foreign organizations, enterprises and firms engaged in industrial co-oper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fic conditions of this cooperation, and will endeavour to ensure, in particular, the existence of appropriate working conditions for personnel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projects;

consider it desirable that proposals for industrial co-operation projects should

be sufficiently specific and should contain the necessary economic and technical data, in particular preliminary estimates of the cost of the project. information on the form of cooperation envisaged, and market possibilities, to enable potential partners to proceed with initial studies and to arrive at decisions in the shortest possible time;

will encourage the parties concerned with industrial co-operation to take measures to accelerate the conduct of negotiations for the conclusion of co-operation contracts,

recommend further the continued examination - for exampl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 of means of improving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o those concerned on general conditions of industrial co-operation and guidance on the preparation of contracts in this field;

consider it desirable to further improve condi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industrial co-operation project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the partners in industrial co-operation projects, including the legal protection of the various kinds of property involved;
- the consideration, in ways that are compatible with their economic systems, of the needs and possibilities of industrial co-oper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economic policy and particularly in national economic plans and programmes;

consider it desirable that the partners, when concluding industrial co-operation contracts, should devote due attention to provisions concerning the extension of the necessary mutual assistance and the provision of the necessary information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se contracts, in particular with a view to attaining the required technical level and quality of the products resulting from such cooperation;

recognize the usefulness of an increased participation of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in industrial co-operation projects.

Projects of common interest

The participating States,

Considering that their economic potentia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permit, through common efforts, long-term co-operation in the implementation, including at the regional or sub-regional level, of major that these may contribute to the speeding-up of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untries participating therein,

Considering it desirable that the competent organizations, enterprises and

firms of all countries should be given the possibility of indicating their interest in participating in such projects, and, in case of agreement, of taking part in their implementation,

Noting that the provisions adopted by the Conference relating to industrial cooperation are also applicable to projects of common interest,

regard it as necessary to encourage, where appropriate, the investigation by competent and interested organizations, enterprises and firms of the possibilities for the carrying out of projects of common interest in the fields of energy resources and of the exploitation of raw materials, as well as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regard it as desirable that organizations, enterprises and firms exploring the possibilities of taking part in projects of common interest exchange with their potential partners, through the appropriate channels, the requisite economic, legal, financial and technical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se projects;

consider that the fields of energy resources, in particular, petroleum, natural gas and coal, and the extraction and processing of mineral raw materials, in particular, iron ore and bauxite, are suitable ones for strengthening long-term economic co-operation and for the development of trade which could result;

consider that possibilities for projects of common interest with a view to longterm economic co-operation also exist in the following fields:

- exchanges of electrical energy within Europe with a view to utilizing the capacity of the electrical power stations as rationally as possible;
- co-operation in research for new sources of energy and, in particular,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 development of road networks and co-operation aimed at establishing a coherent navigable network in Europe;
- co-operation in research and the perfecting of equipment for multimodal transport operations and for the handling of containers;

recommend that the States interested in projects of common interest should consider under what conditions it would be possible to establish them, and if they so desire, create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their actual implementation.

3. Provisions concerning trade and industrial co-operation

Harmonization of standards

The participating States,

Recognizing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standards and technical regulations and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certification as an important means of eliminating technical obstacles to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ial co-operation, thereby facilitating their development and increasing productivity,

reaffirm their interest to achieve the widest possible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standards and technical regulations,

express their readiness to promote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other appropriate arrangements on acceptance of certificates of conformity with standards and technical regulations;

consider it desirable to increase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standardization, in particular by supporting the activities of intergovernmental and other appropriate organizations in this field.

Arbitration

The participating States,

Considering that the prompt and equitable settlement of disputes which may arise from commercial transactions relating to goods and services and contracts for industrial cooperation would contribute to expanding and facilitating trade and co-operation,

Considering that arbitration is an appropriate means of settling such disputes, recommend, where appropriate, to organizations, enterprises and firms in their countries, to include arbitration clauses in commercial contracts and industrial co-operation contracts, or in special agreements;

recommend that the provisions on arbitration should provide for arbitration under a mutually acceptable set of arbitration rules, and permit arbitration in a third country, taking into account existing intergovernmental and other agreements in this field.

Specific bilateral arrangements

The participating States,

Conscious of the need to facilitate trade and to promote the application of new forms of industrial co-operation,



will consider favourably the conclusion, in appropriate cases, of specific bilateral agreements concerning various problems of mutual interest in the fields of commercial exchanges and industrial co-operation, in particular with a view to avoiding double taxation and to facilitating the transfer of profits and the return of the value of the assets invested.

4. Science and technology

The participating States,

Convinced that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constitutes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strengthening of security and co-operation among them, in that it assists the effective solution of problems of common interest and the improvement of the conditions of human life,

Considering that in developing such co-operation, it is important to promote the sharing of information and experience, facilitating the study and transfer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chievements, as well as the access to such achievements on a mutually advantageous basis and in fields of co-operation agreed between interested parties,

Considering that it is for the potential partners, i.e. the competent organizations, institutions, enterprises, scientists and technologists of the participating States to determine the opportunities for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and to develop its details,

Affirming that such co-operation can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bilaterally and multilaterally at the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levels, for example, through intergovernmental and other agreements, international programmes, cooperative projects and commercial channels, while utilizing also various forms of contacts, including direct and individual contacts,

Aware of the need to take measures further to improv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them,

Possibilities for improving co-operation

Recognize that possibilities exist for further improv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and to this end, express their intention to remove obstacles to such cooperation, in particular through:

- the improvement of opportunities for the exchange and dissemination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among the parties interested i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and co-operation including information related to the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such co-operation;

- the expeditious implementation and improvement in organization, including programmes, of international visits of scientists and specialists in connexion with exchanges, conferences and co-operation;
- the wider use of commercial channels and activities for applie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and for the transfer of achievements obtained in this field while providing information on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and industrial property rights;

Fields of co-operation

Consider that possibilities to expand co-operation exist within the areas given below as examples, noting that it is for potential partners in the participating countries to identify and develop projects and arrangements of mutual interest and benefit:

Agriculture

Research into new methods and technologies for increasing the productivity of crop cultivation and animal husbandry; the application of chemistry to agriculture; the design,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of agricultural machinery; technologies of irrigation and other agricultural land improvement works;

Energy

New technologies of production, transport and distribution of energy aimed at improving the use of existing fuels and sources of hydroenergy, as well as research in the field of new energy sources, including nuclear, solar and geothermal energy;

New technologies, rational use of resources

Research on new technologies and equipment designed in particular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and to minimize or eliminate waste;

Transport technology

Research on the means of transport and the technology applied to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international, national and urban transport networks including container transport as well as transport safety;

Physics

Study of problems in high energy physics and plasma physics; research in the

field of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nuclear physics;

Chemistry

Research on problems in electrochemistry and the chemistry of polymers, of natural products, and of metals and alloy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improved chemical technology, especially materials processing;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latest achievements of chemistry to industry, construction and other sectors of the economy;

Meteorology and hydrology

Meteorological and hydrological research, including methods of collection, evaluation and transmission of data and their utilization for weather forecasting and hydrology forecasting;

Oceanography

Oceanographic research, including the study of air/sea interactions;

Seismological research

Study and forecasting of earthquakes and associated geological changes; development and research of technology of seism-resisting constructions;

Research on glaciology, permafrost and problems of life under conditions of cold

Research on glaciology and permafrost; transportation and construction technologies; human adaptation to climatic extremes and changes in the living conditions of indigenous populations;

Compute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Development of computers as well as of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ystems; technology associated with computers and telecommunications, including their use for management systems, for production processes, for automation, for the study of economic problems, in scientific research and for the collection, processing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Space research

Space exploration and the study of the earth's natural resources and the natural environment by remote sensing in particular with the assistance of satellites and rocketprobes;

Medicine and public health

Research on cardiovascular, tumour and virus diseases, molecular biology, neurophysiology; development and testing of new drugs; study of contemporary problems of pediatrics, gerontology and the organization and techniques of medical services;

Environmental research

Research on specific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roblems related to human environment.

Forms and methods of co-operation

Express their view that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should, in particular, employ the following forms and methods:

- exchange and circulation of books, periodicals and othe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ublications and papers among interested organization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stitutions, enterprises and scientists and technologists, as well a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programmes for the abstracting and indexing of publications;
- exchanges and visits as well as other direct contacts and communications among scientists and technologists, on the basis of mutual agreement and other arrangements, for such purposes as consultations, lecturing and conducting research, including the use of laboratories, scientific libraries, and other documentation centres in connexion therewith;
- holding of international and national conferences, symposia, seminars, courses and other meetings of a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haracter, which would include the participation of foreign scientists and technologists;
- joint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of programmes and projects of mutual interest on the basis of consultation and agreement among all parties concerned, including, where possible and appropriate, exchanges of experience and research results, and correlation of research programmes, betwee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 use of commercial channels and methods for identifying and transferring technological and scientific developments, including the conclusion of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arrangements between firms and enterprises in fields agreed upon between them and for carrying out, where appropriate,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mes and projects;

consider it desirable that periodic exchanges of views and information take place on scientific policy, in particular on general problems of orientation and administration of research and the question of a better use of large-scale scientific and experimental equipment on a co-operative basis;

recommend that, in developing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full use be made of existing practices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including that of a regional or sub-regional character, together with the forms and methods of co-operation described in this document;

recommend further that more effective utilization be made of the possibilities and capabilities of exis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ter-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concerned with science and technology, for improving exchanges of information and experience, as well as for developing other forms of cooperation in fields of common interest, for example:

- in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study of possibilities for expanding multilateral co-operation, taking into account models for projects and research used in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for sponsoring conferences, symposia, and study and working groups such as those which would bring together younger scientists and technologists with eminent specialists in their field;
- through their participation in particular international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programmes, including those of UNESCO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ursuit of continuing progress towards the objectives of such programmes, notably those of UNISIST with particular respect to information policy guidance, technical advice, information contributions and data processing.

5. Environment

The participating States,

Affirming that the protection and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nature and the rational utilization of its resources in the interests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is one of the tasks of major importance to the well-being of peoples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of all countries and that many environmental problems, particularly in Europe, can be solved effectively only through close international cooperation,

Acknowledging that each of the participati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ought to ensure, in a spirit of co-operation, that activities carried out on its territory do not cause degradation of the environment

in another State or in areas lying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

Considering that the success of any environmental policy presupposes that all population groups and social forces, aware of their responsibilities, help to protect and improve the environment, which necessitates continued and thorough educative action, particularly with regard to youth.

Affirming that experience has shown that economic development and technological progress must be compatible with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the preserv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that damage to the environment is best avoided by preventive measures; and that the ecological balance must be preserved in the exploitation and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Aims of co-operation

Agree to the following aims of co-operation, in particular:

- to study, with a view to their solution, those environmental problems which, by their nature, are of a multilateral, bilateral, regional or sub-regional dimension; as well as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environmental problems;
-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by the comparison and, if appropriate, the harmonization of methods of gathering and analyzing facts, by improving the knowledge of pollution phenomena and rational utilization of natural resources, by the exchange of information, by the harmonization of definitions and the adoption, as far as possible, of a common terminology in the field of the environment;
- to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bring environmental policies closer together and, where appropriate and possible, to harmonize them;
- to encourage, where possible and appropriate, national and international efforts by their interested organizations, enterprises and firms in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improvement of equipment designed for monitoring, protecting and enhancing the environment.

Fields of co-operation

To attain these aims, the participating States will make use of every suitable opportunity to co-operate in the field of environment and, in particular, within the areas described below as examples:

Control of air pollution

Desulphurization of fossil fuels and exhaust gases, pollution control of heavy metals, particles, aerosols, nitrogen oxides, in particular those emitted by transport, power stations, and other industrial plants; systems and methods of observation and control of air pollution and its effects, including long- range transport of air pollutants;

Water pollution control and fresh water utilization

Prevention and control of water pollution, in particular of transboundary rivers and international lakes; techniqu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water and further development of ways and means for industrial and municipal sewage effluent purification; methods of assessment of fresh water resources and the improvement of their utilization, in particular by developing methods of production which are less polluting and lead to less consumption of fresh water;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participating States, and especially the Mediterranean Sea, from pollutants emanating from land-based sources and those from ships and other vessels, notably the harmful substances listed in Annexes I and II to the London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the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problems of maintaining marine ecological balances and food chains, in particular such problems as may arise from th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biological and mineral resources of the seas and the sea-bed;

Land utilization and soils

Problems associated with more effective use of lands, including land amelioration, reclamation and recultivation; control of soil pollution, water and air erosion, as well as other forms of soil degradation; maintaining and increasing the productivity of soils with due regard for the possible negative effects of the application of chemical fertilizers and pesticides;

Nature conservation and nature reserves

Protection of nature and nature reserves; conservation and maintenance of existing genetic resources, especially rare animal and plant species; conservation of natural ecological systems; establishment of nature reserves and other protected landscapes and areas, including their use for research, tourism, recreation and other purposes;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conditions in areas of human settlement

Environmental conditions associated with transport, housing, working areas, urban development and planning, water supply and sewage disposal systems; assessment of harmful effects of noise, and noise control methods; collection, treatment and utilization of wastes, including the recovery and recycling of materials; research on substitutes for nonbiodegradable substances;

Fundamental research, monitoring, forecasting and assessment of environmental changes

Study of changes in climate, landscapes and ecological balances under the impact of both natural factors and human activities; forecasting of possible genetic changes in flora and fauna as a result of environmental pollution; harmonization of statistical data, development of scientific concepts and systems of monitoring networks, standardized methods of observation, measurement and assessment of changes in the biospher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pollution levels and degradation of the environment upon human health; study and development of criteria and standards for various environmental pollutants and regulation regarding production and use of various products;

Leg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Leg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cluding procedures for establish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Forms and methods of co-operation

The participating States declare that problems relating to the protection and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 will be solved on both a bilateral and a multilateral, including regional and sub-regional, basis, making full use of existing pattern and forms of co-operation. They will develop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nvironment in particular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tockholm 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 relevant resolution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nd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Prague symposium on environmental problems.

The participating States are resolved that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nvironment will be implemented in particular through:

- exchanges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ation and research results, including information on the means of determining the possible effects on the environment of technical and economic activities;

- organization of conferences, symposia and meetings of experts;
- exchanges of scientists, specialists and trainees;
- joint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of programmes and projects for the study and solution of various problem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 harmonization, where appropriate and necessa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standards and norms, in particular with the object of avoiding possible difficulties in trade which may arise from efforts to resolve ecological problems of production processes and which relate to the achievement of certain environmental qualities in manufactured products,
- consultations on various aspect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s agreed upon among countries concerned, especially in connexion with problems which could have international consequences.

The participating States will further develop such co-operation by:

- promoting the progressive development, cod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as one means of preserving and enhancing the human environment, including principles and practices, as accepted by them, relating to pollution and other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activities within the jurisdiction or control of their States affecting other countries and regions;
- supporting and promoting the implementation of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to which they are parties, in particular those designed to prevent and combat marine and fresh water pollution, recommending States to ratify Conventions which have already been signed, as well as considering possibilities of accepting other appropriate Conventions to which they are not parties at present;
- advocating the inclusion, where appropriate and possible, of the various areas of cooperation into the programmes of work of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supporting such co-oper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mmission and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and taking into account the work of other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which they are members,
- making wider use, in all types of co-operation, of information already available from national and international sources, including internationally agreed criteria, and utilizing the possibilities and capabilities of various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participating States agree on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on specific measures:

- to develop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 extensive programme for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long-range transport of air pollutants, starting with sulphur dioxide and with possible extension to other pollutants, and to this end to take into account basic elements of a co-operation programme which were identified by the experts who met in Oslo in December 1974 at the invitation of the Norwegian Institute of Air Research;
- to advocate tha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a study be carried out of procedures and relevant experience relating to the activities of Governments in developing the capabilities of their countries to predict adequately environmental consequences of economic activities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6. Co-operation in other areas

Development of transport

The participating States,

Considering that the improvement of the conditions of transport constitutes one of the factors essential to the development of co-operation among them,

Considering that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transport and the solution of existing problems by employing appropriate national and international means,

Taking into account the work being carried out on these subjects by exis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specially by the Inland Transport Committee of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note that the speed of technical progress in the various fields of transport makes desirable a development of co-operation and an increase in exchanges of information among them;

declare themselves in favour of a simplification and a harmonization of administrative formaliti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nsport, in particular at frontiers;

consider it desirable to promote, while allowing for their particular national circumstances in this sector, the harmonization of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provisions concerning safety in road, rail, river, air and sea transport;

express their intention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inland transport of passengers and goods as well as the possibilities of adequate participation in such transport on the basis of reciprocal advantage;

declare themselves in favour, with due respect for their rights and international commitments, of the elimination of disparities arising from the legal provisions applied to traffic on inland waterways which are subject to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in particular, of the disparity in the application of those provisions; and to this end invite the member States of the Central Commission for the Navigation of the Rhine, of the Danube Commission and of other bodies to develop the work and studies now being carried out, in particular within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express their willingness, with a view to improving international rail transport and with due respect for their rights and international commitments, to work towards the elimination of difficulties arising from disparities in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provisions governing the reciprocal railway transport of passengers and goods between their territories;

express the desire for intensification of the work being carried out by exis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field of transport, especially that of the Inland Transport Committee of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and express their intention to contribute thereto by their efforts;

consider that examination by the participating States of the possibility of their accession to the different conventions or to membership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pecializing in transport matters, as well as their efforts to implement conventions when ratified, could contribute to the strengthening of their co-operation in this field.

Promotion of tourism

The participating States,

Aware of the contribution made by international tourism to the development of mutual understanding among peoples, to increased knowledge of other countries' achievements in various fields, as well as to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progress,

Recogniz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 of tourism and measures taken in other areas of economic activity, express their intention to encourage increased tourism on both an individual and group basis in particular by:

- encouraging the improvement of the tourist infrastructure and co-operation in this field;
- encouraging the carrying out of joint tourist projects including technical cooperation, particularly where this is suggested by territorial proximity and the convergence of tourist interests;
- encouraging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ncluding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tudies, data and documentation relating to tourism, and by improving statistics with a view to facilitating their comparability;
- dealing in a positive spirit with questions connected with the allocation of financial means for tourist travel abroad, having regard to their economic possibilities, as well as with those connected with the formalities required for such travel, taking into account other provisions on tourism adopted by the Conference;
- facilitating the activities of foreign travel agencies and passenger transport companies in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ourism;
- encouraging tourism outside the high season;
- examining the possibilities of exchanging specialists and students in the field of tourism, with a view to improving their qualifications;
- promoting conferences and symposia on the planning and development of tourism;

consider it desirable to carry out in the appropriate international framework, and with the co-operation of the relevant national bodies, detailed studies on tourism, in particular:

- a comparative study on the status and activities of travel agencies as well as on ways and means of achieving better co-operation among them;
- a study of the problems raised by the seasonal concentration of vacations, with the ultimate objective of encouraging tourism outside peak periods;
- studies of the problems arising in areas where tourism has injured the environment;

consider also that interested parties might wish to study the following questions:

- uniformity of hotel classification; and

- tourist routes comprising two or more countries;

will endeavour, where possible, to ensure that the development of tourism does not injure the environment and the artistic, historic and cultural heritage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will pursue their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ourism bilaterally and multilaterally with a view to attaining the above objectives.

Economic and social aspects of migrant labour

The participating States,

Considering that the movements of migrant workers in Europe have reached substantial proportions, and that they constitute an important economic, social and human factor for host countries as well as for countries of origin,

Recognizing that workers' migrations have also given rise to a number of economic, social, human and other problems in both the receiving countries and the countries of origin,

Taking due account of the activities of the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ore particularly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n this area,

are of the opinion that the problems arising bilaterally from the migration of workers in Europe as well as between the participating States should be dealt with by the parties directly concerned,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in their mutual interest, in the light of the concern of each State involved to take due account of the requirements resulting from its socio-economic situation, having regard to the obligation of each State to comply with the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to which it is party, and with the following aims in view:

to encourage the efforts of the countries of origin directed towards increasing the possibilities of employment for their nationals in their own territories, in particular by developing economic co-operation appropriate for this purpose and suitable for the host countries and the countries of origin concerned;

to ensure, through collaboration between the host country and the country of origin,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orderly movement of workers might take place, while at the same time protecting their personal and social welfare and, if appropriate, to organize the recruitment of migrant workers and the provision of elementary language and vocational training;

to ensure equality of rights between migrant workers and nationals of the host

countries with regard to conditions of employment and work and to social security, and to endeavour to ensure that migrant workers may enjoy satisfactory living conditions, especially housing conditions;

to endeavour to ensure, as far as possible, that migrant workers may enjoy the same opportunities as nationals of the host countries of finding other suitable employment in the event of unemployment;

to regard with favour the provision of vocational training to migrant workers and, as far as possible, free instruction in the language of the host country, in the framework of their employment;

to confirm the right of migrant workers to receive, as far as possible, regular information in their own language, covering both their country of origin and the host country;

to ensure that the children of migrant workers established in the host country have access to the education usually given ther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 children of that country and, furthermore, to permit them to receive supplementary education in their own language, national culture, history and geography;

to bear in mind that migrant workers, particularly those who have acquired qualifications, can by returning to their countries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help to remedy any deficiency of skilled labour in their country of origin;

to facilitate, as far as possible, the reuniting of migrant workers with their families;

to regard with favour the efforts of the countries of origin to attract the savings of migrant workers, with a view to increasing, within the framework of their economic development, appropriate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thereby facilitating the reintegration of these workers on their return home.

Training of personnel

The participating States,

Conscious of the importance of the training and advanced training of professional staff and technicians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every country, declare themselves willing to encourage co-operation in this field notably by promoting exchange of information on the subject of institutions, programmes and methods of training and advanced training open to professional staff and technicians in the various sectors of economic activity and especially in those of management, public planning, agriculture and commercial and banking techniques;

consider that it is desirable to develop, under mutually acceptable conditions, exchanges of professional staff and technicians, particularly through training activities, of which it would be left to the competent and interested bodies in the participating States to discuss the modalities - duration, financing, education and qualification levels of potential participants;

declare themselves in favour of examining, through appropriate channels, the possibilities of cooperating on the organization and carrying out of vocational training on the job, more particularly in professions involving modern techniques.

Questions relating to Security and Co-operation in the Mediterranean

The participating States,

Conscious of the geographical, historical,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aspects of their relationship with the non-participating Mediterranean States,

Convinced that security in Europe is to be considered in the broader context of world security and is closely linked with security in the Mediterranean area as a whole, and that accordingly the process of improving security should not be confined to Europe but should extend to other parts of the world, and in particular to the Mediterranean area,

Believing that the strengthening of security and the intensification of co-operation in Europe would stimulate positive processes in the Mediterranean region, and expressing their intention to contribute towards peace, security and justice in the region, in which ends the participating States and the non-participating Mediterranean States have a common interest,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ir mutual economic relations with the nonparticipating Mediterranean States, and conscious of their common interest in the further development of co-operation,

Noting with appreciation the interest expressed by the non-participating Mediterranean States in the Conference since its inception, and having duly taken their contributions into account,

Declare their intention:

-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good-neighbourly relations with the non-participating Mediterranean States in conformity with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on which their relations are based, and with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and accordingly, in this context, to conduct their relations with the non-participating Mediterranean States in the spirit of the principles set forth in the Declaration on Principles Guiding Relations between Participating States;
- to seek, by further improving their relations with the non-participating Mediterranean States, to increase mutual confidence, so as to promote security and stability in the Mediterranean area as a whole;
- to encourage with the non-participating Mediterranean States the development of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in the various fields of economic activity, especially by expanding commercial exchanges, on the basis of a common awareness of the necessity for stability and progress in trade relations, of their mutual economic interests, and of differences in the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thereby promoting their economic advancement and well-being;

- to contribute to a diversified development of the economies of the non-participating Mediterranean countries, whilst taking due account of their national development objectives, and to cooperate with them, especially in the sectors of industry,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ir efforts to achieve a better utilization of their resources, thus promoting a more harmonious development of economic relations;
- to intensify their efforts and their co-operation on a bilateral and multilateral basis with the non-participating Mediterranean States directed towards the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 of the Mediterranean, especially the safeguarding of the biological resources and ecological balance of the sea, by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pollution; to this end, and in view of the present situation, to cooperate through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 particular within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 to promote further contacts and co-operation with the non-participating Mediterranean States in other relevant fields.

In order to advance the objectives set forth above, the participating States also declare their intention of maintaining and amplifying the contacts and dialogue as initiated by the CSCE with the non-participating Mediterranean States to include all the States of the Mediterranean, with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peace, reducing armed forces in the region, strengthening security, lessening tensions in the region, and widening the scope of cooperation, ends in which all share a common interest, as well as with the purpose of defining further common objectives.

The participating States would seek, in the framework of their multilateral efforts, to encourage progress and appropriate initiatives and to proceed to an exchange of views on the attainment of the above purposes.

Co-operation in Humanitarian and Other Fields

The participating States,

Desiring to contribute to the strengthening of peace and understanding among peoples and to the spiritual enrichment of the human personality without distinction as to race, sex, language or religion,

Conscious that increased cultural and educational exchanges, broader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contacts between people, and the solution of humanitarian problems will contribute to the attainment of these aims,

Determined therefore to cooperate among themselves, irrespective of their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ystems, in order to create better conditions in the above fields, to develop and strengthen existing forms of co-operation and to work out new ways and means appropriate to these aims,

Convinced that this co-operation should take place in full respect for the principles guiding relations among participating States as set forth in the relevant document,

Have adopted the following:

1. Human Contacts

The participating States,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contacts to be an important element in the strengthening of friendly relations and trust among peoples,

Affirming, in relation to their present effort to improve conditions in this area, the importance they attach to humanitarian considerations,

Desiring in this spirit to develop, with the continuance of détente, further efforts to achieve continuing progress in this field

And conscious that the questions relevant hereto must be settled by the States concerned under mutually acceptable conditions,

Make it their aim to facilitate freer movement and contacts,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whether privately or officially, among person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of the participating States, and to contribute to the solution of the humanitarian problems that arise in that connexion,

Declare their readiness to these ends to take measures which they consider

appropriate and to conclude agreements or arrangements among themselves, as may be needed, and

Express their intention now to proce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following:

(a) Contacts and Regular Meetings on the Basis of Family Ties

In order to promote further development of contacts on the basis of family ties the participating States will favourably consider applications for travel with the purpose of allowing persons to enter or leave their territory temporarily, and on a regular basis if desired, in order to visit members of their families.

Applications for temporary visits to meet members of their families will be dealt with without distinction as to the country of origin or destination: existing requirements for travel documents and visas will be applied in this spirit. The preparation and issue of such documents and visas will be effected within reasonable time limits, cases of urgent necessity - such as serious illness or death - will be given priority treatment. They will take such steps as may be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fees for official travel documents and visas are acceptable.

They confirm that the presentation of an application concerning contacts on the basis of family ties will not modify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applicant or of members of his family.

(b) Reunification of Families

The participating States will deal in a positive and humanitarian spirit with the applications of persons who wish to be reunited with members of their family, with special attention being given to requests of an urgent character - such as requests submitted by persons who are ill or old.

They will deal with applications in this field as expeditiously as possible

They will lower where necessary the fees charged in connexion with these applications to ensure that they are at a moderate level.

Applications for the purpose of family reunification which are not granted may be renewed at the appropriate level and will be reconsidered at reasonably short intervals by the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residence or destination, whichever is concerned-, under such circumstances fees will be charged only when applications are granted.

Persons whose applications for family reunification are granted may bring with them or ship their household and personal effects; to this end the participating States will use all possibilities provided by existing regulations.

Until members of the same family are reunited meetings and contacts between them may take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modalities for contacts on the basis of family ties.

The participating States will support the efforts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concerned with the problems of family reunification.

They confirm that the presentation of an application concerning family reunification will not modify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applicant or of members of his family.

The receiving participating State will take appropriate care with regard to employment for persons from other participating States who take up permanent residence in that State in connexion with family reunification with its citizens and see that they are afforded opportunities equal to those enjoyed by its own citizens for education, medical assistance and social security.

(c) Marriage between Citizens of Different States

The participating States will examine favourably and on the basis of humanitarian considerations requests for exit or entry permits from persons who have decided to marry a citizen from another participating State.

The processing and issuing of the documents required for the above purposes and for the marriage wi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accepted for family reunification.

In dealing with requests from couples from different participating States, once married, to enable them and the minor children of their marriage to transfer their permanent residence to a State in which either one is normally a resident, the participating States will also apply the provisions accepted for family reunification.

(d) Travel for Personal or Professional Reasons

The participating States intend to facilitate wider travel by their citizens for personal or professional reasons and to this end they intend in particular:

- gradually to simplify and to administer flexibly the procedures for exit and entry;

- to ease regulations concerning movement of citizens from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in their territory, with due regard to security requirements.

They will endeavour gradually to lower, where necessary, the fees for visas and official travel documents.

They intend to consider, as necessary, means - including, in so far as appropriate, the conclusion of multilateral or bilateral consular conventions or other relevant agreements or understandings - for the improvement of arrangements to provide consular services, including legal and consular assistance.

* * *

They confirm that religious faith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practising within the constitutional framework of the participating States, and their representatives can, in the field of their activities, have contacts and meetings among themselves and exchange information.

*(e) Improvement of Conditions for Tourism
on an Individual or Collective Basis*

The participating States consider that tourism contributes to a fuller knowledge of the life, culture and history of other countries, to the growth of understanding among peoples, to the improvement of contacts and to the broader use of leisure. They inten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ourism, on an individual or collective basis, and, in particular, they intend:

- to promote visits to their respective countries by encouraging the provision of appropriate facilities and the simplification and expediting of necessary formalities relating to such visits;
- to increase, on the basis of appropriate agreements or arrangements where necessary, co-operation in the development of tourism, in particular by considering bilaterally possible ways to increase information relating to travel to other countries and to the reception and service of tourists, and other related questions of mutual interest.

(f) Meetings among Young People

The participating States intend to further the development of contacts and exchanges among young people by encouraging:

- increased exchanges and contacts on a short or long term basis among young people working, training or undergoing education through bilateral or multilateral

- agreements or regular programmes in all cases where it is possible;
- study by their youth organizations of the question of possible agreements relating to frameworks of multilateral youth co-operation;
 - agreements or regular programmes relating to the organization of exchanges of students, of international youth seminars, of courses of professional training and foreign language study;
 - the further development of youth tourism and the provision to this end of appropriate facilities;
 - the development, where possible, of exchanges, contacts and co-operation on a bilateral or multilateral basis between their organizations which represent wide circles of young people working, training or undergoing education;
 - awareness among youth of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mutual understanding and of strengthe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nfidence among peoples.

(g) Sport

In order to expand existing links an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port the participating States will encourage contacts and exchanges of this kind, including sports meetings and competitions of all sorts, on the basis of the established international rules, regulations and practice.

(h) Expansion of Contacts

By way of further developing contacts among 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associations, including women's organizations, the participating States will facilitate the convening of meetings as well as travel by delegations, groups and individuals.

2. Information

The participating States,

Conscious of the need for an ever wide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various aspects of life in other participating States,

Acknowledging the contribution of this process to the growth of confidence between peoples,

Desiring, with the development of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participating States and with the further improvement of their relations, to continue

further efforts towards progress in this fiel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from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and of a better acquaintance with such information,

Emphasizing therefore the essential and influential role of the press, radio, television, cinema and news agencies and of the journalists working in these fields,

Make it their aim to facilitate the freer and wider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f all kinds, to encourag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other countries, and. to improve the conditions under which journalists from one participating State exercise their profession in another participating State, and

Express their intention in particular:

*(a) Improvement of the Circulation of,
Access to, and Exchange of Information*

(i) Oral Information

- To facilitate the dissemination of oral information through the encouragement of lectures and lecture tours by personalities and specialists from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as well as exchanges of opinions at round table meetings, seminars, symposia, summer schools, congresses and other bilateral and multilateral meetings.

(ii) Printed Information

- To facilitate the improvement of the dissemination, on their territory, of newspapers and printed publications, periodical and non-periodical, from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For this purpose:

they will encourage their competent firms and organizations to conclude agreements and contracts designed gradually to increase the quantities and the number of titles of newspapers and publications imported from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These agreements and contracts should in particular mention the speediest conditions of delivery and the use of the normal channels existing in each country for the distribution of its own publications and newspapers, as well as forms and means of payment agreed between the parties making it possible to achieve the objectives aimed at by these agreements and contracts;

where necessary, they wi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achieve the above

objectives and to implement the provisions contained in the agreements and contracts.

-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access by the public to periodical and nonperiodical printed publications imported on the bases indicated above. In particular:

they will encourage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places where these publications are on sale,

they will facilitate the availability of these periodical publications during congresses, conferences, official visits and other international events and to tourists during the season,

they will develop the possibilities for taking out subscriptions according to the modalities particular to each country;

they will improve the opportunities for reading and borrowing these publications in large public libraries and their reading rooms as well as in university libraries.

They intend to improve the possibilities for acquaintance with bulletins of official information issued by diplomatic missions and distributed by those missions on the basis of arrangements acceptable to the interested parties.

(iii) Filmed and Broadcast Information

- To promote the improvement of the dissemination of filmed and broadcast information. To this end:

they will encourage the wider showing and broadcasting of a greater variety of recorded and filmed information from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illustrating the various aspects of life in their countries and received on the basis of such agreements or arrangements as may be necessary between the organizations and firms directly concerned;

they will facilitate the import by competent organizations and firms of recorded audio-visual material from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The participating States note the expansion in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broadcast by radio, and express the hope for the continuation of this process, so as to meet the interest of mutual understanding among peoples and the aims set forth by this Conference.

(b)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formation

- To encourag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formation on the basis of short or long term agreements or arrangements. In particular:

they will favour increased co-operation among mass media organizations, including press agencies, as well as among publishing houses and organizations:

they will favour co-operation among public or private, national or international radio and television organizations, in particular through the exchange of both live and recorded radio and television programmes, and through the joint production and the broadcasting and distribution of such programmes;

they will encourage meetings and contacts both between journalists organizations and between journalists from the participating States;

they will view favourably the possibilities of arrangements between periodical publications as well as between newspapers from the participating States, for the purpose of exchanging and publishing articles;

they will encourage the exchange of technical information as well as the organization of joint research and meetings devoted to the exchange of experience and views between experts in the field of the press, radio and television.

(c)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for Journalists

The participating States, desiring to improve the conditions under which journalists from one participating State exercise their profession in another participating State, intend in particular to:

- examine in a favourable spirit and within a suitable and reasonable time scale requests from journalists for visas;
- grant to permanently accredited journalists of the participating States, on the basis of arrangements, multiple entry and exit visas for specified periods;
- facilitate the issue to accredited journalists of the participating States of permits for stay in their country of temporary residence and, if and when these are necessary, of other official papers which it is appropriate for them to have;
- ease, on a basis of reciprocity, procedures for arranging travel by journalists of the participating States in the country where they are exercising their profession, and to provide progressively greater opportunities for such travel, subject to the observance of regulations relating to the existence of areas closed for security

reasons,

- ensure that requests by such journalists for such travel receive, in so far as possible, an expeditious response, taking into account the time scale of the request;
- increase the opportunities for journalists of the participating States to communicate personally with their sources, including organizations and official institutions;
- grant to journalists of the participating States the right to import, subject only to its being taken out again, the technical equipment (photographic, cinematographic, tape recorder, radio and television) necessary for the exercise of their profession;¹
- enable journalists of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whether permanently or temporarily accredited, to transmit completely, normally and rapidly by means recognized by the participating States to the information organs which they represent, the results of their professional activity, including tape recordings and undeveloped film, for the purpose of publication or of broadcasting on the radio or television.

The participating States reaffirm that the legitimate pursuit of their professional activity will neither render journalists liable to expulsion nor otherwise penalize them. If an accredited journalist is expelled, he will be informed of the reasons for this act and may submit an application for re-examination of his case.

3. Co-operation and Exchanges in the Field of Culture

The participating States

Considering that cultural exchanges and co-operation contribute to a better comprehension among people and among peoples, and thus promote a lasting understanding among States,

Confirming the conclusions already formulated in this field at the multilateral level, particularly at th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in Europe, organized by UNESCO in Helsinki in June 1972, where interest was manifested in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broadest possible social groups in an increasingly diversified cultural life,

Desiring, with the development of mutual confidence and the further

¹ While recognizing that appropriate local personnel are employed by foreign journalists in many instances, the participating States note that the above provisions would be applied, subject to the observance of the appropriate rules, to persons from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who are regularly and professionally engaged as technicians, photographers or cameramen of the press, radio, television or cinema.



improvement of relations between the participating States, to continue further efforts toward progress in this field,

Disposed in this spirit to increase substantially their cultural exchanges, with regard both to persons and to cultural works, and to develop among them an active co-operation, both at the bilateral and the multilateral level, in all the fields of culture,

Convinced that such a development of their mutual relations will contribute to the enrichment of the respective cultures, while respecting the originality of each, as well as to the reinforcement among them of a consciousness of common values, while continuing to develop cultural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of the world,

Declare that they jointly set themselves the following objectives:

- (a) to develop the mutual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a view to a better knowledge of respective cultural achievements,
- (b) to improve the facilities for the exchange and for the dissemination of cultural property,
- (c) to promote access by all to respective cultural achievements,
- (d) to develop contacts and co-operation among persons active in the field of culture,
- (e) to seek new fields and forms of cultural co-operation,

Thus give expression to their common will to take progressive, coherent and long-term action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present declaration; and

Express their intention now to proce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following:

Extension of Relations

To expand and improve at the various levels co-operation and links in the field of culture, in particular by:

- concluding, where appropriate, agreements on a bilateral or multilateral basis, providing for the extension of relations among competent State institu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he field of culture, as well as among people engaged in cultural activities,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both for flexibility and the fullest possible use of existing agreements, and bearing in mind that agreements and also other arrangements constitute important means of developing cultural cooperation and exchanges;

-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direct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mong relevant State institu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cluding, where necessary, such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carried out on the basis of special agreements and arrangements;
- encouraging direct contacts and communications among persons engaged in cultural activities, including, where necessary, such contacts and communications carried out on the basis of special agreements. and arrangements.

Mutual Knowledge

Within their competence to adopt, on a bilateral and multilateral level, appropriate measures which would give their peoples a more comprehensive and complete mutual knowledge of their achievements in the various fields of culture, and among them:

- to examine jointly, if necessary with the assistance of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possible creation in Europe and the structure of a bank of cultural data, which would collect information from the participating countries and make it available to its correspondents on their request, and to convene for this purpose a meeting of experts from interested States;
- to consider, if necessary in conjunction with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ays of compiling in Europe an inventory of documentary films of a cultural or scientific nature from the participating States;
- to encourage more frequent book exhibitions and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organizing periodically in Europe a large-scale exhibition of books from the participating States;
- to promote the systematic exchange, between the institutions concerned and publishing houses, of catalogues of available books as well as of pre-publication material which will include, as far as possible, all forthcoming publications; and also to promote the exchange of material between firms publishing encyclopaedias, with a view to improving the presentation of each country;
- to examine jointly questions of expanding and improving exchanges of information in the various fields of culture, such as theatre, music, library work as well as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Exchanges and Dissemination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facilities for exchanges and the dissemination of cultural property, by appropriate means, in particular by:

- studying the possibilities for harmonizing and reducing the charg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ommercial exchanges of books and other cultural materials, and also for new means of insuring works of art in foreign exhibitions and for reducing the risks of damage or loss to which these works are exposed by their movement;
- facilitating the formalities of customs clearance, in good time for programmes of artistic events, of the works of art, materials and accessories appearing on lists agreed upon by the organizers of these events;
- encouraging meetings among representatives of competent organizations and relevant firms to examine measures within their field of activity - such as the simplification of orders, time limits for sending supplies and modalities of payment - which might facilitate international commercial exchanges of books;
- promoting the loan and exchange of films among their film institutes and film libraries;
- encouraging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mong interested parties concerning events of a cultural character foreseen in the participating States, in fields where this is most appropriate, such as music, theatre and the plastic and graphic arts,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a calendar of such events, with the assistance, where necessary, of the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encouraging a study of the impact which the foreseeable development, and a possible harmonization among interested parties, of the technical means used for the dissemination of culture might have on the development of cultural co-operation and exchanges, while keeping in view the preservation of the diversity and originality, of their respective cultures;
- encouraging, in the way they deem appropriate, within their cultural policies, the further development of interest in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conscious of the merits and the value of each culture;
- endeavouring to ensure the full and effective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conventions on copyrights and on circulation of cultural property to which they are party or to which they may decide in the future to become party.

Access

To promote fuller mutual access by all to the achievements - works, experiences and performing arts - in the various fields of culture of their countries, and to that end to make the best possible efforts, in accordance with their competence, more particularly:

- to promote wider dissemination of books and artistic works, in particular by such means as:

facilitating, while taking full account of the international copyright conventions to which they are party, international contacts and communications between authors and publishing houses as well as other cultural institutions, with a view to a more complete mutual access to cultural achievements;

recommending that, in determining the size of editions, publishing houses take into account also the demand from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and that rights of sale in other participating States be granted, where possible, to several sales organizations of the importing countries, by agreement between interested partners;

encouraging competent organizations and relevant firms to conclude agreements and contracts and contributing, by this means, to a gradual increase in the number and diversity of works by authors from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available in the original and in translation in their libraries and bookshops;

promoting, where deemed appropriate,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sales outlets where books by authors from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imported in the original on the basis of agreements and contracts, and in translation, are for sale;

promoting, on a wider scale, the translation of works in the sphere of literature and other fields of cultural activity, produced in the languages of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especially from the less widely-spoken languages, and the publication and dissemination of the translated works by such measures as:

encouraging more regular contacts between interested publishing houses;

developing their efforts in the basic and advanced training of translators;

encouraging, by appropriate means, the publishing houses of their

countries to publish translations;

facilitating the exchange between publishers and interested institutions of lists of books which might be translated;

promoting between their countries the professional activity and co-operation of translators;

carrying out joint studies on ways of further promoting translations and their dissemination;

improving and expanding exchanges of books, bibliographies and catalogue cards between libraries;

- to envisage other appropriate measures which would permit, where necessary by mutual agreement among interested parties, the facilitation of access to their respective cultural achievements, in particular in the field of books;
- to contribute by appropriate means to the wider use of the mass media in order to improve mutual acquaintance with the cultural life of each;
- to seek to develop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to preserve their links with their national culture, and also to adapt themselves to their new cultural environment;
- to encourage the competent bodies and enterprises to make a wider choice and effect wider distribution of full-length and documentary films from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and to promote more frequent non-commercial showings, such as premières, film weeks and festivals, giving due consideration to films from countries whose cinematographic works are less well known;
- to promote, by appropriate means, the extension of opportunities for specialists from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to work with materials of a cultural character from film and audio-visual archiv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existing rules for work on such archival materials;
- to encourage a joint study by interested bodies, where appropriate with the assistance of the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the expediency and the condi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 repertory of their recorded television programmes of a cultural nature, as well as of the means of viewing them rapidly in order to facilitate their selection and possible acquisition.

Contacts and Co-operation

To contribute, by appropriate means, to the development of contacts and co-operation in the various fields of culture, especially among creative artists and people engaged in cultural activities, in particular by making efforts to:

- promote for persons active in the field of culture, travel and meetings including, where necessary, those carried out on the basis of agreements, contracts or other special arrangements and which are relevant to their cultural co-operation;
- encourage in this way contacts among creative and performing artists and artistic groups with a view to their working together, making known their works in other participating States or exchanging views on topics relevant to their common activity;
- encourage, where necessary through appropriate arrangements, exchanges of trainee and specialists and the granting of scholarships for basic and advanced training in various fields of culture such as the arts and architecture, museums and libraries, literary studies and translation, and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favourable conditions of reception in their respective institutions;
- encourage the exchange of experience in the training of organizers of cultural activities as well as of teachers and specialists in fields such as theatre, opera, ballet, music and fine arts;
- continue to encourage the 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meetings among creative artists, especially young creative artists, on current questions of artistic and literary creation which are of interest for joint study;
- study other possibilities for developing exchanges and co-operation among persons active in the field of culture, with a view to a better mutual knowledge of the cultural life of the participating States.

Fields and Forms of Co-operation

To encourage the search for new fields and forms of cultural co-operation, to these ends contributing to the conclusion among interested parties, where necessary, of appropriate agreements and arrangements, and in this context to promote:

- joint studies regarding cultural policies, in particular in their social aspects, and as they relate to planning, town-planning, educational and environmental policies, and the cultural aspects of tourism;
- the exchange of knowledge in the realm of cultural diversity,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hus to a better understanding by interested parties of such diversity where it occurs;
-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as may be appropriate, meetings of experts, the elaboration and the execution of research programmes and projects, as well as

their joint evaluation, and the dissemination of the results, on the subjects indicated above;

- such forms of cultural co-ope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uch joint projects as: international events in the fields of the plastic and graphic arts, cinema, theatre, ballet, music, folklore, etc.; book fairs and exhibitions, joint performances of operatic and dramatic works, as well as performances given by soloists, instrumental ensembles, orchestras, choirs and other artistic groups, including those composed of amateurs, paying due attention to the 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cultural youth events and the exchange of young artists;

the inclusion of works by writers and composers from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in the repertoires of soloists and artistic ensembles;

the preparation,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articles, studies and monographs, as well as of low-cost books and of artistic and literary collections, suited to making better known respective cultural achievements, envisaging for this purpose meetings among experts and representatives of publishing houses;

the co-production and the exchange of films and of radio and television programmes, by promoting, in particular, meetings among producers, technicians and representatives of the public authorities with a view to working out favourable conditions for the execution of specific joint projects and by encouraging, in the field of co-production,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filming teams;

the organization of competitions for architects and town-planners, bearing in mind the possible implementation of the best projects and the formation, where possible, of international teams;

the implementation of joint projects for conserving, restoring and showing to advantage works of art,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monuments and sites of cultural interest, with the help, in appropriate cas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a governmental or non- governmental character as well as of private institutions - competent and active in these fields - envisaging for this purpose:

periodic meetings of experts of the interested parties to elaborate the necessary proposals, while bearing in mind the need to consider these questions in a wider social and economic context;

the publication in appropriate periodicals of articles designed to make known and to compare, among the participating States, the most significant

achievements and innovations;

a joint study with a view to the improvement and possible harmonization of the different systems used to inventory and catalogue the historical monuments and places of cultural interest in their countries;

the study of the possibilities for organizing international courses for the training of specialists in different disciplines relating to restoration.

* * *

National minorities or regional cultures. The participating States, recognizing the contribution that national minorities or regional cultures can make to co-operation among them in various fields of culture, intend, when such minorities or cultures exist within their territory, to facilitate this contribution, taking into account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ir members.

4. Co-operation and Exchanges in the Field of Education

The participating States,

Conscious that the development of relations of an international character in the fields of education and science contributes to a better mutual understanding and is to the advantage of all peoples as well as to the benefit of future generations,

Prepared to facilitate, between organizations, institutions and persons engaged in education and science, the further development of exchanges of knowledge and experience as well as of contacts, on the basis of special arrangements where these are necessary,

Desiring to strengthen the links among educational and scientific establishments and also to encourage their co-operation in sectors of common interest, particularly where the levels of knowledge and resources require efforts to be concerted internationally, and

Convinced that progress in these fields should be accompanied and supported by a wider knowledge of foreign languages,

Express to these ends their intention in particular:

(a) Extension of Relations

To expand and improve at the various levels co-operation and links in the fields of education and science, in particular by:

- concluding, where appropriate,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providing for

cooperation and exchanges among State institutions, non-governmental bodies and persons engaged in activities in education and science, bearing in mind the need both for flexibility and the fuller use of existing agreements and arrangements;

- promoting the conclusion of direct arrangements between universities and other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in the framework of agreements between governments where appropriate;
- encouraging among persons engaged in education and science direct contacts and communications including those based on special agreements or arrangements where these are appropriate.

(b) Access and Exchanges

To improve access, under mutually acceptable conditions, for students, teachers and scholars of the participating States to each other's educational, cultural and scientific institutions, and to intensify exchanges among these institutions in all areas of common interest, in particular by:

- increasing the exchange of information on facilities for study and courses open to foreign participants, as well as on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y will be admitted and received;
- facilitating travel between the participating States by scholars, teachers and students for purposes of study, teaching and research as well as for improving knowledge of each other's educational, cultural and scientific achievements;
- encouraging the award of scholarships for study, teaching and research in their countries to scholars, teachers and students of other participating States;
- establishing, developing or encouraging programmes providing for the broader exchange of scholars, teachers and students, including the organization of symposia, seminars and collaborative projects, and the exchanges of educational and scholarly information such as university publications and materials from libraries;
- promoting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such arrangements and programmes by providing scholars, teachers and students in good time with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ir placing in universities and institutes and the programmes envisaged for them; by granting them the opportunity to use relevant scholarly, scientific and open archival materials; and by facilitating their travel within the receiving State for the purpose of study or research as

well as in the form of vacation tours on the basis of the usual procedures;

- promoting a more exact assessment of the problems of comparison and equivalence of academic degrees and diplomas by fostering the exchange of information on the organization, duration and content of studies, the comparison of methods of assessing levels of knowledge, and academic qualifications, and, where feasible, arriving at the mutual recognition of academic degrees and diplomas either through governmental agreements, where necessary, or direct arrangements between universities and other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and research;
- recommending, moreover, to the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at they should intensify their efforts to reach a generally acceptable solution to the problems of comparison and equivalence between academic degrees and diplomas.

(c) Science

Within their competence to broaden and improve co-operation and exchanges in the field of science, in particular:

To increase, on a bilateral or multilateral basis, the exchange and dissemination of scientific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by such means as:

- making this information more widely available to scientists and research workers of the other participating States through, for instance,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information-sharing programmes or through other appropriate arrangements;
- broadening and facilitating the exchange of samples and other scientific materials used particularly for fundamental research in the fields of natural sciences and medicine;
- inviting scientific institutions and universities to keep each other more fully and regularly informed about their current and contemplated research work in fields of common interest.

To facilitate the extension of communications and direct contacts between universities, scientific institutions and associations as well as among scientists and research workers, including those based where necessary on special agreements or arrangements, by such means as:

- further developing exchanges of scientists and research workers and encouraging the organization of preparatory meetings or working groups on research topics of common interest;



- encouraging the creation of joint teams of scientists to pursue research projects under arrangements made by the scientific institutions of several countries;
- assisting the organization and successful functioning of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seminars and participation in them by their scientists and research workers;
- furthermore envisaging, in the near future, a “Scientific Forum” in the form of a meeting of leading personalities in science from the participating States to discuss interrelated problems of common interest concerning current and future developments in science, and to promote the expansion of contacts, communications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scientific institutions and among scientists;
- foreseeing, at an early date, a meeting of experts representing the participating States and their national scientific institutions, in order to prepare such a “Scientific Forum” in consultation with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ESCO and the ECE;
- considering in due course what further steps might be taken with respect to the “Scientific Forum”.

To develop in the field of scientific research, on a bilateral or multilateral basis, the co-ordination of programmes carried out in the participating States and the organization of joint programmes, especially in the areas mentioned below, which may involve the combined efforts of scientists and in certain cases the use of costly or unique equipment. The list of subjects in these areas is illustrative; and specific projects would have to be determined subsequently by the potential partners in the participating States, taking account of the contribution which could be made by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cientific institutions:

- *exact and natural sciences*, in particular fundamental research in such fields as mathematics, physics, theoretical physics, geophysics, chemistry, biology, ecology and astronomy;

medicine, in particular basic research into cancer and cardiovascular diseases, studies on the diseases endemic in the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medico-social research with special emphasis on occupational diseases, the rehabilitation of the handicapped and the care of mothers, children and the elderly;

-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uch as history, geography, philosophy, psychology, pedagogical research, linguistics, sociology, the legal, political and economic sciences; comparative studies on social, socioeconomic and cultural phenomena which are of common interest to the participating States, especially the problems of human environment and urban development; and scientific

studies on the methods of conserving and restoring monuments and works of art.

(d) Foreig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To encourage the study of foreig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as an important means of expanding communication among peoples for their better acquaintance with the culture of each country, as well as for the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this end to stimulate, within their competence, the further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foreign language teaching and the diversification of choice of languages taught at various levels, paying due attention to less widely-spread or studied languages, and in particular:

- to intensify co-operation aimed at improving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through exchanges of information and experience concerning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effective modern teaching methods and technical aids, adapted to the needs of different categories of students, including methods of accelerated teaching; and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conducting, on a bilateral or multilateral basis, studies of new methods of foreign language teaching;
- to encourage co-operation between institutions concerned, on a bilateral or multilateral basis, aimed at exploiting more fully the resources of modern educational technology in language teaching, for example through comparative studies by their specialists and, where agreed, through exchanges or transfers of audio-visual materials, of materials used for preparing textbooks, as well as of information about new types of technical equipment used for teaching languages;
- to promot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on the experience acquired in the training of language teachers and to intensify exchanges on a bilateral basis of language teachers and students as well as to facilitate their participation in summer courses i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wherever these are organized;
- to encourage co-operation among experts in the field of lexicography with the aim of defining the necessary terminological equivalents, particularly in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disciplines, in order to facilitate relations among scientific institutions and specialists;
- to promote the wider spread of foreign language study among the different types of secondary education establishments and greater possibilities of choice between an increased number of European languages; and in this context to consider, wherever appropriate, the possibilities for developing the recruitment and training of teachers as well as the organization of the student groups required;



- to favour, in higher education, a wider choice in the languages offered to language students and greater opportunities for other students to study various foreign languages; also to facilitate, where desirable, the organization of courses i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on the basis of special arrangements as necessary to be given by foreign lecturers, particularly from European countries having less widely-spread or studied languages;
- to promote, within the framework of adult education, the further development of specialized programmes, adapted to various needs and interests, for teaching foreign languages to their own inhabitants and the languages of host countries to interested adults from other countries; in this context to encourage interested institutions to cooperate, for example, in the elaboration of programmes for teaching by radio and television and by accelerated methods, and also, where desirable, in the definition of study objectives for such programmes, with a view to arriving at comparable levels of language proficiency;
- to encourage the association, where appropriate, of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with the study of the corresponding civilizations and also to make further efforts to stimulate interest in the study of foreign languages, including relevant out-of-class activities.

(e) Teaching Methods

To promote the exchange of experience, on a bilateral or multilateral basis, in teaching methods at all levels of education, including those used in permanent and adult education, as well as the exchange of teaching materials, in particular by:

- further developing various forms of contacts and co-operation in the different fields of pedagogical science, for example through comparative or joint studies carried out by interested institutions or through exchanges of information on the results of teaching experiments;
- intensifying exchanges of information on teaching methods used in various educational systems and on results of research into the processes by which pupils and students acquire knowledge, taking account of relevant experience in different types of specialized education;
- facilitating exchanges of experience concerning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ing of education intended for adults and recurrent educati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se and other forms and levels of education, as well as concerning the means of adapting education, including vocational and technical training, to the needs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their countries;

- encouraging exchanges of experience in the education of youth and adults in international understanding,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ose major problems of mankind whose solution calls for a common approach and wider international co-operation;
- encouraging exchanges of teaching materials - including school textbooks, having in mind the possibility of promoting mutual knowledge and facilitating the presentation of each country in such books - as well as exchanges of information on technical innovations in the field of education.

* * *

National minorities or regional cultures. The participating States, recognizing the contribution that national minorities or regional cultures can make to co-operation among them in various fields of education, intend, when such minorities or cultures exist within their territory, to facilitate this contribution, taking into account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ir members.

Follow-up to the Conference

The participating States,

Having considered and evaluated the progress made at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onsidering further that,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the world, the Conference is an important part of the process of improving security and developing co-operation in Europe and that its results will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is process,

Intending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Final Act of the Conference in order to give full effect to its results and thus to further the process of improving security and developing co-operation in Europe,

Convinced that, in order to achieve the aims sought by the Conference, they should make further unilateral, bilateral and multilateral efforts and continue, in the appropriate forms set forth below, the multilateral process initiated by the Conference,

1. *Declare their resolve*, in the period following the Conference, to pay due regard to and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Final Act of the Conference:
 - (a) unilaterally, in all cases which lend themselves to such action;
 - (b) bilaterally, by negotiations with other participating States;
 - (c) multilaterally, by meetings of experts of the participating States, and also within the framework of exis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and UNESCO, with regard to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cooperation;

2. *Declare furthermore their resolve* to continue the multilateral process initiated by the Conference:
 - (a) by proceeding to a thorough exchange of views both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Final Act and of the tasks defined by the Conference, as well as, in the context of the questions dealt with by the latter, on the deepening of their mutual relations, the improvement of security and the development of co-operation in Europe, and the development of the process of détente in the future;
 - (b) by organizing to these ends meetings among their representatives, beginning with a meeting at the level of representatives appointed by the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This meeting will define the appropriate modalities for the holding of other meetings which could include further similar meetings and the possibility of a new Conference;

3. The first of the meetings indicated above will be held at Belgrade in 1977. A preparatory meeting to organize this meeting will be held at Belgrade on 15 June 1977. The preparatory meeting will decide on the date, duration, agenda and other modalities of the meeting of representatives appointed by the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4. The rules of procedure, the working methods and the scale of distribution for the expenses of the Conference will, *mutatis mutandis*, be applied to the meetings envisaged in paragraphs 1 (c), 2 and 3 above. All the above-mentioned meetings will be held in the participating States in rotation. The services of a technical secretariat will be provided by the host country.

The original of this Final Act, drawn up in English, French, German, Italian, Russian and Spanish, will be transmitted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Finland, which will retain it in its archives. Each of the participating States will receive from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Finland a true copy of this Final Act.

The text of this Final Act will be published in each participating State, which will disseminate it and make it known as widely as possibl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Finland is requested to transmit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text of this Final Act, which is not eligible for registration under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with a view to its circulation to all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as an official document of the United Nation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Finland is also requested to transmit the text of this Final Act to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and to the Executive Secretary of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Wherefore, the undersigned High Representatives of the participating States, mindful of the high political significance which they attach to the results of the Conference, and declaring their determination to ac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contained in the above texts, have subscribed their signatures below:

Done at Helsinki,
on 1st August
1975,
in the name of

(9) 베트남전쟁 종결 및 평화회복에 관한 파리협정 Agreement on Ending the War and Restoring Peace in Viet-Nam (1973.1.27)

베트남전쟁 종결 및 평화회복에 관한 파리협정

베트남에 관한 파리회의에 참가한 당사자(PARTY)들은 베트남인들의 기본적 국민의 권리와 남베트남 국민의 자결권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남베트남에서의 전쟁 종결과 평화회복 그리고 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다음 여러 규정에 합의하고 이를 존중,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베트남 인민의 기본적 국민 권리

제 1 조 미국과 모든 다른 나라들은 베트남에 관한 1954년 제네바협정에 의해 인정된 베트남의 독립, 주권, 단일성 및 영토적 보전을 존중한다.

제2장 적대행위의 종식, 철군

제 2 조 휴전은 1973년 1월 27일 GMT 24시를 기해 남베트남 전역에서 준수된다. 같은 시각 미국은 베트남민주공화국 영토에 대하여 그 주둔지를 막론하고 육·해·공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중지하고 베트남민주공화국의 영해·항구·항만 및 수로에 대한 기뢰부설을 중지한다. 미국은 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월맹 영해·항구·항만 및 수로에 부설한 모든 기뢰를 제거, 영구해체 또는 파괴한다.

제 3 조 당사자들은 휴전을 준수하고 영속적이고 안정된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휴전이 발효되는 즉시

- (A) 미군 및 베트남공화국군의 연합군은 철수계획이 시행되는 동안 현 위치에 머문다. 철군은 제16조에 규정된 4개국 공동군사위원회만이 그 방식을 결정한다.
- (B) 남베트남의 두 당사자의 군대도 현위치에 머문다. 제17조에 규정된 2개 당사자 공동군사위원단은 쌍방의 장악지역과 주둔형태를 결정한다.
- (C) 남베트남 내의 쌍방의 각종 정규군과 비정규군은 상대방에 대한 모든 공격을 중지하고 다음 사항을 엄수한다.
 - 지상, 공중 및 해상에 있어서의 모든 군사행동을 규제한다.
 - 모든 적대행위, 테러행위, 보복행위를 금지한다.

제 4 조 미국은 군사적 개입을 계속하지 않으며 남베트남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 제 5 조 본 협정 조인후 60일 안으로 미군과 제3조 (A)에 규정된 외국은 남베트남에서 군대·군사고문단·평정계획에 관련된 기술 및 군사요원·군장비·탄약 및 군수물자를 모두 철수한다. 상기 외국으로부터 모든 유사 군사단체와 경찰에 파견된 고문들도 같은 기간 내에 철수한다.
- 제 6 조 미국과 제3조 그 밖의 외국 월남내 기지는 본 협정조인 후 60일안으로 모두 철거된다.
- 제 7 조 휴전의 발표로부터 본 협정의 제9조 (B) 및 제 14조에 규정된 정부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남베트남의 두 당사자는 병력·군사고문·기술군사 요원을 포함한 군사요원·장비·탄약 및 전쟁물자의 남베트남 도입을 수락치 않는다.
남베트남의 두 당사자는 두 당사자의 공동군사위원회 및 국제통제감시 위원단의 감시하에 휴전이후 파괴, 파손 및 폐품이 된 장비, 탄약 및 전쟁물자를 동일 특성 및 용도의 1대 1 교환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3장 포로가 된 군사요원 및 외국 민간인과 포로, 억류된 베트남 민간인 송환

- 제 8 조 (A) 포로가 된 당사자들의 군사요원 및 외국 민간인의 송환은 제5조에 명시된 병력 철수와 병행하여 동일한 날짜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은 본 협정을 조인하는 날 상기 포로가 된 군사요원 및 외국 민간인의 완전한 명단을 교환해야 한다.
- (B) 당사자들은 전투중 실종된 당사자들의 군사요원 및 외국 민간인에 관한 정보의 입수와 사망자 묘지의 소재를 확인하여 보호함으로써 발굴 및 송환의 신속화를 위해, 또한 전투중 실종된 것으로 판단되는 자들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필요할 그 밖의 여러 조치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 (C) 남베트남에서 생포되어 억류되고 있는 베트남 민간인의 송환문제는 1954년 7월 20일 조인된 베트남전쟁 종결에 관한 협정 제 21조 (B)의 원칙에 따라서 두 베트남 당사자가 해결한다.
두 베트남 당사자는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재결합을 주선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증오와 적대를 종결시킬 수 있는 민족화해와 단합의 정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두 베트남 당사자는 휴전 발표 후 90일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4장 남베트남 국민의 자결권 행사

- 제 9 조 미합중국 정부와 베트남민주공화국 정부는 베트남 인민이 자결권을 행사하도록 제 원칙을 존중하기로 약속한다.

- (A) 남베트남 국민의 자결권은 신성불가침한 것이며 모든 국가에 의해서 존중되어야 한다.
- (B) 베트남 국민은 국제감시하에 진정으로 자유민주 총선거를 통해서 베트남의 정치적 장래를 스스로 결정한다.
- (C) 외국은 남베트남 국민에게 여하한 정치노선이나 인물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제10조 두 베트남 당사자는 남베트남에서 휴전을 준수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모든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무력 충돌을 회피하기로 약속한다.

제11조 두 베트남 당사자는 휴전직후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성취하고 증오와 적대를 종결하며, 어느 한쪽에 가담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모든 보복행동과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민의 민주적 제권리, 즉 개인의 자유·의사표시의 자유·언론의 자유·집회의 자유·결사의 자유·정치활동의 자유·신앙의 자유·이전의 자유·주거의 자유·노동의 자유·사유재산의 권리 및 자유 기업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12조 (A) 휴전직후 두 베트남 당사자는 민족적 화해단합, 상호존중, 상호 불배제의 정신에서 평등한 3개 당파로 구성되는 민족적 화해단합의 국민회의를 창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를 가진다. 동 국민회의는 만장일치의 원칙으로 운영한다. 민족적 화해단합 국민회의가 발족한 후 두 베트남 당사자는 하급회의의 구성문제를 협의한다. 두 베트남 당사자는 되도록 빨리 남베트남 내정문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되, 베트남 국민의 평화·독립 민주주의에의 염원에 따라 휴전 발효 90일 이내에 이를 성취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B) 민족적 화해단합 국민회의는 두 베트남 당사자의 본 협정 이행을 촉진하고 민족적 화해단합 성취와 민주주의적 자유의 보장을 이룩하게 하는 과업을 맡는다. 민족적 화해단합 국민회의는 제9조 (B)에 규정한바 자유로운 민주주의적 총선거를 준비하며 이 총선거의 절차 및 방식을 결정한다. 총선거에서 결정할 제도는 두 베트남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서 합의한다. 민족적 화해단합 국민회의는 또한 두 남베트남 당사자간에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지방선거의 절차 및 방식을 결정한다.

제13조 남베트남 안에서 베트남인 군대문제는 전후 정세에 따라 민족적 화해단합, 평등·상호존중의 정신에 따라 외부의 간섭없이 두 베트남 당사자들이 해결한다. 두 베트남 당사자들 간에 토의되어야 할 문제 가운데는 전투병력감축과 각군 병력의 동원해제 등을 위한 조치도 포함된다. 두 베트남 당사자는 이를 되도록 빨리

성취시킨다.

- 제14조 남베트남은 평화와 독립을 지향하는 외교정책을 추구한다. 남베트남은 정치 및 사회체제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와 상호 독립·주권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관계를 수립하며 정치적인 조건이 따르지 않는 기술 및 경제원조를 어떤 국가에서라도 받아들여려는 입장을 취한다.
- 남베트남이 장차 군사원조를 받아들이는 문제는 제9조 (B)항에 규정된 남베트남 총선거에 의하여 수립될 정부의 권한에 속한다.

제5장 베트남 통일과 남북 베트남 관계

- 제15조 베트남의 통일은 남북 베트남 간에 이루어질 협정이나 토의에 입각한 평화적 수단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현하며, 어느 일방에 의한 강제나 합병, 또한 외국의 간섭이 없어야 한다. 통일의 시기는 남북 베트남 간에 합의한다.

<통일이 성취되기까지>

- (A) 북위 17도선 상에 설치된 두 구역간의 군사분계선은 1954년 제네바회의의 최종 선언(F)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단지 잠정적인 것이며 정치적 또는 영토상의 경계선은 아니다.
- (B) 남북 베트남은 잠정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비무장지대의 존재를 존중한다.
- (C) 남북 베트남은 제반분야에서의 정상관계를 재수립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협상을 개시한다. 협상에서 토의될 사항 중에 잠정 군사분계선을 통한 민간의 이동방식 문제를 포함한다.
- (D) 남북 베트남은 1954년의 제네바협정에 따라 여하한 쌍무 또는 집단 군사동맹에 가입하지 않으며 외국이 각자의 영토 내에 군사기지·군부대·고사고문단·군사요원을 두지 못하도록 한다.

제6장 공동군사위원회, 국제통제감시위원단 및 국제회의

- 제16조 (A) 베트남에 관한 회담 참가 당사자들은 본 협정의 아래규정 시행을 위해 당사자들간의 공동행동을 보장하는 의무를 띠 4자 공동군사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대표를 즉시 임명한다.
- 남베트남전역에서의 휴전 발효 : 제2조
 - 미군 및 기타 외국군의 휴전 : 제3조 (A)
 - 남베트남에서의 전 당사자간의 휴전 : 제3조 (C)
 - 미국 및 기타 외국군의 남베트남 철수 : 제5조
 - 미국 및 기타 외국군의 남베트남 내 군사기지 철거 : 제6조

- 포로가 된 당사자들의 군사요원 및 외국 민간인의 송환 : 제8조 (A)
 - 전쟁중 실종된 당사자들의 군사요원 및 민간인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상호지원 : 제8조(B)
- (B) 4자 공동군사위원회는 협의 및 전원합의의 원칙하에 활동한다. 표출된 이견은 국제통제감시위원단에 이첩한다.
- (C) 4자 공동군사위원회는 본 협정 조인직후 활동을 개시하여 제3조 (A)에 명시된 미군 및 기타 외국군의 철수가 완료되고 포로가 된 당사자들의 군사요원 및 외국 민간인의 송환이 완료되는 60일후에 활동을 완료한다.
- (D) 4개 당사자는 4자 공공군사위원회의 구성·업무절차·활동수단 및 경비에 관해 즉각 합의한다.

- 제17조 (A) 두 남베트남 당사자는 본 협정의 조항들을 이행하는데 있어 두 남베트남 당사자간의 공동활동을 보장하는 임무를 띠 2개 당사자 공동군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대표를 즉각 임명한다.
- 4자 공동군사위원회가 그 활동을 종결할 때 남베트남 전역에서 휴전을 실시하는데 관련한 사항 : 제2조
 - 두 남베트남 당사자간의 휴전에 관한 사항 : 제3조 (B)
 - 4자 공동군사위원회가 그 활동을 종결했을 때 남베트남의 모든 당사자간의 휴전에 관한 사항 : 제3조 (C)
 - 남베트남으로의 군대투입 금지에 관한 것과 본 조의 기타 모든 조항에 관한 사항 : 제7조
 - 남베트남에서 생포되어 억류되고 있는 베트남 민간인의 송환문제에 관한 사항 : 제8조 (C)
 - 제13조 두 베트남 당사자의 전투병력 감축 및 감축된 병력의 동원해제에 관한 사항 : 제13조
- (B)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들은 국제휴전감시감독위원회(ICCS)에 회부한다.
- (C) 본 협정 조인후 2자 공동군사위원회는 남베트남에 휴전을 실시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와 구성에 관해서 즉시 합의해야 한다.

- 제18조 (A) 본 협정 조인후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을 즉각 설치한다.
- (B) 제19조에 규정한 국제회의가 특정한 조치를 취하기까지는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이 본 협정 규정의 이행상태의 감시감독에 관하여 4당사자에게 보고한다.
- 남베트남 전역 휴전시행에 관한 사항 : 제2조
 - 미군과 기타 외국군의 휴전에 관한 사항 : 제3조 (A)
 - 남베트남 내전 당사자간의 휴전에 관한 사항 : 제3조 (C)

- 미군 및 기타 외국군의 남베트남 철수에 관한 사항 : 제3조 및 제5조
- 미군 및 제3조 (A)에 언급된 기타 외국군의 남베트남내 군사기지의 철거에 관한 사항 : 제6조
- 포로가 된 군 및 외국 민간인의 송환에 관한 사항 : 제8조 (A)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이 과업을 실행하기 위해 감시반들을 편성한다. 4개 당사자들은 이들 감시반의 배치와 활동에 즉각 합의한다. 남베트남의 두 당사자들은 그들의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C) 국제회의가 명확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본 협정의 다음 조항의 이행 및 통제 및 감시에 관한 사항을 남베트남 두 당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4국 공동군사위원회가 그 임무를 완료했을 때 남베트남 전역에 걸친 휴전실시를 규정한 제2조에 관한 사항
- 남베트남 두 당사자간 휴전을 규정한 제3조 (B)에 관한 사항
- 4개국 공동군사위원회가 그 임무를 완료했을 때 남베트남 안의 모든 당사자간의 휴전을 규정한 제3조 (C)에 관한 사항
- 남베트남에 군대와 그밖의 군 설비를 도입하는 것을 금지한 제7조에 관한 사항
- 월남에 생포 구류되어 있는 베트남 민간인의 송환을 규정한 제8조 (C)에 관한 사항
- 남베트남에서의 자유 민주주의 총선거에 관한 9조 (B)에 관한 사항
- 남베트남 두 당사자의 전투병력 감축 및 감축 병력의 동원해제를 규정한 제13조에 관한 사항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시반들을 편성한다. 남베트남 두당사자는 이 감시반들의 위치 및 활동에 즉각 동의하고 그들의 활동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D)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캐나다 · 헝가리 · 인도네시아 · 폴란드 4개국 대표로 구성하며 의장은 이 위원단이 정하는 기간을 주기로 회원국 대표들이 윤번제로 맡는다.
- (E)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남베트남의 주권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
- (F)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협의와 만장일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된다.
- (G)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베트남에서 휴전이 발표된 후 활동을 개시한다. 본 협정 제18조 (B)의 규정에 관련하여,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이 규정에 관련된 통

제·감독의 소기의 업무가 끝났을 때 활동을 종료한다.

남베트남의 2개 당사자들이 본 협정 제9조 (B)에 의거하여 남베트남에서 총선거를 통하여 구성된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활동을 끝낸다.

(H) 4개 당사국은 즉시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은 조직·활동수단 및 예산에 관하여 합의한다. 국제회의와 국제통제감시위원단간의 관계는 국제회의와 국제통제감시위원단 간에 합의하고 결정한다.

제19조 당사자들은 본 협정 조인후 30일 안으로 전쟁중식, 베트남 평화유지, 베트남 국민의 기본적 국민권 존중, 남베트남 주민의 자결권, 인도차이나에서의 평화 증진과 보장에 관한 서명된 합의문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에 합의한다. 미국과 베트남민주공화국은 베트남에 관한 파리회담의 당사자들을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프랑스·소련·영국으로 구성된 국제통제감시위원단의 4개 국민·국제연합 사무총장이 베트남에 관한 파리회담 당사자와 함께 본 국제회의에 참석하도록 제의할 것이다.

제7장 크메르 및 라오스

제20조 (A) 베트남에 관한 파리회담에 참가하는 당사자들은 크메르 및 라오스 국민의 기본적 국민권, 즉 이 국가들의 독립·주권·단합·영토보전을 인정한 캄보디아에 관한 1954년 제네바협정과 라오스에 관한 1962년 제네바협정을 엄중히 존중한다. 당사자들은 또 캄보디아 및 라오스의 중립을 존중한다.

베트남에 관한 파리회담에 참가한 당사자들은 서로 간에 또는 다른 나라에 대한 주권 및 안전의 침해를 위해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영토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B) 외국은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의 모든 군사활동을 중지하고 이 두 국가로부터 완전 철수하며, 군대·군사고문관·군요원·무기·탄약·전쟁물자를 다시 이 나라에 반입하지 않는다.

(C) 캄보디아 및 라오스의 국내문제는 외세의 간섭없이 각자 국민이 이를 해결한다.

(D) 인도차이나 국가간에 존재하는 문제는 인도차이나 국가 당사자끼리 독립·주권·영토보전·불간섭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해결한다.

제8장 미국과 베트남민주공화국간의 관계

제21조 미국은 본 협정 체결로 베트남민주공화국 또는 인도차이나 국민들과 화해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대한다. 미국은 그 전통적인 정책에 따라 베트남민주공화국과 전 인도차이나의 복구와 전후 재건에 기여한다.

제22조 전쟁의 종식, 베트남에서의 평화회복 및 본 협정의 엄수는 미국과 베트남민주공화

국간에 상호 독립·주권의 존중 및 내정 불간섭 원칙에 입각한 새롭고 평등하며 호혜적인 관계 수립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동시에 이 협정은 베트남의 안정된 평화를 성취하고 인도차이나와 동남아에 영구적인 평화를 보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기타조항

제23조 본 협정은 파리 베트남회담 참가 당사자들의 전권대표의 서명을 거쳐 발효한다. 모든 관계 당사자들은 본 협정 및 부속의정서를 엄중 이행한다.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월남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월남어 및 영어 원본은 공식적이며, 다같이 진본임을 확인한다.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를 대표하여

윌리엄 로저스 국무장관
트란 반 람 외상
구엔 루이 트린 외상
구엔 티 빈 외상

AGREEMENT ON ENDING THE WAR AND RESTORING PEACE IN VIET-NAM

The Parties participating in the Paris Conference on Viet-Nam,
With a view to ending the war and restoring peace in Viet-Nam on the basis of respect for the Vietnamese people's fundamental national rights and the South Vietnamese people'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o contributing to the consolidation of peace in Asia and the world,

Have agreed on the following provisions and undertake to respect and to implement them:

Chapter I

THE VIETNAMESE PEOPLE'S FUNDAMENTAL NATIONAL RIGHTS

Article 1

The United States and all other countries respect the independence, sovereignty, uni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Viet-Nam as recognized by the 1954 Geneva Agreements on Viet-Nam.

Chapter II

CESSATION OF HOSTILITIES - WITHDRAWAL OF TROOPS,

Article 2

A cease-fire shall be observed throughout South Viet-Nam as of 2400 hours G.M.T. [Greenwich Mean Time], on January 27, 1973.

At the same hour, the United States will stop all its military activities against the territory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by ground, air and naval forces, wherever they may be based, and end the mining of the territorial waters, ports, harbors, and waterways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The United States will remove, permanently deactivate or destroy all the mines in the territorial waters, ports, harbors, and waterways of North Viet-Nam as soon as this Agreement goes into effect.

The complete cessation of hostilities mentioned in this Article shall be durable and without limit of time.

Article 3

The parties undertake to maintain the cease-fire and to ensure a lasting and stable peace.

As soon as the cease-fire goes into effect: (a) The United States forces and those of the other foreign countries allied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Viet-Nam shall remain in-place pen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of troop withdrawal. The Four-Party Joint Military Commission described in Article 16 shall determine the modalities.

(b) The armed forces of the two South Vietnamese parties shall remain in-place. The Two-Party Joint Military Commission described in Article 17 shall determine the areas controlled by each party and the modalities of stationing.

- (c) The regular forces of all services and arms and the irregular forces of the parties in South Viet-Nam shall stop all offensive activities against each other and shall strictly abide by the following stipulations:
- All acts of force on the ground, in the air, and on the sea shall be prohibited;
 - All hostile acts, terrorism and reprisals by both sides will be banned.

Article 4

The United States will not continue its military involvement or intervene in the internal affairs of South Viet-Nam.

Article 5

Within sixty days of the signing of this Agreement, there will be a total withdrawal from South Viet-Nam of troops, military advisers, and military personnel, including technical military personnel and military personnel associated with the pacification program, armaments, munitions, and war material of the United States and those of the other foreign countries mentioned in Article 3 (a). Advisers from the above-mentioned countries to all paramilitary organizations and the police force will also be withdrawn within the same period of time.

Article 6

The dismantlement of all military bases in South Viet-Nam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other foreign countries mentioned in Article 3 (a) shall be completed within sixty days of the signing of this agreement.

Article 7

From the enforcement of the cease-fire to the formation of the government provided for in Article 9 (b) and 14 of this Agreement, the two South Vietnamese parties shall not accept the introduction of troops, military advisers, and military personnel including technical military personnel, armaments, munitions, and war material into South Viet-Nam.

The two South Vietnamese parties shall be permitted to make periodic replacement of armaments, munitions and war material which have been destroyed, damaged, worn out or used up after the cease-fire, on the basis of piece-for-piece, of the same characteristics and propertie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Joint Military Commission of the two South Vietnamese parties and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Control and Supervision.

THE RETURN OF CAPTURED MILITARY PERSONNEL AND FOREIGN CIVILIANS AND CAPTURED AND DETAINED VIETNAMESE CIVILIAN PERSONNEL

Article 8

- (a) The return of captured military personnel and foreign civilians of the parties shall be carried out simultaneously with and completed not later than the same day as the troop withdrawal mentioned in Article 5. The parties shall exchange complete lists of the above-mentioned captured military personnel and foreign civilians on the day of the signing of this Agreement.



- (b) The parties shall help each other to get information about those military personnel and foreign civilians of the parties missing in action, to determine the location and take care of the graves of the dead so as to facilitate the exhumation and repatriation of the remains, and to take any such other measures as may be required to get information about those still considered missing in action.
- (c) The question of the return of Vietnamese civilian personnel captured and detained in South Viet-Nam will be resolved by the two South Vietnamese parties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s of Article 21 (b) of the Agreement on the Cessation of Hostilities in Viet-Nam of July 20, 1954. The two South Vietnamese parties will do so in a spirit of national reconciliation and concord, with a view to ending hatred and enmity, in order to ease suffering and to reunite families. The two South Vietnamese parties will do their utmost to resolve this question within ninety days after the cease-fire comes into effect.

Chapter VI

THE EXERCISE OF THE SOUTH VIETNAMESE PEOPLE'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rticle 9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undertake to respect the following principles for the exercise of the South Vietnamese people's right to self-determination:

- (a) The South Vietnamese people'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sacred, inalienable, and shall be respected by all countries.
- (b) The South Vietnamese people shall decide themselves the political future of South Viet-Nam through genuinely free and democratic general elections under international supervision.
- (c) Foreign countries shall not impose any political tendency or personality on the South Vietnamese people.

Article 10

The two South Vietnamese parties undertake to respect the cease-fire and maintain peace in South Viet-Nam, settle all matters of contention through negotiations, and avoid all armed conflict.

Article 11

Immediately after the cease-fire, the two South Vietnamese parties will:

- achieve national reconciliation and concord, end hatred and enmity, prohibit all acts of reprisal and discrimination against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that have collaborated with one side or the other;
- ensure the democratic liberties of the people: personal freedom,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the press, freedom of meeting, freedom of organization, freedom of political activities, freedom of belief, freedom of movement, freedom of residence, freedom of work, right to property ownership, and right to free enterprise.

Article 12

- (a) Immediately after the cease-fire, the two South Vietnamese parties shall hold consultations in a spirit of national reconciliation and concord, mutual respect, and mutual non-elimination to set up a National Council of National Reconciliation and Concord of three equal segments. The Council shall operate on the principle of unanimity. After the National Council of National Reconciliation and Concord has assumed its functions, the two South Vietnamese parties will consult about the formation of councils at lower levels. The two South Vietnamese parties shall sign an agreement on the internal matters of South Viet-Nam as soon as possible and do their utmost to accomplish this within ninety days after the cease-fire comes into effect, in keeping with the South Vietnamese people's aspirations for peace, independence and democracy.
- (b) The National Council of National Reconciliation and Concord shall have the task of promoting the two South Vietnamese parties'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chievement of national reconciliation and concord and ensurance of democratic liberties. The National Council of National Reconciliation and Concord will organize the free and democratic general elec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9 (b) and decide the procedures and modalities of these general elections. The institutions for which the general elections are to be held will be agreed upon through consultations between the two South Vietnamese parties. The National Council of National Reconciliation and Concord will also decide the procedures and modalities of such local elections as the two South Vietnamese parties agree upon.

Article 13

The question of Vietnamese armed forces in South Viet-Nam shall be settled by the two South Vietnamese parties in a spirit of national reconciliation and concord, equality and mutual respect, without foreign interference, in accordance with the postwar situation. Among the questions to be discussed by the two South Vietnamese parties are steps to reduce their military effectives and to demobilize the troops being reduced. The two South Vietnamese parties will accomplish this as soon as possible.

Article 14

South Viet-Nam will pursue a foreign policy of peace and independence. It will be prepared to establish relations with all countries irrespective of their political and social systems on the basis of mutual respect for independence and sovereignty and accept economic and technical aid from any country with no political conditions attached. The acceptance of military aid by South Viet-Nam in the future shall come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set up after the general elections in South Viet-Nam provided for in Article 9 (b).

Chapter V THE REUNIFICATION OF VIET-NAM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VIET-NAM

Article 15

The reunification of Viet-Nam shall be carried out step by step through peaceful means on the basis of discussions and agreements between North and South Viet-Nam, without coercion or annexation by either party, and without foreign interference. The time for reunification will be agreed upon by North and South Viet-Nam-Pending reunification:

- (a)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between the two zones at the 17th parallel is only provisional and not a political or territorial boundary,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6 of the Final Declaration of the 1954 Geneva Conference.
- (b) North and South Viet-Nam shall respect the Demilitarized Zone on either side of the Provisional Military Demarcation Line.
- (c) North and South Viet-Nam shall promptly start negotiations with a view to reestablishing-normal relations in various fields. Among the questions to be negotiated are the modalities of civilian movement across the Provisional Military Demarcation Line,
- (d) North and South Viet-Nam shall not join any military alliance or military bloc and shall not allow foreign powers to maintain military bases, troops; military advisers, and military personnel o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as stipulated in the 1954 Geneva Agreements on Viet-Nam.

THE JOINT MILITARY COMMISSIONS,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CONTROL AND SUPERVISIO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Article 16

- (a) The Parties participating in the Paris Conference on Viet-Nam shall immediately designate representatives to form a Four-Party Joint Military Commission with the task of ensuring joint action by the parties in implementing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 The first paragraph of Article 2, regarding the enforcement of the cease-fire throughout South Viet-Nam;
 - Article 3 (a), regarding the cease-fire by U.S. forces and those of the other foreign countries referred to in that Article;
 - Article 3 (c), regarding the cease-fire between all parties in South Viet-Nam;
 - Article 5, regarding the withdrawal from South Viet-Nam of U.S. troops and those of the other foreign countries mentioned in Article 3 (a);
 - Article 6, regarding the dismantlement of military bases in South Viet-Nam of the United States and those of the other foreign countries mentioned in Article 3 (a);
 - Article 8 (a), regarding the return of captured military personnel and foreign civilians of the parties;
 - Article 8 (b), regarding the mutual assistance of the parties in getting information about those military personnel and foreign civilians of the

- parties missing in action.
- (b) The Four-Party Joint Military Commission shall operat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consultations and unanimity. Disagreements shall be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Control and Supervision.
 - (c) The Four-Party Joint Military Commission shall begin operating immediately after the signing of this Agreement and end its activities in sixty day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withdrawal of U.S. troops and those of the other foreign countries mentioned in Article 3 (a) and the completion of the return of captured military personnel and foreign civilians of the parties.
 - (d) The four parties shall agree immediately on the organization, the working procedure, means of activity, and expenditures of the Four-Party Joint Military Commission.

Article 17

- (a) The two South Vietnamese parties shall immediately designate representatives to form a Two-Party Joint Military Commission with the task of ensuring joint action by the two South Vietnamese parties in implementing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 The first paragraph of Article 2, regarding the enforcement of the cease-fire throughout South Viet-Nam, when the Four-Party Joint Military Commission has ended its activities;
 - Article 3 (b), regarding the cease-fire between the two South Vietnamese parties;
 - Article 3 (c), regarding the cease-fire between all parties in South Viet-Nam, when the Four-Party Joint Military Commission has ended its activities;
 - Article 7, regarding the prohibition of the introduction of troops into South Viet-Nam and all other provisions of this Article;
 - Article 8 (c), regarding the question of the return of Vietnamese civilian personnel captured and detained in South Viet-Nam;
 - Article 13, regarding the reduction of the military effectives of the two South Vietnamese parties and the demobilization of the troops being reduced.
- (b) Disagreements shall be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Control and Supervision.
- (c) After the signing of this Agreement, the Two-Party Joint Military Commission shall agree immediately on the measures and organization aimed at enforcing the cease-fire and preserving peace in South Viet-Nam,

Article 18

- (a) After the signing of this Agreement, an International Commission of Control and Supervision shall be established immediately.
- (b) Until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provided for in Article 19 makes definitive arrangements,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Control and Supervision will report to the four parties on matters concerning the control and supervis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 The first paragraph of Article 2, regarding the enforcement of the cease-fire throughout South Viet-Nam;



- Article 3 (a), regarding the cease-fire by U.S. forces and those of the other foreign countries referred to in that Article;
- Article 3 (c), regarding the cease-fire between all the parties in South Viet-Nam;
- Article 5, regarding the withdrawal from South Viet-Nam of U.S. troops and those of the other foreign countries mentioned in Article 3 (a);
- Article 6, regarding the dismantlement of military bases in South Viet-Nam of the United States and those of the other foreign countries mentioned in Article 3 (a);
- Article 8 (a), regarding the return of captured military personnel and foreign civilians of the parties.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Control and Supervision shall form control teams for carrying out its tasks. The four parties shall agree immediately on the location and operation of these teams. The parties will facilitate their operation.

- (c) Until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makes definitive arrangements,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Control and Supervision will report to the two South Vietnamese parties on matters concerning the control and supervis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 The first paragraph of Article 2, regarding the enforcement of the cease-fire throughout South Viet-Nam, when the Four-Party Joint Military Commission has ended its activities;
 - Article 3 (b), regarding the cease-fire between the two South Vietnamese parties;
 - Article 3 (c), regarding the cease-fire between all parties in South Viet-Nam, when the Four-Party Joint Military Commission has ended its activities;
 - Article 7, regarding the prohibition of the introduction of troops into South Viet-Nam and all other provisions of this Article;
 - Article 8 (c), regarding the question of the return of Vietnamese civilian personnel captured and detained in South Viet-Nam;
 - Article 9 (b), regarding the free and democratic general elections in South Viet-Nam;
 - Article 13, regarding the reduction of the military effectives of the two South Vietnamese parties and the demobilization of the troops being reduced.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Control and Supervision shall form control teams for carrying out its tasks. The two South Vietnamese parties shall agree immediately on the location and operation of these teams. The two South Vietnamese parties will facilitate their operation.

- (d)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Control and Supervision shall be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four countries: Canada, Hungary, Indonesia and Poland. The chairmanship of this Commission will rotate among the members for specific periods to b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
- (e)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Control and Supervision shall carry out its task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the sovereignty of South Viet-Nam.
- (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Control and Supervision shall operate in

-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consultations and unanimity.
- (g)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Control and Supervision shall begin operating when a cease-fire comes into force in Viet-Nam. As regards the provisions in Article 18 (b) concerning the four parties,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Control and Supervision shall end its activities when the Commission's tasks of control and supervision regarding these provisions have been fulfilled. As regards the provisions in Article 18 (c) concerning the two South Vietnamese parties,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Control and Supervision shall end its activities on the request of the government formed after the general elections in South Viet-Nam provided for in Article 9 (b).
- (h) The four parties shall agree immediately on the organization, means of activity, and expenditure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Control and Supervis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and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will be agreed upon by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and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Article 19

The parties agree on the convening of an International Conference within thirty days of the signing of this Agreement to acknowledge the signed agreements; to guarantee the ending of the war, the maintenance of peace in Viet-Nam, the respect of the Vietnamese people's fundamental national rights, and the South Vietnamese people'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o contribute to and guarantee peace in Indochina.

The United States and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on behalf of the parties participating in the Paris Conference on Viet-Nam will propose to the following parties that they participate in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Republic of France,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the United Kingdom, the four countrie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Control and Supervision, and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ogether with the parties participating in the Paris Conference on Viet-Nam.

Chapter VII REGARDING CAMBODIA AND LAOS

Article 20

- (a) The parties participating in the Paris Conference on Viet-Nam shall strictly respect the 1954 Geneva Agreements on Cambodia's and the 1954 Geneva Agreements on Laos, which recognized the Cambodian and the Lao peoples' fundamental national rights, i.e., the independence, sovereignty, uni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these countries. The parties shall respect the neutrality of Cambodia and Laos.

The parties participating in the Paris Conference on Viet-Nam undertake to refrain from using the territory of Cambodia and the territory of Laos to encroach on the sovereignty and security of one another and of other countries.



- (b) Foreign countries shall put an end to all military activities in Cambodia and Laos, totally withdraw from and refrain from reintroducing into these two countries troops, military advisers and military personnel, armaments, munitions and war material.
- (c) The internal affairs of Cambodia and Laos shall be settled by the people of each of these countries without foreign interference.
- (d) The problems existing between the Indochinese countries shall be settled by the Indochinese parties on the basis of respect for each other's independenc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and non-interference in each other's internal affairs.

Chapter VIII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Article 21

The United States anticipates that this Agreement will usher in an era of reconciliation with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as with all the peoples of Indochina. In pursuance of its traditional policy, the United States will contribute to healing the wounds of war and to postwar reconstruction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and throughout Indochina.

Article 22

The ending of the war, the restoration of peace in Viet-Nam, and the strict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will create conditions for establishing a new, equal and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on the basis of respect for each other's independence and sovereignty, and non-interference in each other's internal affairs. At the same time this will ensure stable peace in Viet-Nam and contribute to the preservation of lasting peace in Indochina and Southeast Asia.

Chapter IX

OTHER PROVISIONS

Article 23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upon signature by plenipotentiary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participating in the Paris Conference on Viet-Nam. All the parties concerned shall strictly implement this Agreement and its Protocols. Done in Paris this twenty-seventh day of January,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eventy-three, in English and Vietnamese. The English and Vietnamese texts are official and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THE FOR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PUBLIC OF VIET-NAM:**

(Signed): (Signed):
William P. Rogers Tran Van Lam
Secretary of Stat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FOR THE GOVERNMENT OF THE FOR THE PROVISIONAL
DEMOCRATIC REPUBLIC REVOLUTIONARY GOVERNMENT OF
VIET-NAM:
OF THE REPUBLIC OF SOUTH VIET-NAM:**

(Signed): (Signed):
Nguyen Duy Trinh Nguyen Thi Binh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10) 미·중공 공동성명 Joint U.S.-China Communiqué
(Shanghai Communiqué, 1972.2.28)

美·中共 共同聲明

經過 ; 「닉슨」美合衆國大統領은 中華人民共和國 首相 周恩來의 招請을 받고 1972年 2月 21일부터 28일까지 中華人民共和國(以下 中共으로 略稱)을 訪問했다.

「닉슨」大統領은 이번 旅行에 부인 「패드」여사, 「로저스」國務長官, 「키신저」特別輔佐官, 기타 數名の 美國官吏를 대동했다.

「닉슨」大統領은 中共黨主席 毛澤東과 2月 21日 만났다.

두 指導者는 美·中共關係와 世界問題에 대해 진지하고 솔직한 견해를 교환했다.

「닉슨」大統領은 中共 방문기간 중 中共首相 周恩來와 美·中共 兩國關係의 正常化 및 기타 雙方의 關心事에 對해 성의있고 광범위하며 솔직한 論議를 했다.

이와 동시에 「로저스」國務長官과 中共外相 姬鵬飛도 같은 要旨의 會談을 가졌다. 「닉슨」 大統領과 그 일행은 北京을 訪問하고 文化·産業要地를 시찰했으며 杭州와 上海도 방문, 그곳에서 中共指導者들과 討議를 계속했다. 일행은 그곳에서도 亦是 관심있는 곳을 관광했다.

中共과 美國指導者들은 相互接觸없이 여러 해를 보낸 끝에 서로 만나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相互意見을 솔직하게 交換할 수 있었던 이번 機會가 有益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두 指導者는 중요한 變化와 大變凍이 일어나고 있는 國際情勢를 檢討하고 서로의 立場과 態度를 開陳하였다.

美國의 立場 ; 美國側은 다음과 같이 聲明한다.

「아시아」와 世界의 平和는 즉각적인 긴장의 완화와 紛爭의 根本的 要因의 除去를 위한 努力을 필요로 한다. 美國은 正當하고 安定된 平和를 위해 努力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自由와 進歩를 바라는 國民들과 國家들의 念願을 충족시키고 外侵의 危險을 除去하기 때문이다.

美國은 外部의 壓力이나 干涉없이 全世界國民들이 個人的 自由와 社會的 進歩를 누리는 것을 支持한다. 美國은 偶發的 事故나 誤算 혹은 오해를 통한 對決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이데올로기」가 다른 國家들 간의 對話增進이 緊張緩和과 努力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各國은 相對方을 相互尊重으로 對해야 하며 그 實行이 最終的 判決이 되도록 하면서 平和의 으로 競爭할 用意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國家도 그들만이 誤謬가 없었다고 主張해서는 안되며 各國은 共通性을 위해 그들의 態度를 再檢討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美國은 「인

도차이나」國民들이 外部의 간섭없이 그들의 運命을 決定하도록 許容되어야 한다는 것을 強調했다. 美國은 變함없는 主要目標은 協商을 통한 解決이었다.

1972年 1月 27日 越南과 美國이 提議한 8個項提案은 이 目的의 達成에 기초를 두고 있다.

協商에 의한 해결이 없음에도 비추어 美國은 「인도차이나」各國의 自決目的에 따라 이 地域으로부터 모든 美軍을 窮極的으로 撤收시킬 것을 構想하고 있다.

美國은 大韓民國과의 밀접한 유대와 大韓民國에 대한 支援을 維持할 것이다.

美國은 韓半島에 있어서 緊張解消와 對話의 增大를 모색하는 大韓民國政府의 努力을 支援할 것이다.

美國은 日本과의 友好關係에 最大의 重要性을 두며 현재의 밀접한 유대를 계속 發展시켜 나갈 것이다.

美國은 1971年 12月 21日 「유엔」安保理決議에 따른 印度·「파키스탄」의 休戰의 계속을 지지할 것이며 모든 軍隊를 自國領土內로 철수시킬 것과 또한 「자무」와 「캐시미르」地域에서 休戰線상의 各自의 位置로 철수할 것을 지지한다.

美國은 南「아시아」國民들이 軍事的 威脅없이 또한 強大國들의 競爭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들의 將來를 평화롭게 決定할 수 있는 權利를 지지한다.

中共의 立場 ; 中共側은 다음과 같이 聲明한다.

抑壓이 있는 곳에 抵抗이 있다. 國家는 獨立을 願하며 民族은 解放을 願하고 人民은 革命을 願한다. 이것은 歷史의 抵抗할 수 없는 潮流이다. 모든 國家는 強大國이든 弱小國이든 平等해야 하며 大國이 小國을 威脅해서는 안된다. 中共은 결코 超強大國이 되지 않을 것이며 어떤 種類의 「헤게모니」나 힘의 政治에도 反對한다.

中共은 모든 被壓迫人民들과 國家들의 自由와 解放을 확고히 지지하며 모든 國家의 人民들이 그들 自信의 所望에 따라 社會制度를 選擇할 權利와 各國의 主權, 領土를 保全할 權利가 있음을 지지하며 外國의 侵略, 干涉, 支配, 顛覆에 反對한다.

外國軍은 모두 自國으로 撤收해야 한다. 中共側은 제각기 그들이 目標에 도달하려고 努力하는 越南, 「라오스」, 「캄보디아」人들을 강력히 지원할 뜻을 表明했다. 中共은 또한 越南 임시혁명정부가 제안한 8個項 및 이 提案中 두 가지 主要問題에 對한 今年 2月의 內容說明 그리고 「인도차이나」頂上會談의 共同宣言을 굳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中共은 北韓이 1971年 4月 12日에 제시한 韓半島 平和統一 8個項을 지지하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언커크)의 廢止를 지지한다.

中共은 日本軍國主義의 復活 및 外部膨脹을 단호히 반대하며 獨立되고 民主的이며 平和·中立의 日本을 건설하려는 日本國民의 熱望을 지지한다.

中共은 印度·「파키스탄」問題에 관한 「유엔」決議와 步調를 맞추어 印度와 「파키스탄」雙



방이 各其의 領土 및 「자무」와 「캐시미르」 休戰線으로 全軍을 즉각 철수시킬 것을 지지하며 獨立과 主權을 보존하려는 「파키스탄」政府와 人民들의 鬪爭과 自決權을 위한 「자무」와 「캐시미르」人民들의 鬪爭을 굳건히 지지한다.

合意事項；中共과 美國은 社會體制나 外交政策面에서 根本的인 相異點들이 있다. 그러나 兩側은 모든 나라들이 그들의 社會體制에 상관없이 모든 國家의 主權과 領土權의 尊重原則, 다른 國家들에 대한 不侵略, 다른 國家들의 國內問題不干涉, 相互同等의 利益 및 平和共存의 原則위에서 행동해야 된다는 것에 合意했다. 國際紛爭은 이러한 原則에 基礎하여 武力使用이나 武力협박에 依存함이 없이 해결되어야 한다.

美國과 中共은 그들의 相互關係에 이 같은 原則을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美國과 中共은 이러한 國際關係의 原則에 留意,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 中共과 美國의 關係正常化를 向한 精進은 모든 나라에 有益하다.
- 兩國은 國際的 軍事衝突 등 위협을 除去하고자 한다.
- 어느 側도 「아시아」· 太平洋地域에서 「헤게모니」를 追求하지 않으며 어느 다른 나라나 나라의 集團들이 이러한 「헤게모니」를 確立하려는 努力에 反對한다.
- 어느 側도 第三者를 위해 協商하거나 다른 第三者를 目標로 하여 다른 나라들과 合意나 이해를 가질 용의가 없다.

兩國은 어떤 主要國家가 다른 國家들에 對抗하여 어떤 國家와 共謀하거나 主要 國家들이 世界를 利益圈으로 區分하는 것은 世界國家들의 利益에 反對된다는 見解를 보였다.

兩國은 長期間에 걸친 美國과 中共間의 심각한 紛爭點을 檢討했다.

中共側은 그들의 立場을 다음과 같이 再確認했다. 臺灣問題는 中共과 美國의 關係正常化를 妨害하는 決定的인 問題들이다. 中華人民共和國政府는 中國의 唯一한 合法政府이다. 臺灣은 오래전에 母國에 歸屬되었던 中共의 한 省이다. 臺灣의 解放은 어떠한 干涉할 權利가 없는 中共의 國內問題이다.

그리고 모든 美軍과 軍事施設은 臺灣으로부터 撤收해야 한다. 中共政府는 『하나의 中國· 하나의 臺灣』 혹은 『하나의 中國· 두개의 政府』 혹은 『獨立臺灣』을 야기시킬 目的을 가진 어떠한 行爲나 『臺灣의 地位는 決定되어야 한다』는 主張을 확고히 反對한다.

- 美國은 臺灣海峽 兩岸의 中國인들이 다같이 오직 하나의 中國이었으며 臺灣은 그 一部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認定한다. 美國政府는 그러한 立場에 挑戰하지 않는다. 美國은 臺灣問題의 中國人 自身들에 의한 平和的 解決에 관심이 있음을 再確認했다. 이러한 展望을 留意하면서 美國은 臺灣으로부터 全美軍과 軍事施設을 철수시키는 것이 終局的 目標임을 확인한다.

美國은 臺灣地域에 緊張이 減少됨에 따라 이 地域駐屯 美軍 및 軍事施設을 점진적으로 縮小할 것이다.

兩側은 兩國 國民사이의 理解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合意했다. 이 目的을 위해 兩側은 科學, 技術, 文化, 「스포츠」, 言論 등의 分野에서의 特殊領域에 關係 討議했다.

이러한 交流에 의한 國民 對 國民의 接觸과 交流는 상호 有益할 것이다.

兩側은 이러한 接觸과 交流를 더욱 容이하게 發展시키도록 한다.

兩側은 雙務的인 通商이 서로 利益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다른 分野라고 보며 平等과 互惠에 立脚한 經濟關係가 兩國 國民에게 利益이 될 것이라는데 合意했다.

兩側은 그들 兩國사이에 漸進的인 通商의 增大를 容이케 하는데 合意했다.

兩側은 여러 가지 「채널」을 通해 계속 接觸을 갖고 高位 美國代表를 隨時로 北京에 派遣하여 兩國關係의 正常化를 促進시키기 위한 具體的인 協의를 갖도록 하고 또한 相互關心事에 對해 意見을 계속 交換하도록 하는데 協定한다. 兩側은 이번 訪問으로 이루어진 兩國關係의 進展이 兩國關係에 새로운 展望을 열어주기를 바라는 希望을 披瀝했다.

兩側은 兩國關係의 正常化가 中共 및 美國國民의 利益이 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世界의 緊張을 緩和하는데 寄與한다고 믿는다.

「닉슨」大統領夫妻와 美國代表團 一行은 中華人民共和國 政府와 人民이 보여준 정중한 歡待에 對해 感謝를 表하는 바이다.

Joint U.S.-China Communiqué

February 28, 1972

Following is the joint U.S.-China communiqué issued at Shanghai at the conclusion of President Nixon's trip to China:

President Richard Nix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isite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the invitation of Premier Zhou Enlai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rom February 21 to February 28, 1972. Accompanying the President were Mrs. Nixon, U.S. Secretary of State William Rogers, Assistant to the President Dr. Henry Kissinger, and other American officials.

President Nixon met with Chairman Mao Zedong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on February 21. The two leaders had a serious and frank exchange of views on Sino-U.S. relations and world affairs.

During the visit, extensive, earnest and frank discussions were held between President Nixon and Premier Zhou Enlai on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well as on other matters of interest to both sides. In addition, Secretary of State William Rogers and Foreign Minister Chi Peng-fei [Ji Pengfei] held talks in the same spirit.

President Nixon and his party visited Peking and viewed cultural, industrial and agricultural sites, and they also toured Hangchow [Hangzhou] and Shanghai where, continuing discussions with Chinese leaders, they viewed similar places of interest.

The leade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und it beneficial to have this opportunity, after so many years without contact, to present candidly to one another their views on a variety of issues. They reviewed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 which important changes and great upheavals are taking place and expounded their respective positions and attitudes.

The U.S. side stated: Peace in Asia and peace in the world requires efforts both to reduce immediate tensions and to eliminate the basic causes of conflict. The United States will work for a just and secure peace; just, because it fulfills the aspirations of peoples and nations for freedom and progress; secure, because it removes the danger of foreign aggression. The United States supports individual freedom and social progress for all the peoples of the world, free of outside pressure or intervention. The United States believes that the effort to reduce tensions is served by improving communication between countries that have different ideologies so as to lessen the risks of confrontation through accident, miscalculation or misunderstanding. Countries should treat each other with mutual respect and be willing to compete peacefully, letting performance be the ultimate judge. No country should claim infallibility and each country should be prepared to reexamine its own attitudes for the common good. The United States stressed that the peoples of Indochina should be allowed to determine their destiny without outside intervention; its constant primary objective has been a negotiated solution; the eight-point proposal put forward by the Republic of Vietnam and the United States on January 27, 1972 represents a basis for the attainment of that objective; in

the absence of a negotiated settlement the United States envisages the ultimate withdrawal of all U.S. forces from the region consistent with the aim of self-determination for each country of Indochina. The United States will maintain its close ties with and support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will support eff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to seek a relaxation of tension and increased commun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The United States places the highest value on its friendly relations with Japan; it will continue to develop the existing close bonds. Consistent with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f December 21, 1971, the United States favors the continuation of the ceasefire between India and Pakistan and the withdrawal of all military forces to within their own territories and to their own sides of the ceasefire line in Jammu and Kashmir; the United States supports the right of the peoples of South Asia to shape their own future in peace, free of military threat, and without having the area become the subject of great power rivalry.

The Chinese side stated: Wherever there is oppression, there is resistance. Countries want independence, nations want liberation and the people want revolution -- this has become the irresistible trend of history. All nations, big or small, should be equal; big nations should not bully the small and strong nations should not bully the weak. China will never be a superpower and it opposes hegemony and power politics of any kind. The Chinese side stated that it firmly supports the struggles of all the oppressed people and nations for freedom and liberation and that the people of all countries have the right to choose their social systems according to their own wishes and the right to safeguard the independenc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their own countries and oppose foreign aggression, interference, control and subversion. All foreign troops should be withdrawn to their own countries.

The Chinese side expressed its firm support to the peoples of Vietnam, Laos and Cambodia in their efforts for the attainment of their goal and its firm support to the seven-point proposal of the Provisional Revolutionary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outh Vietnam and the elaboration of February this year on the two key problems in the proposal, and to the Joint Declaration of the Summit Conference of the Indochinese Peoples. It firmly supports the eight-point program for the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put forward by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April 12, 1971, and the stand for the abolition of the "U.N.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It firmly opposes the revival and outward expansion of Japanese militarism and firmly supports the Japanese people's desire to build an independent, democratic, peaceful and neutral Japan. It firmly maintains that India and Pakistan should,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s on the India-Pakistan question, immediately withdraw all their forces to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and to their own sides of the ceasefire line in Jammu and Kashmir and firmly supports the Pakistan Government and people in their struggle to preserve their independence and sovereignty and the people of Jammu and Kashmir in their struggle for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ere are essential difference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ir

social systems and foreign policies. However, the two sides agreed that countries, regardless of their social systems, should conduct their relations on the principles of respect for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all states, non-aggression against other states, non-interference in the internal affairs of other states, equality and mutual benefit, and peaceful coexistence. International disputes should be settled on this basis, without resorting to the use or threat of force.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re prepared to apply these principles to their mutual relations.

With thes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mind the two sides stated that:

- progress toward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s in the interests of all countries;
- both wish to reduce the danger of international military conflict;
- neither should seek hegemony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each is opposed to efforts by any other country or group of countries to establish such hegemony; and
- neither is prepared to negotiate on behalf of any third party or to enter into agreements or understandings with the other directed at other states.

Both sides are of the view that it would be against the interests of the peoples of the world for any major country to collude with another against other countries, or for major countries to divide up the world into spheres of interest.

The two sides reviewed the long-standing serious dispute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he Chinese reaffirmed its position: The Taiwan question is the crucial question obstructing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the sole legal government of China; Taiwan is a province of China which has long been returned to the motherland; the liberation of Taiwan is China's internal affair in which no other country has the right to interfere; and all U.S. forces and military installations must be withdrawn from Taiwan. The Chinese Government firmly opposes any activities which aim at the creation of "one China, one Taiwan," "one China, two governments," "two Chinas," an "independent Taiwan" or advocate that "the status of Taiwan remains to be determined."

The U.S. side declared: The United States acknowledges that all Chinese on either side of the Taiwan Strait maintain there is but one China and that Taiwan is a part of China.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does not challenge that position. It reaffirms its interest in a peaceful settlement of the Taiwan question by the Chinese themselves. With this prospect in mind, it affirms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withdrawal of all U.S. forces and military installations from Taiwan. In the meantime, it will progressively reduce its forces and military installations on Taiwan as the tension in the area diminishes.

The two sides agreed that it is desirable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between the two peoples. To this end, they discussed specific areas in such fields as science, technology, culture, sports and journalism, in which people-to-people contacts and

exchanges would be mutually beneficial. Each side undertakes to facilitate the further development of such contacts and exchanges.

Both sides view bilateral trade as another area from which mutual benefit can be derived, and agreed that economic relations based on equality and mutual benefit are in the interest of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They agree to facilitate the progressive development of trade between their two countries.

The two sides agreed that they will stay in contact through various channels, including the sending of a senior U.S. representative to Peking from time to time for concrete consultations to further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continue to exchange views on issues of common interest.

The two sides expressed the hope that the gains achieved during this visit would open up new prospects for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y believe that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not only in the interest of the Chinese and American peoples but also contributes to the relaxation of tension in Asia and the world.

President Nixon, Mrs. Nixon and the American party expressed their appreciation for the gracious hospitality shown them by the Government and peopl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V

기타

(1) 페리보고서 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1999.10.12)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이끄는 「북한정책 검토팀」에서 1998년 11월부터 약 8개월간에 걸쳐 북한에 대한 정책을 광범위하게 재검토하여 1999년 10월 12일 미 상원 청문회에서 그 결과 보고서를 배포하였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 검토결과 및 건의 -

< 차 례 >

1. 근본적인 정책검토 필요성
2.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
3. 역내 국가들의 관점
 - 가. 한 국
 - 나. 일 본
 - 다. 중 국
 - 라. 북 한
4. 주요 작업 결과
5. 검토되었으나 폐기된 대안들
 - 가. 현상유지
 - 나. 북한약화
 - 다. 북한개혁
 - 라. 매수에 의한 목표달성
6.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 이중접근 전략
7. 이중접근 전략의 장점
8. 주요정책 권고사항
9. 결 어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이끄는 “북한정책 검토팀”(이하“검토팀”)은 웬디 셔먼 국무부 자문대사의 관계부처 그룹과 함께 대통령과 국가안보위원들로부터 1998년 11월 북한에 대한 정책을 광범위하게 검토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검토작업은 약 8개월 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미 행정부 고위인사들과 하바드 대학의 애쉬톤 카터 박사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또한 검토팀은 국무장관, 국방장관, 안보보좌관 및 고위 정책자문관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광범위한 지침을 받았다.

검토팀은 미 정부 내외의 전문가들과 계속 협의하여 왔다. 페리조정관은 특히 대의회 정례 보고를 시행하였으며 이 가운데 의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검토팀은 또한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을 포함 동북아 이해당사국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검토팀은 이외에도 인도적 구호 활동 요원들과 만나 여러 가지 자료를 받을 수 있었으며, 개인 및 단체들과도 접촉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페리조정관은 검토팀을 이끌고 지난 5월 방북, 북한정부의 견해를 직접 파악할 수 있었다.

검토팀의 작업결과와 건의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다.

1. 근본적인 정책검토 필요성

검토팀은 94년 위기 이후 한반도 안보상황이 크게 변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대북정책 검토의 핵심사항은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 활동이라 하겠다.

94년 제네바합의가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을 동결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북한은 94년 이전에 은닉해 놓았을지도 모르는 소량의 핵분열 물질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제네바합의가 없었다면 상당수의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충분한 플루토늄을 생산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네바합의에 따른 영변 핵시설에서의 플루토늄 생산 동결에도 불구하고, 검토팀은 북한의 핵무기 관련 활동이 계속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금창리 시설에 대한 접근과 방문으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94년 이래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배치 및 수출을 계속해 왔으며, 이들의 사정거리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일부는 잠재적으로 미국 영토에 도달할 능력까지 보유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중요한 변화가 많이 있었다. 94년 여름 제네바합의에 대한 협상이 개시된 이후 김정일 장군이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정식으로 정권을 물려받고 통치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즉 북한의 현 지도부는 제네바합의 당시의 지도부와는 다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동 기간중에 북한의 경제는 산업 및 식량 생산이 94년 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등 심각한 약화되었다. 그 결과 북한주민들이 겪는 비극적인 상황은 미국민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한편 북한정권의 행태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한편, 한국정부도 김대중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변화를 맞게 되었다. 즉 김대통령이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지도자로서,

우리의 동맹국이며 또한 미군 37,000명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김대통령의 의견과 통찰은 한반도에서의 미 안보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심적인 요소라 하겠다. 어떠한 미국의 정책도 한국정부의 정책과 조율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다. 오늘날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은 우리에게 94년 당시와는 크게 다른 상황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다른 우리의 동맹인 일본의 북한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1998년 8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일본 영토위로 발사한 이래 일본의 우려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일본 의회가 제네바합의에 따라 KEDO가 건설중인 경수로 분담금안을 통과시키고 일본 정부 역시 제네바합의 유지를 희망하고 있으나, 북한이 미사일을 재발사할 경우 국내적으로 제네바합의에 대한 정치적 지지 획득과 안보정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은 역내 안보정책과 관련 종종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클린턴·장쩌민 정상회담 등 미·중 양자간의 광범위한 대화를 통해 중국 역시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활동이 역내 및 세계안보를 해친다는 미국측 우려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음을 검토팀은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제반요소들이 결합되어 94년 당시와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을 낳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검토팀은 대북정책을 전면 검토해야 한다는 클린턴 대통령의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하였다. 검토팀은 북한을 다루는 분명한 방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행정부와 의회간의 보다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2.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

검토팀은 94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미군과 역내 동맹국들이 강력한 안보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데 미군 고위관계자들 및 동맹국들과 의견을 같이하였다. 94년 이래 미국은 미군과 동맹국들과의 연합군 전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검토팀은 연합군이 한국을 방어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북한의 군부 지도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으므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쿠웨이트-이라크에서의 사막의 폭풍작전과는 달리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인구밀집 지역에서 벌어진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백만대군이 휴전선 인접지역에 배치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제2의 한국전은 1950~53년 한국전 이래 미국이 직면할 최대의 전쟁이 될 것이다. 수십만의 미국, 한국 그리고 북한의 군인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을 것이며 수백만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전쟁을 일으킬 의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도 전쟁의 파괴력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강력한 억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 상황하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는 군사적 측면에서 남·북한 양쪽 공히 안정적인이라 하겠다. 비록 고립에 처한 북한정권의 오랜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북한도 무력충돌의 결과가 재난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안정이 흔들림없이



유지된다면 한국전쟁을 종결하며 궁극적으로 한국민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항구적 평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제공될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항구적인 정책목표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또는 장거리 미사일 특히 양자를 모두 획득할 경우(핵탄두 탑재 장거리 미사일) 이러한 안정은 위태로워질 것이다. 북한이 핵 및 미사일을 획득할 경우 억지력 약화는 물론 억지실패시 초래될 피해를 증폭시킬 것이다. 대량파괴 무기는 긴장완화, 관계 개선 그리고 항구적 평화수립을 위한 여건들을 손상시킬 것이다.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획득은 역내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며 국제 비확산 체제에도 심대한 손상을 입힐 것이다. 또한, 북한이 평화획득을 위해 미사일 수출을 계속 할 경우 중동 등 여타지역에서의 불안을 야기할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의 시급한 초점은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관련 활동을 종식시키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입장은 한반도 안보문제 등 여타문제를 등한시 하고 비확산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대량파괴 무기를 통제하는 것이 보다 폭 넓은 형태의 역내 안보 추구에 긴요하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활동을 종식함에 있어 미국의 대북정책은 아래 세가지 제약요소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여러 문제점에 직면해 있는 북한이 결국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논리상으로는 가능하겠으나, 그러한 변화가 임박했다는 증거는 없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와 같은 희망적 관측을 버리고 현재의 북한 모습 그대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전쟁발발시 37,000여명의 주한 미군과 중강군, 남북한 주민, 역내 동맹국들과 우방국들이 직면할 가공할 위협을 감안할 때, 미국은 목표를 신중하게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비록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북한내에도 제네바합의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나 제네바 합의는 영변 핵시설에서의 플루토늄 생산에 대한 동결과 검증을 가능케했고 또한 미국이 플루토늄 생산시설로 설계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던 금창리 지하시설 관련 북한과의 논의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북한으로서는 영변 핵시설 동결을 해제하는 것이야말로 핵무기 보유의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다. 미국의 안보목표를 감안할 때 우리는 제네바 합의를 약화시키거나 대체해서는 안되며 보완해야 할 것이다.

3. 역내 국가들의 관점

검토팀은 미행정부외의 인사들과 심도있는 협의를 하였으며, 그들의 관점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들의 관점은 아래와 같다.

가. 한국

한국의 이해관계가 미국의 이해관계와 동일한 것은 아니나 상당 부분 일치한다. 한국이 미국과 같은 세계적 국가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 비확산 노력에 덜 적극적이나, 한국

은 북한의 핵무기가 한반도에서의 억지력을 저해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들은 오랜동안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의 사정거리내에서 살아왔지만, 북한의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과 일본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해 미국과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다. 한국은 한국전쟁으로 생겨난 이산가족의 재회와 남북기본합의서(남북공동위 재가동 포함) 이행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포용정책”으로 알려진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의미한다. 김대통령의 구상하에서, 한국은 북한을 약화시키거나 흡수하려는 어떠한 의도도 포기하고, 공식적·비공식적 남북접촉 증진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제네바합의와 KEDO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지지하나, 한국 국회는 우리 의회와 마찬가지로 KEDO에의 자금공여를 검토함에 있어 북한의 행태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다.

나. 일본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이해관계도 미국의 이해관계와 동일하진 않으나 상당히 일치된다.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는 일본의 북한문제에 관한 우선 순위를 급격히 높여 놓았다. 일본인들은 북한의 미사일 관련 움직임은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북한 대표들은 금세기 초에 있었던 일본의 한국 점령을 계속해서 언급함으로써 역사적 감정을 악화시켰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KEDO에 대한 일본의 지원문제가 일본 의회에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제네바합의 파기는 북한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게 하여 위협을 급격히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지만,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가 있을 경우 제네바합의 유지를 위한 일정부의 능력이 확실히 않게 될 것이다. 일본은 또한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실종자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

다. 중국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커다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한반도 긴장고조가 가져올 여파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북한의 미사일이 중국이 원하지 않는 미국의 국가 미사일 방위(NMD)와 전역 미사일 방위(TMD) 계획의 중요한 촉매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가 역내 군비경쟁을 야기하고, 핵 보유국 입장에서 계속 유지해 나가기를 원하는 비확산 체제를 저해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인해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계획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우려와 상당부분 일치된다. 중국은 미국, 한국, 일본과 자국의 정책을 조율하지는 않을 것이나, 중국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 북한이 핵 및 미사일 개발계획을 포기토록 그들의 대화채널을 활용할 것이다.

라. 북한

세계 각지의 정보기관과 전문가들과의 집중적인 협의, 최근 북한의 행태에 관한 검토 그리고 페리조정관의 북한 지도자와의 협의 결과 등에 기초하여, 검토팀은 이 수수께끼 같은 나라에 대한 몇가지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면에 있어서 아직도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검토팀은 어떠한 미국의 정책도 단순히 북한에 대한 인식과 북한의 미래의 행위에 관한 추측에만 근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많은 취약점을 느끼고 있는 북한 정권은 모든 수사(修辭)와 정책의 기초로서 자급자족, 주권, 자주국방 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외부세력이 민주주의와 경제개혁을 고무하는 것을 체제 위협기도로 보고 있다. 북한은 외국의 영향과 접촉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으며, 심지어 심각한 경제문제에 대한 구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증진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미국이 오랜 동안 부과해온 경제제재의 해제를 중시하고 있다.

4. 주요 작업 결과

검토팀은 권고사항의 기본이 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주요한 사항을 발견하였다.

- 가. 북한의 핵 무기 획득, 장거리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 시험, 배치 그리고 수출은 장기적으로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수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한반도에서의 억지력의 안정을 저해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미국의 주요한 이해관계에 역행하는 심각한 지역적, 세계적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행위의 종식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 나. 미국과 동맹국들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시 신속하고 확실하게 승리할 것이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는 최근 미국이 경험한 어떠한 경우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억지력을 약화시키거나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조치를 피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과 관련된 목표를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한다.
- 다. 만약 미국이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활동을 종식시킴으로써 안정이 유지될 수 있다면, 미국은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준비해야 하며,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 및 평화공존 정책과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
- 라. 영변 핵시설의 동결해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획득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다. 따라서 제네바합의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의해 유지되어야 하며 이행되어야 한다. 제네바합의가 있음으로써 북한의 영변에서의 플루토늄 생산능력이 동결되고 검증이 가능하게

되었다. 제네바합의가 없었다면, 북한은 매년 상당수의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충분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제네바합의가 모든 핵무기 관련활동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동결한 것은 아니며 미사일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제네바합의의 한계에 대하여는 이를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것보다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마. 한국과 일본이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지 않는 한 미국의 어떠한 대북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3개국의 이해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치하기 때문에 3국간 조정이 가능하다.
- 바. 북한이 처한 상황, 고립, 의구심 그리고 협상스타일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할 때, 미국의 정책은 북한의 도발에 직면하더라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현 행정부의 임기 이후에도 앞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과 정책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의회의 광범위한 지지와 지속적인 관여가 필수적이다.

5. 검토되었으나 폐기된 대안들

검토과정에서 검토팀은 북한에 의해 야기된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전략적 대안 등 가치있는 많은 조언을 받았다. 검토팀은 아래와 같은 주요 대안들을 검토하였으나 채택하지는 않았다.

가. 북한 약화

일부 인사들은 북한을 약화시켜, 김정일 정권의 종말을 촉진하는 정책을 권고한다. 검토팀은 이 대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결국 몇가지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북한정권의 북한사회에 가하고 있는 엄격한 통제와 정권에 대한 내부에서의 조직적 저항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전략은 잘된다 하더라도 실현하는데 오랜 시간을 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 전략이 갖고 있는 시간적 요소는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의 시급성에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 더욱이 이 전략은 파괴적인 전쟁의 위험을 안고 있어 역내 동맹국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압박 정책은 북한 정권보다는 북한 주민에게 더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나. 북한 개혁

많은 분석가들은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민주주의와 시장개혁의 도래를 앞당김으로써 북한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제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토록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개혁을 가속화하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아무리 우리가



그런 결과를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북한개혁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정권이 그러한 개혁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러한 개혁전략을 북한 약화전략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북한 개혁정책은 북한 약화정책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계획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될 것이다.

다. 현상 유지

많은 정책전문가들이 지난 10년간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해 왔던 접근방법을 계속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군사적 준비태세와 공고한 동맹관계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사일 문제, 미군유해 문제와 제네바합의 이행을 위해 북한과 제한된 관계만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들은 영변에서 제네바합의가 준수되고 있는 한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분열물질을 추가로 획득하는데 앞으로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이들은, 핵무기가 없다면 북한의 미사일 계획은 현재의 미·북미사일 회담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다고 본다. 이 논지를 따르면, 미국은 북한 위협 수준에 따라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핵심적인 안보목표를 추구할 수 있으므로 미국의 정책 변화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 정책이 미국의 안보 이해에 부합되었다는 점에서 현상유지 접근방법에 장점이 있기는 하나, 검토팀은 현상유지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미국의 안보이해의 관점에서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 없음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미국의 우려를 올바르게 해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상유지 상태가 위기로 급격히 발전되는 상황도 쉽게 상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이것이 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것이건 아니건 간에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도 제네바합의에 대한 정치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북한이 제네바합의 이행을 중단하고, 영변 핵시설 동결을 해제하면 한반도는 94년 여름과 같은 핵위기로 빠져들게 된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현상 유지전략이 갖고 있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미국은 비록 원한다할지라도 현상유지 정책을 지속할 수 없을지 모른다.

라. “대수”에 의한 목표달성

북한은 현재와 같은 산업 및 농업의 쇠퇴상황하에서 때때로 미국이 핵무기와 미사일 수출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를 경화와 “교환”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해 왔다. 예컨대, 북한은 미사일 수출중단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을 미국이 보상해 주면 미사일 수출을 중단할 수 있음을 제의해 왔다. 검토팀은 안보와 물질적 보상을 맞바꾸는 이러한 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계속 공갈협박전술을 구사토록 고무시킬 뿐 아니라, 전세계의 여타 대량살상무기 확산 국가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전술을 사용토록 고무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미국 행정부의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지지를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아서도 안된다.

6.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 이중 접근전략

대북정책 검토 결과 결과 권고하고자 하는 보다 나은 접근방법은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과 관련된 우리의 주요 관심사에 초점을 두는 이중 접근전략이다. 우리의 이러한 접근 전략은 한국 및 일본측과 긴밀히 협의하였으며 양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 사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관련 3개국이 동일한 목표 추구를 위해 상호 조율 및 상호 보완된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전략이다. 이중 접근방법은 우리 모두의 안보이익을 수호하는데 목표가 있다.

첫번째 접근방식은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그리고 검토팀이 생각하기에는 북한도 선호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새롭고, 포괄적이며 통합된 접근방식을 지향하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다는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는 보장을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MTCR의 기준을 넘어서는 북한 미사일의 시험, 생산, 배치와 그러한 미사일 및 관련기술과 장비 수출의 전면 중단을 추구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계획의 완전한 중단을 위한 협상을 통하여, 우리는 한반도의 안정적인 안보상황을 확보하면서, 장기적으로 동아시아에 있어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보하고 냉전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단계적이고 상호적인 방법으로 북한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북 압력을 완화하여 나갈 것이다. 북한이 느끼고 있는 위협을 감소시킴으로써 북한은 한·미·일과의 평화공존 및 북한의 경제·사회 발전추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핵 및 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제거한다면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 하고, 대북 무역제재를 완화하며, 북한에 개최를 부여하는 여타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이러한 접근방법에 호응한다면 한국과 일본 정부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상호 조율된 개별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북한과의 광범위한 협상을 위해서는 각측이 회담의 성공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취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우리가 첫 번째 방안을 추진하는 동안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자제할 것이라는 보장을 주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중지를 배경으로, 대북정책 검토팀은 대통령 명령 형식의 대북 무역금수 조치를 필요시 철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완화토록 건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또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를 시사하였다.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인솔한 검토팀은 지난 5월 방북하여 북한 관리들과 논의를 가졌으며, 북한의 견해를 청취하였다. 우리들은 또한 포괄적이고 통합된 협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시킬 초기 조치들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카트만 대사와 북한 김계관 부상의 지난 9월 베를린 회담 결과, 미국은 북한이 미·북관계 개선을 위한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노동과 대포동 미사일을 포함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할 것으로 이해하고 기대하게 되었다. 추후 북한은 양국간 회담이 지속되는 동안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할 것이라

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는 제재완화 조치를 취하였다. 금년 가을 북한의 고위 관리가 페리 방북에 대한 답방으로서 미·북관계 개선에 대한 협의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미·북 양측은 첫 번째 접근방식에 따라 적극적이고 의미있는 조치들을 취하였다. 이것은 단지 초기단계의 조치이고 미·북 양측 공히 동 조치를 용이하게 철회할 수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동 조치가 한반도의 위협 감소를 위한 장기적이고 중요한 과정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

동 검토에 따라 마련된 첫번째 접근방식은 미국의 안보와 동북아 안정에 긴요하며 최근 몇주간 취해진 조치들이 큰 기대를 주고 있지만, 첫번째 접근방식의 성공여부는 북한의 협력 의지 여하에 달려 있다. 검토팀으로서는 북한의 호응을 희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논의과정에서 비추어 볼 때 아직 확신할 수는 없다.

따라서, 동맹국들과의 협의와 이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두 번째 접근방식을 준비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두 번째 접근방식이란 우리가 협상을 통해 제거할 수 없는 위협을 봉쇄하는 것이다. 상기 두가지 접근방식을 모두 포괄함으로써 우리의 접근방식의 성공은 북한의 의도와 행동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북한 내부 체제의 변화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된다.

만약 북한이 첫번째 접근방식을 거부한다면 미국으로서는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추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위협을 봉쇄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제네바합의를 유지하고 가능한 한 직접적 충돌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국과 동맹국들은 단호하고 절제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첫번째 접근방식으로 돌아와 역내 안보상황을 위협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한다.

우리가 건의하는 전략은 미·북간 직접협상의 범주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문제들에는 한국의 이산가족 재회,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남·북 공동위 재가동 포함) 및 일본인 납치 문제와 또한 마약 밀매와 같은 주요 관심사들이 있다. 그러나, 검토팀은 미·북관계가 개선되어 나감에 따라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또한 다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토팀은 화학·생물무기문제는 다자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도 많은 제안들이 제기되었으나, 통일 문제는 궁극적으로 한국민들 스스로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끝으로 검토팀은 주한 미군이 일부라도 철수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보다는 현재의 강력한 억제체제를 손상시킬 것이다.

7. 이중 접근 전략의 장점

이중 접근전략은 아래와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 가. 동맹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동맹국들의 지지 없이는 미국의 어떠한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한국의 지도층이 페리조정관과 클린턴 대통령에게 직접 언급한 바와 같이 이중 접근전략은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기초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정책은 일본정부가 권고한 대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 중단을 핵개발 중단과 같은 비중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
- 나. 미국의 협상력을 활용할 수 있다. 이중 접근 전략에 따라 미국은 북한이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압력의 포괄적 완화를 제안할 것이다. 이 전략은 한국과 일본이 취할 용의가 있는 긍정적 조치들을 보완할 것이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올바른 행동을 물질적으로 “보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미국이 소중하게 여기는 원칙을 손상하는 동시에 더 많은 협박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 다. 전쟁 억지력을 그대로 유지한다.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력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권고하지 않으며, 미국은 군사적 태세를 협상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오늘날 한반도에서 억지력은 강력하다. 안정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다. 마찬가지로 이 검토에서 권고된 사항은 미국의 TMD 사업 추진이나 한·일 양국의 이 사업 기회를 제한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연계(이중접근 전략과 TMD 사업)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권고한다.
- 라. 제네바합의에 기초하고 있다. 이 접근방안은 제네바합의 이상의 것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권고하는 접근방법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핵 관련 일체의 활동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전면 중단시키고자 하며 제네바합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미사일 문제도 해결코자 한다. 이에 더하여 미국은 제네바합의에서 미·북간 평화적 관계로의 이행을 추구한다.
- 마.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관한 미국 및 동맹국들의 단기적 목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장기적 목표를 같이 추구한다. 이 접근방법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이 역내 안정에 미칠 단기적 위협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4자회담에서 추구하고 있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건 조성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이 접근방법은 핵 분야의 협력을 넘어 미·북간 광범위한 관계 개선으로 나아가려는 제네바합의의 장기적 목표실현을 모색하고 있다.
- 바. 특정한 북한의 행위나 의도에 의존하지 않는다. 제안된 전략은 융통성이 있으며, 북한의 행위나 행동이 도발적이거나 유화적이라는 가정을 피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본 전략은 북한의 의도나 북한 내부체제의 변화를 추구하지도 않고 여기에 그 성공여부가 달려 있지 않다. 권고된 틀에는 적절한 비상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8. 주요정책 권고사항

상기한 일반적인 권고의 맥락에서, 검토팀은 아래와 같은 5가지의 주요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 가. 검토팀이 권고하고 동맹국들이 지지하는 대로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을 채택할 것. 구체적으로, 상호 위협감소에 기초하여 북한과의 협상을 개시할 것.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들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나. 북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미 정부내에 보다 강화된 메카니즘을 설치할 것. 정부내 관계장관회의와 차관급협의회의 지침을 받는 소규모의 북한문제 고위실무그룹을 설치할 것. 이 그룹은 대사급 고위관리가 주재하고 국무성내에 설치하여 대북한 정책을 조정토록 할 것.
- 다. 지난 3월 구축된 한국 및 일본과의 긴밀한 협의기구를 유지할 것. 정책검토 과정에서 설치된 3자 대북정책 조정그룹(TCOG)은 한·미·일 3국의 고위정부관리로 구성되어 대북한 정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그룹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전반적인 대북정책과 협상전략을 협의하고 이 문제에 대한 3국 정상간의 빈번한 협의를 준비토록 할 것. 미국측 수석대표는 대북정책을 조정하는 고위관리가 맡을 것.
- 라. 북한문제에 관하여 확고하고 초당적이며 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할 것. 미국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 의논하여 북한문제에 대한 의회와의 초당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미국과 동맹국들의 공동 전략이 아니면 어떠한 정책도 성공할 수 없듯이, 의회의 관여와 지지가 없이는 어떠한 정책도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을 것임.
- 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단기적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행동계획을 승인할 것. 북한의 부정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이 보고서가 제의한 대응은 한반도와 미국 및 동맹국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임. 이러한 대응은 북한에게 도발적인 행동이 중대한 대가를 수반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어야 함. 그러나 북한의 행동이 제네바합의를 위반하지 않는 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행동이 이 합의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할 것임. 왜냐하면,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이 제네바합의를 위반한 셈이 되어 북한으로 하여금 영변 시설 동결을 해제하여 94년 여름의 위기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임.

9. 결 어

검토팀에 권고한 접근방식은 북한에 대한 현실적 시각, 군사적 현실의 냉철한 이해와 미국과 우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확고한 결의 등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포괄적 틀에 관한 우리의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관련하여 북한이 여러 가지 뒤섞인 신호를 보낼 수도 있으며, 협상과정이 개시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가 비난할 만한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발적인 상황에 대비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틀에 부합하는 신중한 행동으로 정책 기초를 유지하여야 한다. 미국과 그 우방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어떤 형태의 도발적 행동이 있을 경우 우리가 이에 적절히 대응할 것임을 북한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적 행위로 인하여 미국이 현재의 지원수준을 재평가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난 1년동안의 상황발전이 미·북 관계에 있어 유일한 기회의 창임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한·미·일 3국간에 명확한 공통의 이해가 있다. 중국의 전략적 목표-특히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목표와 부합된다. 북한은 제네바합의의 이행 의지를 갖고 있고 미·북관계 개선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요소들에 어려움은 있다. 저변에 깔린 긴장과 의혹은 간헐적인 무장충돌과 사건을 초래해 왔으며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십 년 동안의 적대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교적 모멘텀을 마련코자 하는 노력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진전이 없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사적으로 1999년은 한반도에 대한 중요한 미국의 안보문제를 다루는 최상의 기회의 하나로 자리 매김하게 될지도 모른다.

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Dr. William J. Perry
Special Advisor to the President
and the Secretary of State

October 12, 1999

A North Korea policy review team, led by Dr. William J. Perry and working with an interagency group headed by the Counselor of the Department of State Ambassador Wendy R. Sherman, was tasked in November 1998 by President Clinton and his national security advisors to conduct an extensive review of U.S. policy toward the DPRK. This review of U.S. policy lasted approximately eight months, and was supported by a number of senior officials from the U.S. government and by Dr. Ashton B. Carter of Harvard University. The policy review team was also very fortunate to have received regular and extensive guidance from the Secretary of State,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 and senior policy advisors.

Throughout the review the team consulted with experts, both in and out of the U.S. government. Dr. Perry made a special point to travel to the Capitol to give regular status reports to Members of Congress on the progress of this review, and he benefited from comments received from Members on concepts being developed by the North Korea policy review team. The team also exchanged views with officials from many countries with interests i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our allies, the ROK and Japan. The team also met with prominent members of the humanitarian aid community and received a wealth of written material, solicited and unsolicited. Members of the policy review team met with many other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as well. In addition, the team traveled to North Korea this past May, led by Dr. Perry as President Clinton's Special Envoy, to obtain a first-hand understanding of the views of the DPRK Government.

The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of the North Korea Policy Review set forth below reflect the consensus that emerged from the team's countless hours of work and study.

1. The Need for a Fundamental Review of U.S. Policy

The policy review team determined that a fundamental review of U.S. policy was indeed needed, since much has changed in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1994 crisis.

Most important and the focus of this North Korea policy review - are developments in the DPRK's nuclear and long-range missile activities.

The Agreed Framework of 1994 succeeded in verifiably freezing North Korean plutonium production at Yongbyon - it stopped plutonium production at that facility so that North Korea currently has at most a small amount of fissile material it may have secreted away from operations prior to 1994; without the Agreed Framework, North Korea could have produced enough additional plutonium by now for a significant

number of nuclear weapons. Yet, despite the critical achievement of a verified freeze on plutonium production at Yongbyon under the Agreed Framework, the policy review team has serious concerns about possible continuing nuclear weapons-related work in the DPRK. Some of these concerns have been addressed through our access and visit to Kumchang-ni.

The years since 1994 have also witnessed development, testing, deployment, and export by the DPRK of ballistic missiles of increasing range, including those potentially capable of reaching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There have been other significant changes as well. Since the negotiations over the Agreed Framework began in the summer of 1994, formal leadership of the DPRK has passed from President Kim Il Sung to his son, General Kim Jong Il, and General Kim has gradually assumed supreme authority in title as well as fact. North Korea is thus governed by a different leadership from that with which we embarked on the Agreed Framework. During this same period, the DPRK economy has deteriorated significantly, with industrial and food production sinking to a fraction of their 1994 levels. The result is a humanitarian tragedy which, while not the focus of the review, both compels the sympathy of the American people and doubtless affects some of the actions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 unrelated change has com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with the Presidency of Kim Dae Jung. President Kim has embarked upon a policy of engagement with the North. As a leader of great international authority, as our ally, and as the host to 37,000 American troops, the views and insights of President Kim are central to accomplishing U.S. security objectives on the Korean Peninsula. No U.S. policy can succeed unless it is coordinated with the ROK's policy. Today's ROK policy of engagement creates conditions and opportunities for U.S. policy very different from those in 1994.

Another close U.S. ally in the region, Japan, has become more concerned about North Korea in recent years. This concern was heightened by the launch, in August 1998, of a Taepo Dong missile over Japanese territory. Although the Diet has passed funding for the Light Water Reactor project being undertaken by 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 pursuant to the Agreed Framework, and the government wants to preserve the Agreed Framework, a second missile launch is likely to have a serious impact on domestic political support for the Agreed Framework and have wider ramifications within Japan about its security policy.

Finally, while the U.S. relationship with China sometimes reflects different perspectives on security policy in the region, the policy review team learned through extensive dialogue between the U.S. and the PRC, including President Clinton's meetings with President Jiang Zemin, that China understands many of the U.S. concerns about the deleterious effects tha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activities could have for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All these factors combine to create a profoundly different landscape than existed in 1994. The review team concurred strongly with President Clinton's judgment that these changed circumstances required a comprehensive review such as the one that the President and his team of national security advisors asked the team to conduct. The policy review team also recognized the concerns of Members of Congress that a clear path be charted for dealing with North Korea, and that there be closer cooperation between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on this issue of great importance to our

security. The review team shared these concerns and has tried hard to be responsive to them.

2. Assessment of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course of the review, the policy team conferred with U.S. military leaders and allies, and concluded that, as in 1994, U.S. forces and alliances in the region are strong and ready. Indeed, since 1994, the U.S. has strengthened both its own forces and its plans and procedures for combining forces with allies. We are confident that allied forces could and would successfully defend ROK territory. We believe the DPRK's military leaders know this and thus are deterred from launching an attack.

However, in sharp contrast to the Desert Storm campaign in Kuwait and Iraq, war on the Korean Peninsula would take place in densely populated areas. Considering the million-man DPRK army arrayed near the DMZ, the intensity of combat in another war on the Peninsula would be unparalleled in U.S. experience since the Korean War of 1950-53. It is likely that hundreds of thousands of persons - U.S., ROK, and DPRK - military and civilian - would perish, and millions of refugees would be created. While the U.S. and ROK of course have no intention of provoking war, there are those in the DPRK who believe the opposite is true. But even they must know that the prospect of such a destructive war is a powerful deterrent to precipitous U.S. or allied action.

Under present circumstances, therefore, deterrence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is stable on both sides, in military terms. While always subject to miscalculation by the isolated North Korean government, there is no military calculus that would suggest to the North Koreans anything but catastrophe from armed conflict. This relative stability, if it is not disturbed, can provide the time and conditions for all sides to pursue a permanent peace on the Peninsula, ending at last the Korean War and perhaps ultimately leading to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ople. This is the lasting goal of U.S. policy.

However, acquisition by the DPRK of nuclear weapons or long-range missiles, and especially the combination of the two (a nuclear weapons device mounted on a long-range missile), could undermine this relative stability. Such weapons in the hands of the DPRK military might weaken deterrence as well as increase the damage if deterrence failed. Their effect would, therefore, be to undermine the conditions for pursuing a relaxation of tensions, improved relations, and lasting peace. Acquisition of such weapons by North Korea could also spark an arms race in the region and would surely do grave damage to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s covering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A continuation of the DPRK's pattern of selling its missiles for hard currency could also spread destabilizing effects to other regions, such as the Middle East.

The review team, therefore, concluded that the urgent focus of U.S. policy toward the DPRK must be to end its nuclear weapons and long-range missile-related activities. This focus does not signal a narrow preoccupation with nonproliferation over other dimensions of the problem of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rather reflects the fact that control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s essential to the pursuit of a wider form of security so badly needed in that region.

As the United States faces the task of ending these weapons activities, any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must be formulated within three constraining facts:

First, while logic would suggest that the DPRK's evident problems would ultimately lead its regime to change, there is no evidence that change is imminent. United States policy must, therefore, deal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s it is, not as we might wish it to be.

Second, the risk of a destructive war to the 37,000 American service personnel in Korea and the many more that would reinforce them, to the inhabitants of the Korean Peninsula both South and North, and to U.S. allies and friends in the region dictate that the United States pursue its objectives with prudence and patience.

Third, while the Agreed Framework has critics in the United States, the ROK, and Japan and indeed in the DPRK the framework has verifiably frozen plutonium production at Yongbyon. It also served as the basis for successful discussions we had with the North earlier this year on an underground site at Kumchang-ni - one that the U.S. feared might have been designed as a substitute plutonium production facility. Unfreezing Yongbyon remains the North's quickest and surest path to nuclear weapons. U.S. security objectives may therefore require the U.S. to supplement the Agreed Framework, but we must not undermine or supplant it.

3. Perspectives of Countries in the Region

The policy review team consulted extensively with people outside of the Administration to better understand the perspectives of countries in the region. These perspectives are summarized below.

a. Republic of Korea

The ROK's interests are not identical to those of the U.S., but they overlap in significant ways. While the ROK is not a global power like the United States and, therefore, is less active in promoting nonproliferation worldwide, the ROK recognizes that nuclear weapons in the DPRK would destabilize deterrence on the Peninsula. And while South Koreans have long lived within range of North Korean SCUD ballistic missiles, they recognize that North Korea's new, longer-range ballistic missiles present a new type of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ROK thus shares U.S. goals with respect to DPRK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The South also has concerns, such as the reunion of families separated by the Korean War and implementation of the North-South Basic Agreement (including reactivation of North-South Joint Committees). The U.S. strongly supports these concerns.

President Kim Dae Jung's North Korea policy, known as the "engagement" policy, marked a fundamental shift toward the North. Under the Kim formulation, the ROK has forsworn any intent to undermine or absorb the North and has pursued increased official and unofficial North-South contact. The ROK supports the Agreed Framework and the ROK's role in KEDO, but the ROK National Assembly, like our Congress, is carefully scrutinizing DPRK behavior as it considers funding for KEDO.

b. Japan

Like the ROK, Japan's interests are not identical to those of the U.S., but they overlap strongly. The DPRK's August 1998 Taepo Dong missile launch over the Japanese islands abruptly increased the already high priority Japan attaches to the



North Korea issue. The Japanese regard DPRK missile activities as a direct threat. In bilateral talks with Japan, the DPRK representatives exacerbate historic animosities by repeatedly referring to Japan's occupation of Korea earlier in this century. For these reasons, support for Japan's role in KEDO is at risk in the Diet. The government's ability to sustain the Agreed Framework in the face of further DPRK missile launches is not assured, even though a collapse of the Agreed Framework could lead to nuclear warheads on DPRK missiles, dramatically increasing the threat they pose. Japan also has deep-seated concerns, such as the fate of missing persons suspected of being abducted by the DPRK. The U.S. strongly supports these concerns.

c. China

China has a strong interest in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s aware of the implications of increased tension on the peninsula. China also realizes that DPRK ballistic missiles are an important impetus to U.S. national missile defense and theater missile defenses, neither of which is desired by China. Finally, China realizes that DPRK nuclear weapons could provoke an arms race in the region and undermine the nonproliferation regime which Beijing, as a nuclear power, has an interest in preserving. For all these reasons the PRC concerns with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re in many ways comparable to U.S. concerns. While China will not coordinate its policies with the U.S., ROK, and Japan, it is in China's interest to use its own channels of communication to discourage the DPRK from pursuing these programs.

d. The DPRK

Based on extensive consultation with the intelligence community and experts around the world, a review of recent DPRK conduct, and our discussions with North Korean leaders, the policy review team formed some views of this enigmatic country. But in many ways the unknowns continue to outweigh the knowns. Therefore, we want to emphasize here that no U.S. policy should be based solely on conjectures about the perceptions and future behavior of the DPRK.

Wrapped in an overriding sense of vulnerability, the DPRK regime has promoted an intense devotion to self-sufficiency, sovereignty, and self-defense as the touchstones for all rhetoric and policy. The DPRK views efforts by outsiders to promote democratic and market reforms in its country as an attempt to undermine the regime. It strongly controls foreign influence and contact, even when they offer relief from the regime's severe economic problems. The DPRK appears to value improved relations with US, especially including relief from the extensive economic sanctions the U.S. has long imposed.

4. Key Findings

The policy review team made the following key findings, which have formed the basis for our recommendations:

- a. DPRK acquisition of nuclear weapons and continued development, testing, deployment, and export of long-range missiles would undermine the relative stability of deterr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 precondition for ending the Cold War and pursuing a lasting peace in the longer run. These activities by the DPRK also have serious regional and global consequences adverse to vital U.S. interests. The United States must, therefore, have as its objective ending these activities.

- b.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would swiftly and surely win a secon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but the destruction of life and property would far surpass anything in recent American experience. The U.S. must pursue its objectives with respect to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in the DPRK without taking actions that would weaken deterrence or increase the probability of DPRK miscalculation.
- c. If stability can be preserved through the cooperative ending of DPRK nuclear weapons- and long-range missile-related activities, the U.S. should be prepared to establish more normal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DPRK and join in the ROK's policy of engagement and peaceful coexistence.
- d. Unfreezing Yongbyon is North Korea's quickest and surest path to acquisition of nuclear weapons. The Agreed Framework, therefore, should be preserved and implemented by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With the Agreed Framework, the DPRK's ability to produce plutonium at Yongbyon is verifiably frozen. Without the Agreed Framework, however, it is estimated that the North could reprocess enough plutonium to produce a significant number of nuclear weapons per year. The Agreed Framework's limitations, such as the fact that it does not verifiably freeze all nuclear weapons-related activities and does not cover ballistic missiles, are best addressed by supplementing rather than replacing the Agreed Framework.e. No U.S. policy toward the DPRK will succeed if the ROK and Japan do not actively support it and cooperate in its implementation. Securing such trilateral coordination should be possible, since the interests of the three parties, while not identical, overlap in significant and definable ways.
- f. Considering the risks inherent in the situation and the isolation, suspicion, and negotiating style of the DPRK, a successful U.S. policy will require steadiness and persistence even in the face of provocations. The approach adopted now must be sustained into the future, beyond the term of this Administration. It is, therefore, essential that the policy and its ongoing implementation have the broadest possible support and the continuing involvement of the Congress.

5. Alternative Policies Considered and Rejected

In the course of the review, the policy team received a great deal of valuable advice, including a variety of proposals for alternative strategies with respect to the security problems presented by the DPRK. The principal alternatives considered by the review team, and the team's reasons for rejecting them in favor of the recommended approach, are set forth below.



a. Status Quo

A number of policy experts outside the Administration counseled continuation of the approach the U.S. had taken to the DPRK over the past decade: strong deterrence through ready forces and solid alliances and limited engagement with the DPRK beyond existing negotiations on missiles, POW/MIA, and implementation of the nuclear-related provisions of the Agreed Framework. These experts counseled that with the Agreed Framework being verifiably implemented at Yongbyon, North Korea could be kept years away from obtaining additional fissile material for nuclear weapons. Without nuclear weapons, the DPRK's missile program could safely be addressed within the existing (albeit to date inconclusive) bilateral missile talks. Thus, as this argument ran, core U.S. security objectives were being pursued on a timetable appropriate to the development of the threat, and no change in U.S. policy was required.

While there are advantages to continuing the status quo since to this point it has served U.S. security interests the policy review team rejected the status quo. It was rejected not because it has been unacceptable from the point of view of U.S. security interests, but rather because the policy team feared it was not sustainable. Aside from a failure to address U.S. concerns directly, it is easy to imagine circumstances that would bring the status quo rapidly to a crisis. For example, a DPRK long-range missile launch, whether or not in the form of an attempt to place a satellite in orbit, would have an impact on political support for the Agreed Framework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even in the ROK. In this circumstance, the DPRK could suspend its own compliance with the Agreed Framework, unfreezing Yongbyon and plunging the Peninsula into a nuclear crisis like that in 1994. Such a scenario illustrates the instability of the status quo. Thus, the U.S. may not be able to maintain the status quo, even if we wanted to.

b. Undermining the DPRK

Others recommend a policy of undermining the DPRK, seeking to hasten the demise of the regime of Kim Jong Il. The policy review team likewise studied this possibility carefully and, in the end, rejected it for several reasons. Given the strict controls on its society impos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he apparent absence of any organized internal resistance to the regime, such a strategy would at best require a long time to realize, even assuming it could succeed. The timescale of this strategy is, therefore, inconsistent with the timescale on which the DPRK could proceed with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addition, such a policy would risk destructive war and would not win the support of U.S. allies in the region upon whom success in deterring such a war would depend. Finally, a policy of pressure might harm the people of North Korea more than its government.

c. Reforming the DPRK

Many other analysts suggest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promote the accelerated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 of the DPRK along the lines of established international practice, hastening the advent of democracy and market reform that will better the lot of the North's people and provide the basis for the DPRK's integration in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 peaceful fashion. However much we might wish such an outcome, success of the policy clearly would require DPRK cooperation. But, the

policy team believed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would strongly resist such reform, viewing it as indistinguishable from a policy of undermining. A policy of reforming, like a policy of undermining, would also take time - more time than it would take the DPRK to proceed with it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d. “Buying” our objectives

In its current circumstance of industrial and agricultural decline, the DPRK has on occasion indicated a willingness to “trade” addressing U.S. concerns about its nuclear weapons activities and ballistic missile exports for hard currency. For example, the DPRK offered to cease its missile exports if the U.S. agreed to compensate it for the foregone earnings from missile exports. The policy review team firmly believed that such a policy of trading material compensation for security would only encourage the DPRK to further blackmail, and would encourage proliferators worldwide to engage in similar blackmail. Such a strategy would not, and should not, be supported by the Congress, which controls the U.S. government’s purse strings.

6. A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Approach: A Two-Path Strategy

A better alternative, and the one the review has recommended, is a two-path strategy focused on our priority concerns over the DPRK’s nuclear weapons- and missile-related activities. We have devised this strategy in close consultation with the governments of the ROK and Japan, and it has their full support. Indeed, it is a joint strategy in which all three of our countries play coordinated and mutually reinforcing roles in pursuit of the same objectives. Both paths aim to protect our key security interests; the first path is clearly preferable for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and, we firmly believe, for the DPRK.

The first path involves a new,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approach to our negotiations with the DPRK. We would seek complete and verifiable assurances that the DPRK does not have a nuclear weapons program. We would also seek the complete and verifiable cessation of testing, production and deployment of missiles exceeding the parameters of the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and the complete cessation of export sales of such missiles and the equipment and technology associated with them. By negotiating the complete cessation of the DPRK’s destabilizing nuclear weapons and long-range missile programs, this path would lead to a stabl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creating the conditions for a more durable and lasting peace in the long run and ending the Cold War in East Asia.

On this path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would, in a step-by-step and reciprocal fashion, move to reduce pressures on the DPRK that it perceives as threatening. The reduction of perceived threat would in turn give the DPRK regime the confidence that it could coexist peacefully with us and its neighbors and pursue its ow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f the DPRK moved to eliminate its nuclear and long-range missile threats, the United States would normalize relations with the DPRK, relax sanctions that have long constrained trade with the DPRK and take other positive steps that would provide opportunities for the DPRK.

If the DPRK were prepared to move down this path, the ROK and Japan have indicated that they would also be prepared, in coordinated but parallel tracks,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DPRK.

It is important that all sides make contributions to creating an environment conducive to success in such far-ranging talks. The most important step by the DPRK is to give assurances that it will refrain from further test firings of long-range missiles as we undertake negotiations on the first path. In the context of the DPRK suspending such tests, the review team recommended that the United States ease, in a reversible manner, Presidentially-mandated trade embargo measures against the DPRK. The ROK and Japan have also indicated a willingness to take positive steps in these circumstances.

When the review team, led by Dr. Perry as a Presidential Envoy, visited Pyongyang in May, the team had discussions with DPRK officials and listened to their views. We also discussed these initial steps that would create a favorable environment for conducting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negotiations. Based on talks between with Ambassador Charles Kaltman and DPRK Vice Foreign Minister Kim Gye Gwan in early September, the U.S. understood and expected that the DPRK would suspend long-range missile testing to include both No Dong and Taepo Dong missiles - for as long as U.S.-DPRK discussions to improve relations continued. The DPRK subsequently announced a unilateral suspension of such tests while talks between the two countries continued. Accordingly, the Administration has taken steps to ease sanctions. This fall a senior DPRK official will likely visit Washington to reciprocate the Perry visit and continue discussions on improving relations. Both sides have taken a bold and meaningful step along the first path. While it is only an initial step, and both sides can easily reverse this first step, we are hopeful that it begins to take us down the long but important path to reducing threat on the Korean Peninsula.

While the first path devised by the review holds great promise for U.S. security and for stability in East Asia, and while the initial steps taken in recent weeks give us great hope, the first path depends on the willingness of the DPRK to traverse it with us. The review team is hopeful it will agree to do so, but on the basis of discussions to date we cannot be sure the DPRK will. Prudence therefore dictated that we devise a second path, once again in consultation with our allies and with their full support. On the second path, we would need to act to contain the threat that we have been unable to eliminate through negotiation. By incorporating two paths, the strategy devised in the review avoids any dependence on conjectures regarding DPRK intentions or behavior and neither seeks, nor depends upon for its success, a transformation of the DPRK's internal system.

If North Korea rejects the first path, it will not be possible for the United-States to pursue a new relationship with the DPRK. In that case,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would have to take other steps to assure their security and contain the threat. The U.S. and allied steps should seek to keep the Agreed Framework intact and avoid, if possible, direct conflict. But they would also have to take firm but measured steps to persuade the DPRK that it should return to the first path and avoid destabilizing the security situation in the region.

Our recommended strategy does not immediately address a number of issues outside the scope of direct U.S.-DPRK negotiations, such as ROK family reunification, implementation of the North-South Basic Agreement (including reactivation of North-South Joint Committees) and Japanese kidnapping cases, as well as other key issues of concern, including drug trafficking. However, the policy review team

believed that all of these issues should be, and would be, seriously addressed as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the U.S. improve.

Similarly, the review team believed the issue of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is best addressed multilaterally. Many recommendations have also been made with respect to Korean unification; but, ultimately, the question of unification is something for the Korean people to decide. Finally, the policy review team strongly believed that the U.S. must not withdraw any of its forces from Korea - a withdrawal would not contribute to peace and stability, but rather undermine the strong deterrence currently in place.

7. Advantages of the Proposed Strategy

The proposed strategy has the following advantages:

- a. Has the full support of our allies. No U.S. policy can be successful if it does not enjoy the support of our allies in the region. The overall approach builds upon the South's policy of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s the ROK leadership suggested to Dr. Perry directly and to the President. It also puts the U.S. effort to end the DPRK missile program on the same footing with U.S. efforts to end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s the Government of Japan recommended.
- b. Draws on U.S. negotiating strengths. Pursuant to the recommended approach, the United States will be offering the DPRK a comprehensive relaxa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pressures which the DPRK perceives as threatening to it and which are applied, in its view, principally by the United States. This approach complements the positive steps the ROK and Japan are prepared to take. On the other hand, the United States will not offer the DPRK tangible "rewards" for appropriate security behavior; doing so would both transgress principles that the United States values and open us up to further blackmail.
- c. Leaves stable deterrence of war unchanged. No changes are recommended in our strong deterrent postur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U.S. should not put its force posture on the negotiating table. Deterrence is strong in both direc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oday. It is the North's nuclear weapons- and long-range missile-related activities that threaten stability. Likewise, the approach recommended by the review will not constrain U.S. Theater Missile Defense programs or the opportunities of the ROK and Japan to share in these programs; indeed, we explicitly recommended that no such linkage should be made.
- d. Builds on the Agreed Framework. The approach recommended seeks more than the Agreed Framework provides. Specifically, under the recommended approach the U.S. will seek a total and verifiable end to all nuclear weapons-related activities in the DPRK, and the U.S. will be addressing the DPRK's long-range missile programs, which are not covered by the Agreed Framework. In addition, the U.S. will seek to traverse the broader path to peaceful relations foreseen by both the U.S. and the DPRK in the Agreed Framework, and incorporated in its text.

- e. Aligns U.S. and allied near-term objectives with respect to the DPRK'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with our long-term objectives for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ecommended approach focuses on the near-term dangers to stability posed by the DPRK's nuclear weapons- and missile-related activities, but it aims to create the conditions for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longer run, as the U.S. seeks through the Four Party Talks. As noted above, the recommended approach also seeks to realize long-term objectives of the Agreed Framework, which are to move beyond cooperation in the nuclear field to broader, more normal U.S.-DPRK relations.
- f. Does not depend on specific North Korean behavior or intent. The proposed strategy is flexible and avoids any dependence on conjectures or assumptions regarding DPRK intentions or behavior benign or provocative. Again, it neither seeks, nor depends upon, either such intentions or a transformation of the DPRK's internal system for success. Appropriate contingencies are built into the recommended framework.

8. Key Policy Recommendations

In the context of the recommendations above, the review team offered the following five key policy recommendations:

- a. Adopt a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approach to the DPRK'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related programs, as recommended by the review team and supported by our allies in the region. Specifically, initiate negotiations with the DPRK based on the concept of mutually reducing threat; if the DPRK is not receptive, we will need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otect our security and those of our allies.
- b. Create a strengthened mechanism within the U.S. Government for carrying out North Korea policy. Operating under the direction of the Principals Committee and Deputies Committee, a small, senior-level interagency North Korea working group should be maintained, chaired by a senior official of ambassadorial rank, located in the Department of State, to coordinate policy with respect to North Korea.
- c. Continue the new mechanism established last March to ensure close coordination with the ROK and Japan. The 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 (TCOG) established during this policy review and consisting of senior officials of the three governments - is charged with managing policy toward the DPRK. This group should meet regularly to coordinate negotiating strategy and overall policy toward the DPRK and to prepare frequent consultations on this issue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ROK President and Japanese Prime Minister. The U.S. delegation should be headed by the senior official coordinating North Korea policy.
- d. Take steps to create a sustainable, bipartisan, long-term outlook toward the problem of North Korea. The President should explore with the majority and minority leaders of both houses of Congress ways for the Hill, on a bipartisan basis, to consult on this

and future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the DPRK. Just as no policy toward the DPRK can succeed unless it is a combined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the policy review team believes no strategy can be sustained over time without the input and support of Congress.

- e. Approve a plan of action prepared for dealing with the contingency of DPRK provocations in the near term, including the launch of a long-range missile. The policy review team notes that its proposed responses to negative DPRK actions could have profound consequences for the Peninsula, the U.S. and our allies. These responses should make it clear to the DPRK that provocative actions carry a heavy penalty. Unless the DPRK's acts transgress provisions of the Agreed Framework, however, U.S. and allied actions should not themselves undermine the Agreed Framework. To do so would put the U.S. in the position of violating the Agreed Framework, opening the path for the DPRK to unfreeze Yongbyon and return us to the crisis of the summer of 1994.

9. Concluding Thoughts

The team's recommended approach is based on a realistic view of the DPRK, a hardheaded understanding of military realities and a firm determination to protect U.S. interests and those of our allies.

We should recognize that North Korea may send mixed signals concerning its response to our recommended proposal for a comprehensive framework and that many aspects of its behavior will remain reprehensible to us even if we embark on this negotiating process. We therefore should prepare for provocative contingencies but stay the policy course with measured actions pursuant to the overall framework recommended. The North needs to understand that there are certain forms of provocative behavior that represent a direct threat to the U.S. and its allies and that we will respond appropriately.

In this regard, it is with mixed feelings that we recognize certain provocative behavior of the DPRK may force the U.S. to reevaluate current aid levels.

Finally, and to close this review, we need to point out that a confluence of events this past year has opened what we strongly feel is a unique window of opportunity for the U.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There is a clear and common understanding among Seoul, Tokyo, and Washington on how to deal with Pyongyang. The PRC's strategic goals -especially on the issue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related missile delivery systems overlap with those of the U.S. Pyongyang appears committed to the Agreed Framework and for the time being is convinced of the value of improving relations with the U.S. However, there are always pressures on these positive elements. Underlying tensions and suspicions have led to intermittent armed clashes and incidents and affect the political environment. Efforts to establish the diplomatic momentum necessary to withstand decades of hostility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and eventually stall. Nevertheless, the year 1999 may represent, historically, one of our best opportunities to deal with key U.S. security concerns on the Korean Peninsula for some time to come.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I)

하바도 평화체제

: 자료와 해제



www.kinu.or.kr